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65-01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11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1)

2012. 9.

조선왕조실록 궁중음식 기사 자료집 작업 개요

1. 작업 목적 및 대상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기본적인 전개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이에 왕대별 기사(記事) 중에서 궁중음식과 관련 내용을 추출하는 작업을 하여, 향후 참고자료로 삼는 데 목적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작업에서 사용한 자료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출간한 『국역 조선왕조실록』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웹서비스를 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사이트(sillok.history.go.kr)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사이트를 이용하여 국역문과 원문을 모두 추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2. 작업방법

대상 자료인 『국역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실록 사이트를 작업자가 직접 읽고 그 중에서 궁중음식과 관련 된 기사들을 발췌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궁중음식과 관련된 기사는 국역문과 원문을 추출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음식 관련 기사자료집 작업자 명단>

왕대별	권수(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기준)	담당자
태조실록	2	이민재(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민속학, 본연구단 연구보조원)
정종실록	1	
태종실록	8	
세종실록	28	강다영(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고문헌학)
문종실록	3	
단종실록	3	
세조실록	11	
예종실록	2	차호연(한국학대학원 석사수료, 한국사)
성종실록	41	
연산군일기	8	이민재(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민속학, 본연구단 연구보조원)
중종실록	52	김혜은(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한국사)
인종실록	1	
명종실록	16	이은주(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한국사)
선조실록	42	
광해군일기	25	이윤나(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고문헌학)
인조실록	21	
효종실록	8	이민재(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민속학, 본연구단 연구보조원)
현종실록	9	조희진(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민속학)
숙종실록	32	
경종실록	3	
영조실록	36	이민재(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민속학, 본연구단 연구보조원)
정조실록	27	구혜인(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민속학)
순조실록	13	
헌종실록	2	이민재(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민속학, 본연구단 연구보조원)
철종실록	2	
고종실록	16(국역본은 온라인상으로만 제공)	구혜인(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민속학)
순종실록	4(국역본은 온라인상으로만 제공)	
계	416	

- 목 차 -

1. 태조실록 기사자료집	1
2. 정종실록 기사자료집	95
3. 태종실록 기사자료집	119

1. 태조실록 기사자료집

태조실록 기사자료집

날짜	내용	원문
<p>태조 1권 총서 32번째 기사 동북면 도순문사 이달충이 태조가 비범한 인물임을 말하다</p>	<p>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이달충(李達衷)이 고을을 순시(巡視)하다가 안변부(安邊府)에 이르렀는데, 달충(達衷)의 진무(鎭撫) 한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태조를 불쾌하게 여겨 달충에게 말하였다. 달충이 태조를 불러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뜰에 내려와 영접해 앉으면서 술자리를 베풀고는 진무(鎭撫)에게 이르기를, “절대로 그와 겨루지 말라.” 하였다. 환조(桓祖)가 달충을 보고 그가 태조를 후하게 대접한 것을 사례하였다. 달충이 서울로 돌아갈 적에 환조가 들에서 진송하니, 태조는 환조의 뒤에서 있었다. 환조가 잔에 술을 부어 돌리니 달충이 서서 마시었으나 태조가 잔에 술을 부어 돌리는데 이르러서는 달충이 무릎을 꿇고 마시었다. 환조가 괴이히 여겨 물으니, 달충이 말하기를, “귀랑(貴郎)은 참으로 비범한 사람입니다. 공(公)께서도 아마 미치지 못할 것이며, 공의 가업(家業)을 번창(繁昌)하게 할 사람은 반드시 이 아드님일 것입니다.” 하면서, 이내 그 자손을 부탁하였다. 이때 건너편의 언덕에 일곱 마리의 노루가 모여 서 있으므로, 달충이 말하기를,</p>	<p>東北面都巡問使李達衷行縣至安邊府。達衷鎭撫一人，以事不快於太祖，言於達衷，達衷召而見之，不覺下庭，延坐置酒。謂鎭撫曰：“慎勿與較。”桓祖見達衷，謝其厚待。及達衷還京，桓祖餞之于野，太祖立桓祖之後，桓祖行酒，達衷立飲，至太祖行酒，達衷跪飲。桓祖怪問之，達衷曰：“貴郎，眞異人，公殆不及。昌公家業者，必此子也。”因以其子孫屬之。時對岸有七獐聚立，達衷曰：“若何而攫一獐，以爲今日之饌乎？”桓祖命太祖，率麾下士往。太祖令麾下士，從山後驚之，七獐卽走下，太祖五發殪五獐。又逐一獐，接矢欲射，適巨澤當前，方氷合。太祖執轡徑度射之，又斃。餘一</p>

	<p>“어떻게 해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 오늘의 반찬을 하지 않겠는가?”</p> <p>하니, 환조가 태조에게 명하여 휘하(麾下)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태조가 휘하의 군사들로 하여금 산 뒤에서 노루를 놀라게 했더니, 일곱 마리의 노루가 즉시 달려 내려오는지라 태조가 다섯 번 쏘아 다섯 마리의 노루를 죽이고, 또 한마리의 노루를 쫓아서 화살을 시위에 대어 쏘려고 했으나, 마침 큰 못이 앞에 가로막아 있고, 얼음이 얼었으므로, 태조는 말고삐를 잡고 질러 건너가서 이를 쏘고, 또 나머지 한 마리의 노루를 쏘아 죽이고는, 화살이 떨어져서 그치었다. 또 일찍이 강음(江陰) 산수(酸水)의 땅에서 사냥했는데, 한 떼의 다섯 마리 노루를 쫓아서 다섯 번 쏘아 다 죽였다. 평상시에도 3, 4 마리의 노루를 연달아 쏘아 죽인 것은 다 기록할 수가 없었으며, 숨어 었드린 꿩을 쏘 적에는 반드시 놀래켜서 두서너 길 높이 날게 한 다음에 쳐다보고 쏘아 번번이 맞히었다.</p>	<p>獐，矢盡而止。又嘗獵于江陰酸水之地，逐一群五獐，五發盡斃之。平時連射三四獐，不可殫記。射伏雉，必使驚飛高數丈，仰射輒中。</p>
<p>태조 1권 총서 54번째 기사 태조가 화살로 쏘아 떨어뜨린 배를 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하다</p>	<p>태조가 일찍이 친한 친구를 많이 모아 술을 준비하고 과녁에 활을 쏘는데, 배나무가 백 보(步)밖에 서 있고, 나무 위에는 열매 수십 개가 서로 포개어 축 늘어져서 있었다. 여러 손님들이 태조에게 이를 쏘기를 청하므로, 한 번 쏘니 다 떨어졌다. 가져와서 손님들을 접대하니, 여러 손님들이 탄복하면서 술잔을 들어 서로 하례(賀禮)하였다.</p>	<p>太祖嘗盛集親朋，置酒射侯。有梨樹立百步外，樹頭有實數十顆，相積離離，衆賓請太祖射之。一發盡落，取以供賓，衆賓歎服，舉酒相賀。</p>
<p>태조 1권 총서 62번째 기사 태조가 서해도에 침구한 왜적을 해주에서 격퇴하다</p>	<p>8월, 왜적이 서海道(西海道)의 신주(信州)·문화(文化)·안악(安岳)·봉주(鳳州)를 침구(侵寇)하니 원수(元帥) 찬성(贊成) 양백익(梁伯益)·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나세(羅世)·지문하(知門下) 박보로(朴普老)·도순문사(都巡問使) 심덕부(沈德符) 등이 패전하여 장수를 보내어 조전(助戰)하기를 청하매, 우왕이 태조와 문하 평리(門下評理) 임견미(林堅味)·변안열(邊安烈), 밀직 부사(密直副使) 유만수(柳蔓殊)·홍징(洪徵)으로 조전(助戰)하게 하였다. 원수(元帥) 안열(安烈)·견미(堅味) 등이 해주(海州)에서 싸우다가 모두 패하여 달아났다. 태조가 장차 싸우려고 투구를 백 수십 보(步) 밖에 놓고 시</p>	<p>八月，倭寇西海道 信州、文化、安岳、鳳州，元帥贊成梁伯益、判開城府事羅世、知門下朴普老、都巡問使沈德符等敗績，請遣將助戰。禍以太祖及門下評理林堅味·邊安烈、密直副使柳蔓殊·洪徵爲助戰。元帥安烈、堅味等戰於海州，皆奔潰。太祖將戰，置兜鍪於百數十步外試射之，以卜勝</p>

	<p>힘해 이를 쏘아, 싸움에 이길까 못 이길까를 짐쳐 보았는데, 마침내 세 번 쏘아 모두 꿰뚫었으므로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알겠다.”</p> <p>하였다. 해주(海州)의 동쪽 정자(亭子)에서 싸우는데, 싸움이 한창일 때에 넓이가 한밭[丈]이나 넘는 진창의 땅을 만났다. 태조의 말은 한번 뛰어서 지나갔으나, 따라간 사람은 모두 건너지 못하였다. 태조는 대우전(大羽箭)으로 적을 쏘았는데, 17번 쏘아서 모두 이들을 죽였다. 이에 군사를 놓아 이 형세를 이용하여 마침내 적군을 크게 부수었다. 이 싸움에서 태조가 처음에는 대우전(大羽箭) 20개를 가졌었는데, 싸움이 끝나매 화살 3개가 남았다. 측근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두 왼쪽 눈초리를 쏘았다.”</p> <p>하므로, 측근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보니 다 맞았다. 남은 적군들이 험지(險地)에 의거하여 쉼[柴]을 쌓아 스스로 튼튼하게 하였다. 태조는 말에서 내려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음악을 베풀게 하니, 중[僧] 신조(神照)가 고기를 베어 술을 올렸다. 태조는 사졸들에게 명하여 쉼을 불지르게 하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찼다. 적군이 곤경(困境)에 빠져서 죽을 힘을 내어 충돌(衝突)하였다. 화살이 자리 앞[座前]에 있는 술병에 맞았으나, 태조는 편안히 앉아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김사훈(金思訓)·노현수(魯玄受)·이만중(李萬中) 등에게 명하여 이들을 쳐서 거의 다 죽였다. 이때 왜적이 우리 나라 사람을 사로잡으면 반드시 이성계(李成桂) 만호(萬戶)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를 묻고, 감히 태조의 군사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고 반드시 틈을 엿보고서야 들어와 침구(侵寇)하였다.</p>	<p>否。遂三發皆洞貫，曰：“今日之事，可知”，戰於州之東亭子。戰方酣，遇泥濘之地丈餘，太祖之馬一蹶而過，從者皆不得度。太祖以大羽箭，射賊十七，發皆斃之，乃縱兵乘之，遂大破之。是戰也，太祖初御大羽箭二十，及戰罷，餘三矢。謂左右曰：“吾皆射左目眇。”左右就視之，盡驗矣。餘賊阻險，積柴自固。太祖下馬，據胡床張樂，僧神照割肉進酒，命士卒焚柴，烟焰漲天。賊勢窮出，死力衝突，矢中座前餅。太祖安坐不起，命金思訓、魯玄受、李萬中等，擊之幾殲。時倭賊擄國人，必問：“李【太祖舊諱】萬戶，今在何處乎？”不敢近太祖之軍，必伺間乃入寇。</p>
<p>태조 1권 총서 70번째 기사 태조가 안변에서 후에</p>	<p>9월, 태조가 동북면으로부터 이르렀다. 이번 행차에 태조가 돌아오다가 안변(安邊)에 이르니, 비둘기 두 마리가 밭 한가운데의 뽕나무에 모여 있는지라, 태조가 이를 쏘니 한 번에 비둘기 두 마리가 함께 떨어졌다. 길가에서 두 사</p>	<p>九月，太祖至自東北面。是行，太祖回至安邊，有二鵠集于田中桑樹，太祖射之，一發二鵠俱落。路邊有二人耘，</p>

개국 공신이 된 한충과 김인찬을 처음으로 만나다

람이 김을 매고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충(韓忠)이요, 한 사람은 김인찬(金仁贊)인데, 이를 보고 탄복하면서 말하기를,
 “잘도 쏘니다. 도령(都領)의 활숨씨여!”
 하니, 태조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벌써 도령(都領)은 지났다.”
 하고는, 이내 두 사람에게 명하여 비둘기를 가져다가 먹게 하였다. 이에 두 사람이 조밥[粟飯]을 준비하여 바치니, 태조가 그 성의를 보아 조밥을 먹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태조를 따라가 떠나지 않고서 모두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반열(班列)에 참여하였다. 태조의 활달하여 세상을 구제하는 도량과 인후(仁厚)하여 생명을 아끼는 덕은 천성(天性)에서 나왔으므로, 공훈(功勳)이 크게 빛났으나 더욱더 겸손하고 공손하였다. 또 본디부터 유술(儒術)을 존중했으므로 일찍이 가문(家門)에서 유학(儒學)을 업(業)으로 삼는 사람이 없음을 불만히 여겨, 전하(殿下) 45) 로 하여금 스승에게 나아가서 학문을 배우게 하니, 전하께서도 날마다 부지런하여 글읽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태조가 일찍이 이르기를,
 “내 뜻을 성취할 사람은 반드시 너일 것이다.”
 하였다. 비(妃) 강씨(康氏)가 매양 전하의 글읽는 소리를 듣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 내가 낳은 아들이 되지 않았는가?”
 하였다. 이 해에 전하가 과거(科擧)에 급제하니, 태조가 대궐 뜰[闕庭]에 절하고는 매우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후에 제학(提學)에 임명되니 태조가 매우 기뻐하여, 사람을 시켜 관교(官敎) 46) 를 읽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다. 태조가 매양 빈객(賓客)과 연회할 적에 전하로 하여금 연귀(聯句)를 하게 하고 문득 이르기를,
 “내가 손님과 함께 즐김에는 네 힘이 많이 있었다.”

一韓忠、一金仁贊。見之嘆曰：“善哉都領之射!” 太祖笑曰：“我已過都領矣。” 因命二人取食之。 於是二人備粟飯以進，太祖爲之下箸。 二人遂從不去，皆與開國功臣之列。 太祖(割) [豁] 達濟時之量、仁厚好生之德，出於天性，勳庸輝赫，愈益謙恭。 且素重儒術，嘗以家門未有業儒者爲嫌，令殿下就學。 殿下惟日孜孜，讀書不倦，太祖嘗謂曰：“成吾志者，必汝也。” 妃康氏每聞殿下讀書聲，嘆曰：“何不爲吾出乎!” 是年，殿下登第，太祖拜闕庭，感極流涕。 及拜提學，太祖甚喜，令人讀官敎，至于再三。 太祖每燕會賓客，令殿下聯句，輒謂曰：“我之與客權娛，汝力居多。” 殿下成就聖德，雖自天性，實由太祖勸學之勤也。

	<p>하였다. 전하께서 성덕(聖德)을 성취(成就)한 것은 비록 천성(天性)에서 출발하였지만, 실은 태조께서 학문을 권장함이 부지런하였기 때문이었다.</p>	
<p>태조 1권 총서 73번째 기사 태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최영과의 정분을 돈독히 유지하다</p>	<p>태조는 최영(崔瑩)과 친밀한 정(情)이 매우 돈독하였는데,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점차로 성하니, 사람들 중에서 우왕에게 무함(誣陷)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최영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공(李公)은 나라의 주석(柱石)이 되었으니, 만약 하루아침에 위급하면 마땅히 누구를 시키겠는가?” 하였다. 매양 빈객(賓客)을 연회하려 할 적엔 최영(崔瑩)이 반드시 태조에게 이르기를, “나는 면찬(麪饌)을 준비할 것이니 공은 육찬(肉饌)을 준비하십시오.”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어느날 태조는 이 일 때문에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냥을 하는데, 노루 한 마리가 높은 고개에서 뛰어 내려왔으나, 지세(地勢)가 가파르고 낭떠러지인지라, 여러 군사들이 모두 내려갈 수가 없으므로, 산밑으로 비스듬히 따라 돌아서 달려가 모였는데, 갑자기 대초명적(大哨鳴鑼)의 소리가 위에서 내려옴을 듣고 위로 쳐다보니, 곧 태조가 고개 위에서 바로 달려 내려오는데, 그 기세가 빠른 번개와 같았다. 노루와의 거리가 매우 먼데도 이를 쏘아 바로 맞혀서 죽였다. 태조는 곧 말고삐를 당기면서 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주먹을 보라.” 하였다. 최영의 휘하 군사인 현귀명(玄貴命)이 또한 군사들 가운데서 있다가 친히 이를 보고, 그 사실을 최영에게 말하니, 최영이 감탄하여 칭찬하기를 한참 동안이나 하였다.</p>	<p>太祖與崔瑩情好極篤。太祖威德漸盛，人有欲構於禍者，瑩怒曰：“李公爲國柱石，若一朝緩急，當使誰與？”每將宴會賓客，瑩必謂太祖曰：“我備麪饌，公備肉饌。”太祖曰：“諾。”一日，太祖爲是，率麾下士獵，有一獐自高嶺而走下。地勢峻絕，諸軍士皆不得下，迤從山底，回馳而集，忽聞大哨鳴鑼聲，自上而下，仰視之，乃太祖自嶺上直馳下，勢若迅雷，去獐甚遠，射之正中而斃。太祖卽控馬而笑曰：“此兒之拳乎！”瑩麾下士玄貴命，亦在軍士中親見之，以其狀言於瑩，瑩嗟賞者久之</p>
<p>태조 1권, 1년(1392)</p>	<p>봉상시(奉常寺)는 종묘(宗廟)·제향(祭享)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p>	<p>奉常寺：掌宗廟、祭享等事。判事二，</p>

<p>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7월 28일(정미) 4번째기사 문무 백관의 관제</p>	<p>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중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정4품이고, 승(丞) 1명 중5품이고, 박사(博士) 2명 정6품이고, 협률랑(協律郎) 2명 정7품이고, 대축(大祝) 2명 정7품이고, 녹사(錄事) 2명 정9품이고, 영사(令史) 2명 9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p> <p>전중시(殿中寺)는 친속(親屬) 보첩(譜牒)과 전내(殿內)의 급사(給事)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중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중4품이고, 승(丞) 1명 중5품이고, 직장(直長) 2명 중7품이다.</p> <p>훈련관(訓練觀)은 모두 겸직(兼職)으로서 무예(武藝)를 훈련(訓練)하고 병서(兵書)와 전진(戰陣)을 교습(教習)시키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1명 정3품이고, 군자 채주(軍諮祭酒) 2명 중3품이고, 사마(司馬) 4명 중4품이고, 사직(司直) 4명 중5품인데, 이 중의 1명은 실차(實差)이고, 부사직(副司直) 4명 중6품인데, 이 중의 1명은 실차(實差)이고, 참군(參軍) 4명 중7품이고, 녹사(錄事) 6명 정8품이다.</p> <p>사복시(司僕寺)는 여마(輿馬)·구목(廐牧)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중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중4품이고, 주부(注簿) 1명, 겸주부(兼注簿) 1명 중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중7품이다.</p> <p>사농시(司農寺)는 적전(籍田)의 경작(耕作)과 전곡(錢穀) 및 사제(祠祭)의 주례(酒醴)와 희생(犧牲)을 진설(陳設)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중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중4품이고, 승(丞) 1명, 겸승(兼丞) 1명 중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1명 중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중7품이다.</p> <p>내부시(內府寺)는 부고(府庫)에 재화(財貨)를 저장하고, 복식(服飾)을 출납(出納)하고, 등촉(燈燭)을 포진(鋪陳)시키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중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중4품이고, 주부(注簿) 1명, 겸주부(兼注簿) 1명 중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중7품이다.</p>	<p>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正四品; 丞一, 從五品; 博士二, 正六品; 協律郎二, 正七品; 大祝二, 正八品; 錄事二, 正九品; 令史二, 九品去官。</p> <p>殿中寺: 掌親屬、譜牒及殿內給事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丞一, 從五品; 直長二, 從七品。</p> <p>訓練觀: 皆兼, 掌訓練武藝、教習兵書戰陣等事。 使一, 正三品; 軍諮祭酒二, 從三品; 司馬四, 從四品; 司直四, 從五品, 內一, 實差; 副司直四, 從六品, 內一, 實差; 參軍四, 從七品; 錄事六, 正八品。</p> <p>司僕寺: 掌輿馬、廐牧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注簿一、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p> <p>司農寺: 掌耕籍, 錢穀及祠祭、酒醴、陳設、犧牲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丞一、兼丞一, 從五品; 注簿二、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p> <p>內府寺: 掌府藏貨財、出納服飾、鋪陳燈燭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p>
---	--	---

	<p>예빈시(禮賓寺)는 빈객(賓客)과 연향(宴享)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종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겸승(兼丞) 1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녹사(錄事) 2명 정8품이다.</p> <p>교서감(校書監)은 문적(文籍)·도서(圖書)와 제초(祭醮)의 축소(祝疏)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종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종5품이고, 낭(郎) 2명 정7품이고, 저작랑(著作郎) 2명 정8품이고, 교감(校勘) 2명 정9품이고, 정자(正字) 2명 종9품이다.</p>	<p>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注簿一、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p> <p>禮賓寺: 掌賓客、宴享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丞一、兼丞一, 從五品; 注簿二、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錄事二, 正八品。</p> <p>校書監: 掌文籍、圖書及祭醮、祝疏等事。 判事二, 正三品; 監二, 從三品; 少監二, 從四品; 丞一, 從五品; 郎二, 正七品; 著作郎二, 正八品; 校勘二, 正九品; 正字二, 從九品。</p>
<p>태조 2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9월 11일(기축) 1번째기사 유구국 사신과 오랑합의 사람이 조회에 참여하다</p>	<p>임금이 조회를 보았다. 유구국(琉球國)의 사신과 오랑합(吾良哈) 241)의 사람들이 조회에 참여하였다. 유구국의 사신은 동반(東班) 5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오랑합은 서반(西班) 4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그 종자(從者)들은 6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유구국에서 방물(方物)을 바치었다.</p>	<p>己丑/上視朝, 琉球國使、吾良哈人等參朝。 琉球位於東五品之下, 吾良哈位於西四品之下, 其從者位於六品之下。 琉球獻方物。</p>
<p>태조 2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9월 21일(기해) 3번째기사</p>	<p>대사헌 남재(南在)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신 등은 외람히도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질로서 헌사(憲司)에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 어찌 감히 잠자코 말을 하지 않아서 전하의 다스리기를 원하는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삼가 좁은 소견을 조목별로 열거(列舉)하여 아뢰오니, 앞드</p>	<p>大司憲南在等上言: 臣等猥以庸愚, 承乏憲司, 安敢默默, 以負殿下願治之意? 謹以管見, 條列以聞, 伏惟採擇施行。 一, 西北面, 國</p>

환관의 제어, 불교의 배척, 여자의 외출제한 등 12개 조목을 건의한 대사헌 남재의 상서문

려 생각하옵건대,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1. 서북면(西北面) 253) 은 나라의 울타리인 까닭으로 평양(平壤)에 10익(翼) 254) 을 설치하고, 안주(安州)에 10익을 설치하고, 의주(義州)에 4익을 설치하고, 이를 위하여 책임자를 뽑아 매 익(翼)마다 천호(千戶) 1인을 두어서, 그로 하여금 사졸을 훈련하게 하고 기계(器械) 255) 를 준비하게 하는데, 사변이 없으면 농사에 돌아가게 하고 사변이 있으면 나와서 공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천호(千戶)되는 사람으로 거게 책임자를 뽑지 못하여서 으레 모두가 탐욕만을 부리고 직무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군사들을 침해해서 사역하기를 노예처럼 하고 농장을 많이 두고 있으며, 딸이 있는 사람을 억눌러서 첩으로 삼는 등, 한 몸의 욕심만 마음대로 행하니, 군인이 각호(各戶)마다 도망해 흩어져서 국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원컨대, 무재(武才)가 있고 청렴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천호를 삼아, 사졸들을 훈련하고 기계를 수리하게 하고, 감히 전과 같이 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엄격히 금지하게 하소서.

1. 고려의 말기에 각도에 영을 내려서 쇠를 제련하여 병기(兵器)를 만들게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듣건대, 서북면에서는 쇠를 제련하는 것이 예전보다 배나 되는데도 군기의 수량은 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듣건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하여금 도순문사(都巡問使)에게 공문을 보내어 매철·매달마다 정보(呈報)하게 하고, 그 한 달에 제련한 철물(鐵物)로써 제작한 군기의 수량을 상고하여 신문(申聞)하게 하여, 잘한 사람은 권장하고 잘못된 사람은 징벌하게 하소서.

1. 옛날에는 여자가 이미 시집을 간 경우에는 부모가 죽었으면 근친(覲親)하는 의리가 없었으니, 그 근엄(謹嚴)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고려의 말기에 풍속이 퇴패(頹敗)해져서 사대부의 아내들이 권세 있는 집안에 찾아가 알현하면 서도 태연히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식견이 있는 사람은 이를 수치스럽게

之蕃屏，故於平壤置十翼，安州置十翼，義州置四翼。爲之擇人，每翼置千戶一人，使之鍊士卒備器械，無事則歸農，有事則出擊。近來爲千戶者，率不擇人，例皆貪汚，不思職事，侵逼軍士，役使如奴隸，廣置農場，有女者，勒令爲妾，恣行一己之欲，以致軍人各戶逃散越境。願擇有武材廉幹者，定爲千戶，訓練士卒，修治器械。敢有如前作弊者，守令傳報監司，痛行禁理。一，前朝之季，下令各道，鍊鐵作兵器久矣，聞西北面鍊鐵倍舊，而軍器之數不加多。願令都評議使司，移文都巡問使，每季月呈報，考其一月所鍊鐵物，所作軍器之數，申聞勸懲。一，古者，女子已嫁者，父母歿則無歸寧之義，其謹嚴如此。前朝之季，風俗頹敗，士大夫之妻，趨謁權門，恬不爲愧，識者恥之。願自今文武兩班之婦女，除父母親兄弟姊妹、親伯叔舅姨外，不許相往，以正風俗。一，三代以降，斯道不明，及經秦火，人心益晦。至漢明帝時，佛氏之教，始入中國。楚王英最先好之，卒被丹陽之死；梁武帝最篤信之，未

	<p>여깁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문무(文武) 양반의 부녀자들은 부모·친형제·친자매(親姊妹)·친백부·친숙부·친외숙(親外叔)·친이모(親姨母)를 제외하고는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로잡으소서.</p> <p>1. 삼대(三代) 256) 이래로 유학의 도(道)가 밝지 못하운데, 진(秦)나라의 분서(焚書) 257) 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漢)나라 명제(明帝) 258) 때에 이르러 불교(佛敎)가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는데, 초왕(楚王) 영(英)이 가장 먼저 이를 좋아했으나 마침내 단양(丹陽)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양(梁)나라 무제(武帝)는 이를 가장 독실히 믿었으나 대성(臺城)에서 굶주림 259) 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불도징(佛圖澄) 260) 은 조(趙)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하였고, 구마라즙(鳩摩羅什) 261) 은 진(秦)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하였고, 지공(指空) 262) 은 원(元)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했으니, 역대(歷代)의 군주가 그 교(敎)를 공경하여 능히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방으로 말한다면, 신라가 불교에 미혹하여 그 재력(財力)을 다 없애서 탑묘(塔廟)가 민가(民家)에 절반이나 되더니, 마침내 나라가 망하는 데 이르게 되었고, 고려의 의종(毅宗) 263) 은 3만 명의 중들을 공양(供養)한 것이 한 달에 십여 곳의 절에까지 이르렀으나, 마침내 임천(臨川)에서 탄식(歎息)함이 있었으며, 공민왕(恭愍王)은 해마다 문수 법회(文殊法會)를 개최하고 보허(普虛) 264) 와 나옹(懶翁) 265) 을 국사(國師)로 삼았는데, 보허와 나옹이 모두 사리(舍利)가 있었지마는, 나라의 멸명을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일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설(說)은 믿을 것이 못됨이 명백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불교의 청정 과욕(淸淨寡欲)을 흠모하려 한다면, 선왕(先王)의 공묵무위(恭默無爲) 사상을 본받을 것이고, 불교의 자비 불살(慈悲不殺)을 본받으려 한다면 선왕의 능히 관인(寬仁)하고 능히 호생(好生)하는 덕을 생각할 것이고,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p>	<p>免臺城之餓。佛圖澄不能存趙；鳩摩羅什不能存秦；指空不能存元。未聞歷代人君敬其教而能享其福者也。以我東方言之，新羅惑於浮屠，竭其財力，塔廟半於閭閻，遂至於亡；高麗毅王歲飯僧三萬，月至佛寺十餘所，卒有臨川之嘆；恭愍王歲開文殊會，以普虛、懶翁爲師，普虛、懶翁俱有捨利，無救於亡。由是觀之，佛氏報應之說，不足信明矣。伏惟殿下慕佛氏淸淨寡欲，則以先王恭默無爲爲法；效佛氏慈悲不殺，則以先王克寬克仁好生之德爲念；畏佛氏報應之說，則以賞善罰惡，罪疑惟輕，功疑惟重爲範。如是則非獨生民蒙其澤，天地鬼神亦且陰佑之矣。一，治田者，必去草；作室者，必固基；爲國家者，當除患於未然，而垂祚於永世也。頃者，前朝之裔，分竄江華、巨濟，然猶有雜處州縣者。萬一有無賴之徒，以王氏藉口而爲亂者，則非所以保全也。願皆置江華、巨濟，預爲之防。一，躬行勤儉，致治之本也。茅茨土階，堯之儉也；非食惡衣，禹之儉也。爲天下國家者，以唐堯、夏禹爲法，則何患乎不治！願令有司掌</p>
--	---	--

	<p>報)의 설(說)을 두려워한다면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처벌하고, 죄 가운데 의심나는 것은 경하게 처벌하고, 공 가운데 의심나는 것은 중하게 상주는 것으로 규범을 삼을 것입니다. 이같이 한다면 다만 백성들만 그 은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천지 귀신도 또한 몰래 돕게 될 것입니다.</p> <p>1. 밭을 손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풀을 뽑고,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터를 다지니,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도 마땅히 환난(患難)을 미연(未然)에 없애서 나라의 기틀을 영세(永世)토록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려 왕조의 후손(後孫)을 강화(江華)와 거제(巨濟)에 나누어 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현(州縣)에 뒤섞여 사는 사람이 있으니, 만일에 무뢰배(無賴輩) 가운데 왕씨(王氏)인 것을 구실로 삼아 난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들을 보전하는 방법이 못됩니다. 원컨대, 모두 강화(江華)와 거제(巨濟)에 두어서 미리 방비하게 하소서.</p> <p>1. 몸소 근검(勤儉)함을 실행하는 것은 다스림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띠로 지붕을 잇고 흙으로 계단을 만든 것은 요 임금의 검소함이요, 는 우 임금의 검소함이니,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당(唐) 나라 요 임금과 하(夏) 나라 우 임금을 모범으로 삼는다면,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겠습니까. 원컨대, 담당 관원으로 하여금 여러 창고의 전곡(錢穀)을 관장하게 하여, 그 일년 동안 출납(出納)하는 수량을 헤아려 그 용도(用度)를 절약하게 하고, 금과 은은 또 본국(本國)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니, 함부로 낭비하지 말게 하소서.</p> <p>1. 중관(中官) 266) 과 엄수(閹豎) 267) 는 궁문을 지키고 소제하는 것이 곧 그 직책입니다. 진(秦)나라·한(漢)나라 이래로 환관(宦官)의 환난(患難)은 전적(典籍)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환하게 볼 수가 있는데, 혹은 구변이 좋고 아첨을 잘함으로써 군주를 미혹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군주의 총명을 가리움으로써 나라를 그릇되게 하기도 하였으니, 화란(禍亂)의 일어남은 진실로 이루 다</p>	<p>諸倉庫錢穀, 量其一年出納之數, 以節其用, 金銀又非本國所出, 毋使妄費。 一, 中官閹豎, 守門掃除, 乃其職也。 秦、漢以來, 宦寺之患, 載諸典籍, 昭然可見。 或便佞以惑主, 蒙蔽以誤國, 禍亂之作, 誠不可殫記。 殿下以天錫勇智之性、撥亂反正之才, 博觀經史, 其制馭閹豎, 必知其道。 然不立法於始, 後日之弊, 不期而生矣。 願殿下擇其勤謹幼弱者, 分爲二番, 每一番各十五人, 定其額數, 授之以守門掃除之役, 其餘老奸者, 一皆放之, 毋使近侍。 一, 近君子遠小人, 此人主之至德也。 君子在側, 則仁義之說、道德之論, 常接乎耳, 薰陶漸染, 日進乎聖明; 小人在側, 則卑辭甘言之請, 有時而得行, 邪媚詭詐之謀, 有時而得成, 日就乎掩晦。 此古今治亂興亡之機也。 願殿下日接群賢, 講論治道, 無使群小婦女, 得以日近。 一, 宮中執役之人, 古有定額。 前朝之季, 不限其數, 費廩太多, 弊尙未革。 願令各殿執役之人, 量宜定數外, 皆許歸農, 以省其費。 一, 鬼神之道, 福善禍淫。 人不修德, 瀆祭何益! 古者, 天</p>
--	---	---

	<p>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주신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성품과 난리를 평정하고 반정(反正)하는 재주로써 경사(經史)를 널리 보셨으니, 환관(宦官)을 제어하는 데 반드시 그 방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법을 만들지 않으면 뒷날의 폐단이 뜻하지 않는 기회에 발생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그들 가운데 근실하고 조심성 있고 유약(幼弱)한 사람을 뽑아서 2번(番)으로 나누어 매 1번마다 각각 15인씩으로 그 액수(額數)를 정하여, 궁문을 지키고 소제하는 역사(役事)를 맡기고, 그 나머지 경험 많고 간사한 사람은 일체 모두 내치시어 근시(近侍)하지 못하게 하소서.</p> <p>1. 군자(君子)를 가까이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 하는 것은 군주의 지극한 덕입니다. 군자가 측근에 있으면 인의(仁義)의 설(說)과 도덕의 의론을 항상 귀에 접하게 되어 훈도(薰陶)되고 점차 감화되어 날로 고명(高明)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마는, 소인이 측근에 있으면 비루한 말과 달콤한 말의 청탁이 때때로 시행될 수 있고, 아첨하는 간사한 계획이 때때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날로 총명을 가리워 어두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고금의 치란(治亂) 흥망(興亡)의 기틀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여러 현인을 접견하여 정치하는 방법을 강론하시고, 여러 소인과 부녀자들을 날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p> <p>1. 궁중에 역사(役事)를 맡은 사람은 예전에는 정원(定員)이 있었는데, 고려의 말기에는 그 수효가 제한이 없어서 누료(廩料)를 소비함이 너무 많았으며, 폐단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니다. 원컨대, 각전(各殿)의 역사를 맡은 사람을 적당히 헤아려 수효를 정한 외에는 모두 농사에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그 비용을 덜게 하소서.</p> <p>1. 귀신의 도(道)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게 되니, 사람이 덕을 닦지 않고 번거롭게 자주 제사지내는 것이 무엇이 이익이겠습니까? 옛날에 천자는 천지(天地)에 제사지냈고, 제후(諸侯)는 산천(山川)</p>	<p>子祭天地，諸侯祭山川，大夫祭五祀，士庶人祭祖禰。各以所當祭者而祭之，豈有自不爲善，專事鬼神，以獲其福之理乎？願自今除祀典所載理合祭者外，其他淫祀，一切禁斷，以爲常典，違者痛理。一，內帑出納。古者凡有內用，上命內謁，傳於承旨，承旨更啓上前，署下王牌，是其制也。前朝之季，內謁直下王牌，而承旨不知，豈無詐冒之弊哉？願自今凡內用，承旨親稟，下都評議使司，以革前日之弊。一，國之所重，在於戎事。握兵發兵，各有其職，古之制也。近者各道節制使直牒州府郡縣，其騎船軍、陸守軍、與夫雜泛供役者，盡令抄出赴京。儻有倭寇卒至，誰能禦之？願令諸道節制使，呈報都評議使司，取旨行移，方許徵發，其直牒抄出，一皆禁斷，違者，令本府糾理。</p>
--	---	---

에 제사지냈고, 대부(大夫)는 오사(五祀)에 제사지냈고, 사·서인(士庶人)은 조부와 아버지에게 제사지냈는데, 각기 당연히 제사지낼 만한 것에 제사지낸 것이니, 어찌 스스로 착한 일을 하지 않고서 오로지 귀신만 섬겨 그 복을 얻으려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제사의 예전(禮典)에 기재되어 도리상 마땅히 제사지내야 될 것을 제외하고서 그 외의 부정한 제사[淫祀]는 일절 금단(禁斷)시켜, 이로써 일정한 법으로 삼고 이를 어긴 사람은 엄격히 다스리게 하소서.

1. 내탕고(內帑庫) 268) 의 출납은, 옛날에는 무릇 궁내(宮內)의 용도(用度)가 있으면 임금이 내알자(內謁者) 269) 에게 명하여 승지(承旨)에게 전하고, 승지가 다시 임금의 앞에서 아뢰고서 왕패(王牌) 270) 를 서명(署名)받아 내려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제도입니다. 고려의 말기에는 내알자(內謁者)가 왕패(王牌)를 직접 내렸으나 승지는 알지 못하게 되니, 어찌 속이는 폐단이 없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무릇 궁내의 용도는 승지가 친히 품의(稟議)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게 내려 전일의 폐단을 고치게 하소서.

1. 나라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은 군사(軍事)에 있으므로, 군사를 장악하고 군사를 출동함에는 각기 그 직책이 있는 것이니, 옛날의 제도입니다. 요사이의 각도의 절제사(節制使)들이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바로 통첩하여 그 기선군(騎船軍) 271) 과 육수군(陸守軍) 272) 과 여러가지 역사를 하는 사람을 모두 뽑아 내어 서울로 가게 하는데, 혹시 왜구(倭寇)가 갑자기 이르게 되면 누가 능히 이를 방어하겠습니까? 원컨대, 여러 도(道)의 절제사들로 하여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정보(呈報)하게 하여 임금의 윤허(允許)를 받아서 공문을 보내어 그제야 군사를 징발하게 하고, 그 바로 통첩하여 사람을 뽑아 내는 것은 일절 모두 금단(禁斷)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본부(本府) 273) 로 하여금 살피서 다스리게 하소서.”

<p>태조 2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9월 24일(임인) 1번째기사 학교·수령·의창·향리 등 22개 조목에 대한 도평의사사의 상언</p>	<p>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배극렴·조준 등이 22조목을 상언(上言)하였다. “1.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이고, 농상(農桑)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人才)를 양성하고, 농상을 권장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할 것이며, 1. 수령(守令)은 전야(田野)가 황폐되고 개간되는 것과, 호구(戶口)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것 등의 일로써 출척(黜陟)할 것이며, 1. 신구(新舊) 수령(守令)이 교대할 즈음에 일이 많이 해이(解弛)해지니, 지금부터는 서로 해유(解由)를 주고 받은 후에 임지(任地)를 떠나게 할 것이며, 1. 봉명 사인(奉命使人) 274) 과 군관(軍官)·민관(民官)은 관(官)에서 미곡을 급여하고 말을 주는 것이 양부(兩府)로부터 이하의 관원에까지 모두 정해진 수효가 있으니, 이로써 일정한 법으로 삼게 할 것이며, 1. 각도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행실을 닦아서 도덕을 겸비(兼備)하여 사범(師範)이 될 만한 사람과, 식견이 시무(時務)에 통달하고 재주가 경제(經濟) 275) 에 합하여 사공(事功)을 세울 만한 사람과, 문장에 익고 필찰(筆札)을 전공하여 문한(文翰)의 임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과, 형률과 산수(算數)에 정통하고 행정(行政)에 통달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길 만한 사람과, 모계(謀計)는 도략(韜略) 276) 에 깊고 용맹은 삼군(三軍)에 으뜸가서 장수가 될 만한 사람과, 활쏘기가 말타기에 익숙하고 봉술(棒術)과 석척(石擲)에 능하여 군무(軍務)를 담당할 만한 사람과, 천문·지리·복서(卜筮)·의약(醫藥) 등 혹은 한가지라도 기예(技藝)를 전공한 사람을 자세하게 방문하고 재촉하여 조정에 보내어서, 발탁 등용하는 데 대비하게 하고, 서인(庶人) 가운데 부모에게 효</p>	<p>壬寅/都評議使司裴克廉、趙浚等上言二十二條： 一，學校，風化之源；農桑，衣食之本，興學校以養人才，課農桑以厚民生。 一，守令，以田野荒墾、戶口增減等事黜陟。一，新舊守令交代之際，事多陵夷。自今交相授，受解由後離任。 一，奉使人及軍民官，廩給起馬，自兩府以下，皆有定數，以爲常法。一，各道經明行修，道德兼備，可爲師範者；識通時務，才合經濟，可建事功者；習於文章，工於筆札，可當文翰之任者；精於律算，達於吏治，可當臨民之職者；謀深韜略，勇冠三軍，可爲將帥者；習於射御，能於棒石，可當軍務者；天文地理卜筮醫藥，或攻一藝者，備細訪問，敦遣于朝，以備擢用。庶人孝悌力田者，免租一半，以勵風俗。一，民丁自十六歲至六十歲當役。十丁以上爲大戶，五丁以上爲中戶，四丁以下爲小戶。計丁籍民，如有徭役，大戶</p>

	<p>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농사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조세(租稅)의 반을 감면하여 주어 풍속을 권장할 것이며,</p> <p>1. 민정(民丁)은 16세로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 역(役)을 맡게 하는데, 10정(丁) 이상이면 대호(大戶)가 되고 5정 이상이면 중호(中戶)가 되고, 4정 이하이면 소호(小戶)가 되게 하여 정(丁)을 계산하여 백성을 등록시키고, 만약 요역(徭役)이 있으면, 대호(大戶)는 1명을 내고 중호는 둘을 합하여 1명을 내고 소호는 셋을 합하여 1명을 내어 그 역을 고르게 할 것이며, 만약 유망(流亡)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를 묻고 더욱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을 가하여 완취(完聚) 277) 하게 할 것이며,</p> <p>1. 의창(義倉)의 설치는 본래 곤궁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기 위한 것이니, 매양 농사철을 당하여 먼저 곤궁한 백성들에게 양식과 종자를 주는 때, 반드시 두량(斗量)으로 하고 추수 후에는 다만 본 수량만 바치게 하고, 그 출납하는 수량은 해마다 마지막 달에 삼사(三司)에 보고하게 하고, 그 수령(守令)으로서 두량(斗量)으로 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유(富裕)한 사람에게도 아울러 주는 자는 죄를 논단하게 할 것이며,</p> <p>1. 여러 주(州)의 향리(鄉吏) 가운데 과거에 오르거나 공을 세운 사람 외에, 본조(本朝)의 통정(通政) 278) 이하의 향리와 고려 왕조의 봉익(奉翼) 279) 이하의 향리는 모두 본역에 돌아가게 할 것이며,</p> <p>1. 수령은 때때로 민전(民田)을 답험(踏驗)하고 가을에 가서 손실(損實)을 자세히 갖추어 써서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적당히 헤아려 조세를 감면하게 할 것이며,</p> <p>1. 각관·역(館驛)마다 마필(馬匹)의 상·중·하 3등의 수효를 관(館)의 벽(壁)에 써서 붙여 두고, 봉명(奉命)을 받고 사신(使臣)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공역서(供驛署)의 마부(馬符)를 상고하여 험증(驗證)한 뒤에 체송(遞送) 280) 을 하게 할 것이나, 도관찰사와 도절제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봉명을 받고 사신으</p>	<p>出一名, 中戶并二出一名, 小戶并三出一名, 以均其役。 若有流亡者, 問其所以, 尤加憐恤, 務令完聚。 一, 義倉之設, 本爲賑恤窮乏。 每當農月, 先給窮民糧種, 必須斗量, 秋成只納本數。 其出納之數, 每年季月, 報三司。 其守令不行斗量, 并給富彊者, 論罪。 一, 諸州鄉吏登科立功外, 本朝通政以下、前朝奉翼以下, 並還本役。 一, 守令以時踏驗民田, 及秋開具損實, 報觀察使, 量宜減租。 一, 各館驛將馬匹, 上中下三等之數, 懸額館壁, 有奉使者, 考供驛署馬符驗遞送。 除都觀察使、都節制使外, 凡奉使者, 毋得擅行給馬。 一, 州府郡縣, 將罪囚情狀, 陳報都觀察使, 照律定罪; 死罪以上, 報都評議使司, 啓聞取旨以決。 一, 文宣王釋奠祭及諸州城隍之祀, 觀察使與守令, 豐潔奠物, 以時舉行。 自公卿至于下士, 皆立家廟, 以祭先代, 庶人祭於其寢。 其餘淫祀, 一皆禁斷。 一, 奉使人外, 借宿館驛者, 毋使廩給, 奉使人及守令, 毋得宴飲, 仍禁斷非時田獵。 一, 凡主喪者, 父母在殯, 朝夕臨祭, 毋得出外。 一,</p>
--	---	---

	<p>로 가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주지 못하게 할 것이며,</p> <p>1. 주·부·군·현에서는 죄수의 정상을 도관찰사에게 진술 보고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결정하고, 사형죄 이상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계문(啓聞)하여 명령을 받아 결정하게 할 것이며,</p> <p>1. 문선왕(文宣王) 281) 의 석전제(釋奠祭)와 여러 주(州)의 성황(城隍)의 제사는 관찰사와 수령이 제물을 풍성히 하고 깨끗하게 하여 때에 따라 거행하게 할 것이며, 공경(公卿)으로부터 하사(下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묘(家廟)를 세워서 선대(先代)를 제사하게 하고, 서인(庶人) 282) 은 그 정침(正寢) 283) 에서 제사지내게 하고, 그 나머지 부정한 제사[淫祀]는 일절 모두 금단(禁斷)할 것이며,</p> <p>1. 봉명 사인(奉命使人) 외에 관·역(館驛)을 빌려 유숙하는 사람에게는 관(官)에서 미곡을 주지 못하게 할 것이며, 봉명 사인과 수령이 연음(宴飲)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인하여 때 아닌 사냥을 금단(禁斷)하게 할 것이며,</p> <p>1. 무릇 상주(喪主)질하는 사람은 부모가 빈소(殯所)에 있을 때에는 조석으로 울며 제사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p> <p>1. 각도(各道)와 각주(各州)에서는 그 노정(路程)을 헤아려 원관(院館) 284) 을 짓거나 수리하여 나그네에게 편리하게 할 것이며,</p> <p>1. 재인(才人) 285) 과 화척(禾尺) 286) 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농업을 일삼지 않으므로 배고픔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여 상시 모여서 도적질하고 소와 말을 도살하게 되니, 그들이 있는 주군(州郡)에서는 그 사람들을 호적에 올려 토지에 안착(安着)시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죄주게 할 것이며,</p> <p>1. 외방(外方)의 부유하고 세력이 있는 집에서는 양민(良民)을 슬그머니 차지하여 자기의 사역꾼으로 삼으니, 청하옵건대, 찾아내어 억지로라도 등록시켜 부역에 이바지하게 할 것이며,</p>	<p>各道各州，量其程途，修營院館，以便行旅。 一，才人禾尺，彼此流移，不事農業，未免飢寒，常聚爲盜，宰殺牛馬。 所在州郡，籍其生口，使之土著爲農，違者罪之。 一，外方富彊之家，影占良民，爲己役使。 請刷出勒籍，以供賦役。 一，凡爲僧者，兩班子弟，五升布一百匹，庶人百五十匹，賤口二百匹。 所在官司以此計入，方許給牒出家，擅自出家者，痛理。 一，公私錢物，子母停息，已有定制，無識之輩，利中生利，甚違於理。 自今年月雖多，不過一本一利。 一，僧徒結黨中外大小官吏，或營寺社，或印佛書，至於需索官司，害及于民者。 自今一皆禁斷。 一，修嚴水陸戰具，以備不虞。 一，侍衛軍及騎船軍士，令上下輪番。</p>
--	--	--

	<p>1. 무릇 중이 되는 사람이 양반(兩班)의 자제이면 닷새 베[五升布] 1백 필을, 서인이면 1백 50필을, 천인이면 2백 필을 바치게 하여, 소재(所在)한 관사(官司)에서 이로써 관에 들어온 베의 숫자를 계산하여 그제야 도첩(度牒) 287)을 주어 출가(出家)하게 하고, 제 마음대로 출가하는 사람은 엄격히 다스리게 할 것이며,</p> <p>1. 공사(公私)의 전물(錢物) 가운데 자모전(子母錢) 288) 은 이식(利息)을 정지하게 하도록 이미 일정한 제도가 있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이자 중에다 이자를 붙이니 매우 도리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는 연월(年月)이 비록 많더라도 1전의 본전에 1전의 이자[一本一利]를 더 받지 못하게 할 것이며,</p> <p>1. 중들이 중앙과 지방의 대소 관리들과 결당(結黨)하여 혹은 사사(寺社) 289) 를 건축하기도 하고, 혹은 불서(佛書)를 인쇄하기도 하며, 심지어 관사(官司)에까지 물자를 청구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미치는 것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일절 모두 금단(禁斷)할 것이며,</p> <p>1. 바다와 육지에서 싸울 때는 쓰는 무기를 수리하고 점검하여 뜻밖의 변고에 대비(對備)하게 할 것이며,</p> <p>1. 시위군(侍衛軍)과 기선군(騎船軍)은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으로 나누어 윤번(輪番)으로 할 것입니다.”</p> <p>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태조 2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11월 1일(무인) 1번째기사 조회하고, 조반에게 잔 치를 베풀다</p>	<p>임금이 조회를 보고, 조반(趙胖)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p>	<p>戊寅朔/上視朝，賜趙胖宴。</p>

<p>태조 2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11월 9일(병술) 5번째기사 왜구에게 피랍되었다 가 도망하여 합포에 도착한 중국인을 경사 로 보내다</p>	<p>경상도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최유련(崔有璉)이 중국 온주부(溫州府) 낙청현(樂淸縣) 사람 이순(李順) 등 3인을 서울로 보내 왔다. 이순 등이 왜구에게 사로 잡혀서 바다 가운데 섬에 이르렀으나, 작은 배를 훔쳐타고 빠져나와서 합포(合浦)에 이르렀으므로, 유련(有璉)이 해송(解送)한 것이었다. 임금이 의복과 양식을 주고 이을수에게 맡겨 중국 남경으로 보냈다.</p>	<p>慶尙道兵馬都節制使崔有璉，解送溫州府樂淸縣人李順等三人。順等被倭寇劫掠，至海中島，竊小船得脫，至合浦，有璉解送。上給衣糧，就付李乙修，管送京師。</p>
<p>태조 2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11월 15일(임 진) 2번째기사 왕실의 비용으로 관음 굴에서 중들을 공양하 다</p>	<p>내탕고(內帑庫)를 내어 관음굴(觀音窟)에서 중들을 공양(供養)하였다.</p>	<p>出內帑，飯僧于觀音窟。</p>
<p>태조 2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11월 26일(계 묘) 1번째기사</p>	<p>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성산백(星山伯) 배극렴이 졸(卒)하니, 임금이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7일 동안 소선(素膳) 350) 을 하고, 맡은 관원에게 명하여 예장(禮葬)하게 하였다. 극렴(克廉)의 본관(本貫)은 경산(京山) 351) 이니, 위위 소윤(衛尉少尹) 배현보(裒玄甫)의 아들이었다. 성품은 청</p>	<p>癸卯/門下左侍中星山伯 裒克廉卒。上輟朝三日，素膳七日，命有司禮葬。克廉，京山府人，衛尉少尹玄甫之子。性廉謹，持身勤儉。牧晉、</p>

<p>문하 좌시중 성산백 배극렴의 졸기</p>	<p>렴하고 근신하며, 몸가짐은 근실하고 검소하였다. 진주(晉州)·상주(尙州) 두 주(州)의 목사(牧使)가 되고, 또 계림 윤(鷄林尹) 352) ·화령 윤(和寧尹)이 되어 모두 어진 정치를 하였다. 나가서 합포(合浦) 원수(元帥)가 되어 성을 쌓고 해자(垓字)를 파서 유망(流亡)한 사람들을 안집(安集)하였었다. 수비(守備)하는 것은 잘했으나 다만 싸워서 이기거나 공격하여 취하는 것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다. 고려 왕조의 말기에 이르러 임금에게 마음을 돌려 조준 등과 더불어 서로 모의하여 임금을 추대하고는, 마침내 수상(首相)이 되었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어서 임금에게 의견을 아뢰는 것이 없었으며, 세자를 세우는 의논에 이르러서도 이에 임금의 뜻에 아첨하여 어린 서자를 세울 것을 청하고는 스스로 공(功)으로 삼으니, 식자(識者)들이 이를 탄식하였다. 졸(卒)하니 나이 68세였다. 시호는 정절(貞節)이다. 아들이 없었다.</p>	<p>尙二州，又尹雞林、和寧，皆有惠政；出帥合浦，築城開隍，安集流亡。善於守禦，但戰勝攻取，非其所長。及前朝衰季，歸心於上，與趙浚等，協謀推戴，遂爲首相。然不學無術，無所建白，至於建儲之議，乃阿上意，請立幼孳，自以爲功，識者歎之。卒年六十八，謚貞節。無子。</p>
<p>태조 2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윤12월 14일 (경인) 1번째기사 올량합이 방물을 바치다</p>	<p>올량합이 와서 방물(方物)을 바치었다.</p>	<p>庚寅/(兀郎哈) [兀良哈] 來獻方物。</p>

<p>태조 3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1월 1일(정미) 1번째기사 백관의 조하를 받고,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새해를 축하하는 의식을 가지다. 처음으로 명나라에서 제정한 관복을 입다</p>	<p>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제의 정조(正朝)를 하례하고 비로소 조정(朝廷) 387) 제도의 관복(冠服)을 입었다. 예(禮)를 마치고 난 뒤에 임금이 전(殿)에 앉아서 중외(中外) 관원의 조하(朝賀)를 받았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전문(箋文)을 올리고, 각도의 도절제사(都節制使)·안렴사(按廉使)·목사(牧使)·도호부사(都護府使)들이 모두 전문(箋文)을 올리고 방물(方物)을 바쳤다. 양광도 안렴사(楊廣道按廉使) 조박(趙璞)은 역대의 제왕이 학문을 하고 정치를 하는 강목(綱目)의 그림[歷代帝王爲學爲治綱目之圖]을 바치고, 교주 강릉도 안렴사(交州江陵道按廉使) 정탁(鄭擢)은 사상보(師尙父)388) 가 단서(丹書) 389) 를 받들어 무왕(武王)을 경계한 그림[師尙父奉丹書戒武王之圖]과 《대학연의(大學衍義)》 2부를 바쳤으며, 알도리(斡都里)는 산 범[生虎]을 바쳤으므로, 이내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내렸다. 좌시중(左侍中) 조준(趙浚)이 술잔을 받들어 헌수(獻壽)하였다. “정월 초하루 새해의 아침에 신 등은 큰 경사를 감내하지 못하여 삼가 천세수(千歲壽)를 올립니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천세(千歲)를 세 번 불렀다. 임금이 술잔을 다 비우고 여러 신하들에게 앉기를 허락하니, 여러 신하들이 두 번 절하고 자리에 나아가 앉아서 한껏 즐기고 파(罷)하였다. 해가 지매 군기감(軍器監)으로 하여금 불놀이[火戲]를 설치하게 하고 이를 구경하였다.</p>	<p>丁未朔/上率群臣賀帝正，始服朝制冠服。禮畢，上坐殿受中外朝賀。都評議使司上箋，各道都節制、按廉、牧、都護府使，皆上箋獻方物。楊廣道按廉使趙璞獻《歷代帝王爲學爲治綱目之圖》，交州、江陵道按廉使鄭擢獻《師尙父奉丹書戒武王之圖》及《大學衍義》二部，斡都里獻生虎。仍賜宴群臣，左侍中趙浚奉觴稱壽曰：“元正首祚，臣等不勝大慶，謹上千歲壽。”群臣皆三呼千歲。上盡觴，許群臣坐，群臣再拜就坐，極歡而罷。暮，使軍器監設火戲，觀之。</p>
--	---	--

<p>태조 3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4월 12일(병술) 1번째기사 강음현 들판에서 유숙 하고, 공상을 빙자하여 물품을 갈취한 감무 조을상을 곤장치다</p>	<p>강음현(江陰縣)의 들에서 유숙하였다. 감무(監務) 조을상(曹乙祥)이 임금에게 공상(供上)한다고 빙자하고서 백성에게 징수한 것이 있으므로, 명하여 곤장을 치게 하였다.</p>	<p>丙戌/次于江陰縣郊。 監務曹乙祥憑上供，有斂於民，命杖之。</p>
<p>태조 3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4월 16일(경인) 2번째기사 진왕부의 사람이 소 무역을 위해 의주에 도착하니 회답할 자문 을 짓게 하다</p>	<p>서북면 도순문사(都巡問使) 조온(趙溫)이 보고하였다. “진왕부(秦王府)에서 사람을 보내어 소[牛]를 무역하기 위하여 의주(義州)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승지 이직(李稷)에게 명하여 도평의사사에 의논해서 진왕부에 회답할 자문(咨文)을 지어 오게 하였다.</p>	<p>西北面都巡問使趙溫報：“秦王府差人，爲易換牛隻，到義州。” 命都承旨李稷，議於都評議使司，修撰秦府回答咨文以來。</p>

<p>태조 3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4월 17일(신묘) 2번째기사 진왕부 사람에게 소 무역의 어려움을 말하 고 내은 등을 하사하 다</p>	<p>전 밀직(密直) 권균(權鈞)에게 명하여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서 진왕부(秦王 府)의 사람을 보고 소를 무역하기가 어려움을 말하게 하고, 이내 내은(內醞) 409) 과 저포(苧布)·마포(麻布)를 보내주었다.</p>	<p>命前密直權鈞，齎咨往見秦府人，辭以 易換之難，仍送遺內醞、苧麻布。</p>
<p>태조 3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4월 27일(신축) 1번째기사 의창의 곡식을 내어 기민을 진휼하다</p>	<p>의창(義倉)의 곡식을 내어 가난한 백성을 진휼(賑恤)하였다.</p>	<p>辛丑/發義倉粟，賑窮民。</p>

<p>태조 3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5월 23일(정묘) 1번째기사 흠차 내사 황영기 등 이 조선의 국왕을 위 협하는 조서를 가지고 오다</p>	<p>흠차 내사(欽差內史) 황영기(黃永奇)·최연(崔淵) 등이 황제의 수조(手詔)를 받 들고 오니,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선의문(宣義門) 밖에서 맞이하여 앞 을 인도해서 수창궁(壽昌宮)에 이르러 조서(詔書)를 듣고 예(禮)를 거행하였 다.</p> <p>“1. 지난번에 절동(浙東)·절서(浙西)의 백성 중에서 불량한 무리들이 그대를 위하여 소식을 보고하기에, 이미 수십 집을 죽였소. 그 고려의 산천 귀신이 어찌 그대가 화단(禍端)을 만들어 재앙이 백성에까지 미치게 될 줄을 알지 못 하겠는가? 이것이 혼단(釁端)을 일으킨 것의 한 가지요,</p> <p>1. 사람을 보내어 요동(遼東)에 이르러 포백(布帛)과 금은(金銀)의 종류를 가 지고 거짓으로 행례(行禮)함으로써 사유(事由)로 삼았으나, 마음은 우리 변장 (邊將)을 꺾는 데 있었으니, 이것이 혼단(釁端)을 일으킨 것의 두 가지요,</p> <p>1. 요사이 몰래 사람을 보내어 여진(女眞)을 꺾여 가권(家眷) 5백여 명을 거 느리고 압록강을 몰래 건넜으니,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었소. 이것이 혼단 (釁端)을 일으킨 것의 세 가지요,</p> <p>1. 입으로는 신하라 일컫고 들어와 조공(朝貢)한다 하면서도, 매양 말을 가져 올 때마다 말 기르는 사람[參馬]으로 하여금 길들여 보게 하니, 말은 모두 느 리고, 또한 모두 타서 피로한 것들이니, 업신여김의 한 가지요,</p> <p>1. 국호(國號)를 고치는 일절(一節)은 사람을 보내어 조지(詔旨)를 청하므로, 그대의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했는데, 조선(朝鮮)을 계승하여 그대가 후손이 되게 하였소. 사자(使者)가 이미 돌아간 후에는 오래도록 소식이 없으며, 도 리어 혼단(釁端)을 만드니 업신여김의 두 가지이다.</p> <p>아아! 원(元)나라 말기로부터 중원(中原) 412) 이 난리가 나서, 백성들이 병화 (兵禍)를 입게 되었소. 영웅이 여러 곳에 응거하여 전전(轉戰)하면서 살상(殺</p>	<p>丁卯/欽差內史黃永奇、崔淵等，奉帝 手詔來，上率百官，迎于宣義門外，前 導至壽昌宮，聽詔行禮。詔曰： 一，曩者說兩浙民中不良者，爲爾報消 息，已戮數十家矣。其高麗山川鬼神， 豈不知爾造禍，殃及於民！此生釁一 也。一，遣人至遼，將布帛金銀之類， 假以行禮爲由，意在誘我邊將，此生釁 二也。一，近者，暗遣人說誘女眞， 帶家小五百餘名，潛渡鴨江，罪莫大 焉。此生釁三也。一，口稱稱臣入 貢，每以馬至，令參馬調之，馬皆驚下， 亦皆乘乏勞倦者，侮之一也。一，更 國號一節，遣人請旨，許爾自爲，或祖 朝鮮，爾爲苗裔。使者既還，杳無音 信，反作釁端，侮之二也。嗚呼！自 元季中原擾攘，民被兵殃，英雄遍處， 轉戰殺傷，幾將二紀，朕已平之矣。 然中國既定，四夷生邊釁及不庭者，命 將討之，又二紀于茲，蠻夷率服，海外 諸島來庭。邇來，國中或生亂臣賊子， 今年春，擒捕族誅，姦黨已絕。朕將 化鋒刃爲農器，撫戰士以忘昔勞，厚養</p>
--	---	--

	<p>傷)한 지가 거의 24년이 되었는데, 짐(朕)이 이미 이를 평정하였소. 그러나 중국이 이미 평정되매, 사방의 오랑캐가 변흔(邊釁)을 일으키고 조공(朝貢)하지 않는 것은 장수에게 명하여 정토(征討)하게 한 지가 또한 2년이나 되었소. 만이(蠻夷)가 복종[率服]하고 해외(海外)의 여러 섬나라도 와서 조공(朝貢)하는데, 근래에 나라 안에서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발생했으므로, 금년 봄에 사로잡아 멸족(滅族)하여 간악한 무리들이 이미 근절되었소. 짐(朕)은 장차 칼날을 변화시켜 농구(農具)를 만들고, 전사(戰士)들을 어루만져 옛날의 노고를 잊게 하며, 칼날에 부상한 사람을 후하게 부양하여 제 집에서 평생을 마치게끔 하고, 여러 장수들에게 가벼운 갖옷을 입고 살진 말을 타도록 하여 사시(四時)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태평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어찌 그대의 고려에서 속히 병화(兵禍)를 일으키는가? 짐은 또 장차 상제(上帝)에게 밝게 고(告)하고, 장수에게 명해서 동방을 정벌하여 업신여기고 혼단을 일으킨 두 가지 일을 설욕(雪辱)할 것이오. 만약 군사가 삼한(三韓)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차 여진의 사람들을 꺾어 전가(全家)를 떠나오게 할 것이니, 이미 간 여진의 모든 사람을 돌려보낸다면 짐의 군사는 국경(國境)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오.” 임금이 예(禮)를 마치고 난 후에 내사(內史)에게 전상(殿上)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두 사람은 모두 우리 나라 사람이다.</p>	<p>金傷者，欲終于家，致諸將衣輕裘乘肥馬，翫四時之景，以享太平。乃何爾高麗，速構兵殃？朕又將昭告上帝，命將東討，以雪侮釁之兩端。若不必師至三韓，將誘女眞之人，全家發來，并已往女眞大小送回，朕師方不入境。上禮畢，宴內史于殿上。內史二人，皆國人也。</p>
<p>태조 3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6월 16일(경인) 1번째기사 섬라곡국에서 소목·속향·토인을 바치다</p>	<p>섬라곡국(暹羅斛國) 422) 에서 그 신하 내(乃) 【내(乃)는 그 나라 관직 이름이다.】 장사도(張思道) 등 20인을 보내어 소목(蘇木) 1천 근, 속향(束香) 1천 근과 토인(土人) 2명을 바치니, 임금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대궐 문을 지키게 하였다.</p>	<p>庚寅/暹羅斛國遣其臣乃【乃，其國官名也。】張思道等二十人，來獻蘇木一千斤、束香一千斤及土人二名，上命二人守闕門。</p>

<p>태조 4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7월 4일(정미) 1번째기사 급제자에게 은영연을 베풀다</p>	<p>새로 급제(及第)한 사람에게 은영연(恩榮宴) 429) 을 내리었다.</p>	<p>丁未/賜新及第恩榮宴。</p>
<p>태조 4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7월 23일(병인) 1번째기사 경비의 기일이므로 조 회를 정지하고, 광명사 에서 중 5백명을 공양 하다</p>	<p>황조비(皇祖妣) 경비(敬妃)의 기신(忌辰)이므로 조회를 정지하고, 중 5백 명을 광명사(廣明寺)에서 공양(供養)하였다.</p>	<p>丙寅/以皇祖妣敬妃(忌晨) [忌辰] , 停朝, 飯僧五百于廣明寺。</p>

<p>태조 4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8월 6일(기묘) 2번째기사 남산에 올라 성터를 보고, 예조 전서 이민 도와 성의 축조 상황 에 대해 말하다</p>	<p>임금이 미행(微行)하여 남산(男山)에 올라 성터[城基]를 시찰하고 화원(花園)에 들어가니, 예조 전서(禮曹典書) 이민도(李敏道)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은 성 쌓는 일이 쉽게 마칠 수 없음을 염려합니다.” “무슨 이유인가?” “원리(員吏)들은 역사를 감독하는 데 게을리 하고, 역부(役夫)들은 일을 하는 데 게으르니, 한갓 민력(民力)만 허비할 뿐이고 역사(役事)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옵기를, 얼음이 얼 절후가 장차 이르게 될 것이니 일은 마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정직하다고 여겨 민도(敏道)에게 의복 한 벌과 쌀·콩 30석을 내려 주었다.</p>	<p>上微行，登男山，觀城基，入花園。禮曹典書李敏道言於上曰：“臣恐築城未易畢也。”上曰：“何故？”對曰：“員吏怠於董役，役夫惰於趨事，徒費民力，而役事無效。臣以爲堅冰將至，功未訖也。”上以爲直，賜敏道衣一領、米豆三十石。</p>
<p>태조 4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10월 11일(계 미) 1번째기사 임금의 탄신일이므로 이죄 이하의 죄인을 사면시키고, 중 1,500 명을 공양하다</p>	<p>임금의 탄생일이므로 문하부(門下府)와 각도의 관찰사·절제사들이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하였다. 이죄(二罪) 이하의 죄수를 사면(赦免)하고, 중[僧] 1천 5백 명을 광명사(廣明寺)에서 공양(供養)하였다.</p>	<p>癸未/上誕日，門下府及各道觀察、節制使，上箋賀。有二罪以下囚，飯僧一千五百於廣明寺。</p>

<p>태조 4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11월 19일(경 신) 1번째기사 신도의 건설에 내원당 감주 조생 등의 중들 이 자원하다</p>	<p>내원당 감주(內願堂監主) 조생(祖生)이 임금을 진현(進見)하였다. 이보다 먼저 임금이 새 도읍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민력(民力)을 쓰게 됨을 염려하여 말하기를, “중들 중에 노는 사람이 많으니 마땅히 모아서 역사(役事)시켜야 되겠다.” 하니, 각 종파(宗派)의 중이 이 말을 듣고는 중들을 권유 모집하여 역사(役事)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었다. 조생(祖生)이 인솔하여 나아오니 임금이 기뻐하여 조생에게 음식물을 주고, 각 종파(宗派)의 중에게는 명주와 면포(綿布)를 내려 주었다.</p>	<p>庚申/內願堂監主祖生進見。先是，上欲營新都，慮用民力曰：“僧徒游手者衆，宜集而役之。”各宗僧聞之，有欲勸募僧徒赴役者數十輩，祖生引進，上悅，飯祖生，賜各宗僧絹及絁布。</p>
<p>태조 4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11월 28일(기 사) 1번째기사 좌복야 김주에게 의복 과 술을 하사하다</p>	<p>좌복야(左僕射) 김주(金湊)에게 의복과 술을 내려 주었다.</p>	<p>己巳/賜左僕射金湊衣酒。</p>
<p>태조 4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11월 28일(기 사) 3번째기사 선군, 전조의 징수, 호 구 등에 대한 도당의 구폐 사의(救弊事宜)</p>	<p>도평의사사에서 폐해를 구제하는 사의(事宜)로써 조목별로 진술하여 말씀을 올렸다. “1. 근래에 왜적(倭賊)의 침구가 조금 쉬게 된 것은 실로 병선(兵船)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선군(船軍)이 혹은 도망 중에 있거나 자신이 사고(事故)가 난 사람은 만호(萬戶)·천호(千戶)가 수령(守令)에게 공문을 보내어 즉시 그 수효를 충당하게 하고, 도관찰사(都觀察使)와 도절제사(都節制使)는 정한 때가 없이 수시(隨時)로 점고(點考)하여, 수령(守令)이 만약 선군(船軍) 세우는 것을 빠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1명에 태(笞) 10대를 집행하고, 매 1명마다 1등을 가하여 죄를 장(杖) 90대까지 이르게 하되 환임(還任)시키고, 10명 이상이면 장(杖) 1백 대를 집행하고 관직을 파면하게 할 것이며,</p>	<p>都評議使司以救弊事宜，條陳上言：其一曰近來倭寇稍息，實賴兵船之力。船軍或有在逃身故者，萬戶、千戶移文守令，即充其額。都觀察使、都節制使無時點考，守令如有闕立船軍者，一名笞一十，每一名加一等，罪止杖九十，還任，十名以上，杖一百，罷職。二曰各道侍衛軍官於番上往來之際，擅入州郡，騷擾人民，踏損禾穀，民甚苦之。今後悉令屯宿草野，毋入州郡，</p>

	<p>2. 각도의 시위 군관(侍衛軍官)이 상번(上番)차 왕래할 즈음에 주군(州郡)에 함부로 들어가서 인민을 소란하게 하고 벼곡을 밟아 손상시키니,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지금부터는 모두 그들로 하여금 들판[草野]에 모여서 자[屯宿]게 하고는 주군(州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자신과 패두(牌頭)를 율(律)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하게 할 것이며,</p> <p>3. 궁사(宮司)·창고(倉庫)의 노속(奴屬)이 전조(田租)를 징수하는 일로 인하여 여러 주(州)에 나누어가서, 사람과 말을 많이 거느리고 온갖 방법으로 불법 징수하게 되니, 지금부터는 노(奴) 1명과 말 1필로써 정수(定數)로 삼고, 전조(田租) 외에 불법 징수하는 것은 엄하게 금단(禁斷)할 것이며,</p> <p>4. 백성으로서 향산(恒産)이 없는 사람은 저곳과 이곳에서 서로 옮겨 다니게 되어 호구(戶口)가 날로 감소하게 되니, 호구(戶口)가 호적(戶籍)에 등록된 후로부터는 만약 유이(流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家長)은 장(杖) 1백 대를 집행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가장(家長)과 같게 주고, 이정(里正)이 마을 안에서 옮겨 가고 옮겨 오는 사람이 있는데도 즉시 관청에 알리지 않는 사람은 장(杖) 70대를 집행하고, 수령(守令)이 받아들여 본향(本鄉)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사람과 옮겨 갔는데도 추문(推問)하지 않는 사람은 각기 장(杖) 60대를 집행하되 환임(還任)시킬 것이며,</p> <p>5. 금년에 여러 도(道)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연사(年事)가 흉년이오니, 만약 일찍이 도모하지 않는다면 기근(飢饉)이 거듭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또 무지한 백성들이 훗날의 걱정을 돌보지 않고서 신(神)에게 제사하고, 향도계(香徒契) 476) 등의 일로써 소비하는 것이 적지 않으며, 주군(州郡)의 수령들도 또한 빈객(賓客)을 전송하고 영접하는 일로 인하여 소비하는 것이 또한 많게 되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공상(供上)과 제초(祭醮)와 상국 사신(上國使臣)을 연향(宴享)하는 이외에는 술을 금하게 하소서.”</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違者，身及牌頭，依律論罪。 三曰宮司倉庫之奴，因收田租，分往諸州，多率人馬，橫斂多端。 今後奴一名馬一匹，以爲定數，田租之外橫斂，痛行禁斷。 四曰民無恒産者，彼此相移，戶口日減。 自戶口成籍之後，如有流移者，家長杖一百；許接者，罪同；里正於里內有移去移來，不卽告官者，杖七十；守令許接而不還本者，移去而不推核者，各杖六十，還任。 五曰今歲諸道，因旱年荒。 如不早圖，飢饉荐臻。 且無知之民，不顧後患，以祀神、香徒契內等事，糜費不小，州郡守令亦因賓客送迎，糜費亦多。 願自今冬，供上及祭醮、上國使臣宴享外，禁上從之。</p>
--	--	--

<p>태조 4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12월 5일(병자) 1번째기사 금주령을 해제토록 명하다</p>	<p>헌사(憲司)에 명하였다. “지금 매우 춥고 또한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니, 금주(禁酒)의 영을 해제하게 하라.”</p>	<p>丙子/命憲司: “時方大寒, 且使臣入京, 其除禁酒之令。”</p>
<p>태조 4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12월 9일(경진) 2번째기사 내사 김인보 등의 부모에게 쌀·콩을 하사하다</p>	<p>김인보(金仁甫) 등의 부모에게 쌀·콩 1백 석을 내려 주었다.</p>	<p>賜金仁甫等父母米豆一百石。</p>
<p>태조 4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12월 13일(갑신) 1번째기사 진안군 이방우의 졸기</p>	<p>진안군(鎭安君) 이방우(李芳雨)는 임금의 맏아들인데,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많이 마시는 것으로써 일을 삼더니, 소주(燒酒)를 마시고 병이 나서 졸(卒)하였다.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경효(敬孝)란 시호를 내렸다. 아들은 이복근(李福根)이다.</p>	<p>甲申/鎭安君芳雨, 上之長子也, 性嗜酒, 日以痛飲爲事, 飲燒酒病作而卒。輟朝三日, 諡敬孝。子福根。</p>
<p>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1월 7일(정미) 2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p>	<p>헌사(憲司)에 명하여 다시 금주(禁酒)의 영을 시행하게 하였다.</p>	<p>命憲司, 復行禁酒之令。</p>
<p>태조 5권, 3년(1394)</p>	<p>헌사(憲司)에 전지(傳旨)하였다.</p>	<p>辛亥/傳旨憲司曰: “凡欲祭祀者, 許令</p>

<p>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1월 11일(신해) 1번째기사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는 돈을 받고 술을 주 도록 사운서에 명하다</p>	<p>“무릇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사람은 사운서(司醞署)로 하여금 술값을 수납하 고 술을 주게 하라.”</p>	<p>司醞署納價給酒。”</p>
<p>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1월 13일(계축)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금주를 과 도하게 단속하니 완화 하도록 명하다</p>	<p>헌사(憲司)에서 금주(禁酒)하기를 지나치게 엄하게 하니, 임금이 장무(掌務)인 잡단(雜端) 김구덕(金九德)을 불러 명령하였다. “무릇 사람으로서 병이 있는 자는 혹 술을 약으로 마시게 되는데, 개괄(概括) 하여 범령(犯令)으로써 죄를 가하는 일이 옳겠는가? 대저 금주(禁酒)는 잔치 를 베풀어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지 못하게 할 뿐인 것이다.”</p>	<p>癸丑/憲司禁酒過嚴。 上召掌務雜端 金九德， 教曰：“凡人有疾者， 或以酒 飲藥， 概以犯令加罪可乎？ 大抵禁酒， 毋得宴飲沈醉而已。”</p>
<p>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13일(계미) 1번째기사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안처선이 왜적 12명을 죽이니 공운 등을 하 사하다</p>	<p>경상도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안처선(安處善)이 왜적(倭賊) 12명을 목 베고, 노획한 병기(兵器)까지 모두 바치니, 임금이 명하여 공운(宮醞) 492) 과 무늬 있는 비단[綺]과 명주[絹]를 내려 주었다.</p>	<p>癸未/慶尙道水軍僉節制使安處善斬倭 十二級， 并所獲兵器以獻， 上命賜宮醞 綺絹。</p>
<p>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20일(경인) 1번째기사 왕사 자초를 내전에서</p>	<p>왕사(王師) 자초(自超)를 내전(內殿)에서 공양(供養)하였다.</p>	<p>庚寅/飯王師自超於內殿。</p>

<p>공양하다</p> <p>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20일(경인) 2번째기사 왜적 13명을 죽인 경 상도 수군 만호 차준 에게 물품을 하사하다</p>	<p>경상도 수군 만호(水軍萬戶) 차준(車俊)이 왜적(倭賊)의 배 1척을 잡아서 머 리 13급(級)을 베고 노획한 병기까지 합하여 바치니, 명하여 궁온(宮醞)과 무 늬 있는 비단과 명주를 내려 주었다.</p>	<p>慶尙道水軍萬戶車俊捕倭一船，斬首十 三級，并所獲兵器以獻。命賜宮醞綺 絹。</p>
<p>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20일(경인) 3번째기사 권중화 등에게 술을 하사하다</p>	<p>사자(使者)를 보내어 권중화(權仲和) 등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p>	<p>遣使賜酒于權仲和等。</p>
<p>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2월 24일(갑오) 1번째기사 햇무리가 지다. 의비의 기일이므로 조회와 시 장을 정지하다</p>	<p>햇무리하였다. 의비(懿妃)의 기신(忌辰)인 이유로써 임금이 감선(減膳)하고 조 회와 시장(市場)을 정지하게 하였다.</p>	<p>甲午/日暈。以懿妃(忌晨) [忌辰]， 減膳停朝市。</p>
<p>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3월 9일(무신) 2번째기사 왜적을 격퇴시킨 창평</p>	<p>전라도 창평 현령(昌平縣令) 신원절(愼原節)이 군관(軍官)을 거느리고 왜적(倭 賊) 7명을 목베고, 1명을 사로잡고, 병기(兵器)와 의복을 거두어 바쳤으며, 경 상도 수군 만호(水軍萬戶) 이지대(李之帶)는 왜적의 배 1척을 잡으니, 판교서 감사(判校書監事) 이문화(李文和)에게 명하여 궁온(宮醞)과 무늬 있는 비단과 명주를 가지고 가서 지대와 원절에게 내려 주게 하였다.</p>	<p>全羅道昌平縣令愼原節率軍官，斬倭七 級，擒一名，收兵器衣服以獻：慶尙道 水軍萬戶李之帶獲倭一船。命判校書 監事李文和，齎宮醞綺絹，往賜之帶、 原節。</p>

<p>현령 신원절과 수군 만호 이지대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p>		
<p>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3월 11일(경술) 1번째기사 수미포에서 《오군진도》대로 군사 훈련을 하다. 정도전과 사냥한 동물의 제향을 논의하다</p>	<p>임금이 임진(臨津)의 수미포(壽美浦)에 거둥하여 관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오군진도(五軍陣圖) 521) 를 연습하게 하고는, 또 말하였다. “내일에 내가 장차 친히 관람할 것이다.” 첨절제사(僉節制使) 진충귀(陳忠貴)와 대장군 이귀령(李貴齡)을 중군 사마(中軍司馬)로 삼고, 여러 절제사(節制使)를 불러 명령하였다. “지난번에 이미 각기 《진도(陣圖)》를 연습하도록 명하였으니, 내일에 만약 연습하지 아니한 사람과 영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장차 처벌할 것이다.” 정도전에게 묻기를, “옛날에는 봄사냥과 겨울사냥에서 종묘(宗廟)에 짐승을 바쳤는데, 지금 내가 봄사냥에서 짐승을 잡아 먼저 종묘(宗廟)에 바치려고 하니 어떻겠는가?” 대답하기를, “짐승을 바치는 예(禮)는 진실로 마땅하오나, 대향(大亨) 522) 이 이미 지났으니 망제(望祭)에 이를 올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p>	<p>庚戌/幸臨津壽美浦， 命判三司事鄭道傳， 講《五軍陣圖》， 且曰：“明日， 吾將親覽焉。” [○] 以僉節制使陳忠貴、大將軍李貴齡爲中軍司馬。 召諸節制使教曰：“前者， 旣命各習陣圖， 明日如有未習者、違令者， 予將罰之。” 又問鄭道傳曰：“古者蒐狩， 獻禽宗廟。 今予春蒐獲禽， 先獻宗廟何如?” 對曰：“獻禽之禮， 固宜。 大亨已過， 請於望祭薦之。” 上以爲然。</p>
<p>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4월 9일(무인) 2번째기사 왜선 3척을 섬멸한 전라 수군 첨절제사 김빈길에게 물품을 하사</p>	<p>전라도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김빈길(金贇吉)이 왜적(倭賊)의 배 3척을 잡으니, 임금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궁은(宮醞)과 무늬 있는 비단과 명주·은대(銀帶)·은사발[銀盃]를 내려 주었다.</p>	<p>全羅道水軍僉節制使金贇吉獲倭三艘， 遣使賜宮醞、綺絹、銀帶、銀盃。</p>

<p>하다</p> <p>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4월 11일(경진) 1번째기사 도당에서 농사를 장려하는 방안을 아뢰니 윤험하다</p>	<p>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p> <p>“농사는 식량의 근본이므로 군사(軍事)와 국가의 수용(需用)이 매여 있으니, 전지(田地)가 황무(荒蕪)하고 창고가 텅 비게 된다면, 비록 금성 탕지(金城湯池) 532) 의 튼튼함과 무기(武器)·갑주(甲冑)의 예리(銳利)함이 있더라도 또한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원하옵건대, 공상(供上)·제사(祭祀)·빈객(賓客)의 용도(用度)와 경외(京外)의 부득이한 경비 이외에는, 사전(祀典)에 기재되지 아니한 제사와 잡범(雜汎)한 비용은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게 하소서. 또 지난해에는 이르게 한재(旱災)가 있고 늦게 수재(水災)가 있어 벼곡이 크게 손실 되었으며, 게다가 성을 쌓는 역사로서 백성들이 가을같이 실기(失期)했으며, 금년 봄에도 또한 그 역사로 인하여 이리저리 유이(流移)하여 직업을 잃은 사람이 자못 많아졌습니다. 서울의 성은 비록 마땅히 쌓아야만 될 것이지만 농사에 방해가 되오니, 원하옵건대, 농한기(農閒期)에는 장정(壯丁)이 두 사람이면 장정 한 사람을 내보내고, 장정이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 아울러 한 사람을 내보내어 그 역사(役事)를 마치게 할 것이오며, 금후에는 농사철이 되면 일이 반역(叛逆)과 왜적(倭賊)의 방어, 도적을 잡는 데에 관계된 것 외에, 노비(奴婢)의 상쟁(相爭)이나 목은 부채(負債)의 추상(追償) 등, 잡람(雜濫)하고 긴요하지 아니한 사무는 일체 금단(禁斷)하고 오로지 농사에만 힘쓰게 하소서.</p> <p>가만히 듣건대, 주현(州縣)의 수령(守令)들이 마음을 써 농사를 권장하지 아니하여 공사(公私)가 모두 궁핍(窮乏)하게 되었다 하오니, 원하옵건대, 각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때때로 고찰(考察)하게 하여, 놀고 있는 사람은 농사에 돌아가게 하고, 식량이 없는 사람은 먼저 의창(義倉)의 곡식을 주고, 병이 나서 경종(耕種)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 사람[隣里]과 족인(族人)으로 하여금 서로 도와서 경종하게 하여 시기를 잃지 말게 하며, 그 전지(田地)를 많이 차지</p>	<p>庚辰/都評議使司啓曰：“農者食之本，軍國所需係焉。田疇荒蕪，倉廩虛竭，則雖有金湯之固、兵革之精，亦將何用！乞供上祭祀賓客之用及京外不得已經費外，祀典不載祭祀及雜汎費用，一皆禁斷。且前年早早晚水，禾穀大損，加以築城之役，民失秋耕。今春又因其役，流移失業者頗多，京城雖所當築，有妨於農。乞當農隙，雙丁則出一丁，單丁則并出一丁，以畢其役。今後農時則事干叛逆及防倭捕盜外，如奴婢相爭、宿債追償等，雜濫不繫之務，一皆禁斷，全務農事。竊聞州縣守令，不爲用心勸農，以致公私俱乏。乞令各道都觀察使以時考察，游手者歸農，無食者，先給義倉之粟，疾病不能耕種者，令隣里及族人相助耕種，勿令失時。其多占田地，互相陳荒，禁他人耕作者，十負答一十，每十負加一等，罪止杖八十，許於無田及田少者給耕，凡可以勸課之事，一皆舉行。守令殿最，以墾田多少，分爲三等，以憑黜陟。”上從之。</p>
---	--	--

	<p>하여 서로 목히면서 다른 사람이 경작(耕作)하는 것을 금하는 사람은 10부(負)에 태형(答刑) 10대를 집행하고, 매 10부(負)마다 1등을 가하여 죄가 장형(杖刑) 80대에 그치게 하되, 전지가 없는 사람과 전지가 적은 사람에게 주어 경작하게 하고, 무릇 백성에게 농사를 권장하는 일은 일체 모두 거행하고, 수령(守令)의 전최(殿最)는 전지의 개간이 많고 적은 것으로써 3등으로 나누어,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키는 데 빙고(憑考)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6월 1일(기사) 1번째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의복 기구 패물 등의 검소화에 대해 건의하다</p>	<p>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이제 임금이 되신 초두에 있어서, 의복과 기구와 패물 등을 만들어 쓰는데 검소하고 간략하도록 힘써서 자손 만대에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사(紗)·나(羅)·능(綾)·기(綺) 등 각색 무늬 있는 비단과 진채(眞彩)는 남의 나라의 물건으로 대 쓰기 어려우며, 금과 은은 또 해마다 공물(貢物)로 바치게 되어 대기 어려운 것인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다 통용하여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며, 이익만 아는 무리들은 무역(貿易)을 모의하여 남몰래 국경을 넘어가서 말쟁을 일으키게 되니,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사·나·능·기와 금은으로 만든 패물 같은 것은 <궁중에> 진상하는 것과 관원들의 품대(品帶)에 소용되는 것 이외에는 의정부와 중추부 이하 시민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금지하고, 공사(公私)의 가옥이나 사원(寺院)에는 진채를 쓰지 못하게 하며, 승지 이상 이외에는 금이나 옥으로 만든 갓끈을 달지 못하게 하고, 유밀과(油蜜菓)와 사화봉(絲花鳳)·금은저(金銀箸)·채화초(彩花草)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이외에는 모두 금단하게 하소서.”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사·나·능·기와 금·은·주·옥은 각 품관(品官)들의 의복과 말안장과 고삐에 쓰는 등급을 다시 의논해서 보고하고, 비밀히 국경을 넘어가서 무역을 하는 자들은 돈이나 물건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주범이나 공범을 모두 참형하게 하라.”</p>	<p>己巳朔/都評議使司上言： 今當卽位創始之初，凡工作服飾器玩，務從儉約，垂法萬世。紗羅、綾綺，各色眞彩，異方難繼之物，金銀又每歲進貢上國，尤爲難繼，而乃上下通用，人無定志，況見利之徒，因謀貿易，潛行越境，以生弊端，其害不淺。願自今紗羅、綾綺及金銀粧飾之物，進上服用及各官品帶外，兩府以下至於庶人，一皆禁止；公私家舍及寺院，勿用眞彩；承旨以上外，不許用金玉纓子；其油蜜果、絲花鳳、金銀箸、彩花草，上國使臣燕享外，亦皆禁斷。 上曰：“紗羅、綾綺、金銀、珠玉，各品官服鞍轡等級，更議申聞。其潛行越境興利者，勿論錢物多少，首從皆誅。”</p>

<p>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6월 1일(기사) 4번째기사 고려조 왕비와 족친들 의 공상은 폐지하고 월봉을 주도록 하다</p>	<p>헌사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고려조의 왕비와 왕비의 어머니 및 가까운 족친들을 궁주(宮主)·옹주(翁主)· 국대부인(國大夫人)에 봉하여, 혹은 공상(供上)하고 혹은 월봉을 주었으나, 모 두 정지해서 없애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공상(供上)은 폐지하고 모두 월봉을 주도록 하라.”</p>	<p>憲司上言：“前朝之妃與母及族，封爲 宮主、翁主、國大夫人，或供上或月 俸，請皆停罷。”上曰：“除供上，並 給月俸。”</p>
<p>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6월 24일(임진) 2번째기사 사헌부 이근 등이 금 주령 해제를 철회할 것을 건의하다</p>	<p>사헌부의 이근(李勲) 등이 상언하였다. “지난번에 금주령(禁酒令)을 풍년이 들기까지 기한하였는데 이제 23일부터 금령을 해제한다 하니, 나라를 창건하는 초두에 있어서 모든 법령은 경솔히 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연회나 환 영 및 전별할 때에 술은 풍년들 때까지 기한하여 금지하게 하소서.” 그대로 허락하였다.</p>	<p>司憲府李勲等上言：“前者禁酒之令， 限以豐年，今二十三日，命罷禁令。 當創業之初，凡有法令，不可輕改。 願自今京外公私宴飲迎餞，限豐年禁 之。”俞允。</p>
<p>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6월 26일(갑오) 1번째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직품 에 따라 금·은·옥 등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건의하다</p>	<p>도평의사사에서 예조가 상정(詳定)한 장계(狀啓)를 갖추어 아뢰었다. “진상하는 의식 용품 이외에는 신하들은 금을 쓰지 못하고, 의정부와 중추원 이외에는 명주와 비단과 옥영자(玉纓子)·옥환자(玉環子)를 쓰지 못하며,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하 6품 이상은 술잔 외에 은을 쓰지 못하고, 7품 이하도 술 잔을 은으로 쓰지 못하게 하되, 품대(品帶)와 대성(臺省) 관원들의 정자(頂子) 는 여기에 구애되지 말 것입니다. 서민이나 공업자·상업자들과 하인들은 비록 직품이 있더라도 은과 명주며 사피(斜皮)는 쓰지 못하게 하고, 혼인하는 사람 들이라도 역시 직품에 의거하여 참람되게 쓰지 못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甲午/都評議使司具禮曹詳定狀啓曰： “進上儀物外，臣下毋得用金；兩府外， 毋得服紗羅綾綺、玉纓子、環子；嘉善 以下六品以上，酒器外，毋得用銀；七 品以下，酒器亦不許用銀。品帶及臺 省員頂子，不在此限。庶人及工商賤 隸，雖有職者，毋得用銀絹斜皮；婚姻 者亦依職品，毋得僭用。”從之。</p>

<p>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7월 7일(갑진) 1번째기사 제주도인 고봉례 등이 말 백 필을 바치다</p>	<p>제주도 사람 고봉례(高鳳禮) 등이 말 1백 필을 바치니, 쌀 1백 섬을 하사하였다.</p>	<p>甲辰/濟州人高鳳禮等來獻馬百匹，賜米百斛。</p>
<p>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7월 28일(을축) 1번째기사 큰 바람에 곡식이 해 를 입다</p>	<p>바람이 크게 불어 곡식을 해치었다.</p>	<p>乙丑/大風害穀。</p>
<p>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8월 15일(임오) 2번째기사 회암사에 거둥하고 풍 천 서쪽에서 유숙하다</p>	<p>회암사(檜巖寺)에 거둥하여 중들에게 밥을 먹이고, 풍천(楓川) 서쪽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좌시중 조준이 앓으니, 견여(肩輿)를 주어서 먼저 송경(松京)으로 돌아가게 하였다.</p>	<p>幸檜巖寺，飯僧，次于楓川西邊。左侍中趙浚有疾，賜肩輿，命先還京。</p>
<p>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8월 16일(계미) 2번째기사</p>	<p>임금이 광실원(廣實院) 동쪽에 이르러 양원식이 말한 도읍할 만하다는 곳을 보았는데 모두 좋지 못하다고 말하여 그만두고, 장단 나루에 이르러 다락배를 타고 노니, 재상들과 노인들이 모두 헌수(獻壽)하였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검교 시중 남을번(南乙蕃)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니, 임금이 남을을 돌아</p>	<p>上至廣實院東，相楊元植所言可都之地，僉曰不可乃止。至長湍渡，乘樓船，宰相耆老皆獻壽。酒酣，檢校侍中南乙蕃起舞，上顧謂南問曰：“卿父</p>

<p>광실원을 둘러 본 후 장단에서 다락배를 타고 놀다</p>	<p>보고 말하기를, “경은 부모가 모두 계시고 몸이 재상이 되었는데, 나는 비록 오늘날 일국의 임금으로 귀하게 되었다 해도 어찌 경에게 미치지겠는가?” 하고서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물을 따라 내려와 아래 여울 가에서 유숙하였다.</p>	<p>母俱存，而身爲宰相。我雖今日貴爲一國之君，奚及於卿!”因泣下。順流而下，次于下灘邊。</p>
<p>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9월 9일(병오) 1번째기사 유구국 중산왕이 망명한 산남왕의 아들을 보내 달라고 청하다</p>	<p>유구국(琉球國)의 중산왕(中山王) 찰도(察度)가 사신을 보내서 전문(箋文)과 예물을 바치고, 피로되었던 남녀 12명을 돌려보내고서, 망명한 산남왕(山南王)의 아들 승찰도(承察度)를 돌려보내 달라고 청하였다. 그 나라 세자 무녕(武寧)도 왕세자에게 글월을 올리고 예물을 바치었다.</p>	<p>丙午/琉球國中山王察度遣使奉箋獻禮物，發還被擄男女十二名，請發回在逃山南王子承察度。其國世子武寧，亦於王世子，奉書獻禮物。</p>
<p>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10월 21일(정해) 1번째기사 내전에서 중들에게 밥을 먹이고 국사의 봉숭례를 행하다</p>	<p>내전에서 1백 8명의 중에게 밥을 먹이어 국사(國師)의 봉숭례(封崇禮)를 행하여, 안장 갖춘 말을 하사하였다.</p>	<p>丁亥/飯僧百八于內殿；行國師封崇禮，仍賜鞍馬。</p>
<p>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11월 19일(을묘) 2번째기사 태종이 명나라 황제의 우대를 받고 돌아오다</p>	<p>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남재와 조반도 같이 왔다.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 이르니, 황제가 두세 번 인견하였는데, 태종이 소상하게 <사신 통행에 대하여> 주문(奏聞)하니, 황제가 우대하고 돌려 보냈다. 처음에 태종이 떠날 때 찬성사 성석린(成石璘)이 시를 지어 태종을 전송하였다. “자식을 알고 신하를 아는 예감(睿鑑)이 밝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성의(誠意)는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라. 모두 말하기를 만세의 조선 경사는, 이 더위와 장마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는 데 있다 하더라.”</p>	<p>我殿下回自京師，南在、趙胖隨至。殿下至京，帝引見再三，殿下敷奏詳明，帝優禮遣還。初殿下之行也，贊成事成石璘，作詩以送殿下曰：“知子知臣睿鑑明，畏天誠意爲生成。皆言萬世朝鮮慶，在此炎霖跋涉行。”上國士人見殿下，皆稱朝鮮世子，甚敬之。</p>

	<p>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으며, 태종이 연부(燕府)를 지날 때는 연왕(燕王) 【즉 태종 황제.】이 친히 대해 보았는데, 곁에 시위하는 군사가 없고 다만 한 사람이 모시고 서 있었다. 온순한 말과 예절로 후하게 대접하고, 모시고 선 사람을 시켜서 술과 음식을 내오게 하였는데, 극히 풍성하고 깨끗하였다. 태종이 연부를 떠나서 도중에 있을 때, 연왕이 서울 〈금릉〉에 조회하기 위하여 편안한 연(輦)을 타고 말을 몰아서 빨리 달려갔다. 태종이 말 위에서 내려 길가에서 인사하니, 연왕이 수레를 멈추고 재빨리 연의 휘장을 열고서 오래도록 온순한 말로 서로 이야기하다가 지나갔다. 뒤에 태종이 흠차 내관(欽差內官) 황엄(黃儼)을 보고 물었다. “옛날 태종 황제를 연부에서 볼 때에 모시고 섰던 사람이 누구냐?” 엄이 대답하였다. “경 대인(慶大人)인데, 온순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황제가 제일 신임하던 사람이거나,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p>	<p>殿下過燕府，燕王【即太宗皇帝。】親見之，旁無衛士，唯一人侍立。溫言禮接甚厚，因使侍立者饋酒食，極豐潔。殿下離燕在道上，燕王乘安輦朝京師，驅馬疾行，殿下下馬見於路側，燕王停駕，亟手開輦帷，溫言良久乃過行。後殿下見欽差內官黃儼，問：“昔見帝于燕府之日，侍立者爲誰？”儼曰：“慶大人，溫良人也。帝最親信者，今已亡矣。”</p>
<p>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12월 14일(기묘) 1번째기사 다완인과 오도리인이 방물을 바치니 만호 직첩을 주게 하다</p>	<p>다완인(多完人) 부언(夫彦)과 오도리(五都里) 사람 소오(所吾) 등이 와서 방물을 바치니, 임금이 각각 의복 한 벌씩을 주고, 중추원에 분부하여 만호(萬戶)의 직첩을 주게 하였다.</p>	<p>己卯/多完人夫彦、吾都里人所吾等來獻方物。上各賜衣一襲，令中樞院給牒爲萬戶。</p>
<p>태조 7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1월 6일(신축) 1번째기사</p>	<p>공주(孔州) 이북의 오랑개(吾郎改) 만호(萬戶) 몽상(蒙尙)과 천호(千戶) 보리(甫里)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니, 목면(木綿)·명주·모시를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p>	<p>辛丑/孔州以北吾郎改萬戶蒙尙、千戶甫里等遣人來獻土物，賜木縣紬紵有差。</p>

오랑캐 만호 몽상과 천호 보리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조 7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2월 7일(신미) 1번째기사 오도리 10명이 토산물을 바치다	오도리(吾都里) 1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으므로, 쌀과 베[布]를 주어서 후하게 위무(慰撫)하였다.	辛未/吾都里十人來獻土物， 賜米布厚慰之。
태조 7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2월 19일(계미) 2번째기사 궁궐 조성에 각도의 인부를 돌려 보내고 대신 중을 쓰기로 하다	궁궐을 조성(造成)하는 각도의 정부(丁夫)들을 돌려보내고 승도(僧徒)들로 대신하게 하였다. 처음에 대사헌(大司憲) 박경(朴經) 등이 상서하기를, “궁실(宮室)의 제도는 임금이 거처하는 전(殿)이 있어야 하고, 백관들이 집무하는 방이 있어야 하므로, 크고 작은 건물의 수가 1천보다 적지 않을 것이요, 수만 명의 공장(工匠)과 졸도(卒徒)를 써야 될 것이온데, 농민으로 그 수를 채우면 반드시 농사 때를 놓칠 것이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대부(士大夫)가 집 한 채를 경영하는 데에도 반드시 중[僧]을 청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기술이 있고 또 살림살이가 없어서 일에 전력할 수 있기 때문이며, 중들도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의식(衣食)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궁궐을 처음으로 짓는 데에 어찌 익숙지 못한 사람을 쓰겠습니까? 다만 농사만 폐하고 공사가 늦어질 뿐입니다. 나라의 도승(度僧)은 원래 정한 수효가 없고, 백성 가운데에 중이 10분의 3은 되는데, 그중에 부역할 수 있는 자가 3분의 2는 될 것입니다. 대개 중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배부르게 먹지 아니하고 일정한 곳에 거처하지 아니하며, 승당(僧堂)에서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상등이요, 불경을 강론하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자가 중등이요, 재(齋) 올리는	放宮闕造成諸道丁夫， 以僧徒代之。初大司憲朴經等上書曰：宮室之制， 燕寢有殿， 而百官供奉， 各有所止， 間閣之數， 不下於千， 其工匠卒徒， 當用數萬人矣。 必用農民， 以充其數， 農必失時， 不可不慮也。 士大夫營一家， 必請僧以役者， 手段熟習， 且無家計而用工專也， 僧亦樂於趨事者， 以其有資於衣食也。 況創立宮闕， 豈可容拙手於其間哉？ 徒廢農業， 而緩於工役。 國家度僧， 初無定額， 僧之於民， 居十之三， 而其可赴役者， 亦不下三之二焉。 蓋僧之品有三。 食不求飽， 居無常處， 修心僧堂者， 上也； 講說法文， 乘馬奔馳者， 中也； 迎

	<p>데에 찾아가고 초상집에 달려가서 의식(衣食)을 엿보는 자가 하등입니다. 신등은 그욕이 생각 하옵건대 하등의 중들을 국가 공사에 일하게 하여 무엇이 해가 되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중들을 모아서 공사를 하게 하고, 다시는 백성을 징용(徵用)하지 말아서 그 생계를 보살피게 하면, 공사는 폐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근본이 튼튼해질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의 윤허하여 이런 명령이 있게 된 것이었다.</p>	<p>齋赴喪，規得衣食者，下也。 臣等竊謂下等之僧，其於國役也，赴之何害! 願令攸司，集僧赴役，更不徵民，以遂其生，則工役不廢而邦本固矣。 上俞允，故有是命。</p>
<p>태조 7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2월 25일(기축) 2번째기사 서해도에 흉년이 들어 구휼하다</p>	<p>서海道(西海道)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창고의 곡식을 내어 구휼하게 하였다.</p>	<p>西海道饑，命發倉賑之。</p>
<p>태조 7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3월 1일(갑오) 1번째기사 동북면의 기민을 구휼 하다</p>	<p>임금이 창고의 곡식을 내어 동북면(東北面)의 기민(饑民)을 진휼하게 하였다.</p>	<p>甲午朔/上命發倉，賑東北面饑。</p>
<p>태조 7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3월 4일(정유)</p>	<p>임금이 과주(果州)에 거둥하여 수릉(壽陵) 자리를 살폈다. 돌아올 때 도평의사사의 주최로 두모포(豆毛浦) 선상(船上)에서 술상을 차리고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었다. 정도전이 <임금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p>	<p>丁酉/上如果州，相壽陵地。 將還，都評議使司享于豆毛浦船上，群臣以次獻觴。 鄭道傳進曰：“天佑聖德，肇建丕</p>

<p>1번째기사 과주에 거둥하여 수릉 자리를 물색하니, 정도전이 눈물로 간언하다</p>	<p>“하늘이 성덕(聖德)을 도와 나라를 세웠으며, 신들이 후한 은총을 입고 항상 천만세 향수(享壽)하시기를 바라고 있사운데, 오늘날 능자리를 물색하오니, 신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하고 흐느껴 눈물을 흘리니, 임금이 말하였다. “편안한 날에 미리 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우는가?” 왕심촌(往尋村) 노상(路上)에 이르러 임금이 말을 달려서 노루를 쏘려고 하였으나, 마부 박부금(朴夫金)이 재갈을 잡고 놓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그만두었다.</p>	<p>基， 臣等蒙恩至厚， 常願千萬歲壽。 今日相地， 臣不勝感愴。” 因泣下， 上曰：“欲於平安之日， 預定之耳， 何泣爲!” 至往尋村路上， 上欲馳馬射獐， 僕隸朴夫金執鞵不放， 上乃止。</p>
<p>태조 7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3월 12일(을사) 1번째기사 차준과 도만호 안처선 등에게 술과 채단 등을 내려 주다</p>	<p>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차준(車俊)에게 술과 채단(綵段)·홍초(紅綃)를 하사하고, 또 도만호(都萬戶) 안처선(安處善)에게도 차준에게 준 수대로 주었으며, 겸해서 도절제사 조견(趙狷)과 도관찰사 최유경(崔有慶)에게도 술을 하사하였다. 차준의 처부(妻父)의 상고(喪故)가 있다는 말을 듣고 쌀과 콩 1백 석을 주었다.</p>	<p>乙巳/上遣使賜俊酒及綵段紅綃， 仍賜都萬戶安處善如賜俊之數， 兼賜酒都節制使趙狷、都觀察使崔有慶。 聞俊有外舅喪， 賜米豆百石。</p>
<p>태조 7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3월 20일(계축) 2번째기사 새 궁궐의 양청에서 주연을 베풀다</p>	<p>임금이 새 궁궐의 양청(涼廳)에 주연(酒宴)을 베풀었는데, 남양백(南陽伯) 홍영통(洪永通)과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여완(成汝完)이 잠저(潛邸) 때의 친구들로서 참여하였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이 시(詩)를 지어 올리었다. “금원(禁院)에 봄빛은 깊고 꽃은 한창인데 옛친구 불러서 술잔을 드니 하늘마저 때에 맞는 비를 내리어 이 몸 또한 우로(雨露)의 은택을 깨달았도다.”</p>	<p>上置酒新宮涼廳， 南陽伯洪永通、昌寧府院君成汝完與焉， 潛邸故人也。 判三司事鄭道傳賦詩以獻： 禁院春深花正繁， 爲招耆舊置金樽。 天工忽放知時雨， 便覺渾身雨露恩。</p>
<p>태조 7권, 4년(1395)</p>	<p>회암사(檜巖寺)에 쌀·콩 1백 70석과 오승포(五升布) 2백 필을 내려 주었으니,</p>	<p>庚辰/賜檜巖寺米豆百七十石、五升布</p>

<p>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4월 17일(경진) 1번째기사 능엄회 베푸는 회암사에 쌀·콩 등을 내려 주다</p>	<p>왕사(王師) 자초(自超)가 능엄회(楞嚴會)를 베풀기 때문이었다.</p>	<p>二百匹。王師自超設《楞嚴》會也。</p>
<p>태조 7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4월 25일(무자) 2번째기사 헌사에서 금주령을 내리자는 상소를 올려 윤험 받다</p>	<p>이날 헌사(憲司)에서 상소하였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옛날 성제(聖帝)와 명왕(明王)이 제도를 만들고 법을 세울 때, 준작(尊爵) 561) 과 조두(俎豆) 562) 를 만들어서 그릇으로 삼고, 금석(金石)과 실과 대나무로 악기를 만들어서 종묘 및 교외의 제사와 조정의 연향에 쓰고, 향연(享燕)하는 예(禮)와 잔을 드리는 의식이 왕공(王公) 이하로 각각 등급이 있어 서로 참람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은, 대개 상하를 분별하고 백성들의 뜻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술을 몹시 좋아하다가 재화를 낼까 염려하여, 순순(諄諄)히 유련황망(流連荒亡)함을 경계한 것입니다. 《서전(書傳)》에 이르기를, ‘술을 마시는 것은 오직 제사(祭祀) 때만 할 것이며, 덕으로써 취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고,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한 잔 드리는 예는 손이나 주인이 백 번 절하고 마시는 것이니, 종일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사람의 성품을 기르고 재화의 근원을 막는 뜻이 깊고 절실하오니, 이것은 술을 금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한(漢)나라·위(魏)나라 이후로는 세상이 한 대를 내려갈 적마다 쇠해져서, 선왕의 제도를 지켜 화란(禍亂)의 근원을 막아내지 못하고, 한번 수재(水災)·한재(旱災)나 상재(霜災)·충재(蟲災)를 만나면 술 마시는 것을 금하여 곡식을 저축하려 하니, 이것은 술을 금하는 중등의 방법이며, 혹은 재용(財用)이 부족할까 하여 개인의 양조(釀造)를 금하고 관원을 두어서 전매(專賣)하여 그 이익을 취하니, 이것은 술을 금하는 최하의 방법입니다.</p>	<p>是日，憲司上疏曰： 竊惟昔者，聖帝明王，創制立法，尊爵俎豆以爲器，金石絲竹以爲樂，以適郊廟，以臨朝廷。其享燕之禮，獻酬之儀，自王公而下，各有等級，不相僭踰，蓋所以辨上下定民志也。又慮人耽酒生禍，故諄諄以流連荒亡爲戒。 《書》曰：“飲惟祀，德將無醉。” 《禮》曰：“一獻之禮，賓主百拜，終日飲酒，而不得醉焉。”其所以養人性塞禍源之意，深切矣，此禁酒之上也；漢、魏以降，世衰一世，不克遵先王之制，以塞禍亂之源，一遇水旱霜蟲，則禁人飲酒，以儲穀粟，此禁酒之中也；或慮財用之不足，禁人私釀，置官榷酤，以專其利，此禁酒之下也。恭惟主上殿下，制禮作樂，動法三代之盛，而禁酒一令，豈可泥常而不革乎？臣等竊以爲，出令禁酒，專以戕人性生禍亂</p>

	<p>삼가 생각하옵건대, 주상 전하께서 예악(禮樂)을 제정함에 있어서 삼대(三代)의 성시(盛時)를 본뜨고 있으나, 금주령 하나만은 어찌 풍속에 구애하여 고치지 아니하옵니까? 신 등은 그웁이 생각하옵건대, 금주령을 내리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본성을 해치고 화란(禍亂)을 낼까 염려하여서이니,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 고려조 말기에 기강이 무너지고 예제(禮制)가 허물어져서, 사대부들이 모두 옛날 진(晉)나라 사람의 풍류를 따라, 쪽대머리로 술을 마시는 것을 스스로 마음이 넓고 달통한 사람이라 하고, 예법을 폐기(廢棄)하고 세상 만사를 잊어버리니, 서민들이 또한 이를 본받아, 드디어 풍속이 되어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집을 보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치만 서로 숭상하여 여러 날 동안 준비하고, 술이 껌내에서 쓰는 법주(法酒)가 아니고 과자(菓子)가 진기(珍奇)한 것이 아니며 기명(器皿)이 상에 가득 차지 않으면 감히 <손님을> 청하지도 않으니, 이것이 어찌 재물만 허비할 뿐이겠습니까? <상하의> 등급이 없는 것이 큰 손실입니다. 심한 자는 한번에 두어 말의 술을 마시고 여러날 동안 정신 없이 취하여 시간을 모르고 일을 폐하는 데에 이릅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의 종묘의 제사와 임금과 신하의 연회와 사신(使臣)의 영송(迎送) 이외에는, 신하들은 관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부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여 사무를 폐하는 일이 없게 하고, 공상(工商)·천례(賤隸)들도 때를 지어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여 본성을 잃고 재화를 부르는 원인을 제거하고,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다스려서 크게 징계하되, 기한을 정하지 말고 영구한 법령으로 삼으소서.”</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爲戒，其可矣。 前朝叔世，紀綱陵夷，禮制浸壞， 士大夫皆慕晉人蓬頭嗜飲，自謂宏達，廢棄禮法，遺落世事，衆庶効之，遂成風俗，迄今猶未全改。 其會客之家，勿論尊卑，奢侈相高，數日營辦。 酒非內法，菓非珍異，器皿非滿案，不敢請焉，此豈特爲費財？ 其失至爲無等， 甚者一飲數斗，累日昏醉，以致廢時失事。 願自今宗廟事神，君臣同宴，使臣迎餞外，臣下勿論官職高卑，毋得聚會縱酒，以至廢事，至於工商賤隸，亦毋得群飲，以禁伐性之端，以絕產禍之源，若有犯者，科罪痛懲，勿限年月，永爲著令。 上允之。</p>
<p>태조 7권, 4년(1395)을해 / 명 홍무(洪武)</p>	<p>백백 태자(伯伯太子)에게 쌀과 콩 4백 곡(斛)과 저포(紵布)·마포(麻布) 30필을 내려 주고, 양왕(梁王)의 손자에게 쌀과 콩 1백 곡과 저포·마포 10필을 내려</p>	<p>賜伯伯太子米豆四百斛、紵麻布三十匹，梁王孫子米豆百斛、紵麻布十(匠)</p>

<p>28년) 5월 8일(경자) 2번째기사 백백 태자와 양왕의 손자에게 쌀과 콩 등 을 내려 주다</p>	<p>주었다.</p>	<p>[匹]。</p>
<p>태조 7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5월 13일(을사) 1번째기사 간관 한상환 등이 재 정 및 토지 정책에 대 한 시무를 아뢰다</p>	<p>간관(諫官) 한상환(韓尙桓) 등이 군대를 강하게 하고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요점을 올려서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검교(檢校)의 벼슬과 부녀들의 작위를 과하면 녹봉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요, 사사(寺社)의 토지는 이미 준 것 이외에 다시 더 주지 말고, 원 종 공신(原從功臣)의 토지도 역시 주지 말며, 또 지금부터는 쌀로 부의(賻儀) 하는 것을 일체 중지하여 뜻밖의 일어나는 사변에 대비하게 하소서.”</p>	<p>乙巳/諫官韓尙桓等上言治兵足食之要 曰：“願罷檢校之職、婦女之爵，庶幾 祿俸不至於妄費。且凡寺社之田充給 外，毋得加給，其原從功臣之田，亦且 停給。又自今賜米助哀，一切停罷， 以備不虞。”</p>
<p>태조 7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6월 28일(경인) 2번째기사 궁궐 조성 감역관과 인부들에게 술과 음식 을 내리다</p>	<p>술과 음식을 궁궐 조성 감역관(宮闕造成監役官)에게 하사하고 인부들에게도 주었다.</p>	<p>賜酒食于宮闕造成監役官，仍給役徒。</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7월 1일(임진) 3번째기사 제주에서 해마다 바치</p>	<p>제주에서 공(貢)바치는 마른 말고기를 금하였다. 제주의 풍속은 매년 선달에 암말을 잡아서 포를 만들어 토산물로 바쳤는데, 도안무사 황군서(黃君瑞)가 제주에서 돌아와서 아뢰므로 이를 과하게 하였다.</p>	<p>禁濟州歲貢乾馬肉。濟州俗每於臘月， 殺牝馬作脯。都安撫使黃君瑞回自濟 州，白罷之。</p>

<p>는 마른 말고기를 그 만두게 하다</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7월 5일(병신) 3번째기사 금령을 어기고 술을 빚어 연회한 광주 목 사 최식을 파직시키다</p>	<p>광주 목사(廣州牧使) 최식(崔湜)을 파직하였다. 식(湜)은 금령을 범하여 술자리를 벌여 풍악을 갖추고 손님을 접대하니, 감사 최이(崔迤)가 이를 듣고 탄핵하게 되어 파직하였다.</p>	<p>罷廣州牧使崔湜。湜犯禁令，置酒具樂饗客。監司崔迤聞之，劾罷之。</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7월 16일(정미) 1번째기사 일본 살마주 사람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살마주 사람이 토산물을 와서 바쳤다.</p>	<p>丁未/日本國薩摩州人來獻土物。</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7월 26일(정사) 1번째기사 각도의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쌀 2곡씩을 하사하다</p>	<p>각도로 하여금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을 방문하여 존비(尊卑) 여하를 물론하고, 쌀 2곡(斛)씩 하사하게 하였다.</p>	<p>丁巳/令各道訪年過七十者，勿論尊卑，賜米各二斛。</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p>	<p>임금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도의 기민을 구휼하라고 말하였다. “각도의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공문을 보내어 수령으로 하여금 창고의 쌀과</p>	<p>上命都評議使司，賑各道飢民曰：“移文各道都觀察使，令守令發倉庫米豆，</p>

<p>28년) 7월 30일(신유) 2번째기사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도의 기민을 구휼하 게 하다</p>	<p>콩을 내어 구휼하게 하되, 구휼에 힘쓰는 수령은 포상하고, 힘쓰지 않는 자는 논죄하도록 하라.” 사사(使司)에서 이문(移文)하였다. “수령으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동리의 거리(距里)와 마을 수를 참작해서 진제 소(賑濟所)를 나누어 두게 하되, 한량(閑良)이나 품관(品官) 중에서 자상하고 청렴한 사람을 골라 감고(監考)로 정하고, 수령이 때때로 살피도록 하라. 노 병(老病)이나 기곤(飢困)으로 밥 먹는 데에 나오지 못하는 자나, 양반(兩班)이 라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여 먹는 데에 나오지 않는 자는 분간하여 별도로 알 아서 구휼하게 하라. 수령으로서 여기에 마음을 쓰고 좋은 방법을 써서 그 경 내에 굶어 죽은 자가 없게 한 자는 직명과 살려낸 사람의 수를 보고하여 발 탁해서 쓰도록 하고, 만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서 경내에 기사자(飢死者)를 있 게 한 수령과 감고가 있다면 함께 결장(決杖)하되, 수령은 파직하고 감고는 수군(水軍)에 보충하며, 직명을 보고하게 하라.”</p>	<p>以行賑濟。 守令用心賑濟者， 褒賞； 不爲用心者， 論罪。” 使司移文曰： 令守令各於四面村程途里數分辨， 分置 賑濟所， 擇其閑良、品官慈祥廉潔者， 定爲監考， 守令以時考察。 其有老病 飢困不能就食者、兩班男女心懷慙愧 不屑就食者， 分揀推考， 別行賑濟。 守令有用心做辦， 境內無飢死者， 職名 及所活人數呈報， 以憑擢用， 如有不爲 用心， 境內有飢死者， 守令、監考， 俱 決杖， 守令罷職， 監考充水軍， 職名呈 報。</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7월 30일(신유) 4번째기사 산사태와 홍수가 난 광주와 천녕 사이 고 을의 세곡을 면제하고 양식을 주다</p>	<p>왕이 광주(廣州)와 천녕(川寧) 사이에서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었으므로, 그 토지의 세곡을 면제하고 또 집집마다 쌀과 서속(黍粟)을 주게 하였다.</p>	<p>上以廣州、川寧之境， 山崩水湧， 免其 田租， 且戶給米粟。</p>

<p>태조 8권, 4년(1395)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9월 16일(정미) 1번째기사 각도에서 보고한 효자·절부 등을 정리하고 복호하게 하다.</p>	<p>임금이 좌·우정승에게 분부하였다. “지금 각도에서 보고한 효자(孝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 등은 모두 실적이 있으니 마땅히 포상을 더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하되, 구실[役]이 있는 자는 복호(復戶)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구휼하여 주어 풍속을 가다듬게 하라.” 급제 탁신(卓愼)은 전라도 광주(光州) 사람이다. 부친이 돌아가자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상제(喪制)를 마쳤으며, 그의 모친을 봉양함에 정성과 공경을 다 하니 한 고을에서 효성을 칭찬하였다. 전 서령(署令) 김사지(金四知)는 충청도 전의(全義) 사람이다. 노모(老母)를 봉양하기 위하여 아침저녁으로 반찬을 올리되 반드시 자기가 먼저 맛을 보며, 부모의 뜻을 순종하여 오래도록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주(牙州)의 학생 공도지(孔都知)는 나이 27세에 부친을 여의었는데, 가난하고 직업도 없어 스스로 살아갈 길이 막연하므로 그 아내가 다른 고을에 옮겨 살자고 권하니, 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선영이 여기에 있는데 어찌 차마 떠날 수 있는가?” 하고, 신을 삼아 팔면서 제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임주(林州) 사람 임안귀(林安貴)는 부모의 상고를 당하여 8년이나 분묘를 지켰고, 청주 호장(淸州戶長) 손희(孫禧)는 무오년에 왜구가 갑자기 고을에 침입하여 모친과 아내며 누이동생까지 다 왜구에게 붙들린 바 되자, 분통해서 살기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적중(賊中)에 들어가서 모친을 업고 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면하게 하고, 끝내 효성으로 봉양하여 자식의 직분을 다하였다. 영주(寧州)의 관노(官奴) 물쇠[勿金]는 아버지를 성심으로 섬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자 참취(斬衰) 3년에 신주를 모셔 두고 아침저녁으로 상식했으며, 김화(金化)의 전 산원(散員) 이영기(李英奇)는 조부모와 부모가 늙고 또한 가난하였으므로 몸소 농사를 지어 효성으로 봉양하였는데 끝끝내 게을리 하지</p>	<p>丁未/上命左右政丞曰：“今各道所報孝子順孫義夫節婦，各有實跡，宜加褒賞，旌表門閭。其有役者則復之，貧乏者則周之，以勵風俗。”及第卓愼，全羅道光州人也。父歿，三年衰經終制，奉養其母盡誠敬，鄉黨稱孝焉。前署令金四知，忠淸道全義人也。奉養老母，朝夕進饌，必自親嘗，承順致孝，久而不怠。牙州學生孔都知，年二十七歲喪父，貧乏失業，不能自存。其妻勸移他邑，都知泣曰：“先墳所在，何忍去之！”織屨爲食，祭享不怠。林州人林安貴，喪父母，守墳八年。淸州戶長孫禧，歲戊午，倭賊突入州中，母及妻妹，皆爲所執，憤不顧生，直入賊中，負母登山，得免於死，終始孝養，以盡子職。寧州官奴勿金，孝父以誠，比其歿也，斬衰三年，作置神主，朝夕致祭。金化前散員李英奇，祖父母及父母，老且貧乏，躬耕孝養，終始不怠。喬桐百姓方君正，養母盡孝，閭里稱之。前副正梁希賢，華人也。居於江陰，家甚貧乏，奉養老母，雖蔬食菜羹，必以其鄉之樂侑之，孝心純至。其妻承順，不替婦道。廣州戶長李勳，</p>
---	---	--

	<p>않았고, 교동(喬桐)의 백성 방군정(方君正)은 어미를 효성으로 봉양하므로 은동리에서 칭찬하였다.</p> <p>전 부정(副正) 양희현(梁希賢)은 중국 사람이다. 강음현(江陰縣)에서 살았는데 집안이 심히 가난했으나, 늙은 모친을 봉양하는데 비록 나물 반찬에 나물국이지만 반드시 그 고을의 좋은 것으로 대접해서 효성하는 마음이 극진하였고, 그의 아내도 잘 받들어서 부도(婦道)를 잃지 않았다.</p> <p>광주 호장(廣州戶長) 이적(李勣)은 군사의 날짜를 잃어버려서, 광주도 병마사(廣州道兵馬使) 조희고(趙希古)가 적(勣)을 극형에 처하고자 하니, 적의 아들 전 만호(萬戶) 이호생(李好生)이 손으로 그의 부친을 끌어안고 제몸으로 대신하려 하매, 회고가 그 효성에 감동되어 석방하여 적이 죽기를 면했으며, 그 뒤 적이 병들어 죽자 호생이 상복을 입고 삼년상을 마쳤다.</p> <p>수원(水原)의 생원 이조(李造)는 모친상을 당하여 무덤에 여막을 짓고 3년을 아침저녁으로 죽만 먹고 소금과 장이며 나물과 과실을 먹지 않고 슬피하며 공경했으며, 전 별장(別將) 김계동(金桂同)도 역시 수원 사람인데, 천성이 원래 효성스럽고 공순하여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기를 공근히 하다가 모친이 죽으매 사당을 두고 사철의 초하루 보름에 제사를 올리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p> <p>이상은 모두 효자와 순손이며, 함열(咸悅) 사람 전 산원(散員) 최득림(崔得林)의 아내 홍씨(洪氏)는 무오년에 왜적에게 잡힌 바 되어 적이 욕을 보이려 하니, 적을 꾸짖고 한사코 거절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고,</p> <p>양성(陽城)의 고(故) 판사(判事) 전오복(全五福)의 아내 노씨(盧氏)는 정묘년에 가장이 죽자 무덤의 아래에다 여막을 짓고 지금까지 9년 동안을 제사지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p> <p>춘주(春州) 565) 의 낭천 감무(狼川監務) 조안평(趙安平)의 모친 이씨(李氏)는 일찍이 그의 가장을 잃고 과부로 살면서 수절하고 아들을 교양시켜 벼슬을</p>	<p>失於軍期，廣州道兵馬使趙希古欲置勣極刑。勣子前萬戶好生，手抱其父，欲以身代，希古感其孝誠釋之，勣得免。及勣病歿，好生服喪終制。水原生員李造，喪母廬墓三年，朝夕食粥，不進鹽醬菜菓，以致哀敬。前別將金桂同，亦水原人也。性本孝敬，定省惟勤。母歿置祠堂，四時朔望，奉祀不怠。右皆孝子順孫也。咸悅人前散員崔得林妻洪氏，歲戊午，爲倭所獲，賊欲汚之，罵賊固拒，中槍而死。陽城故判事全五福妻盧氏，歲丁卯，夫亡。廬於墳墓之下，至今九年，祭享不怠。春州狼川監務趙安平母李氏，早喪其夫，寡居守節，教子從仕。喬桐前別將李提妻曹氏，年十九，爲倭所獲，死不汚賊。皆節婦也。命皆復其家，存恤其子。其中願從仕者，令給馬上京；年老家貧者及婦人，賜米有差。且令旌表其閭，仍錄實迹，通諭中外。</p>
--	---	--

	<p>하게 하였다.</p> <p>교동(喬桐)의 전 별장(別將) 이제(李提)의 아내 조씨(曹氏)는 나이 19세에 왜적에게 붙들려 가서 죽었으나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모두 절부이었다.</p> <p>명하여 모두 그들을 복호(復戶)하고 그 자손들을 구휼해 주게 하되, 그 중에서 벼슬하기를 원하는 자는 말[馬]을 주어 서울로 올라오게 하고, 나이 많고 집이 가난한 자와 부인들에게는 차등 있게 쌀을 내려 주고, 또 그 동구문[閭]에 정표하게 하고는 사실을 기록해서 경중과 외방에 널리 알리게 하였다.</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윤9월 1일(임 술) 2번째기사 대묘 동역 제조관에게 잔치를 내려 주고 내 구마 1필씩 하사하 다</p>	<p>대묘(大廟)의 동역 제조관(董役提調官)에게 잔치를 내려 주고는 각각 내구마 1필씩 하사하였다.</p>	<p>賜宴太廟董役提調官， 仍賜廐馬各一匹。</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윤9월 3일(갑 자) 1번째기사 삼척 부사 박만이 침 입한 왜구 2인을 죽이 니 내온을 하사하다</p>	<p>왜구가 삼척부(三陟府)에 침입한 것을 부사(府使) 박만(朴蔓)이 2인을 쳐서 죽였다. 임금이 장군 이자분(李自芬)을 보내어 내온(內醞)을 하사하게 하였다.</p>	<p>甲子/倭寇侵三陟府， 府使朴蔓擊斬二人。 上遣將軍李自芬， 賜內醞。</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10월 11일(신 축) 1번째기사 왕의 탄일이라 군신들 이 헌수하니 잔치를 베풀다</p>	<p>임금의 탄일(誕日)이라 군신들이 헌수를 하니, 군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p>	<p>辛丑/上誕日, 群臣上壽, 賜群臣宴。</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10월 11일(신 축) 3번째기사 회암사에 쌀과 콩을 내리다</p>	<p>회암사(檜巖寺)에 쌀과 콩 3백 곡을 내려 주었다.</p>	<p>賜檜巖寺米豆三百斛。</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11월 7일(정묘) 3번째기사 도평의사사에서 한산 군 이색에게 쌀과 콩 을 보냈으나 받지 않 다</p>	<p>도평의사사에서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에게 미두(米豆) 1백 석을 보냈으나, 받지 아니하였다.</p>	<p>都評議使司遺韓山君李穡米豆百石, 不受。</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11월 10일(경 오) 2번째기사 종묘 삭제의 전물이 박했다 하여 상정관 제조 등을 핵문하고 파직시키다</p>	<p>임금이 종묘의 삭제(朔祭)의 전물(奠物)이 박하였다는 말을 듣고, 헌사(憲司)에 명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하니, 헌사에서 상정관 제조(詳定官提調) 삼사우복야 민제(閔霽), 장무(掌務) 예조 정랑 윤사영(尹思永), 제향사 의랑(祭享司議郎) 강천주(姜天霍)를 핵문하고 파직시켰다.</p>	<p>上聞宗廟朔祭奠物之薄，命憲司參劾其實。 憲司劾問詳定官提調三司右僕射閔霽、掌務禮曹正郎尹思永、祭享司議郎姜天霍，罷職。</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11월 24일(갑 신) 1번째기사 한산군 이색이 오대산 에서 돌아오자, 임금이 융숭히 대접하다</p>	<p>한산군 이색이 오대산(五臺山)에서 돌아왔다. 당초에 색(穡)이 외방으로 버림을 받았다가 종편(從便)하라는 은총을 입어 관동 지방에 관광하기를 청하여, 오대산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부르니, 색이 왔다. 임금이 친구의 예로 접대하고 조용하게 담화를 하고 술을 마시고 즐겼다. 나갈 때에는 중문까지 나가서 보냈다.</p>	<p>甲申/韓山君李穡來自臺山。 初穡見擯于外，及蒙恩從便，請游關東，至臺山因留居。 上遣人召之，至是穡至，上待以故舊之禮，從容與語，置酒歡洽。 及出，送至中門。</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11월 27일(정 해) 1번째기사 한산군 이색에게 과전 과 쌀 등을 내려 주다</p>	<p>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에게 과전(科田) 1백 20결, 쌀과 콩 1백 곡(斛), 소금 5곡을 내려 주었다.</p>	<p>丁亥/賜韓山君李穡科田一百二十結、米豆百斛、鹽五斛。</p>
	<p>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에게 쌀과 콩 1백 곡(斛)을 내려 주고, 또 술과 고기를 주면서 말하였다.</p>	<p>丁酉/賜韓山君李穡米豆百斛，且賜酒肉曰：“卿已老矣。 宜復酒肉，以養體</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12월 8일(정유) 1번째기사 한산군 이색에게 쌀과 콩, 술과 고기를 내려 주다</p>	<p>“경은 이미 늙었으니 다시 술과 고기를 먹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라.” 이때에 색이 불교를 신봉하여 술과 고기를 끊었으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p>	<p>氣。”時穡托佛斷酒肉，故有是命。</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12월 12일(신 축) 1번째기사 동북면 도순문사가 효 자·순손·절부를 천거하 니 복호하게 하다</p>	<p>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가 보고하였다. “함주(咸州) 백성의 딸 금진(今珍)이 나이 23세에 상부(喪夫)하고 수절(守節) 해서 72세나 되었으며, 정주(定州) 사람 신필(申必)은 나이 99세입니다. 영흥 부(永興府) 백성 김부개(金夫介)의 조모(祖母)는 32세에 상부(喪夫)하고 과거 (寡居)하고 있는데, 부개가 효양(孝養)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나이 70 세에 이르렀습니다.” 임금이 각각 쌀 10석씩을 주고 복호(復戶)하게 하였다.</p>	<p>辛丑/東北面都巡問使報：“咸州民女今 珍，年二十三，喪夫守節，年至七十二； 定州人申必，年九十九；永興府民金夫 介祖母，年三十二，喪夫寡居，夫介孝 養不忘，年至七十九歲。”上賜米各十 石，復其家。</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12월 16일(을 사) 3번째기사 일본 대내전의 다다량 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 대내전(大內殿)의 다다량(多多良)이 사람을 보내서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大內多多良，遣人來獻土物。</p>
	<p>임금이 한산백 이색에게 잔치를 베푸니 판삼사사 정도전도 참여하였다. 임금 이 문덕(文德)·무공(武功)의 두 곡조를 듣고서 말하기를,</p>	<p>甲寅/上宴韓山伯李穡，判三司事鄭道 傳亦與焉。上聞《文德》、《武功》</p>

<p>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12월 25일(갑 인) 1번째기사 한산백 이색에게 잔치 를 베풀며 문덕곡과 무공곡을 듣다</p>	<p>“노래로 공덕을 칭송한 것이 실로 본정에 지나친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내 심히 부끄럽다.” 하니, 도전이 대답하였다. “전하께서 이런 마음이 계시기에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p>	<p>二曲曰：“歌頌功德，實惟過情。每聞 此曲，予甚愧焉。”道傳對曰：“殿下 有此心，歌所以作也。”</p>
<p>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월 1일(경신) 1번째기사 군신을 거느리고 황제 가 있는 곳을 향하여 신년 하례후 군신의 조회를 받고 잔치하다</p>	<p>임금이 군신(群臣)을 거느리고 황제의 정월[帝正]을 하례하고 군신(群臣)의 조회를 받고는, 인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즐거워함이 한창일 때에, 광양 부원군(光陽府院君) 이무방(李茂方)이 일어나 춤을 추고, 판삼사사 정도전(鄭道傳)은 잔을 받들고, “정월 원조는 한 해의 으뜸이며, 시조(始祖)는 일국의 으뜸이니, 으뜸이란 것 은 온갖 좋은 것 중에서도 제일이 되는 것이오라, 나라의 시조는 삼가지 앓을 수 없습니다.” 고 진언(進言)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p>	<p>庚申朔/上率群臣賀帝正，受群臣朝， 仍賜宴。群臣歡甚，光陽府院君李茂 方起舞，判三司事鄭道傳稱觴而進言 曰：“正朝，一歲之元；始祖，一國之 元。元者，善之長也，國之始祖，不 可不慎。”上曰：“俞。”</p>
<p>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월 24일(계미) 3번째기사 유밀과 쓰는 것을 금 하다</p>	<p>유밀과(油蜜果) 쓰는 것을 금하였다.</p>	<p>禁用油蜜果。</p>
<p>태조 9권, 5년(1396</p>	<p>풍해도 도관찰사 송문중(宋文中)이 왜선 1척을 잡아서 수급(首級)을 바치니,</p>	<p>辛丑/豐海道都觀察使宋文中捕倭船一</p>

<p>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2월 13일(신축) 1번째기사 왜선 1척을 잡은 풍해도 도관찰사 송문중에게 궁은과 비단을 하사하다</p>	<p>대장군 김점(金漸)을 보내어 궁은(宮醞)과 비단을 하사하였다.</p>	<p>隻獻馘，遣大將軍金漸，賜宮醞綺絹。</p>
<p>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2월 15일(계묘) 2번째기사 경상도 기민을 진휼하다</p>	<p>경상도의 기민을 진휼하게 하였다.</p>	<p>命賑慶尙道飢。</p>
<p>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3월 4일(신유) 3번째기사 중들을 모아 온천에 원집을 짓게 하고 쌀과 콩을 내리다</p>	<p>중들을 모아 온천에 원집[院]을 짓게 하고는 쌀과 콩 30석을 하사하였다.</p>	<p>命集僧徒，營院于溫泉，仍賜米豆三十碩。</p>
<p>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3월 9일(병인) 1번째기사 술에 취해 임금을 비</p>	<p>전 안동 부사(安東府使) 이전(李專)을 하옥시켰다. 전(專)은 관한성부사 정희계(鄭熙啓)와 함께 익안군(益安君)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희계와 더불어 서로 농을 하였는데, 말이 비방하고 비웃는 데에 이르렀다. 희계가 임금에게 아뢰니, 헌사에 분부하여 국문하게 하였으나, 전은 술이 취해서 무어라 한지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p>	<p>丙寅/下前安東府使李專于獄。專與判漢城府事鄭熙啓詣益安君第，飲酒醉，與熙啓相戲，語涉謗訕，熙啓以聞。命憲司鞫之，專以醉不省事爲對。</p>

<p>방하는 말을 한 전 안 동 부사 이전을 하옥 시키다</p>		
<p>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3월 16일(계유) 4번째기사 전라도인이 성 쌓는 역사에서 많이 죽었다 는 말을 듣고 미두를 하사하다</p>	<p>임금이 전라도 사람들이 성 쌓는 역사에 왔다가 병들어 죽은 자가 더욱 많다는 것을 듣고, 그 집에 미두(米豆)를 하사하도록 명하였다.</p>	<p>上聞全羅道人赴役病死者尤多，命賜米豆其家。</p>
<p>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3월 29일(병술) 1번째기사 새로 나온 나물과 굴, 사냥해서 잡은 것들을 종묘에 천신하다</p>	<p>새로 나온 채소를 종묘에 천신하고, 또 감자(柑子)와 그리고 사냥해서 잡은 것들도 모두 종묘에 먼저 천신하게 하였다.</p>	<p>丙戌/薦新菜于宗廟，又薦柑子。凡畋獵所獲，亦必先薦于廟。</p>
<p>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4월 10일(정유) 1번째기사 오랜 가뭄때문에 금주</p>	<p>오래 날씨가 가뭄이 금주(禁酒)하게 하였다.</p>	<p>丁酉/以久旱禁酒。</p>

<p>령을 내리다</p>		
<p>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4월 13일(경자) 2번째기사 경사에 구류된 사신과 일행의 집에 쌀과 콩 을 내리다</p>	<p>경사(京師)에 나아가 구류된 사신의 집에 쌀과 콩을 차등 있게 하사했는데, 유구(柳珣)의 모친에게는 80곡(斛)을, 정신의(鄭臣義) 집에는 50곡을, 정충(鄭摠)의 모친에게는 60곡을, 김약항(金若恒)의 모친에게는 50곡을, 그리고 일행들의 집에도 각각 차등 있게 하였다.</p>	<p>賜赴京拘留使臣家米豆有差：柳珣母八十斛，鄭臣義家五十斛，鄭摠母六十斛，金若恒母五十斛，又賜一行人各家有差。</p>
<p>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5월 11일(정묘) 1번째기사 황영기의 부친인 중추 원 부사 황성에게 쌀 등을 하사하다</p>	<p>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황성(黃成)에게 쌀과 콩 50곡을 하사하였는데, 성(成)은 황영기(黃永奇)의 부친이다.</p>	<p>丁卯/賜中樞院副使黃成米豆五十斛。成，永奇之父也。</p>
<p>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6월 17일(계묘) 3번째기사 금주령을 폐지하다</p>	<p>금주령(禁酒令)을 폐지하였다.</p>	<p>罷禁酒令。</p>

<p>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6월 18일(갑진) 1번째기사 경상도 동래 만호와 석포 천호가 왜선 1척을 잡아 바치다</p>	<p>경상도 동래 만호(東萊萬戶) 윤형(尹衡)과 석포 천호(石浦千戶) 이의경(李義敬)이 왜구의 배 1척을 잡아서 군기와 갑옷을 바치니, 사람을 보내어 내온(內醞)을 하사하고 인하여 비단을 내려 주었다.</p>	<p>甲辰/慶尙道東萊萬戶尹衡、石浦千戶李義敬，捕倭船一隻，獻軍器衣甲，遣人賜醞，仍賜綺絹。</p>
<p>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7월 21일(병자) 1번째기사 각도 군인을 징발해 도성 역사를 마치려 했으나 신하들이 반대하다</p>	<p>임금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도의 군인을 징발해서 도성(都城)을 필역(畢役)하는 데 대해 그 가부(可否)를 물으니, 찬성사(贊成事) 이하가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므로, 임금이 불러서 물었다. “내가 도읍을 옮기고 성곽이 거의 다 되었는데, 필역하는 것을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이렇게 되면 내가 어찌 도읍을 여기에 옮기겠는가?” 삼사 좌복야(三司左僕射) 우인열(禹仁烈)이 대답하였다. “신 등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성을 쌓지 말자는 것이 아니옵고 풍년을 기다리자는 것이옵니다.” 정당 문학(政堂文學) 한상질(韓尙質)은 대답하였다. “신 등이 불가하다 하는 것은 금년에 초두에는 가물고 늦게는 물이 졌으며, 또 황충(蝗蟲)의 재(災)가 있어서 벼가 잘되지 못하였으므로, 내년을 기다려서 필역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벌써 각도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성 쌓는 역사에 올 사람들의 식량을 주게 하였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안익(安翊)이 대답하였다. “신 등이 이미 식량까지 준 명령이 계신 줄 모르고 불가하다 했사오니, 신 등</p>	<p>丙子/上命都評議使司，徵發各道軍人，畢築都城，問其可否，贊成事以下皆曰：“否。”上召問之曰：“予移都城郭幾成矣。其於畢築之役，皆曰否，何哉？如此則予豈移都於此乎？”三司左僕射禹仁烈對曰：“臣等之曰否，非謂其永不築城，姑待豐年耳。”政堂文學韓尙質對曰：“臣等曰否，以今年早旱晚水，又有蝗蟲之災，禾穀不登。以此請待來年，然後畢築爲便。”上曰：“予已命各道觀察使，給築城赴役之糧。”參贊門下府事安翊對曰：“臣等未知已有給糧之令，以爲否，臣等皆有罪焉。”上聞翊言，怒稍弛，命賜酒遣之。</p>

	이 모두 죄가 있습니다.” 임금이 익(翊)의 말을 듣고 노여움이 조금 풀려서 술을 주고서 보내었다.	
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3일(무자) 1번째기사 김영렬을 중추원 부사 겸 경기도 도절제사로 삼고, 궁온과 비단을 내리다	김영렬(金英烈)로 중추원 부사 겸 경기도 도절제사를 삼고, 대장군(大將軍) 정 귀(鄭龜)를 보내어 궁온(宮醞)과 비단을 내려 주었다.	戊子/以金英烈爲中樞院副使兼京畿都 節制使, 仍遣大將軍鄭龜, 賜宮醞綺 絹。
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9일(갑오) 2번째기사 판삼사사 설장수에게 쌀과 콩 50석등을 내 리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偈長壽)에게 쌀과 콩 50석을 내려 주었다.	賜判三司事偈長壽米豆五十石。
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17일(임인) 2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고 중외	명령을 내리어 금주(禁酒)하게 하고, 또 중외(中外)에서 매사냥하는 것을 금하 게 하였다.	下令禁酒, 又禁中外放鷹。

에 매사냥을 금하다		
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9월 9일(갑자) 3번째기사 도성 역사를 시찰하고 감독관에게 술을 내려 주다	임금이 도성(都城)의 역사를 시찰하고 감독관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	上觀都城役，賜酒監督官。
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9월 18일(계유) 1번째기사 군신을 인솔하고 성절 을 하례하다. 사신들에 게 연회를 베풀다	임금이 군신을 인솔하고 성절(聖節)을 하례(賀禮)하였다. 명나라의 사신 우우(牛牛) 등이 먼저 월대(月臺) 위에서 오배 삼고두례(五拜三扣頭禮)를 행하였다. 이날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癸酉/上率群臣，行賀聖節禮。 朝廷使臣牛牛等，先於月臺上，行五拜三扣頭禮。 是日，幸太平館，享使臣。
태조 10권, 5년(1396	임금의 탄일(誕生日)이기 때문에 중 1백 8명을 궁정에서 밥먹이고 《금강경(金	乙未/上誕生日。 飯僧百八於宮庭，讀

<p>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0월 11일(을미) 1번째기사 임금의 탄일이라 중에게 《금강경》을 읽게 하다. 죄수를 석방하고 우현보·이전을 복권시키다</p>	<p>剛經》을 읽게 하였다. 중외(中外)의 이죄(二罪) 이하의 죄수를 모두 석방하고, 우현보(禹玄寶)와 이진(李專) 등의 〈적몰(籍沒)했던〉 가산(家産)을 돌려 주었다.</p>	<p>《金經》，有中外二罪以下囚，賜還禹玄寶、李專等家産。</p>
<p>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0월 18일(임인) 3번째기사 알도리 족의 소을마 월자 등이 와서 방물을 바치다</p>	<p>알도리(幹都里) 소을마(所乙麻)·월자(月者) 등이 와서 방물(方物)을 바치므로, 저포(苧布)·마포(麻布)·면포(縣布) 20필을 내려 주었다.</p>	<p>幹都里所乙麻月者等來獻方物，賜苧麻縣布二十匹。</p>
<p>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11월 20일(갑술) 2번째기사 경상도 도절제사 최운해에게 궁온과 비단을 내려 주다</p>	<p>합문 사인(閣門舍人) 권효(權曉)를 경상도에 보내서 최운해(崔雲海)에게 궁온(宮醞)과 비단을 내려 주었다.</p>	<p>遣(閣) [閣] 門舍人權曉于慶尙道，賜崔雲海宮醞綺絹。</p>
<p>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p>	<p>임금이 흥천사(興天寺)에 거둥하여 공장(工匠)들에게 음식을 주었다.</p>	<p>丙戌/上幸興天寺，命餉工役。</p>

<p>29년) 12월 1일(병술) 1번째기사 홍천사에 거둥하여 공 장들에게 음식을 주다</p>		
<p>태조 11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월 15일(무진) 3번째기사 풍해도 도관찰사가 도 성 역사에 전미와 진 태를 내주게 할 것을 건의하다</p>	<p>풍해도 도관찰사가 상언(上言)하였다. “도내의 인민들이 풍수재(風水災)와 황충(蝗蟲)의 재해로 말미암아 농사를 실패하고 기아와 곤고에 시달리고 있사운데, 이제 도성의 역사에 각자 식량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곤란이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니, 원컨대 도내의 전미(田米)와 진태(陳太)를 지급하게 하옵소서.” 임금이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p>	<p>豐海道都觀察使上言：“道內人民，風水蟲蝗之災，失農飢困，今赴都城之役，各自齋糧，艱苦茲甚。願給道內田米陳太。”上命給之。</p>
<p>태조 11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월 22일(을해) 1번째기사 창성 부원군 성여완의 졸기</p>	<p>창성 부원군(昌城府院君) 성여완(成汝完)이 졸하였다. 여완은 본관이 창녕(昌寧)으로 판도 총랑(版圖摠郎) 성군미(成君美)의 아들이다. 지원(至元) 병자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춘추관의 검열(檢閱)이 되고, 여러 번 옮겨 군부 정랑(軍簿正郎)·양광도 안렴사(楊廣道按廉使)를 거쳐, 상서 우승(尙書右丞)·지형부사(知刑部事)·어사 중승(御史中丞)·전법 판사(典法判事) 등을 역임하였다. 그 중간에 해주(海州)·충주(忠州)의 두 목사(牧使)로 나갔고, 첨서 밀직(僉書密直)·정당 문학(政堂文學) 등 직에 승진되었다. 개국초에 나라의 기로(耆老)로서 검교 문하 시중(檢校門下侍中)에 임명, 창성 부원군이 되었다. 나이 89세에 병으로 졸하니, 미두(米豆) 1백 석을 내려 주고 예장(禮葬)으로 장사하였으며, 문정(文靖)이란 시호를 내려 주었다. 여완은 그 성품이 간결(簡潔)하여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아들을 가르치는 데도 법도가 있었다. 세 아들이 모두 과거에 올라, 맏아들 성석린(成石璘)은 지금 의정부 좌정승이고, 다</p>	<p>乙亥/昌城府院君成汝完卒。汝完，昌寧人，版圖摠郎君美之子。至元丙子登第，拜藝文春秋檢閱，累遷軍簿正郎，按廉楊廣道。以歷尙書右丞，知刑部事，御史中丞，典法判事。間出爲海州、忠州二牧使，陞爲僉書密直、政堂文學。國初，以耆老拜檢校門下侍中、昌城府院君。年八十九，以病卒，賜米豆百石，禮葬之，贈諡文靖公。性簡潔，不喜華麗，教子有法。三子俱登第，長石璘今爲議政府左政丞，次石瑑開城留後，次石因戶曹判</p>

	음 성석용(成石瑑)은 개성 유후(開城留後)이며, 그 다음 성석인(成石因)은 호조 판서이다.	書。
태조 11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2월 27일(경술) 2번째기사 대마도에 가서 잡혀 있던 지울주사 이은을 데리고 온 박인귀 등에게 상을 내리다	박인귀(朴仁貴) 등 5인에게 쌀 각각 10석을 내려 주고, 그 집의 요역(徭役)을 면제하게 하였다. 처음에 울주사(蔚州事) 이은(李殷)이 왜구(倭寇)에게 잡혀가서 대마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인귀(仁貴) 등이 자청하여 대마도에 가서 은혜와 신의로 타일러서 이은(李殷) 등으로 더불어 돌아왔다.	賜朴仁貴等五人米各十石，令復其家。初蔚州事李殷，見執倭寇，留對馬島。仁貴等請往對馬島，諭以恩信，與殷等還。
태조 11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2월 28일(신해) 2번째기사 투항한 왜인 구육과 반인들에게 쌀 의복 등을 내리다	투항한 왜인 구육(庾六)에게 쌀 30석과 콩 20석을, 반인(伴人) 2명에게는 의복·갓[笠] 각각 한 벌씩을 내려 주었다.	賜降倭庾六米石三十、豆石二十，伴人二名衣笠各一件。
태조 11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4월 1일(계미) 1번째기사 안개가 끼다. 첫 물조기를 종묘에 친신하다	안개가 끼었다. 새로 난 석수어(石首魚)를 종묘(宗廟)에 친신(薦新)하였다.	癸未朔/霧。以新石首魚薦宗廟。

<p>태조 11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4월 25일(정미) 1번째기사 회암사 등지에서 성변 기양 법석을 베풀고, 소격전에서 화성 독초를 베풀다</p>	<p>판삼사사(判三司事) 이거인(李居仁)을 회암사(檜岩寺)에 보내고, 우복야(右僕射) 유구(柳珣)를 광암사(光巖寺)에 보내어 성변(星變)에 대하여 기도하여 재앙을 없애는 법석(法席)을 베풀고, 검교 참찬문하부사(檢校參贊門下府事) 최융(崔融)을 소격전(昭格殿)에 보내어 화성 독초(火星獨醮)를 베풀게 하였다.</p>	<p>丁未/遣判三司事李居仁于檜巖寺，三司右僕射柳珣于光巖寺，設星變祈禳消災法席，檢校參贊門下府事崔融于昭格殿，設火星獨醮。</p>
<p>태조 11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5월 6일(정사) 1번째기사 투항했다가 병선 약탈해 간 상만호를 없애어 우호 다지자며 대마도에 보낸 글</p>	<p>전 사재 소감(司宰少監) 박인귀(朴仁貴)를 보내어 일본 대마도(對馬島)에 통서(通書)하게 하였다. 그 글에 이러하였다. “조선국(朝鮮國) 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 조준(趙浚) 등은 일본국 대마도 수호(守護) 이대경(李大卿) 족하(足下)에게 서신을 부치노라. 본국은 귀방(貴邦)과 바다를 격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어 본래 서로 좋은 이웃으로 통했는데, 경인년 이래로 귀치도(貴治島)와 일기도(一岐島) 두 섬의 무뢰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도둑이 되어, 변경을 침략하게 되니 피해가 적지 않았다.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께서 즉위하시어 백성들이 무고(無辜)하게 피해 입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완흉(頑凶)을 섬멸하고 변방 백성을 구제하고자 뜻하였다. 이에 연해변(沿海邊)의 주군(州郡)에 명하여 전함을 수리하게 하고 날을 한정하여 행하려 하였는데, 연전에 도적의 괴수들이 영해부(寧海府) 축산도(丑山島)에 이르러 항복하기를 청하므로, 주상께서 그 내부(來附)하는 것을 가상하게 여기고 예전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시어, 울주(蔚州)에 처하게 하고 양식을 주어 완취(完聚)하게 하였더니, 뜻밖에 스스로 의심을 품어 우리의 수신(守臣)을 겁박하여 달아났고, 금년 봄에도 와서 항복하기를 청하므로 주상께서 전 죄를 용서하시고 변장(邊將)에게 명하여 후한 예로 대접하게 하였다. 그 부만호(副萬戶) 삼만호(三萬戶)라고 칭하는 자는 현재 서울에 있는데, 집과 의식을 주</p>	

	<p>어 예로 대접하고 있으나, 그 상만호(上萬戶)라는 자는 밀양에 이르러 후하게 잔치하여 호쾌하였으되, 저들이 배로 돌아가기를 청하므로 사람을 보내어 호송하였는데, 또 갑자기 의심을 내어 군선(軍船)을 겁박 약탈하고 다시 도망하여 달아났다. 얼마 뒤에 변장이 죽하의 글을 상문(上聞)하매, 주상께서 아름답게 여기어 지금 전 사재 소감(司宰少監) 박인귀를 보내어 통지하는 것이다. 저 상만호란 자는 이미 우리와의 약속을 배반하고 또 토주(土主)의 뜻에 위배되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만 죄악이 찬 것이 아니라, 곧 죽하의 죄인이다. 마땅히 익히 이해를 헤아려 죄인을 처 없애고 화호(和好)를 통하면 다행하겠다.”</p> <p>丁巳/遣前司宰少監朴仁貴，通書于日本對馬島。 書曰： 朝鮮國門下左政丞趙浚等，寄書日本國對馬島守護李大卿足下。 本國與貴邦，隔海相望，素通隣好。 自庚寅以來，貴治及一歧兩島無賴之人，相聚爲寇，侵掠邊境，爲害不小。 惟我主上卽位，憫念吾民無辜被害，志欲殄滅頑兇，拯濟邊民，命沿海州郡，修葺戰艦，刻日以行。 年前寇魁等，到寧海府丑山島請降，主上嘉其來附，不念舊惡，處以蔚州，給糧完聚，不意自懷疑貳，刼我守臣以走。 今年春，又來請降，主上有其前罪，命邊將待以厚禮。 其稱副萬戶、三萬戶者，卽今見在京城，給以第宅衣食，以禮待之；其稱上萬戶者，到密陽，宴犒加厚。 彼請還船所，遣人護送，乃又忽生疑貳，刼掠軍船，又復逃走。 旣而邊將以足下書上聞，主上嘉之，今遣前司宰少監朴仁貴，知會彼上萬戶者，旣與我背約，又背土主之意，是不惟稔惡於我，乃足下之罪人也。 是宜熟計利害，討除罪人，以通和好，幸甚。</p>	
<p>태조 11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6월 21일(신축)</p>	<p>일본(日本) 구주 절도사(九州節度使) 원요준(源了俊)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辛丑/日本九州節度使源了俊，遣人來獻土物。</p>

<p>1번째기사 일본 구주 절도사 원 요준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p>		
<p>태조 12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7월 3일(임자) 1번째기사 나세·최유경을 도추포 사·도체찰사로 각각 임명, 풍해도와 서북면 연해의 왜적을 잡게 하다</p>	<p>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로 치사(致仕)한 나세(羅世)로 경기(京畿)·풍해도(豊海道)·서북면 등처의 도추포사(都追捕使)를 삼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최유경(崔有慶)으로 경기·충청도 도체찰사를 삼고,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강중립(姜仲琳)으로 충청도 경차관을 삼아 병선을 거느리고 풍해(豊海)·서북면 연해(沿海) 등처에서 왜적을 잡게 하고, 한성 윤(漢城尹) 조익수(曹益修)를 보내어 여러 장수에게 술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壬子/以參贊門下府事致仕羅世爲京畿、豊海道西北面等處都追捕使，知中樞院事崔有慶爲京畿、忠淸道都體察使，判禮賓寺事姜仲琳爲忠淸道敬差官，率兵船捕倭于豊海西北沿海等處。遣漢城尹曹益修，賜醞諸將，送之。</p>
<p>태조 12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7월 4일(계축) 1번째기사 중랑장 신보안을 시켜 도찰리사 김주에게 술 을 내리다</p>	<p>중랑장(中郎將) 신보안(辛保安)을 서북면에 보내어 도찰리사(都察理事) 김주(金湊)에게 술을 주게 하고, 인하여 서울에 돌아오도록 명하였다.</p>	<p>癸丑/遣中郎將辛保安于西北面，賜酒都察理事金湊，仍命還京。</p>
<p>태조 12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7월 7일(병진) 1번째기사 진을서·신극공·신유현·</p>	<p>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진을서(陳乙瑞)로 해도 조진 도절제사(海道助戰都節制使)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신극공(辛克恭)·신유현(辛有賢)·장사정(張思靖)으로 조진 절제사(助戰節制使)를 삼아 풍해(豊海)·서북 연해(西北沿海) 등처의 왜적을 잡게 하고, 술을 주어 위유(慰諭)하여 보냈다.</p>	<p>丙辰/以商議中樞院事陳乙瑞爲海道助戰都節制使，中樞院副使辛克恭、辛有賢、張思靖爲助戰節制使，捕倭于豊海西北沿海等處，賜酒慰諭以送。</p>

장사정을 보내어 풍해도와 서북 연해의 왜적을 잡게 하다		
<p>태조 12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7월 11일(경신) 1번째기사</p> <p>순녕군 지·상의 중추원사 이천우 등을 해로로 보내어 왜구를 잡게 하다</p>	<p>순녕군(順寧君) 지(枝),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이천우(李天祐), 첨절제사(僉節制使) 전영부(全英富)·장철(張哲) 등을 해로(海路)로 보내어 갑사(甲士)·척석군(擲石軍)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왜구를 쫓아 잡게 하고,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근(李勲)에게 명하여 궁중의 술을 가지고 위로하여 보내게 하였다.</p>	<p>庚申/遣順寧君枝、商議中樞院事天祐、僉節制使全英富·張哲等於海路，率甲士、擲石軍騎船，追捕倭寇。命判中樞院事李勲，持宮醞慰送。</p>
<p>태조 12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7월 16일(을축) 1번째기사</p> <p>일본 구주 절도사가 토산물을 보내다</p>	<p>일본(日本) 구주 절도사(九州節度使)가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물(土物)을 바쳤다.</p>	<p>乙丑/日本九州節度使遣人來獻土物。</p>
<p>태조 12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8월 6일(을유) 3번째기사</p> <p>유구국 중산왕이 사신을 파견, 방물과 표류한 사람 9명을 함께 보내며 바친 글</p>	<p>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찰도(察度)가 사신을 보내어 글을 바치고 방물(方物)을 바쳤으며, 잡혀 있던 사람과 바람을 만나 표류한 사람 9명을 돌려보냈다. 서신은 이러하였다.</p> <p>“양의(兩儀)의 덕이 합하매 사시(四時)가 차서 있게 나뉘고, 여러 나라가 편안히 즐기고 만물이 곳을 얻었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조선 국왕 전하께서는 승평(昇平)한 정치를 이루시고 덕업이 융성한데, 또 가까운 사람에게 고만하지 않고 먼 사람을 잊지 않아서 바야흐로 덕택을 미루어 이웃나라에 은혜를 입히오니, 감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웁이 생각하건대, 어리석고 몽</p>	<p>琉球國中山王察度，遣使致書獻方物，發還被擄及遭風人九名。書曰：兩儀合德，四時分序，群邦安樂，萬物得所。恭惟朝鮮國王殿下，政致昇平，德業隆盛，仍且不泄邇不忘遠，方推德澤，寵惠隣邦，敢不忻抃！竊念愚蒙，僻居海邦，特修非儀，遣人馳獻。只緣阻隔滄波，末由親詣奉會，但知仰德</p>

	매하여 궁벽하게 바다 나라에 살아서 특별히 비의(非儀)를 닦아 사람을 보내어 치헌(馳獻)하옵니다만, 창과가 막혀 있기 때문에 친히 가서 받들어 회합할 수가 없사옵니다. 다만, 덕을 앙모하고 수를 빌 뿐입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대, 인자(仁慈)하게 살피시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祝齡而已。 伏望仁慈鑑納。
태조 12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8월 23일(임인) 2번째기사 제생원을 설치하다	제생원(濟生院)을 설치하고 각도로 하여금 매년 향약재(鄉藥材)를 실어다 바치기를 혜민국(惠民局)의 예(例)와 같이 하였다.	置濟生院， 令各道每歲輸納鄉藥材， 如惠民局例。
태조 12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8월 27일(병오) 1번째기사 회암사에 쌀 1백석을 하사하다	회암사(檜岩寺)에 쌀 1백 석을 하사하였다.	丙午/賜檜巖寺米百石。
태조 12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9월 4일(계축) 1번째기사 경기우도 수군 절제사 김을보가 왜선 1척을 나포하여 적 14명을 죽이고 24명을 생포하다	우도 수군 절제사(右道水軍節制使) 김을보(金乙寶)가 왜선 1척을 잡아 머리 14급(級)을 베이고 24명을 생금하여 바치니, 사농 경(司農卿) 김로(金輅)를 보내어 비단과 궁온(宮醞)을 하사하였다.	癸丑/右道水軍節制使金乙寶捕倭船一隻， 斬首十四級， 生擒二十四名以獻。 遣司農卿金輅， 賜綺絹宮醞。
태조 12권, 6년(1397)	도당(都堂)에 명하였다.	乙丑/命都堂曰： “慶尙道因水旱失農，

<p>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9월 16일(을축) 1번째기사 수재와 한재로 실농한 경상도의 감사에게 구 황에 힘쓰게 하다</p>	<p>“경상도는 수재·한재로 인하여 농사를 실패하였으니, 그 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군기(軍器)를 월과(月課)하는 것을 파하고, 오로지 구황(救荒)하는 것을 힘쓰게 하라.”</p>	<p>令其道監司， 罷月課軍器， 專務救荒。”</p>
<p>태조 12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0월 1일(기묘) 2번째기사 일본 구주 절도사가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 구주 절도사(九州節度使)의 사자와 본국의 중 범명(梵明)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九州節度使使者， 與本國僧梵明， 來獻土物。</p>
<p>태조 12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0월 8일(병술) 2번째기사 항복한 왜괴 구육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p>	<p>항복한 왜괴(倭魁) 구육(灰六)에게 쌀·콩 50석을 하사하였다.</p>	<p>賜降倭魁灰六米豆五十石。</p>
<p>태조 12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1월 14일(임술) 2번째기사 일본 육주목 의홍이 중 영범·영확 편에 토 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육주목(六州牧) 의홍(義弘)이 중 영범(永範)·영확(永廓)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六州牧義弘， 遣僧永範、永廓， 來獻土物。</p>
<p>태조 12권, 6년(1397)</p>	<p>임금이 명하여 강릉도(江陵道) 쌀 6백 석을 대산(臺山)·금강산(金剛山)의 여러</p>	<p>上命以江陵道米六百石， 施于臺山、金</p>

<p>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12월 3일(신사) 2번째기사 강릉도 쌀을 오대산과 금강산 여러 절에 보시하게 하다</p>	<p>절에 시사(施舍)하게 하였다.</p>	<p>剛山諸蘭若。</p>
<p>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월 7일(을묘) 4번째기사 동북면 도선무찰리사 정도전에게 궁은을 내려 주다</p>	<p>공조 전서(工曹典書) 이화상(李和尚)을 보내어 동북면 도선무찰리사(都宣撫察理使) 정도전(鄭道傳)에게 궁은(宮醞)을 내려 주었다.</p>	<p>遣工曹典書李和尚，賜醞于東北面都宣撫察理使鄭道傳。</p>
<p>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월 11일(기미) 1번째기사 경상도의 어염 실태 조사를 수년 뒤로 미룰 것을 청하며 민정을 보고한 도관찰사의 글</p>	<p>경상도 도관찰사(都觀察使)가 지영주사(知永州事) 우균(禹均)의 진언(陳言)을 전하여 보고 하였다. "어염(魚鹽)은 국용(國用)에 도움이 있고 민생에 긴급하여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삼면(三面)이 바다에 접하여 있으니, 어염의 이익이 대개 이미 어디든지 충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구(倭寇)의 침노와 도둑질 때문에 변방 백성들이 유이(流移)하여 사방으로 흩어진 것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성을 쌓고 못을 파고, 장수를 선택하고 군사를 훈련하여 공격하고 수비하는 것을 엄하게 하며,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안집(安輯)시키기 때문에, 근년부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차츰 돌아와서 생업(生業)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조관(朝官)을 연해변 여러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공사(公私)의 어염(魚鹽)과 각포(各浦)의 소산(所產)을 일일이 모두 조사하여 물어서, 갖추 공적(公籍)에 써서 해마다 세(稅)를 거두어 국용(國用)에 대</p>	<p>己未/慶尙道都觀察使傳報知永州事禹均陳言。其言曰：“魚鹽，有補於國用，有急於民生，不可廢也。我國三面濱海，魚鹽之利，蓋已隨處取足矣。然以倭寇侵竊，邊鄙之民，流移四散者，積有年矣。今我國家，築城鑿池，選將訓兵，以嚴攻守，以輯流亡，故自近年，流亡稍還，得遂生業。今乃分遣朝官，沿海諸州公私魚鹽與各浦所產，一皆考問，備書公籍，欲歲收其稅，以備國用，可謂良法矣。然側聞海濱甫集之民，聞是令下，恐公家權利爲</p>

	<p>비하려 하니, 좋은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듣건대, 바닷가의 겨우 모인 백성들이 이 영(令)이 내린 것을 듣고, 공가(公家)에서 이익을 독점하여 환(患)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떠돌아다니는 자가 많이 있으니, 나는 두렵건대, 나라에 이롭게 하려다가 도리어 이익이 없을까 생각됩니다.’ 하였습니다. 그옥이 생각하옵건대, 아직 수년(數年)을 기다려 항산(恒産)을 축적(蓄積)하여 읍기기를 중하게 여긴 연후에 이 법을 거행하여도 늦지 않을까 합니다.”</p> <p>도당(都堂)에서 상언(上言)하였다.</p> <p>“금년에는 아직 예전 액수에 의하여 세(稅)를 거두고, 후년을 기다려 다시 소출(所出)의 많고 적은 것을 조사하여 그 세(稅)를 작정(酌定)해서 민생을 편하게 하소서.”</p>	<p>患，復爲流亡者，比比有之。予恐欲利於國，而反無益也。竊以爲姑待數年，畜恒産重遷徙，然後舉行是法，未爲晚也。”都堂上言以爲：“今年且依舊額收稅，以待後年，更考所出多寡，酌定其稅，以便民生。”</p>
<p>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월 16일(갑자) 2번째기사 예문춘추관 태학사 유구의 졸기</p>	<p>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태학사(太學士) 유구(柳珣)가 졸(卒)하였다. 구(珣)는 진양(晉陽) 사람인데 지영광군사(知靈光郡事) 유혜방(柳惠方)의 아들이다. 과거에 올라 감찰 어사(監察御史)를 제수받았다. 신축년 겨울에 홍건적(紅巾賊)이 왕경(王京)을 함락시키니, 왕이 남쪽으로 행(行)하여 이천(利川)에 이르렀다. 구(珣)가 먼저 농장(農庄)에 이르러 통술[罇酒]과 들노루[野獐]를 거가(車駕) 앞에 드리니, 현릉(玄陵) 641이 유숙(柳淑)을 돌아보며 말하였다.</p> <p>“구(珣)의 오늘의 뜻을 잊지 말라.”</p> <p>이때로부터 알아줌을 입어 벼슬을 거쳐 우사의 대부(右司議大夫)에 이르렀다. 계축년에 나가서 경상도를 안찰(按察)하고, 들어와서 우상시(右常侍)가 되었으며, 경신년에 밀직 부사(密直副使)를 제수 받고, 경오년 봄에 나가서 양광도 도관찰사(都觀察使)가 되었다. 본조(本朝) 을해년에 미쳐 정당 문학(政堂文學)에 읍기어 드디어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에 이르렀고, 임금이 원종 공신(原從功臣)을 삼았다. 정조 진표사(正朝進表使)로 명나라 서울에 갔다가 억류</p>	<p>藝文春秋館太學士柳珣卒。珣，晉陽人，知靈光郡事惠方子。登第拜監察御史。歲辛丑冬，紅賊陷王京，王南行至利川。珣先至農庄，以罇酒野獐，獻于駕前，玄陵顧謂柳淑曰：“毋忘珣今日之意。”自是遇知，歷官至右司議大夫。歲癸丑，出按慶尙，入爲右常侍。庚申，拜密直副使，庚午春，出爲楊廣道都觀察使。及本朝乙亥，遷政堂文學，遂至參贊門下府事，上以爲原從功臣。以正朝進表使，赴京被留，至丙子冬乃還，病卒。年六十四。子謙。將終，戒之曰：“予以不才，叨遇</p>

	<p>를 당하여 병자년 겨울에야 돌아와서 병들어 죽었으니, 나이 64세였다. 아들은 유겸(柳謙)인데, 장차 죽으려 할 때에 경계하였다.</p> <p>“내가 재주가 없는데 분에 넘치게 성상의 알아주심을 만나, 항상 성상의 덕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한(恨)을 삼았다. 그러나 나이 60이 넘고 벼슬이 2품에 이르렀으니 또한 무슨 유한이 있겠는가? 다만 늙은 어머니가 당(堂)에 계신데 효도를 마치지 못하니 마음이 아프다. 네가 자식을 거느리고 조모(祖母)를 봉양하기를 내가 있던 날과 같이 하라.”</p> <p>구(珣)의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외식(外飾)을 힘쓰지 않았다. 시호(諡號)는 정평(靖平)이라 하였다.</p>	<p>上知，常以未報上德爲恨，然予年過六旬，位至二品，亦何憾哉？但以老母在堂，未得終孝痛心。爾率爾子，奉養祖母，如予在日。”珣爲人勤儉，不務外飾。諡靖平。</p>
<p>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월 17일(을축) 1번째기사 궁성 감독관의 장막이 연소되어 전 개성 윤 남성리가 죽다</p>	<p>궁성(宮城) 감독관(監督官)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 밤에 역부(役夫)가 불을 내어 북면(北面) 감독막(監督幕)이 연소(延燒)되었는데, 전 개성 윤(開城尹) 남성리(南成理)가 술에 취하여 나오지 못해서 죽었다.</p>	<p>乙丑/賜酒宮城監督官。夜，役夫失火，延燒北面監督幕。前開城尹南成理，因醉未出而死。</p>
<p>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월 29일(정축) 3번째기사 조서 부모에게 쌀과 콩을 내려 주다</p>	<p>조서(曹庶)의 부모에게 쌀·콩 1백 석을 내려 주었다.</p>	<p>賜曹庶父母米菽百石。</p>
<p>태조 13권, 7년(1398</p>	<p>유구국(琉球國)의 산남왕(山南王) 온사도(溫沙道)가 그 소속 15인을 거느리고 왔다. 사도(沙道)가 그 나라의 중산왕(中山王)에게 축출당하여 우리 나라의 진</p>	<p>癸巳/琉球國山南王溫沙道率其屬十五人來。沙道見逐於其國中山王，來寓</p>

<p>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2월 16일(계사) 1번째기사</p> <p>진양에 우거 중인 유구국 산남왕 온사도가 소속 15인을 거느리고 오니 의복과 양식을 주다</p>	<p>양(晉陽)에 와서 우거(寓居)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해마다 의식(衣食)을 주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나라를 잃고 유리(流離)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어 의복과 쌀·콩을 주어 존휼(存恤)하였다.</p>	<p>晉陽，國家歲給衣食。至是，上以失國流離，賜衣服米菽，存恤之。</p>
<p>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3월 3일(경술) 1번째기사</p> <p>궁성 쌓는 인부들을 돌려보내고 죽은 자의 집은 3년 동안 복호하게 하다</p>	<p>궁성을 쌓는 역도(役徒)들을 놓아보내도록 명하였다. 병들어 죽은 자가 모두 54명인데,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각각 쌀·콩을 주고 그 집을 3년 동안 복호(復戶)하게 하였다.</p>	<p>庚戌/命放宮城役徒。其病死者，摠五十四名，令所在官各給米菽，復其家三年。</p>
<p>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3월 17일(갑자) 2번째기사</p> <p>제주인 고여충을 축마 별감으로 삼고 제주</p>	<p>제주(濟州) 사람 고여충(高汝忠)으로 축마 별감(畜馬別監)을 삼고, 제주 만호(濟州萬戶) 김천신(金天伸)에게 비단 2필과 내온(內醞) 2백 병을 주고, 인하여 여충(汝忠)의 어미에게 쌀·콩 30석을 주었다.</p>	<p>以濟州人高汝忠，爲畜馬別監。賜濟州萬戶金天伸綺絹二匹、內醞二百瓶，仍賜汝忠母米菽三十石。</p>

만호에게 비단과 술을 내리다		
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3월 17일(갑자) 3번째기사 제주에 세공마 백 필과 소 백 두를 바치게 하다	제주(濟州)에 명하여 세공마(歲貢馬) 1백 필과 소 1백 두(頭)를 바치게 하였다.	命濟州歲貢馬一百匹、牛一百頭。
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3월 29일(병자) 4번째기사 각도 기민을 진휼하게 하다	각도의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하도록 명하였다.	命賑各道飢民。
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4월 4일(경진) 3번째기사 삼사에 명하여 염세 및 어량과 고깃배의 세금을 조사하게 하다	삼사(三司)에 명하여 각도의 경차관(敬差官)과 함께 바다를 졸이[煮海]고 모래를 굽[燔沙]는 염세(鹽稅)의 다소(多少)와, 어량(魚梁)과 선세(船稅)의 다소(多少)를 조사하게 하였다.	命三司，同各道敬差官，點煮海燔沙鹽稅多少及魚梁船稅多少。
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4월 4일(경진) 3번째기사 삼사에 명하여 염세 및 어량과 고깃배의 세금을 조사하게 하다	양가 도승통(兩街都僧統) 상부(尙孚)가 중[僧]이 술 마시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헌사(憲司)로 하여금 엄히 금(禁)하게 하고, 이를 범(犯)하는	兩街都僧統尙孚上請禁僧飲酒，上令憲司痛禁，犯者，長髮充軍。

<p>31년) 4월 11일(정해) 2번째기사 양가 도승통 상부가 중이 술마시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다</p>	<p>자는 머리를 길러 충군(充軍)하게 하였다.</p>	
<p>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4월 23일(기해) 2번째기사 고 시중 조민수의 재 산과 곡식을 돌려주도 록 도당에 명하다</p>	<p>도당(都堂)에 명하여 고(故) 시중(侍中) 조민수(曹敏修)에게 재물과 곡식을 주 어 돌려보내었다.</p>	<p>命都堂，給還故侍中曹敏修財穀。</p>
<p>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5월 1일(정미) 1번째기사 홍천사 북쪽에 사리전 을 건축하도록 명하다</p>	<p>임금이 홍천사(興天寺)에 가서 사리전(舍利殿) 3층을 홍천사의 북쪽에 건축하 도록 명령하고, 각영(各領)의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로 자원하는 사람 50명 을 모집하여 식량을 주어 부역(賦役)에 나오게 하였다.</p>	<p>丁未朔/上如興天寺，命營舍利殿三層 于寺北，募各領隊長隊副自願者五十 人，給糧赴役。</p>
<p>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5월 2일(무신) 2번째기사 영성 부원군 오사충이 금주하기를 청하다</p>	<p>영성 부원군(寧城府院君) 오사충(吳思忠)이 글을 올려 금주(禁酒)하기를 청하 니, 그대로 따랐다.</p>	<p>寧城府院君吳思忠上書請禁酒，從之。</p>
<p>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p>	<p>큰 바람이 불었다. 가회방(嘉會坊)의 인가(人家)에서 불을 내어 불길(火)이 이웃으 로 번져서 1백 43가(家)를 태웠는데, 요물고(料物庫: 왕궁의 미곡(米穀)을 쌓</p>	<p>己酉/大風。嘉會坊人家失火，延燒一 百四十三家，料物庫亦災。上見火嘆</p>

<p>31년) 5월 3일(기유) 1번째기사 큰 바람이 불다. 가회 방 인가에서 불이 나 집 143채와 요물고를 태우다</p>	<p>아 둔 창고) 도 또한 불에 탔다. 임금(기) 화재(火災)를 보고 탄식하였다. “가뭄이 이미 대단히 심한데 화재가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죄가 무엇이란 말 인가? 다만 궁궐의 역사는 가벼이 중지할 수 없어 백성을 괴롭히는데 이르렀 을 뿐이다.”</p>	<p>曰：“旱既太甚，火災又爾，我罪伊何？ 第宮闕之役，不可輕輟，以至勞民 耳。”</p>
<p>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5월 3일(기유) 4번째기사 간관이 재변의 원인이 жат은 역사에 있음을 지적하다</p>	<p>간관(諫官)이 상언(上言)하였다. “경서(經書)에,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여 감히 즐거이 놀지 못하며,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 시기에 보전해야 된다.’ 하였사운데, 삼가 보오니, 근년 이후에는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잇달아 발생하여 백성들이 그 직업 을 잃고 굶주려 유망(流亡)하는 사람이 자못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르러 봄부터 여름이 다 가도록 늘 별만 쪼이고 비는 오지 않으므로, 천 리 땅에 초목이 자라나지 않아서 이미 씨앗을 뿌릴 시기를 놓치고 또한 보리의 수확도 없게 되었으니, 무릇 신민(臣民)에게 있어서는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금께서 마음속으로 매우 염려하시니 신(神)에게 제사를 거행하지 않은 데가 없이 기도(祈禱)의 정성이 지극하였는데도 오히려 하늘의 뜻을 감 동시키지 못하여 가뭄이 더욱 심하였고, 전일에는 폭풍이 크게 일어나서 불이 번져 1백여 가(家)를 태우고 닭과 개에까지 화(禍)가 미치며 임금에게 공궐 (供饋)하는 창고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가뭄의 재앙이 극도에 달했으며, 하 늘의 재변(災變)을 내림이 컸던 것입니다. 옛날에 탕왕(湯王)은 가뭄을 만나 두려워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스스로 꾸짖기를, ‘정사(政事)가 절차를 잃었는 가? 백성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였는가? 아니면 어째서 비가 오지 않음이 이같은 극도에 이르렀는가? 궁실(宮室)을 건축하였는가? 참소하는 사람이 기 세가 강성한가? 아니면 어째서 비가 오지 않음이 이같은 극도에 이르렀는가?’ 하였습니다. 대저 탕왕(湯王)의 성군(聖君)으로서도 자기 잘못을 꾸짖음이 이</p>	<p>諫官上言曰：“《經》曰：‘敬天之怒， 無敢戲豫；畏天之威，于時保之。’伏 見近年以來，水旱相仍，民失其業，飢 饉流亡者，頗多有之。至于今歲，自 春徂夏，恒陽不雨，赤地千里，既失播 種之期，又無麩麥之收，凡在臣庶，罔 不咨嗟。宸衷軫念，靡神不舉，祈禱 之誠至矣，尚不能感動天意，旱魃尤 甚。乃於前日，暴風大作，火延百有 餘家，禍及雞犬，以至上供之廩，亢陽 之災極矣，天之爲變大矣。昔成湯遇 旱而懼，反躬自責曰：‘政不節歟？使 民疾歟？何以不雨至此極也？宮室營 歟？讒夫昌歟？何以不雨至此極也？’ 夫以成湯之聖，而自責若是其至，故天 乃雨，而終不爲民害。竊伏惟念，卽 位以來，連歲興役，民不休息。殿下 深念其弊，只令工匠及遊手、僧徒，供 億以役之，然諸處服役之人，不下數</p>

	<p>와 같이 지극했던 까닭으로, 하늘이 그제야 비를 내려서 마침내 백성의 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만히 삼가 생각해 보건대, 전하(殿下)께서 왕위에 오르신 이후로 해마다 역사(役事)를 일으켜 백성이 휴식하지 못하게 되니, 전하께서 그 폐단을 염려하여 다만 공장(工匠)과 놀고 있는 사람과 중들로 하여금 양식을 공급하여 복역(服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 복역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으니, 그들이 처자(妻子)를 떠나 오고 부모를 멀리 두고서 몇 해 동안 노고(勞苦)하게 된 원망이 어찌 화기(和氣)를 손상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은, ‘장차 만세(萬世)의 터전을 세우게 되니, 구구한 작은 폐단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신(臣)의 생각으로는 만세(萬世)의 터전을 만드실 한때에 갑자기 성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궁궐의 정침(正寢)이 이미 이루어졌고 도읍의 성이 이미 축조(築造)되었으니, 두서너 해 동안 휴양한 후에 그 공역(工役)을 마치게 하더라도 또한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여 탕왕(湯王)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가져 모든 토목(土木)의 영선(營繕)은 일체 정지하고, 부역(賦役)에 나오는 백성으로 하여금 각기 그 부모와 처자(妻子)의 양육에 돌아가게 한다면, 고생하면서 돌아가기를 생각하는 원망이 그치게 되어 화기(和氣)가 응하게 될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궁궐 조성 도감(宮闕造成都監)을 폐하고 그 사무를 선공감(繕工監)에 귀속(歸屬)시켜 명칭에 좇아 실상을 책임지워 백성의 힘을 펴게 하소서.”</p> <p>임금이 명하여 도망한 중을 대신 선 사람과 처자(妻子)가 있는 중 27명과 기술이 익숙하지 못한 공장(工匠) 5백 45명을 놓아보내게 하였다.</p>	<p>千。其離妻子遠父母，數年勞苦之怨，豈不召傷和氣乎？人之言曰：‘將建萬世之基，則區區小弊，不足爲慮。’臣等以爲萬世之基，不必遽成於一時也。幸今宮寢既成，都城已築，休養數年，然後以訖其功，亦未晚也。願殿下，敬天之怒，以成湯之心爲心，凡土木營繕，一切停罷，令赴役之民，各還其父母妻子之養，則勞苦懷歸之怨息，而和氣庶可應矣。請罷宮闕造成都監，以其事務，歸於繕工監，循名責實，以裕民力。” 上命放逃僧代立者及有妻子僧二十七、未成才工匠五百四十五。</p>
<p>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p>	<p>환자(宦者) 이광(李匡)에게 명하여 내온(內醞)을 도당(都堂)에 내리게 하였다.</p>	<p>命宦者李匡，賜醞于都堂。</p>

<p>31년) 5월 6일(임자) 2번째기사 내온을 도당에 내려 주다</p>		
<p>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5월 18일(갑자) 2번째기사 흥천사에 거둥하여 사리전 지을 터를 시찰하고 조속한 완성을 부탁하다</p>	<p>임금이 흥천사(興天寺)에 거둥하여 사리전(舍利殿)을 건축할 기지(基地)를 시찰하고, 감역 제조(監役提調) 김주(金湊)에게 일렀다. “정릉(貞陵)과 요물고(料物庫)를 빨리 만들 필요는 없으며, 이 사리전(舍利殿)은 건축을 위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일을 마치지 않으면 후일에 이를 저지(沮止)시킬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니, 마땅히 빨리 성취하여 나의 원망에 보답하라.” 드디어 궁궐에 돌아와서 유만수(柳曼殊)·도흥(都興)·유운(柳雲) 등과 더불어 격구(擊毬)의 놀이를 하였다.</p>	<p>上幸興天寺，觀舍利殿築基，謂監役提調金湊曰：“貞陵與料物庫，不必速成。此殿願營久矣，今不畢功，恐後有沮之者。宜速考成，以償吾願。”遂還宮，與柳曼殊、都興、柳雲等爲擊毬之戲。</p>
<p>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5월 20일(병인) 1번째기사 복업인 이백안 등이 요동에서 오다</p>	<p>복업인(復業人) 이백안(李伯顔)·부개(夫介)와 장님 김효도(金孝道)가 요동(遼東)으로부터 오니, 의복과 양식을 내려 주었다.</p>	<p>丙寅/復業人李伯顔·夫介、盲人金孝道，來自遼東，賜衣糧。</p>
<p>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5월 25일(신미) 2번째기사 대마도에 잡혀 갔던 8명과 귀화하는 왜인 9명이 함께 오다</p>	<p>대마도(對馬島)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 8명이 왜인(倭人) 9명과 더불어 오니, 그들에게 각기 그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왜인은 주현(州縣)에 나누어 거처하게 하여 각기 의복과 양식을 내려주었다.</p>	<p>對馬島被擄人八名，與倭人九名來，使各還其家；分處倭人于州縣，各賜衣糧。</p>

<p>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5월 28일(갑술) 2번째기사 각도에 금주령을 철저히 지키도록 엄하게 명을 내리다</p>	<p>각도에 술을 금하는 영을 거듭 엄하게 하였다.</p>	<p>申嚴各道酒禁之令。</p>
<p>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윤5월 6일(신사) 2번째기사 청주 목사 김자수가 흉년인 이 해의 맥세를 면제해주기를 청한 글</p>	<p>청주 목사(淸州牧使) 김자수(金自粹)가 연사(年事)가 흉년이 든 이유로써 감사(監司)에게 글로 진술하여 금년의 맥세(麥稅)를 면제해 주기를 청하여 말하였다. “지금 사사(使司)에서 가뭄이 심하여 연사(年事)가 흉년이 든 이유로써 주군(州郡)에 영을 내리어 적당한 데 따라 흉년을 구휼(救恤)하게 하되, 만약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리는 관부(官府)의 명령을 소홀히 한 죄로써 엄격하게 징계한다 하여, 그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뜻이 말 밖에 풍기고 있으니, 이를 두 번이나 읽으며 삼가 두려워서 진실로 마땅히 받들어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삼가 생각하옵건대, 백성을 사랑함이 비록 간절하더라도 만약 실지의 은혜가 없으면 모두 빈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그해 조세(租稅)의 반을 미리 내려 주어 농민을 권장했으므로, 후현(後賢)이 그 실지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게 된 것을 칭찬했으니, 이것이 한나라 문제(文帝)가 된 이유입니다. 국가에서 조세(租稅)를 거둬서 매양 6월 초기에 밭이 익을 때를 당하면, 문득 즉시 이를 거두어 경창(京倉)에 수송하고는 이를 선납(先納)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하는 예(例)입니다. 금년은 3월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이달까지 이르게 되고, 비록 한 달씩 걸러 한 번 비가 왔으나 흠에 들어감이 두서너 치[寸]에 미치지 못하고, 조금 후에 곧 날씨가 개게 되어 가뭄의 맹렬함이 날마다 더 심하니, 이 까닭으로</p>	<p>淸州牧使金自粹以年饑， 陳書于監司， 請免今年麥稅。 其書曰： 今使司以旱甚年饑， 下令州郡， 隨宜救荒， 若使一有餓莩， 當該官吏， 痛懲慢官之罪。 其憂國愛民之意， 藹然言外， 讀之至再， 惕然恐懼， 固當奉行。 竊伏惟念， 愛民雖切， 若無實惠， 皆空言也。 昔漢文帝預賜當年租稅之半， 以勸農民。 後賢美其實惠之及民， 此所以爲漢文也。 國家收租， 每當六月之初， 小麥告熟， 便卽收之， 以輸京倉， 謂之先納， 年例也。 今年則自三月不雨， 以至今月， 雖間月一雨， 入土未及數寸， 尋卽開霽， 亢陽之烈， 日甚一日。 以故大小麥實， 悉爲損耗。 卽(令) [今] 飢民， 嗷嗷待哺， 尙不能充其腹， 況望其秋耕之種乎？ 然則所謂先納， 何從而徵納乎？ 乞今年先納， 一皆</p>

	<p>보리·밀의 열매가 모두 감손(減損)되었습니다. 지금 굶주린 백성이 슬피 울면서 먹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 배를 채워 주지 못하는데, 하물며 가을 밭갈이의 종자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른바 선납(先納)이라는 것은 어디서 징수해 바치게 하겠습니까? 원컨대, 금년의 선납은 일체 모두 감면시켜 백성의 힘을 펴게 한다면, 실지 은혜의 백성에게 미친 것이 이보다 더 긴절한 것이 없을 것이며, 흉년을 구휼(救恤)하는 긴요한 사무도 이보다 더 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군수(郡守)의 임무는 직책이 임금의 근심을 나누는 데 있는데, 본 바의 백성의 고통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감히 죽기를 무릅쓰고 청하오니, 삼가 전하여 아뢰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전하여 보고하니, 도당(都堂)에서 그 의논을 옹계 여겨 임금에게 아뢰어 여러 도(道)의 맥세(麥稅)를 감면해 주었다.</p>	<p>蠲免，以寬民力，則實惠之及民，莫此爲切，救荒之要務，莫此爲急。郡守之任，職在分憂，所見民瘼，不容不言，敢昧死以請，伏望轉聞施行。 監司傳報，都堂是其議，聞于上，減諸道麥稅。</p>
<p>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윤5월 6일(신사) 3번째기사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내어 백성을 진휼케 하다</p>	<p>경상도 관찰사가 굶주린 백성을 진휼(賑恤)하기를 청하니, 좌정승 조준 등이 아뢰었다. “굶주린 백성은 각도마다 모두 이와 같은데, 만약 모두 이를 진휼한다면 창고에 남는 저축이 없을 것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였다. “창고에 곡식이 있으면 다 내어 백성을 진휼하라.”</p>	<p>慶尙道觀察使請賑飢民。左政丞趙浚等啓曰：“饑饉之民，各道皆是。如皆賑之，廩無餘蓄，奈何？”上曰：“廩有粟，則盡發賑之。”</p>
<p>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윤5월 14일(기축) 1번째기사 각도에 명하여 창고의 쌀과 콩을 나누어 주</p>	<p>각도에 명령하여 창고의 쌀과 콩을 내어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보리를 바꾸어 바치게 하였으니, 장차 백성에게 주어서 종자로 하게 함이었다.</p>	<p>己丑/令各道發倉米菽，分給於民，貿納牟麥，將給民爲種。</p>

고 보리로 바치게 하다		
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6월 3일(정미)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술 마신 홍복사 중 사근을 환 속시키길 청하다	홍복사(興福寺)의 중 사근(斯近)이 술을 마셨다가 일이 발각되니, 헌사(憲司)에서 도로 속인(俗人)이 되게 하여 군대에 편입하기를 청하였다.	興福寺僧斯近飲酒事覺，憲司請還俗充軍。
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7월 27일(경자) 2번째기사 일본 비전주 준주 태 수 원경이 예물을 바 치다	일본 비전주(肥前州) 준주 태수(駿州太守) 원경(源慶)이 사람을 시켜 예물을 바쳤다.	日本肥前州駿州太守源慶，使人獻禮物。
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8월 6일(기유) 2번째기사 경상도 도관찰사가 실 농을 이유로 노비 송 사를 잠정적으로 정지 하도록 청하다	경상도 도관찰사 임정(林整)이 보고하였다.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벼가 익지 않았으니, 잠정적으로 노비(奴婢)의 송사 판결을 정지하고서 백성이 상수리와 밤을 줍고 가을 같이 한 후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임금이 연사(年事)가 한정되었다는 이유로써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慶尙道都觀察使林整報：“自夏及秋不雨，禾穀不稔。且停奴婢決訟，以待民拾橡栗秋耕之後。”上以限年事，不允。
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임금이 수정포도(水精葡萄)를 먹고 싶어 하여, 조순(曹恂)을 명하여 세자와 여러 왕자에게 교지를 전하였다.	上思食水精蒲萄，命曹恂傳旨世子及諸王子曰：“予則無父，圖畫影子，以寄

<p>31년) 9월 1일(계유) 3번째기사 임금이 수정포도를 먹고 싶어 했는데 경력 김정준이 바치다</p>	<p>“나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므로 영자(影子)를 그려서 사모(思慕)하게 되는데, 내가 비록 쇠약하나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너희들은 다행한 편이다. 지금 병이 오래 낫지 아니하여 수정포도를 먹고자 한다.” 세자와 여러 왕자들이 모두 소리를 높여 울면서 즉시 상림원 사(上林園史) 한간(韓幹)에게 명하여 유후사(留後司) 746) 와 기내 좌도(畿內左道)에 널리 구하였는데, 경력(經歷) 김정준(金廷雋)이 산포도가 서리를 맞아 반쯤 익은 것을 한 상자를 가지고 와서 바치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였다.</p>	<p>思慕。予雖衰憊，尙有氣息，爾等幸矣。今也疾彌留，欲食水精蒲萄。”世子及諸王子皆號泣，卽令上林園史韓幹，旁求于留後司及畿內左道。經歷金廷雋齎山蒲萄經霜半熟者一箱以進，上大悅。</p>
<p>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3일(을해) 1번째기사 한간이 수정포도를 바치다. 왕의 병이 이로부터 회복되다</p>	<p>한간(韓幹)이 수정포도(水精葡萄)를 구하여 와서 바치므로, 임금이 매우 기뻐하여 쌀 10석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매양 목이 마를 적엔 한두 개를 맛보니, 병이 이로부터 회복되었다.</p>	<p>乙亥/韓幹得水精葡萄來獻，上喜甚，賜米十石。上每喉渴，嘗一二箇，疾自此康復。</p>
<p>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7일(기묘) 1번째기사 붉은 기운이 있었다. 상왕이 이방석 등을 위하여 소선을 들다</p>	<p>붉은 기운이 있었다. 상왕(上王)이 이방석(李芳碩) 등을 위하여 소선(素膳)을 드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육선(肉膳)을 올리기를 청하였다.</p>	<p>己卯/有赤氣。上王爲芳碩等素膳，都評議使司請進肉膳。</p>
<p>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12일(갑신) 5번째기사</p>	<p>임금이 경진일로부터 재계(齋戒)하고 병술일에 법가(法駕)를 갖추어 태묘(太廟)의 악차(幄次)에 나아갔다. 정해일에 임금이 친히 강신제(降神祭)를 지내어 왕위에 오른 일을 고하기를 마치고, 악차(幄次)에 나와서 여러 신하들의 하례(賀禮)를 받고, 어가(御駕)가 돌아와 정전(正殿)에 앉아서 교지(教旨)를 반포하</p>	<p>上自庚辰齋戒，丙戌，備法駕詣太廟幄次。丁亥，上親裸以告卽位訖，出於幄次，受群臣賀，駕還坐正殿，頒教旨：王若曰，恭惟上王，應天順人，肇造邦</p>

태묘에 고유하고, 정전에 앉아 즉위 교서를 반포하다

였다.
 “왕은 말하노라. 삼가 생각하건대, 상왕(上王)께서 천리(天理)와 인심(人心)에 순응하여 비로소 국가를 세우고 강기(綱紀)를 베풀어 만세(萬世)에 모범을 보였는데, 불행히도 간신(奸臣) 정도전과 남은 등이 연줄을 타서 권세를 부리고 몰래 권력을 마음대로 하기를 도모하였다. 이에 어린 서자(庶子)를 세자로 세워 후사(後嗣)로 삼고서 장유(長幼)의 차례를 빼앗고 적서(嫡庶)의 구분을 문란시키고자, 우리 형제를 이간시켜 서로 선동하여 변고를 발생시켜서 화(禍)가 불측할 지경에 있었는데, 다행히 천지와 종사(宗祀)의 신령이 몰래 도와주고 충신 의사(義士)들이 마음과 힘을 다함에 힘입어, 간악한 무리들이 형벌에 복종하여 참형(斬刑)을 당하고 나라의 운명이 편안하게 되었다. 삼가 상왕(上王)께서 병환이 나서 오랫동안 낫지 않으므로, 내 소자(小子)가 몸이 적장(嫡長)의 지위에 있어 뒷 일을 능히 부탁할 만하다고 여겨, 이에 왕위에 오르라고 명하시었다. 내가 덕이 없는 사람이므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마침내 사양할 수 없게 되어, 홍무(洪武) 31년 9월 초 5일 정축에 근정전(勤政殿)에서 왕위에 오르고, 10일 정해에 몸소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면류관(冕旒冠)을 쓰고서 종묘(宗廟)에 제사지내었다. 돌이켜 생각하건대, 상왕께서 제왕의 정치에 염증이 나서 나 소자(小子)에게 맡겼으니, 원컨대 한 나라로써 영구히 봉양(奉養)하겠으므로 각 관사(官司)의 공상(供上)과 여러 도(道)의 진헌(進獻)은 한결같이 상왕이 왕위에 계시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지금 혁신(革新)하는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새로운 교화(教化)를 선포해야 될 것이니, 그 홍무(洪武) 31년 9월 15일 이른 새벽 이전에 있었던 대역(大逆)·강도(強盜)·고독(蠱毒) 751) ·염매(魘魅) 752) 와 고의로 살인(殺人)한 것과, 정도전·남은의 당여(黨與)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던 것이든지 발각되지 않은 것이든지 모두 사유(赦宥) 면제하니, 감히 유지(有旨) 전의 일로써 서로 고발해 말하는 사람은 그 고발한 죄로써 처벌하게 할 것이다. 무릇

家，立經陳紀，爲法萬世。不幸奸臣鄭道傳、南閻等，夤緣用事，潛謀擅權，貪立幼孽，欲爲後嗣，以奪長幼之序，以亂嫡庶之分，離間我骨肉，相煽生變，禍在不測。幸賴天地宗社之靈，有以陰相，忠臣義士，盡心効力，奸黨伏誅，國步載安。伏值上王失豫彌留，謂予小子身居嫡長，堪托後事，乃命以位。予以否德，慄慄危懼，讓至再三，終不獲辭。於洪武三十一年九月初五日丁丑，卽位于勤政殿，越十日丁亥，躬服袞冕，祀于宗廟。顧惟上王，厭煩萬機，俾付予小子，願以一國，奉養惟永，各司供上，諸道進獻，一如在位之日。茲當更始之初，宜布惟新之化。其在洪武三十一年九月十五日昧爽已前，除大逆強盜、蠱毒魘魅、謀故殺人及道傳、南閻黨與外，已發覺未發覺，咸宥除之。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以其罪罪之。凡有便民事宜，條列如左。一，宗社之祭，當盡誠敬。陳設酌獻之具，務要精潔，禮文樂章，務要中節，毋敢不恭。一，文宣王，百王之師，釋采之禮，當致精潔，毋或不虔。一，箕子受封朝鮮，實基

	<p>백성에게 편리한 사의(事宜)를 조목별로 열거(列舉)하면 아래와 같다.</p> <p>1.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제사는 마땅히 성심과 공경을 다하여, 진설하는 작헌(酌獻)의 기구는 정결하기를 힘쓰고, 예문(禮文)과 악장(樂章)은 질차에 맞도록 힘써서 감히 불공(不恭)함이 없게 할 것이다.</p> <p>1. 문선왕(文宣王) 753) 은 백대(百代) 제왕의 스승이니, 석채(釋菜) 754) 의 제례(祭禮)를 마땅히 정결하게 하고 혹시라도 삼가함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p> <p>1. 기자(箕子)는 조선(朝鮮)에 봉토(封土)를 받아 실제로 풍화(風化)의 기초를 닦았으며, 고려 왕조의 시조(始祖)는 삼한(三韓)을 통합하여 모두 동방 백성에게 공로가 있으니, 마땅히 제전(祭田)을 두어 사시(四時)에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이다.</p> <p>1. 하늘의 보고 듣는 것은 실상 백성에게 있으니, 그 백성에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제거하여, 내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뜻에 부합하게 할 것이다.</p> <p>1. 임금과 신하는 한 몸이니 의리상 기쁨과 근심을 같이하게 된다. 대소신료(大小臣僚)들은 시정(時政)의 잘되고 잘못된 점과 민생(民生)의 이롭고 해되는 점에 있어서 할 말을 다하여 숨기지 말며, 소민(小民)의 원통하고 억울하여 풀리지 못한 것은 또한 나아와서 고하게 할 것이다.</p> <p>1. 검소함을 숭상하고 사치함을 버리는 것은 정치하는 근본이니, 궁중(宮中)의 의장(儀仗)과 의복·기명(器皿)은 검소함을 따르게 할 것이며, 그 사치로써 아첨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헌부에서 이를 처벌하게 할 것이다.</p> <p>1. 요사이 도읍을 옮겨 궁궐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백성의 생계가 진실로 고생이 되니, 무릇 중앙과 지방의 토목(土木)의 역사는 일체 모두 정지시키어 백성들로 하여금 휴식하게 할 것이다.</p> <p>1. 금년은 봄과 여름에 한재(旱災)와 황재(蝗災)가 서로 잇달아 바닷가의 주</p>	<p>風化, 前朝始祖, 統合三韓, 俱有功東民, 宜置祭田, 以時致祀。 一, 天之視聽, 實自乎民。 其有不便於民者, 其亟除之, 以副予敬天勤民之意。 一, 君臣一體, 義同休戚。 大小臣僚, 於諸時政得失, 民生利害, 盡言不諱, 小民冤抑未伸者, 亦許進告。 一, 崇儉去奢, 爲治之本。 宮中鹵簿、衣服、器皿, 務從儉約, 其有以奢侈爲媚者, 憲司罪之。 一, 近因遷都營繕, 民生良苦。 凡中外土木之役, 一皆停罷, 務令休息。 一, 今年春夏, 旱蝗相仍。 聞海濱州郡, 尤被其災, 予甚痛焉。 發倉移粟, 以行賑濟, 毋或遲緩, 庶令赤子, 免於溝壑。 租稅, 隨其損傷多少, 蠲減其數。 一, 《六典》, 爲治之具。 宜令六曹, 講求命官之意, 各盡其職, 毋敢或怠。 一, 騎船軍, 爲國禦侮, 寄命水上, 艱苦尤甚。 兵曹宜考各道軍戶人口多少, 每三丁立一軍, 分爲二番, 輪番更代, 其家許免他役。 一, 火燭軍及其人之役, 亦爲艱苦。 戶曹宜考各官鄉吏之數及官寺奴婢之數, 隨其多少, 更定其額, 以均勞逸。 一, 屯田之法, 始自屯軍塞下,</p>
--	--	---

	<p>군(州郡)에는 더욱 그 재해를 입었으니, 내가 심히 상심(傷心)된다. 창고를 열고 곡식을 옮겨 진제(賑濟)를 시행하되, 혹시 더디어 늦추지 말고 백성들로 하여금 도랑과 골짜기에서 죽게 됨을 면하게 할 것이며, 조세(租稅)는 그 손상(損傷)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그 수량을 감면하게 할 것이다.</p> <p>1. 《육전(六典)》은 정치하는 법령이니, 마땅히 육조(六曹)로 하여금 관직을 임명하는 뜻을 강구(講求)하게 하여, 각기 그 직책을 다하여 감히 혹시라도 태만함이 없게 할 것이다.</p> <p>1. 배 타는 군사는 나라를 위하여 외모(外侮)를 막아 물 위에서 목숨을 붙이고 있으므로 고생이 더욱 심하니, 병조(兵曹)에서 마땅히 각도의 군호(軍戶)와 인구의 많고 적은 것을 상고하여 매 3정(丁)에 군인 1명을 세워 두 번(番)으로 나누어 윤번(輪番)으로 교대(交代)하게 하고, 그 집은 다른 요역(徭役)은 면제하게 할 것이다.</p> <p>1. 화통군(火燭軍)과 기인(其人) 755) 의 역(役)도 또한 고생이 되니, 호조(戶曹)에서 마땅히 각 고을 향리(鄉吏)의 명수(名數)와 관시(官寺)·노비의 명수를 상고하여 그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그 정원을 다시 정하여, 그 수고와 편안함을 균등하게 할 것이다.</p> <p>1. 둔전(屯田)의 법은 변세에 군사를 주둔시킨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평민(平民)을 노역시킨 것은 아니니, 수상(水上)과 육지(陸地)에서 주둔하는 군사가 경작하면서 전쟁하기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평민(平民)을 역사(役事)시키면서 둔전(屯田)한다고 칭호하는 것은 일체 모두 이를 폐지하게 할 것이다.</p> <p>1. 부역(賦役)이 고르지 못한 것은 매우 백성에게 해로우니, 지금부터는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시켜 여러 도(道)의 토지의 넓고 좁음과 인구의 많고 적은 것을 조사하여 차등이 있게 나누어 정하게 하고,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는 주·부·군·현(州府郡縣)의 토지와 인구의 넓고 좁음과</p>	<p>非役平民。 除水陸屯軍且耕且戰外，役事平民， 號稱屯田者， 一皆罷之。 一， 賦役不均， 深爲害民。 自今有不得已事， 仰都評議使司， 按諸道土田廣狹、人口多少， 差等分定。 諸道監司， 以州府郡縣土田人口、廣狹多少， 差等分定； 守令以各戶土田人口， 差等分定， 庶無不均之嘆。 其鰥寡孤獨、疲癯殘疾無同居者， 全免。 一， 農桑， 衣食之源， 民命所關。 其令諸道監司， 分督郡縣， 冬初築堤堰禁火焚， 孟春植桑木， 仲夏植桑椹， 毋敢或怠。 一， 內自成均五部， 外至各道， 皆有教官， 所以養成人材， 宜以時考察， 勿令或怠。 一， 民生休戚， 在守令賢否。 朝官六品以上， 各舉所知， 具其出身來歷， 仰都評議使司， 詳加考察， 乃令之任。 監司嚴加黜陟， 所舉非人， 罪及舉主。 一， 貧民負債， 勿論布穀， 一本一利， 不許加徵。 違者， 本利具沒官論罪。 一， 前朝之季， 俗尙侈靡， 宴享齋會， 必用遐方難繼之物， 式至于今， 餘風未殄。 其金銀、珠玉、眞彩絲、花段子等物， 一皆禁斷。 一， 前朝之季， 始置別鞍色， 反凌逼工曹， 殊</p>
--	---	--

	<p>많고 적은 것으로써 차등이 있게 나누어 정하게 하며, 수령(守令)들은 각호(各戶)의 토지와 인구로써 차등이 있게 나누어 정하게 한다면, 균등하지 않다는 탄식은 없게 될 것이며, 그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이나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 어려서 부모가 없는 사람,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과 노쇠하여 느린 사람, 폐질(廢疾)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同居)하는 사람이 없는 자는 전체를 면제하게 할 것이다.</p> <p>1. 농업과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원이고 백성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니, 그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들로 하여금 군현(郡縣)을 나누어 독려하여 초겨울에는 제방(堤防)을 쌓고 화재(火災)를 금하게 할 것이며, 첫 봄에는 뽕나무를 심고, 5월 달에는 뽕나무의 열매를 심게 하여 감히 흑시라도 태만하지 말게 할 것이다.</p> <p>1. 서울 안의 성균관(成均館)과 오부 학당(五部學堂)으로부터 서울 밖에서는 각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교관(敎官)이 있는 것은 인재(人材)를 양성하기 때문인 것이니, 마땅히 때때로 고찰(考察)하여 그들로 하여금 흑시 태만하지 말게 할 것이다.</p> <p>1. 백성의 잘살고 못사는 것은 수령(守令)의 유능과 무능에 매여 있으니, 조관(朝官)의 6품(品) 이상은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여 그 출신 내력(出身來歷)을 갖추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시켜 상세히 고찰(考察)하게 하여, 이에 그 임무를 맡기게 하고, 감사(監司)는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는 일을 엄격히 시행하여, 천거한 사람이 책임자가 아니면 죄를 천거한 사람에게 미치게 할 것이다.</p> <p>1. 가난한 백성의 부채(負債)는 베[布]와 곡식을 논할 것 없이 본전(本錢) 하나에 이식(利息) 하나를 계산하여 더 징수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본전과 이식은 관청에 몰수하고 죄를 논단(論斷)하게 할 것이다.</p> <p>1. 고려 왕조의 말기에는 풍속이 사치를 숭상하여 연향(宴享)과 재회(齋會)에</p>	<p>失命官之意。宜行革去。一，私宰牛馬，當有禁令，宜令漢城府掌之。一，魚梁川澤，司宰監所掌，勿令分屬司饗，以一出納；山場草枝，繕工所掌，勿令私占，輕定其稅，以便民生。一，繕工、司水所納柴炭，司僕所納穀草，民甚苦之。宜令攸司，更定所費，俾無前弊。一，屬公奴婢，每人立役，致使飢寒，不免逃匿。自今每二口役一口，俾無失所；其身故者，勿令本主充立；年滿六十者，放役。每十口擇一口，分爲頭目，使之管屬，若有逃亡，責其頭目。一，名實不可相混。除表箋外，公私書狀，毋得用表紙。長興庫所納，隨其所用，亦宜更定。一，平民栽種菓實竹木，官司不給其直，公然取用，一皆禁斷。各官皆置菓園，栽植供用。一，七十歲以上耆老，正朝誕日等關係慶事外，許免隨班朝謁，以副予敬老之意。一，外方吹鍊鐵物，全委軍器監。其原定月課數目外，毋得濫費。一，兵者凶器，正朝誕日賀禮，近以軍器進獻，一皆禁斷。一，郡縣貢物，隨其土產，更定其額，其不產之物，許免收納。一，倉庫宮司，</p>
--	--	--

	<p>는 반드시 먼 지방의 이어 쓰기 어려운 물건을 쓰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남아 있는 풍습(風習)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그 금은(金銀)·주옥(珠玉)·진채사(眞彩絲)·화단자(花段子) 등 물건은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게 할 것이다.</p> <p>1. 고려 왕조의 말기에 처음으로 별안색(別鞍色) 756) 을 설치했는데, 도리어 공조(工曹)의 권한을 침범하게 되니, 전혀 관직을 임명한 뜻을 잃었으므로 마땅히 제거해야 될 것이다.</p> <p>1. 사사로이 소와 말을 도살하는 것은 마땅히 금령(禁令)이 있어야 될 것이니,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할 것이다.</p> <p>1. 어량(魚梁)과 천택(川澤)은 사재감(司宰監)의 관장한 바이니, 사옹원(司饗院)에 분속(分屬)시키지 말게 하여 출납(出納)을 통일하고, 산장(山場)과 초지(草枝)는 선공감(繕工監)의 관장한 바이니, 사점(私占)을 하지 말게 하고 그 세(稅)를 헐하게 정하여 백성의 생계를 편리하게 할 것이다.</p> <p>1. 선공감(繕工監)과 사수감(司水監)에 바치는 시탄(柴炭)과 사복시(司僕寺)에 바치는 곡초(穀草)는 백성이 이를 심히 괴롭게 여기니, 마땅히 말은 관사(官司)로 하여금 다시 소비하는 것을 정하여 전일과 같은 폐단이 없게 할 것이다.</p> <p>1. 관청에 소속된 노비(奴婢)는 사람마다 역(役)을 서서 그들로 하여금 배고프고 춥게 하여 도망해 숨게 됨을 면치 못하게 하니, 지금부터는 매 2인에 1인을 사역시키어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하며, 그 자신이 죽은 사람은 본주인에게 충당해 세우지 말게 하고, 나이 만 60세가 된 사람은 역(役)에서 방면(放免)하게 하며, 매 10인에 1인을 뽑아 나누어 두목(頭目)으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소속을 관장하게 하되, 만약 도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두목(頭目)을 책망하게 할 것이다.</p> <p>1. 명칭과 실상이 서로 혼잡해서는 안 되니,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을 제외하고는 공사(公私)의 서장(書狀)은 표지(表紙)를 쓰지 못하게 할 것이며, 장흥</p>	<p>全委三司，掌其出納。 一，冗官不可不汰。 仰都評議使司，詳議申聞，務求實效。 一，該載不盡事理，仰都評議使司，續議申聞舉行。</p>
--	--	---

	<p>고(長興庫)에 바치는 것은 그 소용에 따라 또한 마땅히 다시 정해야 될 것이다.</p> <p>1. 평민(平民)이 심은 과실과 대나무를 관사(官司)에서 그 대금을 주지 않고 공공연히 가져다 쓰는 것은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고, 각 관사(官司)에서 모두 과원(菓園)을 설치하고 심어서 용도에 공급하게 할 것이다.</p> <p>1. 70세 이상 되는 늙은이는 정조(正朝)와 탄일(誕日) 등 경사(慶事)에 관계되는 외에는 조반(朝班)을 따라 조알(朝謁)하는 것은 면하도록 하여, 나의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 부응하게 할 것이다.</p> <p>1. 외방(外方)에서 제련(製鍊)하는 철물(鐵物)은 전적으로 군기감(軍器監)에 맡겨서 그 본래 정한 월과(月課)의 수목(數目) 외에는 함부로 허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p> <p>1. 병기(兵器)는 흉기(凶器)이므로, 정조(正朝)와 탄일(誕日)의 하례(賀禮)에 군기(軍器)로써 바치는 것은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게 할 것이다.</p> <p>1. 군현(郡縣)의 공물(貢物)은 그 토지의 생산에 따라 다시 그 액수(額數)를 정하고, 그 생산되지 않는 물건은 수납(收納)을 면제하게 할 것이다.</p> <p>1. 창고와 궁사(宮司)는 전적으로 삼사(三司)에 맡겨 그 출납(出納)을 관장하게 할 것이다.</p> <p>1. 쓸데없는 관원은 도태시키지 않을 수가 없으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명하여 상세히 의논하고 신문(申聞)하여 실제의 효과를 찾도록 할 것이다.</p> <p>1. 여기에 기재된 중에서 미진한 사리(事理)는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계속해 의논하여 신문(申聞)해서 거행하게 할 것이다.”</p>	
--	---	--

<p>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0월 11일(계축) 1번째기사 상왕의 탄신일이라 여러 종친과 함께 연향을 베풀고 이죄 이하를 사유하다</p>	<p>상왕(上王)의 탄신일(誕辰日)이었다. 병이 이때에 이르러 회복되니, 임금이 여러 종친과 공후(公侯)를 거느리고 북량청(北涼廳)에서 연향(宴享)하여 한껏 즐기고 과하였다. 이죄(二罪) 이하의 죄수를 용서하였다.</p>	<p>癸丑/上王誕辰。 疾至是康復。 上率諸宗親公侯， 享于北涼廳， 極權而罷。 有二罪已下。</p>
<p>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1월 1일(계유) 1번째기사 술을 금하다</p>	<p>술을 금하게 하였다.</p>	<p>癸酉朔/禁酒。</p>
<p>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15일(정사) 2번째기사 예조에서 부모 기일 지내는 절차에 대해 건의하여 채택되다</p>	<p>예조에서 상언하였다. “《예기(禮記)》에, ‘군자(君子)는 한평생의 상(喪)이 있는 것이니, 부모의 기일(忌日)을 이름이라.’ 하였습니다. 고려 왕조의 풍속에는 기일(忌日)에 일찍이 재계(齋戒)하고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는 다만 중을 밥 먹이는 것으로 일을 삼고 조금도 근본에 보답하는 도리가 없었으며, 또한 예전(禮典)에도 어긋났으니, 지금부터는 원컨대 기일(忌日)을 당하면 하루 전에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며, 고기를 먹지 말고 별침(別寢)에서 재계를 하다가 기일(忌日)에 이르러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이며, 그 드리는 제물(祭物)도 일체 예조(禮曹)에서 반포 시행한 《시향진설도(時享陳設圖)》에 의거하여 시행</p>	<p>禮曹上言：“《記》曰：“君子有終身之喪”， 忌日之謂也。 前朝風俗， 於忌日， 不曾齋戒行祭， 唯以飯僧爲事， 略無報本之道， 且違禮典。 今後乞令當忌日前一日， 不茹葷， 不飲酒， 不食肉， 致齋別寢， 至忌日行祭。 其奠物， 一依當曹頒行《時享陳設圖》行之， 不近聲色， 不接賓客， 以行終身之喪之義。” 上從之。</p>

	<p>하고, 음악과 여색(女色)을 가까이 하지 말고 빈객(賓客)을 접대하지 말게 하여, 한평생의 상(喪)의 의리를 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17일(기미) 1번째기사 조준 조박 하윤 등이 《사서절요》를 찬술하여 바치며 올린 전문. 사냥의 법도에 대하여 논하다</p>	<p>좌정승 조준·겸 대사헌(大司憲) 조박(趙璞)·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이첨(李詹)·좌간의 대부(左諫議大夫) 조용(趙庸)·봉상 소경(奉常少卿) 정이오(鄭以吾) 등이 《사서절요(四書切要)》를 찬술(撰述)하여 바쳤다. 바친 전문(箋文)은 이러하였다. “군주의 정치는 심학(心學)에 매여 있으니, 마땅히 마음이 정밀하고 전일하여 중용(中庸)의 도(道)를 꼭 잡아 쥐고서, 함양(涵養)하고 확충(擴充)하여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근본을 삼아야 될 것이니, 성현(聖賢)의 글을 두루 뽑아 보건대, 《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대학(大學)》에서 대개 이를 다 말하였습시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이 주신 성학(聖學)으로 계속하여 밝히고 공경하셨는데, 당초에 왕위에 오르실 때부터 사서(四書)를 관람하여 공자(孔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의 학문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다만 제왕의 정치를 보살피는 여가에 두루 관람하고 다 궁구(窮究)하기가 용이(容易)하지 않은 까닭으로, 신들에게 명하여 그 절요(節要)한 말을 찬술(撰述)하여 바치게 하였습니다. 신들이 그옥이 생각하옵건대, 성현(聖賢)의 말씀은 지극한 도(道)와 정밀한 뜻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지마는, 그러나 그 의논을 세움이 혹 사건에 따라 나옴고, 혹은 묻는 사람의 공부의 높고 낮음으로 인하여 얕고 깊음과 상세하고 소략한 같지 않음이 있게 되니, 그 군주의 학문에 있어서 진실로 마땅히 먼저 하고 뒤에 해야 할 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삼가 그것이 학술(學術)에 간절하고 치도(治道)에 관계되는 것을 주워모아 정서(淨書) 장정(粧幀)하여 바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연회(燕會)하는 사이에 때때로 관람하여 심학(心學)을 바</p>	<p>己未/左政丞趙浚、兼大司憲趙璞、政堂文學河崙、中樞院學士李詹、左諫議大夫趙庸、奉常少卿鄭以吾等，撰《四書切要〔四書節要〕》以進。箋曰： 人主之治，係於心學，當精一執中，涵養擴充，以爲修齊治平之本。歷選聖賢之書，《語》、《孟》、《庸》、《學》，蓋盡之矣。恭惟殿下，天縱聖學，緝熙敬止，當初卽位，欲覽四書，以明孔、曾、思、孟之學，第萬機之暇，未易周覽而盡究者，故命臣等，撰其節要之言以進。臣等竊惟，聖賢之言，莫非妙道精義之所在，然其立言，或因事而發，或因問者之高下，而有淺深詳略之不同，其於人主之學問，誠宜有所先後。謹掇其切於學術，關於治道者，繕寫粧幀以獻。伏望清讌之間，時賜睿覽，以正心學，由約而博，以盡四書之大旨，溫故而知新，日就而月將，則將見終始浹洽，德業隆崇，聖賢</p>

	<p>르게 하고, 간략(簡略)한 데로부터 해박(該博)한 데로 들어가서 《사서(四書)》의 대지(大旨)를 다 알아내어,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고, 학문이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진보된다면, 장차 시종(始終)이 흡족하고 덕업(德業)이 높아져서, 성현(聖賢)의 도(道)가 다시 밝아지고 태평의 정치가 이루게 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p> <p>임금이 이를 옳게 여겨 들었다.</p>	<p>之道復明，雍熙之治可致矣。 上嘉納之。</p>
<p>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26일(무진) 2번째기사</p> <p>동북면 경성 사람 은실 등이 해동청 1연을 바치니, 쌀과 콩 10섬을 주다</p>	<p>동북면 경성(鏡城)에 거주하는 사람 은실(殷實) 등이 해동청(海東靑) 1연(連)을 바치니, 쌀·콩 10석을 내려 주었다.</p>	<p>東北面鏡城住人殷實等，進海靑鷹子一連，賜米菽十石。</p>
<p>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28일(경오) 2번째기사</p> <p>김사형과 하윤을 중국 황제의 등극을 하례하는 사신으로 보내다</p>	<p>임금이 보평청(報平廳)에 앉아서 황제의 등극(登極)을 하례(賀禮)하는 사신인 우정승 김사형(金士衡)과 진위 진향사(陳慰進香使)인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河崙)을 전송(餞送)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밤중이 되어서야 끝났다. 김사형을 불러 침전(寢殿)에 들어오게 하고서 술을 내리고, 또 모의(毛衣)와 모관(毛冠)을 내리었다.</p>	<p>上坐報平廳，餞賀登極使右政丞金士衡、陳慰進香使政堂河崙，夜半乃罷。引士衡入寢殿賜酒，又賜毛衣毛冠。</p>
<p>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29일(신미) 4번째기사</p> <p>각 관사에서 진언한</p>	<p>도당(都堂)에서 각 관사(官司)가 진술한 말을 채택(採擇)하여 올리었다.</p> <p>“1. 조상(祖上)의 은혜를 갚고 제사를 지내는 데는 반드시 정성과 공경을 다 해야 될 것이니, 종묘(宗廟)의 삭망(朔望)에 행향사(行香使)가 일찍이 재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사를 행하기 전 1일 오후(午後)에 향을 받게 됨은 그릇된 일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제사를 지내기 전 1일에 목욕 재계하고, 제</p>	<p>都堂採擇各司陳言以申： 一，報本追遠，必盡誠敬。宗廟朔望行香使，曾不致齋，而行祭前一日午後受香，非也。願自今散齋一日，祭前一日朝受香，齊宿行祭，以爲恆式。</p>

정책 건의 사항 7가지를 도당에서 채택해 올린다

사를 지내기 전 1일 아침에 향을 받고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되,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할 것이며,

1.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에 소속된 사수감(司水監)의 소목군(燒木軍) 4백인은 비록 농사철을 만났더라도 가산(家産)은 돌보지 않고 시일에 맞추어 나무를 베어서 그 일역(日役)을 제공하게 되니, 마침내 농사를 그만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1년 동안에 지공(支供)할 나무의 수량을 계산하여 좌·우도(左右道)의 주군(州郡)에 나누어 배정하여 농사의 여가와 봄·가을의 두 계절에 연호(煙戶)에서 고루 징수하면 한 마리[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시기에 맞추어 사수감(司水監)으로 운반하여 1년의 경비(經費)에 제공하게 할 것입니다.

1. 금·은과 수은(水銀)은 모두 본토(本土)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은그릇에 도금(鍍金)하는 금은 그 금과 수은(水銀)을 개조(改造)하게 되어 일체 모두 면(面)이 없게 되며, 은도 또한 품질이 나빠지므로 폐해만 있고 이익은 없으니, 품대(品帶) 외에는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게 하고, 이미 전에 도금(鍍金)한 것은 금하지 말게 할 것입니다.

1. 포화(布貨)는 민간에서 나오는 것인데, 공사(公私)의 연향(宴享)에 세저포(細苧布)로써 꽃을 만들므로, 한번 쓰고 난 후에는 다시 다른 데 쓸모가 없게 되오니, 지금부터는 진상(進上)이든지 사신(使臣)을 연향(宴享)하는 외에는 제철에 피는 꽃이든지, 물들인 종지로 꽃을 만들어 사용하게 할 것이며,

1. 가난한 백성은 부잣집의 곡식을 빌려 먹는데, 부잣집에서는 매양 농사철을 당하면 그 곡식을 빌려 먹은 백성을 몰아쳐 모아서 사역하게 되니, 부자 된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됩니다. 간리(奸吏)와 이장(里長)도 또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백성을 사역하여 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를 그만두게 하였으니 또한 금지시키되, 이를 위반한 사람은 논죄(論罪)하게 하고, 관리로서 살피지 않는 사람도 죄를 갈게 할 것입니다.

一，京畿左右道屬司水監燒木軍四百人，雖當農月，不顧家産，趁日斫木，供其日役，遂致廢農逋亡。願自今計一年所支木數，分定左右道州郡，當農隙春秋兩節，於烟戶均收，不過一駄。及時輸於司水監，以供一年經費。一，金銀及水銀，皆非本土所産，而銀器鍍金之金，至改造。其金與水銀，一皆無面，銀亦品惡，有弊無益。除品帶外，一皆禁斷，已曾鍍者不禁。一，布貨，出自民間，公私宴享，以細苧造花，一用而後，更無他用。自今進上、使臣宴享外，許用時花及染紙爲花。一，貧乏之民，借貸富家之穀，富家每當農月，以其貸民，驅聚役使，富者益富，貧者益貧。奸吏、里長，又無故役使，令貧民廢農，亦令禁止。違者，論罪，官吏失覺察者，罪同。一，外方之民，其父母葬日，聚隣里香徒，飲酒歌吹，曾不哀痛，有累禮俗。乞自今，毋襲前非，違者痛理。一，都城地濱大江，漕運甚便，公私賴之。司水監每憑漕運，輒遣指諭典軍之暴酷者，緣江推刷，至有繫累鞭撻。由是有船者憤怨而賣其船，商賈者畏懼而不

	<p>1. 외방(外方)의 백성들은 그 부모의 장사날에 이웃의 향도(香徒)를 모아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면서 애통(哀痛)하지 않으니, 예속(禮俗)에 누(累)가 있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그전의 그릇된 점을 따르지 말게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엄격히 죄를 다스리게 할 것이며,</p> <p>1. 도성(都城)은 지역이 큰 강가에 있어 조운(漕運)이 매우 편리하므로, 관청과 민간에서 이를 힘입게 되는데, 사수감(司水監)에서는 매양 조운을 빙자하고는 문득 지유(指諭)하는 전군(典軍)의 포악 혹독한 자를 보내어 강을 따라 배를 부리는 사람을 찾아내어 매를 치는 일까지 있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배를 가진 사람은 분개하고 원망하면서 그 배를 팔아버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여 서울까지 오지 못하게 되어 마침내 물건 값이 치솟게 됩니다. 원컨대, 사수감으로 하여금 그 소속된 배를 전군(典軍)에게 번갈아 타면서 조운에 지공(支供)하게 할 것이며, 만약 관청의 배가 넉넉지 못하게 되면 마땅히 민간의 배를 빌려서라도 시기에 맞추어 조운하게 하고, 규정에 의거하여 선세(船稅)를 주게 할 것입니다. 지유하는 전군이 선세(船稅)를 주지 않고서 빼앗아 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실을 진고(陳告)하게 하여 장물죄(贓物罪)로 계산하고서 논죄(論罪)하게 할 것입니다.”</p> <p>임금이 윤허(允許)하여 시행하게 하였다.</p>	<p>達於京，遂使物價騰踴。願令司水監將其所屬船，使典軍迭騎，以支漕運。若公船不給，須借私船，及時漕運，依式給稅。其指諭典軍，不給稅而據取者，許人陳告，計贓論罪。依允施行。</p>
--	--	--

2. 정종실록 기사자료집

정종실록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월 3일(갑술) 4번째기사 중 설오를 보내 보살재를 금강산 등에서 베풀고 중 2백 명을 공궤하다	중[僧] 설오(雪悟)를 보내어 보살재(菩薩齋)를 금강산(金剛山)과 안변(安邊) 석왕사(釋王寺)에서 베풀고, 중 2백 명을 공궤(供饋)하였다. 강원도 감사(江原道 監司)가 쌀과 콩을 수송하여 그 비용에 이바지하였다.	遣僧雪悟, 設菩薩齋于金剛山及安邊釋王寺, 飯僧二百。 江原道監司輸米豆供其費。
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월 9일(경진) 4번째기사 충청도에서 금년에 바칠 군자로 기민을	충청도(忠淸道)에서 금년에 바칠 군자(軍資)로 기민을 진휼하였으니, 감사 이지(李至)의 계청(啓請)을 좇은 것이었다.	以忠淸道今年所納軍資, 賑飢民。 從監司李至啓也。

<p>진흙하였으니 감사 이지의 계청을 따른 것이다</p>		
<p>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월 9일(경진) 5번째기사 경상도 감사에게 명하여 불경을 해인사에서 인쇄하는 승도에게 공궤하게 하다</p>	<p>경상도 감사에게 명하여 불경을 인쇄하는 승도(僧徒)에게 해인사(海印寺)에서 공궤(供饋)하게 하였다. 태상왕(太上王)이 사재(私財)로 《대장경(大藏經)》을 인쇄하여 만들고자 하니, 동북면(東北面)에 저축한 콩과 조 5백 40석을 단주(端州)·길주(吉州) 두 고을 창고에 납입하게 하고, 해인사(海印寺) 근방 여러 고을의 미두(米豆)와 그 수량대로 바꾸게 하였다.</p>	<p>命慶尙道監司，飯印經僧徒于海印寺。太上王欲以私財，印成《大藏經》，納東北面所畜菽粟五百四十石于端、吉兩州倉，換海印寺傍近諸州米豆如其數。</p>
<p>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월 9일(경진) 13번째기사 문하부에서 윤문수노가 거상중에 장가들었다고 죄를 극력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p>	<p>문하부(門下府)에서 윤문수노(尹文殊奴)의 죄를 극력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문하부에서 상서(上書)하였다. “3년의 상(喪)은 천하의 공통된 상(喪)이운데, 고려 말년에 예제(禮制)가 무너지고 인심이 경박하여져서, 백일 만에 길복(吉服)을 입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남녀가 혼인하여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다시 3년의 상(喪)을 행하여 밝게 나타난 법령이 있습니다. 학생(學生) 윤문수노(尹文殊奴)는 그 아버지 윤승례(尹承禮)의 상중에 있어 겨우 1년이 넘었는데, 여러 형들은 모두 복제 중에 있으나, 먼저 스스로 상복을 벗고 도승지 이문화(李文和)의 딸에게 장가들어 이루어진 법을 범하였습니다. 그 어머니 권씨(權氏)가 내지(內旨)가 있다 칭하였으므로 그 죄는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마는, 또한 어찌 복제를 마치지 않고 처가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엿드려 바라건대, 그의 돌아갈 것을 명령하여 복제를 마치게 하시고, 금후로는 3년 안에 가취(嫁娶)를 행하려 하여 취지(取旨)를 인연(夤緣)하는 자는 엄하게 규찰(糾察)하여 다</p>	<p>門下府力請尹文殊奴之罪，不允。初門下府上書曰： 三年之喪，天下之通喪，前朝之季，禮制頽壞，人心衰薄，百日卽吉，飲酒啖肉，男女昏姻，無所不爲。今國家復行三年之喪，明有著令，學生尹文殊奴，居其父承禮之喪甫踰年，其諸兄皆在制中，而先自釋服，娶都承旨李文和之女，以干成憲。其母權氏，稱有內旨，其罪已不得而治矣，然亦豈可不終制而在妻家乎？伏惟命還其家，俾終其制，自今以後，三年之內，欲行嫁娶，夤緣取旨者，痛行糾理。</p>

	<p>스리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금후에는 스스로 그 상복을 벗는 자는 규찰하여 다스리도록 하라.” 하니, 문하부에서 다시 상소(上疏)하였다. “신 등의 생각에는, 윤문수노가 상중에 아내를 얻어 심히 불효하였으므로 바꾸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 소를 갖추어 아뢰었는데, 들어주심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친상(親喪)에 자진(自盡)하는 것은, 인자(人子)의 지극한 정리가 천성(天性)에서 나오는 것이요, 밖에서 구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복(衰服)을 입고 슬피 곡(哭)하며 내실(內室)에서 거처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두 돌을 마치니, 3년의 사랑을 갚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상을 당하여 병이 나서 여자 종으로 하여금 환약을 짓게 한 자가 있었는데, 향당(鄉黨)에서 오히려 나쁘게 여겼으니, 하물며 상을 당하여 가취(嫁娶)하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윤문수노가 아버지를 상을 당하여 겨우 1년이 넘었는데, 스스로 최복을 벗고 마음대로 아내를 얻고서 뻔뻔스럽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자식 된 자의 정리가겠습니까? 풍속을 무너뜨리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니, 풍속이 어떻게 바로잡아지겠습니까? 원하건대, 전일에 아뢰는 바에 의하여 풍속을 바로잡으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3년 안에 임의로 길복을 입는 자는 일체 모두 규찰하여 다스리도록 하라.”</p>	<p>上曰：“今後自除其喪者糾理。” 門下府再上疏曰： 臣等以爲， 文殊奴當喪娶妻， 甚爲不孝， 不可不正， 具疏以聞， 未蒙聽納。 臣等竊惟， 親喪固所自盡， 是人子之至情， 出於天性， 不待外求。 故衰麻哭踊， 不處內不食肉， 以終再墓， 所以報三年之愛也。 昔人有當喪有疾， 使婢丸藥者， 鄉黨尙貶之。 況當喪嫁娶者乎？ 今文殊奴， 丁父憂甫踰年， 自除衰經， 任然娶妻， 飲酒啖肉， 恬不爲愧。 是豈人子之情也哉？ 其壞俗亂紀， 莫此爲甚， 風俗何由正乎？ 願依前日所申， 以正風俗。 上曰：“三年之內， 任然卽吉者， 一皆糾理。”</p>
<p>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월 19일(경인) 5번째기사</p>	<p>각도 감사에게 사미(賜米)를 주지 않고 실직(實職)에 따라 반록(頒祿)하였다.</p>	<p>除各道監司賜米， 從實職頒祿。</p>

<p>각도 감사에게 사미(賜米)를 주지 않고 실직에 따라 반록하다</p>		
<p>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월 19일(경인) 14번째기사 길주 도진무 신분을 보내어 수주의 올량합족과 오음회의 오도리족 만호 등에게 술을 하사하다</p>	<p>길주 도진무(吉州都鎮撫) 신분(辛奮)을 보내어 수주(愁州) 13) 올량합(兀良哈) 만호(萬戶) 유팔팔화(劉八八禾) 14) 와 오음회(吾音會) 15) 오도리(吾都里) 만호(萬戶)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와 다보수(多甫水) 올적합(兀狄哈) 등에게 술을 하사하였다.</p>	<p>遣吉州都鎮撫辛奮，賜酒于愁州兀良哈萬戶劉八八禾·吾音會、吾都里萬戶童猛哥帖木兒·多甫水·兀狄哈等。</p>
<p>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2월 1일(임인) 5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p>	<p>금주령(禁酒令)을 내렸다.</p>	<p>下禁酒令。</p>
<p>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2월 1일(임인) 7번째기사 문하부에서 만류하였으나 제릉에 친히 제사하려 하다</p>	<p>장차 제릉(齊陵) 18) 에 제사하려 하매, 문하부에서 상소하여 이를 만류하였으나, 윤희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참찬(參贊) 이거이(李居易)가 선영(先塋)에 성묘 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곧 감격하여 제릉에 참배할 뜻이 있었다. 장차 거가(車駕)를 움직이려 하니, 문하부에서 아뢰었다. “전하께서 제릉에 친히 제사하고자 하시니, 효성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인군이 선조를 받드는 도리는 봄·가을로 조상의 사당을 수리하고 시식(時食)을 드리는 것뿐이니, 이 행차를 정지하시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윤희하지 아니하므로, 낭사(郎舍)에서 대궐 뜰에 나와 두세 번 청하였</p>	<p>將祭齊陵，門下府上疏止之，不允。初參贊李居易，請拜掃先塋，上即興感，有拜齊陵之志。將動駕，門下府以爲：“殿下欲親祭齊陵，孝誠至矣。然人主奉先之道，春秋修其祖廟，薦其時食而已。請停此行。”不允。郎舍詣殿庭，請至再三。</p>

<p>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2월 14일(을묘) 2번째기사 임금이 노루를 쏘아 잡아서 사람을 보내 태상전에 달려가 바치게 하다</p>	<p>다 임금이 노루를 쏘아 잡아서 사람을 보내어 태상전에 달려가 바치게 하였다.</p>	<p>上射獐，遣人馳獻于太上殿。</p>
<p>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3월 9일(경진) 5번째기사 임금이 노루나 꿩을 잡으면 즉시 태상전에 달려가 드리게 하다</p>	<p>임금이 매양 노루와 꿩을 얻으면, 곧 태상전(太上殿)에 달려가 드리게 하였다.</p>	<p>上每獲獐雉，輒令馳獻太上殿。</p>
<p>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3월 13일(갑신) 2번째기사 동북면과 강원도의 선군을 파하고 경기도·경상도·충청도· 전라도 등의 선군을 감하다</p>	<p>동북면(東北面)·강원도(江原道)의 선군(船軍)을 파하고, 경기도·경상도·충청도·전라도·풍해도·서북면(西北面)의 선군을 감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말하였다. “생민(生民)의 괴로움이 배 타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다. 부모 처자의 부양을 버리고 휴식할 시기도 없으니, 참으로 통석(痛惜)한 일이다. 근래 왜구(倭寇)가 조용하여 변경이 조금 편안하니, 마땅히 3분의 1을 파하여 운번으로 교대하며 수자리하게 하라. 또 도적이 엿보는 것이 반드시 그러한 곳에 있을 것이니, 요해처(要害處)에 나누어 정박시키고, 봉화(烽火)를 들어 서로 망(望)보게 하며, 격문(檄文)을 전하여 서로 모이게 하면, 또한 늦지 않을 것이다.” 대사헌 조박(趙璞)이 말하기를,</p>	<p>罷東北面江原道船軍，減京畿、慶尙、忠淸、全羅、豐海道西北面船軍。初，上御經筵曰：“生民之苦，莫甚於騎船。棄父母妻子之養，無有休息之期，誠可痛惜。比來，倭寇寢息，邊境稍安，宜罷三分之一，輪番代戍。且賊之窺伺，必有其處，分泊要害之處，舉烽相望，傳檄相聚，亦爲未晚。”大司憲趙璞進曰：“殿下宵旰，慮在安民，臣等不勝欣抃。臣數奉使邊境，訊問</p>

	<p>“전하께서 소의 한식(宵衣旰食)하시어 생각이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에만 있으시니, 신 등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자주 변경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 나갔는데, 백성들의 병폐를 물어보면, 민생의 간고(艱苦)한 것이 선군(船軍)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p> <p>하고, 곧 도승지 이문화(李文和)에게 명해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전지(傳旨)하여 회의(會議)해 아뢰도록 하였다. 도평의사사에서 6도(道) 선군(船軍)의 군적(軍籍)을 바치니, 임금이 도승지 이문화에게 일렀다.</p> <p>“강원도·동북면은 너무 궁벽하여, 도적이 반드시 하도(下道)를 거쳐야만 그곳에 이를 수 있으니, 그 선군을 모두 혁파하고 배를 지킬 선군만 머물러 두어서 윤번으로 교대하여 지키게 하고, 경기도·전라도·경상도·충청도·풍해도·서북면 군선(軍船)은 10분의 1, 2를 없애어 각각 그 도(道)의 요해처에 나누어 정착하게 하고, 변(變)이 있으면 봉화를 들어 서로 망(望)을 보면서 의각(倚角)의 세(勢)를 취하게 하며, 혁파한 빈 배는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라.”</p>	<p>民瘼，民生艱苦，莫甚於船軍。” 上曰：“然。” 卽命都承旨李文和，傳旨都評議使司，會議以聞。 都評議使司進六道船軍之籍， 上謂都承旨李文和曰：“江原道東北面深僻，賊必經下道，得至其地。 其船軍一行除罷，但留守船軍，輪番遞直。 京畿、全羅、慶尙、忠淸、豐海道西北面軍船，除十分之一二，各於其道要害之處分泊，有變則舉烽相望，迭爲倚角，其除罷空船，令人守之。”</p>
<p>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3월 13일(갑신) 13번째기사 충청도 등의 기민을 진휼하고 경차관을 3도에 보내 수령들의 치적을 살피다</p>	<p>충청도·전라도·풍해도(豐海道)의 기민(飢民)을 진휼하고, 경차관(敬差官)을 3도에 나누어 보내어 수령들의 진대(賑貸)하는 것의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상고하게 하였다.</p>	<p>賑忠淸、全羅、豐海道飢民，分遣敬差官于三道，且考守令賑貸能否。</p>
<p>정종 1권, 1년(1399)</p>	<p>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를 신도(新都)에 보내어 종묘(宗廟)에 제사하게 하</p>	<p>遣義安公和于新都，享宗廟。 召禮曹</p>

<p>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4월 1일(신축) 2번째기사 의안공 이화를 신도에 보내 종묘에 제사하게 하다</p>	<p>고, 예조를 불러 말하기를, “제릉(齊陵)의 제사도 마땅히 종묘의 향례(享禮)와 같게 하라.” 하니, 예조에서 아뢰었다. “능(陵)에 제사하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닙니다. 우제(虞祭)를 지내서 신명을 편안하게 하고, 죽은 뒤에 섬기기를 생존하였을 때에 섬기는 것 같이 하는 것은 효도의 지극한 것입니다. 신의 왕후(神懿王后)는 비록 부묘(祔廟)는 하지 않았으나, 이미 원묘(原廟)30) 를 세우고 사시제(四時祭)를 행하오니, 능에 제사할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다만 희생(犧牲)만 없애게 하였다.</p>	<p>曰：“齊陵之祭，宜倣宗廟享禮。”禮曹啓曰：“祭陵，非古制也。虞而安神，事亡如事存，孝之至也。神懿王后，雖不祔廟，既立原廟，行四時祭，則又不當祭陵也。”不允，但去犧牲。</p>
<p>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5월 1일(경오) 5번째기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조회하고 연향을 베풀다</p>	<p>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전(太上殿)에 조회하고 연향(宴享)을 베풀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과하였다. 임금이 태상왕의 앞을 진퇴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태상왕도 주상을 대접하기를 또한 그렇게 하였다. 심히 즐거워하다가 태상왕(太上王)이 도승지(都承旨) 이문화(李文和)를 시켜 주상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아버가 죽은 뒤에 자식이 그 물건을 전(傳)해 받는 것은 으레 있는 일이지마는, 어찌 부자가 친히 서로 주고 받아서 친애의 정을 다하는 것만 같겠느냐?” 하고, 즉시 띠고 있던 황금대(黃金帶)를 풀어 주니, 임금이 받고서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고 이를 띠니, 정안공(靖安公)이 감격하여 울고, 좌우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여러 공후(公侯)가 교대하여 일어나 수주(壽酒)를 올리니, 태상왕이 먼저 주상에게 드리게 하였다. 임금이 술잔마다 다 마시고, 태상왕도 또한 그리하였다.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와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거이(李居易)가 일어나 춤을 추었다. 임금이 환궁하여 종친·공후에게 옷을 각각 한 벌씩 하사하였다.</p>	<p>上率百官，朝太上殿設享，竟夕乃罷。上進退太上王前如平時，太上王待主上，亦如之。歡甚，太上王使都承旨李文和，傳旨於上曰：“父沒而子傳其物，例也。豈若父子親相授受，以盡親愛之情耶？”卽解所御黃金帶以賜，上受扣頭謝而帶之。靖安公感泣，左右莫不揮涕。諸公侯迭起上壽，太上王輒令先獻主上，上每觴輒盡，太上王亦如之。義安公和、前判漢城府事李居易起舞。上還宮，賜宗親公侯衣各一襲。</p>

<p>정종 1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5월 21일(경인) 3번째기사 전 판서 남궁서의 아내를 때려죽인 장사정을 공신이라 하여 청주에 안치하는 데 그치다</p>	<p>장사정(張思靖)을 청주(靑州)에 안치(安置)하였다. 처음에 문하부(門下府)에서 상언(上言)하였다.</p> <p>“장사정(張思靖)은 무예(武藝)로 인하여 특별히 성은(聖恩)을 입어서 개국(開國) 정사(定社)의 반열에 참여하여, 벼슬이 상부(相府)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삼가고 공경하여야 할 터인데, 이달 19일에 전 판사(判事) 남궁서(南宮恕)의 아내를 붙잡아 귀를 자르고 때려 죽였으며, 그 이웃 마을 사람 가운데 상처를 입어 거의 죽게 된 자도 또한 많았습니다. 법을 어지럽힌 죄로서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 대의로 결단하여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직첩을 거두고 범한 바를 국문하게 하여, 그 죄를 밝게 다루소서.”</p> <p>임금이 개국 정사의 공로 때문에 국문은 허락하지 않고, 다만 직첩을 거두고 함주(咸州) 41) 로 귀양보내게 하였다. 이 일을 헌부(憲府)에 내렸으나 여러 날을 끌었으므로, 문하부(門下府)에서 잡단(雜端) 민공생(閔公生)을 논핵하니,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언(上言)하였다.</p> <p>“근자에 장사정이 술에 취하여 혈기를 부려 전 판서 남궁서의 아내를 때려 죽였으니, 크게 부도(不道)합니다. 전하께서 공신인 까닭으로 용서하고 귀양 보내니, 공신을 처우(處遇)하는 도리에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 여론이 비등(沸騰)하고 있습니다. 대저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한 것이 없습니다. 장사정의 살인에는 또 심함이 있어서 이목(耳目)이 있는 자는 이를 갈지않는 이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지극한 공의(公義)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옛적에 함구몽(咸丘蒙) 42) 이 맹자(孟子)에게 묻기를, ‘순(舜)임금이 천자(天子)가 되고 고요(皐陶)가 사(士) 43) 가 되었는데, 고수(瞽瞍) 44) 가 살인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하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잡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혹시 살인을 하게 되면, 비록 천자의 아버지라도 오히려 마땅히 잡아야 하는데, 하물며 공신이겠습니까?</p>	<p>置張思靖于靑州。 初， 門下府上言：“思靖幸以武藝， 特蒙聖恩， 得與開國定社之列， 致位相府， 宜當小心恪謹。 於今月十九日， 執前判事南宮恕之妻， 割其耳， 從而擊殺， 其隣里之人， 被傷幾死者亦多。 其亂法之罪， 孰大於是！ 願殿下斷以大義， 令攸司收其職牒， 鞫問所犯， 明正其罪。” 上以開國定社之功， 不許鞫問， 只(漚) [遞] 職牒， 放于咸州。 事下憲府， 淹延數日， 門下府劾雜端閔公生。 司憲府上言：“邇者， 張思靖乘酒使氣， 擊殺前判事南宮恕之妻， 大爲不道。 殿下以功臣之故， 有以流之， 其於處功臣之道得矣， 然未厭衆心， 物論沸騰。 夫罪莫重於殺人， 而思靖之殺人， 又有甚焉。 有耳目者， 莫不切齒， 殿下宜以至公處之。 昔者， 咸丘蒙問於孟子曰：“舜爲天子， 皐陶爲士， 瞽瞍殺人， 則如之何？” 孟子曰：“執之而已矣。” 苟或殺人， 雖天子之父， 猶當執之。 況功臣乎？ 思靖險狠暴戾， 恃功專恣， 白晝大都之中， 擅殺三品官之妻， 又撻隣里男女五六人， 而有孕婦幾至於死。 思靖何人， 而敢如此哉！ 王法必誅， 宜置極刑， 但以有功，</p>
---	--	---

	<p>장사정(張思靖)이 험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패려하여, 공(功)을 믿고 방자히 굴어 백주 대낮에 큰 거리 한가운데서 3품관의 아내를 마음대로 죽였고, 또 이웃 마을 남녀 5, 6인을 매질하여 임신한 여자가 거의 죽기에 이르렀으니, 장사정은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이와 같이 합니까? 왕법(王法)에는 반드시 주살(誅殺)하도록 되어 있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다만 공로가 있다 하여 직접만 거두고 함주에 귀양보내니, 장사정은 머리를 보전하게 되어 다행이지마는, 함주(咸州)는 왕조의 자취가 일어난 땅이니, 죄인을 둘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가산을 적몰(籍沒)하게 하고, 바다의 섬에 옮겨 두어 종신토록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면, 사은(私恩)과 공의(公義)에 모두 합할 것입니다.”</p> <p>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주(靑州)에 옮겨 두게 하니, 형조에서 상언(上言)하였다.</p> <p>“장사정이 감히 사사 분풀이를 하여 나라 법을 범하였으니, 헌사(憲司)에서 아뢰는 바에 의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p> <p>임금이 또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p>	<p>只收職牒，流置咸州。 思靖則得保首領爲幸矣，然咸州，王迹所起之地，不可置之罪人。 望令攸司，籍沒家產，移置海島，終身不齒，則私恩公義，兩得之矣。” 不允，只令移置靑州。 刑曹上言：“張思靖敢行私憤，以干邦憲。 請依憲司所申，以戒後來。” 又不允。</p>
<p>정종 2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8월 8일(을사) 2번째기사 하늘의 변고와 땅의 재변으로 임금이 대사면령을 반포하다</p>	<p>유지(有旨)를 반포하였다. 왕은 이렇게 말하였다.</p> <p>“내가 작은 몸으로 다행히 천지(天地) 종사(宗社)의 도움에 힘입어 큰 기업을 이어받아, 숙야(夙夜)로 공경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해서, 승평(昇平)에 이르기를 기약하였다. 그러나 덕(德)이 밝지 못하고, 때로 조처하는 데에 어두워서, 백성이 혜택을 입지 못하였다. 또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느껴지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하기 때문에, 예전의 왕노릇하는 이는 매양 재변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人事)를 닦았다. 혹은 몸을 삼가하여 행실을 닦고, 혹은 정령(政令)을 발하여 인정(仁政)을 베풀었으니, 대개 그 근본에 반성하여 실상으로 하늘에 응하는 것이었다. 근자에 천변과 지괴(地怪)가 여러 번</p>	<p>頒有旨： 王若曰，予以眇躬，幸賴天地宗社之佑，獲纘丕基，夙夜惟寅，勵精圖治，期至昇平。 然而不明于德，昧於時措，民不被澤。 且人事感於下，則天變應於上，故古之王者，每遇災變，必修人事，或側身修行，或發政施仁，蓋反其本，應天以實也。 近者，天變地怪，屢彰譴告，實由寡人否德之致。 慄慄</p>

	<p>견고(謹告)를 보이었으니, 실로 과인의 부덕한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위태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기를 연못의 얼음을 건너는 것 같이 하여, 몸을 신칙(申飭)해 닦고 살피어 그 허물을 면하기를 생각하였다. 백성의 괴로운 것을 불쌍히 여기는 데 마땅히 부지런하여, 천심(天心)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여야 하겠다. 건문(建文) 원년 8월 초9일 새벽 이전의 이죄(二罪) 이하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하라. 비록 일죄(一罪)73) 에 관계되더라도 서로서로 연관되어 의사(疑似)에 속하는 것은 곧 신문(申聞)하여 왕지(王旨)를 받아서 시행하라. 감히 유지(宥旨)를 내린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고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를 주겠다. 지금 사건을 조목조목 아래에 열거한다.</p> <p>1. 옥수(獄囚)를 오래 가두어 두는 것은 비록 심히 불가하나, 만일 사죄(死罪)라면 마땅히 정(精)하게 살피야 할 것인데, 지금 중외(中外)의 관사(官司)에서 그 지완(遲緩)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되도록 빨리 결단하려고 하여, 지나치게 국문(鞫問)을 가해 인명을 상하게 하니, 실로 차마 못할 일이다. 이제부터 중외(中外)의 관사(官司)에서 죄의 경한 것은 곧 결단하여 오래 지체하게 하지 말라. 외방(外方)의 사죄(死罪)는 여기저기로 이수(移囚)시키지 말고, 매양 죄수가 있는 곳에 감사(監司)가 친히 가서 자세히 사실과 허위를 캐묻고, 수령(守令)에게 위임하여 엄하게 형벌과 문초를 가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게 하지 말아서, 나의 흠휰(欽恤)하는 뜻을 몸받으라. 그 중외(中外)의 가벼운 죄로 오래 지체하여 결단하지 않은 것은 헌부(憲府)와 감사가 고찰하여 규리(糾理)하라.</p> <p>1. 무진년에서 무인년 사이에 주살(誅殺)당한 사람의 노비(奴婢)를 모두 각사(各司)에 붙였는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피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본주(本主)로 하여금 대신 세우게 하였었다. 그 때문에 주인과 노비가 모두 살 곳을 잃어서 원망과 비방이 자심하다. 중외(中外)의 관사(官司)에서는 상항</p>	<p>危懼，若涉淵水，筋躬修省，思免厥愆，宜勤恤於民隱，庶小答於天心。自建文元年八月初九日昧爽以前，二罪以下已發覺未發覺，已結正未結正，咸有除之。雖干一罪，互相連逮，涉於疑似者，宜即申聞，取旨施行，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以其罪罪之。所有事件，條列于後。一，獄囚淹滯，雖甚不可，若其死罪，所當精察。今中外官司，畏其遲緩，務欲速斷，濫加鞫問，致傷人命，實所不忍。自今中外官司，罪之輕者，宜即斷決，毋致淹滯；外方死罪，毋得彼此移囚。每於罪囚在處，監司親到，詳窮情偽，毋委守令，嚴加刑問，以致冤枉，以體予欽恤之意。其中外輕罪，淹滯不斷者，憲府、監司，考察糾理。一，自戊辰至戊寅，被誅人員奴婢，皆屬各司，不堪其苦，以至逃避，令其本主代立，致使主奴，皆失其所，怨謗滋甚。中外官司將上項人員奴婢家舍及其贈與奴婢，各還本主；戊寅年被誅者家財，亦令還給。一，前朝之季，倉廩虛竭，凡爲國用，強取於人，不即給價，淹延歲月，民甚不便。今濟用庫，其弊尚存，已曾納</p>
--	--	---

	<p>의 인원(人員)의 노비와 가사(家舍), 그리고 그 증여한 노비를 각각 본주인에게 돌려주고, 무인년에 주살당한 사람들의 가재(家財)도 또한 돌려주도록 하라.</p> <p>1. 고려 말년에 창름(倉廩)이 고갈하여, 무릇 국가에서 쓰는 것을 강제로 사람에게서 취하고 곧 값을 주지 않고 세월을 끌어서, 백성들이 심히 불편하게 여겼다. 지금 제용고(濟用庫)에 그 폐단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미 일찍이 물건을 바치고 값을 받지 못한 것은 모두 다 지급하고, 이제부터는 급한 때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값을 준 뒤에 취하고 감히 강제로 하지 말라.</p> <p>1. 백성들이 후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사치하게 써서 재물을 없애고 궁핍(窮乏)하기에 이르니, 마땅히 금하고 제재하여야 하겠다. 또 지금 다행히 풍년이 들어서, 풍성하게 주식(酒食)을 차려놓고 무리를 모아 연음(宴飲)하여 낭비하는 것이 심히 많으니, 무릇 중외(中外)의 공사(公私) 간의 연음(宴飲)을 일절 금단하여 백성의 재물을 풍족하게 하고, 여기는 자는 규찰하여 다스리라.</p> <p>1. 소는 밭을 갈므로 사람에게 공이 있다. 도살(屠殺)의 금지는 이미 나타난 영갑(令甲)이 있는데도, 완악하고 포악한 무리가 오히려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사로이 도살하니, 이제부터는 중외(中外)의 관사(官司)에서 엄하게 금단(禁斷)하여, 여기는 자는 엄격하게 다스리라.</p> <p>1.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치국(治國)하는 요령을 갖추 실었으니, 지금부터 중외에 반포하여 준수해 거행케 하고, 여기는 자는, 안에서는 헌사(憲司)가, 밖에서는 감사(監司)가 엄하게 고찰하여, 폐지하거나 해이하게 하지 말라.</p> <p>1. 중외의 사사(寺社)에 소속된 전지(田地)는 본사(本寺)로 하여금 오로지 그 조세(租稅)를 거두게 하라.</p> <p>아아!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니, 감히 경계하는 뜻을 잊으라! 정치는 덕으로 하는 것이니, 마땅히 관홀(寬恤)하는 인(仁)을 베풀어야 한다. 힘써 행하여 내 뜻에 부응(副應)하도록 하라.”</p>	<p>物未受價者，皆悉給之。自今所用，雖當急遽，必先給價而後取，毋敢強焉。一，民無遠慮，侈用傷財，以至窮乏，所當禁制。且今幸致年豐，盛設酒食，群聚宴飲，糜費甚煩。凡中外公私宴飲，一行禁斷，以阜民財，違者糾治。一，牛以耕田，有功於人，屠殺之禁，已有著令，頑暴之徒，尚不畏法，私自屠殺。自今中外官司，嚴加禁斷，違者痛治。一，《經濟六典》備載治國之要，自今頒布中外，遵守舉行。違者，內而憲司，外而監司，嚴加考察，毋致廢弛。一，中外寺社所屬田地，許令本寺專收其租。於戲！畏天之威，敢忘警戒之志！爲政以德，宜推寬恤之仁。其務行之，以副予意。</p>
--	--	---

<p>정종 2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9월 10일(정축) 11번째기사 임금이 해주에 가서 사냥하고자 하니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만류하다</p>	<p>임금이 해주(海州)에 가서 사냥하고자 하니, 헌사(憲司)에서 상소(上疏)하여 이를 만류하였다. 소(疏)는 이러하였다. “화곡(禾穀)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왜구가 와서 침노하는데, 온정(溫井)에 거둥하고자 하시니, 실로 불가합니다.” 시사(侍史) 안성(安省)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오래된 병이 있어 온정(溫井)에 가고자 하는 것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튿날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무(李茂)가 아뢰기를, “본도(本道)에 저축한 양식이 부족하니, 풍해도(豐海道)에서 쌀과 콩을 수송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어제 헌사(憲司)의 간(諫)하는 것을 좃지 않아 저녁내 마음이 미평(未平)하였다. 지금 비록 농극(農隙)이지마는, 내가 가는 곳에 어찌 백성의 폐해가 없겠는가!” 하고, 드디어 온정에 가는 것을 정지하였다. 임금의 마음에 오히려 섭섭한 데가 있어서 또 원중포(原中浦)에 가고자 하니, 우산기 상시(右散騎常侍) 윤사수(尹思修) 등이 다시 상서(上書)하여 간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근년 이래로 토목(土木)의 역사가 번다하고,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생민(生民)의 곤궁함이 극심합니다. 다행히 전하의 위육(位育) 생성(生成)하시는 덕에 힘입어서, 여러 번 사유(赦宥)의 특전을 내려 백 가지 역사를 과하였고, 가을 농사가 크게 풍년이 들고, 여염(閭閻)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곤고(困苦)가 이미 심하였고, 휴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비록 ‘거동할 즈음에 금령(禁令)이 반드시 엄하여 백성에게 폐해가 없다.’고 하오나, 꼴의 운반과 양식을 적치(積置)하는 것이 모두 백성의 힘에서 나오니, 어찌 폐단이 없다고 할</p>	<p>上欲畋于海州，憲司上疏止之。疏以爲：“禾稼未收，倭寇來侵，欲幸溫井，實爲未可。”召侍史安省曰：“予有宿疾，欲如溫井，其勿復言。”翼日，參贊門下府事李茂啓云：“本都所畜糧餉不足，請輸豐海道米菽。”上謂左右曰：“昨不從憲司之諫，竟夕心未平。今雖農隙，予之所至，豈無百姓之弊哉？”遂停溫井之行。上心猶有嫌焉，又欲幸原中浦，右散騎常侍尹思修等，復上書諫。略曰： 近年以來，土木役煩，加以飢饉，生民之困已極。幸賴殿下位育生成之德，屢降有典，以罷百役，秋稼大登，閭閻無事，然困苦已甚，而休息未幾。雖曰行幸之際，禁令必嚴，無弊於民，然其芻蕘轉輸，糧餉委積，則皆出民力，豈可謂之無弊也哉？況今海赤於東，山崩於北，星辰之變、草木之怪，相繼而見，又海寇竊發，其勢滋熾，此正修省畏懼，不可少有苟安之時也。伏願殿下，姑停此，以謹天戒。 不允。</p>
--	---	--

	<p>수 있습니까? 하물며 지금 동쪽에서 바다가 붉고, 북쪽에서 산이 무너지고, 성신(星辰)의 이변(異變)과 초목의 괴이(怪異)가 계속하여 보이고, 또 해적이 가만히 발(發)하여 그 형세가 점점 성하니, 이것은 정히 수성(修省)하고 외구(畏懼)하여 조금이라도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때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거동을 정지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소서.”</p> <p>임금이 윤희하지 아니하였다.</p>	
<p>정종 2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0월 4일(경자) 1번째기사 밤에 우레하고 번개하다</p>	<p>밤에 우레하고 번개하였다. 이튿날 원중포(原中浦)에서 사냥하고, 돌아와 기탄(岐灘)에 머물렀다. 임금이 노루 두 마리를 쏘아 잡았다. 도성(都城)에 머물러 있던 우정승(右政丞) 김사형(金士衡) 등이 와서 임금에게 연향(宴享)을 베풀었는데, 밤에 과하였다.</p>	<p>庚子/夜, 雷電。翌日, 畋于原中浦, 還次于歧灘, 上射二獐獲之。留都右政丞金士衡等來享上, 夜罷。</p>
<p>정종 2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0월 8일(갑진) 5번째기사 태상왕의 탄일이므로 도승지 이문화를 보내어 표리와 의대를 바치다</p>	<p>태상왕(太上王)의 탄일(誕日)이므로 도승지(都承旨) 이문화(李文和)를 보내어 표리(表裏)와 의대(衣櫛)를 바치었다. 임금이 장차 헌수(獻壽)하려 하였는데, 설사병이 나서 행하지 못하였다. 태상왕이 듣고 말하기를, “오늘 오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빨리 병을 치료하라.” 하고, 인하여 이문화에게 망립(網笠) 하나, 단자의(段子衣) 한 벌을 하사하였다. 임금이 여러 공후를 시켜 헌수하니, 태상왕이 받지 않았다.</p>	<p>以太上誕日, 遣都承旨李文和, 獻表裏及衣櫛。上將獻壽, 以患水痢未果, 太上王聞之曰: “毋患今日之未來, 宜速治疾。” 仍賜文和網笠一事、段子衣一領。上令諸公侯獻壽, 太上王不受。</p>
<p>정종 2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0월 13일(기유) 5번째기사 정당</p>	<p>정당(政堂) 정충(鄭摠)의 집에 쌀·콩 50석을 주고, 김약항(金若恒)·조서(曹庶)·오진(吳眞)·곽해룡(郭海龍) 102) 등 10인의 집에 또한 각각 쌀·콩 20석을 주었으니, 문하부(門下府)의 청을 따른 것이다.</p>	<p>賜政堂鄭摠家米菽五十石, 金若恒、曹庶、吳眞、郭海龍等十餘人家, 亦各賜米菽二十石。從門下府之請也。</p>

정종·김약항·조서·오진·곽해룡 등의 집에 쌀과 콩을 내리다		
정종 2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1월 1일(정묘) 1번째기사 일본 서해도 준주 태수 정종(貞宗)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土物)을 바치다	일본(日本) 서해도(西海道) 준주 태수(駿州太守) 정종(貞宗)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土物)을 바쳤다.	○ [丁卯] / 日本西海道駿州太守貞宗, 遣人來獻土物。
정종 2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1월 22일(무자) 2번째기사 임금이 태상왕의 막차(幕次)에 나아가 문안하니 임금을 먼저 가게 하다	임금이 태상왕의 막차(幕次)에 나가 문안하니, 태상왕이 임금으로 하여금 먼저 가게 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거가를 움직여 초천(椒川)가에 머물러서 기다리니, 태상왕이 조금 뒤에 이르렀다. 임금이 태상왕께 용둔교(龍屯郊)에서 연향(宴享)하려 하니, 태상왕이 밤중에 바로 서울로 들어갔다. 임금이 새벽에 거가를 움직여 뒤따라 태상전에 나갔으나 뵈지 못하고, 드디어 환궁하였다.	上詣太上王幕次問安, 太上王令上先行, 上遂動駕, 駐椒川邊, 以俟太上王。尋至, 上欲享太上王于龍屯郊, 太上王以中夜(經) [徑] 入京, 上平明動駕, 隨詣太上殿, 不得見, 遂還宮。
정종 2권, 1년(1399 기묘 / 명 건문(建文) 1년) 12월 1일(정유) 3번째기사 전 소감 유충길과 고중량장 송지로의 처 허씨에게 정표하고	전 소감(少監) 유충길(兪忠吉)과 고(故) 중량장(中郎將) 송지로(宋智老)의 처 허씨(許氏)에게 그 문(門)에 정표(旌表)하고, 인하여 쌀과 콩을 하사하였다. 충청도 도관찰사 이지(李至)가 아뢰었다. “청주(淸州)사람 유충길(兪忠吉)은 부모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애통해 하며 일찍이 남에게 웃음을 보이지 않았고, 연산(連山) 사람 허씨(許氏)는 나이 19세에 지아버를 잃고 3년상을 마친 뒤에 부모와 종족(宗族)이 개가시키고자 하였으나, 허씨가 맹세코 허락하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를 처음과 같이	前少監兪忠吉及故中郎將宋智老妻許氏, 旌表其門, 仍賜米菽。 忠淸道都觀察使李至啓: “淸州人兪忠吉, 居父母喪, 三年哀痛, 未嘗現齒。 連山人許氏, 年十九喪夫, 三年喪畢, 父母宗族欲奪志, 許誓不許, 奉養其姑如初。” 上嘉之, 有是命。 許氏年八十矣。

<p>쌀과 콩을 하사하다</p>	<p>하였습니다.”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허씨는 나이 80세였다.</p>	
<p>정종 3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3월 4일(기사) 4번째기사 다야점에서 사냥하고 도평의사에서 막차에 나아가 연향을 베풀다</p>	<p>다야점(多也帖)에서 사냥하였다. 사사(使司)에서 막차(幕次)에 나아가 연향(宴享)을 베푸니, 지극히 즐거워하다가 밤에야 과하였다. 임금이 여러 재상(宰相)과 더불어 연귀(聯句)를 짓고, 성석린(成石璘)에게 좋은 말 1필을 하사하고, 통천신록과서대(通天神鹿科犀帶) 1요(腰)를 풀어서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이거이(李居易)에게 하사하였다. 여러 재상이 모두 나가고, 임금이 세자와 이거이(李居易)·이저(李佇)·이무(李茂)와 더불어 밤이 될 때까지 지극히 즐기었다. 세자가 일어나 춤을 추니, 임금도 일어나 춤을 추었다. 이튿날 임금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못하였으므로 해가 기운 뒤에야 환궁하였다. 내관(內官) 박영문(朴英文)이 말하기를, “전일에 전하께서 일어나 춤춘 것은 예가 아닙니다. 만일 태상왕의 앞에 있었다면 가합니다. 어디 인군이 세자와 여러 신하와 더불어 대무(對舞)하는 예가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취하여서 한 일을 알지 못하겠다.”</p>	<p>畋于多也帖，使司進幕次設享，極權夜罷。上與諸宰相聯句，賜石璘良馬一匹，解通天神鹿科犀帶一腰，賜門下贊成事李居易。諸宰相皆出，上與世子及李居易、李佇、李茂入夜盡權，世子起舞，上亦起舞。翌日，中酒不能起，日昃還宮。內官朴英文進曰：“前日殿下之起舞，非禮也。若在太上王前則可矣，安有人君與世子及諸臣對舞之禮乎？”上曰：“予醉不知所爲。”</p>
<p>정종 4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4월 1일(병신) 4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오래 날이 가물어 연음(宴飲)을 금하기를 청하니</p>	<p>사헌부(司憲府)에서 오래 가문다고 하여 공사(公私)의 연음(宴飲)을 금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司憲府以久旱，請禁公私宴飲，從之。</p>

그대로 따르다		
정종 4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4월 1일(병신) 6번째기사 세자가 예궐하여 연향을 베푸니 의안공 이화와 이숙번 등이 시연하다	세자가 예궐(詣闕)하여 연향(宴享)을 베푸니,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와 이숙번(李叔蕃) 등이 시연(侍宴)하였다. 공후(公侯)와 재상(宰相)이 차례로 일어나 춤추고, 임금도 또한 일어나 춤추었다. 세자가 취하여 쓰러지니, 임금이 친히 사람을 시켜 부축하여 일으켜, 세자가 돌아갔다.	世子詣闕設享，義安公和、李叔蕃等侍宴。公侯宰相以次起舞，上亦起舞。世子醉倒，上親使人扶起，世子乃還。
정종 4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4월 5일(경자) 2번째기사 날이 가물자 금주령을 내리다	금주령(禁酒令)을 내렸다. 대사헌 권근(權近)이 말하기를, “금년에 봄이 가무니, 화곡(禾穀)이 풍등(豐登)하지 못할 징조인가 두렵습니다. 신이 언관(言官)으로서 감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근심하고 두렵게 생각하여, 다시 금주령을 내려 국가의 비용을 절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下禁酒令。大司憲權近曰：“今年春旱，恐是禾稼不登之占。臣以言官，不敢默默。伏望殿下，憂恤惕慮，更下禁酒之令，以節國用。”從之。
下禁酒令。 大司憲權近曰： “今年春旱， 恐是禾稼不登之占。 臣以言官，不敢默默。 伏望殿下，憂恤惕慮， 更下禁酒之令， 以節國用。”從之。	임금이 태상전에 나아가 헌수(獻壽)하려 하니, 태상왕이 정지시키고, 태상왕이 환자(宦者)를 시켜 명령을 전하기를, “근자에 가뭄이 너무 심하니, 잔치하여 즐길 수 없다.” 하였다. 임금이 명령을 듣고 드디어 그만두었다.	上欲詣太上殿獻壽，太上王止之。太上王使宦者傳命曰：“近者旱氣太甚，不可宴樂。”上聞命遂止。
정종 4권, 2년(1400	수창궁(壽昌宮) 후원(後苑) 청심정(淸心亭)에 나아가서 척석(擲石)놀이를 구경	御壽昌宮後苑淸心亭，觀擲石戲。明

<p>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5월 1일(을축) 3번째기사 수창궁 후원 청심정에서 척석놀이를 구경하고 다음날도 또한 그와 같이 하다</p>	<p>하고, 다음날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세자가 임금에게 헌수하니, 임금이 서정(西亭)에 나아가서 잔치를 받고, 정빈(貞嬪)이 또한 중궁(中宮)에 나가서 시연(侍宴)하였다.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영안후(寧安侯) 이양우(李良祐)·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참판삼군부사(參判三軍府事) 이무(李茂)·전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조온(趙溫)·전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이천우(李天祐)·삼사 좌사(三司左使) 이직(李稷)·동지총제(同知摠制) 이숙번(李叔蕃)·조경(趙卿) 등이 모시고 앉아서 차례로 헌수하여 지극히 즐기었다. 밤이 되어서 과하였다.</p>	<p>日亦如之。世子獻壽于上，上御西亭受宴。貞嬪亦詣中宮侍宴，義安公和、寧安侯良祐、上黨侯李佇、參判三軍府事李茂、前參贊門下府事趙溫、前知三軍府事李天祐、三司左使李稷、同知摠制李叔蕃·趙卿等侍坐，以次獻壽極權，至夜乃罷。</p>
<p>정종 4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6월 2일(을미) 5번째기사 경연에서 임금이 탄일에 각도 방물전을 없애고자 하다. 문관에게 중시를 보이게 하다</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예조에서 탄일(誕日)에 각도에서 진헌(進獻)한 방물장(方物狀)을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탄일의 각도 방물전(方物箋)은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없다. 하물며, 한참 바쁜 농사 때에 그 폐단이 심히 많으니, 이를 없애고자 한다.” 하였다. 지경연사(知經筵事) 하운(河崙)이 말하기를, “탄일의 방물전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니, 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정구(鄭矩)가 또한 하운의 뜻으로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하운·이첨(李詹) 등이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진강(進講)하여 끝마치고, 하운이 인하여 임금에게 말하였다. “대저 유자(儒者)가 과거에 오르면 책을 버리고 강론하지 않습니다. 문관(文官)을 시험하여 보면, 직책에 마땅치 않은 이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각 해에 급제한 사람을 모두 중시(重試)를 보게 하여, 탁용(擢用)에 대비하소서.”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御經筵。禮曹上誕日各道進獻方物狀，上曰：“誕日各道方物箋，無補於治。況盛農時，其弊甚多，欲除之。”知經筵事河崙進曰：“誕日方物箋，自古有之，不可廢也。”都承旨鄭矩，亦以崙意啓，從之。河崙、李詹等，進講《通鑑綱目》。訖，崙因言於上曰：“大抵儒者登科，則棄卷不講，及試文官，則多不稱職。自今各年及第，悉令重試，以備擢用。”上然之。</p>
<p>정종 5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p>	<p>일본(日本)이 사신을 보내어 방물과 감자(柑子)·매화(梅花)를 각각 한 분(盆)씩 바쳤다.</p>	<p>癸巳] /日本遣使來獻方物，柑及梅花各一盆。</p>

<p>2년) 8월 1일(계사) 1번째기사 일본이 사신을 보내 방물과 감자, 매화를 각각 한 분씩 바치다</p>		
<p>정종 5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8월 1일(계사) 4번째기사 전 전서 여칭과 사농시 경 강천주를 동북면에 보내 기민을 구제하게 하다</p>	<p>전 전서(典書) 여칭(呂稱)과 사농 경(司農卿) 강천주(姜天霍)를 동북면(東北面)에 보내어, 창고를 열어서 기민(飢民)을 진휼하였다.</p>	<p>遣前典書呂稱、司農卿姜天霍於東北面，發倉賑飢。</p>
<p>정종 5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8월 21일(계축) 3번째기사 임금이 세자와 더불어 덕수궁에 나아가 헌수하고 매우 즐기다가 파하다</p>	<p>임금이 세자와 더불어 덕수궁(德壽宮)에 나가 헌수하고, 지극히 즐기다가 파(罷)하였다. 처음에 태상왕이 몰래 신암사(新菴寺)에 갔는데, 세자가 친히 나아가 환궁하기를 청하였었다. 임금과 세자가 헌수하니,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좌정승 성석린(成石璘)·청천백(淸川伯) 이거인(李居仁)·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우인렬(禹仁烈) 등이 모두 기구(耆舊) 대신으로 시연(侍宴)하였다. 번갈아 일어나 헌수하고 술이 취하니, 태상왕이 연귀(聯句)를 짓기를, “밝은 달은 발에 가득한데 나 홀로 서 있네.” 하고, 웃으면서 세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비록 급제(及第)는 하였지만, 이런 글귀는 쉽게 짓지 못할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산하(山河)는 의구한데 인걸은 어디 있느냐?”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p>	<p>上與世子詣德壽宮獻壽，極歡而罷。初太上王潛幸新菴寺，世子親詣請還。上及世子獻壽，義安公和、左政丞成石璘、淸川伯李居仁、判承寧府事禹仁烈等，皆以耆舊侍宴，迭起爲壽。酒酣，太上王聯句云：“明月滿簾吾獨立。”笑謂世子曰：“汝雖及第，未易爲如此之句。”又云：“山河依舊人何在？”顧左右曰：“吾之此句，有深意焉。”上與世子起舞，太上王召出寵妓巫峽兒，與宴焉。上賜表裏，世子賜段一匹，極歡而罷。</p>

	<p>“나의 이 글귀에는 깊은 뜻이 있다.”</p> <p>하였다. 임금과 세자가 일어나 춤추니, 태상왕이 좋아하는 기생 무협아(巫峽兒)를 불러 내어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다. 임금이 표리(表裏)를 하사하고, 세자가 단(段) 1필을 하사하고, 지극히 즐기다가 과하였다.</p>	
<p>정종 5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8월 21일(계축) 4번째기사 이튿날 임금과 세자가 덕수궁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고 연귀를 지어 창화하다</p>	<p>이튿날 임금과 세자가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고, 연귀(聯句)를 지어 창화(唱和)하면서 지극히 즐기었다. 태상왕이 이르기를, “나이는 비록 칠십이나 마음은 서로 응하네.”</p> <p>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밤은 이미 삼경인데 흥은 끝이 없네.”</p> <p>하였다. 성석린(成石麟)·우인렬(禹仁烈)이 시연(侍宴)하였다. 임금이 일어나 춤추고, 밤이 깊어서 과하였다.</p>	<p>翌日，上與世子詣德壽宮設宴，聯句唱和極歡。 太上王曰：“年雖七十心相應。” 上對曰：“夜已三更興不窮。” 成石麟、禹仁烈侍宴，上起舞，夜深乃罷。</p>
<p>정종 5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9월 8일(기사) 9번째기사 이거이·이저·이무·조영 무를 위해 후원 양청에 술을 베풀다</p>	<p>후원(後苑) 양청(涼廳)에 술을 베풀었으니, 판문하(判門下) 이거이(李居易)·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판삼군(判三軍) 이무(李茂)·문하 시랑(門下侍郎) 조영무(趙英茂)를 위로함이였다. 세자와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완산후(完山侯) 이천우(李天祐)·청원후(靑原侯) 심중(沈淙)·봉녕후(奉寧侯) 이복근(李福根) 등이 모두 시연(侍宴)하였다. 사관(史官) 김섭(金涉)이 입시(入侍)하였는데,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민무질(閔無疾)에게 이르기를, “저건 무슨 사람인가?”</p> <p>하니, 민무질이 말하기를, “사관입니다.”</p> <p>하였다. 도승지(都承旨) 박석명(朴錫命)이 임금의 뜻을 알고 김섭에게 눈짓하여 나가게 하였다. 술이 취하니, 임금이 일어나 춤추고, 밤이 되어 과하였다.</p>	<p>置酒于後苑涼廳，慰判門下李居易、上黨侯李佇、判三軍李茂、門下侍郎趙英茂也。 世子及義安公李和、完山侯李天祐、靑原侯沈淙 [沈淙]、奉寧侯福根等皆侍宴。 史官金涉入侍，上謂左承旨閔無疾曰：“彼何人歟？” 無疾曰：“史官也。” 都承旨朴錫命知上意，目涉以出。 酒酣，上起舞，至夜乃罷。</p>
<p>정종 5권, 2년(1400</p>	<p>호조에 명하여 화장사(華藏寺)의 포(布) 15필을 받고, 의염(義鹽)을 그 수량에</p>	<p>命戶曹受華藏寺布十五匹，給義鹽稱其</p>

<p>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9월 19일(경진) 5번째기사 화장사의 베 15필과 의창의 소금값에 맞추어 바꾸어 주도록 호조에 명하다</p>	<p>따라 주도록 하였다.</p>	<p>數。</p>
<p>정종 6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0월 3일(갑오) 5번째기사 문하부에서 참소하고 아침하는 자들을 없애고 술 마시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다</p>	<p>문하부(門下府)에서 참소하고 아침하는 것을 없애고, 술 마시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니, 유윤(兪允)하였다.</p>	<p>門下府請去讒佞禁崇飲，兪允。</p>
<p>정종 6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0월 15일(병오) 3번째기사 해주의 쌀과 콩을 운반하여 시위 군사의 식량과 말먹이로 주다</p>	<p>해주(海州)의 쌀·콩을 운반하여 시위 군사의 식량과 말먹이로 주었다.</p>	<p>○運海州米菽，給侍衛軍士人馬料。</p>
<p>정종 6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1월 13일(계유) 12번째기사</p>	<p>태상왕이 대산(臺山)에서 이르니, 임금이 각사(各司)의 1원(員)을 거느리고 장단(長湍) 마천(麻川)에 거둥하여 맞이하였다. 거가(車駕)가 이르니, 임금이 악차(輦次)에 나가 뵈고 연향(宴享)을 베풀었다. 종친과 대신이 시연(侍宴)하였는데, 번갈아 일어나 수(壽)를 올리니, 태상왕이 즐거움이 심하여 밤이 된 뒤</p>	<p>太上王至自臺山，上率各司一員，幸長湍麻川以迎。車駕至，上詣輦次以見，設享。宗親及大臣侍宴，迭起爲壽，太上王權甚，夜分乃罷。太上王夜五</p>

<p>태상왕이 오대산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각사 1원씩 거느리고 장단의 마천에 가서 맞이하다</p>	<p>에야 파하였다. 태상왕이 밤 5경에 거가를 움직여 새벽에 송경(松京)에 들어왔다. 임금이 또한 서울에 돌아와서 태상전에 나아가 문안하였다. 이보다 먼저 태상왕이 항상 한양(漢陽)으로 환도하고자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에게 이르기를, “네 형은 한양에 환도하여 내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였는데, 그 뜻이 이미 정하여졌었다. 네가 능히 내 뜻을 몸받겠느냐?”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찌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태상왕이 술을 주었다.</p>	<p>鼓動駕，昧爽入松京，上亦還京，詣太上殿省候。先是，太上王常欲還都漢陽，至是，謂上曰：“汝兄欲還漢陽，以慰我心，其志已定，汝能體予心乎？”上對曰：“予何敢不從命乎！”太上王賜酒。</p>
<p>정종 6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1월 13일(계유) 14번째기사 경연에서 《대학연의》를 잘 강의한 권근에게 음식을 대접하다</p>	<p>경연(經筵)에 나아가니, 지사(知事) 권근(權近)이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진강(進講)하였다. 임금이 강문(講問)하기를 심히 자세히 하여도 권근이 능히 정미한 뜻을 변석(辨析)하였다. 임금이 기뻐하여 강론이 끝난 다음에 음식을 공궤(供饋)하였다.</p>	<p>○御經筵。 知事權近進講《大學衍義》，上講問甚詳。 近能辨析微旨，上喜，講畢饋之</p>
<p>정종 6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1월 13일(계유) 20번째기사 남이 훔친 소를 잡아 연회할 이조 의랑 윤목을 대흥에</p>	<p>이조 의랑(吏曹議郎) 윤목(尹穆)을 대흥(大興)에 귀양보냈다. 처음에 윤목이 변정 도감 부사(辨定都監 副使)가 되었는데, 동료 가운데 탄핵을 당한 사람이 있어, 도감(都監)에서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위로하고자 하였다. 영사(令史)가 윤목에게 고하기를, “고기를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하고, 소를 사서 잡기를 청하였으므로, 윤목이 허락하였는데, 그 소가 바로 남이 훔친 것이었다. 도독맞은 자가 헌사(憲司)에 고하니, 탄핵하여 귀양보냈</p>	<p>流吏曹議郎尹穆于大興。 初穆爲辨定都監副使，同僚有被劾者，都監欲備酒肉以慰之。 令史告穆曰：“肉未易得也。 請買牛以宰。” 穆許之，乃人之所竊牛也。 被竊者以告，憲司劾而流之。</p>

<p>귀양보내다</p>	<p>다.</p>	
<p>정종 6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2월 21일(신해) 2번째기사 임금이 덕수궁에 나아가 태상왕께 헌수하다</p>	<p>임금이 덕수궁에 나아가 헌수하였다. 임금이 태상전에 나아가니, 태상왕이 마침 신암사(神巖寺)에 거둥하였었다. 임금이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와 환관(宦官) 이분(李芬)을 보내어 태상왕을 맞아 환궁하여 연회를 베풀고, 태상왕이 본래 친하고 믿는 창녕백(昌寧伯) 성석린(成石璘)·청천백(淸川伯) 이거인(李居仁)·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이서(李舒)·판한성(判漢城) 최유경(崔有慶) 등을 불러 시연(侍宴)하게 하였다. 성석린 이하가 교대하여 일어나 춤을 추고, 연귀(聯句)로 창화(唱和)하여 지극히 즐기다가 과하였다.</p>	<p>○上詣德壽宮獻壽。 上詣太上殿， 太上王適幸神巖寺。 上遣義安公和、宦官李芬， 迎太上王， 還宮設享。 召太上王素所親信昌寧伯成石璘、淸川伯李居仁、判承樞府事李舒、判漢城崔有慶等侍宴。 石璘以下， 更相起舞， 聯句唱和， 極歡而罷。</p>

3. 태종실록 기사자료집

태종실록 기사자료집

날짜	내용	원문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월 14일(갑술) 1번째기사 청성백 심덕부의 졸기</p>	<p>청성백(靑城伯) 심덕부(沈德符)가 죽었다. 덕부의 자(字)는 득지(得之)이니, 청부현(靑臯縣) 사람이며, 진리 정랑(典理正郎) 심용(沈龍)의 아들이다. 문음(門蔭)으로 처음에 좌우위 녹사(左右衛錄事) 참군(參軍)이 되고, 여러 번 옮겨 소부윤(少府尹)이 되었다. 공민왕(恭愍王) 13년 갑진에 나가서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을 때, 안렴사(按廉使)가 부(府)에 이르매, 덕부가 알현(謁見)하러 갔다가, 안렴사가 옷을 갖추지 않은 것을 보고 그대로 물러왔다. 안렴사가 아전을 시켜 꾸짖으니, “옷이 법도와 같지 않다.” 고 대답하였다. 안렴사가 불민(不敏)함을 사과하였다. 그 단정(端正)하고 개결(介潔)함이 이와 같았다. 병오년에 어머니 상사를 당하여 매우 애통한 나머지, 몸이 수척해져서 소문이 났었다. 위주(僞主) 원년(元年) 을묘에 예의 판서(禮儀判書)로 강계도 만호(江界都萬戶)가 되었는데, 재주가 장수(將帥)의 책임을 감당할 만하여 명성이 더욱 드러나서, 발탁되어 밀직 부사(密直副使) 의주 부원수(義州副元帥)가 되었다. 정사년에 서해도 부원수(西海道副元帥)가 되었고, 무오년에 밀직사(密直使)로 제수되어, 명(明)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전대(專對)함이 재치있고 빨랐다. 경신년에 왜적이 우리 남쪽 변방을 도둑질하여, 그 형세가 심히 성(盛)하였었다. 덕부가 누선(樓船) 40척을 거느리고 가서 이를 쳤는데, 도적들이 다시는 날뛰지 못했다. 을축년에 동북면(東北面)에 도착</p>	<p>甲戌/靑城伯沈德符卒。 德符字得之, 靑臯縣人, 典理正郎龍之子也。 以門蔭, 始受左右衛錄事參軍, 累遷少府尹。 恭愍王十三年甲辰, 出守水原府, 廉使至府, 德符納謁, 見使不裨便退, 使命吏讓之, 對以服不如儀, 使謝不敏。 其端介如此。 丙午, 丁母憂, 以哀毀聞。 僞主元年乙卯, 以禮儀判書, 充江界都萬戶。 才堪將帥, 名聲益彰, 擢爲密直副使、義州副元帥。 丁巳, 爲西海道副元帥, 戊午, 除密直使, 奉使如京, 專對敏給。 庚申, 倭寇我南鄙, 其勢甚張。 德符將樓船四十艘往討之, 寇不復跳梁。 乙丑, 東北面有寇警, 授德符節鉞討之。 丙寅, 以門下贊成事朝京師, 旣還, 封靑城府院君。 戊辰, 從我太上王至威化島, 唱義旋旆。 恭讓君元年己巳, 陞爲門下</p>

	<p>의 위급함이 있었으므로, 덕부에게 절월(節鉞)을 주어 토벌하게 하였다. 병인년에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로 명나라 서울에 조회하고 돌아왔으므로,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을 봉하였다. 무진년에 우리 태상왕(太上王)을 따라 위화도(威化島)에 이르렀다가 창의(唱義)하여 회군(回軍)하였고, 공양왕(恭讓王) 원년 기사년에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경기 좌우도 평양도 도통사(京畿左右道平壤道都統使)가 되었다. 경오년에 비어(飛語)의 중상을 받아 토산현(兎山縣)에 귀양갔다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소환되었다. 신미년에 다시 좌시중(左侍中)이 되어, 공양왕의 세자(世子) 석(奭)을 따라 명나라 서울에 조회하였다. 임신년에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로 옮겨졌고, 우리 태상왕(太上王)이 즉위한 뒤에 회군(回軍)한 공을 추록(追錄)하여 제일(第一)이 되어,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졌다. 상왕(上王) 원년 기묘에 다시 좌정승(左政丞)이 되었고, 경진년에 이를 사면하고 청성백(靑城伯)으로서 사제(私第)에 나갔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죽으니, 나이 74세였다. 부음(訃音)이 들리매,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중사(中使)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부의(賻儀)로 쌀·콩 각각 1백 석을 내려 주고, 시호(諡號)를 “정안(定安)”이라 주었다. 덕부가 온량(溫良)하고, 청렴하고, 공근(恭謹)하고, 충성하고, 부지런하여, 착한 일을 많이 하였으므로, 죽으매 나라 사람들이 아깝게 여기었다. 아들이 일곱 있으니, 심인봉(沈仁鳳)·심의귀(沈義龜)·심도생(沈道生)·심징(沈澄)·심온(沈溫)·심중(沈淙)·심정(沈涇)인데, 중(淙)은 태상왕(太上王)의 둘째 딸 경선 공주(慶善公主)에게 장가들었다.</p>	<p>左侍中、京畿左右道·平壤道都統使。庚午，中飛語，謫兔山縣，未幾徵還。辛未，復拜左侍中，從恭讓君世子奭朝京師。壬申，遷判門下府事。及我太上王踐祚，追錄回軍功爲第一，封靑城伯，上王元年己卯，復拜左政丞。庚辰辭，以靑城伯就第，至是病卒，年七十四。訃聞，輟朝三日，遣中使致祭，賜賻米豆各百石，贈諡定安。德符溫良廉謹，忠勤積善，及卒，國人惜之。有子七人：仁鳳、義龜、道生、澄、溫、淙、涇。淙尙太上王第二女慶善公主。</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월 14일(갑술) 2번째기사 문하부 건의로 인제</p>	<p>1. 주현(州縣)의 기인(其人)은 실로 전조(前朝)의 폐법(弊法)이운데, 국가에서 그대로 인습하여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각전(各殿)의 사용방(司饗房)에 속하여 기명(器皿)을 맡은 자가 혹 잃어버리거나 혹 깨뜨리거나 하면, 독촉하여 충납(充納)하게 하니, 빈한(貧寒)한 외리(外吏)가 많은 돈과 물건을 꾸게 되어 파산(破産)을 하오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공사(宮司)·창고의 중[奴] 같</p>	<p>一，州縣其人，實是前朝之弊法，國家因循未革。其屬各殿司饗房，掌器皿者，或失或破，督令充納，貧寒外吏，多貸錢物，因以破産，其弊不小。如宮司倉庫之奴，則充闕內差備者，皆其</p>

등용·변정 도감 폐지·
둔전 폐지 방안 등을
채택

은 자들은 쥘내의 차비(差備)로 채워져 있는 자들이 모두 그 족류(族類)이니, 반드시 서로 의뢰하여, 잃어버리고 깨뜨리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창고·궁사·봉서국(奉書局)의 종[奴]으로 대신하여 오래 된 폐단을 고치고, 기인(其人)은 모두 선공(繕工)에 소속시켜 그 역사에 이바지하게 하고, 창고·궁사·봉서국 제조(提調) 관원(官員)의 추종(騶從)은 한두 사람에 지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도록 하소서. 전조의 부병(府兵) 제도는 오로지 시위(侍衛)와 환을 방비[備患]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쇠(衰)한 말년에 미치어 그 법이 폐하고 해이하여져서, 중랑장(中郎將)으로부터 대부(隊副)에 이르기까지 직사(職事)에 이바지하지 않고 한갓 녹(祿)만을 소비하였사운데, 우리 국가에서 그 폐단을 완전히 고치었으니, 거의 근사하나, 아직도 예전 것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장군(上大將軍)이 그 오원 십장(五員十將)을 거느려 사사로이 보내어 방목(放牧)시키고, 또 대부(隊副)로써 추종(騶從)을 삼아 부리기를 노예 같이 하니, 군사를 설치하여 환(患)에 방비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두 다 금단(禁斷)하고 숙위(宿衛)의 임무에만 전념하게 하소서. 또 십사(十司)가 군마(群馬)를 방목하여 화곡(禾穀)을 밟아 결판내어, 폐해가 작지 않사오니, 청컨대 아울러 파(罷)하여 백성의 생업을 편하게 하소서.

1. 무비(武備)를 미리 하지 않을 수 없사오나, 군기감(軍器監)에서 가까운 고을에다 둔전(屯田)을 두어 여러 공장(衆工)들에게 공역(供億)할 비용으로 삼기 위하여 백성의 밭을 빼앗고, 백성의 소를 빼앗아, 백성들을 모아 경작하고 거두어 들이니, 가까운 고을의 폐해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밭을 주어 수조(收租)하여서 그 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둔전(屯田)을 파하여 모두 본주(本主)에게 돌려주소서.

1. 전조의 왕씨(王氏)가 삼한(三韓)을 통일하여 인덕(仁德)을 쌓아 5백 년을 내려왔으니,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니다. 신 등이 엿드려 보건대, 상왕(上

族類, 必能相資, 無失破之患矣。 願自今, 以倉庫宮司奉書局奴代之, 以革積年之弊, 其人皆屬繕工, 以供其役, 其倉庫宮司奉書局提調官員騶從, 不過一二, 餘皆除之。 一, 前朝府兵, 專爲侍衛備患, 及其衰季, 其法廢弛, 自中郎將至于隊副, 不供職事, 徒費其祿。 我國家痛革其弊, 庶幾近之, 而猶未復古。 上、大將軍領其五員十將, 私遣放牧, 且以隊副爲騶從, 使之如奴隸, 有乖設兵備患之意。 自今悉皆禁斷, 俾專宿衛之任。 且十司放牧群馬, 踏損禾穀, 弊固不小, 請并罷之, 以便民業。 一, 武備不可不預, 然軍器監置屯田於近州, 以爲供億衆工之費, 奪民之田, 取民之牛, 聚民而耕穫之, 近州之弊, 莫甚於此。 願自今給田收租, 以充其用, 罷屯田悉還本主。 一, 前朝王氏統一三韓, 積德累仁, 垂五百年, 民受其賜。 臣等伏見上王卽位教旨, 以箕子、王太祖俱有功於東民, 屬之土田, 以時祭享, 實聖朝忠厚之意也。 今之人, 或以父母之屍, 葬于先王先后陵塋, 甚爲非道。 願自今王太祖顯陵, 定屬戶以守之, 給柴地復賦

	<p>王)께서 즉위(卽位)하신 교지(教旨)에, ‘기자(箕子)와 왕 태조(王太祖)가 모두 동방(東方) 백성들에게 공이 있으니, 토전(土田)을 붙여 주어 때로 제향(祭享)을 드리게 하라.’고 하셨으니, 실로 성조(聖朝)의 충후(忠厚)한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혹은 부모(父母)의 시체를 선왕(先王)·선후(先后)의 능영(陵塋)에 장사하니, 심히 도리가 아닙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왕 태조(王太祖)의 현릉(顯陵)에 속호(屬戶)를 정하여 수호하게 하되, 시지(柴地)를 주고 부역(賦役)을 면제하여 초목(樵牧)을 금하게 하고, 그 나머지 능실(陵室)도 무릇 인신(人臣)으로서 같은 곳에 장사한 자는 모두 다 파내도록 하여, 고금 군신의 의리를 밝히소서.</p> <p>1. 불씨(佛氏)의 교(敎)는 청정 과욕(淸淨寡欲)으로 종지(宗旨)를 삼아서, 부모를 하직하고 애정을 끊고 방외(方外)에 노는 것이운데, 지금의 승도(僧徒)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이욕에 끌리어, 사사(寺社)를 얻기에 힘써서 부산스럽게 다투고 바라오니, 원컨대, 오교(五敎) 양종(兩宗)을 혁파하고, 그 사사(寺社) 토전(土田)과 노비를 모두 공청(公廳)에 소속시켜, 승니(僧尼)의 이익을 다투는 마음을 막으소서.”</p> <p>소(疏)가 올라오매, 인재(人材)를 쓰고, 변정 도감(辨定都監)을 파하고, 경기(京畿)의 잡공(雜貢)을 옹기고, 기인(其人)을 대신하고, 군기감(軍器監)의 둔전(屯田)을 파하는 등의 일을 운허하였다.</p>	<p>役，使之禁樵牧，其餘陵室，凡人臣同穴而葬者，悉皆拔去，以明古今君臣之義。一，佛氏之敎，以淸淨寡欲爲宗，辭親割愛，遊方之外。今之僧徒，背其師敎，牽於利欲，務得寺社，紛紜爭望。願革五敎兩宗，各其寺社土田奴婢，悉屬於公，以杜僧尼爭利之心。疏上，用人材、罷辨定、移京畿雜貢、代其人、罷軍器監屯田等事，允之。</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2월 7일(병신) 2 번째기사 의정부에 나아가 사신 에게 잔치를 베풀다</p>	<p>임금이 의정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는 맞아서 위로만 하고 감히 머물기를 청하지 못하였었는데, 오늘은 즐기기를 바라오.” 하였다. 육옹(陸顛)이 말하기를, “어질고 덕이 있으시어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명령이 있으시니 어찌 감히 좃지 않겠습니까?”</p>	<p>上宴使臣于議政府。上曰：“前日迂勞，不敢請留，今日庶幾奉歡。”顛曰：“惟賢惟德，可以得民。有命，安敢不從！”士英曰：“厭厭夜飲，不醉無歸。”遂歡甚夜罷。</p>

	<p>하였고, 임사영(林士英)은 말하기를, “싫도록 밤까지 마시어서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실컷 즐기고 밤에 파(罷)하였다.</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2월 12일(신축) 2번째기사 공신 도감에 명하여 맹서를 전사하여 나누 어 주다</p>	<p>공신(功臣)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공신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친히 맹세에 참여한 것은 어찌 공연한 일이겠는가?” 하고, 맹서(盟書)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니, 공신들이 감복하였다. 총제(摠制) 서익(徐益)이 술이 취하여 일어나 춤을 추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변쾌(樊攄)32)의 춤이다.” 하였다. 조박(趙璞)에게 명하여 시(詩)를 지으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화답하 였다. 성석린(成石璘)이 어머니의 상중(喪中)이어서 이르지 않았으므로, 명하 여 불렀더니, 석린이 명을 받고 길복(吉服) 차림으로 이르렀는데, 기쁜 빛이 얼굴에 떠올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들이 어찌 맹서(盟書)를 두루 외울 수 있겠는가?” 하고, 공신 도감(功臣都監)에 명하여 김첨(金瞻) 등을 시켜 전사(傳寫)하게 하 여 모두 나누어 주었다.</p>	<p>宴功臣。上謂功臣曰：“予之親與於盟者，豈徒然哉！”於是，詳說盟書之意，功臣感服。摠制徐益，酒酣起舞，上笑曰：“此乃樊攄之舞也。”命趙璞賦詩，群臣皆和。成石璘以母喪不至，命召，石璘承命，以吉服至，喜氣浮面。上曰：“功臣焉能遍誦盟書乎？”命功臣都監，使金瞻等傳寫，悉頒之。</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2월 15일(갑진) 1번째기사 후원 임정에서 잔치를 베풀고, 육옹을 위해 황주 기생 위생을 불</p>	<p>임금이 후원(後園)의 임정(林亭)에서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처음에 육 옹(陸顛)이 황주(黃州)에 이르러 기생 위생(委生)을 사랑하여, 서울에 이르러 서도 그를 잊지 못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공문을 보내어 그를 불러서 역마를 타고 오게 하였는데, 이날에 마침 이르니, 옹이 매우 기뻐하여 극진히 즐기고 파(罷)하였다.</p>	<p>甲辰/上宴使臣於後園林亭。初顛到黃州，愛妓委生，至京不忘，禮曹移文召之，乘駟而來。是日適至，顛喜甚，極歡而罷。</p>

리오다		
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2월 23일(임자) 1번째기사 술의 사용과 외방의 토속 공사를 금하다	술의 사용을 금하고, 외방(外方)의 영선(營繕)을 일체 금하였으니, 백성의 힘을 쉬게 하기 위한 것이다.	壬子/禁用酒。 外方營繕， 一皆禁斷， 休民力也。
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3월 17일(병자) 2번째기사 태상왕이 보개산에 행 차하니 임금이 마이천 까지 가서 전송하다	태상왕(太上王)이 보개산(寶蓋山)에 행차하니, 임금이 이를 따라 마이천(麻伊川)에 이르러 악차(幄次)에서 뵈었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송인문(崇仁門) 밖에서 전송하려고 하였었는데, 태상왕이 밤중에 나갔기 때문에 미처 전송하지 못하였다. 이에 갑사(甲士)와 대성(臺省)40) 각 한 사람씩을 거느리고 마이천에 이른 것이었다.	太上王幸寶蓋山， 上隨至麻伊川， 見于幄次。 上欲率百官， 送于崇仁門外， 太上王夜分而出， 不及送， 乃率甲士及臺省各一員， 至麻伊川。
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3월 23일(임오) 3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	금주령(禁酒令)을 내리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좌도 안렴사(左道按廉使) 정혼(鄭渾)의 보고에 의하여 신청(申請)하기를, “근년에 황충(蝗蟲)과 한재가 서로 겹치어 장래가 염려됩니다. 중외(中外)에 명령하여 술의 사용을 금지하고, 역사(役事)를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공사(公私)의 잔치와 민간에서 술 쓰는 것과, 경외(京外)의 인민이 혹 이사(移徙)나 화재(火災)로 인하여 부득이 수즙(修葺)하는 외에, 영선(營繕)의 역사를 일절 모두 금단(禁斷)하여, 오로지 권농(勸農)을 힘쓰게 하고, 범(犯)하는 자는 죄를 주라.”	下禁酒令。 議政府因左道按廉使鄭渾報， 申請：“近年蝗旱相仍， 將來可慮。 令中外禁用酒停力役。” 上曰：“公私宴飲， 民間用酒， 京外人民， 或因移徙失火， 不得已修葺外， 營繕力役， 一皆禁斷， 專務勸農， 犯者罪之。”
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도승지 박석명(朴錫命)을 보내어 태상왕(太上王)의 기거(起居)를 문안하였다. 이때에 태상왕이 안변부(安邊府)에 있었는데, 석명이 궁온(宮醞)을 싸 가지고	戊辰/遣都承旨朴錫命， 問太上王起居。 時太上王在安邊府， 錫命齎宮醞

<p>3년) 4월 10일(무진) 1번째기사 도승지 박석명을 보내 안변부에 있는 태상왕 의 안부를 묻다</p>	<p>왔다.</p>	<p>而往。</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4월 17일(을해) 2번째기사 창녕 부원군 성석린을 안변에 보내 태상왕의 회가를 권유케 하다</p>	<p>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麟)을 보내어 태상왕(太上王)의 행재소(行在所)에 문안하였다. 이때에 석린이 어미의 복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금이 박석명(朴錫命)을 그 집에 보내서 말하기를, “부왕(父王)께서 오래도록 동북(東北)에 머무르시니, 생각하고 연모(戀慕)하여 마지못한다. 부왕께서 믿고 중(重)히 여기는 사람은 경(卿) 같은 이가 없으니, 경은 권도(權道)에 따라 복(服)을 벗고, 궁은(宮醞)을 싸 가지고 가서 모시고 돌아오라.” 하였다. 석린이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니, 임금이 일렀다. “태상왕께서 본래 경을 중하게 여기시니, 경의 말은 반드시 따르실 것이다. 바라건대, 문안(問安)드린 끝에 은근한 말[微辭]로 잘 아뢰어서 회가(回駕)하시게 하라.”</p>	<p>遣昌寧府院君成石麟，問安于太上王行在所。時石麟母服未闋，上遣朴錫命于其第曰：“父王久留東北，思戀不已。父王之所信重，莫如卿。卿可從權釋服，齋宮醞以往，奉迎而還。”石麟承命而行，上謂之曰：“太上王素重卿，卿言必從。幸於問安之餘，微辭善啓，以致回駕。”</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4월 19일(정축) 3번째기사 대사헌 유관 등이 포 폐(布幣)의 통용을 건 의했으나 허락하지 않 다</p>	<p>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 유관(柳觀) 등이 상소하여 포폐(布幣)를 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그 소(疏)는 이러하였다. “신 등이 엿드려 하비(下批)하신 것을 보니, 사섬서(司贍署)라는 것은 저화(楮貨)를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저폐(楮幣)는 관(官)에서 나와서 무궁(無窮)하고, 포필(布匹)은 백성에게서 이루어져 심히 어렵사오니, 저폐로 포필을 대신하는 것이 진실로 나라에 유리하고 백성에게 심히 편리하나, 국가에서 상국(上國)을 섬기기를 심히 공근(恭謹)하게 하는데,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방(東方)에서 포필을 쓴 것은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원컨대 포(布)로 초법(鈔法)을 모방하여 화</p>	<p>司憲府大司憲柳觀等，上疏請行布幣，不允。疏曰： 臣等伏覩下批，有司贍署者，爲楮貨而設也。臣等竊料，楮幣出於官而無窮，布匹成於民而甚難。以楮幣代布匹，誠有利於國，甚便於民也。然而國家事上國甚謹，不受命而自行之，無乃不可乎！吾東方用布匹，其來尙矣。願以布倣鈔法而作幣，用正五升布，染淡</p>

폐를 만들되, 정오승포(正五升布)를 써서 담청색(淡青色)으로 물을 들이고, 길이는 3척(尺), 너비는 폭(幅)대로 하고 위와 아래를 시치[縫]고, 네 가[邊]에 그림을 그리고, 본서(本署)와 토지(土地)·재곡(財穀)을 맡은 사(司)의 인(印)을 찍어서 그 안[內]을 채우고, 그 글에는 ‘조선포화(朝鮮布貨)’라 하여, 나라 안에서만 행하게 하고, 길이가 2척(尺), 1척(尺)되는 것도 또한 이 예(例)를 본떠 만들어서, 길이가 3척인 것은 3획(畫)을 그려서 그 값을 조미(糙米) 3두(斗)로 하고, 길이가 2척인 것은 2획을 그려서 그 값을 2두로 하고, 길이가 1척인 것은 1획을 그려서 그 값을 1두로 하면, 백성들이 그 획을 보고 그 값을 알아서, 백 가지 물건을 무역(貿易)하는 데 있어 그 값을 높이고 낮추기가 진실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건의 값이 우수리[餘零]가 있으면, 중국(中國)의 동전(銅錢)을 겸하여 쓰는 예를 모방하여, 쌀되[米升]로 쓰면, 이것은 본토(本土) 포화(布貨)의 이름이 그대로 있어, 중국의 초(鈔)에 혐의될 것이 없고, 그 이름은 초와는 다르나, 그 쓰임은 초(鈔)와 같고, 종이는 쉽게 해지지만는 포는 오래 보존되니, 그 이익이 훨씬 낫습니다. 무릇 상급(賞給)이 있더라도 또한 모두 이것을 쓰고, 쌀과 콩을 쓰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허비하여 내[費出]는 걱정이 없을 것이고, 1척의 값이 쌀 1두이면, 백성들이 경편(輕便)한 이익을 얻고, 1백 두의 값을 한 사람이 가지게 되면, 또 소[牛]로 싣고 말[馬]로 싣는 노고를 덜게 됩니다. 포폐(布幣)로 한번 바꾸면 그 이익이 너덧 가지나 되고, 공사(公私)가 겸하여 이로와서, 폐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튼튼하게 행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또 일찍이 쓰던 상포(常布)는 금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월일(月日)로 한(限)하여 백성이 고쳐 짜서 관가(官家)에 바치는 것을 들어주고, 관가에서는 정오승포(正五升布) 1필에 대하여 3척(尺)짜리 한 단(端), 2척 짜리 두 단, 1척 짜리 다섯 단을 주면 백성은 그 본가(本價)를 잃지 않을 것이고, 관가에서는 그 포(布)를 쓰되, 끊어서 3척 짜리 셋, 2척 짜리 여섯, 1척짜리 열 넷을 만들면, 관가에서는 3

靑，長三尺，廣終幅，縫上下，畫四邊用本署及掌土地財穀之司之印，共填其內。其文曰：“朝鮮布貨令”，只行境內。其長二尺、一尺者，亦倣此例爲之。長三尺者則畫三畫，其直糙米三斗；長二尺者畫二畫，其直二斗；長一尺者畫一畫，其直一斗，則民見其畫而知其價，貿易百物，高下其直，固不難矣。物價有餘零者，倣中國兼用銅錢之例，用以米升。是則仍本土布貨之名，而無嫌於中國之鈔，其名與鈔異，而其用與鈔同，紙易壞而布久存，則其利勝矣。凡有賞給，亦皆用此而不用米豆，則國無費出之患；一尺之直米一斗，則民得輕便之利；百斗之價，一人可持，則又省牛載馬馱之勞。布幣一易，而其利數四，公私兼濟，可保無弊，但恐行之不甚堅固耳。且曾用常布，不可不禁。限以月日，聽民改織納官。官於正五升布一匹，給三尺者一端，二尺者二端，一尺者五端，則民不失其本價；官用其布，斷作三尺者三，二尺者六，一尺者十四，則官得三倍之利矣。臣等愚見如是，伏望聖鑑或有可採，令下都堂，擬議施行。

	<p>배의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신 등의 어리석은 소견이 이와 같사오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성감(聖鑑)이 혹시 채납(採納)할 것이 있거든, 도당(都堂)에 내리 시어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4월 24일(임오) 1번째기사 금주령의 시행을 위해 임금이 금주하는 모범 을 보인다</p>	<p>시독(侍讀) 김과(金科)에게 명하여 운한편(雲漢篇)을 강(講)하게 하였으니, 오랫동안 가무는 것을 근심하였기 때문이다. 임금이 술[酒]을 정지하고 말하기를, “비록 금주령(禁酒令)을 내렸으나, 술을 마시는 자가 그치지 않으니, 이것은 과인(寡人)이 술을 끊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듣고서 감히 회음(會飲)하는 일이 없었다.</p>	<p>壬午/命侍讀金科，講《雲漢篇》。 閱久旱也。上止酒，乃曰：“雖下禁酒之令，飲酒者不止，是寡人不斷酒之使然。” 國人聞之，無敢會飲。</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4월 26일(갑신) 1번째기사 태상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이천에 나가서 기다리다</p>	<p>임금이 마이천(麻伊川)에 나가서 머물렀다. 처음에 태상왕(太上王)이 동북(東北)에 오랫동안 머무를 뜻이 있었는데, 마침 단주(端州)에 숯비[炭雨]가 내린 괴변이 있었고, 또 가뭄과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이 굶주려 죽는 사람이 많으므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마침 성석린(成石璘)이 그곳에 이르니, 태상왕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일찍이 문안(問安)하는 자를 보아도 역시 기쁘지 않았었는데, 이제 경(卿)을 보니 반갑고 기쁘기 그지없다.” 하였다. 석린이 곧 궁온(宮醞)을 바쳐 헌수(獻壽)하고, 술이 얼근히 취하여, 조용히 돌아가시기를 청하는 뜻을 아뢰었더니, 태상왕이 웃으며 말하기를, “경이 돌아가자고 청한 것이 내가 돌아가려고 작정한 뒤이다. 경이 먼저 가라. 내가 뒤를 따르겠다.” 하였다. 석린이 대답하기를, “주상께서 날마다 회가(回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더니, 태상왕이 선뜻 고쳐 말하기를,</p>	<p>甲申/上出次于麻伊川。 初太上王有久留東北之意。 會端州有雨炭之怪，且因旱荒，民多餓莩，故欲還。 成石璘適至，太上王喜曰：“嘗見有問安者，亦不喜，今見卿，不勝欣悅。” 石璘因進宮醞爲壽。 酒酣，從容啓以請還之意，太上王笑曰：“卿之請還，乃在予欲還之後矣。 卿宜先焉，我當隨後。” 石璘對曰：“主上日望回駕。” 太上王幡然改曰：“若爾，與卿偕還。” 石璘扣頭謝，即遣人以聞。 上聞之感喜。 至是，以太上車駕將至，出次于麻伊川，備供帳以待。</p>

	<p>“그렇다면 마땅히 경과 함께 돌아가겠다.” 하였다. 석린이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고, 곧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 감동하고 기뻐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태상왕의 거가(車駕)가 장차 도착될 것이므로, 나가서 마이천(麻伊川)에 머물러 공장(供帳)을 갖추고 기다렸다.</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5월 1일(기축) 2 번째기사 쌀 2백 석으로 전라도 백성을 진휼하다</p>	<p>쌀 2백 석으로 전라도의 주린 백성을 진휼(賑恤)하였다.</p>	<p>以米二百石, 賑全羅道飢。</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5월 2일(경인) 1 번째기사 제주에서 말린 말고기 를 바치는 것을 그만 두게 하다</p>	<p>제주(濟州)에서 말린 말고기[乾馬肉]를 올리지 말라고 명령하였다.</p>	<p>庚寅/命濟州勿進乾馬肉。</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5월 2일(경인) 2 번째기사 의순고 별좌 황상이 금주령을 어겨 영흥부 로 귀양가다</p>	<p>전 소감(少監) 황상(黃象)을 영흥부(永興府)로 귀양보내었다. 이때에 크게 가물어서 금주령(禁酒令)이 엄하였는데, 황상이 의순고 별좌(義順庫別坐)로서 주모(酒母)의 집에 들어가 기생을 대하고 술을 마시다가 헌부(憲府)에 적발되었다. 임금이 공신 황희석(黃希碩)의 아들이라 하여 그의 자원(自願)에 따라 부처(付處)한 것이었다.</p>	<p>流前少監黃象于永興府。 時大旱, 禁酒令嚴。 黃象爲義順庫別坐, 入酒母家, 對妓而飲, 爲憲府所糾。 上以功臣希碩之子, 從其自願付處。</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5월 3일(신묘) 1 번째기사 공부 상정 도감에서 공물과 조세의 수납 방법을 보고하다</p>	<p>공부 상정 도감(貢賦詳定都監)에서 공부의 수를 올리어 아뢰기를, “여러 창고(倉庫)·공사(宮司)의 소속인 수포전(收布田) 2만 5천 31결(結)은, 지금 3분의 1은 정오승포(正五升布)로 거두고, 그 나머지는 쌀로 거두며, 수 밀전(收蜜田) 1천 3백 10결·수납전(收蠟田) 7백 10결·수유전(收油田) 9백 47 결은 공상(供上)의 연례(年例)와 별례(別例)로 쓸 꿀[蜜] 30석(石), 납(蠟) 1 백 20근(斤), 기름[油] 70석(石)으로 계정(計定)하여 정속(定屬)하고, 그 나머 지는 쌀로 거두며, 수면전(收綿田) 37결은 대전(代田)으로 정속(定屬)하고, 호 조(戶曹)의 소속인 정오승포(正五升布)를 거두는 밭 2만 2천 1백 32결은 대 전(代田)으로 정속(定屬)하고, 그 나머지는 쌀로 거두며, 공조(工曹)의 소속(所 屬)인 백저포(白苧布) 1백 60필(匹)을 거두는 밭은 쌀로 거두며, 내부(內府) 소속인 정오승포(正五升布)를 거두는 밭 7천 3백 72결·수유전(收油田) 6백 22결·저포(苧布)를 거두는 밭 1천 2백 65결은 대전(代田)으로 정속하고, 광흥 창(廣興倉)의 소속인 수유전(收油田) 3천 3백 결·정오승포를 거두는 밭 2만 7 천 9백 78결은 모두 쌀로 거두고, 상항(上項)의 수미전(收米田) 내(內)의 대 전(代田)은 포화(布貨)·잡물(雜物)로써 공부(貢賦)를 정하고, 전에 포화·잡물을 거두던 밭 내(內)의 실전(實田)은 쌀로 거두되, 각각 그 수(數)에 준(准)해서 수납(收納)하고, 각도(各道)의 멀고 가까움과 수운(輸運)의 어렵고 쉬운 것으 로써 삼사(三司)에서 수(數)를 정해서 시행하여 이문(移文)하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윤택하였다.</p>	<p>辛卯/貢賦詳定都監，上貢賦之數。 啓 曰： 諸庫宮司所屬收布田二萬五千三十一 結，今以三分之一收正五升布，其餘收 米。 收蜜田一千三百一十結、收蠟田 七百一十結、收油田九百四十七結，計 供上年例與別例所用蜜三十石、蠟一 百二十斤、油七十石定屬，其餘收米。 收綿田三十七結，以代田定屬。 戶曹 所屬收正五升布田二萬二千一百十三 結，以代田定屬，其餘收米。 工曹 所屬收白苧布一百六十匹田，收以米。 內府屬收正五升布田七千三百七十二 結、收油田六百二十二結、收苧布田 一千二百六十五結，以代田定屬。 廣 興倉屬收油田三千三百結、收正五升 布田二萬七千九百七十八結，皆收米。 上項收米田內代田，以布貨雜物定賦； 在前收布貨雜物田內實田，收其米，各 其數準收納。 以各道遐近及輸轉難易， 三司定數行移。 允之。</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p>	<p>비가 내리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비가 내렸다 하여 술을 진어하기를 청하 니, 이를 허락하고, 경연관(經筵官)과 더불어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의정부</p>	<p>甲午/雨。 議政府以得雨，請進酒，許 之。 與經筵官設小酌，賜醞于議政</p>

<p>3년) 5월 6일(갑오) 1 번째기사 비가 내리자 의정부에 서 술 들기를 청하니 경연에서 주석을 베풀 다</p>	<p>에 술을 내려 주었다.</p>	<p>府。</p>
<p>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5월 8일(병신) 2 번째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논의 하다. 편전에서 사관 입시 문제가 거론되다</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동지사(同知事) 이첨(李詹)이 《대학연의(大學衍義)》의 탕지반명장(湯之盤銘章)을 진강(進講)하고, 참찬관(參贊官) 승지(承旨) 박신(朴信)·시강관(侍講官) 조용(趙庸)·시독관(侍讀官) 간의(諫議) 김겸(金謙)·사농경(司農卿) 김과(金科) 등이 참여하여 서로 논난(論難)하였는데, 임금의 강론이 매우 정(精)하였다. 강(講)이 파(罷)하매 주찬(酒饌)을 베풀었다. 사관 민인생(閔麟生)이 아뢰기를, “지금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강론(講論)하심이 매우 정(精)하고, 온화한 말씀이 친밀하시니, 원컨대 전하께서 비록 편전(便殿)에 앉아 정사를 들으실 때라도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입시(入侍)하여 아름다운 말[嘉言]을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김겸에게 일러 다시 사관(史官)의 말을 들어보라 하였다. 이첨·박신·조용·김과가 모두 아뢰기를, “경연에 입시하는 것은 가하지마는, 어찌하여 정사를 듣는 때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신 등도 역시 전조(前朝) 신씨(辛氏)의 사관이었는데, 두렵고 위축되어 감히 뵈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인생이 아뢰기를,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은 것입니다. 어찌 감히 전조(前朝)로써 오늘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고, 김겸이 아뢰기를,</p>	<p>御經筵。 同知事李詹講《大學衍義》《湯之盤銘章》，參贊官承旨朴信、侍講官趙庸、侍讀官諫議金謙、司農卿金科等與焉。 互相論難，上講論甚精，講罷設酒饌。 史官閔麟生啓曰：“今與諸臣，講論甚精，濫言密勿。 願殿下，雖坐便殿聽政時，須令史官入侍，以記嘉言。” 上謂金謙更(聞) [問] 史官之言， 李詹、朴信、趙庸、金科皆曰：“入侍經筵可矣， 何欲得入於聽政之時乎？ 臣等亦前朝辛氏之史官也， 畏縮不敢見也。” 麟生曰：“主明則臣直。 豈敢以前朝比今日乎？” 金謙曰：“臣與本司同議更啓。”</p>

	“신이 본사(本司)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다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5월 9일(정유) 1 번째기사 태상전에 조회하고 헌 수하다	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조회하고 헌수(獻壽)하였다.	丁酉/上朝太上殿獻壽。
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5월 16일(갑진) 4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금주령을 청했으나, 풍악을 올리 는 잔치만을 금하다	헌부(憲府)에서 다시 술을 금(禁)하기를 청하니, 다만 풍악을 울리고 연음(宴 飲)하는 것만 금하였다.	憲府復請禁酒，只禁動樂宴飲。
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5월 21일(기유) 2번째기사 동북면 도순문사 강사 덕이 공평한 조세 부 과 등 3개 조목을 건 의	동북면(東北面) 도순문사(都巡問使) 강사덕(姜思德)에게 궁은(宮醞)을 내려 주 었다. 사덕(思德)이 그 도(道)의 사의(事宜) 세 조목을 아뢰었다. “1. 이곳의 토전(土田)은 비척(肥瘠)을 분간하지 아니하여, 자정(字丁)을 만들 지 않고, 다만 날갈이[日耕]로 장부에 기록하여 조(租)를 거두기 때문에, 뒤 에 조를 거두는 자가 반드시 전의 장부에 의거하고 손실(損實)을 논하지 않으 니, 백성이 그 폐를 받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매년 그 손실(損實)로 나누어 그 조(租)를 높이고 낮추게 하소서. 1. 수령(守令)의 능록(廩祿)을 다른 고을[他州]의 창미(倉米)로써 달[月]을 계 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춥고 더운 것을 가리지 않고 농사철도 따지지 않으 니, 수운(輸運)하기가 심히 괴롭고, 모손(秬損)되고 독촉하는 폐단이 따릅니	賜醞于東北面都巡問使姜思德。 思德 啓以其道事宜三條： “一， 此界土田， 不分肥瘠， 不作字丁， 但以日耕籍記而 收租， 故後之收租者， 必據前籍， 而不 論損實， 民受其弊。 願自今， 每年分 其損實， 高下其租。 一， 守令廩祿， 以他州倉米， 計月而給， 不分寒暑， 不 計農時， 轉輸甚苦， 而耗損徵督之弊隨 之。 願自今依他道例， 各給於其州， 以免轉輸之苦。 一， 太上王命作宮于

	<p>다. 원컨대, 이제부터 다른 도(道)의 예(例)에 의하여 각기 그 고을에서 지급토록 하여, 운반하는 고통을 면하게 하소서.</p> <p>1. 태상왕(太上王)께서 석왕사(釋王寺) 서쪽에 궁(宮)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모두 25간인데, 공장(工匠)과 승인(僧人)이 도합 80명입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많이 주리고 곤폐하여 공급할 수 없는데, 또 독승군(督僧軍) 50명을 더하였고, 또 영중(營中)의 철물(鐵物)이 쓰기에 부족하오니, 승군(僧軍)과 철물(鐵物)을 다른 고을[郡]로 옮기소서.”</p> <p>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니, “모든 계문(啓聞)한 것에 좃고, 다만 승군과 철물은 농사 틈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또한 편리하겠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p>	<p>釋王寺西邊，凡二十五間，而工匠僧人總八十名，以年荒，民多飢困，不能供給，又加督僧軍五十名，且營中鐵物，不足於用。其僧軍及鐵物，願移他郡。”下議政府議之，皆依啓聞，但僧軍鐵物，待農隙爲之亦便，上然之。</p>
<p>태종 2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9월 1일(정해) 1 번째기사 태복시 소경 축맹헌과 예부 주사 육옹이 칙 서를 받들고 오다</p>	<p>명나라 사신 태복시 소경(太僕寺少卿) 축맹헌(祝孟獻)·예부 주사(禮部主事) 육옹(陸顥)이 칙서(勅書)를 받들고 왔다. 맹헌(孟獻) 등이 수의(獸醫) 왕명(王明)과 주계(周繼)를 거느리고 이르니, 산붕(山棚)을 베풀고 결채(結綵)하고 나례(儺禮)와 백희(百戲)를 갖추고, 임금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군신을 거느리고 서교(西郊)에서 맞아, 의정부(議政府)에 이르러 칙서를 선독(宣讀)하였다. 황제의 수조(手詔)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에게 말하노라. 전번의 사자(使者)가 돌아오에, 왕이 중국에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말이 없다 하여 특별히 3천 필을 바치었고, 이에 다시 사람을 보내어 좋은 말과 명약(名藥)·섬포(織布) 등 여러가지 물건을 바치었으니, 예의(禮意)가 공순(恭順)하여 짐(朕)이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옛날 주(周)나라의 성시(盛時)에 관숙(管叔)·채숙(蔡叔)의 난(亂)이 있었는데, 월상씨(越裳氏)가 만리(萬里)에서 들어와 조공하니, 성왕(成王)·주공(周公)이 기뻐하여 그 일이 전기(傳記)에 나타났고, 월상씨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영화롭다. 짐의 덕</p>	<p>丁亥朔/朝廷使臣太僕寺少卿祝孟獻、禮部主事陸顥奉勅書來。孟獻等率獸醫王明、周繼至，設山棚結綵，備儺禮百戲，上以冕服率群臣，迎于西郊，至議政府宣勅。皇帝手詔曰： 勅朝鮮國王。前使者還，王以中國軍興乏馬，特貢三千匹，茲復遣人貢良馬名藥織布諸物，禮意恭順，朕甚嘉焉。昔周盛時，內有管、蔡之亂，而越裳氏萬里入貢，成王、周公喜之，其事著于傳記，越裳氏之名，榮華至今。朕德不逮古，而朝鮮爲國，視越裳爲大，入貢之禮有加，今特遣太僕寺少卿祝孟</p>

	<p>(德)이 예전에 미치지 못하나, 조선의 나라됨이 월상씨보다 크고, 입공(入貢)의 예(禮)가 이보다 더함이 있으니, 이제 특별히 태복시 소경 축맹헌·예부 주사 육옹을 보내어, 왕과 왕의 부형·친척·배신에게 문기·견(文綺絹)을 내려 주기를 각각 수(數)가 있게 하여, 아름답게 여기고 위로하는 회포를 펴는 것이니, 이르거든 영수(領受)하라. 대저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따르는 것이요, 도를 어기는 자는 양화(殃禍)가 모이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짐이 하늘을 받들어 행하여 즐겁게 우내(宇內)와 더불어 함께 다스리노니, 더욱 힘써서 많은 복을 받으라. 국왕에게 문기(文綺)·견(絹) 각각 6필, 약재(藥材) 목향(木香) 20근(斤), 정향(丁香) 30근, 유향(乳香) 10근, 진사(辰砂) 5근, 전왕(前王) 이(李) 【태상왕(太上王)의 휘(諱).】에게 문기·견 각각 5필, 전 권지 국사(權知國事) 이(李) 【상왕(上王)의 휘(諱).】에게 문기·견 각각 5필을 반사(頒賜)하고, 별칙(別勅)하여 국왕의 친척 이화(李和)·이방의(李芳毅) 등 13원(員)에게 매원(每員)마다 문기·견 각각 4필, 배신(陪臣) 조준(趙浚)·이거이(李居易) 등 24원에게 매원마다 문기·견 각각 3필을 반사한다.”</p> <p>하였다. 사신에게 연향(宴享)을 베풀고 나서,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가서 위안 접대[慰接]하고 돌아왔다.</p>	<p>獻、禮部主事陸顛，賜王及父兄親戚陪臣文綺絹，各有數，以致嘉勞之懷，至可領也。夫守道者，福之所隨，違道者，殃之所集，天之命也。朕奉天而行，樂與宇內，同臻于治，尙其勸之，以綏多福。頒賜國王文綺絹各六匹、藥材木香二十斤、丁香三十斤、乳香一十斤、辰砂五斤；前王李【太上王諱。】文綺絹各五匹，前權知國事李【上王諱。】文綺絹各五匹。別勅頒賜國王親戚李和、李芳毅等一十三員，每員文綺絹各四匹；陪臣趙浚、李居易等二十四員，每員文綺絹各三匹。宴使臣訖，上至太平館，慰接而還。</p>
<p>태종 2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9월 1일(정해) 2번째기사 조선의 말 1만 필을 무역하고 싶다는 명 황제의 뜻이 담긴 병부의 자문</p>	<p>병부(兵部)의 자문(咨文)에는 이러하였다. “건문(建文) 3년 6월 12일에 태복관(太僕官)이 문무 백관과 함께 봉천문(奉天門)에 일찍 조회하고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조선국에 마필(馬匹)이 많이 산출되어 전일에 국왕이 좋은 생각으로 말 3천 필을 바치었는데, 이미 요동도사(遼東都司)에 명하여 관군에게 주어서 타게 하였다. 지금 다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약간의 말을 쓰려고 하여, 사람을 시켜 단필(段匹)·포초(布綯)·약재(藥材)를 운반하고, 태복시 소경 축맹헌(祝孟獻)과 예부 주사(禮部主事) 육옹(陸顛)을 시켜 좋은 말 1만 필을 바꾸게 하였으니, 너희 병부(兵部)는 문서</p>	<p>兵部咨曰： 建文三年六月十二日，太僕官同文武百官，早朝於奉天門，欽奉聖旨：“朝鮮國多產馬匹，前日國王好意思，進馬三千匹，已命遼東都司，給與官軍騎坐了。如今再用些堪戰的馬，差人運著段匹布綯藥材，就教太僕寺少卿祝孟獻、禮部主事陸顛去，易換好馬一萬</p>

	<p>를 보내어 국왕의 관사관(管事官)에게 일러서, 매양 관민(官民)의 말 있는 집에 알리게 하여, 그곳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바꾸어 오되, 저들에게 결손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본부(本部)에서 이제 성지(聖旨)의 사의(事意)대로 갖추 일러 보내고 이자(移咨)하여 알리는 바이니, 준행(遵行)하여 시행하라. 말 1만필을 바꾸기 위한 단필(段匹) 등물(等物)과 각색(各色) 저사(苧絲)·생초(生絹)·면포(縣布)와 약재(藥材)로는 목향(木香)·정향(丁香)·황련(黃蓮)·단사(丹砂)·담반(澹礬)·천궁(川芎)·축사(縮砂)·육두구(肉豆蔻)·양강(良薑)·백화사(白花蛇)를 운반하여 보낸다.”</p>	<p>匹。 恁兵部行文書，教國王管事的官，每知道於官民有馬之家， 照依那裏時價，易換將來，不要虧著他。” 欽此。本部今將聖旨事意，備云前去，理合移咨知會，欽遵施行。 易馬一萬匹，運去段匹等物、各色苧絲、生絹、縣布、藥材、木香、乳香、丁香、黃蓮、丹砂、澹礬、川芎、縮砂、肉豆、蔻良、姜白、花蛇。</p>
<p>태종 2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9월 2일(무자) 1 번째기사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p>	<p>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육옹(陸顛)이 먼저 나와 임금께 고하기를, “나는 글을 읽은 선비입니다. 지금 참소(讖訴)하는 사람 장근(章謹)을 만났으니, 청컨대, 왕께서 나의 박명(薄命)을 구제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오. 나더러 불신(不信)하다고 하지 마오.” 하였다. 이튿날 사신이 대궐에 이르니, 임금이 청화정(淸和亭)으로 맞아들여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취하매 축맹헌(祝孟獻)이 시를 지어 임금께 드리었다. 옹은 스스로 심질(心疾)을 느끼어 주식(酒食)을 먹지 않고, 동정(動靜)이 절도(節度)가 없었으며, 간혹 광언(狂言)을 발하였다.</p>	<p>戊子/上如太平館設宴。 顛先出告于上曰：“予，讀書生也。 今遇讖人章謹，請王救我薄命。” 上曰：“諾。 毋謂我爲不信也。” 翌日，使臣至闕，上迎入淸和亭設宴。 酒酣，祝孟獻賦詩獻上；顛自感心疾，不進酒食，動靜無節，或發狂言。</p>
<p>태종 2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9월 15일(신축) 1번째기사 명나라 국자감생 송호</p>	<p>명나라 조정의 국자감생(國子監生) 송호(宋鎬)·상안(相安)·왕함(王咸)·유경(劉敬) 등 4인이 말값[馬價]을 가지고 왔는데, 문기(文綺)·견(絹)·면포(縣布) 9만여 필과 약재였다. 수레 1백 50량과 소·말 3백 필을 써서 서울로 실어 들어왔다.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가서 위로연을 베풀었는데, 감생(監生) 네 사람의 자리는 사신의 아래 조금 뒤에다 베풀고, 수의(獸醫) 두 사람은 서편에</p>	<p>辛丑/朝廷國子監生宋鎬、相安、王咸、劉敬等四人齎馬價來。 文綺絹縣布九萬餘匹及藥材，用車一百五十兩、牛馬三百馱入京， 上幸太平館慰宴。 設監生四人坐於使臣之下差後，獸醫二</p>

<p>등이 무역할 말값을 가지고 오다</p>	<p>서게 하여 북향(北向)케 하고, 탁자만 베풀어 놓았다. 임금이 잔을 잡고 왕명(王明)을 부르니, 명이 말하기를, “저 네 사람도 우리와 일반인데, 어찌서 우리들만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고 사양하고 나갔다. 임금이 앉도록 허락하고자 하여 축맹헌(祝孟獻)에게 물으니, 맹헌이 말하기를, “그들은 천인(賤人)이니 앉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였다. 임금이 사신들과 더불어 극진히 즐기고, 저물어서 파하였다. 수일 뒤에 임금이 또 태평관에 나가서 사신에게 잔치하였는데, 수의(獸醫) 왕명(王明)·주계(周繼) 두 사람이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다. 통사(通事)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왕명이 말하기를, “우리들도 감생(監生)과 일반인데, 어찌서 감생은 앉는 것을 허락하고, 우리들은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찬구(饌具)도 또한 같지 않은가?” 하였다. 통사가 전일에 맹헌이 한 말을 고하였더니, 왕명이 말하였다. “우리들이 원망하는 것은 국왕이 아니라 축 소경(祝少卿)이오.”</p>	<p>人立於西偏北向，但設卓。上執盃召王明，明曰：“彼四人與吾一般，何獨於吾等不許坐乎？”辭而出。上欲許坐，問於孟獻，孟獻曰：“此賤人也，毋許坐。”上與使臣極歡暮罷。後數日，上又詣太平館宴使臣，獸醫王明、周繼二人稱病不出。通事問其故，王明曰：“吾等與監生一般，乃何監生則許坐，吾等不許坐，饌具又不似歟？”通事以前日孟獻之言告之，王明曰：“吾等所怨，非國王，乃祝少卿也。”</p>
<p>태종 2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9월 29일(을묘) 1번째기사 일본의 대마도 임시 태수 종정무 등이 말·석고·백반을 바치다</p>	<p>일본국(日本國) 권 대마도태수(權對馬島太守) 종정무(宗貞茂)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말 6필을 바치고, 대마 주수(對馬州守) 사미 영감(沙彌靈鑑)이 사자를 보내어 말 4필을 바치고, 박다(博多)의 자운 주지(慈雲住持) 천진(天真)이 석고(石膏) 5근과 백반(白礬) 30근을 바쳤다.</p>	<p>乙卯/日本國權對馬島太守宗貞茂，遣使獻馬六匹；對馬州守沙彌靈鑑，遣使獻馬四匹；博多慈雲住持天真，獻石膏五斤、白礬三十斤。</p>
<p>태종 2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0월 1일(병진)</p>	<p>대마도 태수(對馬島太守) 종정무(宗貞茂)·일기도 수호(一岐島守護) 지종(志宗)의 사인(使人)이 돌아가므로, 정무에게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2령(領), 자리[席子] 20장, 쌀·콩 각각 20석을 하사하고, 지종(志宗)에게 호피·표피 각</p>	<p>丙辰朔/對馬島太守宗貞茂、一岐島守護志宗使人還。賜貞茂虎豹皮各二領、席子二十張、米豆各二十石，志宗</p>

<p>1번째기사 대마도 태수 중정무의 사인들에게 호피·표피 등을 하사하다</p>	<p>각 1령, 자리 10장, 백저포(白苧布)·흑마포(黑麻布) 각각 10필을 하사하였으되, 모두 그 사자(使者)에게 주어 보냈다.</p>	<p>虎豹皮各一領、席子十張、白苧黑麻布各十匹，皆授其使而送之。</p>
<p>태종 2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0월 3일(무오) 1번째기사 태평관에 나아가 무역할 말값을 가져온 감생 동섭에게 잔치를 베푼다</p>	<p>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使臣)과 감생(監生) 동섭(董漚)에게 잔치를 베푼었다. 섭이 말값[馬價]을 가지고 왔으므로, 의정부(議政府)에서 문밖에서 영접하였다. 임금이 태평관에 나아가니, 육옹(陸顛)이 임금께 청하기를, “원컨대 전하께서 황제에게 용이 이미 죽었다고 아뢰어 주소서.” 하고, 애걸하고 간청하기를 매우 지극히 하여, 배례(拜跪)하기를 수없이 하고, 주식(酒食)도 먹지 아니하였다. 이튿날 대언(代言) 이응(李膺)을 시켜 태평관에 문안하니, 촉맹헌이 사례하기를, “전일에 몹시 취하여 전하를 배송(拜送)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생(監生) 한 사람은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사람을 시켜 대답하였다. “나는 천사(天使)께서 한번 취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한다. 어찌 배웅하지 않은 것을 한하겠소?”</p>	<p>戊午/上如太平館，宴使臣及監生董漚。漚齎馬價而來，議政府迎于門外。上就館，陸顛請于上曰：“願殿下奏帝顛已死矣。”哀懇甚至，拜跪無算，不進酒食。翼日，使代言李膺問安于太平館，孟獻謝曰：“前日醉甚，未能拜送殿下。監生一人，今尙未起。”上使人答曰：“予甚喜天使之一醉，豈以不送爲憾乎？”</p>
<p>태종 2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0월 16일(신미) 4번째기사 비로소 말값을 내준다</p>	<p>비로소 말값을 주었다. 상등 말은 단자(段子)면 4필, 견(絹)이면 10필이고, 중등 말은 견이면 8필, 면포(縣布)면 12필이고, 백화사(白花蛇)·목향(木香)·유향(乳香) 등 여러가지 약재를 아울러 주었다.</p>	<p>始給馬價。上等馬，段子則四匹，絹則十匹；中等馬，絹則八匹，縣布則十二匹，以白花蛇木香乳香等諸般藥材并給之。</p>
<p>태종 2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2월 22일(병자) 2번째기사</p>	<p>소맥(小麥) 조세(租稅)의 수를 감하고, 또 농사 틈에 바치라고 명하였다.</p>	<p>減小麥租稅之數，且命納以農隙。</p>

소맥의 조세를 감하고 농한기에 견도록 하다		
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월 4일(정해) 1 번째기사 왜인이 토산물을 바치 다	왜인 4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丁亥/倭四人來獻土物。
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2월 14일(정묘)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사섬서의 추포 사용이 저화 유 통을 어렵게 한다고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사섬서(司贍署)에서 여전히 추포(麤布)를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기를 청하여, “저화(楮貨)의 유통에 보답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니, 곧 호조(戶曹)로 하여금 저화를 내어 금·은·목면(木綿)·마포(麻布)·저포(苧布)를 사게 하고, 풍저창(豐儲倉)은 쌀을 내어 저화를 사게 하였다. 또 경상도 미곡(米穀) 2천 석과 전라도 미곡 1천 석으로 저화를 사니, 백성으로서 풍저창과 경상·전라 두 도에서 쌀을 사고자 하는 자가 면포(縣布)를 호조에다 앞을 다투어 납부하고 저화를 받아 갔다. 그러나 민정(民情)이 구습(舊習)에 젖어서 추포의 사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헌부에서 상소한 것이었다.	丁卯/司憲府上疏請罷司贍署，仍舊用麤布，不報。楮貨之行，民不信用，乃令戶曹出楮貨，買金銀木絲麻布苧布，豐儲倉出米買楮貨，又以慶尙道米穀二千石、全羅道一千石，買楮貨。民之欲買米於豐儲及兩道者，爭納縣布於戶曹而受楮貨，然民情狃於舊習，而喜用麤布，故憲司上疏。
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2월 28일(신사) 2번째기사 교서관의 홍도연에 궁 온을 내리다	대언(代言) 유기(柳沂)를 보내 궁온(宮醞)을 교서관(校書館)의 홍도연(紅桃宴)에 내려 주었다. 예문(藝文)·성균(成均)·교서(校書) 3관(三館)이 각각 상받은 물건으로서 그 연회의 이름을 붙였는데, 예문관에서는 ‘장미연(薔薇宴)’이라 하고, 성균관에서는 ‘벽송연(碧松宴)’이라 하고 교서관에서는 ‘홍도연(紅桃宴)’이라고 하여, 3년에 한 차례씩 돌려가며 마련하여 회음(會飲)하였다. 임금이 유아(儒雅)를 중히 여긴 까닭에, 궁온(宮醞)을 내려주어 사치하게 하였다.	遣代言柳沂，賜宮醞于校書館紅桃宴。藝文、成均、校書三館，各以所賞之物名其宴，藝文曰薔薇，成均曰碧松，校書曰紅桃，三年一次輪辦會飲。上重儒雅，故賜宮醞以侈之。
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풍저창(豐儲倉)의 미두(米豆)와 사재감(司宰監)의 어육(魚肉)으로 민간(民間)의 저화(楮貨)를 바꾸었으니, 저화를 통용케 하고자 함에서였다. 임금이 하운(河	以豐儲倉米豆、司宰監魚肉，易民間楮貨。欲楮貨之通行也。上謂河崙曰：

<p>4년) 3월 7일(경인) 4 번째기사 저화의 통용을 위해 풍저창의 미두와 사재 감의 어육을 민간의 저화와 바꾸다</p>	<p>崙)에게 일렀다. “일반 백성들이 무역을 할 때에 포목만을 쓰려 하고, 저화는 쓰려 하지 아니 한다. 이것은 아마도 습속(習俗)이 포목만을 쓸 줄 알고, 저화가 쓰기에 편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저화를 가지고 민간의 오중포(五綜布)를 바꾸어 모두 공가(公家)로 들어오면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저화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저화가 민가에 아직 두루 돌지 못했는데 갑자기 포목의 사용을 금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이를 원망할 것이다. 저화를 제조할 판(板)을 더 만들어서 인쇄해 내어 사람마다 모두 저화를 얻을 수 있게 한 뒤에 기한을 정하여 포목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 옳겠다.”</p>	<p>“凡民當貿易之際，以布爲可用，以楮貨爲無用，是蓋習俗惟知用布，不知楮貨之爲便也。以楮貨換民間五綜布，盡入於公，則民不得已而用楮貨矣。但楮貨未遍民戶，而遽禁用布，則民必怨之。加造楮貨板印出，使人人皆可以得楮貨，然後定期限禁用布可也。”</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3월 15일(무술) 1번째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푼다. 왕명이 추태를 보이다</p>	<p>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푼다. 사신이 수의(獸醫) 왕명(王明)·주계(周繼) 등을 불러 연회에 나오게 하였으나, 왕명은 오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앉도록 허용치 않은 것에 대하여 격분했기 때문이다. 임금이 통사 최천로(崔天老)에게 명하여 그가 있는 장소에서 대접하게 하였다. 최천로가 술을 돌려 왕명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애기(愛妓)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니, 왕명이 노하여 천로의 가슴을 발로 차서, 기절했다가 약을 마시고 소생했다. 관반(館伴) 서원군(西原君) 한상경(韓尙敬)과 문성군(文城君) 유양(柳亮)이 이 사실을 축맹헌에게 고하니 축맹헌이 말하였다.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불상사입니다.”</p>	<p>戊戌/上如太平館宴使臣。使臣召獸醫王明、周繼等赴宴，明不來。忿其不許坐也。上命通事崔天老，饋於其所。天老行酒至明所，愛妓不跪，明怒，蹴天老胸，氣絕飲藥得蘇。館伴西原君韓尙敬、文城君柳亮，以告孟獻，孟獻曰：“有是乎不祥也!”</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3월 22일(을사) 2번째기사 임금이 과음으로 유숙한 때문에 군사와 짐꾼이 먼저 출발하다</p>	<p>이튿날 임금이 술로 인하여 고단해서 유숙(留宿)하므로 군사(軍士)와 치중(輜重)이 먼저 출발하여 장단(長湍)을 지나는데, 태상왕이 사람을 보내 말먹이[馬料]를 주면서 말하기를, “만약 부족하면 더 보내겠다.” 하매, 임금이 사인(使人)에게 말하였다. “내려 주시는 것을 안 받으면 예(禮)가 아니니 감히 받지 않을 수 없다. 부왕</p>	<p>明日，上因酒困留宿，軍士輜重先發過長湍。太上王遣人給人馬料曰：“若不足則加送之。”上語使人曰：“賜之而不受，非禮也，不敢不受。父王若問，宜對以有餘。”</p>

	(父王)께서 만약 물으시면 넉넉하다고 대답하라.”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4월 9일(신유) 4 번째기사 풍해도 도관찰사 장자 충이 보고한 수군의 폐단</p>	<p>풍해도 도관찰사 장자충(張子忠)이 수군(水軍)의 폐단을 말하였다. 그 말에 이르기를, “수군(水軍)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급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형이나 자체가 양식을 가지고 선소(船所)까지 옵니다. 배를 타는 사람[騎船人]이 간혹 왜구(倭寇)를 추격하여 그 선소를 멀리 떠나게 되면 배를 주리고 고단하여 흩어져 도망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원컨대 5가(家)를 1호(戶)로 하여 요(料)를 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와 같은 일은 의정부에서 잘 생각하지 않고 행이(行移)하고, 수령(守令)은 또 마음을 쓰지 않고 행하였기 때문이다.”</p>	<p>豐海道都觀察使張子忠，陳水軍之弊。其言曰：“水軍之弊，不可勝言。國家不給料，或其父兄子弟，齎糧至船所，騎船人或因逐倭，遠離其所，則人多飢困，因此逃散太甚。願以五家爲一戶給料。”上曰：“如此之事，議政府不熟思而行移，守令又不用心而行之故也。”</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4월 12일(갑자) 1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p>	<p>금주령(禁酒令)을 내렸으니, 경기도 관찰사 이원(李原)의 아뢰에 따른 것이었다.</p>	<p>甲子/下禁酒令。從京畿都觀察使李原之啓也。</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4월 17일(기사) 2번째기사 대언 이응을 보내어 성균관의 벽송연과 기 로회에 술을 내려주다</p>	<p>대언 이응(李膺)을 보내어 성균관(成均館)의 벽송연(碧松宴)에 술을 내려 주었다. 성균관에서 벽송연을 베푸니 임금이 명하기를, “정록소(正錄所)는 과인(寡人)이 선비를 시험하는 곳이다. 이제 술을 내려 주니 가서 내 뜻을 알리어라.” 하였다. 서원 부원군(西原府院君) 이거이(李居易)가 기로회(耆老會)를 베푸니 또 술을 내려 주었다.</p>	<p>遣代言李膺，賜酒于成均館碧松宴。成均館設碧松宴，上命曰：“正錄所，寡人試仕之地，玆用賜酒，往諭予意。”西原府院君李居易設耆老會，又賜酒。</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4월 24일(병자)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일절 술을 금하기를 청하자 공사 의 주연만을 금하다</p>	<p>공사(公私)의 연음(宴飲)을 금(禁)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언(上言)하기를, “근자(近者)에 하늘의 견고(譴告)가 있고, 또 흉년이 든 까닭에 전하께서 조심 하고 두려워하시어 절용(節用)하시고 금주령(禁酒令)을 여러 도(道)에 내리셨 사운데, 경중(京中)은 그렇지 못하여 공사(公私)의 연음(宴飲)이 끊이지 아니 하여 비용을 허비하며 즐기니, 전하께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수성(修省)하시 는 마음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제향(祭享)의 공상(供上)과 중국 사신(使臣)의 연향(宴享) 이외에는 일절 모두 술을 금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금년 봄에 담근 술이 이미 익었으니 엄중히 금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公 私)의 연음(宴飲)만을 금하라.”</p>	<p>禁公私宴飲。司憲府上言：“近來天有 譴告，歲且不稔，故殿下恐懼節用，下 禁酒令于諸道。京中則不然，公私宴 飲不絕，糜費佚樂，有乖於殿下恐懼修 省之心。願祭享供上，朝廷使臣宴享 外，一皆禁酒。”上曰：“今春釀酒已 熟，不可痛禁，止禁公私宴飲。”</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5월 10일(임진) 1번째기사 상왕전에 나아가 헌수 하고 매우 즐기다</p>	<p>임금이 상왕전(上王殿)에 나아가서 헌수(獻壽)하고 매우 즐기었다.</p>	<p>壬辰/上詣上王殿，獻壽極歡。</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5월 13일(을미) 2번째기사 임팔라실리 등이 평양 에서 와서 예궐하니 음식을 주게 하다</p>	<p>임팔라실리 등 8명이 평양으로부터 와서 예궐(詣闕)하니 음식을 먹이라고 명 하였다.</p>	<p>林八刺失里等八人來自平壤詣闕，命餉 之。</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5월 17일(기해)</p>	<p>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감생(監生) 단목지(端木 智)는 술을 마시지 않고 박석명(朴錫命)에게 말하기를, “뒷날 한가한 때에 너댓 명의 가기(歌妓)를 데리고 오면, 내가 술을 한없이</p>	<p>己亥/上如太平館宴使臣。監生端木 智不飲，謂朴錫命曰：“後日閑中率四 五歌妓而來，吾當飲之無量。”錫命以</p>

<p>1번째기사 태평관 잔치에서 감생 단목지가 노래하는 기생을 칭하다</p>	<p>마시겠소.” 하므로 박석명이 아뢰니, 임금의 허락하였다.</p>	<p>啓, 上許之。</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5월 20일(임인) 1번째기사 축맹헌·단목지 등을 서교에서 전송하다</p>	<p>축맹헌·단목지 등이 명나라 서울로 돌아가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서교(西郊)에서 전송하였다. 맹헌은 사람됨이 관후(寬厚)하고 예의가 있어 태평관에 머문 지 1년이 넘었어도 기색(妓色)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묵희(墨戲)에 조예가 있어 사람들이 종이를 가지고 가서 청하면 곧 응해 주었다. 또 시(詩)에도 능하여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였다. 단목지는 글을 잘 쓴다고 스스로 자랑하였으나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였다. 그가 돌아감에 이르러 다만 석등잔(石燈盞)·인삼(人蔘)·작설차(雀舌茶)를 받았을 뿐이었다.</p>	<p>壬寅/祝孟獻、端木智等還京師，上率百官餞于西郊。孟獻爲人寬厚有禮，館寓踰年，不近妓色，工於墨戲，人有携紙而求者，輒應之，又能詩，人皆愛敬。智以善書自矜，人頗惡之，及其還也，但受石燈盞人蔘雀舌而已。</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5월 26일(무신) 1번째기사 대마도의 수호 종정무 에게 토산물을 내려 주다</p>	<p>대마도(對馬島)의 수호(守護) 종정무(宗貞茂)에게 토산물을 내려 주었다. 사인(使人)에게 부쳐 보냈으니, 인삼(人蔘)이 20근·흑마포(黑麻布) 3필·백저포(白苧布) 3필, 쌀 40석, 콩 20석이였다. 또 종화전(宗和殿)의 종구랑(宗九郎)·종오랑(宗五郎)과 소이전(小二殿) 등에게 사람을 시켜 쌀과 콩 각 10석, 잣(松子) 각 2석, 호피(虎皮) 각 1장을 내려 주었으니, 종정무가 예물(禮物)을 바쳤기 때문이었다.</p>	<p>戊申/賜對馬島守護宗貞茂土物，就付使人以送。人蔘二十斤，黑麻布三四，白苧布三匹，米四十石，豆二十石。又賜宗和殿宗九郎、宗五郎、小二殿等使人米豆各十石、松子各二石、虎皮各一張。時，貞茂獻禮物故也。</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5월 29일(신해) 1번째기사 소를 잡아 술잔치를 별인 덕천고 별감 강 택 등을 파면하다</p>	<p>덕천고 별감(德泉庫別監) 강택(康澤)·김온(金穩)·정점(鄭漸) 등을 파면하였다. 강택 등이 소를 잡고 회음(會飲)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탄핵하였기 때문이다.</p>	<p>辛亥/德泉庫別監康澤、金穩、鄭漸罷。澤等宰牛會飲，憲司劾之。</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6월 1일(계축) 6번째기사 삼도의 곡식 운반에 힘쓴 도체찰사 임정에 게 말 1필을 내려 주다</p>	<p>삼도 도체찰사(三道都體察使) 임정(林整)에게 말 1필을 내려 주었다. 임정이 충청·경상·전라도의 쌀과 콩을 조운(漕運)하였는데, 전후(前後)로 운반한 것이 모두 10만 2천 3백 14석(石)이었다.</p>	<p>賜三道都體察使林整馬一匹。 整漕運忠清、慶尙、全羅道米豆，前後運摠十萬二千三百十四石。</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6월 5일(정사) 1번째기사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 제조와 의논하여 악조(樂調) 10곡을 올리다</p>	<p>예조(禮曹)에서 의례 상정소 제조(儀禮詳定所提調)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악조(樂調)를 올렸다. “신 등이 삼가 고전(古典)을 상고하건대, ‘음(音)을 살펴서 악(樂)을 알고, 악(樂)을 살펴서 정사(政事)를 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악(樂)을 함하여 신기(神祇)를 이르게 하며 나라를 화(和)하게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정성(正聲)은 사람을 감동시키되 기운이 응함을 순(順)하게 하고, 간성(姦聲)은 사람을 감동시키되 기운이 응함을 거슬리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관(周官) 대사악(大司樂)이 음성(淫聲)·과성(過聲)·흉성(兇聲)·만성(曼聲)을 금(禁)하였습니다. 신 등이 가만히 보건대, 전조(前朝)에서 삼국(三國) 말년의 악을 이어받아 그대로 썼고, 또 송조(宋朝)의 악을 따라 교방(敎坊)의 악(樂)을 사용토록 청하였으니 그 말년에 이르러 또한 음란한 소리[哇淫之聲]가 많았사온데 조회(朝會)와 연향(宴享)에 일체 그대로 썼으니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국초(國初)를 당하여 그대로 인습(因襲)하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신 등이 삼가 양부(兩府)의 악(樂)에서 그 성음(聲音)이 약간 바른[稍正]것을 취(取)하고 풍아(風雅)의 시(詩)를 참고로 하여 조회와 연향의 악을 정하고 신민(臣民)이 통용하는 악에 이르기까지도 미쳤습니다. 아래에 갖추 열거하였사오니, 성상께서 밝히 보시고 시행하시어 성음(聲音)을 바꾸고 화기(和氣)를 부르소서.</p>	<p>丁巳/禮曹與儀禮詳定提調同議， 進樂調： 臣等謹按古典：“審音以知樂， 審樂以知政。” 又曰：“合樂以致(神祇) [神祇]， 以和邦國。” 又曰：“正聲感人而順氣應， 姦聲感人而逆氣應。” 是以《周官》大司樂， 禁其淫聲過聲兇聲曼聲。 臣等竊觀前朝承三國之季， 因用其樂， 又從宋朝， 請用敎坊之樂， 及其季世， 又多哇淫之聲， 朝會宴享， 一切用之， 無足可觀。 今當國初， 不可因襲。 臣等謹於兩部樂， 取其聲音之稍正者， 參以風雅之詩， 定爲朝會宴享之樂， 以及臣庶通行之樂， 具列于左。 上鑑施行， 以正聲音， 以召和氣。 國王宴使臣樂： 王與使臣坐定， 進茶， 唐樂奏《賀聖朝令》。 進初盞及進組，</p>

국왕 연사신악(國王宴使臣樂)118) . 왕과 사신이 좌정(坐定)하면 다(茶)를 올린다. 당악(唐樂)이 하성조령(賀聖朝令)을 연주한다. 첫 잔을 올리고 조(俎)를 올릴 때 이르러 녹명(鹿鳴)을 노래하되 중강조(中腔調)를 쓴다. 헌화(獻花)하면 황황자화(皇皇者華)를 노래하되 전화지조(轉花枝調)를 쓴다. 둘째 잔을 올리고, 첫번째 탕(湯)을 올릴 때 이르러서는 사모(四牡)를 노래하되 금전악조(金殿樂調)를 사용한다. 세째 잔을 올리면 오양선 정재(五羊仙呈才) 119) 를 하고, 두 번째 탕(湯)을 올리면 어리(魚麗)를 노래하되 하운봉조(夏雲峯調)를 사용한다. 네째 잔(盞)을 올리면 연화대 정재(蓮花臺呈才) 120) 를 하고, 세번째 탕(湯)을 올리면 수룡음(水龍吟)을 노래하며, 다섯째 잔을 올리면 포구락 정재(拋毬樂呈才) 121) 를 하고, 네 번째 탕(湯)을 올리면 금잔자(金盞子)를 읊고, 여섯째 잔을 올리면 아박 정재(牙拍呈才) 122) 를 하고, 다섯 번째 탕을 올리면 억취소(憶吹簫)를 부르며, 일곱째 잔을 올리면 무고 정재(舞鼓呈才) 123) 를 하고, 여섯 번째 탕을 올리면 신공(臣工)을 노래하되 수룡음조(水龍吟調)를 사용한다. 여덟째 잔을 올리면 녹명(鹿鳴)을 노래하고, 일곱 번째 탕을 올리고 아홉째 잔에 이르면, 황황자화(皇皇者華)를 노래하며, 여덟 번째 탕을 올리고 열째 잔에 이르면, 남유가어(南有嘉魚)를 노래하되 낙양춘조(洛陽春調)를 사용하며, 아홉 번째 탕을 올리고 열 한 번째 잔에 이르면 남산유대(南山有臺)를 노래하되 풍입송조(風入松調)나 낙양춘조(洛陽春調)를 사용한다.

국왕 연종친형제악(國王宴宗親兄弟樂)124) 왕이 전(殿)에 나앉으면 하성조조(賀聖朝調)를 연주한다. 조(俎)를 올리면 태평년(太平年)을 연주한다. 꽃을 올리[獻花]면 행위(行葦)를 노래하되, 금강성조(金剛城調)를 사용한다. 첫번째 탕(湯)을 올리면 관저(關雎)를 노래하고, 첫째 잔(盞)을 올리면 수보록 정재(受寶籙呈才) 125) 를 한다. 두 번째 탕(湯)을 올리면 인지(麟趾)를 노래하고, 둘째 잔(盞)을 올리면 몽금척 정재(夢金尺呈才) 126) 를 한다. 세 번째 탕(湯)

歌《鹿鳴》，用《中腔調》。獻花，歌《皇皇者華》，用《轉花枝調》。進二盞及進初度湯，歌《四牡》，用《金殿樂調》。進三盞，《五羊仙》呈才。進二度湯，歌《魚麗》，用《夏雲峰調》。進四盞，《蓮花臺》呈才。進三度湯，《水龍吟》。進五盞，《拋毬樂》呈才。進四度湯，《金盞子》。進六盞，《牙伯》呈才。進五度湯，《憶吹簫》。進七盞，《舞鼓》呈才。進六度湯，歌《臣工》，用《水龍吟調》。進八盞，歌《鹿鳴》。進七度湯及九盞，歌《皇皇者華》。進八度湯及十盞，歌《南有嘉魚》，用《洛陽春調》。進九度湯及十一盞，歌《南山有臺》，用《風入松調》，或《洛陽春調》。

國王宴宗親兄弟樂：王坐殿，奏《賀聖朝調》；進俎，奏《太平年》；獻花，歌《行葦》，用《金剛城調》。進初度湯，歌《關雎》。進初盞，《受寶籙》呈才。進二度湯，歌《麟趾》。進二盞，《夢金尺》呈才。進三度湯，歌《葛藟〔葛覃〕》，用《紫霞洞調》。進三盞，《五羊仙》呈才。進

	<p>을 올리면 갈담(葛覃)을 노래하되 자하동조(紫霞洞調)를 사용한다. 세째 잔(盞)을 올리면 오양선 정재(五羊仙呈才)를 하고, 네 번째 탕(湯)과 네째 잔(盞)을 올리면 포구락 정재(拋毬樂呈才)를 하고, 다섯 번째 탕(湯)을 올리면 신공(臣工)을 노래하고, 다섯째 잔(盞)을 올리면 무고 정재(舞鼓呈才)를 한다. 여섯 번째 탕(湯)을 올리고, 여섯째 잔(盞)을 올리면 문덕곡(文德曲)을 노래한다. 일곱 번째 탕(湯)을 올리고, 일곱째 잔(盞)을 올리면 남산유대(南山有臺)를 노래한다.</p> <p>국왕 연군신악(國王宴群臣樂)127) . 처음의 의식[初儀]은 위의 의식과 같다. 꽃을 올리면[獻花] 녹명(鹿鳴)을 노래하되 금강성조(金剛城調)를 사용한다. 일곱 번째 탕(湯)을 올리고, 일곱째 잔(盞)을 올리면 억편(抑篇)을 노래한다. 그 나머지는 모두 위의 의식과 같다.</p> <p>국왕 견본국사신악(國王遣本國使臣樂)128) . 처음의 의식은 위와 같다. 첫째 잔(盞)을 올리면 황황자화(皇皇者華)를 노래하고, 여덟째 잔을 올리면 사모(四牡)를 한다. 나머지는 위의 의식과 같다.</p> <p>국왕 노본국사신악(國王勞本國使臣樂)129) . 처음의 의식은 위와 같다. 첫째 잔(盞)을 올리면 사모(四牡)를 노래하고, 세 번째 탕(湯)을 올리면 황황자화(皇皇者華)를 노래한다. 그 나머지는 모두 위와 같다.</p> <p>국왕 견장신악(國王遣將臣樂)130) . 처음의 의식은 위와 같다. 꽃을 올리면 채미(采薇)를 노래하고, 나머지는 모두 위의 의식과 같다.</p> <p>국왕 노장신악(國王勞將臣樂)131) . 처음의 의식은 위와 같다. 꽃을 올리면 장두(杖杜)를 노래하고, 세 번째 탕(湯)을 올리면 채미(采薇)를 노래하고, 나머지는 모두 위와 같다.</p> <p>정사를 볼[視朝] 때에는 당악(唐樂)을 사용하고, 대가 앞[駕前]에서는 당악(唐樂)과 호부악(胡部樂)을 사용하며, 강무(講武)할 때에는 종고(鍾鼓)를 쳐서 절(節)로 삼고, 대사(大射)할 때에는 녹명(鹿鳴)을 노래한다.</p>	<p>四度湯及進四盞, 《拋毬樂》呈才。進五度湯, 歌《臣工》。進五盞, 《舞鼓》呈才。進六度湯及進六盞, 《文德曲》。進七度湯及進七盞, 歌《南山有臺》。</p> <p>國王宴群臣樂: 初儀上同。獻花, 歌《鹿鳴》, 用《金剛城調》。進七度湯及進七盞, 歌《抑篇》。餘皆上同。</p> <p>國王遣本國使臣樂: 初儀上同。進初盞, 歌《皇皇者華》。進八盞, 歌《四牡》。餘皆上同。</p> <p>國王勞本國使臣樂: 初儀上同。進初盞, 歌《四牡》。進三度湯, 歌《皇皇者華》。餘皆上同。</p> <p>國王遣將臣樂: 初儀上同。獻花, 歌《采薇》。餘皆上同。</p> <p>國王勞將臣樂: 初儀上同。獻花, 歌《杖杜〔杖杜〕》。進三度湯, 歌《采薇》。餘皆上同。</p> <p>視朝唐樂, 駕前唐樂胡部樂。講武擊鐘鼓, 以爲節。大射, 歌《鹿鳴》。</p> <p>議政府宴朝廷使臣樂: 初盞及進俎, 歌《鹿鳴》, 獻花。及進二盞, 歌《皇皇者華》。初度湯, 歌《四牡》。進</p>
--	---	---

	<p>의정부 연조정사신악(議政府宴朝廷使臣樂)132) . 첫째 잔(盞)과 조(俎)를 올리면 녹명(鹿鳴)을 노래하고 헌화(獻花)하고, 둘째 잔을 올리면 황황자화(皇皇者華)를 노래하며, 첫번째 탕(湯)을 올리면 사모(四牡)를 노래하고, 세째 잔을 올리면 연화대 정재(蓮花臺呈才)를 하며, 두 번째 탕을 올리면 남유가어(南有嘉魚)를 노래하고, 네째 잔을 올리면 아박 정재(牙拍呈才)를 하며, 세 번째 탕을 올리면 어리(魚麗)를 노래한다. 다섯째 잔을 올리면 무고 정재(舞鼓呈才)를 하고, 네 번째 탕을 올리면 남산유대(南山有臺)를 노래하며, 여섯째 잔을 올리면 삼현(三絃)을 연주하고, 다섯 번째의 탕을 올리고, 일곱째 잔을 올리면 문덕곡(文德曲)의 대육(大肉)을 연주하며, 여덟째 잔을 올리면 송산조(松山操)를 부르되 낙양춘조(洛陽春調)를 사용한다.</p> <p>의정부 연본국사신악(議政府宴本國使臣樂)133) . 위의 의정부 연조정사신악(議政府宴朝廷使臣樂)의 의식과 같다.</p> <p>의정부 전본국장신악(議政府饌本國將臣樂)134) . 첫째 잔(盞)과 조(俎)를 올리면 채미(采薇)를 노래하고, 그 나머지는 위와 같다.</p> <p>의정부 노장신악(議政府勞將臣樂)135) . 첫째 잔(盞)과 조(俎)를 올리면 장두(杖杜)를 노래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위와 같다.</p> <p>1품 이하 대부·사 공사연악(一品以下大夫士公私宴樂)136) . 첫째 잔(盞)과 조(俎)를 올리면 녹명(鹿鳴)을 노래하되 금강성조(金剛城調)를 사용한다. 초미(初味)와 둘째 잔(盞)에는 오관산(五冠山)을 노래하고, 이미(二味)와 세째 잔(盞)에는 관저(關雎)를 노래하되 자하동조(紫霞洞調)를 사용하며, 삼미(三味)와 네째 잔(盞)과 유식(侑食)137) 에 이르러서는 삼현(三絃)을 연주하고, 사미(四味)와 다섯째 잔(盞)에는 방등산(方等山)을 연주하며, 오미(五味)와 여섯째 잔(盞)에는 칠월편(七月篇)을 노래하되 낙양춘조(洛陽春調)를 사용한다.</p> <p>서인 연부모형제악(庶人宴父母兄弟樂)138) . 초미(初味)와 잔이 오르면 오관산(五冠山)을 노래하고, 이미(二味)와 잔이 오르면 방등산(方等山)을 노래하</p>	<p>三盞，《蓮花臺》呈才。二度湯，歌《南有嘉魚》。進四盞，《牙伯》呈才。三度湯，歌《魚麗》。進五盞，《舞鼓》呈才。四度湯，歌《南山有臺》。進六盞，三絃。五度湯及進七盞，《文德曲》，大肉。進八盞，《松山操》，用《洛陽春調》。</p> <p>議政府宴本國使臣樂：上同。</p> <p>議政府饌本國將臣樂：初盞及進俎，歌《采薇》。餘皆上同。</p> <p>議政府勞將臣樂：初盞及進俎，歌《杖杜〔杖杜〕》。餘皆上同。</p> <p>一品以下大夫士公私宴樂：初盞及進俎，歌《鹿鳴》，用《金剛城調》。初味及二盞，《五冠山》。二味及三盞，歌《關雎》，用《紫霞洞調》。三味及四盞，侑食、三絃。四味及五盞，《方等山》。五味及六盞，《七月篇》，用《洛陽春調》。</p> <p>庶人宴父母兄弟樂：初味及盞，《五冠山》。二味及盞，《方等山》。終味及盞，《勸農歌》。</p> <p>從之。</p>
--	---	--

	<p>고, 종미(終味)와 잔이 오르면 권농가(勸農歌)를 부른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6월 6일(무오) 1 번째기사 일본국 대상(大相)이 보낸 사람 편에 토산 물을 내려 주다</p>	<p>일본국(日本國) 대상(大相)에게 토산물을 내려 주었다. 그가 보내 온 사람에게 주어 보냈으니, 은준(銀樽) 1개, 도금은규화배(鍍金銀葵花杯) 1개, 은탕관(銀湯罐) 1개, 흑사피화(黑斜皮靴) 1개, 죽모자(竹帽子) 10개, 저포(紵布)·마포(麻布) 각각 15필, 인삼(人蔘) 50근,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3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2장, 만화방석(滿花方席)·만화침석(滿花寢席) 각각 5장이었다.</p>	<p>戊午/賜日本國大相國土物，授所遣人以送之。銀樽一，鍍金銀葵花杯一，銀湯罐一，黑斜皮靴一，竹帽子一十，紵麻布各十五匹，人蔘五十斤，虎豹皮各三張，雜彩花席十二張，滿花方席、滿花寢席各五張。</p>
<p>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6월 11일(계해) 3번째기사 예조에서 사냥하는 규 정을 상정하여, 채택하 다</p>	<p>예조에서 수수법(蒐狩法)146) 을 올렸다. 그 계문(啓文)은 이러하였다. “삼가 고전(古典)을 살펴보건대,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는 일이 없으면 한 해에 세 번씩 사냥한다. 일이 없어도 사냥하지 아니함은 「불경(不敬)」이라 하고, 사냥을 예(禮)로써 하지 않는 것을 「포진천물(暴殄天物)」147) 이라 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미 세 가지 짐승[三牲]이 있는데도 반드시 사냥을 하는 것은 효자(孝子)의 마음에 천지 자연(天地自然)의 짐승의 고기가 자기가 기른 것보다 좋다[逸豫肥美]고 여기기 때문이다. 짐승이 많으면 오곡(五穀)을 해치기 때문에 병사(兵事)를 익힌다. 설자(設者)가 「불경」이라 하는 것은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고 빈객(賓客)을 소홀하게 대접함을 말함이며, 「포진천물」이라 하는 것은 못[澤]을 포위하여 떼[群]째로 짐승을 잡아 새끼와 알을 취(取)하며, 뱃속의 태(胎)를 죽이며, 단명(短命)에 죽게 하며, 등우리를 뒤엎어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없을 때에 사냥하지 아니함도 불가(不可)하고, 사냥하여도 물건을 아끼지 않는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신 등은 역대(歷代)로 사냥하던 법[蒐狩之儀]을 참고하여 아래에 갖추 아뢰오니, 전하께서 해마다 세 번씩 친히 근교에서 사냥하시어 종묘(宗廟)</p>	<p>禮曹上蒐狩之法。啓曰：“謹按古典：‘天子諸侯，無事則歲三田。無事而不田曰不敬，田不以禮曰暴殄天物。’又曰：‘已有三牲，必田狩者，孝子之意以爲，己之所養，不如天地自然之牲逸豫肥美也。禽獸多則傷五穀，因習兵事。’說者謂：‘不敬者，簡祭祀略賓客。暴殄天物者，圍澤拵群，取麕卵殺胎，殲夭覆巢也。’然則無事而不田爲不可，田而殄物，亦不可也。臣等參考歷代蒐狩之儀，開具于後。伏望殿下，歲以三時，親田近郊，以奉宗廟，以講武事。前期七日，兵曹徵衆，庶循田法。承樞府表所田之地，其日未明，建旗於所田之後，近郊隨田之宜。</p>

	<p>를 받드시고, 무사(武事)를 강구(講究)하소서.</p> <p>7일을 전기(前期)하여 병조(兵曹)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 사냥하는 법[田法]을 지키[循守]게 하고, 승추부(承樞府)에서는 사냥할 곳에다 표지(標識)를 붙인다. 그날 미명(未明)에 사냥할 곳의 뒤, 근교(近郊)에다 적당한 곳에 기(旗)를 세우고, 여러 장수는 각각 병졸을 거느리고 기 아래로 모인다. 먼동이 트면[質明] 기를 거두고 뒤늦게 온 자는 벌을 준다. 병조에서 나누어 사냥의 영[田令]을 펴고, 마침내 빙 둘러서서 사냥을 시작한다. 좌우 양익(左右兩翼)의 장수는 모두 기를 세우고 빙 둘러선다. 대궐 앞에 대가(大駕)가 나와 출발하고 인도하며 쉬는 것은 보통 때의 의식[常儀]과 같이 한다. 사냥하는 곳에 장차 이르면 대가가 북을 치며 둘러싼 안[圍內]으로 들어간다. 유사(有司)가 대가(大駕)앞에서 북을 울리면, 동남에 있는 사람들은 서향하고, 서남에 있는 사람들은 동향하여 모두 말을 탄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북을 치며 포위해 나간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물이하는 기군(騎軍)을 설치한다. 임금이 말을 타고 남향하면, 유사(有司)가 따르고, 여러 군[諸君] 이하가 모두 말을 타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대가(大駕)의 앞뒤로 벌여서고, 유사(有司)가 또 따른다. 이에 짐승을 임금 앞으로 몰아내는데, 초일구(初一驅)148)가 지나가면, 유사(有司)가 활과 화살을 정돈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재구(再驅)149)가 지나가면, 병조(兵曹)가 활과 화살을 받들어 올리고, 삼구(三驅)150)가 지나가면, 임금이 곧 짐승의 왼쪽으로부터 쏜다. 매구(每驅)마다 받드시 세 마리 이상이다. 임금이 화살을 쏜 뒤에야 여러 군(君)들이 이를 쏘고 여러 장수들도 차례로 이를 쏜다. 이를 마치면 반대쪽에서 몰던 기군도 멈춘다. 이런 연후에야 백성들의 사냥을 허용한다. 무릇 짐승을 쏘는데 있어서는 왼쪽 허구리[髀]로부터 쏘아 오른쪽 어깨쪽지[臑]에 이른 것을 상(上)으로 삼아, 건두(乾豆)151)로 하여 종묘(宗廟)에 이바지하고, 왼쪽 귀 밑에 이른 것은 그 다음으로 삼아 빈객(賓客)에게 이바지하고, 왼쪽 넓적다리[髀]에서 오른쪽 갈비[髀]에 이른 것은 하(下)로 삼아</p>	<p>諸將各率士徒集旗下，質明敝旗，後至者罰之。兵曹分申田令，遂圍田，其兩翼之將，皆建旗圍之。闕前駕出發引次舍如常儀。將至田，所駕鼓行入圍，有司陳鼓於駕前，在東南者西向，在西南者東向，皆乘馬。諸將皆鼓行赴圍，乃設驅逆之騎。上乘馬南向，有司以從，諸君以下，皆乘馬帶弓矢，陳駕前後，有司又從，乃驅獸出上前。初一驅過，有司整筋弓矢以前，再驅過，兵曹奉進弓矢，三驅過，上乃從禽左而射之。每驅必三獸以上，上發矢，然後諸君發矢，諸將以次射之訖，驅逆之騎止，然後許百姓獵。凡射獸自左髀而射之，達于右臑爲上，以爲乾豆，奉宗廟。達左耳本者次之，以供賓客。射左髀達于右臑爲下，以充庖廚。群獸相從，不盡殺，已被射者不射，又不射其面，不剪其毛，其出表者不逐。將止，承樞府建旗於田內，乃雷擊駕鼓及諸將之鼓，士徒躁呼。諸將得獸者，獻於旗下，致其左耳。大獸公之，小獸私之。遣使以所獲獸馳薦宗廟，次宴幄殿，從官酒三行。”從之。</p>
--	---	---

	<p>포주(庖廚)에 채운다. 여러 짐승들이 서로 따라다니면 다 죽이지 아니하며, 이미 화살에 맞은 것은 다시 쏘지 아니하며, 또 그 얼굴을 쏘지 아니하며, 그 털도 깎지 아니하며, 표지(標識) 밖으로 나간 것은 쫓지도 아니한다. 장차 그 치려 하면 승추부(承樞府)에서 사냥터 안[田內]에다 기(旗)를 세우고, 우레와 같이 대가(大駕)의 북과 여러 장수의 북을 치며, 군졸들은 급하게 소리쳐 부른[蹶呼]다. 여러 장수로서 짐승을 잡은 사람은 기(旗)아래에 바치되, 그 왼쪽 귀를 바친다. 큰 짐승은 공물(公物)로 하고, 작은 짐승은 사사로 가진다. 사자(使者)를 보내 잡은 짐승을 가지고 달려가서 종묘(宗廟)에 올리게 하고, 다음에 악전(幄殿)에서 연회(宴會)를 한다. 따라간 관원에게 술 세 순배를 돌린다.”</p> <p>그대로 따랐다.</p>	
<p>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7월 3일(갑신) 1 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고 대궐 안의 술그릇을 모두 간수케 하다</p>	<p>금주령(禁酒令)을 내리고, 대궐 안의 술그릇[酒器]을 모두 간수하여 두라고 명령하였다.</p>	<p>甲申/下禁酒令， 闕內酒器， 命皆藏之。</p>
<p>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7월 3일(갑신) 4 번째기사 가뭄으로 상왕전이 의 성고·덕천고의 공상을 정지시키다</p>	<p>상왕전(上王殿)의 의성고(義成庫)·덕천고(德泉庫)의 공상(供上)을 정지하였다. 상왕(上王)이 환관(宦官)을 시켜 임금께 말하기를, “내가 사사 창고[私庫]가 있어 씹씹이가 족하니, 두 창고의 공상을 일체 모두 정지하라.” 하니, 임금이 꿇어앉아서 들었다. 상왕이, 주상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금하고 수라를 감한 것을 알고, 또한 공상(供上)을 감한 것이었다. 이때에 보화고(保和庫)를 인덕궁(仁德宮)에 붙이고 상공(上供)하게 하였다.</p>	<p>停上王殿義成、德泉庫供上。 上王使宦官言於上曰：“予有私庫，亦足用矣，兩倉供上，一皆除罷。” 上跪而聽之。 上王知上憂旱，禁酒減膳，亦減供上。 時以保和庫屬仁德宮上供。</p>

<p>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7월 9일(경인) 1 번째기사 정승 김사형과 이무가 비운 것을 하례하다</p>	<p>비가 내리었다. 정승(政丞) 김사형(金士衡)·이무(李茂)가 대궐에 나아가 하례(賀禮)하고 약주를 들기를 청하니, 임금(上)이 허락하고 인하여 의정부에 술을 내려 주었다.</p>	<p>庚寅/雨。 政丞金士衡、李茂詣闕稱賀，請進藥酒，上許之，仍賜酒于議政府。</p>
<p>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8월 2일(계축) 3 번째기사 회암사로 가서 태상왕 을 문안하다</p>	<p>임금이 회암사(檜巖寺)로 가서 태상왕을 조알(朝謁)하였다. 처음에 태상왕이 왕사(王師) 자초(自超)의 계(戒)를 받아 육선(肉膳)을 들지 아니하여, 날로 파리하고 야위어졌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환관(宦官)을 시켜 자초에게 말하기를, “내가 태상전(太上殿)에 나가서 헌수(獻壽)하고자 하는데, 만일 태상왕께서 육선(肉膳)을 자시지 않는다면, 내가 장차 왕사(王師)에게 허물을 돌리겠다.” 하였다. 자초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회암사를 사양하고 작은 암자에 나가 있었다. 임금이 이른다는 말을 듣고 회암사 주지(住持) 조선(祖禪)과 더불어 태상왕께 고하기를, “상(上)께서 육선(肉膳)을 드시지 아니하여, 안색이 파리하고 야위어지십니다. 우리들이 오로지 상위(上位)께서 부처를 좋아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미천한 생(生)을 편안히 지내는데, 지금 상(上)의 안색이 파리하고 야위신 것을 보니, 우리들의 생이 오래지 않은 것을 알겠습니다.” 하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국왕이 만일 나처럼 부처를 숭상한다면, 내가 마땅히 고기를 먹겠다.” 하였다. 임금이 들어가 술잔을 올리니, 태상왕이 허락하고 얼굴빛이 안화(安和)해졌다. 임금이 기뻐하여 삼현(三絃)을 들여와 연주하도록 명하고, 소선(素膳)을 올리었으니, 태상왕의 뜻을 거스름까 두려워함이었다. 태상왕이 조용히</p>	<p>上朝太上王于檜巖寺。 初，太上王受王師自超戒，不御肉膳，日漸消瘦。上聞之，使宦官言于自超曰：“予欲詣太上殿獻壽。若太上王不御肉膳，予將歸咎於王師矣。”超憂懼，辭檜巖出居小菴，聞上至，與檜巖住持祖禪告太上王曰：“上不御肉膳，顏色消瘦。吾輩專蒙上位好佛之恩，以安微生。今觀上之顏色消瘦，知吾輩之生不久也。”太上王曰：“國王若能如予之崇佛，則予當食肉矣。”上入進杯，太上王許之，顏色安和。上喜，命三絃入奏，進以素膳，恐忤太上之意也。太上王從容語上曰：“王師曰：‘飲酒食肉，則後生必爲無首蟲。’故予不食肉也。”上進馬四匹于太上殿。</p>

	<p>임금에게 말씀하기를, “왕사의 말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후생에 반드시 머리 없는 벌레가 된다’고 하기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였다. 임금이 말 네 필을 태상전에 바치었다.</p>	
<p>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8월 4일(을묘) 1 번째기사 사전(寺田)을 환급한다 고 하니 태상왕이 다 시 육선을 들다.</p>	<p>태상왕이 다시 육선(肉膳)을 들었다. 임금이 태상왕께 헌수(獻壽)하고 육선을 올리려고,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말하기를, “신(臣)이 예전 사람의 글을 보고 강관(講官)의 말을 들어보면, ‘70에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다.’ 하였는데, 지금 부왕께서 왕사의 말을 들으시고 육선을 끊으시어, 안색이 평일과 같지 않으시니, 신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왕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師)를 좇은 지가 이미 7년이 되었는데, 어찌서 한마디 말로 나를 가르침이 없는가?’하니, 사(師)가 말하기를, ‘왕께서 지금부터 술과 고기를 끊으소서.’ 하였다. 내가 이를 행하고자 하나, 술은 병이 있으니 끊을 수 없고, 다만 고기만 먹지 않는 것이다. 네가 만일 불법(佛法)을 숭신(崇信)한다면, 비록 밀기(密記)에 붙이지 않은 사사(寺社)라 할지라도 그 토전(土田)을 모두 환급(還給)하고, 또 승니(僧尼)의 도첩(度牒)을 추문(推問)하지 말고,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오는 것을 금하지 말며, 또 부처를 만드려고 탑을 세워 내 뜻을 잇는다면, 내가 비록 파계(破戒)하고 청(請)을 좇는다 하더라도 거의 사(師)의 가르침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대개 불법은 전조(前朝)의 성시(盛時)에도 오히려 폐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소사(所司)로 하여금 헐지 말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신이 죽는 것도 감히 사양치 못하거늘, 하물며 이 일이겠습니까?” 하고, 곧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에게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에 진지</p>	<p>乙卯/太上王復進肉膳。 上獻壽于太上王，欲進肉膳，進伏于前曰：“臣觀古人之書，聞講官之言，七十非肉不飽。今父王聽王師之言，絕肉膳，顏色不如平日，臣安敢不悲!” 因涕泣，太上王曰：“予告王師曰：‘我之從師，已七年矣。何無一言誨我!’ 師曰：‘王自今斷酒肉焉。’ 予欲行之，酒則病矣，不可止，但不食肉。爾若崇信佛法，雖密記不付寺社，其土田皆還給之。又勿推僧尼度牒，不禁婦女上寺，又造佛造塔，以繼我志，則予雖破戒而從請，庶無愧於師教也。蓋佛法，前朝盛時，尚且不廢，以至今日，宜令所司毋毀。” 上叩頭曰：“臣死且不敢辭，況此事乎!” 卽命知申事朴錫命，傳旨議政府，一遵太上王之教。 太上王曰：“國王之誠如此，大小臣僚亦皆懇請，予敢不從!” 卽進肉膳，上起謝。 政丞李茂率臺諫拜謝， 太上王使人謂茂曰：</p>

	<p>(傳旨)하되, 한결같이 태상왕의 말씀대로 하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국왕의 정성이 이와 같고,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또한 모두 간청하니, 내 감히 좃지 않겠는가?” 하고, 곧 육선(肉膳)을 드니, 임금이 일어나 사례하고, 정승 이무(李茂)가 대간(臺諫)들을 거느리고 배사(拜謝)하였다. 태상왕이 사람을 시켜 무(茂)에게 이르기를, “국왕이 사사(寺社)의 전지(田地)를 환급(還給)하도록 이미 정했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경 등은 다시 이를 폐지하지 말라.” 하였다. 태상왕이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치사(致仕)한 이서(李舒)를 불러 시연(侍宴)하게 하니, 임금이 기뻐서 성악(盛樂)을 연주하도록 명하고, 일어나서 춤을 추며 헌수(獻壽)하였다. 태상왕이 술이 취하매, 명하여 피리[笛]와 요고(腰鼓)를 그치게 하고, 기생을 시켜 삼현(三絃)을 가지고 앞에서 연주하게 하였다. 석린 등에게 명하여 연구(聯句)를 지어 부르게 하고, 이에 화답하며 극진히 즐기니, 석린 등이 번갈아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태상왕이 박석명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사사의 전지를 환급하도록 한 일들을 이미 내리었느냐?” 하니, 석명이 대답하기를, “이미 내리었습니다.” 하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이미 내린 초문(草文)을 보고 싶다.” 하였다. 석명이 곧 올리니, 태상왕이 보고 나서 내수(內豎)에게 주어 간직하게 하고, 일어나서 읊(揖)하여 사례하고 들어갔다. 임금이 매우 기뻐하여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참 즐겁다. 내가 친히 이 당(堂)에서 풍악을 연주하겠다.”</p>	<p>“予悅國王寺社田地還給。 事已定之矣，卿等毋更廢閣。” 太上王召 義安大君和、昌寧府院君成石璘、領議政府事致仕李舒入侍宴。 上喜，命奏盛樂，起舞獻壽。 太上王酒酣，命除笛與腰鼓，令妓持三絃奏于前，命石璘等聯句唱和，極權，石璘等迭起而舞。 太上王進朴錫命曰：“寺社田地還給等事已下乎？” 錫命對曰：“已下矣。” 太上王曰：“欲見已下草文。” 錫命即進之，太上王覽之，授內豎藏之，起揖謝之而入。 上喜甚，顧謂左右曰：“樂哉今日之事！ 予可親自奏樂于此堂矣。” 還幄次，命吹笛於駕前，夜已半矣。 命摠制李叔蕃，選善射軍士獵禽，獻于太上殿，太上王曰：“王速還京可矣。” 上辭。 命朴錫命曰：“雖密記付外寺社，其田地皆還屬，敗亡寺社田地，移屬成衆作法處，待重創還屬之。 今後有削髮者，許從其願，毋拘度牒，毋禁婦女父母追薦百日內上寺。 前朝盛時，尚且不廢佛法以至今，自今雖所司，毋得謗毀。” 時，秋未穫，禾穀蔽野，上恐有蹂損，禁鷹犬，命人五六巡察之，往來道傍之穀，一無所損。</p>
--	--	--

	<p>하였다. 악차(輿次)로 돌아오는데 대가(大駕) 앞에서 피리[笛]를 불도록 명하니, 밤은 이미 야반(夜半)이 되었다. 총제(摠制) 이숙번(李叔蕃)에게 명하여 활을 잘 쏘는 군사들을 뽑아서 새를 사냥하여 태상전(太上殿)에 드리었다. 태상왕이 말하기를,</p> <p>“왕은 빨리 서울에 돌아가는 것이 가하다.”</p> <p>하니, 임금이 하직하였다. 박석명에게 명하기를,</p> <p>“비록 밀기(密記)에 붙인 밖의 사사(寺社)라 하더라도 그 전지(田地)를 모두 환속(還屬)시키고, 패망한 사사의 전지는 성중(成衆) 작법처(作法處)에 이속(移屬)시켰다가, 다시 창건하기를 기다려서 환속시키도록 하고, 금후로는 삭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소원대로 하도록 허락하되, 도첩(度牒)에 구애하지 말고, 부녀(婦女)가 부모를 추천(追薦)하기 위하여 백일 안에 절[寺]에 오르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전조(前朝)의 성시(盛時)에도 불법(佛法)을 폐하지 아니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제부터는 비록 소사(所司)라 하더라도 비방하지 말고 헐뜯지 말라.”</p> <p>하였다. 이때에 가을걷이가 다 되지 아니하여 화곡(禾穀)이 들에 가득하였다. 임금이 이를 짓밟아 손실될까 두려워하여 매[鷹]와 개[犬]를 금하고, 사람 5, 6명을 명하여 순찰하게 하니, 왕래하는 길 옆의 곡식이 하나도 손상된 것이 없었다.</p>	
<p>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8월 8일(기미) 1 번째기사 세살 난 왕녀가 죽다. 날씨가 추어 메밀 농사를 걱정하다</p>	<p>왕녀(王女)가 죽었으니 나이가 세 살이었다.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백관들이 진위(陳慰)하였다. 선의문(宣義門) 밖에 장사지냈다. 이날에 날씨가 맑고 조금 추웠다. 임금이 박석명에게 말하였다.</p> <p>“메밀이 아직 결실되지 않았는데 천기(天氣)가 이와 같으니, 서리가 내릴 것 같다. 만일 서리가 내리면 메밀은 반드시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p>	<p>己未/王女卒，年三歲。輟朝三日，百官陳慰。葬于宣義門外。是日氣清稍寒，上語朴錫命曰：“蕎麥未結實，天氣如斯，恐是霜候。若霜降則蕎麥必不得食矣。”</p>

<p>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9월 8일(무자) 2 번째기사 일본 원뇌수의 사인에 게 쌀·콩·만화석 등을 내리다</p>	<p>일본(日本) 원뇌수(源賴秀)의 사인(使人)이 하직하니, 쌀·콩 각각 50석과 만화석(滿花席)·흑마포(黑麻布)·백저포(白苧布)를 주었다.</p>	<p>日本源賴秀使人辭，賜米豆各五十石、滿花席、黑麻布、白苧布。</p>
<p>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9월 24일(갑진) 1번째기사 저화와 상오승포를 함 께 통용하도록 하고, 경상도 주포세를 회복 하다</p>	<p>저화(楮貨)와 상오승포(常五升布)를 겸용하도록 명하고, 경상도 주포(紬布)의 세(稅)를 회복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교장(交章)하여 상언(上言)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경상도는 산이 막히고 바다가 막히어, 조세 수납(輸納)의 어려움이 다른 도의 배가 되기 때문에, 고려조(高麗朝) 이래로 그 지방 산물(產物)의 편의에 따라 혹은 주포(紬布)로 거두고, 혹은 면서(綿絮)로 거두어, 일찍이 조[粟]와 쌀[米]을 거두지 않았으니, 백성의 희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정하여 5백 년을 내려오며 행하였어도 폐단이 없었습니다. 근래에 국가의 재용(財用)이 핍절(乏絕)됨으로 인하여, 각 품(品)의 녹봉(祿俸)으로 주는 포화(布貨)를 4필(匹)에 준(准)하는 저화(楮貨)로 대신하고, 주포를 거두던 밭은 모두 조(租)를 바치게 하여, 국용(國用)을 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나라를 넉넉하게 하는 아름다운 뜻이오나, 그러나 사평부(司平府)의 문부(文簿)로 상고하여 보면, 지난 신사년에 주포전(紬布田)에서 거둔 곡식[粟]이 2만 8천여 석인데, 수운[漕轉]으로 상납한 수는 6천여 석에 지나지 못합니다. 금년 임오년의 초·이번(初二番) 녹봉(祿俸)의 전청(傳請)한 수가 만여 석에 이르니, 그렇다면 주포전에서 거두는 조(租)가 다만 그 도의 군자(軍資)에 충당할 뿐이고, 경성(京城)의 저축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경상도는 한재(旱災)·황재(蝗災)·상재(霜災)로 말미암아 흉년이 거듭 이르러서, 백성들이 조(租)를 바치는 것이 살[肥膚]을 베는 것 같은데, 또 뒤쫓아 거두면 원</p>	<p>甲辰/命兼用楮貨常五升布，復慶尙道紬布之稅。司憲府、司諫院交章上言：竊見慶尙道，阻山隔海，其租稅輸納之難，實倍他道，故自高麗氏以來，因其地產之宜，或收紬布，或收綿絮，而未嘗收其粟米，所以從其民望，以爲定制，垂五百年行之無弊。近因國家財用匱乏，各品祿俸布貨，代以準四匹楮貨，其紬布之田，悉令納租，以隆國用。此雖裕國之美意，然以司平文簿考之，去辛巳年紬布之田所收之粟，二萬八千餘石，其漕轉上納數，不過六千餘石，今壬午年初二番祿俸傳請之數，多至萬餘石。若然則紬布田所收之租，只充其道之軍資，而無補於京城之畜。況今慶尙道旱蝗早霜，飢饉荐至，民之納租，如割(肥膚)[肌膚]。又從而斂之，則怨讟將興，此固不可不慮也。</p>

	<p>망이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경상도 공안(貢案)을 주포(紬布)에 붙이어 모두 전(前) 수량(數量)에 의하여 수납(輸納)하게 하고, 녹봉미(祿俸米)의 부족한 수는 그 주포로 충당하여, 초번·이번의 전청(傳請)을 일체 모두 정지하면, 녹봉이 넉넉하면서 경성의 저축이 모손(耗損)되지 않고, 원망이 풀리면서 변방 고을의 부세(賦稅)가 다 수납될 것입니다.”</p>	<p>願自今，慶尙道貢案付紬布，悉依前數而輸納，其祿俸米不足之數，以其紬布充之，初二番傳請，一皆停止，則祿俸足而京城之畜不耗，怨讟弭而邊郡之賦畢至。</p>
<p>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0월 13일(계해) 1번째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을 위한 잔치를 베풀다</p>	<p>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온전(溫全)이 자기 자리가 왕태(汪泰)의 아래에 베풀어졌으므로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았다. 임금이 사람을 시켜 두 번이나 청하니, 이에 잔치에 나왔다. 전(全)은 직책이 태(泰)의 위에 있었으나, 태(泰)가 조명(詔命)을 받들고 왔으므로 전(全)의 위에 거(居)하였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혐의가 있었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가 술을 올리니, 왕태가 기립(起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천사(天使)는 왜 자리에서 일어나오?” 하니, 태가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이분은 국왕의 숙부(叔父)라 합니다. 왕께서는 군신(君臣)의 분수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옳지마는, 나는 빈주(賓主)의 예(禮)로서 감히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癸亥/上如太平館宴使臣。溫全以設其坐泰下，稱疾不出，上使人再請，乃赴宴。全以職居泰上，泰以奉詔命，居全之上，以此二人有嫌。義安大君和進酒，汪泰起立，上曰：“天使何爲起坐?”泰曰：“吾聞此乃國王之叔也。王以君臣之分不起坐，然矣，吾以賓主之禮，不敢不起。”</p>
<p>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0월 14일(갑자) 1번째기사 성친하러 온 내관의 부모에게 쌀 50석씩 주다</p>	<p>성친(省親)하러 온 내관(內官)의 부모에게 쌀 50석씩 주었다.</p>	<p>甲子/賜省親內官父母米各五十石。</p>
<p>태종 4권, 2년(1402</p>	<p>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사신을 영빈관(迎賓館)에서 전송하였다. 임금이 역사</p>	<p>上率百官，餞使臣于迎賓館。上召力</p>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1월 10일(기축) 3번째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영빈관에서 사신을 전송하다

(力士) 두 사람을 좌전(坐前)에 불러 술을 주니, 온전(溫全)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비록 미천하나 모두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국왕께서 앉아서 술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예(禮)로써 천사(天使) 네 분을 위로할 뿐이오. 이 두 사람은 천사의 종인(從人)이니, 만일 이들이 단독으로 명령을 받고 왔다면야 어찌 감히 이같이 하겠소. 또 예(禮)는 가볍게 변할 수 없으니, 처음에 이같은 예로 대접하고 지금 바꾸기는 곤란하오.”
하였다. 전(全)이 심히 부끄러워하고 인하여 노한 빛이 있었다. 유사길(兪士吉)이 일어나서 임금 앞에 이르러 돌아가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소인이 노(怒)하였으니, 나가지 않으면 실례가 많겠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니, 임금이 도로 앉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장막 밖[帳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사길이 잔을 잡아 바치었다. 임금이 먼저 마시기를 청하니, 사길이 말하기를,
“이것이 예(禮)입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는 인정(人情)에 따르는 것이니, 다만 술을 권하려고 하는 것이오.”
하니, 사길이 흔연(欣然)히 말하기를,
“일이 의리에 해됨이 없으면 시속(時俗)대로 쫓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이내 마시었다. 장차 떠나려고 하매, 임금이 사길 등과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고황제(高皇帝) 때부터 신하로 조정(朝廷)을 섬기었는데, 지금의 성상(聖上)께서 연도(燕都)에 계실 때, 연도(燕都)가 동방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을 대접하기를 특별히 후하게 하시었고, 지금 보위(寶位)에 오르시매 다만 한 장의 조서(詔書)만을 보내셔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할 터인데, 첨도어사(僉都御史)와 홍려 소경(鴻臚少卿)과 내부(內府) 두 관인(官人)을 명

士二人于坐前而賜酒，溫全曰：“二人雖微，皆受帝命而來，國王不可坐而賜酒。”上曰：“予今以禮慰天使四位而已，此二人，天使之從人也。若二人奉命獨來，則安敢若是！又禮不可輕變。初以此禮待之，今易之難矣。”全甚慙，因有怒色。士吉起，至上前請歸曰：“小人已怒矣，不出則失禮多矣。”欲出，上請還坐。上出帳外而還，士吉執杯以進，上請先之，士吉曰：“此何禮耶？”上曰：“禮緣人情，但欲勸酒。”士吉欣然曰：“事之無害於義者，從俗可也。”乃飲之。將行，上與士吉等曰：“我國自高皇帝時，臣事朝廷。今聖上在燕都，燕近東方，故待我國人偏厚。今登寶位，但送一張詔書，猶且喜感，乃命遣僉都御史、鴻臚少卿、內府兩官人，東方臣民感祝難言。予當一騎入朝，既不能然，若予子有年過十歲者，則當遣朝賀，願皆年幼。雖遣大臣，以獻方物，心實有愧，願天使奏達予心。且天使亦不久留，未盡誠款，惶愧實深。”士吉曰：“皇帝，高皇帝之愛子也，國王已知之。又有賢德，天命人心咸歸，故不得已而

	<p>하여 보내셨으니, 동방 신민(臣民)의 감축(感祝)은 말할 수 없소. 내가 마땅히 일기(一騎)로 입조(入朝)해야 옳겠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만일 내 자식이 나이 10세가 지난 자가 있으면 마땅히 보내어 조하(朝賀)하겠는데, 나이 모두 어리니, 비록 대신(大臣)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드리나, 마음에 실로 부끄럽소. 원컨대 천사께서 나의 마음을 주달하여 주오. 또 천사께서 오래 머물지 않아서 성의를 다하지 못하니, 깊이 황송하고 부끄럽소.”</p> <p>하였다. 사길이 말하기를, “황제는 고향제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국왕께서 이미 아시지요? 또 어진 덕 [賢德]이 있어 천명과 인심이 모두 돌아왔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천하를 차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미 조서(詔書)를 선포하였고, 국왕(國王)께서는 이미 표(表)·물(物)을 닦았으니 다시 무엇을 하겠습니까?”</p> <p>하고, 사례(辭禮)를 행하려고 하니, 임금이 먼저 사배(四拜)를 행하고 장막 밖으로 나와 읍(揖)하여 작별하였다. 온전(溫全)이 태상전(太上殿)을 향하여 사배를 행하고, 다시 임금과 작별하고 나서 팔뚝을 드러내어 불로 지진 곳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내가 금강산에서 팔뚝에 불로 지진 것은 서천(西天)의 부처를 부른 것입니다.”</p> <p>하고, 이내 출발하였다.</p>	<p>奄有天下。今吾輩已布詔書，國王已修表物，復何爲乎!” 欲行辭禮，上先行四拜，出帳外揖別。溫全向太上殿行四拜，復與上別。露其臂指燃處曰：“吾於金剛山燃臂，所以召西天佛也。”乃行。</p>
<p>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1월 10일(기축) 4번째기사 왜인 10여 명을 잡은 전라도 도절제사 홍서</p>	<p>전라도 도절제사(全羅道都節制使) 홍서(洪恕)에게 궁은(宮醞)과 표리(表裏)를 내려 주었다. 서(恕)가 왜인(倭人) 10여 명을 잡았기 때문에, 그 아들 홍섭(洪涉)으로 선위사(宣慰使)를 삼아서 이를 보내었다.</p>	<p>賜全羅道都節制使洪恕宮醞表裏。恕捕倭十餘人，故以其子涉，爲宣慰使而遣之。</p>

<p>에게 술과 옷을 하사하다</p>	<p>전 전서(典書) 이화영(李和英)이 동북면(東北面)에서 처자(妻子)를 데리고 도망하여 왔다. 이때에 화영은 아버지의 상중(喪中)에 있었는데, 아우 이화미(李和美)와 더불어 최질(衰絰)을 입고 철령(鐵嶺)에 이르니, 기병(騎兵) 백여 명이 길을 막고 있으므로 통과할 수가 없었다. 화영이 아우와 꾀를 내기를, “우리들이 최질(衰絰)을 벗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지고 가자.” 하고, 최복을 벗고 갑옷과 병기를 갖추고 고향을 지르며 말을 달리니, 백여 명이 모두 흩어져 달아나서 막는 자가 없었다. 화영이 말 두 필을 바치니, 임금(上)이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에게 명하여 음식을 먹이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조신(朝臣) 중에서 일을 맡겨 부릴 만한 자는 비록 친상(親喪)을 당하였더라도 탈정 기복(奪情起復)시키는데, 하물며 경은 군관(軍官)이니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화영이 대답하기를, “소인이 비록 죽을 땅을 가라고 명령하시더라도 어찌 감히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신이 아버지의 상복을 벗지 못하였는데, 주상께서 길복(吉服)을 입으라고 명령하시어 이미 그대로 하였고, 또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시니 마음에 부끄럽습니다.” 하고, 드디어 눈물을 흘리었다. 석명이 들어가 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이 말은 진실로 대의(大義)이다. 그러나 군관(軍官)이 된 자는 절후가 고르지 못한 때를 당하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다. 경은 몸을 잘 보전하여 나를 섬기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로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였다. 석명이 권하여 먹이었다.</p>	<p>前典書李和英自東北面携妻子逃來。時，和英丁父憂，與弟和美，被衰絰至鐵嶺，有騎兵百餘阻之，不可得過。和英與弟謀曰：“我等宜脫衰絰，被堅執銳以行。”乃釋衰，具甲兵鼓噪走馬，百餘兵皆潰，無有遏之者。和英獻馬二匹，上命知申事朴錫命饋之曰：“予於朝臣，可任使者，雖遭親喪，奪情而起。況卿軍官，不可不食肉飲酒。”和英對曰：“小人雖命歸死地，何敢不從！但臣未脫父喪。上命吉服，既從之矣，又命飲酒食肉，中心有愧。”遂涕泣。錫命入告，上曰：“卿之此言，誠大義也。然爲軍官者當節候不調之時，不可不飲酒食肉。卿善保其身以事予，孝親之道莫大焉。”錫命勸之。</p>
----------------------	---	---

<p>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1월 18일(정유) 3번째기사 김사형을 상락 부원군 으로, 이저를 겸 관승 추부사로 삼다</p>	<p>김사형(金士衡)으로 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을, 이저(李佇)로 겸 관승추부사(兼判承樞府事)를 삼고, 곽충보(郭忠輔)에게 말 1필을 내려 주고, 또 안우세(安遇世)에게 말과 옷을 내려 주었으며, 박순(朴淳)의 집에 종이 1백 권(卷)과 쌀·콩 아울러 1백 석을 내려 주었다.</p>	<p>以金士衡爲上洛府院君，李佇兼判承樞府事。 賜郭忠輔馬一匹，又賜安遇世馬及衣， 朴淳家紙百卷、米豆并一百石。</p>
<p>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2월 26일(을해) 2번째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나 가 술자리를 베풀다</p>	<p>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었다.</p>	<p>上詣太上殿設酌。</p>
<p>태종 5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1월 22일(경자) 2번째기사 내관 정귀 등이 태 상전과 상왕전에 나 아가 하직하다</p>	<p>정귀(鄭貴) 등이 태상전(太上殿)과 상왕전(上王殿)에 나아가서 하직을 고하니, 상왕은 친히 음식을 대접하고, 태상왕은 병(病)으로 사양하고 시위(侍衛)하는 재신(宰臣)과 내관(內官) 만세영(萬歲榮)으로 하여금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흑마포(黑麻布)·백저포(白苧布) 6필씩을 주었다. 임금이 사람을 시켜 서교(西郊)에서 전송하게 하고, 상왕(上王)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전송하였다.</p>	<p>鄭貴等詣太上殿及上王殿告辭，上王親餉之；太上王辭以疾，令侍衛宰臣及內官萬歲榮餉之， 賜黑麻布白苧布各六匹。 上使人餞于西郊，上王亦遣人餞之。</p>
<p>태종 5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1월 23일(신축) 1번째기사 일본에서 사신 12명이</p>	<p>일본국(日本國) 사자(使者) 12인이 와서 토물(土物)을 바쳤다.</p>	<p>辛丑/日本國使十二人來獻土物。</p>

<p>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 5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2월 27일(갑술) 1번째기사 일본 사자가 와서 토 산물을 바치다</p>	<p>일본(日本) 사자(使者)가 와서 토물(土物)을 바쳤다.</p>	<p>甲戌/日本使來獻土物。</p>
<p>태종 5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4월 4일(경술) 3 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상례의 정 비 및 법 개정의 신중 등 시무에 관해 건의 한 상소문</p>	<p>사간원(司諫院)에서 시무(時務) 두어 조목을 올리었는데, 소(疏)의 대략은 이 러하였다. “전하께서 총명 예지(聰明睿知)한 자품으로 소의 한식(宵衣旰食)197) 하여 다 스럼을 도모하시와 매사에 옛 것을 따르오니, 그 치도(治道)의 융성함이 실로 근고(近古)에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상례(喪禮)가 정하여지긴 하였으나 미비 한 절목이 있고, 제도가 이미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어지럽게 변경하는 조짐 이 있고, 또 사유(赦宥)의 거조(舉措)는 성현(聖賢)이 싫어하는 것이어서 경솔 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삼가 관견(管見)을 가지고 아래에 조목조목 열 거하오니, 복망컨대, 성감(聖鑑)께서 유의(留意)하소서. 지금 3년의 상(喪)은 공경(公卿)으로부터 사대부(士大夫)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제도를 좇으나, 법을 세운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간혹 미비한 것이 있습니 다. 예전의 부녀자(婦女子)의 상제(喪制)는 출가(出嫁)한 자가 본종(本宗)을 위 하여 한 등(等)을 감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자와 같은데, 지금은 3년상에 남자 는 모두 본복(本服)을 좇으나, 부녀자는 아직도 전조(前朝)의 폐습(弊習)을 따 라 모두 백일(百日)로 한계를 삼아 복(服)을 벗고, 혹은 자식이 아버지의 복을 입어 바야흐로 최질(衰絰) 중에 있는데, 계모(繼母)된 자는 겨우 백일만 지나 면 복을 벗고 개가(改嫁)하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녀 상복의 같지 않은 것이 처음에는 작은 잘못[小失] 같으나, 그 말류(末流)의 폐단이</p>	<p>司諫院進時務數條。 疏略曰： 殿下以聰明睿知之資，宵旰圖治，動遵 古昔，其治道之隆，眞近古所未有也。 然喪禮既定，而有未備之節； 制度已 成，而有紛更之漸。 且赦宥之舉，聖 賢所惡，不可輕也，故謹以管見，條列 于後，伏惟聖鑑留意焉。 今三年之喪， 自公卿至于士大夫，悉遵其制，然而立 法未久，間有未備者焉。 古者，婦女 喪制，除出嫁者爲本宗減一等外，與男 子同也。 今三年之喪，男子皆從本服， 而婦女尚循前朝之弊，皆以百日爲限而 釋服，或子服父喪，方居衰絰，而爲繼 母者，纔過百日，釋服改嫁，恬不爲 愧。 男女喪服之不同，初若小失，而 其流之弊，至於如此，可勝歎哉！ 此其 未備者一也。 古者大喪之服，男女無 異也。 其在前朝， 婦女則不服麤布，</p>

	<p>이와 같은 데 이르니,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이것이 그 미비한 것의 한 가지입니다.</p> <p>예전에는 대상(大喪)의 복(服)이 남녀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조(前朝) 때에 있어서는 부녀(婦女)는 추포(麤布)를 입지 않았으나, 입모(笠帽)는 오히려 생추포(生麤布)를 썼기 때문에, 참취(斬衰)를 입었던 흔적을 오히려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녀가 출입하는 데에 참취 의복을 입지 않을 뿐 아니라, 입모(笠帽)에 이르러서도 역시 세숙저포(細熟苧布)를 쓰고, 간혹 빈천(貧賤)한 자가 전과 같이 추포를 쓰면 부자들이 웃기 때문에, 또한 모두 힘써서 따릅니다. 무릇 예(禮)가 변하는 것이 모두 작은 데서 일어납니다. 만일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두렵건대, 부녀의 참취복이 또한 장차 변하여 시마(總麻)가 될 것이니, 이것이 미비한 것의 두 가지입니다.</p> <p>예전에는 부모의 상중에 있는 자가 나물밥만 먹고 물만 마시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어야 일어나고, 만일 상장(喪葬)의 부득이한 일을 만나면 말을 타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소박한 말[樸馬]을 타고 베로 안장과 고삐를 싣다는 글이 예서(禮書)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가끔 술을 마시고 쌀밥을 먹어 평소와 다름이 없으니, 그 기력이 지팡이를 짚을 필요도 없는데, 박마(樸馬)를 탄다는 글로 인하여, 상사(喪事)로 인한 것이 아닌데도 살찐 말을 타고 조정 길을 달리는 자가 있으니, 이것이 미비한 것의 세 가지입니다.</p> <p>《문공가례(文公家禮)》에는 어미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소공(小功) 오월(五月)의 복을 입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조목이 《육전(六典)》에 실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미비한 것의 네 가지입니다.</p> <p>《문공가례(文公家禮)》에 자기를 젖 먹여 기른 서모(庶母)를 위하여 소공(小功) 오월(五月)의 복을 입고, 유모(乳母)를 위하여 시마(總麻) 삼월(三月)의 복을 입게 되었으니, 그러면 유모(乳母)가 비록 아버지의 첩이 아니라도 복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 《육전(六典)》 안에 유모를 해석하기를, ‘아버지의 첩</p>	<p>然而笠帽尙用生麤布，故其服斬衰之跡，猶可見也。今婦女出入，非唯不著斬衰之服，至於笠帽，亦用細熟苧布，間有貧賤者依舊用麤布，則富者笑之，故亦皆勉爲。凡禮之變，皆起於微。若此不革，竊恐婦女斬衰之服，亦將變爲總麻矣，此其未備者二也。古者居父母之喪者，蔬食水飲，杖而後起。若遇喪葬不得已之事，非騎馬不能行，故乘樸馬布裹鞍轡之文，載於禮書。今人往往飲酒食稻，無異平昔，則其氣力不須杖矣，乃因乘樸馬之文，不因喪事而乘肥馬，奔馳朝路者有之，此其未備者三也。《文公家禮》，爲同母異父之兄弟姊妹，正服小功五月，今此條不載《六典》，此其未備者四也。《文公家禮》，爲庶母之乳養己者，服小功五月，爲乳母總麻三月。然則乳母雖非父妾，有服明矣。今《六典》內釋乳母曰：“父妾之乳哺者則是乳母，必父妾而後有服。”其非父妾者，無服也。司馬溫公論擇乳母曰：“令所飼之子，性行亦類之。”以非父妾而忘其乳哺之恩義可乎？此其未備者五也。願自今凡女子服父母舅姑與</p>
--	---	--

	<p>으로서 젓 먹인 자라.’ 하였으니, 이것은 유모가 반드시 아버의 첩인 뒤에야 복이 있고, 아버의 첩이 아닌 자는 복이 없는 것이 됩니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유모(乳母)를 택하는 것을 논하기를, ‘먹인 자식으로 하여금 성행(性行)이 또한 닮는다.’ 하였으니, 아버의 첩이 아니라고 하여 젓 먹여 기른 은의(恩義)를 잇는 것이 가합니까? 이것이 미비한 것의 다섯 가지입니다.</p> <p>원컨대 이제부터 무릇 여자가 부모(父母)·구고(舅姑)와 남편의 상(喪)을 입는 것은 종실(宗室)로부터 사대부(士大夫)의 집에 이르기까지 백일 만에 복을 벗지 말게 하고, 한결같이 예문(禮文)에 의하여 3년의 상을 마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복의 제도는 입모(笠帽)와 장삼(長衫)을 모두 생추포(生麤布)로 하여 저포(苧布)를 쓰는 것을 금하고, 무릇 남자가 참취(斬衰)를 입는 자는 비록 급한 때를 당하더라도 말을 타고 조정 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미가 같고 아버가 다른 형제 자매는 《문공가례》에 의하여 소공(小功)을 입는 것을 허락하고, 유모(乳母)에 이르러서도 또한 《문공가례》에 의하여 비록 아버의 첩이 아니라도 시마(總麻) 삼월(三月)을 입게 하여 풍속을 후하게 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헌사(憲司)에서 엄히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사대부(士大夫)의 상장(喪葬)의 예(禮)가 모두 《문공가례》를 쓰나, 그 사이의 제도가 고금(古今)의 마땅한 것이 달라서 거행하기에 어렵고, 또 인자(人子)가 상사(喪事)를 당한 처음에 애통(哀痛)하고 참달(慘怛)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오직 경사(經師)의 말만을 따르니, 원컨대 이제부터 예관(禮官)이 가례 절목(家禮節目)의 지금에 마땅한 것을 초(抄)하여 경사(經師)에 가르쳐서, 무릇 상장(喪葬)을 만나면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의하여 행하게 하면, 거의 예전 제도에 합할 것입니다.</p> <p>전(傳)에 말하기를, ‘제도(制度)의 고침과 정령(政令)의 변경이 전의 것보다 10배나 이롭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 하였는데, 하물며 전의 것보다 못한 것이겠습니까? 옛적에 조참(曹參)198) 이 소하(蕭何)199)의 법을 변경하지 아</p>	<p>夫之喪，自宗室至于士大夫之家，不許百日釋服，一依禮文，終其三年之喪；其服之制，笠帽及長衫，皆以生麤布爲之，禁用苧布；凡男子服斬衰者，雖當緩急之際，毋得騎馬入于朝路；同母異父之兄弟姊妹，依《文公家禮》，許服小功；至於乳母，亦依《文公家禮》，雖非父妾，令服總麻三月，以厚風俗。如有違者，憲司痛理。今士大夫喪葬之禮，皆用《文公家禮》，然其間制度，古今異宜，難於舉行。且人子遭喪之初，哀痛慘怛，茫然不知所措，唯經師之說是從。願自今禮官抄其《家禮》節目之宜於今者，以訓經師，凡遇喪葬，一依《家禮》行之，則庶合古制矣。《傳》曰：“制度之改、政令之變，利於其舊不十倍，則不可爲已。”又況不如其舊哉？昔者，曹參不變蕭何之法，以成漢家四百年之基；王安石輕變祖宗之法，以致宋室南渡之禍。由此觀之，已成之法，其可紛更乎？是故前朝凡立一法設一官，必令臺省完議參詳，允合於義，然後出其依牒而施行。是以雖有用智喜新之輩，欲變舊章，以售其才，然卒莫能遂。其所以維持五</p>
--	--	---

	<p>니하여 한(漢)나라의 4백 년 기초를 이루었고, 왕안석(王安石)이 조종(祖宗)의 법(法)을 가볍게 변경하여 송(宋)나라의 남도(南渡)의 화(禍)를 가져왔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이미 이루어진 법을 부산스럽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조(前朝) 때에 무릇 한 법(法)을 세우고 한 벼슬을 베풀려면, 반드시 대성(臺省)으로 하여금 완전히 의논하고 참상(參詳)하게 하여, 진실로 의리에 합한 연후에 의첩(依牒)을 내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혜를 쓰고 새 것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예전 법을 변경하여 그 재주를 팔려고 하여도 마침내 이루지 못하였으니, 5백 년이나 오래도록 유지한 것이 바로 이 까닭이었습니다.</p> <p>우리 태상왕(太上王)께서 천운(天運)에 응하여 나라를 세우고, 제도를 창건(創建)하고 법을 세워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이루었으니, 진실로 자손 만대의 귀감(龜鑑)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영성(盈成)한 운수를 만나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차례를 이어 잊지 않아서[繼序不忘], 매양 교조(教條)를 내리시매, 《육전(六典)》을 거행하는 것이 반드시 한결같으니, 여기에서 전하의 선계선술(善繼善述)의 성심(盛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첩(依牒)의 법을 다시 거행하지 않으면, 지혜를 쓰고 새 것을 좋아하는 안석(安石)의 무리 같은 자가 후세에 나와서 예전 법을 변란(變亂)할지 알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비록 《육전(六典)》에 실리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법은 변경하지 말고, 만일 부득이하여 고치고 바꾸거나 새 법을 세울 것이 있으면, 대소를 막론하고 전조(前朝)의 구제(舊制)에 의하여 반드시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의첩을 내어 시행하게 하소서.</p> <p>사(赦)라는 것은 소인(小人)의 다행이요, 군자(君子)의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문왕(文王)이 벌(罰)을 만들때 형벌하여 용서함이 없었고,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지으매 대과[大眚]를 용서한 것을 반드시 썼으니, 성인(聖人)이 가볍게 사(赦)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왕자(王者)가 천명(天命)</p>	<p>百年之久者，良以此也。惟我太上王，應運開國，創制立法，以成《經濟六典》，誠子孫萬世之龜鑑也。恭惟殿下撫盈成之運，夙夜寅畏，繼序不忘，每降教條舉行，《六典》必居其一，于以見殿下善繼善述之盛心也。然而依牒之法，不復舉行，則有用智喜新若安石之輩者，出於後世，變亂舊章，未可知也。願自今雖《六典》所不載，其已成之法，毋得紛更。如有不獲已而更易，與夫立新法，則莫論大小，依前朝舊制，必令臺諫出其依牒而施行。赦者，小人之幸，君子之不幸，故文王作罰，刑茲無赦；孔子修《春秋》，必書肆大眚，聖人所以不輕赦者如是。然王者受命之初，若不大赦，無以安其反側，故漢祖承秦之弊，設三章之法，行大赦之令，及光武撥亂之後，亦行赦宥之典。此皆蕩滌穢流，與民更始，實出於不得已者，非所以施其私惠也。後世不察此義，雖繼世襲封之君，當踐祚之初，必降赦宥，已爲非義。況因慶事因徼福而數赦者乎？是故唐太宗曰：“凡赦宥之恩，惟及不軌之輩，一歲再赦，好人喑啞。凡養稂莠者傷禾</p>
--	---	---

을 받는 처음에 만일 대사(大赦)하지 않으면, 그 반측(反側)하는 것을 편안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고조(漢高祖)가 진(秦)나라의 폐업을 이어 삼장(三章)의 법을 베풀어서 대사(大赦)의 영(令)을 행하였고, 광무제(光武帝)가 난(亂)을 평정한 뒤에 또한 사유(赦宥)의 법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더러운 것을 씻어 버리고 백성과 더불어 고쳐 시작하는 것이니,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요,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 것이 아닙니다. 후세에 이 뜻을 살피지 못하고, 비록 대를 계승하고 습봉(襲封)한 임금이라도 즉위하는 처음을 당하면 반드시 사유를 내리니, 이것이 이미 의(義)가 아니거든, 하물며 경사(慶事)와 복(福)을 구하기 위하여 자주 사(赦)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당 태종(唐太宗)이 말하기를, ‘무릇 사유(赦宥)의 은혜가 오직 불륜(不軌)한 무리에게만 미치니, 한 해에 두 번 사(赦)하면 좋은 사람이 병어리가 된다. 낭유(稂莠)200)를 기르는 자는 곡식[禾稼]을 상하고, 간궤(奸宄)201)에게 은혜롭게 하는 자는 양민(良民)을 해친다. 그러므로 제갈량(諸葛亮)이 촉(蜀)을 다스릴 때에 10년을 사(赦)하지 않으면, 촉(蜀)이 크게 화(化)하였고, 양무제(梁武帝)가 매년 두어 번 사하였으나, 마침내 기울어져 패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내가 천하를 차지한 이래로 절대로 놓아주고 사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태종의 말이 깊이 절실하고 밝아서, 실로 만세(萬世) 인주(人主)의 규범(規範)입니다. 지금 국가가 태평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자주 사유(赦宥)의 영(令)을 행하니, 신 등은 두렵건대, 죄가 있어도 벗어날 수 있어 징계함이 없으므로 악한 것을 할 마음이 자꾸 생겨 마지 않을 것이니, 어찌 밝은 때의 한 잘못이 아닙니까? 원컨대 전하께서 선성(先聖)의 남긴 뜻을 본받고 당 태종의 고사에 의하여, 비록 경사(慶事)가 있더라도 가볍게 사유(赦宥)하지 마시어, 간궤(奸宄)의 악한 것을 하는 마음을 막으소서.”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稼， 惠奸宄者賊良民， 故諸葛亮治蜀， 十年不赦， 而蜀大化； 梁武帝每年數赦， 卒至傾敗， 故我有天下以來， 絕不放赦。” 太宗之言， 深切著明， 實萬世人主之規範也。 今國家昇平有年矣， 而數行赦宥之令。 臣等竊恐有罪得脫， 無所懲艾而爲惡之心， 嚚然未已也。 豈非明時之一失也？ 願殿下， 體先聖之遺意， 依唐宗之故事， 雖有慶事， 毋輕赦宥， 以杜奸宄爲惡之心。 命下議政府擬議施行。

<p>태종 5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4월 8일(갑인) 7 번째기사 원자가 입학하다. 임금 이 입학의 가운데 일 부 생략을 지시하다</p>	<p>원자(元子)가 입학(入學)하였다. 학생복을 입고 문묘(文廟)에 참배하여 작(爵)을 드리고, 박사(博士)에게 속수(束脩)209) 의 예(禮)를 행하였는데, 성균 사성(成均司成) 설칭(薛僞)과 사예(司藝) 김조(金稠)로 박사(博士)를 삼아서 받았다. 속백(束帛) 한 광주리[筐], 술 한 병[壺], 포[脩] 한 소반[案]이었다. 이보다 앞서 지신사 박석명(朴錫命)이 원자(元子)의 입학의(入學儀)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아직 이름[名]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글을 읽는 것이니, 위의(威儀)를 갖추지 말고, 청양산(靑陽傘) 등물(等物)을 제거하라.”</p>	<p>元子入學，服學生服，謁文廟奠爵，行束脩禮于博士。以成均司成薛僞、司藝金稠爲博士受之，束帛一筐、酒一壺、脩一案。前此，知申事朴錫命啓元子入學儀，上曰：“如今未成名，但讀書耳。勿備威儀，除靑陽傘等物。”</p>
<p>태종 5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4월 13일(기미) 1번째기사 사신들에게 무일전에 서 잔치를 베풀다. 사 신들이 정비들 알현하 다</p>	<p>임금이 사신에게 무일전(無逸殿)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황엄(黃儼)·조천보(曹天寶)·주윤단(朱允端)·한첩목아(韓帖木兒) 등이 대궐에 이르니, 임금이 데리고 내전(內殿)으로 들어갔다. 엄 등이 비자(妃子)를 알현(謁見)하려고 하므로, 임금이 답례(答禮)를 물었다. 윤단이 말하기를, “사신이 알현(謁見)하면, 비자(妃子)는 손을 들고 조금 굽히면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자가 이 예(禮)를 익히지 못하였으니, 내가 본국(本國)의 예(禮)를 행하려고 하오.” 하고, 답배(答拜)하니, 엄 등이 웃었다. 임금이 다례(茶禮)를 행하고, 이내 잔치를 베풀었다. 엄과 천보가 성행(性行)이 몹시 거만하고, 조거임(趙居任)도 역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임금이 매양 수라를 들 때에 눈이 마주치니, 엄 등이 조금 편치 않은 기색이 있었다. 포구락(拋毬樂)을 베풀었는데, 동쪽편 기생은 맞히는 자가 4명이었고, 서쪽편에는 맞히는 자가 없었다. 엄 등이 즐거워하여 사람을 시켜 임금께 말하기를, “우리편은 모두 맞히는데, 국왕편은 어째서 맞히지 못합니까?” 하니, 임금이 웃었다. 매양 술이 나오면 엄 등이 임금에게 권하여 반드시 마시게 하는데, 거임만은 오직 그렇지 않고 임금에게 말하기를,</p>	<p>己未/上宴使臣于無逸殿。黃儼、曹天寶、朱允端、韓帖木兒等至闕，上與入內。儼等欲謁妃子，上問答禮，允端曰：“使臣謁妃子，舉手小屈。”上曰：“妃子不習此禮，予欲行本國禮。”乃答拜，儼等笑之。上行茶禮，乃設宴。儼及天寶性行甚倨，居任亦在坐。上每御膳，與之擊目，儼等稍有不平之色。進拋毬樂，東邊妓中者四，西無中者。儼等樂，使人言於上：“吾邊皆中，國王邊如何不中乎？”上笑。每酒進，儼等勸上必飲，居任獨不然，言於上曰：“己所不欲，勿施於人。”上曰：“聖天子卽位，命大人馳驛萬里，來錫誥命印章，我子孫當與皇孫，共享富貴於千萬世矣。雖不勸酒，我何敢辭!”居任曰：“惟國王常存此心。”極</p>

	<p>“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천자(聖天子)께서 즉위하시때, 대인(大人)을 명하여 만리(萬里)나 되는 곳에 역마(驛馬)를 달리어 고명과 인장을 주게 하셨으니, 나의 자손이 마땅히 황손(皇孫)과 더불어 함께 부귀(富貴)를 누리기를 천만세(千萬世)에 이를 것입니다. 비록 술을 권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감히 사양하겠소?” 하였다. 거임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소서.” 하고, 극진히 즐기고 과하였다. 이튿날 엄 등이 윤단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들은 어제 대단히 취하여 몹시 곤한데, 국왕께서 어떠하십니까?” 하였다. 임금이 박석명(朴錫命)을 시켜 대답하기를, “나도 역시 매우 곤하여 나가 보지 못하였으니, 대단히 예의(禮意)를 잃었소.” 하였다. 임금이 사신에게 옷[衣]·모자[帽]와 신[靴]을 주었는데, 거임만은 받지 않았다. 거임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이곳에 사신으로 왔던 자가 모두 연소(年少)한 무리들이어서, 주색(酒色)에 빠져 조정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지금 늙은 신하를 보낸 것입니다.” 하였다. 수염과 귀밑 털이 모두 희었었다. 엄이 옷과 모자가 매우 아름답지 못하다 하여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항상 말하기를, “국왕께서 어찌 내구마(內廐馬) 한두 필을 주지 않을라구? 노왕(老王)과 병든 왕께서도 어찌 말 한 필씩을 아니 주겠나? 그러면 네 필이 되겠지!” 하고, 도리어 통사(通士)에게 이르기를, “이 말을 내지 말라.” 하였으니, 실상은 말하게 하려고 한 것 이었다</p>	<p>歡而罷。翌日，儼等遣允端曰：“吾等前日大醉困甚，國王安否如何？”上使錫命對曰：“我亦困甚，未能出見，殊失禮意。”上贈使臣衣帽及靴，唯居任不受。居任曰：“向者使于此者，皆年少之輩，沈於酒色，以辱朝廷，故今使老臣也。”其鬚鬢盡白。儼以衣帽不盡美少之，且常言：“國王豈不與廐馬一二匹？老王與病王豈不各與馬一匹乎？則四馬矣。”反謂通事曰：“毋出此言。”其實欲使言之也。</p>
--	---	---

<p>태종 5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4월 19일(을축) 2번째기사 태상전과 상왕전 외에 는 날고기 반찬을 올 리지 못하게 하다</p>	<p>생육전(生肉膳)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상전(太上殿)과 상왕전(上王殿)에 공상(供上)하는 것 외에는 날고기 반찬을 모두 제거하라. 한 달 동안에 한 전(殿)에 공상하는 노루가 30마리니, 네 전 (殿)에 공상하는 것이 1백 20마리나 된다. 비록 천만 명의 사람이 사냥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잡는 것은 많지가 않다. 아파치(阿波赤)가 능히 지탱하겠느 냐?” 하였다. 박석명(朴錫命)이 대답하기를, “한 나라에서 하루에 한 마리의 노루를 공상하는데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습 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내일 아침부터 올리지 말라.”</p>	<p>命除生肉膳。上曰：“太上殿、上王殿 供上外，生肉膳悉除之。一朔一殿供 上獐三十口，則四殿所供一百二十口 矣。雖千萬人獵之，一日所獲不多， 豈阿波赤所能支乎？”朴錫命對曰：“以 一國供一日一口之獐，何難之有！”上 曰：“予意已定，自明朝勿進。”</p>
<p>태종 5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4월 26일(임신) 1번째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 게 잔치를 베풀고 말 2필씩을 주다</p>	<p>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말 두 필씩을 주었다. 황엄 (黃儼)·고득(高得) 등이 대궐에 이르러 금강산에 갔다 온 것을 사례하니, 임금 이 말하기를, “내가 관(館)에 나가 금강산의 경치를 물으려고 하였는데, 지금 천사께서 먼 저 왔으니, 마음에 황송하오.” 하였다. 엄 등이 말하기를, “금강산의 왕반(往返)에 전하께서 사람을 시켜 궁시(弓矢)를 갖추어 호위하게 하시고, 선수(膳羞)를 갖추어 먹여 주시었으니, 우리들은 참으로 감사하였습 니다.” 하니, 임금이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돌아간 뒤에 임금이 관(館)에 나가 잔치 를 베풀고, 말과 흑마포(黑麻布)·백저포(白苧布)·인삼(人蔘)·화석(花席) 등을 주 니, 거임(居任)만은 받지 않았다. 엄(儼)이 말하기를, “말 한 필이 좋지 못합니다.”</p>	<p>壬申/上如太平館，宴使臣，贈馬各二 匹。黃儼、高得等至闕，謝金剛山之 行，上曰：“予欲詣館，問金剛山景概， 今天使先來，中心是惶。”儼等曰： “金剛山往還，殿下使人備弓矢以捍衛， 具膳羞以饋餉，吾誠感之。”上行茶 禮。既還，上詣館設宴，贈馬及黑麻 布白苧布人蔘花席等物，獨居任不受。 儼曰：“馬一匹不善。”上命換以善 馬。曹天寶心不平，儼勸天寶飲，天 寶指其案曰：“滿案七十二器，無可食 者。”儼曰：“國王誠心饋汝，汝言如 此，與犬馬無異。”天寶怒曰：“我亦</p>

	<p>하니, 임금이 명하여 좋은 말로 바꾸어 주었다. 조천보(曹天寶)가 마음속으로 불평하매, 엄(儼)이 천보에게 마시기를 권하니, 천보가 잔치상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상에 가득한 일흔 두 그릇에 먹을 만한 것이 없다.” 하니, 엄(儼)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성심으로 자네를 대접하는데, 자네가 이런 말을 하니, 견마(犬馬)와 다를 것이 없다.” 하였다. 천보가 노하여 말하기를, “나도 역시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자네가 어째서 나를 욕하는가?” 하고, 사모를 벗어 엄의 앞에다 던졌다. 엄이 한참 있다가 말하였다. “이런 사람을 어찌 따질 게 있나?”</p>	<p>承帝命而來，汝何辱我乎？”脫其帽投之儼前。儼既而言曰：“此兒安足數也！”</p>
<p>태종 5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4월 29일(을해) 1번째기사 갑사들이 불은사에서 잡은 노루로 사신을 대접하다</p>	<p>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황엄 등이 5월 1일에 떠나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총제(摠制) 이종무(李從茂)가 아뢰기를, “오늘 노루가 불은사(佛恩寺) 송림(松林) 사이로 들어와서, 갑사(甲士)들이 잡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작은 백성들이 변괴(變怪)라고 하지 않겠는가? 전조(前朝) 때에 노루가 용화지(龍化池)에 들어왔는데, 변괴라 하여 크게 법석(法席)을 베풀어 빌었으니, 대단히 의미 없는 일이다.” 하였다. 종무가 말하기를, “오늘 잔치에 써도 좋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쓰지 않고 무엇 하느냐?”</p>	<p>乙亥/上如太平館設宴。以黃儼等欲以五月一日發程也。摠制李從茂啓曰：“今日獐入佛恩寺松間，甲士等獲之。”上笑曰：“小民無乃以爲怪乎？前朝時，獐入龍化池，乃以爲怪，大設法席以禳之，甚無謂也。”從茂曰：“今日宴，用之可乎？”上曰：“不用何爲！”</p>
<p>태종 5권, 3년(1403</p>	<p>평양 부원군(平壤府院君) 조준(趙浚)에게 육선(肉膳)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p>	<p>賜肉膳于平壤府院君趙浚。上嘗召金</p>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6월 5일(신해) 4
번째기사
평양 부원군 조준이
병중에 있어 육선을
내려 주다

일찍이 김과(金科)를 불러 말하기를,
“평양군(平壤君)은 어진 정승이다. 지금 병이 있고, 게다가 처상(妻喪)을 당하여 더욱 수척하였다. 성인(聖人)의 제도에 비록 부모의 상사라도 늙고 병든 사람은 육즙(肉汁)을 먹이도록 되어 있는데, 하물며 준(浚)은 벼슬이 높고 나이도 많으며, 또 병이 있으니, 육선(肉膳)을 주어 평복(平復)시키려고 한다. 복제(服制)를 마치도록 먹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는지?” 하였다. 과(科)가 대답하기를,
“임금이 주시는데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또 조계(朝啓)하는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씨(李氏)가 개국(開國)한 공(功)은 오로지 조준(趙浚)과 남은(南閔)에게 있다. 정도전(鄭道傳)은 언사(言辭)를 잘하여 공신(功臣)의 열(列)에 있었는데, 그가 공신(功臣)이 된 것은 또한 당연하나, 공(功)으로 논하면 마땅히 5, 6등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미 간 사람들을 오늘에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남은이 만일 살아 있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부왕(父王) 때에 양정(兩鄭)이라고 일렀으니, 하나는 몽주(夢周)이고, 하나는 도전(道傳)이었다. 몽주는 왕씨(王氏)의 말년 시중(侍中)이 되어 충성을 다하였고, 도전은 부왕(父王)의 은혜에 감격하여 힘을 다하였으니, 두 사람의 도리가 모두 옳은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부왕께서 즉위하시던 처음에 용병(勇兵)을 모두 내게 위임하시고, 매양 인견(引見)하고 일을 의논하였는데, 정희계(鄭熙啓)가 매양 나를 부왕께 참소하므로, 뒤에는 입궐하려고 하면 문지기가 힐난하여, 비록 고(告)할 일이 있어도 내가 들어가지 못하였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하기를, 틈을 타서 들어가기만 하면 일일이 고하겠다고 하였는데, 마침 하루는 명소(命召)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런 때를 당하여 국가의 이해(利害)를 어찌서 고하지 않느냐?’ 하시었

科曰: “平壤君, 賢相也。 今有疾, 又遭妻喪, 憔悴益甚。 聖人之制, 雖大喪, 老病者, 宜食肉汁。 況浚位極年高, 且有疾! 欲賜肉膳, 庶使平復, 其不亦欲終制而不食乎?” 科對曰: “君賜, 豈敢辭乎?” 至是, 又與朝啓諸臣議之, 因曰: “李氏開國之功, 專在趙浚與南閔耳。 鄭道傳則善於言辭, 而居功臣之列。 其爲功臣亦當矣, 以功而論, 則當在五六間矣。 既往之人, 今日不得不思也。 南閔若在, 則豈不樂乎? 父王時, 謂之兩鄭, 一夢周, 一道傳。 夢周當王氏衰季, 爲侍中而盡忠; 道傳感父王之恩而竭力, 二人之道, 皆是矣。” 又曰: “父王卽位之初, 以勇兵皆委於我, 而每引見議事。 鄭熙啓每構我於父王, 後欲入闕, 則闔者難之。 雖有可告之事, 予不得入, 心竊以爲乘間得入, 則一一告之。 會一日命召曰: ‘當此之時, 國家利害, 何爲不告?’ 予對曰: ‘雖欲入告, 闔者難之, 不得入也。’ 太上殿有慙色曰: ‘必使人請坐乎?’” 又曰: “太上殿相雞龍山還駕時, 予入南閔帳幕, 閔不肯曰: “自今毋入我帳幕。” 我遂出不入。

	<p>다. 내가 대답하기를, ‘비록 들어와 고하려고 하여도, 문지기가 힐난하여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더니, 태상전(太上殿)께서 무안한 기색이 있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사람을 시켜 앉으라고 하여야 앉느냐?’ 하시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태상전께서 계룡산(鷄籠山)의 터를 보고 돌아오실 때에 내가 남은의 장막(帳幕)에 들어가니, 은(閻)이 좋아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이제부터 내 장막에 들어오지 마시오.’ 하기에, 내가 드디어 나와서 들어가지 않았었다. 이때에 태상전께서 세자(世子)를 남은에게 부탁하시었다.”</p> <p>하였다. 숙변이 말하기를,</p> <p>“근자에 남재(南在)를 만났는데, 재(在)가 말하기를, ‘태상전께서 세자를 은에게 부탁하셨으면, 은(閻)의 죽음은 마땅하지마는, 진실로 부탁하신 일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였다.</p> <p>“은(閻)은 곧은 사람이어서 부모를 잃은 외로운 아들[六尺之孤]을 부탁할 만하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다.”</p>	<p>是時，太上殿以世子托於閻也。” 叔蕃曰：“近見南在，在曰：‘太上殿托世子於閻，則閻之死當矣，固無付托也。’” 上曰：“閻，直者也。可以托六尺之孤者，故付托也。”</p>
<p>태종 5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6월 13일(기미) 1번째기사</p> <p>상왕전에 나아가 헌수하니, 의안 대군·익안 대군 등이 시연하다</p>	<p>임금이 상왕전(上王殿)에 나아가 헌수(獻壽)하였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익안 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찬성사(贊成事) 이저(李佇)·완산군(完山君) 천우(天祐)·완천군(完川君) 숙(淑)·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이 시연(侍宴)하여 극진히 즐기고, 연구(聯句)로 창화(唱和)하였다. 잔치를 장차 마치려고 하니, 상왕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주상도 또한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p>	<p>己未/上詣上王殿獻壽。 義安大君和、益安大君芳毅、贊成事李佇、完山君天祐、完川君淑、靑原君沈淙侍宴極歡，聯句唱和。 宴將終，上王起舞，上亦起舞。</p>
<p>태종 5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p>	<p>관승녕부사(判承寧府事) 이귀령(李貴齡)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는데, 귀령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1통[道], 약재(藥材) 18가지[味]와 천하(天下)에 포</p>	<p>甲子/判承寧府事李貴齡，回自京師。 貴齡齎禮部咨一道，藥材十八味及布告</p>

<p>1년) 6월 18일(갑자) 1번째기사 판승녕부사 이귀령이 예부의 자문·약재·칙유 를 가지고 오다</p>	<p>고(布告)하는 칙유(勅諭) 1통을 싸 가지고 왔다.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영락(永樂) 원년 4월 20일 이른 조회[早朝] 때 본부관(本部官)이 흠봉(欽奉)한 성지(聖旨)에 ‘조선에서 온 사신이 말하기를, 「저희 국왕께서 약재(藥材)가 없기 때문에 포필(布匹)을 가지고 와서 바꾸려고 한다.」 고 하였다. 너 예부는 대의원(大醫院)에 말하여, 저들이 쓰기에 적합한 약미(藥味)를 조사하여 수량을 정해 가지고 단단히 봉하여 싸서 온 사람에게 주어 보내고, 포필(布匹)은 제 마음대로 팔게 하라.’ 하였습시다. 이대로 전항(前項)의 약재를 온 배신(陪臣) 판승녕부사 이귀령(李貴齡) 등에게 주어, 수령(收領)하여 가게 합니다. 하사한 약재 18가지를 합계하면 모두 82근(斤) 8냥(兩)입니다.”</p>	<p>天下勅諭一道來。咨文曰： 永樂元年四月二十日早朝，本部官欽奉聖旨：“朝鮮來的使臣，說他國王缺少藥材，將布匹來換。 恁禮部着太醫院照他合用的藥味，打點見數，封裹得停當，付與差來人將去，布匹從他自賣。”欽此，將前項藥材，交付差來陪臣判承寧府事李貴齡等，收領前去。計賜藥材一十八味，共八十二斤八兩。</p>
<p>태종 5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6월 26일(임신)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대간들의 시비를 의정부에서 개 입하지 말기를 청하다</p>	<p>사헌부(司憲府)에서 좌헌납(左獻納) 김익정(金益精)의 죄를 탄핵하여 청하였다. 처음에 횡천(橫川) 사람이 와서 익정(益精)에게 고(告)하기를, “감무(監務) 위덕해(魏德海)가 어염(魚鹽)과 포물(布物)을 강제로 민호(民戶)에 다 나누어 주고 쌀·보리·삼[麻]을 거두니,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긴다.” 하였다. 익정(益精)이 본원(本院)에 말하여, 정사를 어지럽히고 백성에게 포학하게 한다고 헌부(憲府)에 이문(移文)하였다. 헌부(憲府)에서 감사(監司)에 이문하니, 감사가 조사하여 회보(回報)하기를, “덕해의 일이 정사를 어지럽히고 백성에게 포학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헌부에서 곧 좌사간(左司諫) 우홍강(禹洪康)·우정언(右正言) 이명선(李明善)을 논핵(論劾)하였으니, 대개 처음에 발언(發言)한 자를 묻은 것이었다. 이에 익정(益精)을 논핵하여 상소하기를, “덕해가 어물(魚物)을 무역한 것은 죄(罪)가 사실이나, 삼[麻]을 계산하여 포(布)를 준 것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익정이, 덕해가 횡천 감무(橫川監務)로 있을 때에 익정의 처부(妻父)인 권담(權湛)을 박대하였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말을 만들어 죄(罪)에 처하고자 한 것이니, 청컨대 익정을 죄주어</p>	<p>司憲府劾請左獻納金益精罪。初，橫川人來告益精曰：“監務魏德海，以魚鹽布物，強分民戶，收米麥與麻，民甚苦之。”益精言于本院，以亂政虐民，移文憲府。憲府移文監司，監司推覈回報：“德海之事，不是亂政虐民。”憲府乃劾左司諫禹洪康、右正言李明善。蓋問初發言者也。乃劾益精，上疏以爲： 德海貿易魚物，罪固實矣，計麻折布，未得其實。益精以德海爲橫川監務時，薄待其妻父權湛，故挾恨造言，欲置於罪。請罪益精，以懲奸譎。德海以守令，貿易民間，雖非亂政，亦難免罪。益精上書辨之，且訟憲司之失，上下憲</p>

	<p>간사하고 속이는 것을 징계하소서. 덕혜는 수령으로서 민간에 무역하였으니, 비록 정사를 어지럽힌 것은 아니나, 또한 죄를 면치 못합니다.”</p> <p>하였다. 익정이 상서(上書)하여 이를 변명하고, 또 헌사(憲司)의 잘못을 호소하니, 임금이 헌부(憲府)의 소(疏)와 익정의 상서를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빨리 결단하지 않으므로, 대사헌(大司憲) 박신(朴信) 등은 거사(擧司)하여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p> <p>“신 등이 듣자오니, 신 등의 상소(上疏)를 의정부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였다 하오니, 원컨대 주상께서 신 등과 간관(諫官)을 나오게 하여 친히 물어서 결단하소서.”</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미 정부에 내렸으니 신문(申聞)을 기다려서 내가 마땅히 결단하겠다.”</p> <p>하였다. 신(信)이 말하기를,</p> <p>“대간(臺諫)의 일을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만일 반드시 정부로 하여금 외논하게 하시려거든, 원컨대 정부와 신 등을 불러서 그 시비(是非)를 의논하게 하시고, 친히 들어서 결단하소서. 간원(諫院)이 옳으면 신 등이 죄를 받아야 하고, 신 등이 옳으면 간원이 죄를 받아야 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오늘은 마침 몸이 불편하니 뒤에 마땅히 청한 대로 하겠다.”</p> <p>하였다. 며칠 뒤에 임금이 사헌부 장무(掌務)를 불러 명하기를,</p> <p>“처음에 위덕해의 일을 익정에게 고한 자가 누구냐고 익정에게 물으니, 익정이 대답하기를, ‘대간원(臺諫員)이 들은 것을 가지고 공좌(公座)에 고(告)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상사(常事)입니다. 만일 고한 자를 말한다면 비록 말할 일이 있더라도 누가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명령이 있으시니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한 자는 횡천의 토민(土民)입니다.’ 하였다.”</p>	<p>府疏及益精上書于議政府擬議。政府猶豫，大司憲朴信等，舉司詣闕啓曰：“臣等聞下臣等上疏于議政府擬議，願上進臣等與諫官，親問斷之。”上曰：“已下政府，待其申聞，予當斷之。”信曰：“臺諫之事，下政府擬議，古未有也。若必使政府議之，願召政府與臣等，論其是非，親自聽斷。諫院是則臣等受罪，臣等是則諫院受罪。”上曰：“今日適未寧，後當如所請。”後數日，上召司憲府掌務命曰：“初以魏德海之事，告於益精者，問於益精。”益精答曰：“臺諫員以所聞，告於公座者，古今常事。若言其告者，雖有可言之事，誰肯言之！然有旨不敢不言。”告者乃橫川土民也。魏德海，驪城君閔無疾之家臣也。又命曰：“所請魏德海，罪不過罷職，金益精勿復舉論。”</p>
--	---	---

	<p>하였다. 위덕해는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의 가신(家臣)이었다. 또 명하였다.</p> <p>“청한 바 위덕해의 죄는 파직에 지나지 않고, 김익정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p>	
<p>태종 6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7월 1일(병자) 2 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 정부에게 서울의 병든 노모를 뵈게 하고, 가뭄의 정도를 묻다</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정부(鄭符)에게 서울로 와서 성친(省親)하라고 명하였으니, 부(符)의 어머니가 병이 났기 때문이었다. 부(符)가 대궐에 나와 숙배(肅拜)하니, 임금이 사람을 시켜 묻기를,</p> <p>“그 도(道)에 가뭄이 심한데, 어찌하여 오래도록 보고하지 않았는가?” 하니, 부(符)가 대답하였다.</p> <p>“대저 농사는 비록 이른 가뭄[무우]이 있다 하더라도, 곡식의 싹이 비만 맞으면 일어나기 때문에, 감히 보고하지 못한 것은 비를 기다린 것입니다. 경상도의 금년 농사는 3분의 1은 수확할 가망이 있사운데, 오직 안동(安東)·상주(尙州) 등의 고을은 4월부터 6월 그믐까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농사를 실패하였습니다.”</p>	<p>命慶尙道觀察使鄭符來京省親。以符之母病也。符詣闕肅拜，上使人問曰：“其道旱甚，何久不報也？”符對曰：“大抵農事，雖有旱旱，苗得雨則興，不敢報者，待雨也。慶尙道今年農事，三分之一，可得而穫，唯安東、尙州等州郡，自四月至六月晦不雨，故全失農業。”</p>
<p>태종 6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7월 1일(병자) 3 번째기사</p> <p>종친과 공신이 헌수하다</p>	<p>종친(宗親)과 공신(功臣)이 헌수(獻壽)하였는데, 연구(聯句)를 지어 창화(唱和)하고 밤이 되어서 파하였다.</p>	<p>宗親功臣獻壽，聯句唱和，侵夜乃罷。</p>
<p>태종 6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7월 19일(갑오) 1 번째기사</p> <p>태상전에 헌수하다. 대신과 각사 아전들의</p>	<p>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나아가 헌수(獻壽)하였는데, 극진히 즐기고 밤에 파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장차 나가려고 할 때 박석명(朴錫命)에게 명(命)하기를,</p> <p>“더위가 몹시 심한데, 대신(大臣)과 각사(各司)의 원리(員吏)들이 오래 시립(侍立)하여 있으니, 내가 매우 불안하다. 과인(寡人)이 태상전에 왕래하는 것은 으레 하는 일이니, 모두 의막(依慕)에 들어가 있다가 연(輦)이 지나가기를</p>	<p>甲午/上詣太上殿獻壽，極歡夜罷。初，上將出，命朴錫命曰：“暑氣甚熾，大臣及各司員吏侍立者久，予甚不便。且寡人來往太上殿，常事也。令皆入依慕，候輦過從行。”錫命啓曰：“行幸侍立之禮，曾有成法，何可輕廢!”</p>

<p>노고를 염려하다</p>	<p>기다려서 따라 행하게 하라.” 하였다. 석명이 아뢰기를, “거동하실 때에 시립하는 예(禮)는 일찍이 성법(成法)이 있으니, 어찌 가볍게 폐할 수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러면, 모든 일을 빨리 준비하여 오래 서 있게 하지 말라.”</p>	<p>上曰：“然則速備諸事，毋令久立。”</p>
<p>태종 6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8월 7일(임자) 1번째기사 태상전에 문안하고 헌수하다. 이화·심종·이저 등이 시연하다</p>	<p>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조회하고 헌수(獻壽)하니, 의안 대군 이화(李和)·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 등이 시연(侍宴)하였다. 임금이 처음에 이르렀더니, 시자(侍者)가 나와서 말하기를, “양청(涼廳)에서 불경(佛經)을 보시고 있으므로, 술과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태상왕께서 술과 고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소찬(素饌)을 드리고 다음에 육선(肉膳)을 드리니, 태상왕이 허락하였다. 임금이 기뻐하여 여러가지 풍악을 들여와서 연주케 하였다. 매우 즐거워서 태상왕과 주상이 모두 취하여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한참 뒤에 잔치가 장차 끝나려고 하니, 태상왕이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잔을 잡고, 임금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여 마시게 하였다. 임금이 추창(趨踏)하여 앞으로 나가서 잔을 받아 근신(近臣)에게 주고, 점(拈)위에서 스스로 잔을 취(取)하여 태상왕 앞에 드리고 나서, 도로 잔을 들어 스스로 마시니, 태상왕이 임금이 다 마시기를 기다려서 마시었다. 임금이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였다. “신이 처음에 예궐(詣闕)하여 듣자오니, 불경을 보시기 때문에 술과 고기를 드시지 않는다 하시기에, 오늘의 즐거움을 이루지 못할까 염려하였사운데, 특별히 허락하여 주셨으니, 기쁘고 다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p>	<p>壬子/上朝太上殿獻壽， 義安大君和、靑原君沈淙、上黨君李佇等侍宴。 上初至， 侍者出曰：“御涼廳看佛經， 以故不進酒肉。” 上恐太上王厭進酒肉， 先進素饌， 從以肉膳， 太上王許之， 上喜。 衆樂入奏， 權甚， 太上王及上皆醉， 起舞良久。 宴將終， 太上王據胡床， 執杯呼上， 使前而飲之， 上趨進受之， 以授近臣， 自取杯於拈上， 獻于太上王前， 還取杯自飲， 太上王待上飲畢乃飲。 上進前曰：“臣初詣闕， 聞以看經之故， 不進酒肉， 恐未遂今日之權， 特蒙賜許， 喜幸難言。”</p>
<p>태종 6권, 3년(1403)</p>	<p>사간원(司諫院)에서 상언(上言)하기를,</p>	<p>司諫院上言：</p>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8월 21일(병인)
3번째기사
사간원에서 회안군 부
자 문제 등을 상언하
다

“신 등이 보옵건대, 전하께서 천변(天變)이 여러 번 나타난 것을 근심하시고 특별히 교서를 내리시어, 재앙을 부른 연유와 재앙을 그치게 할 방도를 대소 신료로 하여금 모두 진달하여 아뢰게 하였으므로, 신 등이 삼가 한두 가지의 얕은 소견을 아래에 조목조목 열거하오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유운(兪允) 하여 시행하소서.

1. 지난날에 회안군(懷安君) 부자(父子)가 군사를 들어 난을 꾸며서 거의 사직(社稷)을 패(敗)할 뻔하였으니, 왕법(王法)에 있어서 진실로 용서할 수가 없사운데, 전하께서 우애의 정으로 외방에 안치하시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개과자신(改過自新)²⁴¹ 하여 전하께서 보전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신 등이 가만히 들으니, 근래에 날래고 용맹한 것이 출중함을 믿고 양양하게 분원을 품고, 말을 달려 출입하되 꺼리는 바가 없고, 그 아들 의령(議寧)은 나이가 젊고 광망하여 여력(膂力)이 바야흐로 강해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더욱 방종하니, 지금 하늘이 변을 보이는 것이 어찌 공연한 일이겠습니까? 신 등은 두렵건대, 부자가 함께 있으면 반드시 불쾌를 도모하여 후일에 환을 끼칠까 염려되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그 부자(父子)를 딴 곳에 나누어 두시어, 화란의 싹을 막고 우애의 정을 온전히 하소서.

1. 박만(朴蔓)과 임순례(任純禮)는 본래 재덕(才德)이 없이 무반(武班)에 몸을 던져, 다행히 성을 입어서 벼슬이 양부(兩府)에 이르렀고, 연전(年前)에 전하께서 동북(東北) 일면(一面)이 이토(異土)와 연결하였다 하여 전제(專制)의 임무를 맡기시었는데, 태상왕(太上王)께서 능(陵)에 참배하던 때를 당해 군사를 징발하여 화란(禍亂)을 일으켰다가, 그 여당(餘黨)은 모두 주륙(誅戮)을 당하였는데, 만(蔓)과 순례(純禮)만은 수악(首惡)으로서 머리를 보전하고 있으니, 실로 춘추(春秋)의 토죄(討罪)하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임정(林整)은 성품이 본래 거칠고 사나운데, 도필(刀筆)로 출신(出身)하여 외람하게 재상(宰相)의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전하께서

臣等伏觀殿下，軫慮天變屢見，特降教書，其致災之由，弭災之道，令大小臣僚，悉陳以聞。 臣等謹以一二淺見，條列于後， 伏望殿下兪允施行。 一， 頃者懷安父子，稱兵構亂，幾敗社稷。 其在王法， 固不可赦， 殿下以友愛之情， 安置于外， 誠宜改過自新， 以答殿下保全之恩， 臣等竊聞， 近來恃其驍勇出衆， 怏怏憤怨， 出入馳騁， 無所忌憚； 其子義寧， 年少狂妄， 膂力方強， 不知己罪， 尤爲縱恣。 今者天之示變， 豈徒然哉！ 臣等竊恐父子同處， 必圖不軌， 以貽後日之患。 願殿下將其父子， 分置別處， 以杜禍亂之萌， 以全友愛之情。 一， 朴蔓、任純禮， 本無才德， 挺身武班， 幸蒙聖恩， 致位兩府。 年前， 殿下以東北一面， 境連異土， 以付專制之任。 願當太上拜陵之時， 徵發軍兵， 以致禍亂， 而其餘黨， 皆就誅戮， 蔓與純禮， 獨以首惡， 得保首領， 實有乖於春秋討罪之義。 東北面都巡問使林整， 性本麤狂， 出身刀筆， 濫至相位。 殿下以漕轉， 國之大務， 命爲三道體察使。 誠宜謹恪， 以効其職， 而乃不體殿下委任之意， 生民休戚， 曾不

조전(漕轉)은 나라의 대무(大務)라 하여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를 삼으시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공경하고 조심하여 직사(職事)에 전력해야 할 터인데, 전하께서 위임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을 조금도 뜻에 두지 아니하여, 비록 가물고 흉년이 들어 술을 금하는 때를 당하여서도, 마음대로 술을 마시어 유흥에 빠지고, 황음한 짓을 자기 마음대로 하였으며, 전곡을 조운하는 이외에 무릇 해산물(海產物)·어곽(魚藿)·포해(脯醢)·죽목(竹木) 등 물을 모두 거두어 가지고 무겁게 실어다가 공사처(公私處)에 널리 너물을 행하여 사사 은혜[私恩]를 샀으니, 잔인하게 재물을 약탈[割剝]하여 생민에게 해독을 끼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또 금년에 조전(漕轉)할 때에 풍수(風水)의 이해(利害)와 배에 싣는 것의 경중(輕重)을 친히 감독 고찰하지 않고, 용렬하고 어리석은 간사한 무리에게 맡겨 두어, 선군(船軍) 수백여 인과 적재(積載)한 미곡(米穀) 만여 석을 모두 물에 침몰하게 하였으니, 부모 처자가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여 화기(和氣)를 감상(感傷)시킵니다. 근래에 해마다 가물어 흉년이 들고, 바닷물이 붉게 변하니, 신 등은 생각건대, 재앙을 부른 까닭이 혹 이것으로 말미암은가 합니다. 상항(上項)의 사람들을 마땅히 죄(罪)에 따라 율(律)에 의해 처치하여야 할 것인데, 만(蔓)과 순례(純禮)는 가볍게 외방에 폄출(貶出)되었고, 임정(林整)은 도리어 너그럽게 용서되어 연(連)하여 중임(重任)을 받았으니, 신 등은 말하기를, '이것이 실로 교서(敎書)에서 이른바, 기강이 서지 못하고, 형벌과 상(賞)이 문란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헌사(憲司)로 하여금 박만과 임순례 등을 밝게 전형(典刑)에 처치하게 하고, 임정은 남방(南方)으로 귀양보내어 삼도(三道) 인민(人民)의 분원(憤怨)한 마음을 쾌(快)하게 하소서.

1. 국가에서 의정부(議政府)를 두어 백관(百官)을 통솔하게 하고, 사평부(司平府)를 두어 전곡(錢穀)을 맡게 하고, 승추부(承樞府)를 두어 군정(軍政)을 총괄하게 하니, 이것은 진실로 강(綱)을 들면 목(目)이 벌려[張]져서, 체통(體

介意, 雖當旱荒禁酒之際, 縱酒耽樂, 荒淫自恣。 除漕運錢穀外, 凡其海產魚藿脯醢竹木等物, 悉收重載於公私處, 廣行苞苴, 以市私惠。 殘忍割剝, 流毒生民, 莫此爲甚。 且於今年漕轉之時, 風水利害、載船輕重, 不親監攷, 付之庸愚儉小之輩, 致使船軍數百餘人, 所載米穀萬餘石, 盡爲沒水。 父母妻孥, 痛哭號天, 感傷和氣。 近來連歲旱荒, 海水變赤。 臣等以爲致災之故, 恐或由此。 上項人等, 當以其罪, 依律區處, 而蔓與純禮, 輕受貶外, 林整反蒙寬宥, 連受重任。 臣等以謂此實敎書所謂紀綱不立, 刑賞紊焉者也。 願殿下令憲司, 將朴蔓、純禮等, 明置典刑; 其林整, 竄黜南方, 以快三道人民憤怨之心。 一, 國家設議政府, 統庶官, 司平府掌錢穀, 承樞府總軍政。 此誠綱舉目張, 體統相維之良法也。 近來承樞府軍政大體, 或有乖於設立之意。 其三軍都總制已下, 當坐本府, 預聞軍政。 今者, 掌軍總制, 每軍二員, 各於其司, 發出軍令, 非惟號令多門, 體統不立。 其餘總制不與本軍之事, 又不得坐於承樞, 名雖

	<p>統)이 서로 유지되는 좋은 법이운데, 근래에 승추부(承樞府)의 군정(軍政)의 대체(大體)가 간혹 설립한 뜻에 어그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삼군 도총제(三軍道總制) 이하가 마땅히 본부(本府)에 앉아서 군정(軍政)을 참여하여 들어야 할 것인데, 지금 장군 총제(掌軍總制)와 매군(每軍)의 두 사람이 각각 그 사(司)에서 군령(軍令)을 발하여 내니, 다만 호령이 나오는 문(門)이 많을 뿐 아니라, 체통이 서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총제(總制)는 본군(本軍)의 일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또 승추부에 앉지도 못하니, 이름은 비록 총제이나 실상은 허위(虛位)입니다. 또 갑사(甲士)인 금군(禁軍)은 궁문(宮門)을 시위(侍衛)하니 마땅히 정선(精選)하여야 할 것인데, 제수할 즈음에 혹 법과 같이 하지 못하니, 원컨대 이제부터 삼군 첨총제(三軍僉總制) 이상으로 하여금 승추부(承樞府)에 회좌(會坐)하게 하여, 그 부중(府中)의 일은 수령관(首領官)이 품(稟)을 받아서 시행하고, 각군(各軍)의 일은 상대호군(上大護軍)이 품을 받아 시행하여, 판부사(判府事)로부터 첨총제(僉總制)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여 듣지 않는 자가 없게 하고, 각군(各軍)의 진무(鎭撫)는 일체 모두 혁파하여 없애소서. 갑사(甲士)를 제수할 즈음에는 각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무예(武藝)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병조(兵曹)에 천거하게 하고, 판부사(判府事)와 각군(各軍)의 총제(總制)가 병조(兵曹)에 모여 재예(才藝)를 시험하여, 그 선발에 합격한 자를 바야흐로 제수하도록 허락하면, 군정(軍政)이 공정하여지고 체통이 엄하여질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좌사간(左司諫) 안노생(安魯生)을 불러 명(命)하기를, “청한 것이 모두 이치에 합하나, 인정(人情)으로 헤아려 보면 곧 좃을 수는 없다. 하고, 임금이 우헌납(右獻納) 정안지(鄭安止)에게 명하기를, “회안(懷安) 부자(父子)는 나누어 둘 수 없고, 만(蔓)과 순례(純禮)는 이미 모두 죄를 정하였으니, 다시 의논할 수 없으며, 임정(林整)의 파선(破船)한 일은</p>	<p>總制，實爲虛位。且甲士禁軍，侍衛宮門，所當精選，除拜之際，或不如法。願自今，令三軍僉總制已上，會坐于承樞府，其府中之事，首領官承稟施行；各軍之事，上、大護軍，承稟施行；自判府事以至僉總制，無不與聞；各軍鎭撫，一皆革去；其甲士除拜之際，令各道監司，擇其有武藝者，貢于兵曹，判府事與各軍總制，會于兵曹，試其才藝，中其選者，方許除授，則軍政公而體統嚴矣。</p> <p>上召左司諫安魯生命曰：“所請皆合於理，揆之人情，不可卽從。”</p> <p>上命右獻納鄭安止曰：“懷安父子，不可分處；蔓與純禮，已皆定罪，不可復議；林整敗船之事，非整之致然也，已出于外。是以皆不允。”司諫院復上疏曰：</p> <p>殿下以謂：“懷安父子以匹夫，在於南方，何所疑哉！”臣等以謂涓涓之水，至於滔天；熒熒之火，至於燎原。事變常起於所忽。是以古之聖王，謹之於微，辨之於早，不使滋蔓，良以此也。殿下以爲：“朴蔓、任純禮，已曾議罪，在於貶所，且赦宥之後，不可復</p>
--	--	---

	<p>정(整)의 소치가 아니며, 이미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그러므로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p> <p>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다시 상소하기를,</p> <p>“전하께서 ‘회안 부자는 필부(匹夫)로 남방(南方)에 있으니 무엇을 의심할 바가 있느냐?’ 하시었는데,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줄줄 흐르는 물이 하늘까지 뒤덮는 데에 이르고, 반짝반짝하는 불이 들판을 태우는 데에 이릅니다. 사변(事變)이란 항상 소홀히 여기는 데에서 일어나오니, 그러므로 예전의 성왕(聖王)이 은미(隱微)한 것에 삼가고, 조기(早期)에 분변하여 점점 커져서 성(盛)하게 되지 못하게 한 것은 진실로 이 까닭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만과 임순례는 이미 벌써 죄를 의논하여 폄소(貶所)에 있고, 또 사유(赦宥)한 뒤에 다시 의논할 수 없다.’고 하시었는데,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난신(亂臣)·적자(賊子)는 몸이 생존하였거나 죽었거나, 시대가 예전이거나 지금이거나, 반드시 베어야 할 죄입니다. 만과 순례 등은 전하의 명령을 받고 한 방면을 전제(全制)하는 데 있어, 그 직책을 생각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관군(官軍)을 징발하여 대란(大亂)에 이르게 하였으니, 전하의 반적(叛賊)인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군사를 잃고 군율(軍律)을 잃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죄(罪)를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병권(兵權)을 쥐고 난(亂)을 일으킨 것이겠습니까? 지당(枝黨)은 모두 극형(極刑)을 받아 죄가 처자(妻子)에게 미치었는데, 만과 순례만은 수악(首惡)으로서 몸과 목숨을 보존하고, 가산(家產)과 관작(官爵)이 예전과 같으니, 왕법(王法)에 적(賊)을 토벌하는 의리에 있어 어떠합니까?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정(林整)은 본래 명망(名望)이 있으며, 직사(職事)에 조심하고 부지런하니, 패선(敗船)한 것은 불행이요, 그의 죄가 아니라.’고 하시었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무릇 신자(臣子)가 명령을 받고 사방(四方)에 나가면, 마땅히 위의(威儀)를 삼가고, 직임(職任)에 공경하고 조심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 금령(禁令)을 두려워하지 않고 술에 빠지고, 배에 물</p>	<p>議。” 臣等以爲亂臣賊子，身無存沒，時無古今，必誅之罪也。 蔓與純禮等，受殿下之命，全制一方，不思其職，擅發官軍，以至大亂，其爲殿下之叛賊明矣。 雖喪師失律，猶不得免其罪。 況握兵權而構亂者乎！ 枝黨皆受極刑，罪及妻孥，而蔓與純禮，獨以首惡，全軀保命，家產官爵如舊，其於王法討賊之義何？ 殿下以爲：“林整素有名望，憂勤職事。 其敗船，不幸也，非其罪也。” 臣等以爲，凡臣子受命而之四方，當慎威儀，恪謹職任。 今不畏禁令，沈湎于酒，凡載船之際，除國家經費外，魚藿獐鹿竹木山海所產，莫不以載，不可勝記。 且不親監攷行，由旱路付之萬戶貪饕之輩，其輩亦效整之所爲，各將私物，附益重載，傷敗人命。 非整之罪，誰執其咎！ 其於殿下委任之意何？ 殿下何獨惜一人，不慰三道人民憤怨之心乎？ 願殿下斷之以義，處之以法。</p> <p>命下議政府，除懷安父子事外，擬議以聞。 議政府與司平府承樞府議：“朴蔓、任純禮，皆王法不赦之罪，依司諫院所申； 林整，已曾準律，更勿舉</p>
--	--	--

	<p>건을 실을 때에 국가의 경비 이외에, 어곽(魚藪)·장록(獐鹿)·죽목(竹木)과 산해(山海)에서 나는 물건을 싣지 않은 것이 없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고, 또 친히 감독하여 고찰하지 아니하고서 자기는 육로(陸路)로 오고, 만호(萬戶)와 탐욕스런 무리에게 이를 맡겼는데, 그 무리들도 또한 정(整)이 하는 것을 본받아 각각 사삿 물건을 침부하여 무겁게 실어서, 인명을 상하고 죽게 하였으니, 정(整)의 죄가 아니면 누가 그 허물을 지겠습니까? 전하께서 위임하신 뜻에 어때습니까? 전하께서 어찌하여 한 사람만 아끼고 삼도 인민의 분원(憤怨)한 마음은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의리로 결단하여 법대로 처치하소서.”</p> <p>하였다. 명하여 의정부에 내려서 회안(懷安) 부자(父子)의 일은 제외하고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의정부에서 사평부(司平府)·승주부(承樞府)와 더불어 의논하였다.</p> <p>“박만(朴蔓)과 임순례(任純禮)는 모두 왕법(王法)에 용서할 수 없는 죄이니,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뢴 바에 의하고, 임정(林整)은 이미 벌써 율(律)에 준(准)하였으니, 다시 거론하지 마소서.”</p>	<p>論。”</p>
<p>태종 6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8월 21일(병인) 4번째기사 조준이 삼방(三榜)의 문생들에게 잔치를 베풀 니 궁온 30병을 하 사하다</p>	<p>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조준(趙浚)에게 궁온(宮醞) 30병을 주었으니, 삼방(三榜)의 문생(門生) 242) 들에게 잔치를 베풀기 때문이었다.</p>	<p>賜(領議府事) [領議政府事] 趙浚宮醞三十瓶。以三榜門生設宴故也。</p>
<p>태종 6권, 3년(1403</p>	<p>내관(內官)을 보내어 고향에 돌아간 사신에게 궁온(宮醞)을 주었으니, 좌정승</p>	<p>遣內官致宮醞于還鄉使臣。從左政丞</p>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8월 28일(계유) 2번째기사 고향에 돌아간 사신에 게 궁온을 주다	하운(河崙)의 아킴을 따른 것이었다.	河崙所啓也。
태종 6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10월 8일(임자) 2번째기사 일본 사자가 잡혀 갔 던 우리 나라 사람을 데리고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국(日本國) 사자(使者) 20여 인이 잡혀 갔던 우리 나라 사람 1백 30명을 데리고 와서, 인하여 토물(土物)을 바치었다.	日本國使二十餘人，率我被虜人一百三十名來，仍獻土物。
태종 6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10월 10일(갑인) 2번째기사 일본에서 중 설암 등 이 와서 토산물을 바 치고, 시를 지어 올리 다	일본(日本) 사자(使者) 중[僧] 설암(雪菴) 등 10여 인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고, 설암이 시(詩)를 지어 올리었다.	日本使僧雪菴等十餘人，來獻土物。雪菴作詩以獻。
태종 6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10월 21일(을축) 3번째기사 설미수가 여지·종려다	설미수(楔眉壽)가 여지(荔枝) 및 종려다래[櫻籜]와 발라(孛羅)를 올리었다.	楔眉壽進荔枝及櫻籜、孛羅。

래·발라를 올리다		
태종 6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10월 26일(경오) 2번째기사 최인계가 하엽록이란 푸른 물감을 바치다	최인계(崔仁桂)가 하엽록(荷葉綠)을 바치었는데, 중국(中國)에서 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인계가 처음 만든 것이었다.	崔仁桂進荷葉綠，與中國所產無異。仁桂始造也。
태종 6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11월 4일(무인) 1번째기사 진리(陳理)에게 남녀 노비 각 1명과 쌀과 콩을 하사하다	진이(陳理)에게 노비 각각 1구(口)와 쌀, 콩을 내려 주었다.	戊寅/賜陳理奴婢各一口及米豆。
태종 6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12월 17일(경인) 1번째기사 태상전에 문안하다. 태 상왕이 술·고기를 끊 겠다고 하다	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조회하였다. 임금이 헌수(獻壽)하고자 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술과 고기는 먹지 않겠다.” 하고는, 차(茶) 한 사발[椀]을 마시고 그만두었다.	庚寅/上朝太上殿。上欲獻壽，太上王曰：“自今不飲酒食肉。”飲茶一椀而止。
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월 9일(신해) 4 번째기사 대마도 수호관 종정무	의정부(議政府)에서 대마도(對馬島) 수호관(守護官) 종정무(宗貞茂)에게 편지를 보내고, 인하여 구승저포(九升苧布) 구승마포(九升麻布) 각 3필,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2령(領), 소주(燒酒) 10병, 마늘 10두, 건시(乾柿) 10속(束), 황률(黃粟) 10두(斗)를 보내었다.	議政府致書于對馬島守護官宗貞茂，仍送九升苧麻布各三匹、虎豹皮各二領、燒酒十瓶、蒜十斗、乾柿子十束、黃粟十斗。

에게 편지와 함께 모시·배 등의 물품을 보내다		
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2월 8일(기묘) 2번째기사 의정부가 행재소에서 연향을 베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행재소(行在所)에 연향(宴享)을 베풀었다.	議政府設享于行在所。
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2월 25일(병신) 2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	금주령(禁酒令)을 내리었으니 헌부(憲府)의 청을 따른 것이다. 참판승추부사(參判承樞府事) 윤저(尹抵)가 아뢰기를, “매년 술을 금하는데, 재상(宰相)은 죄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도 역시 술을 많이 빚었는데 어떻게 감히 땅에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한두 사람의 친구와 더불어 문을 닫고 마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저 술을 팔아서 생활하는 자들이 불행하게 죄를 당하니, 그 정상이 가궁(可矜)합니다. 비옵건대 금하지 마소서.” 하였다.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	下禁酒令，從憲府之請也。參判承樞府事尹抵啓曰： 每年禁酒，宰相無受罪者，臣亦釀酒多矣，安敢棄之地乎？與一二交遊，閉門而飲，其誰知之？彼賣酒以生者，不幸獲罪，其情可矜，乞勿禁。 上然之。
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3월 1일(임인) 1번째기사 잔치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다	잔치하여 마시[宴飲]는 것을 금하였다.	壬寅朔/禁宴飲。
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의정부에 명하여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慶尙道水軍僉節制使) 노중제(盧仲濟)가 조운(漕運)하다 패선(敗船)한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처음에 중제(仲濟)가	命議政府，治慶尙道水軍僉節制使盧仲濟漕運敗船之罪。初，仲濟領漕運船

<p>2년) 3월 7일(무신) 2 번째기사 조운하다가 배를 파선 시킨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노중제의 죄를 다스리게 하다</p>	<p>조운선(漕運船)을 영솔하고 전라도(全羅道) 지경에 들어가서, 술에 취하여 천기(天氣)를 살피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각(角)을 붙여 배를 출발시켰으므로, 바람을 만나 패선(敗船)하게 하였다. 그때에 대간(臺諫)이 중제의 죄를 청하였는데, 임금(上)이 윤허하지 않았다가, 이때에 이르러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p>	<p>入全羅道境，因醉不察天氣，不與衆謀，吹角發船，致使遇風而敗。時，臺諫請仲濟罪，上不允，至是乃知其實，故有是命。</p>
<p>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3월 27일(무진) 1번째기사 사은사 이빈 등이 종계 정정 등에 관한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돌아오다</p>	<p>사은사(謝恩使) 이빈(李彬)·민무휼(閔無恤)과 하정사(賀正使) 김정경(金定卿) 등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는데,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싸가지고 왔다. 그 글을 이러하였다. “1. 종사(宗嗣)에 대한 일.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李)【휘(諱).】가 아뢰기를, ‘홍무(洪武) 35년 정월 초 8일에 배신(陪臣) 조온(趙溫)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조훈조장(祖訓條章)내에 신(臣)의 종계(宗系)가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이라 하였다.」 하니, 생각건대 신(臣)의 아버지【구휘(舊諱).】 선세(先世)는 본래 조선(朝鮮)의 유종(遺種)으로 고려(高麗)를 섬겼고, 뒤에 국인(國人)들이 추대하여 권지 국사(權知國事)를 삼았으므로 이에 갖추 아뢰어서,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명하여 국왕(國王)을 삼고 개호(改號)를 주셨으며, 신의 아버지의 이름【구휘(舊諱).】을 비로소 개명(改名)【금휘(今諱).】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인임(李仁任)의 조상이 신의 종계(宗系)와는 아주 다르오니, 아뢰어 비옵건대, 고쳐 기록하여 주시면 일국(一國)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본부 상서(本部尙書) 이지강(李至剛) 등이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였는데, ‘조선 국왕이 아뢰기를, 「이인임의 후손이 아니라.」 고 하였으니, 생각건대 그 전의 전설(傳說)이 틀린 것이다. 그의 말에 준하여 개정(改正)하라.’ 하였으므로, 그대로 흠록(欽錄)하였다. 1. 역일(曆日)과 서적(書籍)을 흠사(欽賜)하는 일. 영락(永樂) 2년의 대통력(大統曆) 1백 본(本), 《고금열녀전(古今烈女傳)》 1백 10부(部)이다.</p>	<p>戊辰/謝恩使李彬·閔無恤、賀正使金定卿等，回自京師，齎禮部咨文來。其文曰： 一，宗嗣事。朝鮮國王李諱奏：“洪武三十五年正月初八日，陪臣趙溫回自京師說稱：‘《祖訓條章》內云：「臣宗系是(李仁任) [李仁任] 之後。’」竊念臣父【舊諱。】先世，本朝鮮遺種，事高麗，後國人推戴，權知國事，具奏，欽蒙太祖高皇帝命爲國王，賜改號，臣父【舊諱。】，始改名【今諱。】。且李仁任祖，於臣宗系各別，奏乞改錄，一國幸甚。”本部尙書李至剛等，欽奉聖旨：“朝鮮國王奏：‘既不係李仁任之後。’想是比先傳說差了，準他改正。”欽錄。一，欽賜曆日書籍事。永樂二年《大統曆》一百本、《古今烈女傳》一百一十部。一，朝貢等</p>

	<p>1. 조공(朝貢) 등에 대한 일. 지난날에 일로 인하여 구류(拘留)되었던 사람을 모두 데려와서 돌려 보낸다. 흠준(欽遵)하여 운남 도사(雲南都司)에 이문(移文)해서 먼저 조서(曹庶) 등 5명을 취(取)하여 경사(京師)로 데려왔다. 명령에 의하여 상사(賞賜)한 것 외에는 자문(咨文)하여 알리는 바이다. 놓아보내는 남자(男子)는 모두 5명인데, 조서(曹庶)·곽해룡(郭海龍)·송희정(宋希靖)·오진(吳眞)·권일송(權一松)이다.”</p> <p>처음에 고황제(高皇帝)가 표사(表辭)가 잘못 되었다고 하여 제술(製述)한 사람과 글씨 쓴 사람들을 경사(京師)로 오게 하라는 명령이 있어, 정충(鄭攄)·정탁(鄭擢)·권근(權近)·김약항(金若恒)·노인도(盧仁度)와 통사(通事) 오진(吳眞)·곽해룡(郭海龍)·송희정(宋希靖) 등이 경사로 갔었는데, 황제가 권근을 순유(醇儒)라 하여 시(詩) 짓기를 명하고, 칭찬하고 아름답게 여기어 방환(放還)하였고, 정탁은 형제(兄弟)가 함께 갔으므로 명하여 돌려 보내서 어미를 봉양하게 하였다. 그 나머지는 중형(重刑)을 당하고, 혹은 먼 지방으로 장류(長流)되었는데, 연전(年前)에 성석린(成石璘)이 주청(奏請)하여 조서 등 다섯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다. 조서는 얼굴에 또한 묵형(墨刑)을 당하였고, 권일송은 종인(從人)이었다. 임금이 청화정(淸和亭)에 좌기하여 이빈(李彬)·민무홀(閔無恤)·김정경(金定卿)과 조서 등 5인을 인견(引見)하고 말로써 위로하고 음식을 먹이었다. 조서 등 4인에게 각각 쌀·콩 아울러 30석을 주고, 권일송에게 15석을 주었다. 조서의 아버지는 나이 80이고, 아내와 아들이 잘 있으며, 해룡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죽었고, 희정은 입조(入朝)할 때에 아내가 임신중이었는데, 아들을 낳아서 이미 열 살이 되었다. 삼부(三府)에서 종계(宗系)가 개정(改正)되고 구류되었던 사람들이 석방되어 돌아왔으므로 대궐에 나와서 하례(賀禮)를 드리었다.</p>	<p>事。比先爲事拘留之人，都取來放他回去。欽遵行移雲南都司，先行取到曹庶等五名到京，除欽依賞賜外，合行知會。計放回男子五名，曹庶、郭海龍、宋希靖、吳眞、權一松。</p> <p>初，高皇帝以表辭違誤有旨，製述及書寫人等來京，鄭攄、鄭擢、權近、金若恒、盧仁度及通事吳眞·海龍·希靖等赴京。帝見近，以爲醇儒，命作詩，褒嘉放還；鄭擢以兄弟俱至，命歸養其母；其餘或被重刑，或長流遐裔。因年前成石璘奏請，庶等五人得還。庶於面上，亦被墨刑。權一松，從人也。</p> <p>上御淸和亭，引見李彬、無恤、定卿及曹庶等五人，賜言慰之饋之。賜庶等四人各米豆并三十石，權一松十五石。庶父年八十，而妻與兒無恙；海龍妻適他死；希靖之入朝，妻有孕，生子已十歲。三府以宗系改正，拘留人放還，詣闕稱賀。</p>
태종 7권, 4년(1404)	이조 전서(吏曹典書) 김한로(金漢老)를 보내어 궁온(宮醞)을 싸 가지고 평양	遣吏曹典書金漢老，齎宮醞迎王可仁于

<p>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3월 27일(무진) 2번째기사 이조 전서 김한로에게 왕가인을 영접하게 하다</p>	<p>(平壤)에 가서 왕가인(王可仁)을 영접하게 하였다.</p>	<p>平壤。</p>
<p>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4월 25일(을미)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각도의 전답과 호구수를 아뢰다</p>	<p>의정부에서 각도의 전답(田畝)과 호구수(戶口數)를 올리었다. 충청도(忠淸道)는 전지(田地)가 22만 3천 90결(結), 호(戶)가 1만 9천 5백 61호, 인구가 4만 4천 4백 76명이고, 전라도(全羅道)는 전지(田地)가 17만 3천 9백 90결(結), 호(戶)가 1만 5천 7백 3호(戶), 인구가 3만 9천 1백 51명이고, 경상도(慶尙道)는 전지(田地)가 22만 4천 6백 25결, 호(戶)가 4만 8천 9백 92호, 인구가 9만 8천 9백 15명이고, 풍海道(豐海道)는 전지(田地)가 9만 9백 22결, 호(戶)가 1만 4천 1백 70호, 인구가 2만 9천 4백 41명이고, 강원도(江原道)는 전지(田地)가 5만 9천 9백 89결, 호(戶)가 1만 5천 8백 79호, 인구가 2만 9천 2백 38명이고, 동북면(東北面)은 전지(田地)가 3천 2백 71결, 호(戶)가 1만 1천 3백 11호, 인구가 2만 8천 6백 93명이고, 서북면(西北面)은 전지(田地)가 6천 6백 48결, 호(戶)가 2만 7천 7백 88호, 인구가 5만 2천 8백 72명으로, 합계가 전지가 78만 2천 5백 43결, 호(戶)가 15만 3천 4백 4호, 인구가 32만 2천 7백 86명이었다.</p>	<p>乙未/議政府上各道田畝戶口數： 忠淸道田二十二萬三千九十結，戶一萬九千五百六十一，口四萬四千四百七十六。 全羅道田一十七萬三千九百九十結，戶一萬五千七百三，口三萬九千一百五十一。 慶尙道田二十二萬四千六百二十五結，戶四萬八千九百九十二，口九萬八千九百十五。 豐海道田九萬九百二十二結，戶一萬四千一百七十，口二萬九千四百四十一。 江原道田五萬九千九百八十九結，戶一萬五千八百七十九，口二萬九千二百三十八。 東北面田三千二百七十一結，戶一萬一千三百一十一，口二萬八千六百九十三。 西北面田六千六百四十八結，戶二萬七千七百八十八，口五萬二千八百七十二。 都計田七十八萬二千五百四十三結，戶一十五萬三千四百四，口三十二萬二千七百八十六。</p>

<p>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5월 1일(신축) 1 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양친 변경 을 잘못된 지평 한용 을 탄핵하다</p>	<p>사간원(司諫院)에서 사헌 지평(司憲持平) 한용(韓雍)을 탄핵하였다. 검교 전서(檢校典書) 김귀진(金貴珍)은 본래 도관(都官)의 종[奴]이었는데, 음식을 잘 만들기 때문에 총애를 받았다. 도관(都官)에서 그 어미를 잡아다가 근각(根脚)을 캐었더니, 그 어미가 자복하기를 본래 도관의 종[婢]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귀진을 종천(從賤)시켰다. 귀진이 사헌부에 양민(良民)이라 호소하니, 사헌부에서 또 종천(從賤)으로 결절(決折)하였다. 임금이 옹(雍)을 불러서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귀진을 종천(從賤)시켰는가?” 하니, 옹이 대답하기를, “귀진의 어미가 일찍이 도관(都官)에 공사(供辭)를 바쳤기 때문에 천인(賤人)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관에서 강제로 형벌하여 공사(供辭)를 받았는가 의심하여, 옹에게 집으로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임금의 뜻을 알지 못하고 출사(出仕)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다. 임금이 듣고 대인(代言)에게 명하기를, “너희들의 말로써 사헌부 도리(都吏)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 부(府)의 관원은 마땅히 행동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하라.” 하였다. 간원(諫院)에서 이를 알고 탄핵하였다. 임금이 박석명(朴錫命)에게 일렀다. “귀진이 부왕(父王) 때부터 음식 만드는 일을 맡았었는데, 내가 정안군(靖安君)으로 있을 때에 매양 내게 몸을 빌[乞身]이었다. 그러나, 내가 즉위한 뒤에 몸을 비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내가 그 때문에 불쌍하게 여긴다.”</p>	<p>辛丑朔/司諫院劾司憲持平韓雍。 檢校典書金貴珍，本都官奴也。以善烹飪得幸。 都官執其母，究其根脚，其母服曰：“本都官婢也。” 故以貴珍從賤。 貴珍訴良于司憲府，司憲府又從賤決之。 上召雍問曰：“何故賤貴珍耶？” 雍對曰：“貴珍之母，曾納辭於都官，故賤之。” 上疑都官強刑而取其辭，命雍退于家。 司憲府不知上意，出仕如常。 上聞之，命代言曰：“以汝等之言，召司憲府都吏語曰：‘汝府官員，當詳審其行止。’” 諫院知而劾之。 上謂朴錫命曰：“貴珍自父王時，掌烹飪之事。 予之爲靖安也，每乞身於予，及予卽位，未聞其乞身也。 予以是憐之。”</p>
<p>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p>	<p>청화정(淸和亭)에 나아가서 종친(宗親)과 정승(政丞)에게 잔치를 베풀어 마음껏 즐기고 밤에 파하였으니, 태상전(太上殿)과 상왕전(上王殿)에서 주찬(酒饌)</p>	<p>御淸和亭，宴宗親及政丞，歡甚夜罷。以太上殿及上王殿送酒饌也。</p>

<p>2년) 5월 16일(병진) 2번째기사 종친과 정승들에게 청 화정에서 잔치를 베풀 다</p>	<p>을 보냈기 때문이었다.</p>	
<p>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5월 18일(무오) 3번째기사 왕가인의 처자에게 물 품을 하사하다</p>	<p>왕가인(王可仁)의 아내에게 쌀·콩 아울러 50석을 주고, 그 아들 치(致)에게 갓 [笠]·옷·신[靴]을 주었다.</p>	<p>賜王可仁妻米豆并五十石， 子致笠衣靴。</p>
<p>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5월 22일(임술) 1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p>	<p>술 마시기를 중지하고 금주령(禁酒令)을 내리었다.</p>	<p>壬戌/止酒， 仍下禁酒令。</p>
<p>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5월 27일(정묘) 1번째기사 많은 비가 내리자, 의 정부에서 임금에게 술 을 올리니 허락하다</p>	<p>큰비가 내리었다. 의정부에서 대궐에 나와 술을 드리니 허락하였다.</p>	<p>丁卯/大雨。 議政府詣闕進酒， 許之。</p>
<p>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6월 9일(무인) 1</p>	<p>예조에서 여제의(厲祭儀)를 상정(詳定)하여 아뢰었다. “경중(京中)과 외방(外方) 각관(各官)에서 매년 봄 청명일(清明日)과 가을 7월 15일, 겨울 10월 초1일에 제사(祭祀)가 없는 귀신(鬼神)을 제사하되, 그 단</p>	<p>戊寅/禮曹詳定厲祭儀以聞：“京中及外 方各官， 每歲春清明日、秋七月十五 日、冬十月初一日， 祭無祀鬼神， 其壇</p>

<p>번째기사 예조에서 여제(厲祭)의 제사의식을 상정하여 올리다</p>	<p>(壇)은 성북(城北)의 교간(郊間)에나 설치하고, 그 제물(祭物)은 경중(京中)에서는 희생(犧牲)으로서 양(羊) 세 마리와 돼지[豕] 세 마리를 쓰고, 반미(飯米)는 45두(斗)로 하며, 외방(外方)에서는 지관(知官) 이상은 경중(京中)보다 3분의 1을 감(減)하고, 현령(縣令)·감무(監務)는 지관(知官)보다 반(半)을 감(減)하되, 양(羊)은 흑 노루나 사슴으로 대용(代用)하며, 주제관(主祭官)은 경중(京中)에서는 개성 유후사 당상관(開城留後司堂上官) 이나 한성부 당상관(漢城府堂上官)으로 하고, 외방(外方)에서는 각각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소서.”</p>	<p>設於城北郊間。祭物，京中牲用羊三豕三，飯米四十五斗；外方知官以上，視京中減三分之一，縣令監務視知官減半，羊或以獐鹿代用。主祭官，京中開城留後司堂上官、漢城府堂上；外方各其官。”</p>
<p>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6월 11일(경진) 1번째기사 임금이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p>	<p>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길이 옛 태평관을 지나게 되므로, 들어가서 칙서(勅書)에 절한 뒤에 태평관에 이르렀다. 오수·이영이 잔치에 참여하였다. 임금이 환궁(還宮)한 뒤에 오수가 이영과 더불어 말하기를, “우리들이 먼저 이 나라에 이르렀으니, 잔치하고 남은 술로 뒤에 온 사신을 위로하는 것이 어떠하오.” 하니, 이영이 말하기를, “불가하오. 국왕께서 이미 큰 잔치로 위로하였는데, 우리들이 다시 잔치를 열면, 국왕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소? 또 이 술도 역시 이 나라의 술이오.” 하였다. 오수가 말하기를, “그러면 식사 때에 한 잔을 권하는 것이 어떠하오?” 하니, 이영이 말하기를, “중소.” 하였다. 식사 때에 이르러 오수와 오유선(敖惟善)이 각각 기악(伎樂)을 데리고 몹시 즐기니, 이영이 이를 싫어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서 호외(戶外)에 서 있었다. 오수가 이영을 꾸짖으니, 이영이 곧 도로 들어가서 또한 오수를 꾸짖고, 주먹으로 때려서 흩어졌다. 뒤에 이영이 의(義)를 들어 오수를</p>	<p>庚辰/上如太平館宴使臣。道經古太平館，入拜勅書，而後至館，(鄔修) [鄔修]、李榮與宴。上還宮，(鄔修) [鄔修] 與李榮曰：“吾等先至此國，以宴餘酒，慰後來使臣若何?” 榮曰：“不可。國王既以大宴慰之，我等更開宴，則國王以爲何如? 且此酒亦此國之酒也。” (鄔修) [鄔修] 曰：“然則飯時勸一杯若何?” 榮曰：“諾。”至食時，修與惟善，各率伎樂極歡，榮惡之，起出立於戶外。修叱榮，榮即還入，亦叱修，仍拳毆之，乃散。後榮舉義責修曰：“帝教臣等曰：‘朝鮮，禮義之邦，汝等敬慎其儀。’言猶在耳，汝何故如此作慝乎? 予當奏聞。”修無一言，俛首而已。</p>

	<p>책(責)하기를, “황제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선(朝鮮)은 예의(禮義)의 나라이니 너희들은 용의(容儀)를 조심하라.’ 하시었다.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간사한 짓을 하는가? 내가 마땅히 황제께 아뢰겠다.” 하니, 오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7월 20일(기미) 2번째기사 갑자기 죽은 경상도 경차관 김단에게 조문하고 부의를 내리다</p>	<p>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 김단(金端)이 옥주(沃州)에 이르러 갑자기 죽으니, 임금이 듣고 불쌍이 여겨 내수(內豎)를 보내어 그 집에 조문(弔問)하고, 쌀·콩 아울러 30석을 하사하였다. 김단의 아우 주서(注書) 김위민(金爲民)에게 명하여 역마(驛馬)를 타고 옥주(沃州)에 가서 장사하게 하였다. 김단이 청주(淸州)를 지나는데, 청주의 수령이 소주(燒酒)를 권하여서, 김단이 과음(過飲)하였던 까닭이었다.</p>	<p>慶尙道敬差官金端，至沃州暴死。上聞而哀之，遣內豎弔于其家，賜米豆并三十石、紙百卷，命端弟注書爲民乘駟至沃州葬之。端過淸州，州守勸燒酒，端過飲故也。</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8월 20일(기축) 1번째기사 인재등용과 행정원의 하부 이양 등을 건의한 사헌부의 상소문</p>	<p>1. 경기(京畿)에서 받드는 바, 사재(司宰)·선공(繕工)·사복(司僕)·유우소(乳牛所)·동서 와요(東西瓦窯) 등의 각사(各司)에 바치는 정탄(正炭)·소목(燒木)·곡초(穀草) 및 모든 수납(輸納)하는 물건을 감사와 수령이 능히 시기에 미치도록 감독해 바치지 못하고서, 농사가 한창 바쁜 때를 당하여 수납하지 못하였다고 칭(稱)하고 엄하게 급히 징수하여 바치므로, 농업을 폐하게 해서 백성들이 자퇴하여 생활하지 못합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정탄(正炭)·소목(燒木)·곡초(穀草) 및 각사에 바치는 공물은 1년 경비의 수(數)를 도합 계산하여, 반드시 추수한 이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해 바치는 것을 끝내도록 하여서, 전의 폐단을 고칠 것입니다.</p>	<p>一，京畿所仰司宰、繕工、司僕、乳牛所、東西瓦窯等各司納正炭、燒木、穀草及凡輸納之物，監司守令，未能及時督納，乃當正農之時，稱爲未收，嚴急徵納，以廢農業，民不聊生。願自今，正炭、燒木、穀草及各司納貢物，都計一年經費之數，須當秋收以後農業未興之前，督令畢納，以革前弊。</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9월 3일(신축) 1</p>	<p>상왕이 내관(內官)을 시켜서 주찬(酒饌)을 임진(臨津)에 보내어 왕세자(王世子)가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게 하였다. 삼부(三府)에서도 또한 주찬을 마련하여 천수사(天水寺)에서 맞이하였다.</p>	<p>辛丑/上王使內官送酒饌於臨津。迎世子之還也。三府亦備酒饌，迎于天水寺。</p>

<p>번제기사 상왕이 내관을 보내 종묘에 참배하고 돌아 오는 왕세자를 영접케 하다</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9월 15일(계축) 1번째기사 경상도의 조세를 쌀 대신 베로 수납하자는 사간원의 상소</p>	<p>의정부에 명하여 사간원에서 상소(上疏)한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가만히 생각건대, 국가의 용도(用途)에는 스스로 상도(常度)가 있으니, 재부(財賦)가 들어오는 것은 증손(增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멀고 가까움과 수납(輸納)의 어렵고 쉬운 것으로 그 폐단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도 한 도는 서울에서 거리가 1천 리이니, 그 수납(輸納)의 어려움은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일체의 재부(財賦)도 아울러 육상(陸上)으로 전수(轉輸)하게 하므로, 험난한 땅을 밟잡(跋涉)하게 되니, 소와 말이 넘어져 쓰러집니다.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기니, 폐단이 큰 것으로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에는 쌀과 베가 들어오는 것이 이미 정한 액수가 있으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 등이 각사(各司)에 바치는 것이라면, 그 1년의 용도에 베는 항상 많으나, 쌀은 항상 적습니다. 매양 저자에서 찾아서 무역(貿易)할 즈음을 당하면, 모두 쌀로 그 값을 지급하니, 어찌 그 처음에 베를 거두어 수납(輸納)하는 데 편리한 것의 좋은 것만 같겠습니까? 옳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윗 항목의 각사에서 1년 경비로 쓰는 쌀과 베의 숫자를 계산하여, 유청(油淸)349·촉밀(燭蜜)350의 각항에 해당하는 전답(田畝)을 제외하고, 한결같이 모두 베로 거두어서 민생을 편안하게 하고, 국용(國用)을 편리하게 하소서.” 의정부에서 의논하였다.</p>	<p>癸丑/命議政府議司諫院上疏。疏曰：竊謂國家之用，自有常度，財賦之入，未可增損，然道途之遠近，輸納之難易，其弊不可不察。慶尙一道，去京千里，其輸納之難，非他道比。況今一切財賦，竝令陸轉，跋涉艱險，牛馬僵仆，民甚苦之，弊之巨者，莫此若也。豐儲、廣興米布之入，已有定額，無復可議，若內資、內贍、禮賓等各司所納，則其一年之用，布常多而米常少，每當市索貿易之際，皆以米給其直，豈若其初收之以布，便於輸納之爲愈也？伏望殿下，令攸司計上項各司一年經費米布之數，除油淸、燭蜜各項田畝外，一皆收布，以便民生，以便國用。 議政府議：“內資、內贍、禮賓等各司所納慶尙道各官田租，收之以布轉輸，則無弊矣。然京師衆多之處，食者甚多，以米輸納，散而易布，則民蒙其</p>

	<p>“내자시(內資寺)·내접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 등의 각사에 바치는 경상도 각 고을의 전조(田租)를 베로 거두어 전수(轉輸)하게 하면,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京師]에는 많은 무리가 거처하므로 먹는 것이 심히 많으니, 쌀로 수납하게 하여 흠어서 베로 바꾸면, 민간이 그 이익을 입을 것입니다. 하물며 금년에 경기(京畿)에서는 수재(水災)를 입어서 미곡(米穀)이 매우 귀(貴)한데, 신도(新都)로 이어(移御)한다면 용도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전례(前例)에 의하여 쌀로 거두소서.”</p>	<p>利。 況今年京畿被水災， 米穀尤貴， 移御新都， 用度尤廣， 姑依前例， 納之以米。”</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9월 25일(계해) 2번째기사 재해를 입은 강원도에 조세를 감면하다</p>	<p>강원도의 금년 전조(田租)의 수량을 감(減)하였다. 관찰사가 상언(上言)하였다. “본도의 전지(田地)가 척박하여 화곡(禾穀)의 결실(結實)이 다른 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전(水田) 1결(結)에 조미(糙米) 26두(斗) 5승(升)을, 한전(旱田) 1결(結)에 보리 25두(斗)를 거두고, 창고(倉庫)·궁사(宮司)의 전조(田租)는 유밀(油蜜)과 포화(布貨)를 자원(自願)하여 수납(輸納)하게 하는 것은 고례(古例)입니다. 임오년(壬午年)부터 조세를 거두는 수량을 이에 다른 도의 예로 하여, 수전(水田) 1결(結)에 쌀 30두(斗)를 거두고, 한전(旱田) 1결(結)에 보리 30두(斗)를 거두니, 백성들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금년에 또 큰 바람과 큰물로 인하여 손상이 심히 많으니, 원하건대, 전에 있었던 과식(科式)대로 수조(收租)하게 하고, 포화(布貨)·유밀(油蜜)도 또한 자원(自願)에 따라 수납하게 하여, 생민(生民)을 위로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허(允許)하였다.</p>	<p>減江原道今年田租之數。 觀察使上言： 本道田地瘠薄， 禾穀之實， 不及他道， 故水田一結， 糙米二十六斗五升； 旱田一結， 收麥二十五斗； 倉庫宮司田租， 以油蜜布貨， 自願輸納， 古例也。 自壬午年， 收租之數， 乃以他道之例， 水田一結收米三十斗， 旱田一結收麥三十斗， 民甚苦之。 今年又因大風大水， 傷損甚多， 願以在前科式收租； 布貨油蜜， 亦以自願輸納， 以慰生民。 允之。</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9월 26일(갑자)</p>	<p>한양(漢陽)의 무악(毋嶽)에 거둥하여 도읍(都邑)을 정할 땅을 상지(相地)하니, 하운(河崙)·조준(趙浚)·남재(南在)·권근(權近)과 대간(臺諫)이 각각 1원(員)씩 호종(扈從)하였다. 권희달(權希達)에게 명하여 시위(侍衛)하게 하니, 사헌부가</p>	<p>甲子/幸漢陽毋嶽， 相定都之地。 河崙、趙浚、南在、權近， 臺諫各一員扈從， 命權希達侍衛。 司憲府劾希達于</p>

<p>1번째기사 무악에 도읍할 땅을 살피러 가다. 조준·하윤·남재·권근 등이 수행</p>	<p>노차(路次)에서 권희달을 탄핵하였는데, 대신(大臣)을 욕하여 꾸짖고도 뻔뻔스럽게 어가(御駕)를 호종한다고 하니, 권희달이 곧 계문(啓聞)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사헌부에 명하여 집에 물러가고 호종하지 말게 하였다. 어가가 통제원(通濟院) 장전(帳殿)에 머무니, 헌납(獻納) 허지(許遲)·정언(正言) 탁신(卓愼) 등이 간(諫)하여 말하였다.</p> <p>“권희달이 비록 파직되었지만 죄는 이것에 그치지 않으니, 헌부에서 탄핵한 것은 도리에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도읍을 정하는 것은 큰 일인데, 이에 권희달을 탄핵한 까닭으로, 헌사(憲司)로 하여금 호종하지 못하게 하니, 신 등은 실로 결망(缺望)하고 있습니다.”</p> <p>임금이 노하여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을 시켜 물기를,</p> <p>“권희달의 죄는 논(論)한 것이 이미 족(足)한데, 다시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p> <p>하니, 탁신이 말하기를,</p> <p>“군법에서는 한 위계가 다른 한 위계에 엄격한 것이니, 상호군(上護軍)에서 대부(隊副)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그러한 것인데, 하물며, 권희달은 영승추부사(領承樞府事)를 욕하고 꾸짖었습니다. 그 죄가 어찌 이것에 그치겠습니까?”</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너희들은 법관(法官)이니, 권희달의 죄를 논정(論定)하여 아뢰도록 하라.”</p> <p>하니, 허지(許遲)가 대답하기를,</p> <p>“마땅히 제서유위률(制書有違律)로 논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노여움이 풀려 말하였다.</p> <p>“오늘 태상전(太上殿)과 상왕전(上王殿)이 술을 보내어서 내가 취하였다.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다. 너희들도 또한 물러가서 상량(商量)하여 아뢰도록 하라.”</p>	<p>路次，以辱罵大臣，任然扈駕也。希達卽以聞，上怒，命司憲府退于家，毋扈從。駕次于通濟院帳殿，獻納許遲、正言卓愼等諫曰：“希達雖已罷職，罪不止此。憲府劾之，未爲失當。定都邑，大事也，乃以劾希達之故，不令憲司扈從，臣等實有缺望。”上怒，使知申事朴錫命問之曰：“希達之罪，論已足矣。不知更有何罪？”愼曰：“軍法一位嚴於一位，自上護軍至於隊副亦然。況希達辱罵領承樞府事，其罪豈止於此！”上曰：“汝等法官，論定希達之罪以聞。”遲對曰：“當以制書有違論。”上霽怒曰：“今日太上殿上王殿送酒，予醉矣，當更思之。汝等亦退而商量以聞。”</p>
---	--	---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3일(신미) 1번째기사 태상전과 상왕전에 보 내 노루를 바치고 육 선들기를 청하다</p>	<p>임금이 내관(內官) 노희봉(盧希鳳)을 보내어 태상전과 상왕전(上王殿)에 노루를 바치고 육선(肉膳)을 들기를 청하니, 태상왕이 이에 따르고, 노희봉에게 하교(下敎)하였다. “내가 이미 육선(肉膳)을 들었으니, 상왕(上王)으로 하여금 또한 육선(肉膳)을 들도록 하라. 국왕도 또한 육선을 드는 것이 마땅하니, 네가 왕에게 말하여 반드시 육선을 들도록 하라. 환경(還京)할 때 나를 보고자 하거든, 반드시 소대(素帶)를 없애야 할 것이다.”</p>	<p>辛未/上遣內官盧希鳳，進獐于太上殿及上王殿，請御肉膳，太上王從之。敎希鳳曰：“予已進肉膳，使上王亦進肉膳，國王亦宜肉膳。汝言於王，須進肉膳。還京時，如欲見予，則必去素帶。”</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7일(을해) 2번째기사 태상전·상왕전에서 내 관을 보내어 임금에게 육선을 권하다</p>	<p>어가(御駕)가 임진(臨津)에 머무니, 태상전(太上殿)과 상왕전(上王殿)에서 내관(內官)을 보내어 육선(肉膳)을 권하였다. 임금이 권도(權道)로 명령에 따랐으나 실상은 맞보지 아니하였다. 서울에 남아 있던 의정부에서 연향(宴享)을 베풀었다.</p>	<p>駕次臨津。太上殿上王殿，遣內官勸肉膳，上權從命，而實不嘗。留都議政府設享。</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8일(병자) 1번째기사 임금이 환궁하여 태상 전에 헌수하고 비로소 육선을 들다</p>	<p>임금이 환경(還京)하여 태상전(太上殿)에 나아가 노루 2마리를 바치고 헌수(獻壽)하였다. 임금이 비로소 육선(肉膳)을 진어(進御)하였다.</p>	<p>丙子/上還京，詣太上殿，獻獐二頭獻壽，上始御肉膳。</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10일(무인) 1번째기사</p>	<p>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에게 육선(肉膳)을 하사하였는데, 이화가 예궐하였으므로 하사한 것이다.</p>	<p>戊寅/賜肉膳于義安大君和。和詣闕，賜之。</p>

<p>의안 대군 이화에게 육선을 하사하다</p>	<p>찬성사(贊成事) 남재(南在)가 예궐(詣闕)하여 사은(謝恩)하니, 임금(上)이 남재에게 명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남재가 예궐하여 박석명을 시켜 임금에게 고하였다.</p> <p>“처음에 신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교대되어 오니, 이거이가 신의 집에 이르러 술과 음식을 공궐(供饋)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너의 동생과 교분(交分)이 심히 두터웠다. 지금 너의 동생이 죽었으니, 나는 너를 대접하기를 너의 동생과 같이 하고자 하니, 너도 또한 나를 대접하기를 너의 동생과 같이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그 말을 듣고 꿇어앉아 대답하기를 ‘영공(令公)은 나를 잊지 말라. 나도 영공을 잊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신(臣)도 또한 그 집에 한 번 갔을 뿐입니다. 만약 이거이가 신의 집에 묵고, 신이 이거이 집에 묵었다면, 이거이는 대신이고 신도 또한 재상입니다. 두 집의 반인(伴人)과 복종(僕從)이 어찌 이를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무인년에 신이 죄를 얻었을 때, 이거이가 신에게 죽음을 가(加)하고자 하였으므로, 신이 이제까지 잊지 않고 있는데, 신이 어찌 이거이와 더불어 일당이 되겠습니까? 또 신이 한경(漢京)에 있을 때 전하가 정안공(靖安公)이 되자, 신이 나아가 알현하니, 이에 서청(西廳)에 앉기를 허락하였었는데, 신이 말하기를, ‘조선의 기업(基業)이 필경은 공(公)의 수중(手中)에 돌아갈 것이니,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마땅히 힘을 다하여 보좌하겠습니다.’ 하니, 전하가 듣고 눈물을 흘렸었습니다.”</p> <p>지신사가 나가 명령을 전하기를, “경이 비록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경은 의심하지 말라.”</p> <p>하니, 남재가 배사(拜謝)하고 물러갔다.</p>	<p>贊成事南在詣闕謝恩，上命南在視事。在詣闕使錫命告曰：“初，臣爲慶尙道觀察使，見代而來，李居易至臣家，饋酒食。仍曰：‘吾與汝弟交分甚厚，今汝弟死矣。吾欲待汝如汝弟，汝亦待我如汝弟也。’臣聞其言，跪而對曰：‘令公毋忘我也，我不忘令公也。’爲是臣亦一往其家而已。若居易宿於臣家，臣宿於居易家，則居易大臣也，臣亦宰相也。二家伴人僕從，豈不知之？戊寅年臣得罪之時，居易欲加死刑於臣，臣至今未忘。臣豈與居易爲黨乎？且臣在漢京，殿下爲靖安公。臣進見，乃許坐於西廳。臣曰：‘朝鮮基業，畢竟歸于公手。當其時，我當戮力補佐矣。’殿下聞而墮淚。”知申事出而傳命曰：“卿雖不爲如此之言，予豈不知乎？卿其勿疑。”在拜謝而退。</p>
--------------------------------	--	--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27일(을미) 1번째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나가 격구하고 술자리를 마 련하다</p>	<p>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나아가 격구(擊毬)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극진히 즐거워하였으니, 태상왕이 부른 것이다.</p>	<p>乙未/上詣太上殿擊毬，置酒盡權。 太 上王召之也。</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1월 1일(기해) 1번째기사 진하사 이지가 《고금 열녀전》과, 약재 및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돌아오다</p>	<p>진하사(進賀使) 이지(李至)·조희민(趙希閔)이 황제가 하사한 《열녀전(列女 傳)》과 약재(藥材)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명나라 서울[京師]에 서 돌아왔다. 자문은 이러하였다.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니, ‘조선 국왕(朝鮮國王)이 약재(藥材)가 부족하므 로 신하를 차견(差遣)하여 와서 이곳에서 수매(收買)하니, 너희 예부에서 그 매입(買入)할 수목(數目)을 조회(照會)하여 그 장차 가져 갈 것을 급여(給與) 하고, 왕의 쓸 것도 주라. 차견하여 온 사신(使臣)이 고(告)하여 말하기를, 「먼저 《열녀전(列女傳)》의 반사(頒賜)함을 입었으나, 나누어 흠이니 두루 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다시 5백 부(部)를 주도록 하라.’ 하였으므 로, 약재(藥材)와 《열녀전(列女傳)》을 차견하여 온 사신 이지(李至) 등에게 교부(交付)합니다. 사향(麝香)이 2근(斤)이요, 주사(朱砂)가 6근(斤)이요, 침향 (沈香)이 5근(斤)이요, 소합유(蘇合油)가 10냥푼이요, 용뇌(龍腦)가 1근(斤)이 요, 백화사(百花蛇)가 30조(條)요, 《고금열녀전(古今列女傳)》이 5백 부(部) 입니다.”</p>	<p>己亥朔/進賀使李至·趙希閔， 齊帝賜 《列女傳》、藥材、禮部咨文，回自京 師。 咨文曰： 欽奉聖旨：“朝鮮國王缺少藥材， 差臣 來這裏收買。 恁禮部照他買小的數目 關，與他將去與王用。 來的使臣告說， 先蒙頒賜《列女傳》分散不周，再與五 百部。” 欽此，藥材、《列女傳》，交 付差來使臣李至等。 麝香二斤、朱砂 六斤、沈香五斤、蘇合油一十兩、龍 腦一斤、白花蛇三十條、《古今列女 傳》五百部。</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1월 1일(기해)</p>	<p>이지(李至)가 말하였다. “주왕(周王)이 사냥하다가 신기한 짐승과 아울러 그 새끼를 사로잡았습니다. 백호(白虎)의 검은 무늬였는데, 쇠사슬로 묶어 철룡(鐵籠)에 넣어 황제에게 바</p>	<p>至曰：“周王田獵，獲異獸并其雛，白 虎黑文。 繫以鐵索，納于鐵籠，獻于 帝，帝郊迎之。 百官進賀，以爲騶虞，</p>

<p>2번째기사 중국에서 신령한 동물인 백호(白虎)를 잡은 일을 이지가 아뢰다</p>	<p>쳤습니다. 황제가 교외(郊外)까지 마중하였는데, 백관이 추우(騶虞)391) 라고 하여 진하(進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날고기를 먹었습니다.”</p>	<p>然其獸食生肉。”</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1월 15일(계축) 2번째기사 참지의정부사 박신을 경사에 보내 폐백과 약재를 하사한 것을 사례하다</p>	<p>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박신(朴信)을 보내어 명나라 서울[京師]에 가서 폐백(幣帛)과 약재(藥材)를 하사(下賜)한 것을 사례(謝禮)하고 겸하여 추우(騶虞)를 축하하게 하였다.</p>	<p>遣參知議政府事朴信如京師。 謝賜幣帛、藥材，兼賀騶虞也。</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2월 5일(임신) 1번째기사 검교 정당 문학 조운홀의 줄기</p>	<p>검교 정당 문학(檢校政堂文學) 조운홀(趙云伋)이 졸(卒)하였다. 조운홀은 호(號)가 석간(石澗)이었는데, 뜻을 세우는 것이 기결(奇傑)하여 옛스럽고, 호탕(豪宕)함이 남보다 뛰어나고, 경적(經籍)의 뜻을 곧이 곧대로 행하여 시속(時俗)을 따르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기거 동작이 지극히 발랐다. 신축년에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구적(寇賊)을 피하여 남쪽으로 순행(巡行)할 때 조정의 신하들이 많이 도망하여 숨어 구차하게 삶을 구하였으나, 조운홀은 형부 원외랑(刑部員外郎)으로 호종(扈從)하였다. 사건이 평정되자, 녹공이 3등으로 되었다. 세상 이속에 아무 욕심이 없고 초연(超然)하게 세상 밖의 일에만 생각이 있었다. 홍무(洪武) 갑인년 봄에 전법 총랑(典法摠郎)으로서 관직을 버리고 물러가 상주(尙州)의 노음산(露陰山) 아래에 살면서 일부러 미치고 스스로 어두운 척 하였고,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소를 탔는데, 기우찬(騎牛讚)·석간가(石澗歌)를 지어 그 뜻을 보이었다. 정사년에 기용되어 좌사의 대부(左司議大夫)에 제배되었고, 다시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옮겼지만, 그가 좋아한 바는</p>	<p>壬申/檢校政堂趙云伋卒。 云伋號石澗。 立志奇古，跌宕瑰偉，(經) [徑] 情直行， 不肯隨時俯仰。 至正辛丑， 高麗恭愍王避寇南巡， 朝臣多竄匿苟活， 云伋以刑部員外郎從之。 事平， 錄功爲三等， 恬於勢利， 超然有世外之想。 洪武甲寅春， 以典法摠郎棄官， 退居尙州露陰山下， 佯狂自晦， 出入必騎牛， 著《騎牛讚》、《石澗歌》以見意。 丁巳， 起拜左司議大夫， 再轉判典校寺事， 非其好也。 辛酉， 退居廣州古垣江村， 與慈恩僧宗林爲方外交。 重創板橋、沙平兩院， 自稱院主， 敝衣</p>

	<p>아니었다.</p> <p>신유년에 물러가 광주(廣州) 옛 원강촌(垣江村)에 살면서 자은승(慈恩僧) 종림(宗林)과 더불어 세속을 떠나 교제하여, 판교원(板橋院)과 사평원(沙平院)의 양 사원을 중창(重創)하여 스스로 원주(院主)라고 칭하였는데, 해진 옷을 입고 짚신을 신고서 역도(役徒)와 더불어 그 노고를 같이하니, 지나가는 자가 그가 달관(達官)인지 알지 못하였다. 무진년에 기용되어 밀직 제학(密直提學)이 되었으나, 그때 조정에서 의논하여, 각도에 안렴사(按廉使)가 직질(職秩)이 낮아 직사(職事)를 능히 거행할 수가 없다고 하여, 양부(兩府)에서 위엄과 덕망이 있는 자를 골라 도관찰 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삼아 교서(敎書)와 부월(斧鉞)401) 을 주어 보냈는데, 조운홀은 서海道(西海道)의 도관찰 출척사가 되어 기강을 진작시키고, 호강(豪強)한 이를 억누르고 약한 이를 도와서,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털끝만치도 용서하지 아니하니, 부내(部內)가 다스려졌다. 소환되어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에 제배되었다.</p> <p>임신년 가을에 태상왕(太上王)이 즉위하여 강릉 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를 제수하였는데, 은혜와 사랑이 있어 부(府)의 사람들이 생사당(生祠堂)을 세우게 되었다. 계유년 가을에 병으로 사임하니, 검교 정당 문학(檢校政堂文學)에 제배되었다. 조운홀은 물러가 광주(廣州)의 별서(別墅)에 거처하였는데, 당시 검교(檢校)의 예로 녹봉을 받게 되었으나, 조운홀은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정승 조준(趙浚)이 조운홀과 더불어 교유가 있었는데, 손님을 전송하는 일로 인하여 한강(漢江)을 건넌다가 동렬(同列) 재상과 더불어 기악(妓樂)을 거느리고 주찬(酒饌)을 싸 가지고 가서 찾으니, 조운홀은 치의(緇衣)402) 에 샷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문(門)까지 나와 길게 읊(揖)하고 맞이하여 모정(茅亭)에 이르러 좌정(坐定)하였다. 조준이 풍악을 잡히고 술자리를 마련하니, 조운홀은 짐짓 귀가 먹어 듣지 못하는 척하고, 눈을 감고 정좌(正坐)하여 높은 소리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창(唱)한 것이 두 번이었는데, 옆에</p>	<p>草履，與役徒同其勞，過者不知其爲達官也。 戊辰，起爲密直提學。 時，朝議以各道按廉使秩卑，不能舉職，選兩府有威望者，爲都觀察黜陟使，授敎書鉞斧遣之。 云伾爲西海道，頓綱振紀，抑強扶弱，有犯法者，毫髮不貸，部內以治。 召拜簽書密直司事。 壬申秋，太上卽位，除江陵大都護府使，有惠愛，府人爲立生祠。 癸酉秋，以病辭，拜檢校政堂文學。 云伾退居廣州別墅，時檢校例受祿，云伾辭不受。 政丞趙浚與云伾有舊，因送客過漢江，與同列宰相，率妓樂齋酒饌，往訪之，云伾緇衣簪笠，扶杖出門長揖，迎至茅亭。 坐定，浚張樂置酒，云伾佯聾不聞，閉目危坐，高聲唱南無阿彌陀佛者再，傍若無人。 浚謝曰：“先生厭是矣。” 命止樂，啜茶而還。 其玩世自高類此。 及病，自作墓誌，儻然坐化。 其誌曰：資憲政堂文學趙云伾，豐壤縣人，高麗王太祖臣平章事趙孟三十代孫。 恭愍王代興安君李仁復門下，登科，歷仕中外，佩印五州，觀風四道。 雖大無聲跡，亦無塵陋。 年七十三，病終廣州古垣城。 無後。 以日月爲珠璣，以清</p>
--	--	---

	<p>마치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니, 조준이 사과하여 말하기를, “선생이 이를 싫어하는군요.”</p> <p>하고, 명하여 풍악을 중지시키고, 차(茶)를 마시고 돌아갔다. 그가 세속을 희롱하고 스스로 고고하기가 이와 같았다. 병이 들자, 스스로 묘지(墓誌)를 짓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앓은 채로 죽었다. 그 묘지는 이러하였다.</p> <p>“자헌 대부(資憲大夫) 정당 문학(政堂文學) 조운흘(趙云佐)은 풍양현(豐壤縣) 사람이니, 고려왕 태조(太祖)의 신하 평장사(平章事) 조맹(趙孟)의 30대 손이다. 공민왕 대에 흥안군(興安君) 이인복(李仁復)의 문하로서 등과(登科)하여 두루 중외(中外)의 벼슬을 지냈으니, 다섯 주(州)의 수령이 되고, 네 도(道)의 관찰사가 되어, 비록 크게 드러난 자취도 없었으나 또한 더러운 이름도 없었다. 나이 73세에 병으로 광주(廣州) 옛 원성(垣城)에서 종명(終命)하니, 후손이 없다. 일월(日月)로써 상여(喪輿)의 구슬을 삼고, 청풍(淸風)과 명월(明月)로써 전(奠)을 삼아, 옛 양주(楊州) 아차산(峨嵋山) 남쪽 마하야(摩訶耶)403)에 장사지낸다. 공자(孔子)는 행단(杏壇)404) 위이요, 석가(釋迦)는 사라 쌍수(沙羅雙樹)405) 아래였으니, 고금의 성현(聖賢)이 어찌 독존(獨存)하는 자가 있으리오! 아아! 인생사(人生事)가 끝났도다.”</p>	<p>風明月爲奠，而葬于古楊州峨嵋山南摩訶耶孔子杏壇上、釋迦雙樹下。古今聖賢，豈有獨存者！咄咄人生事畢。</p>
<p>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2월 7일(갑술) 1번째기사 장패라 등이 하직인사를 고하니 참의 이현 등에게 접대하도록 하다</p>	<p>장패라(張孛羅) 등이 대궐에 이르러 하직을 하니, 임금이 참의(參議) 이현(李玄)과 환관을 시켜 이를 공궤(供饋)하였다.</p>	<p>甲戌/張孛羅等至闕辭，上使參議李玄及宦官饋之。</p>
<p>태종 9권, 5년(1405)</p>	<p>명나라 사신(使臣) 천호(千戶) 고시라(高時羅) 등이 성지(聖旨)를 받들고 오도</p>	<p>朝廷使臣千戶高時羅等，奉聖旨到吾都</p>

<p>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월 3일(경자) 2 번째기사 명사신 고시라 등이 오도리 방면에 도착했다는 길주 안무사의 보고</p>	<p>리(吾都里) 지면(地面)에 이르렀다. 길주 안무사(吉州安撫使)가 보고하기를, “사신(使臣) 고시라(高時羅) 등이 성지(聖旨)를 펴서 읽으려고 하니, 오도리 만호(吾都里萬戶)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칙명(勅命)을 맞이하지 않고 말하기를, ‘범칭(汎稱)하여 오도리위(吾都里衛)라고만 하고 만호(萬戶)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칙명을 맞이하겠습니까?’ 하니, 사신들이 꾸짖기를, ‘조선(朝鮮)을 경유해 온 사신 두 사람이 오음회(吾音會)·북쪽 아이아(阿伊兒)·주을거(朱乙巨)·하대(何大) 등처(等處)에서 회도이 올랑함(會道伊兀良哈) 3위(衛)·호라호 울적함(好羅乎兀狄哈) 2위(衛)·사하음 울적함(沙河飲兀狄哈) 1위(衛) 및 건주위(建州衛) 등처 7위(衛)를 대접하였고, 또 황제께서 도사(都司)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소주(燒酒) 1백 병과 조선의 말 30필을 가지고 와서 7위(衛)와 더불어 칼[金]을 갈아 동맹(同盟)하고, 말 30필을 어허출(於虛出) 참정(參政)에게 하사하게 하였거늘, 이제 와서 너 만호(萬戶)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겠느냐?’ 하자, 맹가첩목아가 사신을 보고 예(禮)를 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내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몸을 굽히겠습니까?’ 하니, 그 어미와 관하(管下) 백성들이 모두 옳지 않다하며 말하기를, ‘만약 성지(聖旨)를 좇지 아니하면, 황제가 반드시 조선에 칙명(勅命)하여 경사(京師)로 잡아가기를 임팔라실리(林八刺失里)와 같이 할 것이니, 옳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자, 맹가첩목아가 노하여 꾸짖고, 마침내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p> <p>하였다. 천호(千戶) 등은 반인(伴人) 10여 명을 거느리고 지난 달 20일에 오음회(吾音會) 412) 에 이른 것이었다.</p>	<p>里地面。吉州按撫使報云：使臣高時羅等，欲開讀聖旨，吾都里萬戶童猛哥帖木兒不迎命曰：“汎稱吾都里衛，不錄萬戶之名，何以迎命！”使臣等詰之曰：“由朝鮮來使臣二人，於吾音會、彼北、阿伊兒、朱乙巨、何大等處，會道伊兀良哈三衛、好羅乎兀狄哈二衛、沙河飲兀狄哈一衛、建州衛等處七衛待之。又皇帝遣都司，率兵衆齎燒酒百瓶及朝鮮馬三十四匹來，與七衛磨金同盟，賜馬三十匹於於虛出參政，今爾萬戶不順可乎？”猛哥帖木兒見使臣不爲禮曰：“不錄吾名，緣何屈身！”其母及管下百姓皆不可曰：“若不從聖旨，帝必勅朝鮮，執歸于京師，如林八刺失里，無乃不可乎？”猛哥帖木兒怒叱之，遂不順。千戶等率伴人十餘，前月二十日，至吾音會。</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월 8일(을사) 3</p>	<p>죽은 세자(世子) 이방석(李芳碩)의 빈(嬪) 심씨(沈氏)에게 쌀과 콩 아울러 50 석을 하사하였다.</p>	<p>賜故世子芳碩嬪沈氏米豆并五十石。</p>

<p>번제기사 죽은 세자 이방석의 빈에게 쌀·콩 50석을 하사하다</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월 12일(기유)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금주하기 를 청하니, 연회에서의 음주만을 금하게 하다</p>	<p>사헌부에서 중외(中外)에 술을 금(禁)하도록 청하니, 공사(公私) 연음(宴飲) 만 을 금하라고 명하였다.</p>	<p>己酉/司憲府請中外禁酒, 命止禁公私 宴飲。</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2월 2일(무진) 2 번째기사 중국인 대연경 등 13 인에게 쌀 한 섬씩을 하사하다</p>	<p>중국인[唐人] 대연경(戴延卿)과 정자량(鄭自良) 등 13명에게 쌀 한 섬[石]씩 을 하사하였다.</p>	<p>賜唐人戴延卿、鄭自良等十三人各米 一石。</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2월 7일(계유) 2 번째기사 광주에 있는 이방석의 무덤을 관리하는 종에 게 쌀 등을 하사하다</p>	<p>광주(廣州)에 있는 옛 세자(世子)423) 의 무덤을 지키는 종[奴]에게 쌀과 콩 아울러 10섬을 내려 주었다.</p>	<p>賜廣州故世子守塚奴米豆并十石。</p>
<p>태종 9권, 5년(1405</p>	<p>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 김을귀(金乙貴)가 졸(卒)하니, 3일 동안 조회(朝會)를</p>	<p>判恭安府事金乙貴卒。 停朝三日, 賜</p>

<p>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2월 12일(무인) 2번째기사 판공안부사 김을귀의 졸기</p>	<p>정지하고,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50석과 종이 1백 권을 내려 주었다.</p>	<p>賻米豆并五十石、紙一百卷。</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2월 12일(무인) 3번째기사 모친상을 당한 예조 좌랑 최항의 집에 부 의를 내려주다</p>	<p>예조 좌랑(禮曹佐郎) 최항(崔沆)의 집에 부의(賻儀)를 내려 주었다. 항(沆)이 절일사 서장관(節日使書狀官)으로 명나라 조정에 들어 갔는데, 그 어머니가 죽었으므로, 쌀·콩 아울러 20석과 종이 50권을 내려 주었다.</p>	<p>賜賻禮曹佐郎崔沆家。沆以節日使書狀入朝，而其母死，賜米豆并二十石、紙五十卷。</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2월 19일(을유) 2번째기사 이궁의 경연청에서 연 회를 베풀고, 독역관을 위로하다</p>	<p>이궁(離宮)의 경연청(經筵廳)에 술자리를 베풀고 종친(宗親)을 불러 격구(擊毬)하고 겸하여 독역관(督役官)을 위로하였다.</p>	<p>置酒離宮經筵廳，召宗親擊毬，兼慰督役官也。</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2월 25일(신묘) 1번째기사 어가(御駕)가 송도로 돌아 가다 적성에 머물자, 의 정부에서 민무구를 보</p>	<p>어가(御駕)가 송도(松都)로 돌아오다가 저녁에 적성(積城)에서 머물렀다. 의정부에서 참찬(參贊) 민무구(閔無咎)를 보내어 문안(問安)하게 하고, 술과 과일을 올렸다.</p>	<p>辛卯/駕還松都，夕次積城。議政府遣參贊閔無咎問安，進酒菓。</p>

<p>내 문안하다</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2월 28일(갑오) 1번째기사 송도에 돌아오다. 도중 산대암에서 환영연을 즐기다</p>	<p>신도(新都)에서 〈송도(松都)에〉 이르렀다. 이날에 사냥을 구경하고 산대암(山臺巖)에 이르니, 세자(世子)와 좌정승(左政丞) 하운 및 육조 판서들이 술과 과일을 올리고, 태상전(太上殿)과 정비(靜妃)가 또한 사람을 보내어 술과 과일을 올렸으므로, 임금이 풍악을 잡히고 매우 즐거웠다. 태상전에 나아가서 뵈고 드디어 환궁(還宮)하였다.</p>	<p>甲午/至自新都。 是日觀獵至山臺巖, 世子與左政丞河崙及六曹判書進酒菓, 太上殿及靜妃亦遣人進酒菓。 上舉樂歡甚, 進謁太上殿, 遂還宮。</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3월 1일(병신) 2번째기사 예조에서 육조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상정하여 아뢰다</p>	<p>예조(禮曹)에서 육조(六曹)의 직무 분담(職務分擔)과 소속(所屬)을 상정(詳定)하여 계문(啓聞)하였다.</p> <p>“이조(吏曹)는 문선(文選)·훈봉(勳封)·고과(考課)의 정사(政事)를 맡아 덕행(德行)·재용(才用)·노효(勞效) 등으로써 그 우열(優劣)을 비교하여 그 유임(留任)과 방출(放黜)을 정하고, 주의(注擬)431 등의 일을 하는데,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문선사(文選司), 둘째는 고훈사(考勳司), 세째는 고공사(考功司)이다. 문선사는 문관(文官)의 계품(階品)·고신(告身)·녹사(祿賜)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 고훈사는 종친(宗親)·관리(官吏)의 훈봉(勳封)과 내·외명부(內外命婦)의 고신(告身) 및 봉증(封贈)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 고공사는 내외(內外) 문무관(文武官)의 공과(功過)와 선악(善惡)의 고과(考課) 및 명시(名諡)와 비갈(碑碣)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p> <p>병조(兵曹)는 무선(武選)·부위(府衛)·조견(調遣)·직방(職方)·병갑(兵甲)·출정(出征)·고첩(告捷)·강무(講武) 등의 일을 맡는데,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무선사(武選司), 둘째는 승여사(乘輿司), 세째는 무비사(武備司)이다. 무선사는 무관(武官)의 계품(階品)·고신(告身)·무거(武擧)·부위(府衛)·군용(軍戎)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 승여사는 노부(鹵簿)·</p>	<p>禮曹詳定六曹分職及所屬以聞: 吏曹掌文選、勳封、考課之政, 以德行才用勞效, 較其優劣而定其留放, 爲之注擬等事。 其屬有三, 一曰文選司, 二曰考勳司, 三曰考功司。 文選司, 掌文官階品告身祿賜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考勳司, 掌宗親官吏勳封內外命婦告身及封贈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考功司, 掌內外文武官功過善惡考課及名諡碑碣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兵曹掌武選、府衛、調遣、職方、兵甲、出征、告捷、講武等事。 其屬有三, 一曰武選司, 二曰乘輿司, 三曰武備司。 武選司, 掌武官階品、告身、武擧、府衛、軍戎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乘輿司, 掌鹵簿、輿輦、帷幄、廐牧、程驛之</p>

	<p>여연(輿輦)·유악(帷幄)·구목(廐牧)·정역(程驛)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 무비사는 중외(中外) 갑병(甲兵)의 수목(數目)과 무예(武藝)의 훈련(訓練), 지도(地圖)의 고열(考閱), 진용(鎭戎)·성보(城堡)와 변경 요해(邊境要害)의 주지(周知), 봉화(烽火)·출정(出征)·고첩(告捷)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p> <p>호조(戶曹)는 호구(戶口)·전토(田土)·전곡(錢穀)·식화(食貨) 등의 정사(政事)와 공부 차등(貢賦差等)의 일을 맡는데,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판적사(版籍司), 둘째는 회계사(會計司), 세째는 급전사(給田司)이다. 판적사는 호구(戶口)·전토(田土)·부역(賦役)·공헌(貢獻)과 농상(農桑)의 권과(勸課), 흉풍(凶豊)·수한(水旱)의 고험(考驗)과 의창(義倉)·진제(賑濟)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 회계사는 조부(租賦)·세계(歲計)·권형(權衡)·도량(度量)과 경외(京外)의 저축[儲備]·지출[支調]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 급전사(給田司)는 영업전(永業田)·구분전(口分田)·원택(園宅)·문무 직전(文武職田)과 여러 공해전(公廩田)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p> <p>형조(刑曹)는 율령(律令)·형법(刑法)·도예(徒隸)·안핵(案覈)·언금(讞禁)·심복(審覆)·서설(敍雪) 등의 일을 맡고,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고율사(考律司), 둘째는 장금사(掌禁司), 세째는 도관사(都官司)이다. 고율사(考律司)는 율령(律令)의 안핵(案覈)과 형옥(刑獄)을 판결하는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 장금사는 문관(門關)·진량(津梁)·도로(道路)·금령(禁令)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 도관사(都官司)는 공사 노예(公私奴隸)의 부적(簿籍)과 부수(俘囚)432)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p> <p>예조(禮曹)는 예악(禮樂)·제사(祭祀)·연향(燕享)·공거(貢擧)·복축(卜祝) 등의 일을 맡고,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계제사(稽制司), 둘째는 전향사(典享</p>	<p>事, 正郎一人、佐郎一人。 武備司, 掌中外甲兵數目、訓練武藝、考閱地圖、周知鎭戎城堡·邊境要害、烽火、出征、告捷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戶曹掌戶口·土田·錢穀·食貨之政、貢賦之差等事。 其屬有三, 一曰版籍司, 二曰會計司, 三曰給田司。 版籍司, 掌戶口、土田、賦役、貢獻、勸課、農桑、考驗豊凶水旱及義倉賑濟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會計司, 掌租賦、歲計、權衡度量、京外儲備支調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給田司, 掌永業·口分·園宅·文武職田、諸(公解田)〔公廩田〕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刑曹掌律令、刑法、徒隸、案覈、讞禁、審覆、敍雪等事。 其屬有三, 一曰考律司, 二曰掌禁司, 三曰都官司。 考律司, 掌律令案覈、刑獄平決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掌禁司, 掌門關、津梁、道路禁令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都官司, 掌公私奴隸簿籍及俘囚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禮曹掌禮樂、祀祭、燕享、貢擧、卜祝等事。 其屬有三, 一曰稽制司, 二曰典</p>
--	---	---

	<p>司), 세째는 전객사(典客司)이다. 제제사는 의식(儀式)·제도(制度)·조회(朝會)·경연(經筵)·사관(史館)·학교(學校)·공거(貢擧)·도서(圖書)·상서(祥瑞)·패인(牌印)·표소(表疏)·책명(冊命)·천문(天文)·누각(漏刻)·국기(國忌)·묘휘(廟諱)·상장(喪葬)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 전향사는 연향(燕享)·사기(祀忌)·생두(牲豆)·음선(飲饌)·의약(醫藥)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 전객사는 사신 영접·외방 조공(外方朝貢)과 연설(燕設)·사여(賜與)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p> <p>공조는 산택(山澤)·공장(工匠)·토목(土木)·영선(營繕)·둔전(屯田)·염장(鹽場)·도야(陶冶) 등의 일을 맡고,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영조사(營造司), 둘째는 공치사(攻治司), 세째는 산택사(山澤司)이다. 영조사는 궁실(宮室)·성지(城池)·공해(公廩)·옥우(屋宇)·토목(土木)·공역(工役)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 공치사는 백공(百工)의 제작(制作)·선야(繕治)·도주(陶鑄)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 산택사는 산택(山澤)·진량(津梁)·원유(苑囿)와 초목(草木)의 종식(種植), 시탄(柴炭)·목석(木石)의 취벌(取伐), 가항(街巷)·제언(堤堰)·선즁(船楫)·조운(漕運)·표애(礮礮)·둔전(屯田)·어염(魚鹽)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郎)이 한 사람, 좌랑(佐郎)이 한 사람이다.</p> <p>이조(吏曹)에 속한 것은 승녕부(承寧府)·공안부(恭安府)·종부시(宗簿寺)·인녕부(仁寧府)·상서사(尙瑞司)·사선서(司膳署)·내시부(內侍府)·공신 도감(功臣都監)·내시원(內侍院)·다방(茶房)·사옹방(司饗房) 등이고, 병조(兵曹)에 속한 것은 중군(中軍)·좌군(左軍)·우군(右軍)·십사(十司)·훈련관(訓練觀)·사복시(司僕寺)·군기감(軍器監)·의용 순금사(義勇巡禁司)·충순 호위사(忠順扈衛司)·별시위(別侍衛)·응양위(鷹揚衛)·인가방(引駕房)·각전(各殿)의 행수(行首)·견룡(牽龍) 등이고, 호조(戶曹)에 속한 것은 전농시(典農寺)·내자시(內資寺)·내삼시(內贍寺)·군자감</p>	<p>享司, 三曰典客司。 稽制司, 掌儀式、制度、朝會、經筵、史館、學校、貢擧、圖書、祥瑞、牌印、表疏、冊命、天文、漏刻、國忌、廟諱、喪葬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典享司, 掌燕享、祀忌、牲豆、飲饌、醫藥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典客司, 掌使臣迎接、外方朝貢、燕設、賜與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工曹掌山澤、工匠、土木、營繕、屯田、鹽場、陶冶等事。 其屬有三, 一曰營造司, 二曰攻治司, 三曰山澤司。 營造司, 掌宮室、城池、公廩、屋宇、土木、工役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攻治司, 掌百工制作、(繕治) [繕治]、陶鑄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山澤司, 掌山澤、津梁、苑囿、種植草木、取伐柴炭·木石、街巷、堤堰、船楫、漕運、礮礮、屯田、魚鹽之事, 正郎一人、佐郎一人。 吏曹所屬, 承寧府、恭安府、宗簿寺、仁寧府、尙瑞司、司膳署、內侍府、功臣都監、內侍院、茶房、司饗房。 兵曹所屬, 中軍、左軍、右軍、十司、訓練觀、司僕寺、軍器監、義勇巡禁</p>
--	---	--

	<p>(軍資監)·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공정고(供正庫)·제용고(濟用庫)·경시서(京市署)·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양현고(養賢庫)·각도 창고(各道倉庫)·동부(東部)·남부(南部)·서부(西部)·북부(北部)·중부(中部) 등이고, 형조(刑曹)에 속한 것은 분도관(分都官)·전옥서(典獄署)·율학(律學)·각도 형옥(各道刑獄) 등이고, 예조(禮曹)에 속한 것은 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館)·경연(經筵)·서연(書筵)·성균관(成均館)·통례문(通禮門)·봉상시(奉常寺)·예빈시(禮賓寺)·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서운관(書雲觀)·교서관(校書館)·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종묘서(宗廟署)·사온서(司醞署)·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아악서(雅樂署)·전악서(典樂署)·사련소(司饗所)·선관서(膳官署)·도류방(道流房)·복흥고(福興庫)와 동·서 대비원(東西大悲院)·빙고(氷庫)·종약색(種藥色)·대청관(大清觀)·소격전(昭格殿)·도화원(圖畫院)·가각고(架閣庫)·전구서(典廐署)·사직단(社稷壇)·관습도감(慣習都監)·승록사(僧錄司)·각도 학교(各道學校)·의학(醫學) 등이고, 공조(工曹)에 속한 것은 선공감(繕工監)·사재감(司宰監)·공조서(供造署)·도염서(都染署)·침장고(沈藏庫)·별안색(別鞍色)·상의원(尙衣院)·상림원(上林園)과 동·서요(東西窯)·각도(各道)의 염장(鹽場)·둔전(屯田) 등입니다.”</p>	<p>司、忠順扈衛司、別侍衛、鷹揚衛、引駕房、各殿行首·牽龍。戶曹所屬, 典農寺、內資寺、內贍寺、軍資監、豊儲倉、廣興倉、供正庫、濟用庫、京市署、義盈庫、長興庫、養賢庫、各道倉庫、東部、南部、西部、北部、中部。刑曹所屬, 分都官、典獄署、律學、各道刑獄。禮曹所屬, 藝文館、春秋館、經筵、書筵、成均館、通禮門、奉常寺、禮賓寺、典醫監、司譯院、書雲觀、校書館、文書應奉司、宗廟署、司醞署、濟生院、惠民局、雅樂署、典樂署、司饗所、膳官署、道流房、福興庫、東·西大悲院、氷庫、種藥色、太清觀、昭格殿、圖畫院、架閣庫、典廐署、社稷壇、慣習都監、僧錄司、各道學校·醫學。工曹所屬, 繕工監、司宰監、供造署、都染署、沈藏庫、別鞍色、尙衣院、上林園、東西窯、各道鹽場屯田。</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3월 12일(정미)</p>	<p>오도리 만호(吾都里萬戶) 최야오내(崔也吾乃)에게 주육(酒肉)과 쌀 1석, 옷 한 벌[稱], 그리고 신[靴]·갓[笠]을 내려 주었다.</p>	<p>賜吾都里萬戶崔也吾乃酒肉及米一石、衣一稱、靴笠。</p>

<p>4번째기사 오도리 만호 최야오내 에게 쌀 등의 물품을 하사하다</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3월 15일(경술) 2번째기사 주윤단에게 쌀과 콩 15석을 하사하다</p>	<p>주윤단(朱允端)에게 쌀과 콩 15석을 내려 주었다.</p>	<p>賜朱允端米豆十五石。</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3월 26일(신유) 1번째기사 경기·풍해도에 흉년이 들어 금주령을 내리다</p>	<p>금주령(禁酒令)을 내리었다. 여러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경기(京畿)와 풍해도(豊海道)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p>	<p>辛酉/下禁酒令。以累月不雨，京畿、豊海道飢也。</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3월 28일(계해) 3번째기사 전 호군 동소을오에게 저포 등의 물품을 하 사하다</p>	<p>전 호군(護軍) 동소을오(童所乙吾)에게 저포(苧布) 세 필, 면포(綿布) 한 필, 주포(紬布) 한 필, 쌀 5석(石), 장(醬) 한 독을 내려 주었다.</p>	<p>賜前護軍童所乙吾苧布三匹、綿布一匹、紬布一匹、米五石、醬一甕。</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p>	<p>정승(鄭昇) 등이 각각 그 고향으로 돌아갔다. 승(昇)은 개령(開寧) 사람이고, 김보(金甫)는 밀양 사람이며, 김각(金角)은 옥과(玉果)사람인데, 계미·갑신 양</p>	<p>丙子/鄭昇等各歸其鄉。昇，開寧人，</p>

<p>3년) 4월 11일(병자) 1번째기사 환관 정승 등의 본가에 쌀·콩을 하사하고 복호(復戶)하다</p>	<p>년(兩年)에 황제가 내사(內史) 한첩목아(韓帖木兒)를 보내어 소환(小宦)을 뽑아 데려오게 하여, 승(昇) 등이 뽑히었다. 공조 참의(工曹參議) 우홍부(禹洪富)를 승(昇)과 보(甫)의 반행(伴行)으로 삼고, 호조 참의(戶曹參議) 한 답(韓答)을 각(角)의 반행(伴行)으로 삼았다. 승(昇)의 본가(本家)에 쌀과 콩 아울러 50곡(斛)을, 보(甫)에게는 20곡을, 각(角)에게는 40곡을 내려 주고, 모두 복호(復戶)470) 하였다.</p>	<p>甫密陽人，角玉果人。 癸未甲申兩年，帝遣內史韓帖木兒，索小宦以歸，昇等與焉。 以工曹參議禹洪富爲昇、甫伴行；戶曹參議韓答爲角伴行。 賜昇本家米豆并五十斛，甫二十斛，角四十斛，皆復其戶。</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4월 12일(정축) 3번째기사 조서와 송희정에게 쌀·콩을 하사하다</p>	<p>조서(曹庶)와 송희정(宋希靖)에게 각각 쌀·콩 20곡(斛)을 내려 주었다.</p>	<p>賜曹庶、宋希靖各米豆二十斛。</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4월 14일(기묘) 2번째기사 종친·공신들에게 청화정에서 주연을 베풀다</p>	<p>종친(宗親)과 공신(功臣)을 청화정(淸和亭)에 모아 놓고 술자리를 베풀었다.</p>	<p>會宗親功臣于淸和亭，置酒。</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4월 18일(계미) 5번째기사 풍해도에 흉년이 들자 그곳에 살고 있던 전 재상 조희고에게 쌀·</p>	<p>전 재상 조희고(趙希古)에게 쌀·콩 40석을 내려 주었다. 희고(希古)는 일찍이 태상왕을 모시었는데, 몸이 늙어서 풍해도(豐海道)에 물러가 살고 있었다. 이 도(道)에 흉년이 들어서 태상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p>	<p>賜前宰相趙希古米豆四十石。 希古曾侍太上王，以老退居于豐海道。 此道飢，有太上之旨故也。</p>

콩을 하사하다		
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4월 22일(정해) 1번째기사 부친상을 당한 상호군 신상의 집에 부의를 내리다	상호군(上護軍) 신상(申商)에게 부의(賻儀)를 내려 주었으니, 상(商)이 부상(父喪)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쌀·콩 아울러 20석(石)과 종이 50권(卷)이다.	丁亥/賜賻上護軍申商。 商喪父也。 米豆并二十石、紙五十卷。
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4월 23일(무자) 2번째기사 우부대언 이담의 졸기. 이제현의 증손 미친개 에 물려 죽다	우부대언(右副代言) 이담(李擔)이 그의 집 미친개에게 물리어 죽었다. 부의(賻儀)로 종이 1백권, 쌀·콩 아울러 30석, 그리고 관곽(棺槨)을 내려 주고, 사람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담(擔)은 고려(高麗) 문하 시중(門下侍中) 제현(齊賢)의 증손(曾孫)이다. 계유년 을과(乙科)에 세째로 과거에 올라, 글씨를 잘 쓰는 까닭으로 항상 상서사(尙書司) 벼슬을 맡고, 좋은 요직(要職)을 갖추 지내었다. 아들이 하나이니 이안경(李安敬)이다.	右副代言李擔，爲其家獠狗所傷而卒。 賜賻紙一百卷、米豆并三十石及棺槨， 遣人致祭。 擔，高麗門下侍中齊賢之 曾孫。 登癸酉乙科第三人，以善書， 常任尙瑞司官，備歷華要。 一子安 敬。
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4월 29일(갑오) 1번째기사 술 마시는 것을 중지 하다	술의 진어(進御)를 그치고, 상왕(上王)도 또한 그쳤다.	甲午/止酒。 上王亦止酒。
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5월 1일(을미) 1 번째기사 가뭄을 걱정하여 음식	어선(御膳)을 감(減)하였으니, 오랫동안 가뭄을 근심한 때문이다.	乙未朔/減膳，憂久旱也。

가지수를 줄이다	<p>이내(李來) 등이 사직(辭職)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내(來) 등을 불러 직사(職事)에 나아가게 하니, 내(來)가 굳이 사양하기를,</p> <p>“신 등이 전에 이백온(李伯溫)의 일로 견책(譴責)을 당하였으나, 오늘의 일은 백온의 일 때문이 아니옵니다. 큰 가뭄이 이와 같사운데, 신 등이 언관(言官)의 직책에 있으면서 가뭄을 구제할 방도를 알지 못하오니,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서 말에 능한 이가 있을 것이므로 사직하는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간절히 직사(職事)에 나아가게 하니, 내(來) 등이 절하여 사례하고 말하기를,</p> <p>“인사(人事)가 아래에서 감촉(感觸)되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應)하옵거늘, 이제 성상(聖上)께서 가뭄을 구(救)하는 까닭으로서 공구수성(恐懼修省)482) 하여 어선(御膳)을 줄이고 술[酒]을 그치시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하오나, 정전(正殿)에 납시어 정사(政事)를 듣지 아니하시므로 만기(萬機)를 처결하지 못하고 착한 말을 올리지 못하오니, 이것이 어찌 하늘에 기도하는 도리옵니까? 청컨대, 날마다 정전(正殿)에 납시어 대신(大臣)들과 더불어 일을 의논하옵소서. 또 형벌(刑罰)이 적당한 연후에야 천심(天心)에 합할 것이운데, 이제 사죄(死罪)를 모두 용서하니 간악(奸惡)함이 어찌 그치오리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가볍게 사유(赦宥)하지 마소서. 서북면(西北面) 안주(安州) 이남(以南)에서부터 풍해도(豊海道)까지가 기근(饑饉)이 더욱 심하여 죽는 자가 매우 많사오나, 수령(守令)들이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오니, 마땅히 조사(朝士)로 어진이를 보내어 구제하게 하옵고, 서북면의 창고에 곡식이 찻사오니 풍해도로 옮겨서 구제함이 가합니다. 만약 비상시에 쓸 비축(備蓄)이라 한다면, 백성들이 모두 굶어죽으면 먹을 것이 족한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辛亥/李來等辭職，不許。 召來等令就職，來固辭曰：“臣等前以伯溫之事得譴責，今日之事，非以伯溫之事。 大旱如此，臣等責在言官，不能知救旱之術。 必有他人能言者，故辭職耳。”</p> <p>上勉令就職，來等拜謝，乃言曰：“人事感於下，天變應於上。 今上以救旱之故，恐懼修省，減膳止酒，誠美意也。 然不御正殿聽政，萬機未決，善言不進，豈祈天之道乎？ 請日御正殿，與大臣論事，且刑罰得其當，然後可以合天心。 今死罪皆宥，奸惡何由而止！ 願自今毋輕赦宥。 西北面安州以南，至豐海道饑饉尤甚，死者甚多，守令不以實聞。 宜遣朝士之良者以救之。 西北面倉廩實，亦可移粟於豐海。 若曰以備不虞之用，則民皆飢死，食雖足，何益哉！” 上曰：“予之不聽政，非怠也，心不寧也； 予之輕宥，非欲以此祈雨，閔雨之至，無所不至耳。 民之飢死，已遣人察之，待其還而圖之。”</p> <p>來等曰：“雖不寧，請力疾聽政。 且往者不可追，後勿輕宥。” 上曰：“後當且已。”</p>
----------	---	---

	<p>“내가 정사를 듣지 아니하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치 못한 때문이며, 내가 가볍게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이로써 비[雨]를 비는 것이 아니라, 몹시 비를 바라는 지극한 마음에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행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은 이미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으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도모하겠다.</p> <p>하였다. 내(來) 등이 말하기를, “비록 편치 못하실지라도 이를 참고 정사를 들으시고, 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사오나, 이후로는 가볍게 죄인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후로는 마땅히 그만두겠다.”</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5월 24일(무오) 2번째기사 풍해도의 가뭄으로 보 리 세를 면제하고 충 청도의 메밀 씨를 운 반시키다</p>	<p>풍해도(豊海道)의 맥세(麥稅)를 면제하고, 충청도의 메밀씨[蕎麥鍾] 3천 석을 풍해도로 조운(漕運)하게 하였다. 풍해도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실농(失農)하였기 때문에 종자를 주어서 경작(耕作)케 하기 위함이었다.</p>	<p>免豊海道麥稅。漕運忠淸道蕎麥種三千石於豊海道。豊海之民，因旱失農，故給種以耕也。</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5월 24일(무오) 3번째기사 비가 오자 의정부에서 약주를 올리다</p>	<p>의정부에서 예궐(詣闕)하여 약주(藥酒)를 올리니,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청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러서 좃았다. 처음에 임금이 가뭄이 심함을 근심하여 어선(御膳)을 줄이고 풍악을 폐하며, 혹 낮에 한끼만 들기도 하여 20여 일이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가 흠족히 내렸기 때문에, 하운(河崙)과 조영무(趙英茂) 등이 술을 올린 것이다.</p>	<p>議政府詣闕進藥酒，上不許，請至再至三，從之。初，上憂旱甚，減膳輟樂，或日中一食，將二十餘日，至是雨足，故河崙、英茂等進酒。</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6월 3일(정묘) 1 번째기사 일본 지좌전이 중 도 군 등을 보내 약재 등 의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日本) 지좌전(志佐殿)이 중[僧] 도군(道君) 등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 다. 바친 물건은 말 두필과 대도(大刀)·약재(藥材)·기용(器用) 등이었다.</p>	<p>丁卯/日本志佐殿遣僧道君等, 來獻土 物。 所獻馬二匹、大刀藥材器用也。</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6월 23일(정해) 1번째기사 판종부시사 김관도 등 이 환관 정승과 김각 의 고향에 가서 위문 하다</p>	<p>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김관도(金觀道)·감정(監正) 김상려(金尙旅)를 보내어 선은(宣醞)을 가지고 정승(鄭昇)과 김각(金角)의 고향에 가서 그들을 위문하게 하였다.</p>	<p>丁亥/遣判宗簿寺事金觀道、監正金尙 旅, 齋宣醞慰鄭昇、金角于其鄉。</p>
<p>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6월 26일(경인) 1번째기사 이거이 부자를 진휼하 기 위해 쌀·콩 50석을 하사하다</p>	<p>이거이(李居易)와 이저(李佇)에게 쌀·콩 아울러 50석을 내려 주었으니, 그의 곤궁함을 진휼(賑恤)한 것이었다.</p>	<p>庚寅/賜李居易、李佇米豆并五十石。 賑其窮也。</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7월 14일(정미)</p>	<p>종친(宗親)과 더불어 내루(內樓)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다.</p>	<p>與宗親設酌于內樓。</p>

<p>2번째기사 중친과 더불어 대궐안 누각에서 술자리를 베풀다</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7월 25일(무오) 3번째기사 중군 도총제 최이의 모친상에 부의를 내려 주다</p>	<p>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 최이(崔迺)의 모상(母喪)에 쌀·콩 30석과 종이 1백 권(卷)을 부의(賻儀)로 내려 주었다.</p>	<p>賜賻中軍都摠制崔迺母喪米豆三十石、紙百卷。</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7월 28일(신유) 1번째기사 성균관에 술을 내려주 다</p>	<p>성균관(成均館)에 술을 내려 주었다.</p>	<p>辛酉/賜酒于成均館。</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7월 28일(신유) 2번째기사 전 개성 유후사 유후 이원평의 졸기</p>	<p>전 개성 유후사 유후(開城留後司留後) 이원평(李元紘)이 죽었으니, 원평은 인주(仁州) 사람이다. 부음(訃音)이 들리매,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부의(賻儀)로 종이 1백 권(卷)과 쌀·콩 30석을 주었다.</p>	<p>前開城留後司留後李元紘卒。元紘，仁州人。訃聞，停朝三日，致賻紙百卷、米豆三十石。</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8월 4일(정묘) 1</p>	<p>금주령(禁酒令)을 거듭하였다. 의정부에 명하기를, “형조(刑曹)에서 아뢰는 것을 보니, 금주령은 서인(庶人)에게만 행하고 귀인(貴人)·근신(近臣)에게는 행하지 않아서, 간혹 원망을 부르는 일이 있다 하니, 이</p>	<p>丁卯/申禁酒令。命議政府曰：“觀刑曹所啓，禁酒之令，止行於庶人，不行於貴近，或有致怨。自今除禁酒之令，</p>

<p>번째기사 금주령을 계속 시행키 로 하다</p>	<p>제부터 금주령을 없애고 다만 공사(公私)의 연음(宴飲)만을 금하는 것이 어떠 한가? 의논하여 들리라.”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금주령은 마땅히 예전대로 하여야 합니다.”</p>	<p>止禁公私宴飲如何? 擬議以聞。” 議 政府啓: “禁酒之令, 宜仍舊。”</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8월 14일(정축) 2번째기사 금주령에 실효가 없다 하여, 술잔치 만을 금 하다</p>	<p>금주령(禁酒令)을 완화하였다. 사헌부(司憲府) 장무(掌務)를 불러 명하였다. “부(府)에서 상신(上申)한 바, 술을 마시어 영(令)을 범한 자는 모두 미천(微 賤)한 사람이다. 조사(朝士)는 과연 모두 술을 마시지 않는가? 이제부터는 여 러 사람들이 모여서 연음(宴飲)하는 것이 아니거든 금하지 말라.”</p>	<p>弛禁酒令。 召司憲府掌務命曰: “府所 申飲酒犯令者, 皆微賤之人。 朝士果 皆不飲乎? 自今非群聚宴飲, 勿禁。”</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8월 19일(임오) 3번째기사 세자 사 성석린(成石麟)이 세 자에게 진강하면서 군 왕의 학문에 대해 논 하다</p>	<p>세자(世子)가 술자리를 베풀었다. 스승[師] 성석린(成石麟)이 진강(進講)하고 세자에게 고하기를, “군왕(君王)의 학문(學問)은 심장 적구(尋章摘句)531 하는데에 있지 않고 고 금(古今)의 치란(治亂)과 인물(人物)의 현부(賢否)를 알아서 덕성(德性)을 함양 (涵養)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늙은 사람이 스승이 되었으니 심히 부끄럽습 니다. 비록 덕(德)과 재예(才藝)는 없으나, 이미 이 자리에 있으니 감히 말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군(人君)의 마음은 만화(萬化)가 나오는 바이니, 비록 한가하고 평안한 때를 당하더라도 마땅히 시서(詩書)와 문묵(文墨)의 일로써 유희(遊戱)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간사한 말과 바르지 못한 행실이 마음에 들어오면 심히 불가합니다. 예(禮)라는 것은 사람의 기부(肌膚)를 단단하게 하 는 것인데, 예(禮)가 없으면 태만(怠慢)한 마음이 생기어서, 학업(學業)이 이 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였다. 세자가 자기가 쓴 큰 글자 40여 자를 내어 보이니, 석린(石麟)이 말</p>	<p>世子設酌。 師成石麟進講, 告世子曰: “君王之學, 不在尋章摘句, 要識古今 治亂、人物賢否, 涵養德性耳。 癡老 爲師, 甚慙。 雖無德藝, 既在其位, 不敢不言。 君心乃萬化所出, 雖當閑 燕之時, 當以《詩》、《書》文墨之事 爲戲。 若邪說曲行, 入於心, 則甚爲 不可。 禮者, 所以固人之肌膚也。 無 禮則惰慢之心生, 而學業不成。” 世子 出所書大字四十餘示之, 石麟曰: “甚 善。” 世子曰: “古之帝王, 孰爲能 書?” 對曰: “唐太宗、宋徽宗是也。 然太宗有慙德, 徽宗失天下, 書札非君</p>

	<p>하기를, “대단히 좋습니다.” 하였다. 세자가 말하기를, “예전의 제왕(帝王)이 누가 글씨를 잘 썼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당 태종(唐太宗)과 송휘종(宋徽宗)이 글씨를 잘 쓴 분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참덕(慙德)532) 이 있고, 휘종은 천하(天下)를 잃었으니, 서찰(書札)은 군왕(君王)이 중하게 여길 바가 못됩니다.” 하였다. 세자가 술자리를 베풀니, 석린(石璘)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저하(邸下)께 술을 권하고 싶으나,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은 젊었을 때에 술 마시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끊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에 배우지 않았으면 이런 병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자가 말하였다. “젊었을 때에는 모름지기 경서(經書)를 배우고 술 마시는 것은 배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p>	<p>王之所重也。”世子設酌，石璘白曰：“某等欲勸邸下酒，然酒不飲可也。某等，少時學飲酒，故至今未已也。少時不學則無此病矣。”世子曰：“少時須學經書，不學飲酒可也。”</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9월 30일(임술) 3번째기사 경상도 경차관 김지가 각 고을의 농사 작황을 보고하다</p>	<p>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 김지(金咥)가 복명(覆命)하였다. 김지가 아뢰기를, “영해(寧海)·영덕(盈德)·청하(淸河)·영일(迎日)·장기(長鬐)·계림(鷄林)·울주(蔚州)·기장(機張) 등 여덟 고을은 손(損)이 6, 7분(分)에 이르고, 신령(新寧)·영주(永州)·하양(河陽)·경산(慶山)·순흥(順興)·영천(榮川)·대구(大丘)·의흥(義興)·의성(義城)·안동(安東) 등처는 손(損)이 3, 4분(分)에 이르고, 좌·우도(左右道) 각 고을의 화곡(禾穀)은 수전(水田)은 실(實)이고, 한전(旱田)은 불실(不實)입니다.”</p>	<p>慶尙道敬差官金咥復命。咥啓曰：“寧海、盈德、淸河、迎日、長鬐、雞林、蔚州、機張等八州，損至六七分；新寧、永州、河陽、慶山、順興、榮川、大丘、義興、義城、安東等處，損至三四分；左右道各州禾穀水田實，旱田皆不實。”</p>
<p>태종 10권, 5년(1405)</p>	<p>광명사(廣明寺)에 쌀·콩 아울러 50석을 내려 주고, 그 노비(奴婢)를 환속(還</p>	<p>賜廣明寺米豆并五十石，還屬其奴婢。</p>

<p>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0월 1일(계해) 2번째기사 광명사에 쌀·콩을 내려주고 노비를 돌려준다</p>	<p>屬)시키었다.</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0월 5일(정묘) 1번째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나아가 한양 환도를 고하니, 술자리를 베풀다</p>	<p>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나아가서 한경(漢京)으로 돌아간다 고(告)하니, 태상왕이 술자리를 베풀어 즐기었다.</p>	<p>丁卯/上詣太上殿，告還漢京，太上置酒爲歡。</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0월 12일(갑술) 1번째기사 이궁에 가서 제조 이직 등과 군인에게 술을 내리다</p>	<p>이궁(離宮)에 가서 제조(提調) 이직(李稷)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군인(軍人)에게도 술을 내려 주었다.</p>	<p>甲戌/幸離宮。召提調李稷等設酌，又賜軍人酒。</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0월 12일(갑술) 4번째기사 풍해도에 흉년이 들자, 종자와 구황대책에 관</p>	<p>풍해도(豐海道)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수전(水田)은 곡식으로 거두어서 명년(明年)에 민간(民間)의 종자를 삼고, 한전(旱田)의 조(租)는 그 반을 머물러 두어 구황(救荒)의 준비를 삼도록 하라.”</p>	<p>豐海道飢，命水田收以穀，爲明年民間種；旱田租留其半，以爲救荒之備。</p>

<p>한 일을 지시</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0월 13일(을해) 1번째기사 이궁의 공사 감독관에 게 술을, 장인들에게는 목면과 베를 하사하다</p>	<p>이궁(離宮)에 가서 또 술자리를 베풀었으니, 감독관(監督官)을 위로함이었다. 이궁에서 역사(役事)하는 공장(工匠)에게 목면(木綿)과 정포(正布) 아울러 12 필씩을 내려 주었다.</p>	<p>乙亥/幸離宮，又置酒。慰監督官也。賜離宮赴役工匠木綿正布并十二匹。</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0월 19일(신사) 1번째기사 도관찰사·수령·차사원 등이 지응할 때 어가 를 따르는 대간을 찾 아 인사하는 예를 없 애다</p>	<p>각도(各道) 도관찰사(都觀察使)의 수령관(首領官)과 차사원(差使員) 등이 호가(扈駕)하는 대간(臺諫)에게 알현(謁見)하는 예(禮)를 없애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기를, “관찰사(觀察使)의 수령관(首領官)과 지응 차사원(支應差使員) 등이 호가(扈駕)하는 대간(臺諫)에게 알현(謁見)하는 것이 예(禮)인데, 이달 초8일 거가(車駕)가 장단(長湍)에 머물렀을 때에, 수령관과 차사원 등이 이 예(禮)를 행하지 않았고, 초9일 거가가 소요기(逍遙岐)에 머물렀을 때에, 본부(本府)에서 서리(書吏)와 소유(所由)551 를 발(發)하여 범람(汎濫)한 자를 살피는데, 차사원 적성 감무(積城監務)가 막(幕) 가운데에 술을 감추어 두었으므로, 소유(所由)를 보내어 수령관 곽존중(郭存中)의 아전을 불러 그 까닭을 말하려고 하였더니, 존중이 명문(明文)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을 보냈더니, 또한 보내지 않고 말하기를, ‘적성 감무가 술을 감추어 둔 것은 장차 이튿날 공상(供上)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이튿날의 지응 차사원(支應差使員)은 양주 부사(楊州府使)이지 적성 감무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사 함부림(咸傅霖)이 ‘서리(書吏)와 소유(所由)가 임의로 진상(進上)할 술그릇을 열었다.’고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였고, 본부(本府)에서 존중(存中)이 아전을 보내지 않은 까닭을 핵문(劾問)하였더니, 존중이 회피</p>	<p>辛巳/命除各道都觀察使首領官及差使員，謁見扈駕臺諫之禮。初，司憲府上疏： 觀察使首領官及支應差使員等，謁見扈駕臺諫，禮也，月初八日，駕次長湍，首領官及差使員等，不行此禮。初九日駕次逍遙岐，府發書吏所由，察汎濫者，差使員積城監務，藏酒幕中。遣所由呼首領官郭存中之吏，欲言其故，存中以爲無明文。故移關於觀察使，亦不送之，乃曰：“積城監務藏酒，將以爲翼日供上也。”細問之，翼日支應差使員，乃楊州府使，非積城監務也。觀察使咸傅霖，妄以書吏所由，擅開進上酒器，報議政府。本府劾存中以不送吏之故，存中回避不受，乃於大駕入京之日，任然還于留後司。其不畏朝</p>

	<p>하여 받지 아니하고, 대가(大駕)가 입경(入京)하는 날에 임의로 유후사(留後司)로 돌아갔사오니, 조강(朝綱)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사(所司)를 업신여김이 이와 같습니다. 바라옵건대, 주상께서 재가(裁可)하시어 시행하소서.”</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림(傅霖)은 죄가 없다.”</p> <p>하고, 일을 보라고 명하였는데, 이튿날 부림이 병(病)을 핑계하여 사양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司憲府)에 하교(下敎)하였다.</p> <p>“행재소(行在所)에 있는 관찰사의 수령관과 지응 차사원 등은 의정부(議政府) 외에는 참현(參見)하지 말도록 하고, 사헌부(司憲府)는 소유(所由)를 보내어 관찰사와 차사원의 의막(依慕)을 수색하지 말되, 이를 항식(恒式)으로 삼으라.”</p>	<p>綱，而埋沒所司，至於如此，伏望上裁施行。</p> <p>上曰：“傅霖無罪。”命視事。翌日，傅霖辭以疾。至是，敎司憲府曰：“行在所，觀察使首領官·支應差使員等、議政府外，毋得參見。司憲府毋遣所由搜觀察使及差使員依慕，以爲恒式。”</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0월 21일(계미) 4번째기사 세자의 식사 예절을 나무라다</p>	<p>세자(世子)가 주상(主上)을 모시고 식사(食事)를 하는데 예(禮)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다. 주상께서 이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젊었을 적에 편안히 놀기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여, 거동(舉動)이 절도가 없었다. 지금 백성의 임금이 되어서도 백성들의 바람[民望]에 합하지 못하니, 마음속에 스스로 부끄럽다. 네가 비록 나이는 적으나, 그래도 원자(元子)이다. 언어(言語) 거동(舉動)이 어찌하여 절도가 없느냐? 서연관(書筵官)이 일찍이 가르치지 않더냐?”</p> <p>하니, 세자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였다.</p>	<p>世子侍食於上，多不中禮，上視之曰：“予少也，遊豫不學，舉動無節。今爲民主，亦不合民望，故心自愧之。汝雖年少，乃元子也。言語舉動，何無節耶？書筵官曾不教歟？”世子慙懼。</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0월 24일(병술) 9번째기사</p>	<p>재목(材木)과 모초(茅草)를 삼군(三軍) 갑사(甲士)에게 나누어 주었다.</p>	<p>分賜材木茅草于三軍甲士。</p>

삼군의 갑사에게 재목 등을 나누어 주다		
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1월 16일(무신) 1번째기사 임금이 인소전에 제사하고, 상왕전에 나가 잔치를 벌이다	임금이 친히 인소전(仁昭殿)에 제사하고, 마침내 상왕전(上王殿)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풀고 매우 즐기었다.	太宗 10卷, 5年(1405 乙酉 / 명 영락(永樂) 3年) 11月 16日(戊申) 1번째기사 임금이 인소전에 제사하고, 상왕전에 나가 잔치를 벌이다
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1월 16일(무신) 3번째기사 신극례에게 술 10병을 내리다	신극례(辛克禮)에 술 10병을 내려 주었다.	賜辛克禮酒十瓶。
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1월 20일(임자) 3번째기사 괴이한 물고기를 잡다	큰 고기 여섯 마리가 바다에서 조수(潮水)를 타고 양천포(陽川浦)로 들어왔다. 포(浦) 옆의 백성들이 잡으니, 그 소리가 소[牛]가 우는 것 같았다. 비늘이 없고, 색깔이 까맣고, 입은 눈[目]가에 있고, 코는 목[項] 위에 있었다. 현령(縣令)이 아뢰었더니, 그 고기를 가져다가 갑사(甲士)에게 나누어 주었다.	有大魚六尾, 自海乘潮入陽川浦, 浦傍民殺之, 聲如牛吼。 無鱗甲, 色正黑, 口在目邊, 鼻在項上。 縣令以聞, 取其肉, 頒于甲士。
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1월 23일(을묘) 1번째기사 직무에 열중한 경상도 병마 도절제사 유용생	경상도 병마 도절제사(慶尙道兵馬都節制使) 유용생(柳龍生)에게 술 열 병과 약(藥) 한 봉을 내려 주었으니, 마음을 써서 봉직(奉職)하였기 때문이다.	乙卯/賜慶尙道兵馬都節制使柳龍生酒十瓶、藥一封。 以用心奉職也。

<p>에게 술과 약을 하사하다</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2월 10일(임신) 2번째기사 상호군 최저의 장례에 부의를 내려주다</p>	<p>상호군(上護軍) 최저(崔沮)의 상(喪)에 쌀·콩 아울러 20석과 종이 1백 권을 부의(賻儀)로 내려 주었다.</p>	<p>賜賻上護軍崔沮之喪米豆并二十石、紙百卷。</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2월 16일(무인) 2번째기사 경기 도관찰사 권담의 건으로 예년보다 일찍 금주령을 내리다</p>	<p>금주령(禁酒令)을 내리었다.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권담(權湛)이 아뢰기를, “근년(近年)에 술을 금하는 것이 매양 춘계(春季)의 술이 익은 뒤에 하였으므로, 저축(貯蓄)의 계획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니, 명년에는 춘초(春初)에 금하도록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p>	<p>下禁酒令。京畿都觀察使權湛啓：“近年禁酒，每當春季酒熟之後，故無及於貯蓄之計。明年乞於春初禁之。”從之。</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2월 19일(신사) 2번째기사 진전(眞殿)에 올리는 제물에 대하여 논의하다</p>	<p>원묘(原廟)의 전물(奠物)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전(眞殿)에 소찬(素飮)으로 전(奠)하는 것이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가? 나는 생각건대, 유명(幽明)이 비록 다르나 이치(理致)는 한가지니, 자식 된 자가 마땅히 평일(平日)에 봉양하던 예(禮)로 제사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김첨(金瞻)이 아뢰기를, “진영(眞影)을 베푸는 것은 불씨(佛氏)와 노자(老子)에게서 비롯하였는데, 한</p>	<p>議原廟奠物。上曰：“眞殿素飮之奠，起於何時乎？予謂幽明雖殊，理則一也。爲子者當以平日致養之禮，祭之可也。”群臣皆曰：“然。”金瞻啓曰：“眞影之設，本於佛、老，漢初始起，至宋仁宗，其制大盛，立屋數千間。以宗廟爲輕，眞殿爲重，皆設素飮，因佛氏之道也。然立眞殿，非古也，三</p>

	<p>(漢)나라 초년(初年)에 비로소 시작되었고, 송(宋)나라 인종(仁宗)에 이르러 그 제도가 크게 성(盛)하여, 집 수천 간(間)을 세워 종묘(宗廟)를 경(輕)하게 여기고 진전(眞殿)을 중(重)하게 여기며 모두 소찬(素飮)을 베풀었으니, 불씨(佛氏)의 도(道)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전(眞殿)을 세우는 것은 예전 제도가 아닙니다. 3년 후에는 종묘(宗廟)에 부(祔)하여야 하니, 진전(眞殿)은 혁파(革罷)하여야 하고, 반드시 부득이하여 한다면 마땅히 그 법(法)에 의하여 소찬(素飮)으로 하는 것이 가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였다.</p> <p>“부녀(婦女)가 부모(祔廟)하기 전에 어찌 치제(致祭)하는 예(禮)가 없겠는가? 만일 불가(佛家)에 진전(眞殿)을 둔다면 마땅히 소찬(素飮)을 써야 하지마는, 따로 집을 세웠다면 고기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평일(平日)에 즐기던 어육(魚肉)·포해(脯醢) 등물(等物)로써 드리라.”</p>	<p>年之後，當祔於廟，眞殿可革。必不得已而爲之，則當依其法素飮可也。”</p> <p>上曰：“婦女未祔之前，豈無致祭之禮歟？若於佛家置眞殿，則宜用素飮矣，別立其室，則宜用肉也，但以其平日所嗜魚肉脯醢等物薦之。”</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2월 24일(병술) 2번째기사 태상전에 나가 헌수하다</p>	<p>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나아가 헌수(獻壽)하였는데,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매우 즐거웠다.</p>	<p>上詣太上殿獻壽，上起舞盡歡。</p>
<p>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2월 27일(기축) 2번째기사 제주의 기민을 진휼하다</p>	<p>제주(濟州)의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하였다. 경승부 소윤(敬承府少尹) 이각(李愨)을 보내어 쌀·콩 1천 석으로 진휼하고, 또 쌀·콩 1천 5백 석으로 말[馬]을 사들이었다.</p>	<p>賑濟州飢。遣敬承府少尹李愨，以米豆一千石賑之，又以米豆一千五百石市馬。</p>
<p>태종 11권, 6년(1406)</p>	<p>풍해도(豊海道)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하였다. 도관찰사 신히(申浩)가 보고하</p>	<p>賑豊海道飢。都觀察使申浩報：“信</p>

<p>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월 10일(신축) 2번째기사 풍해도의 기민을 진휼하다</p>	<p>기를, “신주(信州)·문화(文化)·안악(安岳)·재령(載寧) 등 몇 고을은 실농(失農)함이 더욱 심하니, 청하건대, 각 고을에 있는 묵은 쌀과 콩 및 을유년에 선납(先納)한 참밀[眞麥]로 구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州、文化、安岳、載寧等數郡，失農尤甚，請以各官所儲陳米太及乙酉年先納眞麥賑濟。”從之。</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월 13일(갑진) 2번째기사 홍수와 가뭄으로 공사의 연음을 금지하다</p>	<p>공사(公私)의 연음(宴飲)을 금지하였으니, 사헌부에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잇달아서 화곡(禾穀)이 풍등(豐登)하지 못하므로 공사의 용도가 궁색하다고 상언(上言)한 때문이었다.</p>	<p>禁公私宴飲。 司憲府上言，水旱相仍，禾穀不登，公私用度窘竭故也。</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월 16일(정미) 3번째기사 일본 지좌전의 사신이 하직하니, 지좌전과 사신에게 물품을 하사하다</p>	<p>일본국 지좌전(志佐殿)의 사인(使人)이 예궐하여 하직하니, 의복을 차등 있게 하사하고, 명하여 음식을 먹였다. 지좌전에게는 은종(銀鍾)과 은우(銀盃) 각각 1벌씩과 저포(苧布)·마포(麻布) 각각 5필씩,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2장씩, 송자(松子) 1백 근, 쌀·콩 각각 1백 석씩을 보냈다.</p>	<p>日本國志佐殿，使人詣闕辭，賜衣服有差，命饋之。 遺志佐殿銀鍾銀盃各一事、苧麻布各五匹、虎豹皮各二張、松子一百斤、米豆各一百石。</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월 25일(병진) 1번째기사 박은·조박·권진을 외직에 임명하고, 맹사성을 다시 좌부대언으로 삼</p>	<p>박은(朴崑)을 전라도 도관찰사로, 조박(趙璞)을 서북면 도순문사로, 권진(權軫)을 강원도 도관찰사로 삼고, 맹사성(孟思誠)을 다시 좌부대언으로 삼았다.</p>	<p>丙辰/以朴崑爲全羅道都觀察使， 趙璞西北面都巡問使， 權軫江原道都觀察使， 復以孟思誠爲左副代言。</p>

<p>다</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2월 6일(정묘) 1 번째기사 상림원의 미곡을 도용 한 한간을 여흥으로 귀양보내다</p>	<p>한간(韓幹)을 여흥(驪興)으로 유배(流配)시켰다. 검교(檢校) 공조 참의 한간은 본디 내수(內豎)이었는데, 음식을 잘 하므로써 사랑을 받아 상림원 별좌(上林園別坐)가 되었는데, 그 사(司)의 미곡(米穀)을 도용하였다.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죄 주기를 청하니, 명하여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도둑질한 미곡을 징수하고서 유배시켰다.</p>	<p>丁卯/流韓幹于驪興。 檢校工曹參議韓幹，本內豎也。 以善烹飪見幸，爲上林園別坐，盜用其司米穀。 司憲府劾之請罪，命囚于巡禁司，徵所竊米穀，流之。</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2월 10일(신미) 1번째기사 임금이 매사냥을 구경 하고 고니를 잡아 덕 수궁에 올리다</p>	<p>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매사냥[放鷹]하는 것을 구경하고 천아(天鵝)를 잡아서 즉시 덕수궁에 바쳤다. 해가 정오(正午)가 지나도록 수라를 맡은 자가 미처 진상(進上)하지 못하고, 어가(御駕)를 따르는 내시(內侍)와 더불어 술만 올리다가 곧 환궁하였다. 대언 권완(權緩)이 아뢰기를, “이제 수라를 맡은 자가 미처 올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출유(出遊)한 것은 상례(常例)가 아니었다. 만약 이들을 죄 주면 외인이 반드시 나를 구실(口實)삼을 것이다.” 하였다.</p>	<p>辛未/上觀放鷹于東郊，獲天鵝，卽獻于德壽宮。 日下午，凡執膳者，皆不及進，上與隨駕內侍但進酒，卽還宮。 代言權緩啓曰：“今執膳者皆不及，盍治之？” 上曰：“今日出遊，非常例也。 若罪此輩，則外人必以予爲口實矣。”</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2월 13일(갑술) 2번째기사 전라도 암타도에 침입 한 왜선을 격퇴한 염 부에게 쌀과 콩을 하 사하다</p>	<p>전라도 암타도(巖墮島)의 염부(鹽夫)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였다. 왜선(倭船) 6척이 암타도를 침략하니, 염부가 2명을 쏘아 죽이고 물리쳤는데, 피로(被擄)되었던 사람 2명이 도망하여 왔다.</p>	<p>賜全羅道巖墮島鹽夫米豆。 倭船六艘寇巖墮島，鹽夫射殺二名却之，被擄人二名逃來。</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2월 20일(신사) 1번째기사 검교 공조 참의 윤명 을 답례로 일본에 보 내다</p>	<p>검교 공조 참의(檢校工曹參議) 윤명(尹銘)을 보내어 일본에 가서 보빙(報聘)하 게 하였다. 국왕에게 은병(銀瓶) 1개, 은관자(銀灌子) 1개, 은중(銀鍾) 1개, 초 모자(草帽子) 1개, 사피화(斜皮靴) 1개,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10령(領), 저포(苧布)·마포(麻布) 각각 24필, 백지(白紙) 1백 장, 만화석(滿花席)·잡채화 석(雜彩花席) 각각 20장, 인삼 1백 근, 송자(松子) 5백 근, 동(銅) 1천 근을 보냈다. 윤명이 서생포(西生浦)에 이르러 배가 파선되어, 죽은 자가 5명이었 다. 다시 배를 수리하여 가도록 명하였다.</p>	<p>辛巳/遣檢校工曹參議尹銘如日本。 報聘也。遺國王銀瓶一、銀灌子一、 銀鍾一、草帽子一、斜皮靴一、虎豹 皮各十領、苧麻布各二十四、白紙一 百張、滿花席·雜彩花席各二十張、 人蔘一百斤、松子五百斤、銅一千 斤。銘至西生浦船敗，死者五人，命 再修船楫以去。</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2월 27일(무자) 2번째기사 일본국왕이 《대장 경》을 청하고, 구주 절도사가 포로와 토물 을 바치다</p>	<p>일본 국왕 원도義(源道義)가 사신을 보내어 내빙(來聘)하고, 《대장경(大藏 經)》을 청하였고, 구주 절도사(九州節度使)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土物)을 바치고 부로(俘虜)를 돌려보냈다.</p>	<p>日本國王源道義，遣使來聘，請《大藏 經》；九州節度使源道鎭，使人獻土 物，發還俘虜。</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3월 3일(계사) 1 번째기사 환궁하는 길에 노파와 소경 등에게 쌀과 콩 을 하사하다</p>	<p>환궁(還宮)하였다. 어가가 한강(漢江) 중방원(重房院)에 이르니, 늙은 할미 국 화(菊花)와 여승 지회(志會)와 소경 김송(金松)·한용(韓龍) 등이 어가 앞에 알 현하니, 임금의 불쌍히 여겨 쌀과 콩 각각 1석씩을 하사하였다.</p>	<p>癸巳/還宮。駕至漢江重房院，老嫗菊 花、尼志會、盲人金松·韓龍等見于 駕前，上憐之，各賜米豆各一石。</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p>	<p>항복한 왜인 오문(吳文)과 등곤(藤昆)이 전라도 선군(船軍)을 거느리고 왜적을 잡아서 갈도(葛島)에 이르렀다가 바람을 만나 익사(溺死)하였다. 오문 등이 선</p>	<p>降倭吳文、藤昆，率全羅道船軍，捕倭 至葛島，遇風溺死。文等率船軍五十</p>

<p>4년) 3월 4일(갑오) 3번째기사 선군을 이끌고 왜적을 추격하다 익사한 투항 왜인 오문 등에게 부의를 내리다</p>	<p>군 55명을 거느리고 장흥부(長興府)의 소선(小船)을 탔는데, 매우 세찬 바람을 만나 배가 엎질러졌다. 부의(賻儀)를 차등 있게 하사하도록 명하여, 오문과 등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쌀·콩 10석과 종이 50권을, 영선(領船) 장의(張義)와 두목(頭目) 고귀생(高貴生)에게는 쌀·콩 각각 8석, 사관(射官) 박자송(朴自松) 등 3인과 격군(格軍) 김부(金富) 등 9인과 사공(沙工) 서원(徐原)·인해(引海) 황충(黃忠)에게는 각각 쌀·콩 6석을 하사하였다. 그 사관(射官) 고적(高迪)과 격군(格軍) 유천(劉天) 등 39명은 조령(條令)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혹(愚惑)하고 배에 익숙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대신 배를 타게 하였다가 파선됨에 이르렀던 까닭으로, 전라도 도관찰사로 하여금 추핵(推劾)하여 아뢰게 하였다.</p>	<p>五名，乘長興府小船，遇風太急船敗，命賜賻有差。 文、昆二人各米豆十石、紙五十卷，領船張義、頭目高貴生米豆各八石，射官朴自松等三人、格軍金富等九人、沙工徐原、引海黃忠各米豆六石。 其射官高迪、格軍劉天等三十九名，不遵條令，使愚惑不慣船上者代騎，以致敗船，令全羅道都觀察使推覈以聞。</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3월 16일(병오) 1번째기사 제생원에 명하여 어린 여자아이에게 의약을 가르치게 하다</p>	<p>제생원(濟生院)에 명하여 동녀(童女)에게 의약(醫藥)을 가르치게 하였다. 검교한성 윤(檢校漢城尹) 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 허도(許衡)가 상언(上言)하였다. “그윽이 생각건대, 부인이 병이 있는데 남자 의원으로 하여금 진맥(診脈)하여 치료 하게 하면, 혹 부끄러움을 머금고 나와서 그 병을 보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원하건대, 창고(倉庫)나 궁사(宮司)의 동녀(童女) 수 10명을 골라서, 맥경(脈經)과 침구(針灸)의 법(法)을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면, 거의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라 제생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p>	<p>丙午/命濟生院，教童女醫藥。 檢校漢城尹知濟生院事許衡上言：“竊謂婦人有疾，使男醫[診]治，或懷羞愧，不肯出示其疾，以致死亡。 願擇倉庫、宮司童女數十人，教以脈經針灸之法，使之救治，則庶益殿下好生之德矣。” 上從之，使濟生院掌其事。</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3월 28일(무오) 3번째기사 강원도 기민을 진휼하다</p>	<p>강원도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하였다.</p>	<p>賑江原道飢。</p>
<p>태종 11권, 6년(1406</p>	<p>사신을 보내어 정승(鄭昇) 등을 그 고향에서 위문하였다. 또 전라도에 사람을</p>	<p>遣使問慰鄭昇等于其鄉。 又遣人于全</p>

<p>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4일(갑자) 5 번째기사 정승 등의 고향에 사람을 보내 위문하다. 왜적을 잡은 도절제사 등에게 상을 주다</p>	<p>보내어 도관찰사 박은(朴崐)·도절제사 김계지(金繼志)·단무사(團撫使) 김문발(金文發)에게 궁은(宮醞)을 하사하고, 또 경상도 도절제사 유용생(柳龍生)에게도 하사하였으니, 모두 왜적을 잡은 공을 상준 것이었다. 유용생은 선은(宣醞)을 탁주(濁酒) 아홉 동이[盆]에 타고, 이어서 그가 타던 말 한 필을 잡아서, 사졸(士卒)들에게 나누어 먹이고 말하기를, “오늘 선은(宣醞)은 비록 소신(小臣)을 위로한 것이나, 왜적을 잡은 공은 실로 사졸들에게 있다.” 하니, 사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p>	<p>羅道，賜宮醞于都觀察使朴崐、都節制使金繼志、團撫使金文發，又賜慶尙道都節制使柳龍生，皆賞捕倭之功也。龍生以宣醞和濁酒九盆，仍殺所乘馬一匹，分饗士卒曰：“今日宣醞，雖慰小臣，捕倭之功，實在士卒。”士卒咸悅。</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8일(무진) 3 번째기사 왜적이 안행량에서 전라도 조운선과 호송병선을 약탈해 가다</p>	<p>왜적이 전라도 조선(漕船) 14척과 호송 병선(護送兵船) 1척을 안행량(安行梁)에서 약탈하여 갔다. 왜선 18척이 밤을 타서 침략하여, 쌀 4천 90석을 탈취해 간 것이다.</p>	<p>倭奪全羅道漕船十四艘及護送兵船一艘于安行梁。倭船十八艘，乘夜掠之，取米四千九十石而去。</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14일(갑술) 2번째기사 기남보국의 객인이 토물을 바치다</p>	<p>기남보국(紀南寶國)의 객인(客人)이 와서 토물(土物)을 바쳤으니, 왜놈[倭奴]의 별종(別種)이었다.</p>	<p>紀南寶國客人，來獻土物。倭奴之別種也。</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16일(병자) 2번째기사</p>	<p>일본 서해도 단주 태수(西海道丹州太守) 원영(源迎)이 사신을 보내어 와서 토물(土物)을 바쳤다.</p>	<p>日本西海道丹州太守源迎，遣使來獻土物。</p>

<p>일본 서해도 단주 태수 원영이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17일(정축) 2번째기사 왜선을 침몰시킨 경상도 도절제사에게 상을 주다</p>	<p>경상도 도절제사 유용생(柳龍生)이 병마사(兵馬使) 김을우(金乙雨)와 녹도 천호(鹿島千戶) 김인상(金仁祥)을 시켜 왜선(倭船) 1척을 같이도에서 잡았는데, 왜적 30여 명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9급(級)을 베어 바치니, 사람을 보내어 내구마(內廐馬) 1필을 유용생에게 하사하고, 인하여 선온(宣醞)을 하사하였다. 김을우에게는 단(段)·견(絹) 각각 1필, 김인상 등에게는 면(綿)·주(紬)·마포(麻布) 각각 1필씩을 하사하였다. 영선(領船)·두목(頭目) 이하는 공로(功勞)를 차등 있게 갖추 기록하였다.</p>	<p>慶尙道都節制使柳龍生，使兵馬使金乙雨、鹿島千戶金仁祥，捕倭船一艘于葛伊島，倭三十餘人，皆投海而死，斬九級以獻。遣人賜內廐馬一匹于龍生，仍賜宣醞。賜乙雨段絹各一匹，仁祥等綿紬麻布各一匹，具錄領船頭目以下功勞有差。</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18일(무인) 1번째기사 유귀산을 제주 안무진제사로 삼아 제주 의 기민을 진휼케 하다</p>	<p>전 공조 참의 유귀산(庾龜山)을 제주 안무진제사(濟州安撫賑濟使)로 삼았다. 그때 유귀산이 모상(母喪)을 당하였는데, 명하여 쇠질(衰絰)을 벗게 하고 의관(衣冠)을 하사하고, 또 술과 고기를 권하고, 전라도 쌀 1천 석을 내어서 제주에 가서 기민(飢民)을 진제(賑濟)하게 하였다.</p>	<p>戊寅/以前工曹參議庾龜山，爲濟州按撫賑濟使。時，龜山居母喪，命脫衰絰，賜衣冠，且勸酒肉，發全羅道米一千石，往賑飢民。</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20일(경진) 2번째기사 태평관에서 연회를 베풀다. 명에서 제주의 동불을 요구</p>	<p>임금이 태평관에 이르러 연회를 베풀었다. 술이 취하자, 황엄은 취한 것을 핑계하고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한첩목아가 말하였다. “제주(濟州) 법화사(法華寺)의 미타삼존(彌陀三尊)은 원나라 때 양공(良工)이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곧바로 가서 취(取)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희롱하기를, “정말 마땅하고 말고. 다만 부처 귀에 물이 들어갈까 두렵소.” 하니 첩목아 등이 모두 크게 웃었다.</p>	<p>上至館設宴。酒酣，儼辭以醉，先入室。帖木兒曰：“濟州法華寺彌陀三尊，元朝時良工所鑄也。某等當徑往取之。”上戲曰：“固當，但恐水入耳。”帖木兒等皆大笑。</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20일(경진) 6번째기사 선군이 둔전과 미역 따기 등의 일을 하는 것을 중지시키다</p>	<p>명하여 선군(船軍)에게 둔전(屯田)·채곽(採蠶)647) ·포어(捕魚) 등의 역사(役事)를 혁파하도록 하였다. 전라도 도관찰사 박은(朴崧)이 아뢰기를, “각도의 해도 만호(海道萬戶)가 선군을 역사(役使)시켜 둔전(屯田)하고, 미역을 따고 고기를 잡으니, 거두는 이익은 매우 적은데, 종일 노동하다가 밤이 되어 곤하게 잠을 자므로, 경비(警備)를 능히 하지 못하여 실수(失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혁파함이 진실로 편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命罷船軍屯田採蠶捕魚之役。 全羅道都觀察使朴崧啓曰： “各道海道萬戶，役使船軍，屯田採蠶捕魚。 收利甚微，而終日勤動，至夜困睡，不能警備，多致失守，罷之實便。” 從之。</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23일(계미) 1번째기사 황엄 등에게 연회를 베풀다</p>	<p>임금이 황엄 등 네 사람을 창덕궁(昌德宮)에서 연회하였는데, 황엄이 중궁(中宮)을 뵈기를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더불어 함께 내정(內庭)에 들어갔다. 드디어 해온정(解慍亭)을 둘러보고 나와서, 광연루(廣延樓)에서 술을 베풀고, 임금이 황엄에게 안장 갖춘 말을 주었다.</p>	<p>癸未/上宴黃儼等四人于昌德宮。 儼請見中宮，上與俱入內庭，遂歷觀解慍亭而出，置酒于廣延樓，贈儼鞍馬。</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24일(갑신) 1번째기사 달단이나 화척이 소와 말을 도살하는 것을 거듭 금하다</p>	<p>달단(韃韃) 화척(禾尺)에게 소와 말을 잡는 것을 금하도록 거듭 밝혔다.</p>	<p>甲申/申韃韃禾尺宰殺牛馬之禁。</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4월 26일(병술) 2번째기사 정승이 개령에서 돌아</p>	<p>정승(鄭昇)이 개령(開寧)에서 돌아오니, 의정부에서 성문 밖에 술을 베풀고 맞았다. 수일 뒤에 조양(趙良) 등 6인이 또한 모두 그 고향으로부터 돌아왔다. 김유연(金有延)이란 자가 있어, 정승에게 부탁하여 벼슬을 받고자 하다가 일이 발각되니, 의정부에서 순금사(巡禁司)에 이첩(移牒)하여 장(杖) 80대를 때렸다.</p>	<p>鄭昇還自開寧， 議政府置酒門外以迓之。 後數日， 趙良等六人， 亦皆還自其鄉。 有金有延者欲托鄭昇受職， 事覺， 議政府移牒巡禁司， 杖之八十。</p>

오자 의정부에서 영접하다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9일(무술) 1 번째기사 참찬의정부사 신극례 를 시켜 말에서 떨어 진 황엄을 위문케 하 다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신극례(辛克禮)를 보내어 궁은(宮醜)을 가지고 가서 황엄(黃儼)의 병을 위문하게 하였다. 임금이, 황엄이 남원(南原)에 이르러 승련사(勝蓮寺)에 유람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왼쪽팔을 다친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戊戌/遣參贊議政府事辛克禮，齋宮醜往問黃儼之疾。上聞儼至南原遊勝蓮寺，墮馬傷左臂也。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17일(병오) 3번째기사 장정을 징발하여 제릉 의 송충이를 잡다	제릉(齊陵)의 송충이를 잡았다. 정부(丁夫) 6백 80명을 조발(調發)하고, 유후사(留後司) 창고의 쌀을 내어 5, 6일치 양식을 주었다.	捕齊陵松蟲，調丁夫六百八十。發留後司倉米，給五六日糧。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18일(정미) 1번째기사 명의 사신 기원에게 해운정에서 연회를 베풀다	기원(奇原)을 해운정(解愠亭)에서 연회하였다. 기원은 본디 공근(恭謹)하여 감히 사신이라 자처하지 아니하고 동남쪽 모퉁이에 앉으니, 임금은 서북쪽 모퉁이에 앉았다. 술자리를 파하고 기원이 전정(殿庭)에 나아가 배사(拜謝)하고 물러갔다.	丁未/宴奇原于解愠亭。原素恭謹，不敢以使臣自處，坐于東南隅，上坐西北隅。酒罷，原詣殿庭，拜謝而退。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18일(정미)	이거이(李居易)에게 쌀과 콩 50석을 하사하였다. 임금이 이거이가 진천(鎭川)에서 사는 것이 궁핍(窮乏)하다는 말을 듣고, 쌀과 콩을 50석씩 하사하고, 그 아들 이백관(李伯寬)·이백신(李伯臣)·엄현(嚴儼) 세 사람을 용서하여 외방 중	賜李居易米豆五十石。上聞居易在鎭州窮乏，命議政府賜米豆五十石，宥其子伯寬、伯臣、儼三人，許外方從便。

2번째기사
이거이 일가에게 외방
종편하자, 사헌부에서
반대하다

편(外方從便)하도록 허락하니, 사헌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이거이(李居易)는 그 죄가 주살(誅殺)을 당하여야 하는데, 전하가 너그럽고
 어질어서 다만 그 고향에 안치하도록 허락하고, 아들 이저(李佇)와 이백관·이
 백신·엄현의 무리는 모두 아울러 외방에 안치하여 서로 상종(相從)하지 못하
 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두어 해가 되지 못하여 전하가 이백관 등 세 사람을
 용서하여 모두 아울러 종편(從便)하게 하니, 이렇게 하다가 보면, 형세가 반
 드시 그 아버지와 더불어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니, 이로 인하여 혹시 불측(不測)
 한 변이 생길까 그속이 두렵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가볍게 용서하지 말고,
 이백관 등을 한 지방에 각각 두어, 이상(履霜)의 경계(662) 를 삼가도록 하소
 서.”
 임금이 장무(掌務)인 지평(持平) 허항(許恒)을 불러 전교하였다.
 “이거이의 죄는 주살(誅殺)하는 것이 그 일신에만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처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인가? 삼족(三族)을 멸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인가? 이
 처럼 재변(災變)이 있는 때를 당하여 나는 죄 없이 폄출(貶黜)된 자가 천지
 (天地)에 원통한 사정을 호소한 때문인가 두려워하여, 재변을 막을 방책을 도
 모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도리어 무고(無辜)한 자의 죄를 청하니, 이는 무
 슌 뜻인가?”
 허항이 말하기를,
 “오늘의 상소는 물의(物議)를 좇은 것입니다. 물의가 이미 이와 같은데, 신
 등이 풍헌(風憲)의 직임에 있으면서 어찌 감히 잠잠히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너희들이 언관(言官)의 직책에 있으면서 일이 옳고 그름은 논하지 아니하고,
 다만 물의를 좇는 것은 옳으냐? 이거이의 죄는 그 일신에만 그칠 뿐인데, 너
 희들이 그 처자를 죄주고자 함은 무슨 이치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

司憲府上言：
 李居易，其罪當誅，殿下寬仁，只許安
 置其鄉，其子若佇若伯寬、伯臣、儼之
 徒，並皆外方安置，使不得相從，今未
 數年，殿下宥伯寬等三人，並皆從便。
 若是則勢必與其父相會，竊恐因此或生
 不測之變。伏望毋輕肆宥，各置伯寬
 等於一方，以謹履霜之戒。
 上召掌務持平許恒，教之曰：“居易之
 罪，誅止其身乎？抑及其妻孥乎？夷至
 三族乎？當此災變之時，予恐無罪而貶
 黜者，號冤於天地也。欲圖弭災之術，
 爾等反請無辜者之罪，是何意歟？”恒
 曰：“今日之疏，從物論也。物論既如
 此，臣等職忝風憲，豈敢緘默乎？”上
 曰：“汝輩職在言官，而不論事之是非，
 但曰從物論可乎？居易之罪，止坐其身
 而已，汝輩欲罪其妻孥，豈理也哉？其
 思之！”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4일(임술) 1 번째기사 왜적을 무찌른 견내량 천호 김구 등에게 상으로 물품을 하사하다</p>	<p>사람을 보내어 경상도 병마 절제사 유용생(柳龍生)과 도관찰사 김희선(金希善)에게 궁온(宮醞)을 하사하고, 또 견내량(見乃梁) 천호 김구(金龜)와 녹도(鹿島) 천호 김인상(金仁祥)에게 기(綺)와 견(絹)을 각 1필씩 하사하고, 그 군사 가운데 힘써 싸우다가 부상한 자에게는 쌀과 콩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김구와 김인상이 왜적의 배 한척을 소지도(小知島) 큰 바다에서 잡고, 13급(級)을 베었기 때문이었다.</p>	<p>壬戌/遣人賜宮醞于慶尙道兵馬都節制使柳龍生及都觀察使金希善，又賜見乃梁千戶金龜、鹿島千戶金仁祥綺絹各一匹，其軍卒力戰被傷者，賜米豆有差。以龜、仁祥捕倭賊一艘于小知島之大洋，斬十三級也。</p>
<p>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5일(계해) 4 번째기사 서북면 도순문사 조박이 평양부 토관 제도에 대해 계문하다</p>	<p>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 조박(趙璞)이 토관(土官)의 제도를 계달(啓達)하였다. 계달(啓達)은 이러하였다. “평양부 사(平壤府司)의 원수(元數)를 상고하니, 그 수가 6백여 명이나 녹(祿)을 받는 데 이릅니다. 그러므로, 근처 각 고을과 평양부의 외촌(外村)에 사는 백정(白丁)들까지 직임을 받기를 청탁하여, 군역(軍役)을 면하기를 꾀합니다. 그 중 직사(職事)가 없이 참칭(僭稱)하는 아문(衙門)으로서 혁거(革去)할 만한 것을 마련하여 다음에 기록합니다. 내부시(內府寺)가 도벽(塗壁)을 맡고, 내원시(內園寺)가 채원(菜園)을 맡고, 내주시(內廚寺)가 각아(各衙)의 반봉(飯奉)을 맡는데, 이상 세 아문(衙門)은 참람하게 경관(京官)의 내자(內字)에 비하였으니, 이름을 고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대흥부(大興部)·용덕부(龍德府)·용흥부(龍興府)·천덕부(川德部)·흥토부(興土部) 이상 5부는 호적을 맡으므로, 동·서·남·북 도감(都監)의 관원이 각각 4명, 동·서·남·북 성황 도감(城隍都監)의 관원 각각 4명, 도합 32명이 한가하게 놓고 녹(祿)을 먹으면서 군역(軍役)을 피하니, 미편(未便)합니다. 사면 도감(四面都監)과 사면 성황 도감(四面城隍都監)을 5부(部)에 합속(合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의사(禮儀司)에 녹관(祿官)이 6명, 전례사(典禮司)에 녹관이 5명인데, 이상 두 사(司)는 직사(職事)는 한 가지이니, 합하여 한 사(司)로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영작원(營作院)에 녹관이 4명, 장작시(將作寺)에 녹관이 4명인데,</p>	<p>西北面都巡問使趙璞，啓土官之制。啓曰： 平壤府司元數，相考其數，至六百餘人受祿，故近處各官及平壤府外村接白丁，請托受職，規免軍役。其中無職事僭稱衙門可革者，磨鍊後錄。內府寺掌塗壁，內園寺掌菜園，內廚寺掌各衙飯奉。已上三衙門，僭擬京官內字，改名何如？大興部、龍德府、龍興府、川德部、興土部。已上五部，掌戶籍。東西南北都監官員各四，東西南北城隍都監官員各四，都計三十二人，閑游食祿，避軍役未便。四面都監、四面城隍都監，於五部合屬何如？禮儀司祿官六，典禮司祿官五。已上二司，職事一樣，合爲一司何如？營作院祿官四，將作寺祿官四。已上二司，職事一樣，合爲一司何如？左右軍營祿</p>

	<p>이상 두 사(司)는 직사가 한 가지이니, 합하여 한 사(司)로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좌·우 군영(軍營)의 녹관이 각각 4명인데, 등유(燈油)를 맡는데, 군영으로서 등유(燈油)를 맡는 것은 더욱 의미가 없으니, 혁거(革去)하는 것이 가한데, 군기시(軍器寺)에 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정설서(正設署)에 녹관이 8명이고, 대관서(大官署)에 녹관이 4명인데, 이상 두 아문(衙門)은 직사가 한 가지이니, 합하여 한 사(司)로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대창서(大倉署)에 녹관이 4명인데, 창고(倉庫)를 맡고, 경시서(京市署)에 녹관이 말[斗]과 되[升]를 맡으니, 이상 두 아문(衙門)을 합하여 한 사(司)를 만들고, 말과 되를 겸해 맡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장야사(掌治司)에 녹관이 4명인데, 군기시(軍器寺)에 합속(合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영선점(迎仙店) 녹관이 6명인데, 청소를 맡으니, 혁거(革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공역서(供役署)에 녹관이 4명인데, 반봉(飯奉)을 맡으니, 의미가 없으므로, 혁거(革去)하는 것이 가합니다.</p> <p>진설서(陳設署)가 포진(鋪陳)을 맡고, 소부시(小府寺)가 포진을 맡으니, 두 사(司)를 합하여 한 사(司)로 만들고, 도진사(都津司)가 마소를 잡는 일을 맡고, 군기시(軍器寺)가 군기(軍器)를 맡고, 장작시(將作寺)가 영선(營繕)과 탄소목(炭燒木)을 맡고, 오부(五部)가 호적(戶籍)을 맡고, 전례사(典禮司)가 제사와 예악(禮樂)을 맡고, 의학원(醫學院)이 의약을 맡고, 제학원(諸學院)이 학교를 맡고, 열악원(閱樂院)이 음악을 맡고, 영송 도감(迎送都監)이 반봉(飯奉)을 맡고, 동·서 대비원(東西大悲院)이 병인(病人)을 맡고, 사온서(司醞署)가 술[酒味]을 맡고, 정설서(正設署)가 연향(宴享)을 맡고, 대창서(大倉署)가 창고를 맡고, 염점(鹽店)이 공염(貢鹽)을 맡고, 전구서(典廐署)가 닭과 돼지를 맡고, 대영서(大盈署)가 부관(府官)의 쌀을 맡고, 전옥서(典獄署)가 형옥(刑獄)을 맡고, 누각원(漏刻院)이 경루(更漏)를 맡는데, 이상 도진사(都津司) 이하 각사(各司)는 예전 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서반(西班)의 각사(各司)는 다시</p>	<p>官各四，掌燈油，以軍營掌燈油，尤爲無意，可革，合於軍器寺何如？正設署祿官八，大官署祿官四，已上二衙門，職事一樣，合爲一司何如？太倉署祿官四掌倉庫，京市署祿官掌斗升。已上二衙門，合爲一司，兼掌斗升何如？掌治司祿官四，軍器寺合屬何如？迎仙店祿官六，掌灑掃，革去何如？供役署祿官四，掌飯奉無意，可革。陳設署掌鋪陳，小府寺掌鋪陳，二司合爲一司。都津司掌牛馬屠剪，軍器寺掌軍器，將作寺掌營繕炭燒木，五部掌戶籍，典禮司掌祭祀禮樂，醫學院掌醫藥，諸學院掌學校，閱樂院掌音樂，迎送都監掌飯奉，東西大悲院掌病人，司醞署掌酒味，正設署掌宴享，太倉署掌倉庫，鹽店掌貢鹽，典廐署掌雞豚，大盈署掌府官米，典獄署掌刑獄，漏刻院掌更漏。已上都津司已下各司，仍舊何如？西班各司，更加詳定何如？</p> <p>啓下議政府。</p>
--	---	---

	상정(詳定)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계달한 것을 의정부에 내렸다.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7일(을축) 3 번째기사 진리에게 물품을 하사 하다	진이(陳理)에게 쌀·콩 4석과 술 10병을 하사하였다.	賜陳理米豆四石、酒十瓶。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15일(계유) 1번째기사 임금이 덕수궁에 나가 헌수하다	임금이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헌수(獻壽)하고, 종친(宗親)과 재상(宰相)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니, 태상왕(太上王)이 매우 기뻐하여 일어나 춤을 추고, 민무질(閔無疾)에게 옷을 하사하였다.	癸酉/上詣德壽宮獻壽，宗親宰相以次進爵，太上王歡甚起舞，賜閔無疾衣。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22일(경진) 2번째기사 동북면의 기민을 진휼 하다	동북면(東北面)이 굶주리니, 이를 진휼(賑恤)하였다. 도순문사(都巡問使) 박신(朴信)이 상언(上言)하기를, “강원도에서 보낸 곡식이 적어서 기민(飢民)을 진휼하기에 부족하니, 3천 석을 더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東北面飢，賑之。都巡問使朴信上言：“江原道所輸穀少，不足以賑飢民，請益三千石。”從之。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26일(갑신) 3번째기사 정전에 나가 일본 국	정전(正殿)에 나아가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을 인견(引見)하고, 전(殿)에 오르도록 명하고 유시(諭示)하기를, “때가 한창 무더운 철이라 내가 병이 나서 오래도록 불러 보지 못하였다. 객관(客館)이 누추한데, 관인(館人)들이 실수나 없는가? 이 한여름을 당하여 길을 갈 수 없을 터이니, 서늘한 가을을 기다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	御正殿，引見日本國王使。命升殿，諭之曰：“時方苦熱，我以有疾，久不見焉。客館卑陋，館人無乃有闕耶？當此盛夏，不可登途，宜俟秋涼還國。”對曰：“暑將徂矣，今可以還。”

<p>왕의 사신을 인견하고 위무하다</p>	<p>다.” 하니, 대답하기를, “더위가 장차 가실 것이니, 지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어찌 막겠는가?” 하고, 서상(西廂)에서 공궤(供饋)하도록 명하였다.</p>	<p>上曰：“懷土之念，予何止之？”命饋于西廂。</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7월 6일(계사) 2 번째기사 최운이 표류되었던 중국인 84명을 데리고 경사에 가다</p>	<p>사역원 부사(司譯院副使) 최운(崔雲)을 보내어 소주위(蘇州衛) 우소 백호(右所百戶) 시득(施得)·총기(摠旗) 임칠랑(林七郎) 등을 안동[押領]하여 요동(遼東)으로 가게 하였다. 시득(施得) 등은 해선(海船)을 타고 북경(北京)으로 양곡을 운송하다가 바람을 만나 순성(蓴城)에 표류되었는데, 배가 부서지게 되자 해안으로 올라왔다. 통사(通事) 진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곽해룡(郭海龍)을 보내어, 가서 체문(體問)하고 인하여 함께 데려오게 하였었다. 임금이 광연루(廣延樓)에 임어하여 시득(施得) 등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곤액(困厄)686) 을 갖추 겪고서도 생명을 보전한 것은 황제의 덕이었다.” 하니, 시득 등이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우리들이 전하의 경토(境土)에 이르러서 살아남을 얻었으니, 바로 전하의 덕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시득(施得) 등 84인에게 의복·갓·신[靴]을 내려 주고, 또 서상(西廂)에서 <음식을> 먹여 보내게 하였다.</p>	<p>遣司譯院副使崔雲，押蘇州衛右所百戶施得、摠旗林七郎等如遼東。得等乘駕海船，運糧北京，遭風漂到蓴城，船毀上岸，遣通事前判軍器監事郭海龍前去體問，因與偕來。上御廣延樓，引見施得等，謂之曰：“困厄備極，而保全性命者，帝德也。”得等叩頭曰：“我輩至殿下境土而得生，乃殿下之德也。”命賜得等八十四人衣服笠靴，且饋于西廂而遣之。</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7월 18일(을사) 2 번째기사 황엄 등이 임금에게</p>	<p>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나아갔다. 황엄(黃儼) 등이 임금이 먼저 불상(佛像) 앞에 나아가 예(禮)를 행하게 하고자 하므로, 임금이 불가하게 여기어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천사(天使)를 위한 것뿐이지, 불상[銅像]을 위한 것은 아니오. 만약 동불(銅佛)이 중국에서 왔다면, 내가 마땅히 절하여 경근(敬謹)의 뜻을</p>	<p>上如太平館，黃儼等欲上先詣佛像前行禮，上不可曰：“予之來，爲天使耳，非爲銅像也。若銅佛自天朝而來，則予當拜之，以致敬謹之意，今不然，何拜之有!”乃令知申事黃喜，訪諸政府。</p>

<p>불상에다 절하기를 요구하니 거절하다</p>	<p>표해야 옳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한데 어찌 절할 필요가 있겠소?” 하고, 곧 지신사 황희(黃喜)로 하여금 정부에 물어 보게 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황제(皇帝)가 불도(佛道)를 숭신(崇信)하여 멀리 동불(銅佛)을 구하고, 또 황엄이 불초(不肖)하다는 것은 천하 사람이 다 아는 바이니, 권도(權道)에 좇아 예불(禮佛)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내가 두 정승(政丞)697) 을 믿고 장차 절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모두 말하기를, ‘절해야 한다.’고 하니, 무슨 까닭인가? 내 곧 나의 여러 신하 중에 의(義)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알았다. 여러 신하들이 한 사람의 황엄(黃儼)을 두려워함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의(義)를 지켜 임금의 어려움을 구할 수 있겠는가? 전조(前朝)의 충혜왕(忠惠王)이 원(元)나라로 잡혀 갔을 때, 일국(一國)의 신인(臣人)으로 구원하려 드는 자가 없었는데, 내가 위태롭고 어려움을 당해도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또 임금의 거동은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만일 불상에 절한다면, 예절에 있어서 어떠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이현(李玄)에게 명하여 사신(使臣)에게 이르게 하였다. “번국(藩國)의 화복(禍福)은 천자(天子)의 손에 달려 있지 동불(銅佛)에 있는 것이 아니오. 마땅히 먼저 천자의 사신을 보아야지, 어찌 내 나라 동불에 절할 수 있겠소?” 황엄이 한참 동안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미소(微笑)지으며 말하였다. “먼저 전하와 상견(相見)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들어가서 사신을 만나보고 다례(茶禮)를 행하였으나, 마침내 불상에는 절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황엄에게 말하였다. “이곳에다 술자리를 베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불상이 정청(正廳)에 있어</p>	<p>政府啓曰：“皇帝崇信佛道，遠求銅佛，且黃儼不肖，天下所共知，願從權禮佛。”上不悅曰：“予恃兩政丞，將欲不拜，今皆曰可拜，何也？予乃知我群臣無一守義者也。群臣畏一黃儼如此，況守義救君之難乎？前朝忠惠王，被執歸元朝，一國臣人無肯救之者。我雖至於危難，亦殆如此矣。且人主舉動，不可以輕。予若拜佛，於禮何哉！”遂命李玄謂使臣曰：“藩國禍福，在天子掌握，不在銅佛。當先見天子使臣，豈容拜吾土銅佛？”儼仰天良久，微笑曰：“請先與殿下相見。”乃入見使臣，行茶禮，竟不拜佛像。上謂儼曰：“甚欲設一酌於此，而佛像在於正廳，不敢褻近，幸一臨陋宮。”儼曰：“唯命。”上還宮遲之，儼不至，復使代言尹思修贈以良馬。儼怒解，遂與韓帖木兒等至昌德宮，上宴于廣延樓。</p>
----------------------------	---	--

	<p>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소, 한번 내 궁(宮)으로 와 주기 바라오.” 황엄이 말하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임금이 환궁(還宮)하여 얼마 동안 있어도 황엄이 오지 아니하므로, 다시 대인 윤사수(尹思修)를 시켜 양마(良馬)를 보내주었더니, 황엄이 노기가 풀려서 마침내 한첩목아(韓帖木兒) 등과 더불어 창덕궁(昌德宮)으로 왔다. 임금이 광연루(廣延樓)에서 연회하였다.</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7월 19일(병오) 2번째기사 해운정에서 사신들에게 주연을 베풀고 물품을 하사하다</p>	<p>태평관(太平館)에 나아가 사신을 청해 해운정(解愠亭)으로 와서 술자리를 베풀고, 4인에게 말 1필(匹)씩 주었다. 또 황엄에게 저마포(苧麻布) 1백 35필, 석등잔(石燈盞) 30벌[事], 돛자리 15장, 잣[松子] 3석, 준마(駿馬) 3필, 초서구(貂鼠裘) 1령(領), 각궁(角弓) 1장(張), 전(箭) 1통(筒)과 그가 요구한 인삼(人蔘)·후지(厚紙)·산해 식물(山海食物)까지 주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 나머지 사신에게도 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게 주었다. 황엄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전하의 성의가 지극하십니다.” 하였다. 양녕(楊寧)은 준것이 적다 하여 노(怒)하고, 또 울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다시 양마(良馬) 1필을 주었다. 인하여 황엄에게 말하기를, “황제의 은덕을 입음이 어느 누가 나와 같겠소?” 하니, 사신이 말하였다. “전하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천하가 다 이와 같습니다.”</p>	<p>如太平館，請使臣至解愠亭置酒。贈四人馬各一匹，又贈黃儼苧麻布一百三十五匹、石燈盞三十事、席子十五張、松子三石、駿馬三四、貂鼠裘一領、角弓一張、箭一筒及凡所需人蔘厚紙山海食物，無所不具，其餘使臣，以次而降。儼大喜曰：“殿下誠意，至矣盡矣。”楊寧以所贈之少，怒且泣。上聞而笑之，更贈良馬一匹，因謂儼曰：“蒙皇帝恩德，孰如我哉？”使臣曰：“非特殿下，普天之下皆如此。”</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7월 20일(정미)</p>	<p>둔전(屯田)699)·연호미(烟戶米)700)의 법을 세웠다. 처음에 임금이 구언(求言)701) 하여 의정부로 하여금 채택 시행케 하니, 전조(前朝)702)의 둔전·연호미의 법을 복구하기를 원하여, 둔전(屯田)의 소출로는 선군(船軍)의 식량으로</p>	<p>丁未/立屯田、烟戶米法。初，上求言，令議政府採擇施行。願復前朝屯田、烟戶米法，以屯田所出，給船軍</p>

<p>1번째기사 둔전을 설치와 호구에 따라 쌀을 거두는 법을 정하다</p>	<p>로 주고, 연호미(烟戶米)로는 흉년에 진대(賑貸)할 것으로 대비하자고 하였다. 정부에서 수인(數人)이 그 말을 편하게 여겨, 이것을 시행하기를 청한 것이었다.</p>	<p>食; 以煙戶米, 備凶年賑貸者數人。政府以其言爲便, 請行之。</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7월 23일(경술) 1번째기사 가뭄으로 감선·금주·참형과 교형 외의 죄수를 방면하고, 구언하다</p>	<p>임금이 감선(減膳)707 하고 약주(藥酒)를 그만두었으며, 중외(中外)의 이죄(二罪) 이하의 죄수를 용서해 주었으니, 오래 가물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과인(寡人)이 우매(愚昧)하기 때문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니, 좌우의 신하가 황공[竦然]해 하고 감동(感動)하였다. 육조(六曹)·대간(臺諫)·장무(掌務)를 불러 말하였다. “가뭄이 너무 심하다. 내 상벌(賞罰)을 행함에 밝지 못하고, 사람을 씬에 적당함을 잃고, 궁금(宮禁) 안에서의 복어(服御)가 제도에 지나쳐서, 재변(災變)을 부른 것이 아닌가 염려되니, 마땅히 각각 직언(直言)하여 숨김이 없도록 하라. 내 그것을 고치겠다. 대신(大臣)으로 정부(政府)·육조(六曹)의 당상(堂上)이나 각도(各道) 도관찰사(都觀察使)가 될 만한 자와, 직질(職秩)은 비록 낮더라도 장수(將帥)가 될 만한 자, 대간(臺諫)이 될 만한 자의 이름을 갖추어 아뢰도록 하라. 내 그들을 채용(採用)하겠다.” 또 지신사 황희(黃喜)·대언 김과(金科)·윤사수(尹思修) 등을 불러 정치하는 대요[致治之要]를 극론하였다.</p>	<p>庚戌/上減膳止藥酒, 有中外二罪以下囚。以久旱也。上謂左右曰: “天之不雨, 只緣寡昧。” 因泣下, 左右竦然感動。 召六曹臺諫掌務曰: “旱氣太甚, 予恐賞罰無章, 用人失當, 宮禁之中, 服御過制, 以召災變。 宜各直言無隱, 予其改之。 大臣之可爲政府六曹堂上、各道都觀察使者, 與職秩雖卑, 可爲將帥者、可爲臺諫者, 具名以聞, 予其採之。” 且召知申事黃喜、代言金科·尹思修等, 極論致治之要。</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7월 25일(임자) 2번째기사</p>	<p>명하여 홍주(洪州) 임내(任內) 신평현(新平縣)의 전 낭장(郎將) 권지(權止)의 딸의 집문에 정표(旌表)하게 하였다. 권지의 딸은 나이 13세에 어미를 잃자, 여막(廬幕)을 무덤 곁에 짓고, 밤낮 슬프게 울었다. 목사(牧使) 안등(安騰)이</p>	<p>命旌表洪州任內新平縣前郎將權止女之門。 女年十三, 喪母廬墓, 日夜悲號。 牧使安騰以聞, 命旌其門, 優給豆米。</p>

<p>홍주 임내인 신평현의 낭장 권지의 딸에 대하여 정표하다</p>	<p>계문(啓聞)하니, 명하여 그 문에 정표하고, 미두(米豆)를 넉넉히 주게 하였다.</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3일(경신) 2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 절에서 기우 도량을 여는 것을 허락치 않다</p>	<p>사헌부에서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에서 술 쓰는 것을 금하도록 청하였다. 우정승 조영무(趙英茂)가 기우 도량(祈雨道場)을 장의사(藏義寺)에 베풀기를 청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절에 가서 비 내리기를 비는 것은 고례(古禮)에 없으니, 어찌 다시 잘못을 저지르겠는가?”</p>	<p>司憲府請禁中外用酒。 右政丞趙英茂, 請設祈雨道場於藏義寺, 上曰: “就寺禱雨, 未有古禮, 豈可再誤!”</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6일(계해) 2번째기사 하운에게 다시 정무를 보게 하다.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술을 올리다</p>	<p>하운에게 명하여 다시 정사를 보게 하였다. 정부에서 반찬[膳]을 그전대로 들기를 청하고, 또 술을 올리었다.</p>	<p>命河崙復視事。 政府請復膳, 且進酒。</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16일(계유) 1번째기사 부모를 뵈러 가는 내사 박인 등을 전송하고 쌀·콩을 하사하다</p>	<p>박인(朴麟) 등이 외방(外方)으로 아버이를 뵈러 떠났다. 박인은 낙안(樂安)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보고자 하고, 김희는 울주(蔚州)로 돌아가 아버지를 보고자 하니, 의정부에 명하여 송례문(崇禮門) 밖에서 전송하게 하고, 두 사람의 집에 미두(米豆) 각각 50석을 내려 주었다.</p>	<p>癸酉/朴麟等省親于外方。 麟歸樂安省母, 金禧歸蔚州省父。 命議政府餞之于崇禮門外, 賜二人家米豆各五十石。</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p>	<p>일본 일기주 지주(一岐州知主) 원양희(源良喜)가 사인(使人)을 보내 포로 76명을 돌려보내고 예물(禮物)을 바치니, 종정무(宗貞茂)도 토물(土物)을 바치었</p>	<p>日本一岐州知主源良喜, 使人發還俘虜七十六口, 獻禮物。 宗貞茂亦獻土</p>

<p>4년) 8월 6일(임진) 2 번째기사 일본 일기주 지주 원 양희가 포로 76명을 소환하고 종정무도 토 산물을 바치다</p>	<p>다.</p>	<p>物。</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11일(정유) 3번째기사 남번의 조와국 사신 진언상이 군산 근처의 섬에서 왜구에게 약탈 당하다</p>	<p>남번(南蕃)의 조와국(爪哇國) 745) 사신 진언상(陳彦祥)이 전라도(全羅道) 군산도(群山島)에 이르러 왜구(倭寇)에게 약탈을 당했다. 배 속에 실었던 화계(火雞)746) ·공작(孔雀)·앵무(鸚鵡)·앵가(鸚哥)747) ·침향(沈香)·용뇌(龍腦)·호초(胡椒)·소목(蘇木)·향(香) 등 여러 가지 약재와 번포(蕃布)를 모두 겁탈당하고, 피로(被虜)된 자가 60인, 전사자(戰死者)가 21인이었으며, 오직 남부(男婦)748) 를 합해 40인만이 죽음을 면하여 해안으로 올라 왔다. 진언상은 일찍이 갑술년에 봉사(奉使)로 내빙(來聘)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 조봉 대부(朝奉大夫) 서운 부정(書雲副正)을 제수하였던 자이다.</p>	<p>南蕃(瓜哇國) [爪哇國] 使陳彦祥, 至全羅道群山島, 爲倭所掠, 船中所載火雞、孔雀、鸚鵡、鸚哥、沈香、龍腦、胡椒、蘇木、(香) [木香] 等諸般藥材、蕃布, 盡被劫奪。 被虜者六十人、戰死者二十一人, 唯男婦共四十人脫死上岸。 彦祥, 嘗於甲戌年, 奉使來聘國朝, 拜朝奉大夫書雲副正者也。</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22일(무신) 4번째기사 권근에게 궁온과 노루 고기 등을 하사하다</p>	<p>공조 판서(工曹判書) 이내(李來)·우부대언(右副代言) 윤향(尹向)을 보내어, 궁온(宮醞)763) ·건장(乾獐)764) ·생장(生獐)765) 과 생선[鮮魚]을 권근(權近)에게 하사하였다. 그때에 권근이 아직도 복제(服制) 중에 있었는데, 오래도록 병이 낫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육선(肉膳)을 하사한 것이다.</p>	<p>遣工曹判書李來、右副代言尹向, 賜宮醞乾獐生獐鮮魚于權近。 時, 近尙在制中, 以久病未愈, 故賜肉膳也。</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8월 30일(병진) 1번째기사 임금이 덕수궁에서 가</p>	<p>임금이 덕수궁(德壽宮)으로 나아가 기거(起居)하였다. 처음에 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옥천군(玉川君) 유창(劉敞)이 덕수궁에 나아가서 전위(傳位)가 불가하다는 뜻을 갖추 아뢰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라, 내 또한 어찌 제지할 수 있겠는가? 나라에 대신(大臣)이 있으니 더욱 힘쓰라.”</p>	<p>丙辰/上詣德壽宮起居。 初, 吉昌君權近、玉川君劉敞, 詣德壽宮, 具陳傳位不可之意, 太上曰: “是或天之使然也。 予亦何能必止之乎? 國有大臣, 尙勉(哉)之哉!” 是日, 太上從容謂上</p>

자, 전위하려 했던 것을 태상왕이 책망하다

하였다. 이날 태상왕이 조용히 주상에게 말하기를,
 “근일의 일을 문무 대신(文武大臣)으로 나에게 고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길창군과 옥천군만이 달려와 울면서 고해 주었다. 나는 왕의 충신(忠臣)은 오직 이들 두 재신(宰臣)뿐이라 여긴다. 또 나라를 전하는 것은 국가의 대사(大事)인데, 왕이 나에게 고하지 아니함이 옳겠는가? 더구나 왕은 수염과 머리카락이 벌써 희어졌나? 학문(學問)이 아직 통하지 못하였나? 사리(事理)를 알지 못하는가? 갑자기 물러나 편안히 쉬려 하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내가 백세(百歲)를 맞은 뒤에는 자의(自意)대로 행하게 두겠지만, 아직 죽기 전에는 다시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다.”
 하고, 마침내 큰 잔에 술을 부어 왕에게 벌(罰)을 주려 하였다. 임금이 아뢰기를,
 “신(臣)이 혼자 들어와 곁에 모시고 있으니, 부왕(父王)의 말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태상왕이
 “옳도다.”
 하고, 즉시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불러 들여 앞서의 말을 전부 하였다. 황희가 말하기를,
 “여러 재상(宰相)들은 상감(上鑑)을 두려워하여 감히 모두 나오지 못하고, 권근과 유창을 시켜 온 나라 사람의 뜻으로 아뢰게 한 것뿐입니다.”
 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옳도다. 내가 전일에 일찍이 대신(大臣)들을 접견(接見)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하고, 인하여 황희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큰 잔(盞)으로 그대의 주상에게 술을 부어 권하라.”
 하였다. 임금이 자리를 피하여 부복(俯伏)하고 황희로 하여금 먼저 태상왕에

曰：“近日之事，文武大臣，無有告我者，唯吉昌君、玉川君，奔來泣告。吾謂王之忠臣，唯二宰臣耳。且傳國，國之大事，而王不告於予可乎？況王鬚髮已白歟？學問未通歟？事理不識歟？遽欲退安，亦何意歟？值予百歲之後，任行自意，未死之前，不欲更聞此言。”遂欲酌大卮罰之，上啓曰：“臣獨入侍側，父王之言，誰得知之？”太上曰：“然。”卽召知申事黃喜入，具道前語，喜啓曰：“諸宰相畏上鑑，未敢咸造，使權近、劉徹，以國人之意來啓耳。”太上曰：“然。予前日未嘗接對大臣故耳。”因謂喜曰：“汝以大杯，浮汝主上。”上離席俯伏，使喜先進于太上，太上曰：“雖爾之罰杯，予亦先飲也。”是日，上大醉還宮。

	<p>게 드리게 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비록 너의 벌주잔(罰酒盞)이나, 내 또한 먼저 마실 것이다.” 하였다. 이날 임금이 몹시 취하여 환궁(還宮)하였다.</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9월 6일(임술) 1 번째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다</p>	<p>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p>	<p>壬戌/太白晝見。</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9월 12일(무진) 1번째기사 포천·철원 등지에서 강무하여, 사냥한 노루 3마리를 덕수궁에 바 치다</p>	<p>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노루 세 마리를 덕수궁에 바쳤다. 임금이 포천(抱川) 등성이에서 고정모(高頂帽)를 쓴 두어 사람이 뒤쫓아 오는 것을 보고, 좌우(左右)에게 묻기를, “저들은 누군가?” 하니, “대언(代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을 멈추고 여섯 대언(代言)을 불러, 노희봉(盧希鳳)을 시켜서 각각 큰 바리[盃]에다 술을 부어 하사하고, 또 다시 큰 술잔[鍾]으로 한 잔씩을 하사하였다. 그리하여 좌대언(左代言) 윤사수(尹思修)는 영금영금 기어서 물러가고, 우대언(右代言) 권완(權緩)은 말을 타려 하다가 떨어지니, 임금이 웃었다. 이숙번(李叔蕃)을 불러 말하기를, “이곳에는 짐승이 적고, 날이 흐려서 비가 이처럼 내리니, 내 환궁하고자 한다.” 하였다. 이숙번이 대답하기를, “지나신 곳마다 예전부터 이와 같으니, 만약 철원(鐵原)지방으로 들어가시면</p>	<p>戊辰/上遣人獻獐三口于德壽宮。 上於抱川原上，望見戴高頂帽數人從後來者，問左右曰：“此輩何人？”對曰：“代言也。”上駐馬，召六代言，使盧希鳳各酌酒一大盃以賜之，復賜一大鍾。於是，左代言尹思修匍匐而退，右代言權緩欲乘馬而墜，上笑之。召李叔蕃曰：“此地禽獸少，而陰雨如此，予欲還宮。”叔蕃對曰：“所過之處，自古如此。若入鐵原之境，則原野始平，禽獸攸同。”上從之。己巳，入鐵原境，果如叔蕃之言。夕次鐵原新池之野，上馳逐于中軸之間。</p>

	<p>들이 평평하고 짐승도 꽤 많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3일[己巳]에 철원 지방에 들어가니, 과연 이숙번의 말과 같았다. 저녁 때 철원의 신지(新池)에서 행차를 멈추었다. 임금이 중축(中軸) 사이에서 말을 달리며 짐승을 쫓았다.</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9월 26일(임오) 2번째기사</p> <p>대마도 수호 종정무가 조와국 사신에게 약탈했던 공작 등의 물품을 바치다</p>	<p>대마도 수호(對馬島守護) 종정무(宗貞茂)가 사신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으니, 소목(蘇木)·호초(胡椒)와 공작(孔雀)이었다. 사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남번(南蕃)의 배를 노략하여 얻은 것입니다.”</p> <p>하였다. 사간원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진기(珍奇)한 새와 짐승은 나라에서 기르지 아니하는 것이 옛 교훈입니다. 하물며, 겁탈해 빼앗은 물건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물리쳐 받지 않으심이 옳겠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먼데 사람과의 관계를 중하게 여기시어, 공작을 상림원(上林園)에서 기르라고 명령하였다.</p>	<p>對馬島守護宗貞茂，遣使獻土物蘇木胡椒及孔雀。 使者自言掠南蕃船所得，司諫院上言：“珍禽奇獸，不畜於國，古之訓也。 況此剽劫之物乎？ 宜却而勿受。” 上重絕遠人，命畜孔雀於上林園。</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0월 13일(기해) 2번째기사</p> <p>검교 판내시부사 주윤단에게 물품을 하사하다</p>	<p>검교 판내시부사(檢校判內侍府事) 주윤단(朱允端)에게 미두(米豆) 20석과 약주(藥酒) 15병을 내려 주었다. 이때에 주윤단이 늙었기 때문에 사직(辭職)하고 유후사에 돌아와 있었다고 한다.</p>	<p>賜檢校判內侍府事朱允端米豆二十石、藥酒十五瓶。 時允端以老乞還，居留後司云。</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1월 5일(신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양주(楊州) 남교(南郊)에 나가 머물렀으니, 태상왕(太上王)의 환가(還駕)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태상왕이 양주 객사(客舍)에 머무르니, 임금이 알현(謁見)하고 술을 올려 매우 즐거웠다. 저물어서 남교의 장전(帳殿)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새벽에 태상왕이 출발하여 해촌(海村)의 들에 머무르니, 임금이</p>	<p>辛酉/上出次楊州南郊， 候太上之還也。 太上次楊州客舍， 上謁見， 進酒極歡。 暮， 還南郊帳殿。 翼日， 太上王曉發， 次于海村之郊， 上隨至進酒，</p>

<p>임금이 태상왕을 맞이하기 위해 양주에 가다</p>	<p>따라와서 술을 올리고, 넷가의 행전(行殿)으로 물러와서 머물었다.</p>	<p>退次于川邊行殿。</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2월 21일(병오) 1번째기사 일본 단주 수와 비주 수가 사신을 보내 소목 등의 물품을 바치다</p>	<p>일본국 단주수(丹州守)와 비주수(肥州守)가 사신을 보내어 소목(蘇木)·호초(胡椒)·옥대(玉帶)·창검(槍劍)·수우각(水牛角) 등의 물건을 바치었다.</p>	<p>丙午/日本國丹州守、肥州守，遣使來獻蘇木胡椒玉帶槍劍水牛角等物。</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2월 22일(정미) 1번째기사 동불을 바친 댓가로 명나라에서 서적·약재 등의 물품을 보내오다</p>	<p>조정(朝廷)의 내사(內史) 한첩목아(韓帖木兒)·양영(楊寧) 등이 오니, 임금이 시복(時服) 차림으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반송정(盤松亭)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산봉(山棚)을 베풀고, 백희(百戲)로 전도(前導)하여 창덕궁(昌德宮)에 이르렀다. 첩목아(帖木兒)가 조칙을 선포하고, 임금에게 산호간가람향모주(珊瑚間茄藍香帽珠) 1관(串), 저사(紵絲) 30필, 숙견(熟絹) 30필, 상아(象牙) 2척(隻), 서각(犀角) 2개, 《통감강목(通鑑綱目)》·《한준사서연의(漢準四書衍義)》·《대학연의(大學衍義)》 각 1부(部), 편뇌(片腦)·침향(沈香)·속향(束香)·단향(檀香)·소합유(蘇合油)·백화사(白花蛇)·주사(朱砂)·사향(麝香)·부자(附子)·금앵자(金櫻子)·육종용(肉蓯蓉)·과궤(巴戟)·당귀(當歸)·유향(乳香)·몰약(沒藥)·곽향(藿香)·영릉향(零陵香)·감송향(甘松香) 등의 약재(藥材) 18종[味]을 하사하였다. 이것은 황제가 우리 나라에서 동불(銅佛)을 바친 것을 기뻐하여 하사한 것이었다.</p>	<p>丁未/朝廷內史韓帖木兒·楊寧等來。上以時服，率百官出迎于盤松亭，結山棚，百戲前導，至昌德宮。帖木兒宣勅，賜王珊瑚間茄藍香帽珠一串，紵絲三十四、熟絹三十四、象牙二隻、犀角二箇、《通鑑綱目》、《漢準》、《四書衍義》、《大學衍義》各一部、片腦·沈香·束香·檀香·蘇合油·白花蛇·朱砂·麝香·附子·金櫻子·肉蓯蓉·巴戟·當歸·乳香·沒藥·藿香·零陵香·甘松香等藥材十八味。帝喜我進銅佛，故有是賜。</p>
<p>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p>	<p>제주(濟州)의 굶주림을 진휼(賑恤)하였으니, 전라도 관창(官倉)의 벼와 콩을 내어서 진대(賑貸)해 주었다.</p>	<p>賑濟州飢。發全羅道官倉稻豆，往貸之。</p>

<p>4년) 12월 28일(계축) 2번째기사 전라도 관청 창고의 곡식으로 제주의 기민 을 진휼하다</p>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월 4일(기미) 2 번째기사 본궁 수리를 시찰하고, 의안 대군 화의 집에 가다</p>	<p>본궁(本宮)에 행차하여 영선(營繕)하는 것을 시찰하고, 드디어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집에 가서 술[酒]을 베풀어 잔치를 내려 주고, 정포(正布) 40필을 폐백(幣帛)으로 주었다.</p>	<p>幸本宮視營繕，遂幸 義安大君 和第，置酒賜宴，幣正布四十匹。</p>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월 16일(신미) 1번째기사 백관의 녹봉 등급을 개정하다</p>	<p>백관의 녹과(祿科) 를 고쳐 정하였다. 좌정승(左政丞) 하운(河崙)이 말하기를, “각 품(品)의 녹과(祿科)가 같지 않으니 증감(增減)하여 상정(詳定)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과(一科) 안에 있는 대군(大君)·정승(政丞) 이상은 녹미(祿米) 1백 석(石), 주포(紬布)·정포(正布) 합하여 32필(匹)로 하고, 2과(二科) 안에 있는 제군(諸君)·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이상은 녹미 90석, 주포·정포 합하여 27필로 하고, 3과(三科)의 이성(異姓) 제군(諸君)과 개성 유후(開城留後) 이상은 녹미 85석으로 하고, 4과(四科)의 이성(異姓) 제군(諸君)과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 부유후(副留後) 이상은 녹미 80석, 주포·정포는 모두 다 26필로 하고, 5과(五科)의 이성(異姓) 제군(諸君)과 정3품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이상은 녹미 70석,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이상은 녹미 68석, 주포·정포는 모두 다 23필로 하고, 6과(六科)의 중3품은 녹미 65석, 주포·정포 합하여 21필로 하고, 7과(七科)의 정4품은 녹미 60석, 주포·정포 합하여 20필로 하고, 8</p>	<p>辛未/更定百官祿科。左政丞河崙言：“各品祿科不同，請增減詳定。”從之。一科在內大君、政丞已上，祿米一百石、紬布正布共三十二匹。二科在內諸君、議政府贊成事已上，祿米九十石、紬布正布共二十七匹。三科異姓諸君、開城留後已上，祿米八十五石。四科異姓諸君、開城留後司副留後已上，祿米八十石、紬布正布皆共二十六匹。五科異姓諸君、正三品成均大司成已上，祿米七十石，判典醫監事已上，祿米六十八石，紬布正布皆共二十三匹。六科從三品，祿米六十五</p>

	<p>과(八科)의 종4품은 녹미 55석, 주포·정포 합하여 19필로 하고, 9과(九科)의 정5품은 녹미 49석, 주포·정포 합하여 18필로 하고, 10과(十科)의 종 5품은 녹미 47석, 주포·정포 합하여 17필로 하고, 11과(十一科)의 정6품은 녹미 42석, 주포·정포 합하여 16필로 하고, 12과(十二科)의 종6품은 녹미 40석, 주포·정포 합하여 15필로 하고, 13과(十三科)의 정7품은 녹미 30석, 정포 10필로 하고, 14과(十四科)의 종7품은 녹미 28석, 정포 9필로 하고 15과(十五科)의 정8품은 녹미 23석, 정포 7필로 하고, 16과(十六科)의 종8품은 녹미 21석, 정포 6필로 하고, 17과(十七科)의 정9품은 녹미 16석, 정포 5필로 하고, 18과(十八科)의 종9품은 녹미 14석, 정포 4필, 권무(權務)는 녹미 9석, 정포 3필로 하였다.</p>	<p>石、紬布正布共二十一匹。七科正四品，祿米六十石、紬布正布共二十四。八科從四品，祿米五十五石、紬布正布共十九匹。九科正五品，祿米四十九石、紬布正布共十八匹。十科從五品，祿米四十七石、紬布正布共十七匹。十一科正六品，祿米四十二石、紬布正布共十六匹。十二科從六品，祿米四十石、紬布正布共十五匹。十三科正七品，祿米三十石、正布十四。十四科從七品，祿米二十八石、正布九匹。十五科正八品，祿米二十三石、正布七匹。十六科從八品，祿米二十一石、正布六匹。十七科正九品，祿米十六石、正布五匹。十八科從九品，祿米十四石、正布四匹。權務，祿米九石、正布三匹。</p>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월 19일(갑술) 2번째기사 영의정부사 성석린이 국방대책 등의 시무 20조를 진달한 상서문</p>	<p>“1. 각도(各道)의 잡공(雜貢)을 1, 2년(年)을 한(限)하여 모두 다 감면(減免)하고, 오로지 군량(軍糧)·군기(軍器)·병선(兵船) 등의 일로 힘쓰도록 하시고, 연례(年例)로 바치는 재목(材木)·기름[油]·꿀[蜜]·후지(厚紙)·화석(花席) 등도 더욱 폐단이 있사오니, 지주(旨酒)827) 와 조화(造花)는 오직 공상(供上)과 내연(內宴) 외에는 일체 금지(禁止)하고, 공사(公私)의 연음(宴飲)도 마땅히 엄(嚴)히 금하고, 무릇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의 쓸데없는 비용[冗費]은 모두 다 감손(減損)하여, 공사(公私)가 충족(充足)하기를 기다리소서. 쓸데없는 비용의</p>	<p>一，各道雜貢，限一二年，竝皆蠲免，專以軍糧軍器兵船等事爲務，其年例材木油蜜厚紙華席等，尤爲有弊。旨酒造花，唯供上內宴外，一切禁止；公私宴飲，亦宜堅禁；凡京外冗費，盡行減損，以俟公私充足。其冗費之目，班班可數，涓埃之積，終成丘池。</p>

	<p>종목(種目)은 환히 셀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과 티끌이 쌓이면 마침내는 구릉(丘陵)과 못[池]을 이루는 것입니다.”</p> <p>하였다. 정부에서는 의논하기를,</p> <p>“위의 조목(條目) 안에 후지(厚紙)·화석(花席)·지주(旨酒)·조화(造花) 등사(等事)는 공상(供上)을 제외한 이외에는 일체 모두 감손(減損)하고,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의 쓸데없는 비용은 자세히 조사하여 모두 다 감손하고, 공사(公私) 연음(宴飲)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행이(行移)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p> <p>하니, 명하기를,</p> <p>“한결같이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라.”</p> <p>하였다.</p>	<p>政府議得：“右條內，厚紙華席旨酒造花等事，除供上外，一皆減損；京外冗費，備細推考，竝皆減損；公私宴飲禁止，依已曾行移施行何如？”命一依議政府議得內施行。</p>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2월 1일(병술) 1번째기사</p> <p>일본 살마주 태수가 사자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日本) 살마주 태수(薩摩州太守)가 사자(使者)를 보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었다.</p>	<p>丙戌朔/日本 薩摩州太守，遣使來獻土物。</p>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2월 7일(임진) 1번째기사</p> <p>다시 둔전법과 연호미법의 실시 여부를 의</p>	<p>다시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에 명하여 둔전법(屯田法)과 연호미법(煙戶米法)의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들 행할 수 없다 하였으나, 오직 정승(政丞) 하윤(河崙)만이 편(便)하다고 고집하였다. 둔전법(屯田法)은 관가(官家)에서 실지로 전지(田地)를 지급하지 않고, 봄에 호구(戶口)마다 벼와 콩의 종자를 주고 가을에 가서 그 배(倍)를 거두는 것인데, 실상은 부세(賦稅)를 더 받는 것이다. 백성들이 모두 좋아하지 않고, 여러 신하들이 많이</p>	<p>壬辰/復命議政府、六曹、臺諫，議屯田煙戶米便否，皆以爲不可行，唯政丞河崙固執以爲便。屯田法，官實無田，春間戶給稻豆種，至秋(倍)〔倍〕收之，其實加賦也，民皆不悅。群臣多以爲言，故令議之。</p>

<p>논하게 하다</p>	<p>말하기 때문에, 이를 의논하게 한 것이었다. 환궁(還宮)하였다.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전사시(典社寺)에서 맛이 변한 녹해(鹿醢)857) 로 제사(祭祀)에 쓰오니, 심히 불가합니다. 청컨대, 강무(講武) 때에 잡은 것으로 짓을 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이 한 뒤에야 명실(名實)이 서로 맞는다. 강무(講武)하던 처음에 왜 고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드디어 잡은 사슴을 전사시에 보냈다.</p>	<p>癸卯/還宮。 黃喜啓曰：“典祀寺以改味鹿醢供祭祀，甚爲不可。 請以講武所獲作醢。” 上曰：“如此而後，名實相稱，於講武之初，何不告？” 喜對曰：“慮不及此， 今尙未晚。” 上曰：“然。” 遂以所獲之鹿，送典祀寺。</p>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2월 24일(기유) 1번째기사 종친에게 광연루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고 활쏘기를 구경하다</p>	<p>종친(宗親)을 광연루(廣延樓) 아래로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우대언(右代言) 권완(權緩)이 기녀(妓女)와 악공(樂工)들이 쌀을 달라고 청하는 단자(單子)를 소매 속에 넣었다가 올렸는데, 임금이 술이 취하였으므로,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에게 내주어서 올리게 하였다. 화(和)가 대강 임금께 여쭙니, 임금이 거짓 응락(應諾)하였다. 완(緩)이 물러가서 왕패(王牌)를 써서 기녀 9명에게 각각 쌀 2석(石)을, 악공 11명에게 각각 1석씩을 주었다. 헌부(憲府)에서 이를 듣고 탄핵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완(緩)이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명령을 받은 것이다.” 하였다. 민무질(閔無疾)이 아뢰기를, “무릇 쌀을 주는 것은 유사(有司)가 맡았으니, 완이 청할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잔치로 인해 취하신 틈을 타서 잠깐 아뢰고 갑자기 스스로 시행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p>	<p>太宗 13卷, 7年(1407 丁亥 / 명 영락(永樂) 5年) 2月 24日(己酉) 1번째기사 종친에게 광연루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고 활쏘기를 구경하다</p>

	<p>하였으나, 임금의 윤택하지 아니하고 완을 불러 공직(供職)하게 하였다. 이에 민무질 등이 모두 집으로 물러가니, 모두 출사(出仕)하라고 명하였다.</p>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3월 7일(신유) 2 번째기사 경상도 안동 북면의 채은(採銀)을 정지시키다</p>	<p>명하여 은(銀)을 캐는 것을 파(罷)하였다. 처음에 조정(朝廷)에 진헌(進獻)하는 은그릇[銀器]의 세공(歲貢)이 7백여 냥(兩)이나 되었으므로, 공조(工曹)에서 그 용도(用度)를 지출할 수가 없었다. 전 전서(典書) 윤전(尹璵)이라는 자가 상언(上言)하기를, “경상도(慶尙道) 안동(安東) 북면(北面)에 은갱(銀坑)이 있는데 캐 만합니다.” 하였다. 이에 그를 보내서 시험하였더니, 윤전이 인부 3백 명을 역사시켜 두어 달 동안에 겨우 3전(錢)을 얻었고, 또 많이 사익(私益)을 경영하므로, 관찰사(觀察使)가 그 일을 조사하여 아뢰니, 그 역사(役事)를 파(罷)하였다. 조금 뒤에 윤전이 또 풍해도에서 채은(採銀)할 것을 헌의(獻議)하니,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윤전은 성품이 본래 어리석고 고지식하여 채은(採銀)의 기술은 알지 못하고, 공(功)을 세우기를 탐하여 신사년 가을에 경상도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모아 산을 뚫으나, 마침내 1전(錢)도 얻지 못했고, 병술년 겨울에 또 김해(金海)·청도(淸道)로 돌아가서 군사를 모아 땅을 뚫으나, 또한 얻은 것이 없었고, 안동(安東)에서 얻은 것도 또한 3, 4전(錢)에 불과한데, 백성을 수고롭히고 재물(財物)을 손상시킨 것은 심합니다. 만일 윤전이 소비한 비용으로 은냥(銀兩)을 산다면 어찌 3, 4전(錢) 뿐이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봄일[春事]이 바야흐로 한창이어서 백성들을 역사시킬 때가 아니운데, 윤전이 또 풍해도(豊海道)에서 작폐(作弊)하고자 하니, 바라옵건대, 윤전을 소환(召還)하여 농시(農時)를 빼앗지 말도록 하여 민생(民生)을 이루게 하소서. 만일 말하기를, ‘은을 캐는 일은 사대(事大)의 일로써 폐(廢)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시 물리(物理)에 밝은 자를 택하여 농한기[農隙]를 당해 채굴(採掘)하게 한다면, 거의 민생(民生)이</p>	<p>命罷採銀。初，朝廷進獻銀器，歲貢七百餘兩，而工曹未能支其用。有前典書尹璵者上言：“慶尙道 安東北面，有坑可採。”乃遣試之。璵役丁夫三百數月，纔得三錢，且多營私利。觀察使按其事以聞，罷其役。既而，璵又獻議，採銀于豊海道。司諫院上言：璵性本頑戇，不知採銀之術，而貪於樹功，辛巳之秋，行遍慶尙道，聚民掘山，竟不得一錢；丙戌之冬，又歸金海、淸道，聚軍掘地，亦無所得；安東所得，亦不過三四錢，其勞民傷財甚矣。若以璵所費之廩，以買銀兩，則其所得，奚止三四錢哉？況今春事方興，非役民之日，而璵又欲作弊於豊海道。伏望召還尹璵，勿奪農時，以遂民生。若曰採銀，所以事大，所不可廢，則更擇明於物理者，當農隙以使之，庶乎民生遂，而所需得矣。 疏上留中，然遂罷其役。</p>

	이루어지고 구하는 것이 얻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소(疏)가 올라가매 궁중(宮中)에 머물러 두기는 하였으나, 마침내 그 역사를 파하였다.	
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3월 15일(기사) 4번째기사 안노생이 밤중에 빛을 내어 생불이라 일컫는 서역승이 중국에 왔음을 진하다	안노생(安魯生)이 말하였다. “황제가 불법(佛法)을 숭상(崇尚)하여 중[僧]이 서역(西域)에서 왔는데, 나이가 20여 세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존경하고 떠받들어 ‘생불(生佛)’이라고 하는데, 그 언행(言行)을 들어 보면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고, 구운 양(羊) 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등불과 같이 방광(放光)하는데, 이것이 이상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魯生言：“皇帝崇尚佛法，有僧來自西域，年二十餘，尊敬奉戴，名曰生佛。聞其言行，無異常人，好喫爛羊。然於夜中，放光如燈，此其異常而惑衆者也。”
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4월 15일(기해) 1번째기사 광연루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유관·노한 등을 위로하다	광연루(廣延樓)에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유관(柳觀)·성석인(成石因)·안노생(安魯生)·노한(盧閑)이 입시(入侍)하였다. 유관 등 세 사람은 경사(京師)에서 돌아왔고, 노한은 장차 경사에 조회하게 되므로, 특별히 위로한 것이었다.	己亥/置酒廣延樓，柳觀、成石因、安魯生、盧閑入侍。觀等三人，自京師回，閑則將朝京，故特慰之。
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4월 18일(임인) 1번째기사 문신들을 친히 시험하다. 시무책(時務策)의 글제	문신(文臣)들을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친히 시험하였는데, 좌정승(左政丞) 하운(河崙)·대제학(大提學) 권근(權近)으로 독권관(讀券官) 을 삼고, 이조 참의(吏曹參議) 맹사성(孟思誠)·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로 대독관(對讀官) 을 삼았다. 중외(中外)의 시산 문신(時散文臣) 중 3품(從三品) 이하 응시(應試)한 자가 1백 8인이었는데, 장막(帳幕)을 베풀고 종이[紙]·벼루[硯]·주과(酒菓)와 아침·저녁밥을 주고, 논(論)·표(表) 각 1도(道)를 시험하는 것으로 초장(初場)을 삼았는데, 논(論)의 글제는 ‘사문을 연다[關四門]’이고, 표(表)의 글제는 ‘안남	壬寅/親試文臣於廣延樓下。以左政丞河崙、大提學權近爲讀券官，吏曹參議孟思誠、知申事黃喜爲對讀官。中外時散文臣從三品以下赴試者，百有八人。設帳幕，賜紙硯酒菓及朝夕食。試論表各一道爲初場，論題曰關四門，表題曰賀平安南。問一日開終場，試

을 평정한 것을 하례한다[賀平安南]’이었다. 하루를 걸러서 종장(終場)을 열고 시무(時務)를 시험하였는데, 책(策)의 글체에 이르기를,
 “왕(王)은 이르노라. 옛날 제왕(帝王)이 법(法)을 세우고 제도(制度)를 정함에 반드시 시의(時宜)에 인하여 지치(至治)를 융성하게 하였으니, 당(唐)·우(虞)와 삼대(三代)의 치평(治平)을 이룬 도(道)를 들을 수 있는가? 정일 집중(精一執中)은 요(堯)·순(舜)·우(禹)가 서로 준 심법(心法)이고, 건중 건극(建中建極)은 상탕(商湯)·주무(周武)가 서로 전(傳)한 심법(心法)인데, ‘정(精)’이니 ‘일(一)’이니 하는 것은 그 공부(功夫)가 어떻게 다르며, ‘집(執)’이니 ‘건(建)’이니 하는 것은 그 뜻이 어떻게 같은가? ‘중(中)’이라고 말하면 극(極)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고, ‘극(極)’이라고 말하면 중(中)에 지나는 것 같으니, 두 가지를 장차 어떻게 절충(折衷)할 것인가? 읍량(揖讓)하고 정벌(征伐)하는 것과 문(文)과 질(質)을 손익(損益)하는 것이 일[事]과 때[時]가 다른데, 함께 다스림[治]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한(漢)·당(唐) 이후에서 송(宋)·원(元)에 이르기까지 대(代)마다 각각 다스림[治]이 있는데, 중도(中道)에 합하여 말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내가 부덕(否德)한 몸으로 한 나라의 신민(臣民)의 위[上]에 임(臨)하여 비록 덕교(德教)가 백성에게 미친 것이 없으나, 거의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소강(小康)을 이루기를 생각하여, 제왕(帝王)의 마음과 도(道)에 일찍이 뜻이 있어 배우기를 원해 정사(政事)를 듣는 여가에 경적(經籍)을 보고 그 뜻을 강구(講究)하나, 힘을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 동정(動靜)·운위(云爲)의 즘음과 정교(政教)·법령(法令)의 사이에 어찌 지나치고 불급(不及)하는 어긋남이 없겠는가? 지나쳐서 마땅히 덜어야 할 것은 무슨 일이며, 불급하여서 마땅히 보태야 할 것은 무슨 일인가? 지금 우리 나라는 창업(創業)한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법제(法制)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천도(遷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역사(役事)가 아직 그치지 않으니, 정치(政治)의 득실(得失)과 전리(田里)의 휴척(休戚)이 말할 것이 많다.

時務。策題曰：
 王若曰，古昔帝王，立法定制，必因時宜，以隆至治。唐、虞三代致治之道，可得聞歟？精一執中，堯、舜、禹相授心法；建中建極，商湯、周武相傳心法。曰精曰一，其功何異？曰執曰建，其義何同？謂之中，則未至乎極，謂之極，則似過乎中。二者將安所折衷歟？揖讓征伐，文質損益，事與時異，而同歸于治，何歟？漢、唐以降，迄于宋、元，代各有治，其有合乎中道而可述者歟？予以否德，莅于一國臣民之上，雖無德教可以及民，庶幾夙夜思致小康，其於帝王之心之道，蓋嘗有志而願學焉。聽政之暇，覽觀經籍，究求厥旨，而未知所以用力之方。動靜云爲之際，政教法令之間，豈無過與不及之差者乎？其有過而當損者何事，有不及而當益者何事歟？今我國家，創業未久，而法制尙未備；遷都未幾，而力役尙未弭。政治之得失，田里之休戚，可言者多，姑舉其大者言之。銓遷欲其精也，〔而〕僥倖冒進之未除，考績之法，何以合宜歟？田制欲其正也，而多寡高下之不均，踏驗之事，果能無議

	<p>우선 그 큰 것을 들어 말한다면, 전선(銓選)을 정(精)하게 하려 하나 요행(僥倖)으로 속여 나오[冒進]는 것이 제거되지 않으니, 공적을 상고하는 법[考績之法]이 어떻게 사의(事宜)에 합하겠는가? 전제(田制)를 바로[正]고자 하나 다과(多寡)와 고하(高下)가 고르지 못하니, 답험(踏驗) 하는 일이 과연 의논할 것이 없겠는가? 부역(賦役)은 고르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인보(隣保)의 제도와 호패(號牌)의 시설이 어떤 것이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조전(漕轉)은 급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해운(海運)의 모책(謀策)과 육수(陸輸)의 계책(計策)이 어떤 것이 쓸 만한 것인가? 의관(衣冠)의 법도(法度)는 모두 중국의 제도를 따르는데, 오직 여복(女服)만은 오히려 옛 풍속을 따르고 있으니, 이것은 과연 다 고칠 수 없는 것인가? 관혼(冠婚)·상제(喪制)도 또한 다 중국의 제도를 따라야 할 것인가? 무릇 이 두어 가지는 시위(施爲)하는 도(道)가 반드시 그 마땅함이 있을 것이다. 옛 것에 어그러지지 않고 지금에 해괴(駭怪)하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p> <p>현준(賢俊)들과 더불어 서정(庶政)을 함께 도모(圖謀)코자 생각하여 친히 자대부(子大夫)들을 뜰에서 책문(策問)하는 바이니, 정사(政事)를 하는 설(說)을 듣기를 원(願)하노라. 자대부들은 경술(經述)을 통(通)하고 치체(治體)를 알아서 이 세상에 뜻이 있는 자가 오래니, 제왕(帝王)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림[治]을 내는 도리와 지금의 법(法)을 세우고 제도(制度)를 정하는 마땅함을, 예전의 교훈(教訓)에 상고하고 시대에 맞는 것을 참작하여, 높아도 구차하고 어려운 것에 힘쓰지 않고, 낮아도 더럽고 친한 데에 흐르지 않도록 각각 포부를 다하여 모두 글에 나타내어라. 내가 장차 친히 보고 쓸지니라.”</p>	<p>歟? 賦役不可不均也, 隣保之制、號牌之設, 何者可行? 漕轉不可不急也, 海運之謀、陸輸之策, 何者可用歟? 衣冠法度, 悉遵華制, 而獨女服尚仍舊俗, 是果不得而盡革者歟? 冠婚喪制, 亦可盡從華制歟? 凡此數者, 施爲之道, 必有其宜。 伊欲使其不戾乎古而不駭於今, 其術安在? 思與賢俊, 共圖庶政, 親策子大夫于庭, 願聞爲治之說。 子大夫通經術識治體, 有志斯世久矣。 其於帝王存心出治之道, 當今立法定制之宜, 稽諸古訓, 酌乎時中, 高不務於苟難, 卑不流於污淺, 各底所蘊, 悉著于篇。 予將親覽而致用焉。</p>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5월 8일(신유) 3 번째기사</p>	<p>금주령(禁酒令)을 내리고 곧 약주(藥酒)를 정지하였으니, 가뭄 때문이었다. 제향(祭享) 및 태상왕(太上王)·상왕(上王)의 양전(兩殿)의 공상(供上)과 조정 사신(朝廷使臣)·이웃 나라 객인(客人)의 접대 외에는 일체 금하였다.</p>	<p>下禁酒令, 卽輟藥酒, 以旱也。 祭享及太上王上王兩殿供上, 朝廷使臣、隣國客人支應外, 一禁。</p>

가뭄으로 금주령을 내리다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5월 22일(을해) 1번째기사 가뭄이 심해 구언(求言)하니, 대사헌 성석인 등이 상소</p>	<p>구언(求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한데, 육조 판서(六曹判書)가 비록 대궐에 나와 조회(朝會)하여 아뢰기는 하나, 또한 말하는 것이 없으니, 금후로는 본사(本司)에 앉아서 각각 그 직책을 다하라.” 하고, 드디어 대간(臺諫)과 형조(刑曹) 장무(掌務)를 불러 묻기를, “지금 바야흐로 성하(盛夏)인데 가뭄 기운[旱氣]이 너무 심하니, 과인(寡人)이 덕(德)을 잃은 것이 있는가? 종친(宗親)이 부도(不道)함이 있는가? 대신(大臣)이 섭리(變理)를 잘못하는가? 이는 반드시 <가뭄을> 오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직책이 언관(言官)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한 마디 말도 여기에 미치는 바가 없는가?” 하니, 지평(持平) 민사정(閔思正)과 좌랑(佐郎) 홍복흥(洪復興) 등이 대답하기를, “가뭄을 오게 한 이유를 신 등은 알지 못합니다. 만일 말할 것이 있다면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좌정언(左正言) 정초(鄭招)는 대답하기를, “하늘과 사람이 한 이치이니,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느끼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당연한 이치[常理]입니다. 그러나, 어찌 감히 아무 일 때문에 아무 재앙이 왔다고 지적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소견(所見)으로는 새 법(法)이 매우 많아서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기 때문인가 합니다. 둔전(屯田)과 연호미(煙戶米) 같은 유(類)가 그것입니다. 연호미는 비록 백성을 위하여 설립했다고 하지만, 10호(戶)쯤 되는 고을[邑]에 가난한 사람이 8, 9호(戶)는 되는데, 쌀을 거둘 때를 당하면 부잣집에서 꾸어서 공가(公家)에 바치니, 다만 원망할 줄만 알지 어찌 장래의 이익을 알겠습</p>	<p>乙亥/求言。 上曰：“旱氣太甚，六曹判書，雖詣闕朝啓，亦無所言。今後坐本司，各盡其職。”遂召臺諫刑曹掌務問曰：“今方盛夏，旱氣太甚。寡人有失德歟？宗親有不道歟？抑大臣失於變理歟？是必有致之者。爾等職在言官，何無一言及此乎？”持平閔思正、佐郎洪復興等對曰：“致旱之由，臣等所不知，儻有可言，豈堪緘默！”左正言鄭招對曰：“天人一理，人事感於下，則天變應於上，是固常理。然豈敢指言以某事致某災？臣愚所見，新法頗多，民皆怨咨，若屯田煙戶米之類是已。煙戶米，雖爲民而設，然十室之邑，貧者八九戶。當收米之時，貸於富家而納於公家，但知怨咨，豈識將來之利乎？”上曰：“茲法之設，非寡人之獨斷，亦非政府之建白也，乃博訪於群臣而爲之耳。民若怨之，則何憚改之！不特此也。如有病民之事，悉陳無隱。”議政府使舍人李明德啓曰：“今以旱災，罷遣功役之徒，然社稷壇、倭客館，俱已垂成，宜於各品差出</p>

	<p>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 법(法)을 베푼 것은 과인(寡人)의 독단(獨斷)도 아니고, 또한 정부(政府)에서 건의[建白]한 것도 아니며, 여러 신하에게 널리 물어서 한 것이다. 백성들이 원망한다면 어찌 고치기를 꺼리겠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만일 백성에게 병폐가 되는 일이 있으면 숨김 없이 모두 말하여라.”</p> <p>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사인(舍人) 이명덕(李明德)을 시켜 아뢰기를,</p> <p>“지금 한재(旱災)로 인하여 역사(役事)하던 무리들을 파(罷)해 보냈으나, 사직단(社稷壇)과 왜객관(倭客館)이 모두 완성되어가니, 각 품(品)에서 인부(人夫)를 차출(差出)하여 공사를 마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노(怒)하여 말하기를,</p> <p>“가뭄이 심하여 영선(營繕)할 때가 아닌데, 어찌 마치기를 기다리겠느냐?”</p> <p>하고, 드디어 허락하지 않았다. 대사헌(大司憲) 성석인(成石因) 등이 상소(上疏)하기를,</p> <p>“근자에 한 달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한발(旱魃)이 재앙(災殃)이 되니, 그 연유를 알 수 없어 한갓 금심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달 22일에 특별히 신 등을 불러 재앙을 오게 한 연유를 물으시고, 재앙을 없애는 방도를 구하셨으니, 이것은 진실로 천심(天心)을 바로잡아 아름다운 징조[休徵]를 오게 하는 지극한 뜻입니다. 신 등이 어찌 감히 머리를 조아려 절[拜手稽首]하고 일득(一得)의 어리석은 소견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생각건대, 지금 명군(明君)과 현량(賢良)이 서로 만나고, 치구(治具)가 모두 베풀어져서, 날마다 대신(大臣)과 육조(六曹)·대간(臺諫)을 인견(引見)하고 다스리는 도리[治道]를 강마(講磨)하여, 은미(隱微)하고 억울한 것이 모두 통달되니, 어찌 천변(天變)을 부를 실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년(近年) 이래로 서리[霜]와 눈[雪]이 절후(節候)를 잃고, 매양 농삿달[農月]을 당하면 가뭄이 재앙이 되니, 이것은</p>	<p>人夫訖功。” 上怒曰：“旱甚，非營繕時也。 何待其畢也!” 遂不許。 大司憲成石因等上疏曰：</p> <p>近者彌月不雨，旱魃爲災，罔知端由，徒懷憂懼。 於今月二十二日，特召臣等，問以致災之由，求所以弭災之道，是誠格天心，以致休徵之至意。 臣等敢不拜手稽首，以言一得之愚! 竊惟當今明良相遇，治具畢張，日引大臣與六曹臺諫，講磨治道，幽枉畢達，則焉有感召天變之實? 然而近年以來，霜雪失節，每當農月，旱乾爲災，此臣等所以日夜憂懼而不知者也。 間獨惟念，孝爲百行之首，敬天勤民之實，皆由此出。 我殿下事親之孝，無有不至，而當視膳問安之際，太上殿下或有不肯接見之時，是殿下定省之禮，或有未盡其誠，不能感悟太上之心，而慈愛之道，猶有所缺焉耳。 斯乃往者天運艱難，禍患之機，間不容髮，殿下以宗社大計，應天順人，躬定大難，以安丕基。 雖政事之間，無大更革，奉養之禮，無有虧闕，而往者纖芥之嫌，未能融釋於胸中也。 伏望殿下盡其負罪引慝之誠，以致承順定省之禮， 十日一至而不得</p>
--	---	---

신 등이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홀로 생각하여 보면, 효도(孝道)는 백가지 행실(行實)의 첫머리여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한 실상이 모두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殿下)께서 부모를 섬기는 효도가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나, 수라상을 살피[視膳]고 문안(問安)할 때를 당하여 태상 전하(太上殿下)께서 간혹 접견(接見)하려 하지 않는 때가 있으니, 이것은 전하(殿下)의 정성(定省)하는 예(禮)가 혹 정성(精誠)을 다하지 못함이 있어 태상(太上)의 마음을 감동시켜 깨닫게 하지 못해, 자애(慈愛)하는 도(道)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입니다. 이것은 지난날에 천운(天運)이 간난(艱難)하여 화환(禍患)의 기틀이 위급한 찰나에 있으므로, 전하께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로 천명(天命)에 응(應)하고 인심(人心)에 순(順)히 하여, 몸소 큰 난(難)을 평정하여 비기(丕基)를 편안케 하셨는데, 비록 정사(政事) 사이에 크게 개혁(改革)한 것이 없고, 봉양(奉養)하는 예(禮)가 꺾(厥)함이 없으나, 지난날의 사소한 혐의(嫌疑)가 가슴속에 풀리지 못한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죄를 지[負罪]고 허물을 자인[引慝]하는 정성(精誠)을 다하여 승순(承順)·정성(定省)하는 예(禮)를 이루시어, 10일에 한번 가서 뵈지 못하거든 5일로 계속하고, 5일에 한 번 가서 뵈지 못하거든 2일로 계속하고, 2일에 한 번 가서 뵈지 못하거든 1일로 계속하여, 하루에 한번도 거르지 말고 가시어서 침문(寢門)에 부복(俯伏)하여 원모(怨慕)·호읍(號泣)하여, 아무리 수고로워도 이를 꺼리지 않은 연후에야, 태상(太上)의 마음이 거의 기뻐지고 자애(慈愛)의 정(情)이 처음대로 회복되어, 지난날의 작은 혐의가 환연(渙然)히 얼음 풀리듯 풀릴 것입니다. 아버이를 섬기는 것에 의하여 상제(上帝)를 섬기는 기틀이 거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천심(天心)이 순(順)해지면 음양(陰陽)이 화(和)하고, 풍우(風雨)가 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가뭄[旱乾]이 재앙이 되겠습니까? 정치(政治)에 미진(未盡)한 점이 있는 것은 전하께서 대신(大臣)과 더불어 그때 그때 조처하는 마땅함을 강구하시는

見，則繼以五日，五日一至而不得見，則繼以二日，二日一至而不得見，則繼以一日，以至無一日而不一至焉。俯伏寢門，怨慕號泣，雖勞不憚，然後太上之心，庶乎悅懌，慈愛之情，乃復其初，而往者纖芥之嫌，渙然冰釋矣。資於事親，以事上帝之機，庶其在此矣。若天心既順，則陰陽和而風雨時矣，尚何旱乾之爲患乎？其有政治未盡之目，則在殿下與大臣講求時措之宜，故臣等未敢悉其詳也。伏望殿下留意焉。

上覽疏，召持平閔思正曰：“孝事太上，予之本心也。汝等之言，殊激予心，予甚嘉之。”刑曹右參議安魯生等上疏曰：

主上殿下自踐祚以來，以生民爲重，除舊政之苛，致惟新之治，猶慮下民或有冤抑而未伸，鬪訟而不睦者，內設申聞鼓，以達下情，令憲司以繩不法，寡怨之方，息訟之術至矣。然兄弟姊妹伯叔父，一家之至親也。宜親愛而和睦，今以臧獲之故，忘親害義，骨肉相殘者多矣。卿大夫士庶人，尊卑異等，宜各守分而不相侵亂，不顧其義，惟利是

	<p>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감히 그 자세함을 다하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p> <p>하였다. 임금이 소(疏)를 보고 지평(持平) 민사정(閔思正)을 불러 말하기를, “효도(孝道)로 태상(太上)을 섬기는 것은 나의 본심(本心)이다. 너희들의 말이 내 마음을 매우 격동시키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p> <p>하였다. 형조 우참의(刑曹右參議) 안노생(安魯生)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백성들을 살리는 것으로 중사(重事)로 삼아, 구정(舊政)의 가혹한 것을 제거하고 유신(維新)의 정치를 가져왔으나, 오히려 아랫 백성이 혹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를 펴지 못함이 있을까 싸우고 송사(訟事)하여 화목(和睦)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궐내(闕內)에 신문고(申聞鼓)를 베풀어 아래의 민정(民情)을 통달하게 하고, 헌사(憲司)로 하여금 불법(不法)한 것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원망을 적게 하는 방법과 송사를 그치게 하는 술책(術策)이 지극합니다.</p> <p>그러나 형제 자매(兄弟姊妹)·백숙부(伯叔父)는 한 집안의 지친(至親)이니 마땅히 친애(親愛)하고 화목(和睦)해야 할 터인데, 지금 노비(奴婢)의 일로 인하여 친(親)한 것을 잊고 의(義)를 해치며 골육간(骨肉間)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자가 많습니다. 경대부(卿大夫)·사서인(士庶人)은 존비(尊卑)가 다르고 등급이 있어, 마땅히 각각 분수를 지키고 서로 침노하고 어지럽히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의(義)를 돌보지 않고 이익만 도모하여 사송(詞訟)이 날로 번다(繁多)하여 지고, 원망이 바야흐로 일어나서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여 수한(水旱)의 재앙을 부르니, 어찌 국가(國家)의 염려할 바가 아닙니까? 조·부(祖父)와 자·손(子孫)은 실로 한 기운[一氣]의 나뉘이니, 시구(鳴鳩)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어찌 자손(子孫)의 송사(訟事)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없는 자가 혹은 세가(勢家)의 아들이나 부잣집의 아들로 수양자(收養子)와 시양자(侍養子)를 삼는데, 모두 이익을 먼저하고 의리를 뒤로 하여, 골육(骨肉)과 천륜(天倫)의 비(比)는 아님</p>	<p>圖，詞訟日繁，怨讟方興，致傷和氣，召水旱之災，豈非國家之所慮乎？祖父之於子孫，實爲一氣之分也。體鳴鳩之心，則豈有子孫之訟乎？無後者，或以勢家之子、富家之子，爲收養侍養，皆先利而後義，非骨肉天倫之比也。奴婢與奪，雖曰財主之處分，非自己之物也，祖宗相傳之物也。既爲無後，獲莫大之罪於祖宗，雖感收養私恩，以義制之，一以歸於收養，一以歸於本宗，則恩義並行而兩全，無今日收養本宗之訟矣。大抵古今決訟之官，亦以財主之文爲重。臣等竊自以爲其文出於財主之本意者，什二三；非財主之本意，不得已而成者，十常八九。姦僞僥倖之徒，知官司之以文爲重，或因老病而冒受，或財主有志未就，已歿而追成者有之，或非財主之意而僞造者，亦有之。雖欲明辨，財主已歿，豈可得乎！不得者，於是憤怨，至於子孫，相繼報復，永爲世讎。若因循舊弊，不以公義斷之，則冤抑何伸，鬪訟何止乎？臣等謹以可行而宜於今者，條列於後，儻蒙俞允施行。一，兄弟以同氣之親，有不均相訟者，未合於天理人</p>
--	---	--

	<p>니다. 노비(奴婢)를 주고 빼앗는 것이 비록 재주(財主)의 처분이라고는 하나, 자기의 물건이 아니고 조종(祖宗)이 상전(相傳)한 물건입니다. 이미 무후(無後)하여 조종(祖宗)에게 막대한 죄를 얻었으니, 비록 수양(收養)의 사사 은혜[私恩]에 감사하더라도 의리로 제재(制裁)하여, 하나는 수양(收養)에 돌리고 하나는 본종(本宗)에 돌리면, 은혜와 의리가 아울러 행해져 둘다 온전하고, 오늘날의 수양(收養)과 본종(本宗)의 송사(訟事)가 없을 것입니다.</p> <p>대저 옛날에나 지금이나 송사를 판결하는 관원이 또한 재주(財主)의 문서(文書)로 중한 것을 삼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그 문서(文書)가 재주(財主)의 본의(本意)에서 나온 것은 열에 두셋이고, 재주의 본의가 아니고 부득이하여 이루어진 것이 열에 여덟·아홉[十常八九]은 됩니다. 간위(姦僞)하고 요행(僥倖)을 바라는 무리가 관사(官司)에서 문서(文書)를 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혹은 늙고 병든 것을 인연하여 속여 받고, 혹은 재주(財主)가 뜻이 있었어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죽은 뒤에 추후로 만든것도 있고, 혹은 재주(財主)의 뜻이 아니고 위조한 것도 있으니, 비록 밝게 분변(分辨)하고자 하나, 재주가 이미 죽었으니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노비를 얻지 못한 자가 분해 하고 원망하여, 그 자손들이 서로 이어 보복(報復)하기까지 하여 영구하게 대대(代代)의 원수가 되니, 만일 예전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여 공의(公義)로써 결단하지 않으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어떻게 펴며, 싸우고 송사(訟事)하는 것을 어떻게 그치게 하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행할 수 있고 지금에 마땅한 것을 뒤에 조목조목 열거하오니, 혹시라도 유운(兪允)하시어 시행하기를 바랍니다.</p> <p>1. 형제(兄弟)가 동기(同氣)의 친(親)으로서 고르게 차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서로 송사하는 자가 있는데,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합하지 않으니, 불효(不孝)한 형적이 현저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모(父母)의 노비(奴婢)를 문서의 있고 없는 것을 물론하고 평균(平均)하게 나누어 줄 것.</p>	<p>情。 除不孝之迹現著外， 父母奴婢， 勿論文契有無， 平均分給。 一， 婦人嫉妬之情， 古今同然， 故有子息， 後妻專執亡夫奴婢， 不給夫前妻之子， 深爲未便。 奴婢多則分三， 小則分二， 先給前妻之子， 其餘， 後妻役使； 當其身後， 前後妻子息等， 將先給奴婢， 平均分執。 一， 無後者， 以他人之子爲己子， 而稱收養侍養， 將祖宗奴婢全給之， 以開爭端， 未合於義。 勿論文契有無， 收養同姓者， 給二分之一， 異姓者， 給三分之一； 侍養同姓者， 給四分之一， 異姓者， 給五分之一； 其餘奴婢， 限使孫四寸， 論恩功多少差分； 無使孫四寸， 則依前判屬公。 一， 僧人放役法孫奴婢良後所生， 其弟子依俗人子孫之例， 濫執役使者及無傳繼法孫奴婢， 竝皆屬公。 一。 元告以無情之辭， 告而不得者， 從重論罪， 以杜爭端。 疏上留中。</p>
--	---	--

	<p>1. 부인(婦人)이 질투하는 정(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후처(後妻)가 죽은 남편의 노비(奴婢)를 전부 차지하고 전처(前妻)의 아들에게는 주지 않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노비가 많으면 3분(三分)하고 적으면 2분(二分)하여 먼저 전처의 아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후처에게 주어 부리도록 하되, 후처가 죽은 뒤에는 전처와 후처의 아들들이 먼저 준 노비를 평균하게 나누어 갖게 할 것.</p> <p>1. 아들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자기 아들을 삼아서 ‘수양(收養)’이니 ‘시양(侍養)’이니 칭(稱)하여, 조종(祖宗)의 노비(奴婢)를 전부 주어서 다툼질의 단서[爭端]를 열어 놓으니, 의리에 합하지 않습니다. 문서[文契]의 있고 없는 것을 논하지 말고, 수양자(收養子)가 동성(同姓)인 자는 2분의 1을, 이성(異姓)인 자는 3분의 1을 주고, 시양자(侍養子)가 동성인 자는 4분의 1을, 이성인 자는 5분의 1을 주고, 그 나머지 노비는 사손(使孫) 4촌(寸)에 한하여 은공(恩功)의 많고 적은 것을 논하여 차등 있게 나누어 주고, 사손 4촌이 없으면 전(前)의 판지(判旨)에 의하여 속공(屬公)할 것.</p> <p>1. 승인(僧人)의 방역(放役)된 법손 노비(法孫奴婢)가 양인(良人)이 된 뒤에 낳은 소생(所生)을 그 제자(弟子)가 속인(俗人)의 자손(子孫)의 예(例)에 의하여 함부로 차지해 사역시키는 것과 전계(傳繼)가 없는 법손 노비는 모두 다 속공(屬公)할 것.</p> <p>1. 원고(元告)가 실정(實情)이 없는 말로 고(告)하여 승소(勝訴)하지 못한 자는 중하게 논죄(論罪)하여 쟁단(爭端)을 막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소(疏)가 올라가매 궁중(宮中)에 머물러 두었다.</p>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5월 24일(정축)</p>	<p>황엄(黃儼)이 회암사(檜巖寺)에 가니,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에게 명하여 중들에게 밥을 먹일 준비를 제공하게 하였다.</p>	<p>丁丑/黃儼如檜巖寺， 命京畿都觀察使供飯僧之備。</p>

1번째기사 사신 황엄이 회암사에 가다		
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5월 26일(기묘) 1번째기사 비가 내리다. 의정부에 서 약주를 올리다	비가 내리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약주(藥酒)를 올리니 허락하고, 정부(政府)에 술 10병을 내려 주었다.	己卯/雨。 議政府進藥酒，許之，賜政府酒十瓶。
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5월 26일(기묘) 2번째기사 비가 오자 영의정부사 성석린에게 술을 내리 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에게 술 10병을 내려 주었다. 처음에 성석린에게 명하여 원단(圓壇)에 제사(祭祀)하게 하였는데, 비록 제사는 행하지 않았으나 재계(齋戒)한 뒤에 비가 내렸으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	賜領議政府事成石璘酒十瓶。 初，命石璘祀于圓壇，雖未行祭，既齋而雨，故有是命。
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5월 26일(기묘) 4번째기사 일기도의 대랑 오랑이 토산물을 바치다	일기(一岐)의 본정포(本井浦) 대랑(大郎)·오랑(五郎)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土物)을 바치고, 지주(知主) 원양희(源良喜)가 잡혀 갔던 인구(人口)를 돌려보내었다.	一岐 本井浦 大郎 五郎，使人獻土物，知主源良喜，發還被擄人口。
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16일(무술) 1번째기사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가서 김득(金得)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유사(攸司)에 명하여 김득 등의 부모(父母) 집에 각각 쌀·콩 20석씩을 주었다.	戊戌/上如太平館，宴金得等，命攸司賜得等父母家各米豆二十石。

<p>태평관에서 김득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 부모에게 곡식을 내려 주다</p>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18일(경자) 1번째기사 다시 육조와 대간에게 일을 아뢰 것을 명하고, 금주령을 내리다</p>	<p>다시 육조(六曹)와 대간(臺諫)에게 일을 아뢰 것[啓事]을 명하고, 대언(代言) 권완(權緩)에게 이르기를, “경(卿)은 직책이 호조(戶曹)를 겸하였으니 경외(京外) 미곡(米穀)의 다소(多少)를 알 것이다. 지금 절용(節用)994 의 방법을 거행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궁중(宮中)의 용도가 전날에 비하면 거의 반(半)이나 감(減)해졌고, 소환(小宦)으로 궁중(宮中)에서 먹고 있는 자가, 간혹 검소(儉素)하여 사가(私家)에서 먹는 것만도 못하다고 불만족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 내가 씹씹이의 절약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미곡(米穀)의 수량이 옛날보다 더 많아지지 않는가? 4, 5월에 가뭄을 당하여 내가 술[酒]을 정지하였었는데, 조금 뒤에 비가 왔으므로 대신(大臣)들이 술을 권하였고, 또 여름 달[夏月]에 약(藥)을 먹는 데 술이 없을 수 없으므로, 내가 그 말을 들었었다. 지금 또 비가 오지 않으니, 또 술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다. 두어 달 동안에 혹은 정지하고 혹은 마시고 하니, 이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천견(天譴)995 을 당해 공경하고 조심하는 지극한 뜻에 술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p>	<p>庚子/復命六曹臺諫啓事。 謂代言權緩曰：“卿職兼戶曹， 可以知京外穀米多少。 厥今節用之道， 非不舉行， 宮中用度， 比前日殆減其半， 小宦之食於宮中者， 或有慊其儉素不及私家之食者。 予於節用， 非不慮也， 何穀米之數， 不加多於昔日也？ 四五月之間當旱， 予乃輟酒， 既而有雨， 大臣勸酒， 且夏月飲藥， 不可無酒， 予且聽焉。 今又不雨， 又不可不輟。 數月之間， 或輟或飲， 是欺天也。 然當此天譴敬謹之至， 不可不輟也。”</p>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21일(계묘) 2번째기사 궁중에서 시험삼아 석</p>	<p>궁중(宮中)에서 석척 기우(蜥蜴祈雨)998 를 행하였다. 순금사 대호군(巡禁司大護軍) 김겸(金謙)이 말하기를, “전에 보주 수령(甫州守令)으로 있을 때 소동파(蘇東坡)의 시(詩)를 보니, ‘독 가운데 석척이 참으로 우습다.’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그 주(註)에 비를 비는 법이 갖추 실려 있으므로, 겸(謙)이 그 법에 따라 시험해서 과연 비를 얻었습</p>	<p>行蜥蜴祈雨于宮中。 上聞巡禁司大護軍金謙言， 前守甫州見東坡詩， 有甕中蜥蜴真堪笑之句， 注， 備載祈雨之法， 謙依其法試之， 果得雨。 是日， 召謙問之， 卽命試之於廣延樓下。 其法置</p>

<p>척 기우를 행하다. 행사 모습을 소개</p>	<p>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이날 김겸(金謙)을 불러 물어보고 곧 광연루 아래에서 시험할 것을 명하였다. 그 법은 뜰에다 물을 가득 넣은 두 개의 독[甕]을 놓고, 석척(蜥蜴)을 잡아다 독 가운데 넣고 자리[席]을 베풀고 분향(焚香)하며, 남자 아이 20인을 시켜 푸른옷을 입고 버들가지[柳枝]를 가지고 빌기를, “석척(蜥蜴)아! 석척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며 비를 주룩주룩 오게 하면 너를 놓아 보내겠다.” 고 하는 것이었다. 이틀 동안이나 빌었으나 비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동자(童子)들을 놓아 보내고 각각 쌀 1석씩을 주었다.</p>	<p>盛水二甕於庭，捕蜥蜴納之甕中，設席焚香，令童男二十人衣青衣，持柳枝祝曰：“蜥蜴蜥蜴！興雲吐霧。降雨滂沱，放汝歸去。”既二日不得雨，放童子，各賜米一石。</p>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28일(경술) 4번째기사 비를 빈 내삼시의 아이들에게 쌀 5석과 면포를 내리다</p>	<p>내삼시(內瞻寺) 아이들에게 쌀 5석과 면포(綿布)를 주었으니, 아이들이 내삼시의 서쪽 산마루에 모여서 비를 빌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이 하사(下賜)가 있었다.</p>	<p>賜內瞻寺童稚米五石及絺布。以童稚聚于其寺之西巔禱雨也。上聞之，有是賜。</p>
<p>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29일(신해) 5번째기사 여름에 보리 농사가 전혀 안되다</p>	<p>여름에 보리[麥]가 없었다.</p>	<p>夏無麥。</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p>	<p>전 총제(摠制) 김한로(金漢老)에게 쌀 1백 석을 주었다.</p>	<p>賜前摠制金漢老米一百石。</p>

<p>5년) 7월 5일(병진) 2 번째기사 전 총제 김한로에게 쌀 1백 석을 주다</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10일(신유) 1번째기사 비가 내리니 의정부에 서 약주 들기를 청하 다</p>	<p>비가 내렸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약주(藥酒)를 진어(進御)하기를 청하니 허락 하고, 또 의정부에 술을 내려 주었다.</p>	<p>辛酉/雨。 議政府請進藥酒，許之，又 賜酒于議政府。</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27일(무인) 3번째기사 경상도 일대에 왜인들이 의 장사배가 꼬리를 물다</p>	<p>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었다. “흥리 왜선(興利倭船)이 연속하여 나와서 경상도에 이르는데, 일시에 혹은 수 십 척이 됩니다. 무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유련(留連)하게 하 고, 혹은 흩어져 민호(民戶)에 들어가서 강제로 매매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금후로는 정한 곳에 와서 정박한 왜선에겐 연해(沿海)의 각 고을 창고에서 묵 은 쌀·콩으로 시가(時價)에 따라 무역하여, 그 왜선으로 하여금 즉시 본도(本 島)에 돌아가게 한 뒤에, 무역한 어염(魚鹽)을 관선(官船)에 싣고 낙동강(洛東 江)을 거쳐 상도(上道)에 정박하여, 각 고을의 자원하는 인민(人民)에게 쌀과 베[布]를 가리지 말고 하고 화매(和賣)하여 창고에 넣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議政府啓曰： 興利倭船，連續出來，至慶尙道，一時 或至數十隻；以無貿易者，動輒留連， 或散入民戶，抑賣驚擾。今後定處到 泊倭船，以沿海各官倉庫陳米豆，從時 價貿易，使其倭船卽還本島之後，將所 質魚鹽，載於官船，洛東江回泊於上 道，各官自願人民，勿論米布和賣，納 諸倉庫。 從之。</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29일(경진) 3번째기사</p>	<p>형조 정랑(刑曹正郎) 최자해(崔自海)·사헌 지평(司憲持平) 정촌(鄭村)·사간원 우정언(司諫院右正言) 이사징(李士澄) 등을 불러,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시켜 힐문하였다. “유기(柳沂)·김첨(金瞻)이 민무구(閔無咎)의 당(黨)이 되어 음모한 것이 무슨</p>	<p>召刑曹正郎崔自海、司憲持平鄭村、 司諫院右正言李士澄等，使知申事黃喜 詰問之曰：“柳沂、金瞻，爲無咎黨所 謀者何事？趙璞相爲表裏，與謀者何</p>

조박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한 형조 정랑 최자해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일인가? 조박(趙璞)이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음모에 참여한 것이 무슨 일인가? 신극례가 나[予]와 공신 유사(功臣有司)를 원망한 것은 무슨 일인가? 너희들이 들은 것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신극례가 원망하고 분개하여 한 말은 나라 사람이 아는 바이고, 조박은 인아(姻婭)의 지친(至親)이니 알지 못할 리 없을 것이고, 유기는 민무질 등과 본래 친하여 공신이 대궐에 나올 때에 병을 칭탁하고 참여하지 않았고, 김첨은 내선하려 할 때에 특별히 이의(異議)를 말하였으니, 반드시 꾀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너희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남의 죄를 부회(傳會)하여 만드니, 마땅히 국문을 가하여야 하겠다.”

하고, 곧 명하여 순금사(巡禁司)에 내리고 좌대언(左代言) 윤사수(尹思修)로 하여금 가서 국문하게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말이 곧지 않은 것이 있거든, 마땅히 곤장을 때리어 신문하라.”

하고, 이에 광연루(廣延樓)에 나아가서 정승(政丞) 성석린(成石璘)·이무(李茂)·부원군(府院君) 하운(河崙)·조영무(趙英茂)를 불러 친히 일렀다.

“오늘의 민무구 등이 곧 내일의 경들일 수 있다. 죄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기에 그 죄를 엮어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연루시키려 하는 게요? 민무질 등은 이미 불충하다는 죄명을 받아서 내가 이미 외방에 내쳤다. 조박 같은 사람은 무슨 범한 죄가 있기에 대간(臺諫)에서 죄주기를 청하며, 경들은 금하지 않는 게요? 바깥 사람이 들으면, 반드시 세자(世子)에게 변동(變動)이 있다고 의심할 것이니, 이것은 심히 상서로운 일이 아니다.”

하운이 대답하기를,

“과연 분부와 같습니다. 대간의 말은 신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事? 辛克禮怨予及功臣有司者何事? 若爾等所聞, 則又出於何處?” 對曰: “克禮怨忿之言, 國人所知, 趙璞姻婭至親, 不容不知; 柳沂與無疾等素交, 功臣詣闕之時, 托疾不與; 金瞻於內禪之時, 特出異言, 必有所謀。” 上怒曰: “汝等言皆不實, 傳致人罪, 宜加鞫問。” 卽命下巡禁司, 使左代言尹思修往鞫之, 且曰: “言有不直, 宜加杖訊之。” 乃御廣延樓, 召政丞成石璘·李茂·府院君河崙·趙英茂, 親諭之曰: “今日之無咎等, 卽明日之卿等也。有罪者幾人, 而欲羅織其罪, 延及他人乎? 無疾等既受不忠之名, 予已放之外方。若趙璞者, 有何所犯, 而臺諫請罪, 卿等不禁歟? 外人聞此, 必疑於世子有變動, 此甚非祥也。” 河崙對曰: “果如所命。臺諫之言, 臣所未聞也。” 石璘等避席, 請釋臺諫之罪, 上曰: “爲卿等姑徐之。” 石璘等頓首謝。上謂知申事黃喜曰: “自今臺諫彈啓, 必於都堂可否, 然後入啓。” 又命巡禁司, 毋鞫問臺諫, 仍與四人設小酌。上以芳幹妻之服, 不進肉膳, 崙亦持服。上顧謂崙曰: “卿若開素, 則

	<p>하고, 성석린 등은 자리를 피하여 대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청했다. 임금이, “경 등을 위하여 아직 천천히 처리하겠다.” 하니, 성석린 등이 돈수(頓首)하여 사례하였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에게 이르기를, “이제부터 대간에서 탄핵하여 아뢰는 것은, 반드시 도당(都堂)에서 가부를 물은 뒤에 입계(入啓)하도록 하라.” 하고, 또 순금사(巡禁司)에 명하여 대간을 국문하지 말도록 하고, 인하여 네 사람과 더불어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이방간(李芳幹)의 처(妻)의 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육선(肉膳)을 들지 않고, 하윤도 복제(服制)가 있었다. 임금이 하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이 만일 육선(肉膳)을 든다면 한 번 즐길 수 있겠는데…” 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에 육선(肉膳)을 바쳤다. 임금이 대간·형조에서 잇달아 신극례의 죄를 청하고, 지금 또 조박의 무리를 국문하기를 청하니, 반드시 지휘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정승들을 불러 그 뜻을 알린 것이다.</p>	<p>可以一歡。” 崙對曰：“唯命。” 乃進肉膳。 上意臺諫刑曹連請克禮之罪，今又請鞫問趙璞輩，必有指揮之者，故召政丞等，因以諭志。</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8월 6일(정해) 2 번째기사 강계의 공물인 청밀과 갑주의 공물인 관갑피 를 감면하다</p>	<p>강계(江界)의 세공(歲貢)인 청밀(淸蜜)과 갑주(甲州)의 관갑피(貫甲皮)를 감면하였으니, 대개 전과 같이 초피(貂皮)를 채포(採捕)하여 바치게 하고자 함이었다.</p>	<p>鐔江界歲貢淸蜜、甲州貫甲皮。 蓋欲使依前採捕貂皮以獻也。</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8월 8일(기축) 4 번째기사 세자를 따라 입조하는 관원에게 쌀과 베를 차등 있게 주다</p>	<p>세자(世子)를 따라 입조(入朝)하는 관원에게 쌀과 베를 차등 있게 주었으니, 행장(行裝)을 마련하는 데 쓰게 하려 함이었다. 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우정승(右政丞) 이무(李茂)에게 각각 쌀 1백 석, 정포(正布)·상포(常布) 각 1백 필씩을, 종인(從人) 4명에게 각각 쌀·콩 2석씩을 주고, 계성군(雞城君) 이내(李來)·제학(提學) 맹사성(孟思誠)·동지총제(同知摠制) 이현(李玄)에게 각각 쌀 60석과 상포(常布) 1백 필씩을, 종인(從人) 각 3명에게 쌀·콩 각 2석씩을 주고, 서장관(書狀官) 사간(司諫) 신상(申商)·집의(執義) 허조(許稠)·압물(狎物) 봉상령(奉常令) 이회(李薺)·압마(狎馬) 상호군(上護軍) 이공효(李公孝)에게 각각 쌀 10석, 콩 4석, 상포(常布) 50필씩을 주고, 차례로 사옹(司饗)과 구마인(驅馬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p>	<p>賜世子隨朝官米布有差。 備治裝也。 完山君 李天祐、右政丞李茂， 各米一百石、正布常布各一百匹， 從人四名， 各米豆各二石； 雞城君 李來、提學孟思誠、同知摠制李玄， 各米六十石、常布一百匹， 從人各三名， 米豆各二石； 書狀官司諫申商、執義許稠、狎物奉常令李薺、狎馬上護軍李公孝， 各米十石、豆四石、常布五十匹。 以次下至司饗驅馬人， 皆有賜與。</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8월 11일(임진) 1 번째기사 사신 윤봉·이달·김득남 등이 성친(省親)하러 가다</p>	<p>윤봉(尹鳳)·이달(李達)·김득남(金得南) 등이 그 고향으로 성친(省親)하러 가니, 명하여 각각 쌀·콩 20석씩을 주었다.</p>	<p>壬辰/尹鳳、李達、金得南等， 省親于其鄉， 命各賜米豆二十石。</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8월 16일(정유) 2 번째기사 내사 김득·김수를 승례문 밖에서 전송하다</p>	<p>김득(金得)·김수(金壽)가 돌아가니, 임금이 승례문(崇禮門) 밖에서 전송하고, 돌아오다가 장의동(藏義洞) 본궁(本宮)에 가서 영선(營繕)하는 것을 두루 살펴 보고, 드디어 인덕궁(仁德宮)에 나가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영안군(寧安君) 이양우(李良祐)·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정승(政丞) 성석린(成石璘)·이무(李茂) 등이 시연(侍宴)하였다. 상왕(上王)과 주상(主上)은 경순 궁주(慶順宮主)가 죽었기 때문에 모두 육선(肉膳)을 들지 않았었는데, 이날에 소선(素膳)을 그치었다.</p>	<p>金得、金壽還， 上餞之于崇禮門外， 還幸藏義洞本宮， 周視營構， 遂詣仁德宮置酒。 義安大君 和、寧安君 良祐、完山君 天祐、淸平君 李伯剛、政丞成石璘·李茂等侍宴。 上王及上， 以慶順宮主之卒， 俱不御肉膳， 是日開素。</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8월 27일(무신) 2번째기사 금주령을 거듭 내리다</p>	<p>금주령(禁酒令)을 거듭 밝혔으니, 헌부(憲府)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임금이 헌부의 소(疏)를 정부(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청하였다. “헌부(憲府)의 장신(狀申)에 의하여, 각사(各司)의 병술[瓶酒]과 영접(迎接)·전송(餞送), 사신(祀神)·다탕(茶湯)을 빙자하여 허비하는 따위의 일은 일절 금지하고, 조반(朝班)과 거리[街里]에서 술에 취하여 어지럽게 구는 대소 원리(大小員吏)를 또한 규찰(糾察)하게 하되, 다만 늙고 병들어서 약으로 먹는 것과 여리(閭里)에서 술을 팔아 살아가는 단한(單寒)한 자는 이 한계에 두지 않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申禁酒令。 從憲府之請也。 上下憲府疏於政府擬議， 政府請：“依憲府狀申， 各司瓶酒及迎餞祀神茶湯， 依憑糜費等事， 一行禁理； 朝班街里沈湎迷亂大小員吏， 亦令糾察， 惟老病服藥及閭里單寒買賣資生者， 不在此限。” 從之。</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9월 2일(임자) 3번째기사 청주(靑州)의 축성 공사가 끝나다</p>	<p>청주(靑州)에 성을 쌓았다. 이직(李稷)이 막관(幕官)인 전 지의주사(知宜州事) 황길지(黃吉至)를 보내어 성 쌓는 역사가 끝났다고 아뢰니, 황길지에게 표리(表裏)를 주고, 대호군(大護軍) 심정(沈澄)에게 선운(宣醞)을 주어 보내어 이직을 위로하게 하였다.</p>	<p>城靑州。 李稷遣幕官前知宜州事黃吉至， 啓城役畢。 賜吉至表裏， 遣大護軍沈澄， 賜宣醞以勞稷。</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9월 12일(임술) 1번째기사 세자를 수행할 이천우 등 일행과 돌아온 사신을 위해 광연루에서 잔치를 베풀다</p>	<p>광연루(廣延樓)에서 술자리를 베풀었으니, 중국에 조현(朝見)하는 데 수행하는 재집(宰執) 이천우(李天佑)·이무(李茂)·이내(李來)·맹사성(孟思誠)을 전송하고, 겸하여 남재(南在)·박은(朴崧)·이승상(李升商)의 가는 것을 전송하고, 설미수(偈眉壽)·함부림(咸傅霖)·노한(盧閑)의 돌아온 것을 위로함이었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이화(李和)·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과 종친(宗親)·부마(駙馬)가 시연(侍宴)하였다. 술이 취하매 연구(聯句)를 지었는데, 부림이 이르기 를, “사방에 의표(儀表)가 되니 일덕(一德)으로 돌아오네.”</p>	<p>壬戌/置酒廣延樓， 餞隨朝宰執李天佑、李茂、李來、孟思誠， 兼餞南在、朴崧、李升商之行， 慰偈眉壽、咸傅霖、盧閑之還也。 領議政府事李和、左政丞成石璘、宗親駙馬侍宴， 酒酣聯句。 傅霖進曰：“儀表四方歸一德。” 仍命二王子行酒極歡， 日暮乃罷。</p>

	<p>하니, 임금이 그 소리에 응하여 대답하기를, “만리에 간관(間關)한 것은 삼한(三韓)을 위함일세.” 하였다. 인하여 두 왕자(王子)에게 명하여 술잔을 돌리게 하고, 극진히 즐기다가 날이 저물어서 과하였다.</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9월 13일(계해) 2번째기사 이조 판서 남재등을 진위사로 보내다</p>	<p>이조 판서 남재(南在)·반성군(潘城君) 박은(朴崐)·계림군(鷄林君) 이승상(李升商)을 보내어 명나라 서울[京師]에 갔는데, 남재는 진위사(陳慰使)가 되고, 이승상은 부사(副使)가 되어 표(表)·전(箋)을 받들고, 박은은 진향사(進香使)가 되어 제문(祭文)을 받들었다. 그 사(詞)는 이러하였다. “지극한 곤순(坤順)은 참으로 건원(乾元)에 합하였고, 아름다운 숙덕(淑德)은 능히 지존(至尊)을 짝하였습니다. 이미 정숙(貞淑)하고 또 은혜(恩惠)로우며, 이미 검소하고 또 부지런하였습니다. 이에 조운(祚胤)을 낳아 태교(胎教)가 밝게 나타났습니다. 장차 만세를 수(壽)하시어 사방을 모욕(母育)하리라 생각하였더니, 어찌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우내(宇內)가 슬픔을 머금게 합니까! 돌아보건대, 소방(小邦)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지라, 부음(訃音)을 듣고 놀랍고 황망하여 울음을 삼키며 발을 구릅니다. 멀리서 비박(非薄)한 물건을 바치어 작은 정성을 펴니, 바라건대, 아름다운 영령(英靈)은 굽어 흠향하소서.” 인하여 전물(奠物)을 관비(辦備)하는 데 쓸 저포(苧布)·마포(麻布) 각각 1백필과 인삼(人蔘) 1백 50근(斤)을 가지고 갔다.</p>	<p>遣吏曹判書南在、潘城君 朴崐、雞林君 李升商如京師。在爲陳慰使，升商爲副使奉表箋，崐爲進香使奉祭文。 詞曰： 至哉坤順！允協乾元。於皇淑德，克配至尊。既貞且惠，既儉以勤。篤生祚胤，胎教孔彰。謂將萬世，母育多方。何天不憇，宇內銜恤！顧惟小邦，特蒙殊渥。聞訃驚惶，吞聲躑躅。遙薦菲薄，以敘寸忱。仰惟懿靈，冀垂俯歆。 仍齋備辦奠物合用苧麻布各一百匹、人蔘一百五十斤而去。</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0월 7일(정해) 2번째기사 서원군 정충의 처에게</p>	<p>서원군(西原君) 정충(鄭攄)의 처 김씨(金氏)에게 쌀·콩 각각 4석(石)과 보리 10석을 주었다.</p>	<p>賜西原君 鄭攄妻金氏米豆各四石、眞麥十石。</p>

<p>쌀과 콩 등을 내리다</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0월 30일(경술) 3번째기사</p> <p>신극례가 양주에서 죽다. 3일간 조회를 정지하다</p>	<p>신극례(辛克禮)가 양주(楊州)에서 죽었다. 그 가인(家人)들이 시체를 신고 성(城)으로 들어와서 그 집에 초빈(草殮)하니, 사간원(司諫院)에서 아전을 보내어 내쫓았다. 임금(上)이 신극례의 죽은 소식을 듣고, 종이 2백 권, 쌀·콩 각각 50석을 부의로 주고, 예조 좌랑(禮曹佐郎) 유면(兪勉)을 불러 정조장(停朝狀)을 올리라고 독촉하여, 마침내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다.</p>	<p>辛克禮死于楊州，其家人輿尸入城殮于家，司諫院遣吏黜之。上聞克禮之亡，賜賻紙二百卷、米豆各五十石，召禮曹佐郎兪勉，督上停朝狀，遂輟朝三日。</p>
<p>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1월 4일(갑인) 2번째기사</p> <p>성석린을 위해 의정부에 약주를 내려주다</p>	<p>의정부(議政府)에 약주(藥酒)를 내려 주었다. 임금(上)이 참찬(參贊) 유양(柳亮)에게 일렀다.</p> <p>“ 성 정승(成政丞) 은 나이 비록 늙었으나 뜻과 기운이 쇠하지 않았으니, 우리같은 조그만 나라에는 마땅히 이와 같은 노성(老成)한 대신이 있어야 한다. 내가 매양 정부의 아뢰는 것을 보면, 남에게 미움을 받을 내용이 매우 많은데, 내가 들으니, 정승이 항상 말하기를, ‘내가 늙었으니, 남에게 미움받는 것을 무어 꺼릴 것이 있겠는가? 일이 비록 남에게 거슬리더라도 이치에 합당하면 혐의할 것 없이 행(行)하겠다.’고 하였다 한다.”</p> <p>유양이 대답하기를,</p> <p>“정승이 일을 행하는 데에 조금도 잊거나 실수하지 않아서, 늙은 기(氣)가 없는 것 같습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내가 들으니, 정승이 집에 있을 때는 약주(藥酒)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 앉아서 금령(禁令)으로 인하여 마시지 못하니, 병이 날까 두렵다. 경 등은 마땅히 권하라.”</p> <p>하므로, 유양이,</p> <p>“특명(特命)이 없으니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p>	<p>賜議政府藥酒。上謂參贊柳亮曰：“成政丞年雖老，志氣不衰。如我小邦，宜有如此老成大臣，我每見政府所啓，見惡於人者頗多。吾聞政丞常曰：‘吾老矣，何憚見惡於人乎？事雖忤於人，苟當於理，則無嫌而行。’”亮對曰：“政丞於行事，暫不忘失，似無老氣。”上曰：“吾聞政丞在家，不離藥酒。今坐政府，因禁令不能飲，恐致疾病。卿等當勸之。”亮曰：“無特命，何敢飲！”乃有是賜。</p>

	하였다. 이리하여 이러한 하사(下賜)가 있었다.	
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1월 20일(경오) 2번째기사 고 상호군 박순의 처 에게 쌀과 콩을 내리 다	고(故) 상호군(上護軍) 박순(朴淳)의 처 임씨(任氏)에게 쌀·콩 10석을 내려 주었다.	賜故上護軍朴淳妻任氏米豆十石。
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2월 27일(병오) 1번째기사 좌부대언 유두명의 부 친상에 쌀·콩·종이를 부의로 내려주다	좌부대언(左副代言) 유두명(柳斗明)의 아버지의 상(喪)에 쌀·콩 30석, 종이 2백 권을 부의로 내려 주었다.	丙午/賜賻左副代言柳斗明父喪米豆三十石、紙二百卷。
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2월 28일(정미) 1번째기사 평미례를 쓰지 않고 큰 말[大斗]을 써서 수조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다	관리(官吏)에게 명하여 공사전(公私田)의 수조(收租)하는 폐단을 엄하게 금지하였다. 간혹 평교(平校)의 말[斗]과 되[升]를 쓰지 않고 큰 말[大斗]로 중하게 거두어, 폐단을 일으키기 때문이었다.	丁未/命官吏痛禁公私田收租之弊。或有不用平校斗升，而以大斗重斂作弊故也。
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2월 30일(기유)	군기감(軍器監) 화약장(火藥匠) 33명에게 각각 쌀 1석씩을 내려 주었다. 제야(除夜)에 군기감에서 화산대(火山臺)를 대궐 가운데 베풀었는데, 화약의 맹렬하기가 전날에 배나 되어, 왜사(倭使)가 와서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賜軍器監火藥匠三十三名各米一石。除夜，軍器監設火山臺于闕中，火藥之烈，倍於前日。倭使來觀，莫不驚

<p>2번째기사 군기감 화약장 33명에 게 쌀 1석씩을 내려주 다</p>	<p>자가 없었다. 제색(諸色) 장인(匠人)에게도 추포(麤布) 50필을 내려 주었다.</p>	<p>佈。 諸色匠人，亦賜麤布五十匹。</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월 26일(을해) 2번째기사 일본의 원만직이 예물 과, 불로원이라는 약 1백 개를 바치다</p>	<p>일본(日本)의 원만직(源滿直)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예물(禮物)을 바치고, 또 불로원(不老圓) 1백 개[粒]를 바쳤는데, 나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약(藥)이었다.</p>	<p>日本原〈源〉滿直，遣使獻禮物，且獻不老圓百粒，國人所未達也。</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2월 3일(임오) 1 번째기사 혜화 궁주 이씨의 졸 기</p>	<p>혜화 궁주(惠和宮主) 이씨(李氏)의 상(喪)에 부의(賻儀)를 내려 주었다. 궁주(宮主)는 고려(高麗) 시중(侍中) 이제현(李齊賢)의 딸인데, 공민왕(恭愍王)이 아들이 없어 후궁(後宮)에 뽑아들여 혜비(惠妃)로 봉(封)하였고, 뒤에 여승(女僧)이 되었을 때에는 정업원(淨業院)에 머물러 있었다. 쌀·콩 30석과 종이 1백 권을 부의(賻儀)로 주고, 소도군(昭悼君)의 처(妻) 심씨(沈氏)로 대신 정업원의 주지(住持)를 삼았다.</p>	<p>壬午/賜賻惠和宮主李氏之喪。 宮主，高麗侍中齊賢之女。 恭愍王無子，選入後宮，封惠妃，後爲尼，時住淨業院。 賻米豆三十石、紙百卷，以昭悼君妻沈氏，代爲淨業院住持。</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2월 4일(계미) 4 번째기사 세자의 경사 도착 소 식을 전한 서장관 박 강생 등에게 쌀·콩을 내려주다</p>	<p>진위사(陳慰使)의 서장관(書狀官) 박강생(朴剛生)·통사(通事) 장홍수(張洪壽)에게 각각 쌀·콩 20석(石)을 내려 주었다. 박강생 등이 경사(京師)로부터 돌아와서, 세자(世子)가 경사(京師)에 도착한 뒤에 황제께서 접대하는 것이 매우 넉넉하고 후하다고 갖추 아뢰니, 임금의 기뻐하여 이 상사(賞賜)가 있는 것이었다.</p>	<p>賜陳慰使書狀官朴剛生、通事張洪壽各米豆二十石。 剛生等回自京師，備啓世子赴京， 皇帝接待優厚之狀， 上悅，有是賜。</p>
<p>태종 15권, 8년(1408</p>	<p>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에게 쌀·콩 40석을 내려 주었다.</p>	<p>賜閔無咎、無疾米豆四十石。</p>

<p>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2월 25일(갑진) 2번째기사 민무구·무질 형제에게 쌀·콩을 내려주다</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2월 28일(정미) 1번째기사 대언 윤수의 장례에 쌀·콩·종이를 부의하고 관곽을 내려주다</p>	<p>윤수(尹須)의 상(喪)에 쌀·콩 30석, 종이 1백 권을 부의(賻儀)하고, 유사(有司)에 명하여 관곽(棺槨)을 주었으니, 윤수가 대언(代言)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하사(下賜)가 있는 것이다.</p>	<p>丁未/賻尹須之喪米豆三十石、紙一百卷，仍命有司給棺槨。須以代言死，有是賜。</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3월 7일(병진) 2번째기사 서북면 가주의 효녀 충개에게 정려문을 세워 주다</p>	<p>가주(嘉州)의 충개(蟲介)라는 여자의 문려(門閭)1180) 를 세워 정표(旌表)1181) 하도록 명하고, 인하여 쌀·콩 20석을 주었다.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 이귀철(李龜鐵)이 상언(上言)하기를, “도내(道內) 가주(嘉州)에 이름이 충개(蟲介)라는 여자가 있사운데, 나이 16세 때에 그 어미가 악질(惡疾)에 걸렸으므로, 충개가 산 사람의 뼈를 먹이면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오른손 무명지(無名指)를 잘라서 가루를 만들어 먹이고, 또 그 뼈를 백회혈(百會穴) 가운데에 넣어 두었는데, 어미 병이 곧 나아서 지금 7년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이리하여 이 명령이 있는 것이었다.</p>	<p>命旌表嘉州虫介女門閭，仍給米豆二十石。西北面都巡問使李龜鐵上言：“道內嘉州，有女名虫介，年十六時，其母得惡疾。虫介聞生人之骨可治，遂折右手無名指，作末食之，又以其骨納諸百會穴中，母病即愈，今七年矣。”故有是命。</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3월 10일(기미) 1번째기사 제릉의 돌난간과 돌장</p>	<p>관공안부사(判恭安府事) 박자청(朴子靑)과 검교 관한성부사(檢校判漢城府事) 유한우(劉旱雨)에게 전지(田地) 40결(結)씩을 주고, 또 선공 소감(繕工少監) 홍이(洪理)에게 말[馬] 1필을, 주부(注簿) 반영(潘泳)에게 쌀·콩 15석을, 사복 직장(司僕直長) 이형(李迥)에게 쌀·콩 20석을 주었다. 박자청(朴子靑) 등이 제릉(齊陵)의 석란(石欄)과 석인(石人) 등의 역사(役事)를 감독해 끝내었으므로</p>	<p>己未/賜判恭安府事朴子靑、檢校判漢城府事劉旱雨田各四十結，又賜繕工少監洪理馬一匹，注簿潘泳米豆十五石，司僕直長李迥米豆二十石。子靑等監督齊陵石欄石人等役告訖，賞之也。</p>

<p>승의 공사를 감독한 관공안부사 박자청 등에게 상을 주다</p>	<p>상준 것이었다.</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3월 21일(경오) 6번째기사 녹전 차사원으로서 되를 속인 박지를 인주로 귀양보내다</p>	<p>서흥 현령(瑞興縣令) 박지(朴持)를 인주(仁州)로 귀양보내었다. 헌부(憲府)에서 상언(上言)하기를, “박지(朴持)는 정해년에 풍해도(豐海道) 녹전 차사원(祿轉差使員)이 되어 계수관(界首官)의 평교 두승(平校斗升)을 쓰지 않고 임의로 각관(各官)의 말[斗]과 되[升]를 마음대로 조작[雕掘]하여, 매(每) 한 말에 한 되를 남기고, 한 되에 두 홉을 남기었으니, 백성을 병들게 하고 환(患)을 끼친 죄가 심합니다.” 하여, 귀양보내었다.</p>	<p>流瑞興縣令朴持于仁州。 憲府上言：“持爲丁亥年豐海道祿轉差使員， 不用界首官平校斗升， 擅將各官斗升， 自加雕掘， 每一斗剩一升， 每一升剩二合， 病民貽患， 其罪甚矣。” 乃流之。</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3월 24일(계유) 2번째기사 완평군 이조의 졸기</p>	<p>완평군(完平君) 이조(李朝)가 죽으니 부의(賻儀)로 쌀 40석, 콩 30석, 종이 백 50권을 내려 주고, 조회(朝會)를 3일 동안 정지하였다. 이조는 이원계(李元桂)의 아들이다.</p>	<p>完平君李朝卒。 賜賻米四十石、豆三十石、紙百五十卷， 輟朝三日。 朝， 元桂之子也。</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4월 2일(경진) 4번째기사 세자가 동궁과 한왕에게 예를 행하려고 했으나 모두 그만 두게 하다</p>	<p>황제가 내전(內殿)으로 들어가고 서각문(西角門)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 세자가 동궁(東宮)과 한왕(漢王)에게 예(禮)를 행하려고 하니, 모두 사람을 시켜 예(禮)를 그만두게 하므로 관(館)에 돌아왔다. 황제가 황엄(黃儼)과 이부 상서(吏部尙書) 건의(蹇義)를 시켜 석반(夕飯)을 대접하게 하고, 또 야포(椰瓢)와 과일(果實)을 주었다. 세자가 청사(廳舍)로 맞아들여, 황엄과 건의는 동쪽에, 세자는 서쪽에서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다.</p>	<p>帝入內， 賜食于西角門。 世子欲展禮於東宮及漢王， 皆使人免禮， 乃還館。 帝使黃儼及吏部尙書蹇義， 來對夕飯， 且賜椰瓢果實。 世子迎入廳， 黃儼、蹇義在東， 世子在西， 行再拜禮。</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p>	<p>황제가 서각문(西角門)에 좌기(坐起)하니, 세자(世子)가 예궐(詣闕)하여 사은(謝恩)하였다. 황제가 또 뜰[陞]에 오르기를 명하고 묻기를,</p>	<p>帝御西角門， 世子詣闕謝恩， 帝又命升陞， 問發王京幾日， 又問：“讀書乎？”</p>

<p>6년) 4월 2일(경진) 5 번째기사 세자가 예궐하여 사은 하니 황제가 글을 읽 는지를 묻다</p>	<p>“왕경(王京)을 출발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느냐?” 하고 또 묻기를, “글을 읽느냐?” 하였다. 대답하기를, “글을 읽습니다.” 하였다. 물러나오매, 호부 상서(戶部尙書) 하원길(夏原吉)과 황엄(黃儼)·한첩목 아(韓帖木兒)·상보시 승(尙寶寺丞) 기원(奇原)이 와서 석반(夕飯)을 같이 하였 다. 이 뒤로부터 황엄 등 세 사람이 매일 한 번씩 오고, 육부 상서(六部尙書) 가 차례로 왔다.</p>	<p>對曰：“讀書。” 既退，戶部尙書夏原 吉及黃儼、韓帖木兒、尙寶司丞奇原， 來對夕飯。 自是儼等三人，每日一至， 六部尙書以次而來。</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4월 2일(경진) 15번째기사 황제가 세자 일행에게 금은 등을 내리다. 시 종관들에게 차운하라 며 준 찬불시</p>	<p>황제가 세자를 불러 뜰[陞] 앞에 나오게 하고 묻기를, “네가 명일(明日)에 떠나느냐?” 하였다.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부(禮部)에서 전례(前例)가 없다 하여 장행마(長行馬) 50필(匹)의 초료(草料)를 주지 않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예부(禮部)와 병부(兵部)에 명하기를, “각각 사람을 차출(差出)하여 반송(伴送)하라. 짐(朕)도 또한 내관(內官)을 차 출하여 요동(遼東)에 보내겠다.” 하고, 세자에게 명하기를, “네가 중로(中路)에서 먼저 본국(本國)에 통보하여 요동(遼東)에서 맞이하게 하라.” 하였다. 세자가 고두(叩頭)하고 내려왔다. 계성군(雞城君) 이내(李來)와 제학(提學) 맹사성(孟思誠)·봉상령(奉常令) 이회(李薈)가 각각 세자(世子)에게 내려 준 어제시(御製詩)의 운(韻)을 화답(和答)하여 드리니, 황제가 불러 뜰 [陞]에 오르게 하고 보았다. 황제가 무영전(武英殿)에 좌기(坐起)하여 세자(世 子)를 불러 말 4필을 내려 주고, 또 건마(乾馬) 둘, 건양(乾羊) 여덟, 건아(乾</p>	<p>帝召世子就陞前問曰：“爾明日發行 乎?” 對曰：“然。 但禮部以無前例， 不給長行馬五十匹草料。” 帝命禮部 兵部曰：“各差人伴送，朕亦差內官送 遼東矣。” 命世子曰：“爾於中路，先 報本國，使之迎于遼東。” 世子叩頭而 下。 雞城君李來、提學孟思誠、奉常 令李薈，各和賜世子御製詩韻以獻，帝 召陞陞而見之。 帝御武英殿，召世子， 賜馬四匹，又賜乾馬二、乾羊八、乾鵝 二十、圓眼荔枝橘椰瓢魚醢摠十六 擔、寶鈔一千貫、墨五丁。 凡賜物， 帝必親視，然後使黃儼押送于館。 當 受賜之際，世子謝曰：“朝貢，臣子所 當爲，不意聖恩至此。” 因泣下，帝再</p>

	<p>鵝) 스물, 원안(圓眼)·여지(荔枝)·귤(橘)·야포(椰瓢)·어해(魚醢) 모두 열 여섯 짐 [擔]과 보초(寶鈔) 1천 관(貫), 먹[墨] 다섯 정(丁)을 주었다. 무릇 사물(賜物)은 황제가 반드시 친히 본 연후에 황엄(黃儼)을 시켜 관(館)에 압령(押領)해 보내었다. 사물(賜物)을 받을 때에 세자가 사례하여 말하기를, “조공(朝貢)은 신자(臣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성은(聖恩)이 여기에 이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니, 황제가 재언(再言)하기를, “시종(始終) 한결같이 하라.” 하였다.</p>	<p>言終始如一。</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4월 3일(신사) 1 번째기사 태상왕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니, 임금과 상왕이 간병하다</p>	<p>태상왕(太上王)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니, 상왕(上王)이 의위(儀衛)를 기다리지 않고 수레를 재촉하여 병환을 묻고, 곁에서 모시고 잤다. 주상(主上)은 항상 곁을 떠나지 않고 음선(飲膳)과 약(藥)을 반드시 친히 맛본 뒤에 드리었다.</p>	<p>辛巳/太上王疾彌留， 上王不待儀衛， 促駕問疾， 侍側而寢。 上常不離於側， 飲膳藥餌， 必親嘗而後乃進。</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5월 4일(임자) 2 번째기사 황엄 등이 금강산의 표훈사에 가서 견 30필을 공양하다</p>	<p>황엄(黃儼) 등이 금강산(金剛山)의 표훈사(表訓寺)에 이르러 견(絹) 30필(匹)을 내어 반승(飯僧)1244의 비용에 충당하였다. 황엄 등이 도관찰사(都觀察使) 윤사수(尹思修)에게 부탁하기를, “채견(綵絹) 1필(匹)에는 쌀 4석(石) 생견(生絹) 1필(匹)에는 쌀 3석(石)으로 하여 승도(僧徒)들에게 공급(供給)하라.” 하였다. 윤사수가 아뢰니 창고(倉庫)의 쌀로 주라고 명하였다.</p>	<p>黃儼等至金剛山表訓寺， 出絹三十四， 充飯僧之費。 儼等囑都觀察使尹思修曰：“綵絹一匹米四石， 生絹一匹米三石， 以供僧徒。” 思修以啓， 命以倉庫米給之。</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5월 19일(정묘)</p>	<p>황엄(黃儼) 등이 금강산(金剛山)에서 돌아왔다. 황엄 등이 전하(殿下)의 출영(出迎)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양주(楊州)로부터 말을 달려 태평관(太平館)에 들어갔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보내 문위(問慰)하였다. 황</p>	<p>黃儼等來自金剛山。 儼等不欲煩殿下出迎， 自楊州疾驅入太平館， 上遣知申事黃喜問慰。 儼等至金剛山， 仰見空</p>

<p>2번째기사 황엄 등이 금강산에서 돌아오다</p>	<p>엄 등이 금강산에 이르러 공중(空中)을 우러러보니, 오색(五色) 구름이 흩어져 꽃이 되어 날아 내려오고, 또 백학(白鶴)과 청학(靑鶴)이 산중(山中)에서 날며 춤을 추었다. 황엄이 이에 종자(從者)에게 경계하여 소찬(素餐)을 먹게 하고 살생(殺生)하지 말게 하였다.</p>	<p>中有五色雲散爲花而飛下，又有白鶴靑鶴翔舞山中，儼乃戒從者食素勿殺生。</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5월 19일(정묘) 3번째기사 모화루의 남쪽 연못이 완성되니 개성 숭교사의 연못에서 연을 옮겨다 심다</p>	<p>모화루(慕華樓)의 남지(南池)가 이루어지니, 부역(赴役)한 대장(隊長)·대부(隊副) 4백 명에게 쌀 1석(石)씩을 내려 주고, 구경(舊京)에 있는 숭교사(崇敎寺) 못[池]의 연(蓮)을 배로 실어다 심었다.</p>	<p>慕華樓南池成。賜赴役隊長隊副四百米各一石，船載舊京崇敎寺池蓮種之。</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5월 22일(경오) 1번째기사 백악·목멱·한강의 신에게 기우제를 지내고, 각 전에 공상하는 약주를 정지하다</p>	<p>백악(白岳)·목멱(木覓)·한강(漢江)의 신(神)에게 비[雨]를 빌고, 각전(各殿)의 공상(供上)하는 약주(藥酒)를 정지하였다.</p>	<p>庚午/禱雨白岳、木覓、漢江之神，停各殿供上藥酒。</p>
<p>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5월 24일(임신) 2번째기사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p>	<p>태상왕(太上王)이 별전(別殿)에서 승하(昇遐)하였다. 임금(上)이 항상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자면서 친히 진膳(進膳)의 다소(多少)와 복약(服藥)에 있어서 선후(先後)의 마땅함을 보살폈는데, 이날 새벽에 이르러 과루(罷漏)가 되자, 태상왕께서 담(痰)이 성(盛)하여 부축해 일어나 앉아서 소합향원(蘇合香元)을 자시었다. 병(病)이 급하매 임금(上)이 도보(徒步)로 빨리 달려와 청심원(淸心元)을</p>	<p>太上王薨于別殿。上常寢於廣延樓下，親視進膳多少服藥先後之宜。至是曉既罷漏，太上發痰，扶起而坐，服蘇合香元病革，上徒步趨至，進淸心元，太上不能嚥下，舉目再視而薨。上王以</p>

하하시다

드렸으나, 태상이 삼키지 못하고 눈을 들어 두 번 쳐다보고 승하하였다. 상왕(上王)이 단기(單騎)로 빨리 달려오니, 임금이 땅을 치고 발을 구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었다. 치상(治喪)은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고, 봉녕군(奉寧君) 복근(福根)으로 하여금 전(奠)을 주장하게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 《동한지(東漢志)》의 국휼고사(國恤故事)를 상고하면, ‘백관(百官)이 5일에 한 번 회림(會臨)하고, 고리(故吏)로는 이천석(二千石)의 자사(刺史)와 경도(京都)에 머무르고 있는 각 지방의 상계 연리(上計掾吏)는 모두 5일에 한 번 회림(會臨)하고, 천하(天下) 이민(吏民)은 발상(發喪)하여 3일을 임(臨)한다.’ 하였고, 또 대명(大明) 영락(永樂) 5년 7월 초4일 황후(皇后) 붕서(崩逝) 때의 예부 상례 방문(禮部喪禮榜文)을 상고하면, ‘경사(京師)에 있는 문무 백관(文武百官)은本月(本月) 초6일 아침에 각각 소복(素服)·흑각대(黑角帶)·오사모(烏紗帽)를 갖추고 사선문(思善門) 밖에 다달아, 곡림례(哭臨禮)가 끝나면 봉위례(奉慰禮)를 행하고, 초8일 아침에 각 관원(官員)은 소복(素服)으로 띠[帶]와 효복(孝服)을 가지고 우순문(右順門) 밖에 이르러 착용하고, 성복(成服)을 기다려서 사선문(思善門)에 들어와, 곡림례(哭臨禮)가 끝나면 효복(孝服)으로 바꾸어 입고 봉위례(奉慰禮)를 행하고, 이것이 끝나면 각각 효복(孝服)을 가지고 나간다. 초9일·초10일도 예(禮)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대행 태상왕 전하(大行太上王殿下)께서 5월 24일에 승하하시었으니, 즉일(卽日)로 각사(各司)에서 소복(素服)·흑각대(黑角帶)·오사모(烏紗帽)를 갖추고 곡림 봉위(哭臨奉慰)하고, 26일에 이르러 각각 효복(孝服)을 착용하고 곡림 봉위하며, 28일 즉 승하하신 후 제5일에 이르러 시왕(時王)의 복제(服制)에 따라 삼차(三次)의 곡림 봉위례(哭臨奉慰禮)를 행하게 하소서.”
하고, 예조(禮曹)에서 또 아뢰었다.

單騎疾馳而至，上擗踊呼泣，聲聞于外。治喪一依《朱子家禮》，以奉寧君福根主奠。禮曹啓：“謹按《文獻通考》《東漢志》國恤故事：‘百官五日一會臨；故吏、二千石、刺史、在京都郡國上計掾吏，皆五日一會；天下吏民，發喪臨三日。’又按大明永樂五年七月初四日，皇后崩逝，禮部喪禮榜文內：‘在京文武百官，於本月初六日早，各素服黑角帶烏紗帽，赴思善門外哭臨。禮畢，行奉慰禮。初八日早，各官素服，將帶孝服，赴右順門外穿着，伺候成服，入思善門哭臨。禮畢，就易素服，行奉慰。禮畢，各將孝服出。初九日初十日禮同。’今我大行太上王殿下，以五月二十四日上昇，卽日，各司具素服黑角帶烏紗帽，哭臨奉慰，至二十六日，各將孝服穿着，哭臨奉慰，至二十八日，係上昇後第五日。乞依時王之制，行三次哭臨奉慰禮。”
禮曹又啓：“停京外音樂，禁屠殺，禁嫁娶，停大小禮，停朝市。至第三日，遣大臣告于宗廟。”

	“경외(京外)의 음악(音樂)을 정지하고, 도살(屠殺)·가취(嫁娶)를 금하고, 대소례(大小禮)와 조시(朝市)를 정지하고, 제3일에 이르러 대신(大臣)을 보내어 종묘(宗廟)에 고하소서.”	
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5월 26일(갑술) 2번째기사 예조에서 대소사로 지방에 파견된 관리와 지방 관리들의 거상 방법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대소 별상(大小別常)1273) 과 외방(外方) 관원(官員)은 문서(文書)가 이르는 날에 즉시 소복(素服)을 입고 공청(公廳)에서 서울을 바라보고 발애(發哀)하되, 본 아문(衙門)에서 자며, 다음날 이른 새벽에 공청(公廳)에서 성복(成服)하고 거애(舉哀)하여 예(禮)를 마치되, 상복(喪服)의 제도는 단령(團領)·소대(素帶)에 추포[粗布]로 지은 포과 사모(布裹紗帽)와 입자(笠子)·상마대(上麻帶)를 착용하고 3일 동안 곡림(哭臨)하고 제복(除服)하며, 연변(沿邊)은 거애(舉哀)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미음[漿]도 들지 않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운(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 등이 죽(粥)을 마시기를 청하고,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으로 하여금 받들어 올리게 하니, 임금이 비로소 한 종(鍾)을 마시었다.	禮曹啓: “各道大小別常及外官員, 文書到日, 卽着素服於公廳, 望京都發哀, 宿于本衙門。 次日早晨, 成服於公廳, 舉哀禮畢。 其喪服之制, 團領素帶用粗布製布裹紗帽及笠子上麻帶, 臨三日而除。 沿邊不用舉哀。” 上啗不容漿, 領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等請啜粥, 令安城君李叔蕃奉獻, 上始啜一鍾。
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5월 27일(을해) 1번째기사 상왕이 빈전에 전을 베풀고, 임금이 비로소 나물 반찬으로 식사하다	상왕(上王)이 빈전(殯殿)에 전(奠)을 베풀었다. 이날에 임금이 비로소 소사(蔬食)를 먹었다.	乙亥/上王設奠于殯殿。 是日, 上始進蔬食。
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6월 28일(을사)	순덕후(順德侯) 진리(陳理)가 죽었다. 진리는 곧 진우량(陳友諒)의 아들인데, 아들 진명선(陳明善)이 있다. 진리가 죽으매 쌀·콩 50석(石)과 종이 1백 권(卷)을 부의(賻儀)로 주고, 관곽(棺槨)을 내려 주었다. 인하여 예부(禮部)에 자	乙巳/順德侯陳理卒。 理卽友諒之子也。 有子曰明善。 及卒, 賻米豆五十石、紙百卷, 賜棺槨, 仍咨報于禮部。

<p>1번째기사 순덕후 진리의 즐기. 예부에 자문을 보내 알리다</p>	<p>문(咨文)을 보내어 알렸다.</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7월 1일(정미) 3 번째기사 영의정부사 하운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청정 (聽政)하기를 청하다</p>	<p>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운(河崙) 등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예궐(詣闕)하여 다시 청정(聽政)하기를 청(請)하여 아뢰었다. “전일(前日)에 신 등이 청정(聽政)하시기를 두 번이나 청하였사운데 지금까지 윤희(允許)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청정하지 않으신다면 신 등도 또한 사직(辭職)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몸이 빈소(殯所) 곁에 있는 지 백일(百日)도 되지 못하였으니 어찌 차마 복(服)을 벗고 정사(政事)를 들겠는가?” 하였다. 하운 등이 아뢰기를, “대효(大孝)는 계술(繼述)에 있는 것이지 한 절문(節文)을 굳이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만일 청정(聽政)하지 않으신다면 신 등이 장차 어떻게 명령을 품(稟)하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백일(百日)의 제도가 비록 우리 나라의 풍속이라고는 하나, 옛글에 상고하여 보면 송(宋)나라 승상(丞相) 왕회(王淮)가 효종(孝宗)께 한 말에, ‘백일(百日) 뒤에 청정(聽政)하라’는 말이 있었으니, 내가 이것을 본받고자 한다.” 하였다. 하운 등이 대답하기를, “백일(百日)에 대한 말은 경전(經傳)에 보이지 않았으니 어찌 법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무(李茂)는 아뢰기를, “백일 동안 상(喪)을 행하는 것은 전조(前朝)의 풍속이고 지금은 사람들이 3</p>	<p>領議政府事河崙等，率百官詣闕，復請聽政。 啓曰：“前日臣等再請聽政，迄今未蒙允許。 若殿下不肯聽政，則臣等亦欲辭職。” 上曰：“身居殯側，未盈百日，安忍釋服聽政？” 崙等啓曰：“大孝在於繼述，非固守一節之謂也。 殿下若不聽政，則臣等將何稟令？” 上曰：“百日之制，雖曰鄉風，然稽諸古書，宋丞相王淮言於孝宗，有百日後聽政之言。 予欲法此。” 崙等對曰：“百日之語，不見經傳，豈足爲法？” 李茂啓曰：“百日行喪，前朝之風，今則人行三年之喪。 殿下苟曰百日後聽政，則是復前朝百日之風，誠爲不可。” 上乃曰：“卿等之言，皆所以輔我也，然未葬之前，不可接見大臣。 予欲於內殿，使代言啓事，聽斷之時，冠服制度，詳定以聞。” 於是，成石璘等啓曰：“謹按宋朝孝宗故事，群臣屢請易服御殿聽政，故以布素視事內殿。 今考其冠服則白布折上巾，詣梓宮則衰絰而</p>

	<p>년상을 행합니다. 전하께서 만일 백일 뒤에 청정한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전조(前朝)의 백일의 풍속을 회복하는 것이니, 참으로 불가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이 모두 나를 보좌하는 것이나, 장사지내기 전에는 대신(大臣)을 접견할 수 없다. 내가 내전(內殿)에서 대언(代言)으로 하여금 일을 아뢰게 하고자 하니, 정사(政事)를 청단(聽斷)할 때의 관복(冠服) 제도를 상정(詳定)하여 아뢰라.”</p> <p>하였다. 이에 성석린(成石璘) 등이 아뢰기를, “삼가 송(宋)나라 효종(孝宗)의 고사(故事)를 상고하면, 여러 신하가 여러 번 복(服)을 바꿔 입고 대궐에 좌기하여 청정(聽政)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포소(布素)로써 내전(內殿)에서 정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 관복을 상고하여 보면 백포 절상건(白布折上市)이었고, 재궁(梓宮)에 나아갈 때에는 최질(衰絰)에 지팡이[杖]를 짚었습니다. 대개 절상건(折上市)은 그 모양과 제도가 자세하지 않고 또 시왕(時王)의 제도가 아니니, 비읍건대, 백포건(白布巾)에 포삼(布衫)으로써 내전(內殿)에서 정사를 보소서.”</p> <p>하였다. 임금이 정부(政府)에 명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이미 담사(禫祀)를 지냈는데도 소찬(素饌)을 하니 예전 법이 아니다. 경들이 먼저 소찬을 그쳐서 여러 신료(臣僚)에게 보이도록 하라. 경들이 소찬을 그치기를 기다려서 나도 또한 약주(藥酒)를 들겠다.”</p> <p>하였다. 의정부(議政府)가 물러가서 비로소 건포(乾脯)를 먹고 인하여 대궐에 나아와 약주를 드리니, 임금이 비로소 한 종(鍾)을 들었다.</p>	<p>杖。蓋折上市，形制未詳，且非時王之制。乞以白布巾、布衫，坐內殿視事。”上命政府曰：“群臣既禫而猶素饌，非古也。卿等宜先開素，以示衆僚。待卿等開素，然後予亦嘗藥酒。”議政府退，始食乾脯，仍詣闕獻藥酒，上始進一鍾。</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7월 26일(임신)</p>	<p>대호군(大護軍) 조정(趙定)을 파직(罷職)시켰다. 조정이 국상(國喪)을 당하여 술과 고기를 싸 가지고 회음(會飲)하였으므로, 헌부(憲府)에서 그 죄를 논(論)했기 때문이었다.</p>	<p>罷大護軍趙定職。憲府論定當國喪齋酒肉會飲之罪也。</p>

<p>4번째기사 국상 중에 주연을 벌인 대호군 조정을 파직하다</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7월 28일(갑술) 1번째기사 전 좌부대언 유두명의 줄기</p>	<p>전 좌부대언(左副代言) 유두명(柳斗明)이 죽으니, 부의(賻儀)로 쌀·콩 30석과 종이 1백 권 및 관곽(棺槨)을 내려 주었다.</p>	<p>甲戌/前左副代言柳斗明卒。 賜賻米豆三十石、紙一百卷及棺槨。</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8월 1일(병자) 1번째기사 전 서운관 승 김협을 일본에 보내 대내전의 다다량덕웅에게 보빙하다</p>	<p>전 서운관 승(書雲觀丞) 김협(金浹)을 보내어 대내전(大內殿) 다다량덕웅(多多良德雄)에게 보빙(報聘)하게 하고, 《대장경(大藏經)》 1부(部), 나옹(懶翁) 화상(畫像)·중종(中鍾) 1건(件), 홍묵전모(紅墨氈帽)·호표피(虎豹皮)·암수 염소[雌雄羔] 2쌍(雙), 발합(鶉鴿)1298) 5대(對), 안자(鞍子) 1면(面), 화(靴)·혜(鞋)·송자(松子)·화석(花席)·주포(紬布)·면포(綿布)를 주었다.</p>	<p>丙子朔/遣前書雲觀丞金浹， 報聘于大內多多良德雄， 賜以《大藏經》一部、懶翁畫像、中鍾一事、紅墨氈帽、虎豹皮、雌雄羔二雙、鶉鴿五對、鞍子一面、靴鞋、松子、花席、紬布、絺布。</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8월 3일(무인) 1번째기사 명나라 사신 진경·이빈에게 저포와 인삼을 주다</p>	<p>진경(陳敬)·이빈(李賓)에게 각각 저포(苧布) 16필(匹), 인삼(人蔘) 30근(斤)을 주었다.</p>	<p>戊寅/贈陳敬、李賓各苧布十六匹、人蔘三十斤。</p>
<p>태종 16권, 8년(1408</p>	<p>의정부(議政府)에서 예궐(詣闕)하여 음식(飲食)을 비박(菲薄)하게 하지 말기를</p>	<p>丙申/議政府詣闕， 請勿菲飲食。 啓</p>

<p>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8월 21일(병신)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음식을 너무 간소하게 들지 말기를 청하다</p>	<p>청하였다. “전하께서 근일에 음선(飮膳)을 심히 비박하게 하시니, 신 등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컨대, 성체(聖體)를 보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평소에도 성찬(盛餐)을 즐기지 않고 오직 먹을 만한 것 한 그릇만 올리게 하였으니, 성품이 본래 좋아하는 것만 치중한다. 상례(喪禮)로 인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p>	<p>曰：“殿下近日飮膳甚非，臣等不勝驚懼。願保聖體。”上曰：“予於平昔，亦不嗜盛餐，但進可嘗之味一器。性本偏於所好，非以喪禮而然也。”</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13일(무오) 3번째기사 태평관에 가서 황엄 등에게 잔치를 베푸니 황엄이 임금에게 고기 반찬을 권하다</p>	<p>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황엄 등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황엄이 매우 기뻐하여 고기 반찬을 주상께 권하려고 하니, 임금이 사양하기를, “3년의 상(喪)은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통하는 것이오. 지금 내가 담복(淡服)을 입은 것은 다만 사신 때문이오. 궁중에 있을 때에는 쇠질(衰絰)을 입으니 고기를 먹을 수 없소.” 하였다. 황엄이 다시 청하였으나 임금이 굳이 사양하였다. 조금 뒤에 황엄이 나가 손을 씻다가, 술이 몹시 취하여 뜰 아래로 떨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부축하여 방 가운데 누었다.</p>	<p>上如太平館宴黃儼等。儼甚喜，欲以肉膳勸上，上辭曰：“三年之喪，自天子達于庶人。今我淡服，只爲使臣耳，在宮中服衰絰，不可食肉。”儼再請，上固辭。既而儼出(與) [盥] 手，因醉墜階下恍惚，扶臥房中。</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28일(계유) 1번째기사 태조의 상사를 조문하는 황제의 칙서과 부의</p>	<p>기보와 임관이 칙서(勅書)와 사부(賜賻)를 받들고 왕궁에 이르렀다. 백관 분사(百官分司)가 태평관에 나아가 앞에서 인도하고, 임금이 상장(喪杖)을 버리고 질(絰)을 벗고 쇠복(衰服)으로 대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정비(靜妃)의 곡위(哭位)를 경연청(經筵廳)에 베풀고 시녀(侍女)를 거느리고, 유장(帷帳)을 쳤다. 백관(百官)은 전정(殿庭)에 서립(序立)하였다. 사신이 정전(正殿)에 이르러 남향하여 서매, 임금이 세자와 종친을 거느리고 정전에 올라가 북향해 서서 사배(四拜)하고, 백관도 또한 사배하였다. 예(禮)가 끝나서 사신이 나가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문 밖까지 전송하였는데, 한결같이 의주(儀注)와 같이 하였다. 그 칙서(勅書)는 이러하였다.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李)【휘(諱).】에게 칙(勅)하노라. 표문(表文)을 보고</p>	<p>癸酉/祁保、林觀，奉勅書及賜賻至王宮，百官分司詣太平館前導，上去杖免絰，以衰服出迎于大門外。設靜妃哭位於經筵廳，率侍女施帷帳。百官序立殿庭，使臣至正殿南向立，上率世子宗親升正殿，北向立四拜，百官亦四拜。禮畢，使臣出，上率百官送至大門外，一如儀註。 [○] 其勅書曰： 勅朝鮮國王李諱。覽表，知王父薨逝，</p>

	<p>왕의 아버가 흥서(薨逝)한 사실을 알게 되니, 참으로 매우 슬프다. 왕은 효정(孝情)이 도탑고 간절하니, 호모(號慕)하고 최훼(摧毀)하는 바가 더욱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대저 덕(德)을 닦아 〈아버를〉 현양(顯揚)하는 것은 효도(孝道)의 큰 것이다. 왕은 슬픈 것을 절도 있게 하고 일을 이루어 길이 도모(圖謀)할 것을 생각하라. 이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부의(賻儀)를 주는 바이니 이르거든 영수(領收)하라. 그러므로 칙(勅)한다. 견(絹) 5백 필, 포(布) 5백 필, 양(羊) 1백 공(鞆), 술 1백 병(瓶)이다.”</p>	<p>良深興悼。王孝情敦切，號慕摧毀，益難堪居。夫修德顯揚，孝之大者。王其節哀襄事，式懷永圖。今特遣使賜賻，至可領也。故勅。絹五百匹、布五百匹、羊一百鞆、酒一百瓶。</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0월 11일(을유) 2번째기사 경복궁에 가서 황엄 등과 함께 처녀 5명을 선발하다</p>	<p>임금이 경복궁에 가서 황엄·전가화(田嘉禾) 등과 더불어 다시 처녀를 선발하였다. 뽑힌 자가 모두 5인인데, 고 전서(典書) 권집중(權執中)의 딸이 첫째이고, 전 전서(典書) 임첨년(任添年)·전 지영주사(知永州事) 이문명(李文命)·사직(司直) 여귀진(呂貴眞)·수원 기관(水原記官) 최득비(崔得霏)의 딸이 다음이었다. 술과 과실을 주고, 각각 중국 체제(體制)의 여복(女服)을 주었는데 모두 채단(綵段)으로 만들었다. 임금이 환궁하여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황엄이 선정(選定)한 고하(高下) 등제(等第)가 틀렸다. 임씨(任氏)는 곧 관음보살(觀音菩薩)의 상(像) 같아서 애교와 태도가 없고, 여씨(呂氏)는 입술이 넓고 이마는 좁으니, 그게 무슨 인물이나?”</p>	<p>上如景福宮，與黃儼、田嘉禾等，更選處女，被選者凡五人。故典書權執中之女爲首，前典書任添年、前知永州事李文命、司直呂貴眞、水原記官崔得霏之女次之。賜酒菓，各賜中朝體制女服，皆用綵段。上還宮，謂代言等曰：“儼之選定高下等第誤矣。任氏直如觀音像而無情態，呂氏唇闊額狹，是何物耶?”</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0월 16일(경인) 4번째기사 제주 도안무사가 금은을 보내며 구황을 요청하므로, 구휼을 명하</p>	<p>명하여 제주(濟州)의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하게 하였다. 제주 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가 아뢰기를, “금년에 큰 바람으로 인하여 곡식이 손상되어 고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소와 말을 잡아 양식을 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지난 병술년에 사송(賜送)하신 조두(粗豆) 천 석(石)을 이른 봄부터 환납(還納)으로 각호(各戶)에 분급(分給)해 주었기 때문에 관고(官庫)가 비었으니, 구황(救荒)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관중(官中)에 준비해 두었던 포화(布貨)를 토관(土官)에게 나누어</p>	<p>命賑濟州飢。濟州都安撫使啓：“今歲因大風損穀，州人絕食，宰殺牛馬，以爲糧者頗多。去丙戌年，賜送粗豆千石，自早春以還納，分給各戶，官庫虛竭，救荒無計。今以官中準備布貨，分授土官，買得黃金四兩六錢、白銀二百九十一兩，差人進納。乞計其價直，</p>

<p>다</p>	<p>주고 황금(黃金) 4냥(兩) 6전(錢)과 백은(白銀) 2백 91냥(兩)을 바꾸어 사람을 보내어 바치오니, 비읍건대, 그 값을 계산하여 잡곡(雜穀)으로 주셔서 흉년을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금과 은의 값은 모두 시가(時價)에 의해서 주고, 따로 진제관(賑濟官)을 보내어 쌀과 콩을 요량해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죽지 않게 하라.”</p>	<p>賜以雜穀，以救凶荒。” 上曰：“金銀價直，一依時價給之，別遣賑濟官，量給米豆，使民不至飢死。”</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0월 16일(경인) 5번째기사 각도에 금주령을 내리다</p>	<p>각도에 금주령(禁酒令)을 내렸다.</p>	<p>下禁酒令於各道。</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0월 27일(신축) 2번째기사 삼군 갑사 1천 5백명을 더 두어 원래 있던 1천 5백명과 교대로 시위하게 하다</p>	<p>삼군 갑사(三軍甲士) 1천 5백 명을 더 두었다. 갑사(甲士)의 원수(元數)가 1천 5백명이었는데, 또 1천 5백 명을 더 두고 1년에 교대하여 운차(輪次)로 시위(侍衛)하게 하였다. 남재(南在)·조영무(趙英茂)·이숙번(李叔蕃)을 불러 말하기를, “갑사(甲士) 3천 명은 적당한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으니 대장(隊長) 5백 인을 가려서 갑사에 충당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가정(加定)한 갑사(甲士) 5백 명은 그 초번(初番)·이번(二番)의 녹(祿)을 혁거(革去)한 대장(隊長)·대부(隊副) 6백 명의 녹(祿)으로 계산해 주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동·서반(東西班) 1품에서 9품까지의 미두(米豆) 각 1석, 1품에서 7품까지의 정포(正布) 각 1필을 감(減)하여 그 수에 충당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加置三軍甲士一千五百。 甲士元數一千五百， 又加一千五百， 使之一年相遞， 輪次侍衛。 召趙英茂、南在、李叔蕃曰：“甲士三千， 未易得其人， 宜簡隊長五百人， 以充甲士。” 議政府啓：“加定甲士五百， 其初二番祿， 以革去隊長隊副六百名之祿計給， 尙有不足者。 乞減東西一品至九品米豆各一石、一品至七品正布各一匹， 以充其數。” 從之。</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p>	<p>산릉(山陵)에 부역(赴役)한 공장(工匠) 등에게 쌀과 베를 차등 있게 주었다.</p>	<p>賜山陵赴役工匠等米布有差。</p>

<p>6년) 11월 2일(병오) 2번째기사 산릉에 부역한 사람에게 쌀과 베를 차등 있게 주다</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1월 7일(신해) 4번째기사 전 좌군 도총제 박자안의 졸기</p>	<p>전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 박자안(朴子安)이 죽으니, 조회(朝會)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쌀·콩 50석과 종이 1백 권과 곽(擲)을 부의(賻儀)로 내려 주고, 시호(諡號)를 양혜(襄惠)라 하였다. 자안은 기위(奇偉)하고 장략(將略)이 있었다. 두 아들이 있으니 박실(朴實)·박유(朴廬)이다.</p>	<p>前左軍都摠制朴子安卒。 輟朝三日， 賻米豆五十石、紙一百卷及擲， 諡襄惠。 子安瑰偉有將略。 二子， 實、 廬。</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1월 21일(을축) 2번째기사 민무구·민무질 형제에게 쌀을 내려 주다</p>	<p>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쌀을 내려 주었다. 임금(上)이 무구와 무질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쌀을 주게 하니, 의정부(議政府)에서 상언(上言)하기를, “불충한 사람이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인데 어찌 쌀을 주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그 도(道) 감사(監司)에게 전지(傳旨)를 내려 각각 소재지(所在地)의 관고(官庫)의 쌀 30석을 주었다.</p>	<p>賜閔無咎、無疾米。 上憐無咎、無疾乏食， 令給米。 議政府上言：“不忠之人， 不死爲幸， 豈可給之!” 上下旨于其道監司， 各給所在官庫米三十石。</p>
<p>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2월 26일(기해) 1번째기사 영의정부사 하운 등이 임금께 육즙을 들기를 청하다</p>	<p>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운(河崙)·정승(政丞) 성석린(成石璘)·이무(李茂)·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가 대궐에 나와 육선(肉膳)을 들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신 등은 듣자오니, 상체(上體)가 미령(未寧)하시다 하니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예경(禮經)》에 실려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육즙(肉汁)을 드시어 허약(虛弱)함을 보충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않았다. 다시 청하기를, “병이 있으면 고기를 먹는 것은 필부(匹夫)도 그러하오는데, 하물며 전하의 일</p>	<p>己亥/領議政府事河崙、政丞成石璘·李茂、漢山府院君 趙英茂詣闕請進肉膳， 不允。 啓曰：“臣等聞上體未寧， 不勝憂恐。 身有疾， 飲酒食肉， 載在《禮經》。 願嘗肉汁， 以補虛弱。” 上不允。 更請曰：“有疾食肉， 匹夫猶然。 況殿下一身， 宗社生民之所寄乎?” 竟不允。 河崙等復詣闕請進肉膳， 不允。</p>

	<p>신(一身)은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이 의탁한 바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끝내 윤택하지 않았다. 하운 등이 다시 예궐(詣闕)하여 육선(肉膳)을 들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월 4일(정미) 1 번째기사 영의정부사 하운 등이 고기 반찬을 들기를 청하니 맛만 보다</p>	<p>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운(河崙)과 정승 성석린(成石璘)·이무(李茂)가 예궐(詣闕)하여 육선(肉膳)을 들기를 청하였다. “신 등은 성상께서 몸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청컨대, 육즙(肉汁)을 잡수시어 허약하신 몸을 보양(補養)하소서.” 하니, 임금, “상왕(上王)의 병환이 과인보다 더 중하시다. 나는 비록 병이 있지만 음식을 많이 먹었으니, 어찌 먼저 맛볼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운 등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설미수(契眉壽)로 하여금 인덕궁(仁德宮)에 나아가서 상왕(上王)에게 청하게 하니, 상왕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튿날 하운 등이 함께 인덕궁에 나아가서 육선(肉膳)을 들기를 청한 다음에 예궐하였다. 상왕이 중관(中官)을 보내어 주상(主上)이 육선(肉膳)을 맛보는지 여부를 보게 하니, 임금, “상왕께서는 나보다 열 살이 위이고, 또 오래 된 병환이 있으니, 내가 먼저 맛보지 않으면 상왕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가져다 맛보았으나 목에 삼키지는 아니하였다.</p>	<p>丁未/領議政府事河崙、政丞成石璘·李茂詣闕，請進肉膳。 啓曰：“臣等聞上體未寧，請嘗肉汁，以補虛弱。” 上曰：“上王之疾，深於寡人。予雖有疾，進食既多，豈可先嘗!” 崙等使知議政府事使眉壽詣仁德宮，請于上王，上王亦不許。 翼日，河崙等俱詣仁德宮，請進肉膳，次詣闕。 上王遣中官，以視主上之嘗否。 上曰：“上王長我十歲，且有宿疾。我若不先，亦不嘗之矣。” 遂取嘗之，不下咽。</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월 9일(임자) 1 번째기사 의관 양홍달에게 쌀·콩을 하사하다</p>	<p>의관(醫官) 양홍달(楊弘達)에게 쌀·콩 25석을 하사하였다.</p>	<p>壬子/賜醫楊弘達米豆二十五石。</p>
<p>태종 17권, 9년(1409</p>	<p>의정부에서 각사(各司)의 외방 노비(外方奴婢)와 혁거(革去)한 사사 노비(寺社</p>	<p>議政府請各司外方奴婢及革去寺社奴</p>

<p>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월 18일(신유) 4번째기사</p> <p>의정부에서 각사의 외방 노비와 혁파한 사사 노비에게 둔전의 종자를 주도록 청하다</p>	<p>奴婢)에게 모두 둔전(屯田)의 종자(種子)를 주도록 청하였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p> <p>“60세 이상과 15세 이하를 제외하고 장정의 남종[奴]에게는 종자 곡식 10두(斗)씩을, 장정의 여종[婢]에게는 종자 곡식 8두씩을 주어서, 추수한 뒤에 1두마다 10두씩을 거두도록 하소서.”</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당시에 종자(種子)를 주는 것을 ‘둔전(屯田)’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공전(公田)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p>	<p>婢，皆給屯田之種。 啓曰：“除六十已上十五以下外，壯奴給種租十斗，壯婢八斗，至秋成每一斗收十斗。” 從之。 時以給種，號爲屯田，實非有公田也。</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월 26일(기사) 2번째기사</p> <p>일기도와 대마도의 추장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기도(一岐島)와 대마도(對馬島)의 두 섬의 왜인 추장(酋長)이 토산물을 바쳤다.</p>	<p>一岐、對馬二島倭酋，獻土物。</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2월 1일(갑술) 3번째기사</p> <p>중외의 연음을 금지하다</p>	<p>중외(中外)에 연음(宴飲)을 금지하였다. 오직 늙고 병들어 약으로 먹는 것과 여리(閭里)에서 매매하는 것만은 금하지 아니하였다.</p>	<p>禁中外宴飲，惟老病服藥、閭里買賣者勿禁。</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2월 22일(을미) 2번째기사</p> <p>강계에 있을 때 요동에 밀무역한 희천군 김우의를 탄핵</p>	<p>사헌부(司憲府)에서 희천군(熙川君) 김우(金字)의 죄를 청하였다. 소(疏)는 이러하였다.</p> <p>“김우가 일찍이 강계(江界)에 부임하여 초피(貂皮) 50장과 황랍(黃蠟) 16근을 가지고 비밀히 통사(通事) 박지성(朴之成)에게 부탁하여, 요동(遼東)에 가서 초피 10장으로는 능(綾) 2필을 사고, 20장으로는 중견(中絹) 10필을 샀습니다. 박지성이 돌아오니, 김우가 이미 벼슬이 갈렸으므로, 길에서 만나 능(綾)·견(絹)과 남은 초피 20장을 김우에게 되돌려 주고, 다만 황랍만 강계부(江界</p>	<p>司憲府請熙川君金字之罪。 疏曰： 宇曾任江界，將貂皮五十領、黃蠟十六斤，密屬通事朴之成，至遼東，以貂皮十領買綾二匹，二十領買中絹十匹。 之成之還，宇已見代，遇諸途，以綾絹及所餘二十領還諸宇，只以黃蠟，還納江界府， 本府移文其道監司， 備得其</p>

	<p>府)에 도로 바쳤습니다. 본부(本府)에서 그 도(道)의 감사(監司)에게 이문(移文)하여 이 사실을 갖추 알아냈습니다. 김우가 금하는 물건을 함부로 거두어 국경을 넘어 매매한 죄는, 이를 엄하게 징계하여 후인을 징계함이 마땅합니다.”</p> <p>임금이 소장을 대내(大內)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p>	<p>實。 宇之橫斂禁物、越境興利之罪、所宜痛懲、以戒後人。疏留中不下。</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3월 3일(병오) 3번째기사</p> <p>개성 유후사의 건으로 한양 천도 이후 금했던 개성의 장을 다시 열기로 하다</p>	<p>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에 시사(市肆)를 금했던 것을 풀어주었다. 유후사에서 상언(上言)하였다.</p> <p>“구도(舊都)의 백성들은 공상(工商)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 있고 없는 것을 서로 교환하여 살아가고 있었는데, 도읍을 옮긴 이후로 시사(市肆)를 여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미곡(米穀)을 가지고 잡물(雜物)을 무역하는 것이 전혀 없고, 부자 상인과 노련한 장사아치들이 돈과 곡식을 많이 쌓아 두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거나, 뒷거래로 매매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쌀값이 뛰어오르고 귀하기 때문에, 인구가 날마다 줄어들어 여리(閭里)가 쓸쓸하오니, 중국 사신이 오고가는 데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부자 상인과 큰 장사아치로서 옮기려 들지 않는 자만 강제로 신도(新都)로 이사하게 하고, 그 외에는 각각 시사(市肆)를 열게 하여 무역을 편리하게 하소서.”</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弛開城留後司市肆之禁。 留後上言：舊都之民，工商雜處，有無相資，自移都以後，禁開市肆。 由是以米穀，貿易雜物者絕無，富商老賈多蓄錢穀，低昂物價，暗行買賣，故米價湧貴，人口日減，閭里蕭然，上國使臣往返，瞻視埋沒。 富商大賈甘心重遷者，勒令移徙新都外，各開市肆，以便貿易。從之。</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3월 10일(계축) 2번째기사</p> <p>딸이 진헌 처녀로 중국에 간 임침년의 아내에게 쌀과 콩 30석을 하사하다</p>	<p>임침년(任添年)의 아내에게 쌀·콩 30석을 하사하였다. 임침년이 그 아내를 버린지 오래 되었었는데, 그의 소생 딸이 중국 조정에 입조(入朝)하기 때문에 다시 결합하였다. 그 딸이 정비전(靜妃殿)에 하직을 고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p> <p>“첩에게 어미가 있으니, 긍휼(矜恤)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듣고 불쌍히 여긴 까닭에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p>	<p>賜任添年妻米豆三十石。 添年去其妻久矣，以所生女入朝，故復合焉。 其女辭于靜妃殿，自言：“妾有母，願加矜恤。” 上聞而憐之，故有是賜。</p>
<p>태종 17권, 9년(1409</p>	<p>거가(車駕)가 유후사(留後司)에 이르렀다.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강문진</p>	<p>乙卯/車駕至留後司， 檢校漢城尹姜文</p>

<p>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3월 12일(을묘) 1번째기사 거가가 개성 유후사에 도착하다</p>	<p>(姜文進)·임광의(任光義) 등이 상알(上謁)하니, 각각 쌀 10석을 하사하였다.</p>	<p>進·任光義等上謁，各賜米十石。</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3월 14일(정사) 1번째기사 항복한 왜인 구육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p>	<p>항복한 왜인 전 호군(護軍) 구육(具陸)에게 쌀·콩 10석을 하사하였다.</p>	<p>丁巳/賜降倭前護軍具陸米豆十石。</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3월 16일(기미) 5번째기사 도관찰사의 요청으로 강원도의 기민을 구제하다</p>	<p>강원도의 기민(飢民)을 진제(賑濟)하였다. 도관찰사가 상언(上言)하기를, “굶주린 백성이 도토리[橡實]를 주어 연명하는데, 도토리가 이미 다 없어졌고, 의창(義倉)에 저장한 곡식도 구제하기에 부족합니다. 원컨대, 국고(國庫)의 곡식을 내어 흉년을 구제하고 농사를 권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賑江原道飢。都觀察上言：“飢民拾橡實延命。橡實既盡，義倉所儲，亦不足以賑貸，乞發國庫，救荒勸農。”從之。</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3월 16일(기미) 6번째기사 공순군 이방번의 아내 왕씨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p>	<p>공순군(恭順君) 이방번(李芳蕃)의 아내 왕씨(王氏)에게 쌀·콩 30석을 하사하였다.</p>	<p>賜恭順君芳蕃妻王氏米豆三十石。</p>
<p>태종 17권, 9년(1409)</p>	<p>강원도의 실농(失農)한 각 고을에 국고의 곡식을 내어 종자(種子)와 농량(農</p>	<p>發江原道失農各州國庫，以資穀種農</p>

<p>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4월 13일(을유) 3번째기사 실농한 강원도의 각 고을에 국고의 곡식을 내어 종자와 농량에 쓰게 하다</p>	<p>糧)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도관찰사가 상언(上言)하였다. “의창(義倉)에 저장한 곡식은 겨우 굶주림을 구제할 만하옵고, 종자와 농량은 전연 의뢰할 데가 없습니다. 만약 의정부의 정식(定式)대로 행이(行移)하여 지급하면, 집집의 전지에 파종(播種)을 마치지 못할 형편입니다. 원컨대, 국고의 쌀과 콩을 적당하게 나누어 주어 넉넉하게 하여 실농(失農)하지 않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餉。都觀察使上言曰： 義倉所儲，僅能救飢，至於穀種農糧，全無所仰。若依議政府定式，行移支給，則家家田地，勢將未盡播種。乞以國庫米豆，酌量題給，期於周足，不使失農。 從之。</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4월 16일(무자) 3번째기사 검교 한성 윤 공부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p>	<p>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공부(孔俯)에게 쌀·콩 30석을 하사하였다.</p>	<p>賜檢校漢城尹孔俯米豆三十石。</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윤4월 1일(계묘) 1번째기사 임금이 다시 병이 나자 의정부에서 고기 반찬을 들기를 청하다</p>	<p>의정부에서 예궐(詣闕)하여 육선(肉膳)을 들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지난날 병으로 인해 마른 고기[乾肉]를 자시다가. 병이 낫자 그만두었었는데, 이때 이르러 다시 몸이 편찮았기 때문이었다.</p>	<p>癸卯朔/議政府詣闕請進肉膳。上向以疾嘗乾肉，及愈乃止，至是復未寧故也。</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윤4월 22일(갑자) 3번째기사</p>	<p>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지강(李之綱)이 도당(都堂)에서 상서(上書)하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지강이 지난해 6월부터 이 고을에 수령으로 와서, 밀·보리[兩麥]부터 늦곡[晚穀]까지 친히 답험(踏驗)하였는데,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로 손상된 곡식</p>	<p>水原府使李之綱上書都堂。書曰： 之綱自去年六月，來守是邑，自兩麥至于晚穀，親自踏驗，水旱之傷，不爲不多，然亦無舉家失農者。至今年三四</p>

수원 부사 이지강이
굶주린 백성을 위로하
고 구제할 방법을 아
된 상서문

이 적지 아니하였으나, 온 집이 실농(失農)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 4월에 이르러 사민(四民)1504)의 남녀가 연달아 달려와서 날마다 관문(官門)에 모여 먹을 것이 없다고 다투어 말하고, 혹은 울면서 말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지강은 백성의 생활이 이처럼 궁핍(窮乏)한 이유를 알지 못하였으며, 소민(小民)의 먹을 것이 없다고 고하는 정상이 진정한지 거짓인지 쉽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물캐는 사람이 산야(山野)에 널려 있고, 창름(倉廩)에서 주는 말[斗]·되[升]의 곡식을 사족(士族)의 집에서도 다투어 와서 주기를 바라니, 이는 백성의 생활이 곤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창고의 곡식을 내어 구제하지 아니하면, 유망(流亡)하거나, 굶주려 죽는 사람이 의당 길에 잇닿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밀·보리가 거의 익었으나, 굶주린 백성이 먼저 익은 이삭을 골라서 혹은 볏기도 하고, 혹은 찌기도 하여 겨우 그 생명을 이어가는데, 하물며 한 번 배불리 먹는 기쁨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밀·보리를 답험(踏驗)하는 관리가 비록 늡급(廩給)을 받는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접대하는 즘음에 어찌 전연 폐단이 없겠습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도리어 답험의 접대에 분주(奔走)하게 되면, 원망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전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한창 봄철에 그해 전조(田租)의 반(半)을 미리 주었으니, 이는 농사를 정성스레 장려하고, 영세민(零細民)의 힘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위에 전하여 아뢰어서, 문제(文帝)가 미리 전조(田租)의 혜택을 준 것을 본받아, 이들 농민에게 금년의 양맥(兩麥) 세(稅)를 내려 주어 기민(飢民)의 마음을 위로하면, 어찌 다만 창름(倉廩)의 곡식을 내어서 궁핍한 백성을 구제하는 데 비하겠습니까? 지강은 또 생각건대, 답험(踏驗)을 면제할 수 없다면, 늦곡[晚穀]을 답험(踏驗)하는 날, 보리밭[麥田]에 다시 다른 곡식을 심은 것은 조세를 거두는 데 과식(科式)을 감하지 말고, 다만 보리만을 수확하는 것은 다른 전제(田制)에 따르는 것이 또한 편리하고 유익하겠습니다.”

月以來，四民男女奔走絡繹，日聚官門，爭言匱乏，或有垂泣而言者。之綱未知民生若此匱乏之由，且小民告匱之情，眞僞固未易知也。然採菜之人，遍於山野，倉廩所給斗升之穀，士族之家，爭來仰給。是則民生之艱，概可見矣。若非國家發倉賑之，流亡餓殍，當相繼於道矣。今雖兩麥垂熟，飢民擇其先熟之穗，或焦或煮，僅活其生，況望一飽之權乎？兩麥踏驗之官，雖云廩給，民間支對之際，豈盡無弊！以僅活之民，反奔走於踏驗支對，則怨咨不少矣。昔漢文帝方春預賜今年田租之半，此其所以誠於閔農，而寬細民之力也。伏望轉聞于上，法文帝預賜田租之惠，賜農民今年兩麥之稅，以慰飢民之心，則奚啻發倉廩以賑窮乏乎？之綱又以謂：“如不可鑷除踏驗，則晚穀踏驗之日，麥田更種他穀者，收租不減科式；只收麥者，從他田制，亦爲便益。”都堂以聞，上命擬議。都堂言：“麥乃國用，不可全減。”事遂不行。

	도당(都堂)에서 아뢰니,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도당(都堂)에서, 보리는 국용(國用)이니 전감(全減)할 수 없다고 말하니, 일이 드디어 행해지지 못하였다.	
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윤4월 23일(을축) 3번째기사 금주령을 엄하게 하다	금주령(禁酒令)을 엄하게 하였다.	嚴禁酒令。
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윤4월 27일(기사) 2번째기사 침전에서 세자와 굶주려 죽는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임금이 연침(燕寢)에서 세자에게 이르기를, “나는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 하니, 세자가 자리를 피하며, “신이 듣자오니, 백성들 가운데 굶주림으로 인하여 나물을 캐다가 죽은 자도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놀라서, “네가 들은 것을 자세히 물어보고 오너라.” 하니, 세자가 나가서 환관(宦官)의 무리를 불러 물으니, 모두, “길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上在燕寢謂世子曰：“予痛聞百姓之飢饉。” 世子避席曰：“臣聞百姓因飢，有採菜而死者。” 上驚曰：“汝推原所聞而來。” 世子出，進宦官輩問之，皆曰：“聞諸道路，未知適是何人也。”
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윤4월 27일(기사) 3번째기사 동북면 도순문사의 청에 따라 그 곳 백성에게 콩씨를 지급하다	동북면(東北面) 백성에게 콩씨[豆種]를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도순문사(都巡問使)가 상언(上言)하여 청하니 지급하도록 명하고, 또 그 보고가 늦은 것을 책하였다.	命給東北面民豆種。 都巡問使上言以請，命給之，且責其報之晚也。
태종 17권, 9년(1409	대궐 안의 낮 점심[晝點心]을 없애도록 명하였다.	辛未/命除闕內晝點心。

<p>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윤4월 29일(신미) 1번째기사 대궐 안의 낮에 먹는 점심을 없애다</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5월 5일(병자) 2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술을 들기를 다시 청하니 허락하다</p>	<p>의정부에서 술을 들기를 다시 청하니, 허락하였다.</p>	<p>議政府再請進酒，許之。</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5월 13일(갑신) 1번째기사 충주에서 실어 온 콩 8천여 석을 썩게 한 군자감 전목과 주부 여의를 유배시키다</p>	<p>군자감(軍資監) 전목(全穆)을 양주(梁州)로, 주부(注簿) 여의(呂義)를 고령(高靈)으로 유배시켰다. 처음에 의정부에서 충주(忠州)·경원(慶原) 창고의 콩 8천 7백 76석을 운반하여 서울 안 사람들에게 환납(還納)으로 지급하였고 하였는데, 용산강(龍山江)에 이르자 군자감에서 운반해 들이기를 꺼려서 강가에 노적(露積)해 두기를 청하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었다. 군자감에서 그대로 미루어 두고 나누어주지 아니하다가, 마침 강물이 갑자기 불어 8천 석의 콩이 모두 물에 잠겨서, 싹이 나기도 하고 혹은 썩기도 하여, 모두 먹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걱정하여 각 품(品)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었다.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전목과 여의는 장맛비가 장차 내릴 때를 당하여, 충주의 공두(貢豆)를 즉시 거두어 들이지 아니하여 썩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논죄하소서.”</p>	<p>甲申/流軍資監全穆于梁州，注簿呂儀于高靈。初，議政府令輸忠州慶原倉豆八千七百七十六石，欲以還納，給京中人也。既到龍山江，軍資監憚於輸納，請露積江邊，政府然之，因循稽留，不以分賜。適值江水暴漲，八千石俱沒於水，或芽或腐，皆不可食。政府憂之，請頒各品，從之。至是，司憲府上言：“全穆、呂儀當水潦將降之時，忠州貢豆，不卽收納，以致腐毀，請依律論罪。”</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p>	<p>일본(日本) 지좌전(志佐殿) 객인(客人)이 와서 토물(土物)을 바쳤다.</p>	<p>戊戌/日本志佐殿客人來獻土物。</p>

<p>7년) 5월 27일(무술) 1번째기사 일본 지좌전의 객인이 토산물을 바치다</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5월 29일(경자) 3번째기사 충청도의 곡식 손실과 조세 상황을 과장 보 고한 도관찰사 안노생 을 영주에 가두다</p>	<p>충청도 도관찰사 안노생(安魯生)을 영주(寧州)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안노생이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본도(本道) 55고을의 수령(守令)이 정보(呈報)한 것에 의거하면, 무자년에 한재(旱災)로 흉년이 아주 심하여 벼가 낫 것이 없었고, 또 채녀(採女)로 인하여 대소 인가(大小人家)에서 놀라고 소동(騷動)하지 아니한 집이 없어 사람들 가운데 실농(失農)한 자가 자못 많고, 또 산릉(山陵)의 역사에 나가는 데 걸핏하면 여러 달이 걸려서 백성들의 굶주림이 지독합니다. 전에 감사가 겨울부터 봄까지 새로 병선(兵船)을 만들었으므로 백성들이 편안히 쉬지 못하였고, 또 조세(租稅)를 거두는 때가 되면 흉년인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반드시 많이 거두어 들이고, 백성에게 꾸어준 곡식을 기한 내에 다 거두었으므로, 굶주린 백성들이 괴로와하고, 한 지방이 원망합니다. 원컨대, 금년 공맥(貢麥)의 수량을 예전 액수에 구애하지 말고 실제 수량에 좇아서 수납(收納)하여, 이 백성들의 굶주림을 구제하여, 길이 생민(生民)을 살리도록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아뢰니, 임금이 생각하기를, 한상덕(韓尙德)이 항상 유정현(柳廷顯)을 배척하여 백성들을 착취하는 신하라고 하였는데, 이제 안노생이 또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여, 정부로 하여금 핵실(覈實)하게 하니, 정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호조(戶曹)의 손실 도목장(損實都目狀)을 참고하건대, 충청도의 금년 기전(起田)은 15만 결(結)인데 손급(損給)한 것이 5만 결이므로, 바로 3분의 1을 감면한 것입니다. 안노생이 반드시 많이 거두었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55고을의 수령이 반드시 모두 정장(呈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또</p>	<p>命囚忠淸道都觀察使安魯生于寧州。 初，魯生報議政府曰： 據本道五十五官守令呈報，戊子年旱荒莫甚，禾不登場，且因採女，大小人家，無不驚擾，人之失農者頗多。又赴山陵之役，動經累朔，民之飢饉至矣。前等監司自冬徂春，新造兵船，民不息肩，又當收租，不恤歲歉，必取盈焉，人民所貸，刻期畢收，飢民苦之，一方怨咨。願今歲貢麥之數，不拘舊額，從實收納，救此民飢，永底生生。 政府以聞，上以韓尙德常斥柳廷顯爲聚斂之臣，今魯生又言之，令政府覈實。 政府上言： 參考戶曹損實都目狀，則忠淸道今歲起田十五萬結，給損五萬結，卽是寬三分之一也，魯生必取盈焉之報爲不實。且五十五官守令，未必皆有呈狀，悉令上府，以考眞僞。 上從之。 召司憲持平兪勉曰：“魯生托言五十五州所報， 政府取勸州縣所報，</p>

	<p>조리 상부(上府)로 하여금 그 진위(眞僞)를 상고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사헌부 지평(持平) 유면(兪勉)을 불러, “안노생이 55고을에서 보고한 것이라고 핑계하는데, 정부가 주현(州縣)에서 보고한 것을 가져다가 맞춰 보니, 일찍이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므로 안노생의 몽롱(朦朧)하게 계문(啓聞)한 죄를 청하였다. 너희 헌부(憲府)는 규탄하는 직책을 맡았으니, 핵실(覈實)하여 아뢰는 것이 가하다.” 하고, 안노생을 영주(寧州)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로서 그 도(道)에서 감히게 되면, 반드시 깊이 욕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였다.</p>	<p>曾不如是之甚， 故請魯生矇矚啓聞。 爾憲府職掌彈糾， 可劾以聞。” 乃命囚魯生于寧州。 上曰：“以監司見囚於其道， 其必深以爲辱矣。”</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5월 30일(신축) 3번째기사 대장·대부의 녹봉 액수에 관한 의정부의 계문</p>	<p>의정부에서 대장(隊長)·대부(隊副)의 녹봉(祿俸) 액수를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대장·대부 가운데 다시 수령(隨領)시킨 자가 6백 50인입니다. 그들의 녹봉은 미두(米豆)를 1품에서 6품까지 각각 2석(石)씩 7품에서 권무(權務)까지 각각 1석씩 감한 것과 포화(布貨)를 8품에서 권무까지 각각 1필씩 감한 것으로 그 액수(額數)를 채워서 나누어 주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가정 감사(加定甲士)의 녹과(祿科)를 상정(詳定)할 때에 8품 이하의 과(科)가 낮기 때문에 포화(布貨)를 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아울러 감하였다.</p>	<p>議政府啓隊長隊副祿俸之數。 啓曰：“隊長隊副， 復令隨領者六百五十人。 其祿俸米豆， 減自一品至六品各二石， 七品至權務各一石。 布貨減自八品至權務各一匹， 充數頒賜。” 從之。 加定甲士祿科詳定之時， 惟八品以下， 以科卑布貨得不減， 至是并減之。</p>
<p>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6월 5일(병오) 2번째기사 각도에서 조운하는 쌀을 경복궁 행랑으로</p>	<p>각도(各道)에서 조운(漕運)하는 쌀을 경복궁(景福宮) 행랑(行廊)으로 운반하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의정부에서 군자창(軍資倉)과 풍저창(豐儲倉)을 서강(西江)에 짓도록 청하니, 임금이 토목(土木) 역사를 일으켜 새 창고를 짓지 말게 하고, 이러한 명이 있었다.</p>	<p>命輸各道漕運之米於景福宮之行廊。 初， 議政府請作軍資、豐儲倉於西江， 上曰：“毋興土木， 以建新倉。” 乃有是命。</p>

운반하도록 명하다	<p>의정부(議政府)에서 창고(倉庫) 수저(收儲)의 출납(出納)에 대한 법을 아뢰었다.</p> <p>“서울과 외방의 국고(國庫)의 미속(米粟)이 연월(年月)이 오래 되지 않았는데도 많이 썩게 되는 것은, 실로 곳간[庫間]이 튼튼하지 못하여 위는 새고 아래는 습(濕)하며, 수납 지출(收納支出)할 즈음에 새 곡식과 묵은 곡식을 분간하지 못하고, 또 곳간[庫間]이 협착하여 묵고 묵은 것을 섞어 쌓기 때문입니다. 창고를 견실하게 짓고 새 곡식과 묵은 곡식을 따로따로 거두어 쌓아 이를 분간하여 출납하라는 것을, 두 번 씩이나 수판(受判)하여 행이(行移)하였는데, 수령(守令)들이 폐해 두고 행하지 않아서 새 것과 묵은 것이 도치(倒置)되고, 감사(監司) 또한 <수령에게> 맡겨 두고 고찰하지 않으니, 모두 위임한 뜻을 잃었습니다. 금후로는 각관(各官)의 창고를 모두 배판(排板)하여 짓고 신규 곡식을 분간하여 수납하되,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내어 고찰하게 해서, 만일 곳간이 부실하여 썩고 손실되었거나, 새 것 묵은 것을 섞어 쌓은 자가 있으면, 각관(各官)의 수령(守令)과 관찰사(觀察使)·수령관(首領官)을 율(律)에 의해 논죄(論罪)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p> <p>“각도(各道) 각관(各官)의 군자(軍資) 미속(米粟)이 두어 해도 지나지 못하여 별레가 먹고 썩어서, 군량(軍糧)의 저축이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습니다. 마땅히 각관(各官)으로 하여금 수납(收納)할 때를 당하여 황두(黃豆)를 제외한 미속(米粟)은 매 1두(斗)에 정미(精米) 1승(升)을 주어 용정(春正)해 찌서 말리[蒸乾]어 입고(入庫)하게 하고, 또 광흥창(廣興倉)에 바치는 각 품(品)의 녹봉(祿俸) 갱미(粳米)는 조미(造米)로 대신하여 민폐(民弊)를 제거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예전 법을 경솔히 고칠 수 없다.”</p>	<p>議政府啓倉庫收儲出納之法。 啓曰：</p> <p>京外國庫米粟， 年月未久， 多致腐朽， 實由庫間不實， 上漏下濕， 收支之際， 不能揀新舊穀， 亦有庫間狹窄， 陳陳交積故也。 倉庫堅實造作， 新舊各別收儲， 分揀出納， 再度受判行移， 而守令廢閣不行， 以致新舊倒置； 監司任置， 不行考察， 俱失委任之意。 今後各官倉庫， 並以排板造作， 新舊穀分揀收納。 敬差官發遣考察， 如有庫間不實， 以致朽損， 新舊交積者， 各官守令及觀察使首領官， 依律論罪。</p> <p>從之。 又啓曰：</p> <p>各道各官軍資米粟， 不過數年， 蟲損腐朽， 糧餉之畜， 有名無實。 宜令各官， 當收納之時， 除黃豆外， 米粟每一斗給精一升， 春正蒸乾入庫， 又廣興倉所納各品祿俸粳米， 代以造米， 以除民弊。</p> <p>上曰：“舊法不可輕改。” 政府復啓曰：“惟辟玉食， 宜改施行。” 許之。</p>
-----------	--	---

	하였다. 정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오직 임금이라야 옥식(玉食)을 할 수 있으니, 마땅히 고쳐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7월 24일(갑오) 1번째기사 날씨가 음산하기 때문 에 마시는 것을 중지 하다	약주(藥酒)를 정지할 것을 명하였으니, 음침한 여기(沴氣)를 근심한 때문이다.	甲午/命止藥酒。憂陰沴也。
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7월 26일(병신) 2번째기사 일본 단대전에서 토산 물을 바치다	일본(日本) 단대전(丹大殿)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토물(土物)을 바쳤다.	日本丹大殿，遣使獻土物。
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8월 9일(무신) 2 번째기사 천번재이로 음주하지 않다가 비로소 의정부 에서 올린 술을 마시 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술을 올리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천재(天災)로 인하여 먹는 것이 달지 않은데, 지금 들으니 백료(百僚)들 또한 모두 마시지 않는다 하니, 이 때문에 허락한다.”	議政府進酒，上曰：“予以天災，食旨 不甘，今聞百僚亦皆不飲，爲是而許 之。”
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사소(思紹)가 사신(使臣)을 보내어 내빙	庚寅/琉球國中山王思紹，遣使來聘。 咨曰：

<p>7년) 9월 21일(경인) 1번째기사 유구국 중산왕 사소가 사신편에 예물과 포로를 송환하는 내용의 자문을 보내다</p>	<p>(來聘)하고, 자문(咨文)하였다.</p> <p>“1. 수사(酬謝)에 대한 일. 생각건대, 홍무 연간(洪武年間)에 여러 번 귀국(貴國)에서 사신을 보내어 본국(本國)에 이르렀고, 진귀(珍貴)한 물건을 하사(下賜)하여 맹약(盟約)과 소식(消息)을 통하고 휴척(休戚)을 같이 하였었는데, 불행하게도 뒤에 선조왕(先祖王) 찰도(察度)와 선부(先父) 무령(武寧)이 서로 잇달아 홍서(薨逝)하여, 각 채(寨)가 불화(不和)하고 여러 해 동안 싸움이 그치지 않아서 일향(一向) 소활(疏闊)하게 되어 신사(伸謝)를 하지 못하였으니, 깊이 저버린 것을 황송하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지금 대명(大明) 황제(皇帝)의 먼 곳 사람을 회유(懷柔)하는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왕작(王爵)을 봉(封)해 이 지방을 관장(管掌)하게 되었으니, 흠준(欽遵)하여 조공(朝貢)하는 외에, 인국(隣國)의 의교(義交)에 대한 일절(一節)을 생각건대 또한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서로 소식을 통하는 것이, 이것이 곧 사해(四海)가 한 집이 되고 거의 윤당(允當)할 듯하기에, 이 때문에 정사(正使) 아내가결제(阿乃佳結制) 등을 보내어 본국(本國)의 해선(海船)을 타고 예물(禮物)을 장속(裝束)하여 신고 귀국에 가서 국왕 전하께 나아가 봉헌(奉獻)하게 하여, 약간의 수사(酬謝)의 정성을 펴오니,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는 선인편(船人便)에 달려 보내는 물건을 용납하여 매매(賣買)하게 해 주시고, 일찍 출발시켜 회국(回國)하게 하시오면 편익(便益)하겠습니다. 지금 봉헌 예물(奉獻禮物)의 수목(數目)을 기록하여 보내고 자문(咨文)하여 알리는 바입니다. 예물(禮物)은 호초(胡椒) 1백 근(觔), 상아(象牙) 2매(枚), 백반(白礮) 5백 근, 소목(蘇木) 1천 근입니다.</p> <p>1. 채송(遞送)에 대한 일. 부녀(婦女) 오가(吳加)의 고칭(告稱)에 의거하면, ‘원래 나주(羅州) 등처에 살고 있는 인민(人民)인데, 왕년(往年)에 왜구(倭寇)에게 노략(擄掠)을 당하여 본국에 유리(流離)해 왔다.’고 하면서, 고향에 돌아가 백성이 되어 살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고한 것을 참조하건대, 먼 곳의 사람</p>	<p>一, 酬謝事。照得, 洪武年間, 累蒙貴國遣使到國, 及惠珍貺, 得通盟耗, 與同休戚。不幸後因先祖王察度及先父武寧相繼薨逝, 以致各寨不和, 連年征戰不息, 一向疎廣, 未得伸謝, 深負惶愧。今深荷大明皇帝柔懷遠人, 寵封王爵, 掌管地方。除欽遵朝貢外, 竊念隣國義交一節, 亦合遣使往來, 相通音耗, 是爲四海一家, 庶爲允當。爲此, 專遣正使阿乃佳結制等, 坐駕本國海船, 裝載禮物, 前詣國王殿下奉獻, 少伸酬謝之誠, 幸希叱納。所據今去船人, 附搭物貨, 仍乞容令買賣, 早爲打發回國, 便益。今將奉獻禮物數目, 開坐前去, 合咨知會。禮物: 胡椒一百觔, 象牙二枚, 白礮五百觔, 蘇木一千觔。一, 遞送事。據婦女吳加告稱, 原係羅州等處人民。於往年前間, 因被倭寇擄掠, 流離本國, 告乞回鄉, 爲民住坐。參照所告, 係干遠人, 理合就行。得此, 今發去婦女三名, 吳加、三德就帶小女位加。</p>
---	---	---

	들이므로 사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하겠기에, 지금 오가(吳加) 등을 출발시켜 배에 태워 보냅니다. 지금 발송해 보내는 부녀(婦女) 3명은, 오가(吳加)·삼덕(三德)과 데리고 있는 소녀(少女) 위가(位加)입니다.”	
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0월 1일(기해) 2번째기사 일기주 왜인이 토물을 바치다	일기주(一岐州) 왜인(倭人)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토물(土物)을 바쳤다.	一岐州倭, 遣使來獻土物。
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0월 30일(무진) 3번째기사 일본 살주의 등원너구가 진위하고 토산물을 바치다	이달에 일본(日本) 살주(薩州) 등원너구(藤原賴久)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진위(陳慰)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	是月, 日本薩州藤原賴久, 遣使陳慰, 獻方物。
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1월 8일(병자) 1번째기사 일본 축전주 객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日本) 축전주(筑前州) 객인(客人)이 대궐에 나와 토물(土物)을 바쳤다.	丙子/日本筑前州客人, 詣闕獻土物。
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2월 1일(무술) 2번째기사	하운(河崙)·성석린(成石璘)·조영무(趙英茂)·이천우(李天祐)·이숙蕃(李叔蕃)·윤저(尹柢)·한규(韓珪)·박자청(朴子靑)·심귀령(沈龜齡)·연사종(延嗣宗)에게 선소 오매패(宣召烏梅牌) 하나씩을 주었다. 대신(大臣)에게 묻기를, “납(臘)이라는 것은 엽(獵)이니, 금수(禽獸)를 사냥하여 제사(祭祀)에 쓰는 것	賜河崙、成石璘、趙英茂、李天祐、李叔蕃、尹柢、韓珪、朴子靑、沈龜齡、延嗣宗宣召, 烏梅牌各一。問諸大臣曰: “臘者, 獵也, 所以獵取禽獸,

<p>하윤 등 10명에게 선 소 오매패를 주고, 사냥을 통해 군령을 시험코자 하다</p>	<p>이다. 지금 정한 군령(軍令)을, 내가 사냥을 통하여 시험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p> <p>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대언(代言)에게 납일(臘日)의 뜻을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p> <p>“역대(歷代)에 스스로 숭상(崇尚)하던 오행(五行)의 묘(墓)로 납일(臘日)을 삼았습니다.”</p>	<p>以供祭祀也。今定軍令，吾欲因獵以試之，如何？”皆曰：“然。”上嘗問代言以臘日之意，對曰：“歷代自以所尚五行之墓爲臘。”</p>
<p>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2월 3일(경자) 1번째기사</p> <p>오매패로 조영무 이숙번 등을 불러 군령을 시험하고, 사냥을 명하다</p>	<p>오매패(烏梅牌)로 조영무(趙英茂)와 이천우(李天祐)·이숙번(李叔蕃)·연사종(延嗣宗)을 부르고, 또 영안군(寧安君) 이양우(李良祐)와 총제(摠制) 김만수(金萬壽)를 불러 대궐에 나오게 하고 명하기를,</p> <p>“옛날의 납향(臘享)에는 금수(禽獸)를 사냥하여 종묘(宗廟)에 바쳤다. 지금 영안군(寧安君)으로 중군(中軍)을 맡게 하고, 안성군(安城君)으로 좌군(左軍)을 맡게 하고, 김만수(金萬壽)로 우군(右軍)을 맡게 하여 직문기(織紋旗)를 주고, 조 정승(趙政丞)은 삼군(三軍)을 도총(都摠)하여 교외(郊外)에서 사냥하여, 털을 깎지 않은 것, 얼굴이 상하지 않은 것을 가려 종묘(宗廟)에 올리도록 하라.”</p> <p>하고, 이천우·연사종에게 이르기를,</p> <p>“경 등은 의흥 당상(義興堂上)이 되었으니, 함께 가서 군사(軍士)의 진퇴(進退)·좌작(坐作)의 절차를 가르치고, 군사들로 하여금 그 군(軍)의 기(旗)를 본 뒤에 군령(軍令)에 추창(趨蹌)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특별히 장수(將帥)를 명하는 때가 있으면, 비록 예전 장수[舊將]가 명(命)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旗)를 가진 자가 곧 그 장수(將帥)이니, 삼군(三軍)의 군사로 하여금 그 기(旗)를 보고 그 장수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가하다.”</p>	<p>庚子/以烏梅牌，召趙英茂、李天祐、李叔蕃、延嗣宗，又召寧安君良祐、摠制金萬壽詣闕，命曰：“古者臘享，獵取禽獸，以供宗廟。今以寧安君掌中軍，安城君掌左軍，金萬壽掌右軍，授以織紋旗，趙政丞都摠三軍獵于郊，擇不剪毛者、不面傷者，以供宗廟。”又謂天祐、嗣宗曰：“卿等爲義興堂上，可偕往教軍士進退坐作之節，使軍士見其軍之旗，而後趨令可也。不特此也，異日或有特命將帥之時，雖非舊將，受命而持旗者，卽其將帥也。使三軍之士，見其旗而知其將可矣。”尋遣判內侍府事李匡，齋宮醞勞諸將于軍中。初，上謂近臣曰：“臘日已近，禮雖當獵，然三年之喪未畢，將如何？”左代言金汝知等啓曰：“獵以供祭，禮也。”</p>

	<p>하였다. 조금 뒤에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이광(李匡)을 보내어 궁온(宮醞)을 싸 가지고 가서 여러 장수들을 군중(軍中)에서 위로하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납일(臘日)이 이미 가까왔으니, 예(禮)에는 비록 사냥해야 마땅하나, 3년상이 끝나지 않았으니 장차 어찌해야 할까?” 하니, 좌대언(左代言) 김여지(金汝知) 등이 아뢰기를, “사냥하여 제사에 바치는 것이 예(禮)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에 묻기를, “납향(臘享)에 올리는 여우·토끼·노루·사슴은 장차 털을 뽑고 가죽을 벗겨서 올릴 것인가?” 하니, 정부(政府)에서 아뢰었다. “털만 뽑고 가죽은 벗기지 말고 생체(生體)로 올리소서.”</p>	<p>上問議政府曰：“臘享所薦狐兔獐鹿，將去毛剝皮以薦乎？”政府啓：“去毛不剝皮，以生體薦。”</p>
<p>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2월 6일(계묘) 2번째기사 군량을 보충하기 위해 각품의 관원과 서인들에게 차등적으로 쌀을 내게 하다</p>	<p>각 품(品)에게 차등 있게 쌀을 내도록 명하였으니, 군량(軍糧)을 보충하기 위함이었다. 시행(時行) 1품(品)은 쌀10석(石), 2품은 9석, 공신(功臣)은 3분의 1을 더하고, 정3품은 7석, 종3품은 6석, 4품은 4석, 5품은 3석, 6품은 2석, 7품은 1석, 8품은 10두(斗), 9품 권무(權務)는 5두이고, 전함(前銜) 1품은 5석, 2품은 4석, 3품은 3석, 4품은 2석, 5품은 20두(斗), 6품은 1석, 7품은 10두(斗), 8품은 5두, 9품 권무(權務)는 3두이고, 수전 과부(受田寡婦)는 매(每) 10결(結)에 1석이고, 무수전(無受田) 전함(前銜) 1품은 3석, 2품은 2석, 3품은 1석, 4품은 10두, 5품은 8두, 6품은 7두, 7품은 5두, 8품은 3두, 9품 권무(權務)는 2두이고, 서인(庶人)·상공(商工)·천구(賤口)는 대호(大戶)는 3두, 중호(中戶)는 2두, 소호(小戶)는 1두이고, 피롱(疲癯)1605)·폐질자(廢疾者)는 거두지 않게 하고, 외방(外方)에서는 이미 행이(行移)한 것에 의하여 호급 둔전(戶給屯田)의 수(數)를 거두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두는 곳과 관장(管掌)할 관원을 마땅히 빨리 결정하여 세전(歲前)에 다 거</p>	<p>命令各品出米有差。補糧餉也。時行一品米十石，二品九石，功臣加三分之一。正三品七石，從三品六石，四品四石，五品三石，六品二石，七品一石，八品十斗，九品權務五斗。前銜一品五石，二品四石，三品三石，四品二石，五品二十斗，六品一石，七品十斗，八品五斗，九品權務三斗。受田寡婦每十結一石。無受田前銜，一品三石，二品二石，三品一石，四品十斗，五品八斗，六品七斗，七品五斗，八品三斗，九品權務二斗。庶人工商賤口，大戶三斗，中戶二斗，小戶一斗。疲</p>

	<p>두도록 하라. 내가 장차 종친(宗親)을 독촉하여 남보다 먼저 바치게 하겠다.” 하였다.</p>	<p>癯廢疾者，勿收。其外方，依已曾行移收戶給屯田之數。上曰：“其所收之處與所掌之官，宜速區處，須於歲前畢收。予將督宗親，以爲人先。”</p>
<p>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2월 10일(정미) 1번째기사 납향제를 지내고, 사냥한 새를 종묘에 올리는 것을 상례로 삼도록 하다</p>	<p>임금이 문소전(文昭殿)에 나아가 납향제(臘享祭)를 행하고, 사냥한 새[禽]를 종묘(宗廟)에 올리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예조(禮曹)에 명하여 일정한 법(法)으로 삼게 하였다.</p>	<p>丁未/上詣文昭殿行臘享祭。命以所獵之禽，薦於宗廟，仍命禮曹著爲令。</p>
<p>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2월 14일(신해) 2번째기사 부자집의 곡식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용에 충당토록 하다</p>	<p>부자집[富家]의 곡식[粟]을 검색(檢索)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부자 사람[富人]들이 저축하고 있는 곡식을, 본호(本戶)의 인구(人口)를 계산하여 적으면 2백 석(石), 많으면 3백 석을 적당하게 주인에게 주고, 그 나머지 잡곡(雜穀)은 관(官)에서 그 수량을 기록하여 그대로 그 집에 두고, 만일 국가의 용도가 넉넉지 못하면 관(官)에서 값을 주고 공용(公用)에 충당하고, 일이 없으면 도로 그 주인에게 돌려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括富家粟。議政府啓：“各道富人所蓄之穀，計其本戶人口，少則二百石，多則三百石，量宜給主；其餘雜穀，官錄其數，仍置其家。萬一用調不[瞻]，則官給價直，以充公用，無事則還給其主。”從之。</p>
<p>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2월 15일(임자) 3번째기사 경상도 경차관 한옹이 산성 보수 등 편민 사의를 올린다</p>	<p>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 한옹(韓雍)이 돌아와서 편민(便民)1606) 두어 조목(條目)을 올렸다. “백성들의 자원(自願)에 따라 봄에 창고(倉庫)의 묵은 콩[陳豆]을 내주고 가을에 가서 새 콩[新豆]으로 거두며, 공아(公衙)의 마료(馬料)1607) 에 있어서도 묵은 콩을 사용케 하소서. 또 높고 험한 산성(山城)에 물이 있는 곳은 매양 농사 틈을 당하면 수축(修築)하게 하되, 3년으로 한(限)하고, 또 백성들이 쌀을 바치는 것을 어렵게 여기니, 면포(縣布)를 거두는 밭에는 쌀로 거두지</p>	<p>慶尙道敬差官韓雍還，上便民數條。啓曰：“從民自願，春給倉庫陳豆，及秋收新豆，公衙馬料，亦用陳豆。又高嶮山城有水處，每當農隙修築，限以三年。且民以納米爲艱，乞於縣布之田，勿令收米。”從之。</p>

	<p>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고, 의정부는 의흥부(義興府)에 행이(行移)하고 계문(啓聞)하여, 사냥해서 잡은 짐승을 전사시(典祀寺)에 주어 천향하게 하되, 항식(恒式)으로 삼으소서.”</p>	<p>獲獸，付典祀寺薦享，以爲恒式。</p>
<p>태종 18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2월 21일(무오) 5번째기사 조세 징수의 완화 및 호패법 강화 등에 관한 좌헌납 송희경 등의 편민 사의</p>	<p>좌헌납(左獻納) 송희경(宋希璟) 등이 편민 사의(便民事宜)를 올렸는데, 그 소(疏)의 대강은 이러하였다. “삼대(三代) 와 한(漢)나라가 그 역년(歷年)이 많았던 것은 8백 년이고, 적은 것은 4백 년에 내려가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은택(恩澤)으로 인심(人心)을 결합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뒤로부터 내려오면서 많은 것은 60년, 적은 것은 겨우 20년이었으니, 이것은 모두 백성에게 원망을 샀기 때문에, 그 근본이 단단하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또 우리 나라로 말한다면 무진년 회군(回軍)하던 때에는 인심(人心)이 지극히 어진 사람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태조(太祖)께서 포학한 것을 금지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처음으로 방가(邦家)를 세우셨으며, 무인년 정사(定社)하던 날에는 인심(人心)이 지극히 덕(德)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전하께서 흉당(凶黨)을 주토(誅討)하여 대위(大位)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고금(古今) 천하(天下) 국가(國家)의 치란(治亂)·흥망(興亡)이 오직 군사[甲兵]의 성(盛)함과 저축(貯蓄)의 많은 것에 있는 것만 아니라, 인심(人心)의 향배(向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영명(英明)한 자품(資稟)으로 경사(經史)를 널리 보시어 고금(古今) 치란(治亂)·흥망(興亡)의 자취에 대해 깊이 살피시고 빠뜨림이 없으신데, 오늘날에 있어서만 인심(人心)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몇 해 전부터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겹쳐서 공사(公私)의 저축(貯蓄)이 모두 넉넉치 못하고, 하물며, 금년에는 수재로 인하여 백성들이 세전(歲前)에 먹을 것이 없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군량(軍糧)의 준비를 염려하여 하루아침에 갑자기 식량을 족하게 하려 하니, 각도(各道)의 감사</p>	<p>左獻納宋希璟等，上便民事宜。 疏略曰： 三代及漢，歷年多者八百，小者不減四百，皆以恩結人心，人不能忘故也。自是以降，多者六十年，少者纔二十年，皆結怨於民，本根不固故也。且以國家言之，戊辰回軍之時，人心歸于至仁，故太祖禁暴除害，肇造邦家；戊寅定社之日，人心歸于至德，故殿下誅討凶黨，以正大位。 由是觀之，古今天下，國家治亂興亡，不惟在於甲兵之盛，蓄積之多，係乎人心向背而已。殿下以英明之資，博覽經史，其於古今治亂興亡之迹，深燭無遺，獨於今日，不察人心可乎？頃年以來，水旱相仍，公私蓄積，俱爲不瞻 [瞻]。 況今年因水災，百姓之歲前無食者多矣。國家慮糧餉之備，欲於一朝，遽以足食，各道監司，知國家之慮，而驗田之際，取實差多，民望已缺，又遣敬差，收屯田之租，徵義倉之糶，其爲敬差官者，惟以盡職爲念，而不顧民生之休</p>

(監司)가 국가에서 염려하는 것을 알고, 전지(田地)를 답험(踏驗)할 적에 실(實)을 취(取)하기를 조금 많이 하여, 백성들이 이미 실망하고 있는데, 또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둔전(屯田)의 조(租)를 거두고 의창(義倉)의 환자[糶]를 징수하니, 경차관이 된 자가 오직 직책을 다하는 것만 생각하고 민생(民生)의 휴척(休戚)은 돌보지 아니하여, 징수하고 독촉하기를 심히 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곡식이 있는 자는 조석거리까지 모두 실어다 바치고, 곡식이 없는 자는 집안의 가산(家産)을 팔아서 바치는데, 심한 자는 농우(農牛)와 토전(土田)까지도 모두 팝니다. 신 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이들 백성들이 장차 입을 닫고 배를 주리며 부역(賦役)에 이바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장차 처자(妻子)를 이끌고 곡식이 있는 곳으로 나가겠습니까? 말을 하자면 가위(可謂) 눈물이 흐를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한 절호(絶戶)에 대해서는 일족(一族)을 추심(推尋)하여 물리[償]기도 하고, 혹은 이웃에게 징수하니, 이것은 곤궁(困窮)한 백성의 입안의 먹이를 빼앗아서 국가의 군량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니, 말하자면 가위(可謂) 통곡할 일입니다. 자고(自古) 이래로 백성이 근심하고 원망하는데 국가가 편안한 일은 없었습니다. 수(隋)나라가 낙구창(洛口倉)에 저축을 하였는데 이 밀(李密)이 이것을 의뢰하였고, 당(唐)나라가 대영고(大盈庫)에 축적(蓄積)하였는데 주자(朱泚)가 이를 쫓으니, 대저 양식(糧食)은 준비하지 않을 수 없으나, 강제로 거두어서 민생(民生)을 곤(困)하게 할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일 국가에 변(變)이 있어서 피곤한 백성들을 몰아 적(敵)에게 나가게 한다면, 어찌 윗사람에게 친하게 하고 어른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무왕(武王)의 맹진(孟津)의 맹서(盟誓)에 이르기를, ‘ 수(受)는 억만(億萬)의 오랑캐[夷人]가 있으나 오직 억만(億萬) 마음이요, 나는 신(臣) 3천(三千)이 있으나 오직 한마음[一心]이라.’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무왕(武王)으로 법을 삼지 않으십니까? 신 등은 원컨대, 곡식이 없는 백성이 타간 조미(糶米)는 일체 모두 독촉

戚, 徵督甚嚴。 其有穀者, 盡朝夕之食而輸之, 其無穀者, 鬻一家之産而納之, 甚者, 農牛土田, 亦皆賣之。 臣等未知斯民, 將閉口枵腹而供賦役乎? 將携妻挈子, 就有粟乎? 言之可謂流涕矣。 又於逃亡絶戶, 或推一族而償之, 或當四隣以徵之, 是奪窮民口中之食, 以備國家糧餉之資, 言之可謂痛哭矣。 自古以來, 百姓愁怨, 而國家安寧者, 未之有也。 隋貯洛口倉而李密資之, 唐積大盈庫而朱泚用之。 夫糧餉不可不備, 然不可強斂, 以困民生也明矣。 若國家有變, 則驅疲困之民而赴敵, 其能親其上死其長乎? 武王孟津之誓曰: “受有億萬夷人, 惟億萬心, 予有臣三千, 惟一心。” 殿下豈不以武王爲法乎? 臣等願無穀之民所糶之米, 一皆停督, 待其豐年; 逃亡之民, 一族四隣, 一皆停徵, 待其復還, 以施仁恩, 以安民生。 又前銜品官, 雖有官爵之名, 而無擔石之資者頗多, 已皆困於品馬, 又收品米, 誠可矜恤。 臣等願無受田前銜官, 隨烟戶之例收之; 受田者, 勿論職秩, 隨受田之數而收之。 至若武備, 今日之急務, 不可不慮。 各道監

<p>하는 것을 정지하여 풍년(豐年)을 기다리고, 도망한 백성에 대해서는 일족(一族)과 이웃[四隣]에게 〈대신〉 징수하는 것을 일체 모두 정지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어진 은혜를 베풀어 민생(民生)을 편케 하소서.</p> <p>또 전함 품관(前銜品官)은 비록 관작(官爵)의 이름은 있으나 담석(擔石)의 저축도 없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미 모두 품마(品馬)에 지쳤는데, 또 품미(品米)를 거두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신 등은 원컨대, 전지(田地)를 받은 것이 없는 전함 관원(前銜官員)은 연호(煙戶)의 예(例)에 따라서 거두고, 전지(田地)를 받은 자는 그 직질(職秩)을 논(論)하지 말고 받은 전지(田地)의 수(數)에 따라서 거두소서.</p> <p>그리고, 무비(武備)에 이르러서는 오늘날의 급무(急務)이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나, 각도(各道) 감사(監司)나 절제사(節制使)가 모두 왕실(王室)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니, 가을부터 겨울이 지나기까지 군용(軍容)을 점고(點考)하기를 자세히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충직(忠直)하고 무사(武事)를 아는 자를 가려서 말 한 필을 주어 보내어 사마 갑병(司馬甲兵)의 허실(虛實)을 보고, 감사(監司)·절제사(節制使)의 능부(能否)를 살펴서 위에 아뢰게 하여 그 출척(黜陟)을 밝힌다면, 족히 장수가 힘쓰고 군사가 강하게 되어, 향(向)하는 곳마다 대적(對敵)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대신(大臣)을 보내어 종관(從官)을 거느리고 군현(郡縣)을 소란하게 하며, 백성들을 피로하게 한 연후에야, 무비(武備)가 정(精)하게 되겠습니까? 원컨대, 순찰(巡察)을 보내는 것을 정지하여 군현(郡縣)을 편안케 하소서.</p> <p>또 신 등은 초야(草野)에서 생장(生長)하여 민간(民間)의 일을 안 지가 오랍니다. 백성이 항산(恒産)이 있고 항심(恒心)이 있는 자는 그 고을[官]에 호적(戶籍)을 붙여 부역(賦役)에 이바지하지만, 항산도 없고 항심도 없는 자는 금년엔 남쪽 고을의 호활(豪猾)한 자에게 숨고,明年엔 북쪽 고을의 향원(鄉愿)에게 옮겨 가, 똑같은 국민이면서도 징세(徵稅)와 부역(賦役)을 모피(謀避)하니,</p>	<p>司節制使，皆盡忠王室者，自秋過冬，點考軍容詳矣。 殿下擇其忠直知武事者，給一馬而遣之，觀士馬甲兵之虛實，察監司節制之能否，轉聞于上，以明黜陟，則足以致士勵兵強，而所向無敵矣。 何必遣大臣率從官，煩擾郡縣，疲勞百姓而後，武備得以精乎？ 臣等願停巡察之遣，以安郡縣。 且臣等生長草野，知民間之事久矣。 民之有恒産而有恒心者，籍付其官，以供賦役；無恒産而無恒心者，今年匿於南州之豪猾，明年移於北郡之鄉愿。 鈞是國民，而謀避征役，乃奸民也。 國家雖遣大臣，鞭撻戶首，推得其人，付名于籍，然其民已無恒心，今日付籍，明日流亡，徒以擾民，煩軍額耳。 臣等願下令中外，皆給戶牌，無牌者，推而罪之，則前日之流亡者，皆欲受牌而自首於今日矣。 伏惟殿下採擇施行。</p> <p>上覽之怒，以示河崙、成石璘、趙英茂等曰：“國家講求足食之道，非一朝[一]夕，何得云遽以足食乎？ 今政府所言民之貸義倉穀者，收之以備軍資耳，非設新法以斂之也。 何以言奪口中之食乎？ 隋、唐倉廩，皆爲遊逸之</p>
--	--

	<p>간사한 백성입니다. 국가에서 비록 대신(大臣)을 보내어 호수(戶首)를 매질하여 그 사람을 찾아내어 이름을 호적(戶籍)에 붙인다 하더라도, 그 백성은 이미 항심(恒心)이 없어, 오늘에 호적에 이름을 붙이고 명일에 유리(流離)하여 도망하니, 한갓 백성을 소란하게 하고 군액(軍額)을 번잡하게 할 뿐입니다. 신 등은 원컨대, 안팎에 영(令)을 내려 모두 호패(戶牌)를 주고, 호패가 없는 자는 조사하여 죄를 주면, 전일에 유리하여 도망한 자가 모두 호패를 받으려고 오늘에 자수(自首)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채택하여 시행하소서.”</p> <p>임금이 보고 노(怒)하여 하윤(河崙)·성석린(成石麟)·조영무(趙英茂) 등에게 보이며 말하기를,</p> <p>“국가에서 식량(食糧)을 족(足)하게 할 방도를 강구한 것이 하루아침 하루저녁이 아닌데, 어찌 갑자기 식량을 족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정부(政府)에서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의창(義倉) 곡식을 꾸어간 것을 거두어 군자(軍資)를 비축하자는 것이지, 새 법을 만들어 거두자는 것이 아닌데, 어찌 입안의 먹이를 빼앗는다고 말하는가? 수(隋)나라·당(唐)나라의 창름(倉廩)은 모두 유일(遊逸)의 공봉(供奉)을 위한 것이고, 오늘날은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니, 비교가 되지 않는데, 어째서 수·당을 끌어대어 말하는가? 지금 상국(上國)에 변(變)이 있고, 국가에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 특별히 군량(軍糧)을 준비하는 것이지, 대지(臺池)나 조수(鳥獸)·환관(宦官)·궁첩(宮妾)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간관(諫官)이 일을 말하는 데는 비록 마땅히 박절(迫切)하게 해야 되지만, 어떻게 없는 일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옥(獄)에 가두려고 하는데 어떤가?”</p> <p>하니, 정부(政府)에서 말하기를,</p> <p>“간신(諫臣)의 말이 비록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옥(下獄)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지금 용서한다면 과감하게 말하는 선비가 나올 것입니다.”</p>	<p>奉，非今日備急之比，何以引隋、唐而言乎？上國有變，國有戒心，特以備糧餉耳，非以為臺池鳥獸宦官宮妾之奉也。諫官言事，雖當迫切，豈可以所無之事，為若是之言乎？予欲下之於獄，如何？”政府言：“諫臣之言，雖不中，不可下獄。若今赦之，敢言之士出矣。”乃令政府代言召希璟等，詰之。希璟等對曰：“臣等之意，非謂設新法以斂民也。民雖曾貸之，今茲歲凶，若盡徵之，則民將失食矣。有國家者，豈徒恃蓄積之多哉！民心之和，實保國之道也。”上命賜酒而遣之。</p>
--	---	---

	<p>하였다. 이에 정부(政府)·대언(代言)에게 명하여 송희경(宋希璟) 등을 불러 힐문(詰問)하니, 송희경 등이 대답하기를, “신 등의 뜻은 새 법을 만들어 백성에게 거두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비록 일찍이 꾸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 만일 다 징수한다면 백성들이 장차 끼니를 잃을 것입니다. 국가를 가진 자가 어찌 한갓 저축(貯蓄)의 많은 것만 믿을 수 있습니까? 민심(民心)의 화(和)한 것이 실로 나라를 보전하는 방도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술[酒]을 주어 보내었다.</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월 8일 (을해) 2번째기사 일본 지좌전 일기주에서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日本) 지좌전(志佐殿) 일기주(一岐州) 왜(倭)가 사람을 보내어 토물(土物)을 바쳤다.</p>	<p>日本志佐殿、一岐州倭，遣人獻土物。</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월 9일 (병자) 1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p>	<p>금주령(禁酒令)을 내렸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늙고 병든 사람이 약(藥)으로 먹는 것과 마을[閭里]에서 매매(賣買)하는 것도 모두 엄하게 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丙子/下禁酒令。 議政府啓曰：“老病服藥、閭里買賣，亦皆痛禁。” 從之。</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월 16일 (계미) 2번째기사 종친과 해운정에서 활쏘는 것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풀다</p>	<p>종친(宗親)을 해운정(解慍亭)에 불러 활쏘기를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p>	<p>召宗親于解慍亭，觀射置酒。</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1월 17일 (갑신) 4번째기사 강원도의 곡식을 운반 하여 동북면의 기근을 진휼하다</p>	<p>동북면(東北面)의 기근(飢饉)을 진휼(賑恤)하였다. 수륙(水陸)으로 강원도(江原道)의 곡식을 운반하여 진휼하라고 명하였다.</p>	<p>賑東北面飢。命以水陸運江原道之穀以賑之。</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1월 26일 (계사) 3번째기사 올랑합 모련위 지휘 보을자 등 9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p>	<p>올랑합(兀良哈) 모련위 지휘(毛憐衛指揮) 보을자(寶乙者)와 천호(千戶) 오합주(吾哈主) 등 9인이 와서 토물(土物)을 바쳤다.</p>	<p>兀良哈毛憐衛指揮寶乙者、千戶吾哈主等九人，來獻土物。</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1월 28일 (을미) 4번째기사 군적·역참·수령 전취· 도량형·시전 등의 시 폐에 대한 사헌부의 시무책</p>	<p>1. 사선서(司膳署)는 각전(各殿)의 입번 차비(入番差備)에 대한 공판(供辦)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하는 일[所事]이 있어 먹는 자는 이미 정한 액수(額數)가 있지만, 매일 외부에서 와서 먹는 자는 다 알지 못하고, 일체 반공(飯公)의 보고에 의하여 그 수효를 기록하니, 먹는 자가 누구인지 전연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속일만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훔쳐내어 제 사용(私用)으로 삼는 자도 있고, 내료(內僚)에게 인연(夤緣)하여 일이 없이 먹는 자도 있으니, 원컨대, 사선서(司膳署)로 하여금 장부(帳簿)를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을 위임하여 이를 맡겨, 무릇 입번 차비(入番差備) 이외에 선반(宣飯)을 받는 자는, 양부 현관(兩府現官)과 친히 착함(着銜)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 사람이 일로 왔다’고 기록하고, 달관(達官)이 아니고 벼슬이 낮은 자는 모두 친히 착함(着銜)하게 하고, 매양 번(番)이 끝나는 날에 대언사(代言司)에 고과(告課)하여, 지</p>	<p>一，司膳署，掌各殿入番差備供辦之任，其有所事而食者，已有定數。若每日自外而食者，則未能悉知，而一依飯公之告，并錄其數，漫不知食者之爲誰，故知其可誣，而竊爲己用者有之；夤緣內僚，無事而食者有之。願令司膳署置簿，委一員掌之，凡入番差備外，受宣飯者，自兩府現官及不能親着者，記某人以某事而來，其非達官位卑者，皆令親着，每當番終之日，課於代言司，以省濫費。</p>

	<p>나치게 소비하는 것을 줄이게 하소서.” 소(疏)가 올라가매,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정하기를, “각도(各道)의 역승(驛丞)은 관찰사(觀察使)의 긴급(緊要)한 공차(公差)를 제외하고는 항상 맡은 각 역(驛)을 순시(巡視)하여 피차(彼此)에 유이(流移)하는 인물(人物)을 아울러 고찰하여 금지하게 하고, 봉사(奉使) 인원(人員)에게 주는 치장 미포(治裝米布)는, 사신(使臣)을 보내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그 여비(旅費)를 넉넉히 하는 것이니, 현임관(現任官)으로 봉사(奉使)하는 자는 반액(半額)을 감하고, 그 외의 나머지 여섯 가지 일은 사헌부(司憲府)의 장신(狀申)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疏上，下議政府擬議以聞。 政府議得：各道驛丞，除觀察使緊要公差外，常巡所掌各驛，彼此流移人物，并令考察禁止。 奉使人員，治裝米布，所以重遣使而優其行，其現任官奉使者，請減半外，其餘六事，請依司憲府狀申施行。 從之。</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월 28일 (을미) 5번째기사 금주령 중이었으나 의정부에 술을 하사하다</p>	<p>명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병술[瓶酒]을 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주금(酒禁)의 영(令)이 있기는 하나 궁중에서 아직 술을 끊지 않았고, 정부 대신(政府大臣)이 나이가 많으니 술이 없을 수 없다.” 하고, 이 명령이 있었다.</p>	<p>命賜議政府瓶酒。 上曰：“雖有酒禁，然宮中尙未斷絕；政府大臣年高，不可無酒。” 乃有是命。</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2월 4일 (신축) 1번째기사 전 해주 목사 양수를 보내 조문케 하다.</p>	<p>전 해주 목사(海州牧使) 양수(梁需)를 일본(日本)에 보내어 국왕(國王)에게 글을 전하게 하였으니, 보빙(報聘)과 조상(弔喪)을 위함이었다. 부물(賻物)은 백세저포(白細苧布)·흑세마포(黑細麻布) 각 25필(匹), 인삼(人蔘)·송자(松子) 각 50근(斤),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 호피(虎皮)·표피(豹皮) 각 1령(領)이고, 전물(奠物)은 백세저포·흑세마포 각 10필, 청주(淸酒) 1백 병(瓶)이었다. 처음에 일본 회례사(回禮使)를 택할 때에, 의정부(議政府)에서 양수(梁需)를 천거하여 이미 낙점(落點)을 받았는데, 양수가 물위에 익지 못하다고 사양하니, 조영무(趙英茂)가 옳게 여겨 전 부사(府使) 이재(李載)로 대신하기를 청하</p>	<p>辛丑/遣前海州牧使梁需如日本，致書國王。 報聘且弔喪也。 賻物，白細苧布黑細麻布各二十五匹、人蔘松子各五十斤、雜彩花席一十張、虎豹皮各一領； 奠物，白細苧布黑細麻布各十匹、淸酒一百瓶。 初，擇日本回禮使，議政府舉需，已受落點，需辭以不習水上。 趙英茂然之，請以前府使李載代</p>

	<p>여, 임금이 또 낙점(落點)하였다. 성석린(成石璘)이 병으로 휴가를 얻어 집에 있다가 말하기를, “무릇 출사(出使)하는 사람으로 몸에 병이 있거나 부모(父母)의 상장(喪葬)에 있는 자 이외에는, 출사(出使)를 피하려고 피하는 자는 ‘왕지(王旨)를 좇지 않는 죄로 논한다’고 본부(本府)에서 수판(受判)하였는데, 지금 스스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하였다. 조영무가 후회하여 다시 정부(政府)에서 수판(受判)한 뜻을 아뢰고, 또 이재(李載)의 어머니가 나이 늙고 병이 깊은 것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이러한 판지(判旨)가 있었으면 왜 자세히 살피지 않고 경이(輕易)하게 입초(入抄)하였는가?”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또 전 통례문 부사(通禮門副使) 장온(張蘊)으로 대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명(使命)에 합당치 않은데 무슨 까닭으로 경솔히 천거하는가?” 하고, 마침내 쓰지 않았다. 대개 장온(張蘊)의 외조모(外祖母)는 전에 사천(私賤)에게 시집가서 자식까지 있었는데, 뒤에 장온의 외조(外祖)에게 시집온 것이었다. 장온이 문과(文科)로 출신(出身)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호군(護軍)에 이르렀으나, 조정(朝廷)에서 그가 낮고 미천한 것이 이와 같은 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온이 외조모의 전부(前夫)의 소생인 천구(賤口)와 사헌부(司憲府)에 가산(家産)을 다툰 연후에, 사림(士林)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므로, 제수(除授)가 있을 때마다 장온의 고신(告身)이 대간(臺諫)을 거치지 못하였다고 한다.</p>	<p>之，上又落點。成石璘告病在家曰：“凡出使人員，身在疾病及父母喪葬外，規避者，以王旨不從論。本府之受判也，今不可自毀。”英茂悔之，更啓以政府受判之意，且言李載之母年老病深，上曰：“既有如此判旨，何不詳審而輕易入抄乎？”政府又以前通禮門副使張蘊代之，上曰：“不合使命，何故輕舉？”遂不用。蓋蘊外祖母，前嫁私賤有息，後嫁蘊之外祖。蘊以文科出身，累官至護軍，朝廷猶不知其卑微若此，及與外祖母前夫所生賤口，爭家産于司憲府，然後士林乃知之。每有除拜，其告身，未經臺諫云。</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2월 5일 (임인) 1번째기사</p>	<p>호군(護軍) 황순(黃順)을 용진(甕津)에 귀양보냈다. 처음에 황순이 명령을 받고 전라도(全羅道)에 가서 전죽(箭竹)을 취(取)해 가지고 왔는데, 임금이 쓸 수 없다고 책하니, 황순이 대답하기를, “신이 술이 취하여 일을 그릇친 잘못은 없습니다.”</p>	<p>壬寅/流護軍黃順于瓮津。初，順受命如全羅道，取箭竹以來，上責其不可用，順對曰：“臣無沈醉誤事之失。”上惡其言之不遜，下巡禁司流之。</p>

<p>말을 공손하게 하지 않은 호군 황순을 용진으로 귀양보내다</p>	<p>하였다. 임금이 그 말이 공손치 못한 것을 미워하여, 순금사(巡禁司)에 내려 귀양보낸 것이다.</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2월 7일 (갑진) 3번째기사 부평의 토호인 전 용진 병마사 임득방의 고발로 부평 부사 조진을 공주로 귀양보내다</p>	<p>부평 부사(富平府使) 조진(趙璿)을 삭직(削職)하여 공주(公州)로 귀양보냈다. 처음에 부평(富平) 토호(土豪) 전 용진 병마사(甓津兵馬使) 임득방(任得方)이 그 우마(牛馬)와 나귀[驢]를 내놓아 밭곡[田禾]을 밟아 손상시켰으므로, 조진(趙璿)이 그 종[奴]을 잡아다가 곤장을 때렸다. 임득방이 분(憤)이 나서 마침내 사헌부(司憲府)에 고소하기를, 조진이 흉년이 든 것을 따지지 않고 백성의 먹이에 긴절(緊切)하지 않은 물건으로 백성의 힘을 고용(雇傭)하고, 둔전(屯田)의 금지(禁止)를 범(犯)하고, 어염(魚鹽)을 판매하고, 삼[麻]과 보리[麥]을 무역하여 제 이익(利益)을 꾀하였다는 등 아홉 가지 일이었다. 헌부(憲府)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보니, 일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조진은 이것으로 좌죄(坐罪)되어 죄를 당하였다. 또 임득방의 소첩(訴牒)이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음을 논하여 아울러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p>	<p>富平府使趙璿，削職流公州。初，富平土豪前甓津兵馬使任得方，放其牛馬驢子，踏損田禾，璿執其奴而杖之。得方發憤，遂訴璿不計年凶，以不切民食之物，傭借民力，犯禁屯田，販鬻魚鹽，貿易麻麥，規利入己等九事于憲府。憲府覈之，事頗實，璿坐此得罪。又論得方訴牒，事多不實，並請其罪，命勿論。</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2월 10일 (정미) 3번째기사 길주 찰리사 조연에게 울적함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다. 덕릉과 안릉의 이전 문제 거론</p>	<p>길주 찰리사(吉州察理使) 조연(趙涓)을 명하여 울적함(兀狄哈)을 치게 하였다. 동북면 병마 도절제사(東北面兵馬都節制使) 연사종(延嗣宗)이 한흥보(韓興寶)가 패사(敗死)한 상황을 치보(馳報)하니, 임금이 깜짝 놀라 한흥보가 나라를 위해 전망(戰亡)하였다 하여 쌀·콩 40석과 종이 1백 권(卷)을 부의(賻儀)하고, 귀장(歸葬)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울적함(兀狄哈)을 토벌하려고 하여 일찍이 경원(慶源)을 지켰던 자를 모조리 불러서 그 방략(方略)을 물으니, 조영무(趙英茂) 등이 아뢰기를, “지금 울적함 등이 까닭 없이 입구(入寇)하여 변장(邊將)을 죽였으니, 이것을 내버려두고 치지 않는다면 저들이 징계(懲戒)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파을소지휘(波乙所指揮)도 역시 울적함의 별종(別種)인데, 그가 중간에 거(居)하여 양쪽으로 투항(投降)하니, 이것 또한 아울러 멸(滅)해야 됩니다. 청컨대, 길주</p>	<p>命吉州察理使趙涓，往伐兀狄哈。東北面兵馬都節制使延嗣宗馳報韓興寶敗死之狀。上驚駭，以興寶爲國戰亡，賻米豆四十石、紙百卷，命歸葬。上欲討兀狄哈，悉召曾守慶源者問方略，趙英茂等啓曰：“今兀狄哈等無故入寇，殺邊將。釋此不討，彼無所懲。波乙所指揮，亦兀狄哈之別種也。居中兩投，亦當並滅。請令吉州察理使調其道兵馬一千以往，則可一舉而滅之也。”上然之，以大護軍朴楯爲敬差</p>

도 찰리사(吉州道察理使)로 하여금 그 도(道) 병마(兵馬) 1천을 조발(調發)하여 친다면 단번에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옹계 여겨, 대호군(大護軍) 박미(朴楣)로 경차관(敬差官)을 삼아 경원(慶源)에 가서 사변(事變)을 조사 탐지[體探]하게 하고, 돌아오는 날에 접전(接戰)할 때의 군중(軍中)의 영리한 자 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첨총제(僉總制) 곽승우(郭承祐)로 경원진 병마사(慶源鎭兵馬使)를 삼고, 행사직(行司直) 안을귀(安乙貴)로 경원진 좌우익 도천호(慶源鎭左右翼都千戶)를 삼아 역마(驛馬)를 타고 빨리 달려 진(鎭)에 부임하게 하였다. 임금이 또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의논하니, 하운(河崙)·성석린(成石璘)이 대답하기를,

“작은 산도둑[山寇]을 이긴다 하더라도 무위(武威)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이 도둑은 본래 쥐처럼 훔치고 개처럼 도둑질하여 대군(大軍)에게 덤비려 들지 않습니다. 신 등은 두렵건대, 우리 군사가 그 지경(地境)에 이르면 곧 산골짜기로 도망하고, 우리 군사가 퇴각하면 다시 와서 침요(侵擾)할 것이니, 한갓 왕사(王師)만 수고롭게 하고 후일의 변흔(邊釁)만 열어 놓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조영무(趙英茂)·유양(柳亮) 등이 아뢰기를,

“작은 도적이 감히 우리 지경(地境)에 독기(毒氣)를 부리니, 이때에 섬멸하지 않으면 무위(武威)를 과시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도적뿐만 아니라, 오도리(吾都里)·올랑합(兀良哈) 잡종(雜種)도 두려워함이 없을 것이니, 한번 거사(舉事)하여 멸(滅)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조영무 등의 의논을 좇아 조연(趙涓)으로 주장(主將)을 삼고, 전 도절제사(都節制使) 신유정(辛有定)·전 동지총제(同知總制) 김중보(金重寶)로 동북면 조전 절제사(東北面助戰節制使)를 삼아, 신유정 이하 모두 조연의 절도(節度)를 받게 하였다. 신유정은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쌀과 콩을 적당하게 주어 가족(家族)을 부양(扶養)하게 하고, 또

官，如慶源體探事變。命回還之日，率接戰時軍中穎悟者一人以來。以僉總制郭承祐爲慶源鎭兵馬使，行司直安乙貴爲慶源鎭左右翼都千戶，令馳驛赴鎭。上又命議政府議之，河崙、成石璘對曰：“叢爾山寇，勝之不武。且此寇本鼠竊狗偷，非欲抗大軍。臣等恐師至其境，卽逃竄山谷，師退則復來侵擾，徒勞王師，而啓後日之邊釁也。”趙英茂、柳亮等啓曰：“小寇敢肆毒於我境，不以此時往殄滅之，卽無以示威武也。且非止此寇而已，吾都里、兀良哈雜種，亦無所懼矣，不如一舉而滅之。”上從英茂等之議，使趙涓爲主將，前都節制使辛有定、前同知總制金重寶爲東北面助戰節制使，有定以下，皆受涓節度。有定家貧，故令議政府量給米豆，以養家屬，又賜襲衣弓矢以遺之。上謂宰相等曰：“慶源，但德、安二陵在耳。遷陵，古亦有之，遷陵廢郡，退守鏡城如何？”皆曰：“可。”乃命議政府，擬議陵室奉遷便否以聞。

	<p>〈신유정에게〉 습의(襲衣)와 궁시(弓矢)를 주어 보냈다. 임금이 재상(宰相)들에게 이르기를, “경원(慶源)에는 다만 덕릉(德陵)과 안릉(安陵) 두 능이 있을 뿐이다. 능을 옮긴 일이 예전에도 있었으니, 능을 옮기고 군(郡)을 폐(廢)하여, 경성(鏡城)으로 물러와 지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 하였다. 이에 의정부에 명하여 능실(陵室)을 천봉(遷奉)할 편부(便否)를 의논해 아뢰게 하였다.</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2월 25일 (임술) 2번째기사 맹가첩목아의 뜻을 살피기 위해 상호군 김화미 등을 건주위로 보내 물품을 하사하다</p>	<p>상호군(上護軍) 이화미(李和美)와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최야오내(崔也吾乃)를 건주위(建州衛)에 보내어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에게 저포(苧布)·마포(麻布) 각 10필, 청주(淸酒) 20병을 주었으니, 그 뜻을 살피기 위함이었다.</p>	<p>遣上護軍李和美、檢校漢城尹崔也吾乃如建州衛，賜童猛哥帖木兒苧麻布各十匹、淸酒二十瓶。 觀其意也。</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2월 25일 (임술) 3번째기사 뇌물을 받고 왕명을 사칭하여 관곡을 횡령한 김옥겸의 직첩을 추탈하다</p>	<p>명하여 김옥겸(金玉謙)의 직첩(職牒)을 추탈(追奪)하였다. 김옥겸은 본래 동북면(東北面) 정주(定州)의 아전[吏]이었는데, 잠저(潛邸) 때에 심부름을 하여 벼슬이 상호군(上護軍)에 이르렀고, 본궁(本宮)의 전곡 출납(錢穀出納)을 관장하여 많은 불의(不義)한 일을 행하였다. 사노(私奴) 최인(崔隣) 등의 뇌물을 받고 거짓 내교(內敎)라 칭탁하여 서장(書狀)을 만들어 함주(咸州) 본궁(本宮)에 보내어 속미(粟米) 70석(石)과 직미(稷米) 30석(石)을 도둑질하여 썼다. 일이 발각되자, 옥겸은 이미 죽었으므로, 명하여 직첩을 거두고, 최인 등은 차등에 따라 곤장을 때렸다.</p>	<p>命追奪金玉謙職牒。 玉謙，本東北面定州吏也。 給事潛邸，官至上護軍，掌本宮錢穀出納，多行不義；受私奴崔隣等賂；妄托內敎爲書，至咸州本宮，盜用粟米七十石、稷米三十石。 事覺，玉謙已死，命收職牒；崔隣等，決杖有差。</p>
<p>태종 19권, 10년</p>	<p>대호군(大護軍) 황석중(黃碩中)을 동북면 경차관(東北面敬差官)을 삼아 동맹가</p>	<p>以大護軍黃碩中爲東北面敬差官，遣酒</p>

<p>(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2월 26일 (계해) 2번째기사 대호군 황석중을 동북면 경차관으로 삼아 동맹가첩목아에게 주찬을 보내다</p>	<p>첩목아(童猛哥帖木兒)에게 주찬(酒饌)을 주었다.</p>	<p>饌于童猛哥帖木兒。</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3월 1일 (정묘) 2번째기사 중군 호군 전흥을 동북면에 보내 북벌하는 장수들을 위로하고 전지를 내리다</p>	<p>중군 호군(中軍護軍) 전흥(田興)을 동북면(東北面)에 보냈으니, 궁온(宮醜)을 싸 가지고 가서 북벌(北伐) 장수(將帥)들을 위로하게 함이었다. 인하여 전지(傳旨)하기를, “적(賊)이 달아나면 이를 쫓아가되, 하루 이틀 노정(路程)에 지나지 말고, 만일 도망하여 숨고 물러가지 않는 자가 있으면 끝까지 수색하여 잡으라.” 하였다.</p>	<p>遣中軍護軍田興于東北面，齎宮醜往慰北伐將帥也。 仍傳旨曰：“賊奔則追之，不過一二日程，若竄伏不退者，窮搜以捕。”</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3월 1일 (정묘) 3번째기사 검교 한성윤 송희정에게 나이 늙고 가난하다고 옷 등의 물품을 하사하다</p>	<p>검교 한성윤(檢校漢城尹) 송희정(宋希靖)에게 옷 한 벌[襲], 신[靴] 한 켤레[對], 쌀·콩 10석(石)을 주었다. 송희정이 나이 늙고 집이 가난하므로, 임금이 불쌍히 여기어 이 하사가 있는 것이었다.</p>	<p>賜檢校漢城尹宋希靖衣一襲、靴一對、米豆十石。 希靖年老家貧，上憐之，有是賜。</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3월 16일</p>	<p>대호군(大護軍) 장대유(張大有)를 보내어 모련위 지휘(毛憐衛指揮) 궤아손(把兒遜)과 건주위 지휘(建州衛指揮) 보을오(甫乙吾)에게 술 각각 20병, 저마포(苧麻布) 각각 10필씩을 주고, 모련위 천호(毛憐衛千戶) 승상(升尙)과 김용(金</p>	<p>遣大護軍張大有， 賜毛憐衛指揮把兒遜、建州衛指揮甫乙吾酒各二十瓶、苧麻布各十匹，毛憐衛千戶升尙、金庸</p>

<p>(임오) 2번째기사 적변을 고한 모련위 지휘 파아손과 건주위 지휘 보을오에게 물품 을 하사하다</p>	<p>庸)에게 저마포 각각 1필씩을 주었으니, 적변(賊變)을 먼저 고한 것에 상준 것이였다. 이때에 조연(趙涓)의 첩보(捷報)가 아직 이르지 않았었다.</p>	<p>苧麻布各一匹。 賞其先告賊變也。 時趙涓捷報未至。</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4월 11일 (정미) 4번째기사 광폭한 짓을 행한 내 시위 행 사직 안성만 을 순금사에 가두다</p>	<p>내시위 행 사직(內侍衛行司直) 안성만(安成萬)을 순금사(巡禁司)에 내렸다. 관 의흥부사(判義興府事) 이천우(李天祐) 등이 대궐에 나아와 아뢰기를, “안성만이 거상(居喪)을 입고 밖에 있으면서 녹봉(祿俸)을 속여 받았는데, 광 흥창(廣興倉)에서 이를 각찰(覺察)하여 성만에게 도로 추징(追徵)하니, 성만이 본부(本府)에 고하기를, ‘왜 광흥창에 관문(關文)을 보내 녹(祿)을 추징(追徵) 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가?’ 하며, 처음에는 진무(鎭撫)를 능욕(凌辱)하더니 나 중에는 신 등에까지 미치어, 그 말이 쾌만(悖慢) 무례(無禮)하여 이루 다 진달 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이 장군(掌軍)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졸(士卒)에게 욕을 당했으니, 장차 어떻게 천만인(千萬人)을 호령(號令)하겠습니까? 비록 이 한 사람의 군사가 없더라도 시위(侍衛)에 궐(闕)할 것이 없고, 또 이 사람의 가족 관계가 양인(良人)인지 천인(賤人)이지 분간할 수 없으니, 근시(近侍)로서 불 가(不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본래 광증(狂症)이 있어 도리(道理)를 알지 못한다.” 하고, 명하여 가두었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귀령(李貴齡)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동북면(東北面)을 순문(巡問)할 때, 성만(成萬)이 마침 진(鎭) 에 왔었는데, 전饋자(典饋者)1674) 가 여의(如意)치 못한 것에 노(怒)하여, 그 사람을 달아나게 하고 쫓아가면서 쏘았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아 전[吏]을 보내 잡으니, 성만이 또 활을 당겨 쏘고, 마침내 임의로 진(鎭)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이 사람은 성질이 시랑(豺狼)과 같아서 근시(近侍)할</p>	<p>下內侍衛行司直安成萬于巡禁司。 判 義興府事李天祐等詣闕啓曰：“成萬居 喪在外， 冒受祿俸， 廣興倉覺察還徵， 成萬告本府曰：‘何不移關廣興倉， 勿 令徵祿乎?’ 始而凌辱鎭撫， 終及臣等， 其言悖慢無禮， 不可盡陳。 臣等身居 掌軍之位， 受辱於士卒， 將何以號令千 萬人乎? 雖無此一卒， 其於侍衛無闕。 且此人族係， 未辨良賤， 不可近侍。” 上曰：“此人， 本顛狂不道。” 命囚 之。 兵曹判書李貴齡啓曰：“臣向巡問 東北面， 成萬適赴鎭， 怒典饋者不如 意， 使之走而追射之。 臣聞而驚恐， 發吏執之， 成萬又彎弓射之， 遂擅離鎭 所如京。 此人性類豺狼， 不可近侍， 願黜之。” 上曰：“吾固知此人狂妄不 可近， 然儻有不虞之變， 則愚而勇者， 可爲前鋒， 故使之侍衛也。 方其射人， 卿爲都巡問使， 何不懲之? 此則卿之過 也。 此人雖發毒， 但一卒耳， 何難於</p>

	<p>수 없으니, 원컨대 내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원래 이 사람이 광망(狂妄)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나, 혹시 불우(不虞)의 변(變)이 있으면 미련하고 용맹한 자가 전봉(前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위(侍衛)하게 한 것이다. 그 때 사람을 쓸 적에 경(卿)이 도순문사(都巡問使)로서 왜 징치(懲治)하지 못하였는가? 이것은 경의 허물이다. 이 사람이 비록 독기(毒氣)를 부린다 하더라도 다만 한 군사에 지나지 않으니, 법으로 처치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하니, 이귀령이 대답하기를, “활을 당겨 사람을 쏘므로,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여 징치(懲治)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 사람 같지도 않다. 내가 다만 그 용맹(勇猛)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p>	<p>處之以法!” 貴齡對曰: “張弓射人, 人不敢近, 無以懲之。” 上笑曰: “此人飲酒則不類人, 予但取其勇耳。”</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4월 18일 (갑인) 2번째기사 일본 구사전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니 후례하다</p>	<p>구사전(球沙殿) 왜 객인(倭客人)이 토물(土物)을 바쳤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구사전(球沙殿)의 보례(報禮)는 마땅히 흑마포(黑麻布) 10필, 자리[席子] 10엽(葉), 백자(栢子) 1석(石)을 써야 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말하기를, “그 사자(使者)들 또한 차례로 물건을 주도록 하라. 이 객인(客人)은 사사(私私) 무역(貿易)도 없고, 또 그 말이 예도(禮度)가 있다. 구사전(球沙殿)도 아버의 상(喪)을 당했으니, 보례(報禮)를 평상시에 비해 더함이 있게 하라.” 하였다.</p>	<p>球沙殿倭客人獻土物。 議政府啓曰: “球沙殿報禮, 宜用黑麻布十匹、席子十葉、栢子一石。” 上然之曰: “其使价等, 亦以次賜給。 此客人, 無私貿易, 且其言有禮。 球沙殿亦遭父喪, 報禮比常有加。”</p>
<p>태종 19권, 10년</p>	<p>전(前) 호군(護軍) 이에(李藝)를 보내어 대마도(對馬島)에 가게 하였다. 정부</p>	<p>遣前護軍李藝如對馬島。 政府遣宗貞</p>

<p>(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5월 13일 (기묘) 3번째기사 전 호군 이예를 대마도의 종정무에게 보내 미두를 후히 하사하다</p>	<p>(政府)에서 종정무(宗貞茂)에게 글을 보내기를, “매양 들으니, 수호(修好)에 뜻을 오로지하고 항상 도적을 금하게 한다 하니, 어찌 감히 감사한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이에 조미(造米) 1백 50석과 콩[黃豆] 1백 50석을 배를 갖추어 실어 보내, 신(信)을 표(表)하는 바이다.” 하였다. 이때에 종정무가 평도전(平道全)에게 글[書]을 통하여 말하기를, “조선(朝鮮)에서 우리에게 향(向)한 정성(精誠)이 지금 예전만 못하다. 예전에는 쌀 5,6백 석을 보냈는데, 지금은 보내지 않는다. 너도 휴가(休暇)를 청하여 나오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임금이 듣고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여, 마침내 이예(李藝)를 보내어 후사(厚賜)한 것이다.</p>	<p>茂書曰：“每聞專意修好，常令禁賊，敢不知感！茲將造米一百五十石、黃豆一百五十石，具船載送，聊以表信。” 時宗貞茂通書平道全曰：“朝鮮向我之誠，今不如古。古者送米五六百石，今不送矣。汝亦乞暇出來可也。” 上聞之，下議政府議之，遂遣藝以厚賜之。</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5월 16일 (임오) 1번째기사 임금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그림과 시를 바치다</p>	<p>풍해도 도절제사(豐海道都節制使) 유은지(柳殷之)가 무일도(無逸圖)를 올렸다. 은지(殷之)가 그림을 올린 것은 <임금의> 탄신(誕辰)인 때문인데, 임금이 매우 아름답게 여겼다.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최복하(崔卜河)가 또한 하사(賀詩)를 올리니, 쌀 10석과 콩 5석을 하사(下賜)하였다.</p>	<p>壬午/豐海道都節制使柳殷之進《無逸圖》。殷之進圖，以誕辰也，上嘉之。檢校漢城尹崔卜河亦進賀詩，賜米十石、豆五石。</p>
<p>태종 19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6월 12일 (정미) 1번째기사 기민을 진휼토록 명하다</p>	<p>명하여 굶주린 백성을 진휼(賑恤)하였다. 임금이 대언(代言)에게 이르기를, “나라에 창고(倉庫)가 있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이다. 예전에 간혹 창고가 충실하면서도 진휼(賑恤)할 줄 모르는 자가 있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인가? 지금 도성(都城) 안팎의 굶주린 백성을 조사하여 진휼 구제토록 하라.” 하였다.</p>	<p>丁未/命賑飢民。上謂代言曰：“國之有倉廩，爲民也。古者，或有倉廩實，而不知賑恤者，是誠何心？今都城內外飢民，訪問賑濟。”</p>
<p>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7월 1일</p>	<p>강원도(江原道) 대령산(大嶺山)의 대나무[竹]에 열매가 열었다. 관찰사(觀察使) 송인(宋因)이 아뢰었다. “강릉부 대령산의 대나무에 열매가 열어 보리와 함께 익었는데, 이삭은 기장</p>	<p>江原道大嶺山竹實。觀察使宋因啓曰：“江陵府大嶺山竹實，與麥同熟，穗如黍實如麥，粘如薏苡，味如唐黍。人</p>

<p>(병인) 4번째기사 강원도 강릉부의 대령산의 대나무에 열매가 열다</p>	<p>[黍]과 같고, 열매는 보리[麥]와 같고, 차지기는 울무[薏苡]와 같고, 그 맛은 당서(唐黍)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따서 먹이를 삼고 혹은 술을 만드는데, 오곡(五穀)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5,6두(斗) 혹은 10두를 수확하여, 백성들이 모두 7,8석(石)씩 저축하여 조식(朝夕) 끼니를 마련하였습니다.”</p>	<p>民摘取爲食，或造酒，無異五穀。一夫日收五六斗或十斗，民皆畜七八石，以備朝夕之資。”</p>
<p>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7월 13일 (무인) 1번째기사 김동개가 골간 울적함 지휘 두칭개를 데리고 오다</p>	<p>김동개(金同介)가 골간 울적함(骨看兀狄哈) 지휘(指揮) 두칭개(豆稱介) 등 7인을 데리고 왔다. 내신(內臣)에게 명하여 서상상(西上廂)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두칭개 등이 모두 토물(土物)을 바쳤다.</p>	<p>戊寅/金同介，以骨看兀狄哈指揮豆稱介等七人來，命內臣饋之于西上廂。豆稱介等皆獻土物。</p>
<p>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7월 29일 (갑오) 2번째기사 광연루에서 종친 등의 축수를 받고 모후의 부묘에 대해 말하다</p>	<p>광연루(廣延樓)에 나아가니, 종친(宗親)·의정부(議政府)·공신(功臣)이 수(壽)를 올렸다. 임금이 의막(依幕)에서 각사(各司)에게 술과 과일을 주었다. 처음에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에 수재(水災)가 대단히 심하고, 또 상(喪)을 겨우 마쳤으니, 어찌 상왕(上王)보다 먼저 풍악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였는데, 굳이 청하니 오랜 뒤에 허락하였다. 임금이 대신과 더불어 모후(母后)의 부묘(祔廟)에 대한 일을 말하고 마침내 울었으니, 대개 모후가 먼저 홍서(薨逝)한 것을 슬퍼함이였다.</p>	<p>御廣延樓，宗親議政府功臣上壽，賜各司酒菓于依幕。初，上曰：“今年水災太甚，且喪畢，豈宜先上王而聽樂!”固請，久乃許之。上與大臣言母后(祔廟) [祔廟]之事，遂泣下。蓋傷母后之先逝也。</p>
<p>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8월 9일 (계묘) 1번째기사 3년상을 마친 수릉관 유창 등에게 잔치를</p>	<p>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유창(劉敞)·동판내시부사(同判內侍府事) 문용부(文用富)에게 해온정(解慍亭)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수릉(守陵)하여 3년상을 마친 것을 위로한 것이였다. 종친에게 명하여 시연(侍宴)하게 하였는데, 이지도 참여하였다. 임금이 술이 취하매, 이천우(李天祐) 등에게 울며 일렀다. “공신들이 나더러 오래 살라고 하니, 장차 천년을 수하게 할 것인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내 뜻을 거스를 것이 무엇인가? 이저의 아버지가</p>	<p>癸卯/宴參贊議政府事劉敞、同判內侍府事文用富于解慍亭。慰其守陵終制也。命宗親侍宴，李佇與焉。上酒酣，泣謂李天祐等曰：“功臣謂我享壽，則將獻千年之壽乎？若未能則何必逆吾志乎？佇父居易，位爲上相，功居第</p>

<p>베풀다. 건원릉 등의 인부를 복호시키다</p>	<p>(李居易가 벼슬이 상상(上相)1735) 이 되고 공이 제일에 거(居)하였으나, 지금 폐하여 서인(庶人)을 만든 것은 그 말이 불충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삼족(三族)을 멸하지 않았으니, 이저가 외방에 귀양간 지 7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처치(處置)가 잘못이 아니다. 이저는 본래 불충한 뜻이 없었는데, 어찌 그리 심하게 제거하고자 하는가?”</p> <p>건원릉(健元陵)에 역사에 이바지한 9명에게 부역을 면제할 것을 명하고, 또 문소전(文昭殿)에 역사한 사람 60명에게 3년을 한하여 부역을 면제할 것을 명하였는데, 모두 각 절[寺]의 종이였다.</p>	<p>一， 今廢爲庶人者， 以其言不忠也。然既不族誅矣， 則佇流于外七年而返， 吾之處置審矣。 佇本無不忠之意， 何其欲去之甚也?” 命健元陵供役人九名免役， 又命文昭殿執役人六十名限三年免役， 皆各寺奴也。</p>
<p>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8월 10일 (갑진) 3번째기사 종묘의 천신을 8월에 하도록 명한 것을 잊어먹고 어긴 호조 정랑 정효복을 순금사에 가두다</p>	<p>호조 정랑(戶曹正郎) 정효복(鄭孝復)을 순금사(巡禁司)에 내렸다. 예조(禮曹)에서 아뢰었다.</p> <p>“예(禮)에 종묘(宗廟)에 햅쌀을 천신(薦新)하는 것이 9월에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기가 너무 늦으니, 이제부터 8월 삭망제(朔望祭) 중에 행하소서.”</p> <p>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었다.</p> <p>“지난해에 이미 예조에 명하여 8월에 쓰게 하였는데, 반드시 예조에서 잊은 것일 것입니다.”</p> <p>임금이 말하기를,</p> <p>“그때의 예조원(禮曹員)이 비록 관직을 옮겨 외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를 나오게 하여 물어보라.”</p> <p>하였다. 이에 정효복을 가두었다.</p>	<p>下戶曹正郎鄭孝復于巡禁司。 禮曹啓曰：“禮， 宗廟薦新稻米， 以九月行， 節氣太晚。 自今請於八月朔望祭中行之。” 承政院啓曰：“去年， 已命禮曹用八月， 必是禮曹遺忘也。” 上曰：“其時禮曹員， 雖遷官在外， 進而問之。” 乃囚孝復。</p>
<p>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8월 17일 (신해) 1번째기사 종묘의 천신 지연에 대한 누명을 쓴 정효</p>	<p>정효복(鄭孝復)을 석방하였다. 정효복이 옥중에 있으면서 순금사(巡禁司)의 부관(府官)에게 글을 보내었다.</p> <p>“《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참소하여 뜻을 얻은 사람은 좋아서 날뛰고, 노고한 사람은 언제나 노심(勞心)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지난해 6월에 정랑(正郎)이 되었는데, 28일에 상지(上旨)를 받들어 ‘8월에 햅쌀을 천신하는 제사’를 분명히 문부(文簿)에 쓰고, 각사(各司)에 이첩(移牒)하여 착오(錯誤)가</p>	<p>辛亥/釋鄭孝復。 孝復在獄中致書巡禁司府官曰： 《詩》云：“驕人好好， 勞人草草。” 臣於前年六月， 曾任正郎， 二十八日， 承上旨， 八月薦稻之祭， 明書於簿， 移牒各司， 無所錯誤， 及今年七月初七日</p>

<p>복을 석방하다</p>	<p>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7월 초7일에 벼슬을 옮기었으니, 8월에 햅쌀을 천신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지금 정랑(正郎) 한겸(韓謙)·좌랑(佐郎) 김자온(金自溫) 등이 그 책임을 삼가지 못하여 마침내 그 제사를 폐하고, 자기 죄를 면하기를 꾀하여 임금을 속이고 신에게 허물을 돌리었습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살피지 못하시고 신을 옥에 가두었으니, 성조(盛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어찌 일찍이 생각하였겠습니까? 신이 비록 옥에 갇혀 있으나 자책(自責)할 일이 없사오니, 원컨대, 여러 상국(相國)은 주상(主上)께 전문(轉聞)하여 다시 사실을 조사하소서.”</p> <p>부관(府官)이 아뢰니, 이에 한겸과 김자온을 순금사(巡禁司)에 내려 국문하였다. 정효복은 석방하고, 한겸은 파직하고, 김자온은 다시 사진(仕進)할 것을 명하였다.</p>	<p>遞遷，八月薦稻，衆所知也。今正郎韓謙、佐郎金自溫等，不謹其任，遂廢其祭，規免己罪，敢以巧計欺君，歸咎於臣，殿下不察，繫臣於獄。曾謂盛朝而有如是之事哉？臣雖繫獄，而無所自責，願諸相國轉聞于上，更加閱實。府官以聞，乃下韓謙、金自溫于巡禁司鞫之，釋孝復罷謙職，命自溫復仕。</p>
<p>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9월 13일 (정축) 2번째기사 일본 살마주와 목우주에서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日本) 살마주(薩摩州) 등원뇌구(藤原賴久)와 그 아내 상희(常喜)가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고 쌀과 포목(布木)을 청하고, 우주(隅州)가 또한 토물(土物)을 바쳤다.</p>	<p>日本薩摩州藤原賴久及其妻常喜，使人獻禮物，請米布木。隅州亦獻土物。</p>
<p>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9월 26일 (경인) 1번째기사 새벽에 잠시 사냥갔다 돌아오는 임금을 백관이 교외에서 영접하자 힐난하다</p>	<p>새벽에 나가 열마과(閱馬坡)에서 사냥하여 노루 33구(口)를 잡고 밤에 돌아오니, 의정부(議政府)에서 각사(各司)를 거느리고 선의문(宣義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이를 싫어하여 승제문(承制門)으로 들어와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을 불러 책하기를,</p> <p>“오래 사냥하는 것도 아닌데, 교외(郊外)에서 맞이하는 것은 부당하다.”</p> <p>하고, 임금이 사옹방(司饗房)에서 사냥하는 사람을 공궤(供饋)하지 않은 것에 노하여, 반감(飯監)1757) 3인에게 장(杖)을 때리고, 또 대언(代言)이 각사(各司)의 교영(郊迎)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책하고, 예조 좌랑(禮曹佐郎) 심</p>	<p>庚寅/侵曉，出獵于閱馬坡，獲獐三十三口，夜還。議政府率各司迎于宣義門外，上惡之，入自承制門，召議政府舍人責之曰：“非久獵也，不當郊迎。”上怒司饗房不餉獵人，杖飯監三人，又責代言不禁各司郊迎，枷禮曹佐郎沈道源于巡禁獄，既而釋之。</p>

	도원(沈道源)을 칼을 썬 위 순금옥(巡禁獄)에 가두었다가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10월 6일 (기해) 1번째기사 우레와 비가 그치지 않자 천변재이에 대해 자책하다	우레와 비가 그치지 않았다. 임금(上)이 철선(輟膳)하고 돌아오는데, 목촌(木村)에 이르니 하늘이 활짝 개었다. 임금이 올면서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내가 부덕하여 부하(負荷)된 책임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천변이 이와 같다.” 하고, 인하여 손위(遜位)할 뜻을 조금 보이니, 이숙번(李叔蕃)이 간(諫)하였다. “부모(父母)가 자식에게 대하여 항상 그 단점(短點)을 책하는 것이오니, 하늘이 인애(仁愛)하기 때문에 재이(災異)를 보인 것입니다. 만약 재이의 변으로 이 만기(萬機)를 싫어하신다면, 게으른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마땅히 부지런하고 잘 생각하여 천심(天心)에 보답하소서.”	己亥/雷雨不止，上輟膳。還至木村，天乃開霽。上泣謂群臣曰：“予以否德，不堪負荷，故天變若是。”因微示遜位之志，李叔蕃諫曰：“父母之於子，常責其所短。天其仁愛之，故示災異耳。若以災異之變，厭此萬幾，怠心生矣，宜克勤克念，以答天心。”
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10월 28 일(신유) 3번째기사 임금이 내사를 영빈관 에서 전송하고, 세자 등에게 금교역에서 전 송토록 명하다	임금이 나가서 내사(內史)를 영빈관(迎賓館)에서 전송하고, 세자(世子) 이제(李禕)·우의정(右議政) 조영무(趙英茂)·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에게 명하여 금교역(金郊驛)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임금이 환궁하여 옥장교(玉粧橋)가에 이르니, 한 노구(老嫗)가 임금을 바라보고 손을 모아 축수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고(告)할 데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하고, 명하여 쌀 2섬, 장(醬) 1독을 주었다.	上出餞內史于迎賓館，命世子禕、右議政趙英茂、知申事安騰餞于金郊驛。上還宮至玉粧橋邊，有一老嫗望見上，攢手而祝，上曰：“必無告之人也。”命賜米二石、醬一甕。
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11월 11 일(계유) 1번째기사 천릉에 수고한 완성군 이지승(李之崇) 등에게 주연을 베풀고 옷을 하사하다	완성군(完城君) 이지승(李之崇)·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을 불러 편전(便殿)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각각 옷 한 벌을 주었으니, 능(陵)을 옮긴 데 수고한 것을 위로한 것이다.	癸酉/召完城君李之崇、星山君李稷，置酒于便殿，各賜衣一襲。勞遷陵也。

<p>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12월 16 일(무신) 1번째기사 여러 진전과 능침에 쓰는 제물에 관한 규 례를 상정하다</p>	<p>여러 진전(眞殿)과 능침(陵寢)의 제찬(祭饌)을 상정(詳定)하였다. 예조(禮曹)에 서 아뢰기를, “여러 진전과 능침에 마땅히 육선(肉膳)을 써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종묘(宗廟)에 이미 희생(犧牲)을 썼으니, 마땅히 소찬(素饌)으로 전(奠)드리 고, 계성전(啓聖殿)·문소전(文昭殿)·건원릉(健元陵)·제릉(齊陵)에는 사시 대향 (四時大享)과 유명일(有名日)·삭망(朔望)의 제사만 행하고, 그 나머지 능침에 는 명일(名日)과 삭망(朔望)의 제사만 행하라.”</p>	<p>戊申/詳定諸眞殿及陵寢祭饌。 禮曹 啓: “諸眞殿及陵寢, 宜用肉膳。” 上 曰: “宗廟旣用犧牲, 宜奠以素飧。 啓 聖·文昭殿、健元·齊陵, 行四時大享 及有名日朔望, 其餘陵寢, 只行名日朔 望之祭。”</p>
<p>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12월 26 일(무오) 1번째기사 제릉에 제사지내다. 환 과 고독 169인을 연복 사에 모아 곡식을 하 사하다</p>	<p>임금이 친히 제릉(齊陵)에 제사하고, 거가(車駕)가 성문에 이르니, 소경 여자 [盲女]가 길에서 얻어먹고 있었다. 임금이 측은하게 여기어 쌀과 콩을 주게 하고, 환궁하여 탄식하기를, “중외(中外)에 이와 같은 독질(篤疾)로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우순 풍조(雨順風調)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하고, 유후사(留後司)에 명하여 환과 고독(鰥寡孤獨) 1백 69인을 연복사(演福 寺)에 모아 쌀·콩 1석씩을 주었다.</p>	<p>戊午/上親祭于齊陵。 駕至城門, 有盲 女乞丐于途, 上惻然, 命賜米豆, 及還 宮嘆曰: “中外多有如此篤疾飢寒不得 其所者, 其能致雨順風調乎?” 乃命留 後司, 聚鰥寡孤獨一百六十九人于演福 寺, 賜米豆人一石。</p>
<p>태종 20권, 10년 (1410 경인 / 명 영락 (永樂) 8년) 12월 26 일(무오) 2번째기사 종친에게 내전에서 잔 치를 베풀다. 상당군 이애와 시로 화답하다</p>	<p>종친(宗親)에게 내전(內殿)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취하매 상당군(上黨君) 이애(李夔)가 연구(聯句)를 올리기를, “어리석은 신의 소망은 천세를 수하시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곧 대답하였다. “덕이 적은 내가 어찌 대신 같은 공을 잊으리오.”</p>	<p>宴宗親于內殿。 酒酣, 上黨君李夔, 進聯句曰: “愚臣所望壽千歲。” 上卽 對云: “寡德何忘功太山!”</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월 7일</p>	<p>기민(饑民)에게 사람마다 쌀 10 두(斗)와 콩 1 석(石)씩 주라고 명하였다.</p>	<p>命給飢民人米十斗、豆一石。</p>

<p>(무진) 5번째기사 굶주린 백성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월 11일 (임신) 3번째기사 예조에서 노인성을 제 사하는 규례를 상정, 채택하다</p>	<p>예조에서 상서(上書)하기를, “신 등이 삼가 고전(古典)을 상고하니, 주(周)나라 제도에 추분(秋分)날 수성 (壽星)에게 남교(南郊)에서 제사지냈는데, 태종백(太宗伯)이 일(日)·월(月)·성 신(星辰)을 제사할 때, 그 생체(牲體)를 쉰더미 위에 얹어 놓고 구워서, 그 연 기가 오르게 하였으니, 양(陽)에 보답하는 소이(所以)라 하였습니다. 또 한 (漢)나라에서 소[牛]를 가지고 영성(靈星)에 제사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렇다 면, 성신(星辰)을 제사하는 데 소를 사용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우리 조정에서 노인성(老人星)을 제사하는 데 소를 사용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에서 그 법을 취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전조(前朝)의 폐법(弊法)을 따라 소를 진설 (陳設)하기는 하나, 이를 굶지 아니하니, 희생(犧牲)을 사용하는 뜻에 매우 어 긋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周)나라의 제도를 따라 희생을 구워서, 그 연기 가 오르게 하여야 합니다. 또 《천문지(天文志)》를 살펴보면, 노인성은 항상 추분(秋分)날 아침에 병방(丙方)에서 나타나, 춘분(春分)날 저녁에 정방(丁方) 에서 사라지는데, 노인성이 나타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임금이 수창(壽 昌)하는 까닭에, 추분날 남교(南郊)에 나가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본조(本 朝)에서 춘분(春分)·추분(秋分)에 노인성을 제사지내는 것은 대개 가을에 나타 나고 봄에 사라지는 뜻을 취하여 이를 제사지내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周)나 라 제도를 따라 추분(秋分)에 한하여 남교(南郊)에서 제사지내고, 그 제단(祭 壇)의 제도는 송(宋)나라 정화(政和) 때의 《오례신의(五禮新儀)》를 취하여, 높이 3척(尺), 동서(東西) 길이 1장(丈) 3척(尺), 남북(南北) 길이 1장(丈) 2척 (尺), 사방(四方)으로 섬돌[陛] 하나씩 내고 그 담[墻]은 25보(步)로 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p>	<p>禮曹上書曰： 臣等謹稽古典，周制，秋分日，享壽星 于南郊；太宗伯祀日月星辰，實牲體於 積薪之上，燔燎而升煙，所以報陽也。 又漢以牛祀靈星。然則祀星辰用牛， 古之制也。本朝於老人星祭用牛，取 法古制也，尚循前朝之弊法，陳牛而不 燔，甚非用牲之意也。宜放周制，燔 牲升烟。又按《天文志》，老人一星， 常以秋分之朝見于丙，春分之夕沒于 丁。見則治平，主壽昌，故秋分候之 南郊。本朝於春秋分祭之，蓋取秋見 春沒之義而祭之也。宜放周制，止於 秋分，祭于南郊，其壇之制，取宋政和 《五禮新儀》，高三尺，東西長一丈三 尺，南北長一丈二尺，四出陛一墻，二 十五步，何如？ 從之。</p>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월 13일 (갑술) 2번째기사 경기도의 기민을 진휼 하다	경기(京畿)의 궁핍한 백성을 진휼(賑恤)하였는데, 쌀 1천 석(石)을 가지고 2천 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賑京畿窮民。以米一千石，分給二千人。
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월 13일 (갑술) 3번째기사 장형 이하의 죄를 저 화로 수속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원숙이 또 아뢰기를, “하윤(河崙)과 성석린(成石璘)이 말하기를, ‘대벽(大辟)이외의 죄는 모두 수속(收贖)하는 것이 가하나, 만약 불충(不忠)·불효(不孝)한 사람이면 수속(收贖)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성석린이 또 말하기를, ‘신이 아뢰고자 하는 것은 노신(老臣)이 말할 바가 아닌 것 같사오니, 국고(國庫)에 저축한 것을 가볍게 허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쌀·콩> 1천 석을 가지고 양도(兩都)의 기민(飢民)에게 나누어 주어 진휼(賑恤)한다 하시니, 신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기곤(飢困)의 실정을 자세히 살피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루 아침에 이것을 풀어 준다면, 성상께서 백성을 구제하시는 본의(本意)가 아닙니다. 또 지금 굶주린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없사오니, 우선 천천히 곤궁(困窮)이 심해지기를 기다려서 구제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지금 진제(賑濟)에 소요될 미두(米豆)가 벌써 이와 같으니, 장차 화매(和賣)할 미두(米豆) 1천 석을 반감(半減)하여 이를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다.” 하였다.	” 又啓曰：“河崙、成石璘曰：‘大辟餘罪，皆贖之可矣，若不忠不孝之人，不可贖也。’石璘又曰：‘臣欲陳之，似非老臣之言也。然國庫所儲，不可輕費。今以一千石，分兩都賑之，臣竊謂不審察飢困之實，一朝散之，則非聖上賑濟之本意也。且今未見飢民列于道傍，姑徐徐以待困甚而後賑之可也。賑濟米豆，業已如此，姑將和賣米豆一千石，減半停之何如?’” 上曰：“然。”
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월 19일 (경진) 2번째기사 신도의 기민을 진휼케	명하여 궁핍한 백성들을 진휼(賑恤)하게 하였는데, 두 집에 아울러 쌀 1석씩을 주었다. 임금이 한경(漢京)의 민간(民間)에 굶주려 죽는 자가 있을까 매우 염려하여, 분 의정부(分議政府)1807) 에 명하여 궁핍한 백성들을 초록(抄錄)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리하여 정부(政府)에서 지인(知印)과 각 부령(部令)으로 하여금 여리(閭里)를 순행(巡行)하여 궁핍한 백성을 찾아내어 역마(驛馬)를	命賑窮民二并米一石。上深慮漢京民間，或有飢饉致死者，命分議政府，抄錄窮民以聞。政府令知印與各部令，巡行閭里，刷出窮民，馳駟以聞，乃有是命。

하다	달려 아뢰었으므로, 이 명령이 있는 것이었다.	
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월 20일 (신사) 2번째기사 기근·질병으로 인한 서북면의 기민을 진휼 케 하다	내자 윤(內資尹) 김질(金晷)을 서북면(西北面)에 보내어 기민(飢民)을 구제하 게 하였다. 유정현(柳廷顯)이 아뢰기를, “의주(義州)의 백성 1천 5백 명이 굶주리고 있는 데다가, 또 역질(疫疾)을 앓 고 있으며, 벽동(碧潼)·인주(麟州) 등 11개 군(郡)도 기근(飢饉)이 들었다고 하 오니, 원컨대, 묵은 곡식을 내어 이를 진휼(賑恤)하소서.” 하니, 임금이 김질에게 명하기를, “네가 가서 기근(飢饉)과 역질(疫疾)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 진휼(賑恤)하되, 죽음에 이르지 말게 하라,” 하였다.	遣內資尹金晷于西北面賑飢。柳廷顯 啓曰：“義州民一千五百人飢且疫；碧 潼、麟州等十一郡亦告飢，願以陳穀賑 之。”上命晷往察飢疫之狀以賑恤之， 毋令致死。
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월 22일 (계미) 3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가 금주령(禁酒令)을 행하기를 청하니, 그대 로 따랐다.	西北面都巡問使，請行禁酒令，從之。
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월 26일 (정해) 5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저화를 시 행할 방안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저화(楮貨)를 시행할 방안을 올렸다. 의정부에서 아뢰기 를, “저화(楮貨)를 각도로 나누어 보내어 백성들로 하여금 무역(貿易)하게 하고, 그들이 바꾼 포화(布貨)와 유밀(油蜜)은 국용(國用)에 충당하소서. 그리고, 포 화(布貨)나 유밀(油蜜)을 바치게 하였던 전지(田地)는 모두 쌀로 거둬들이고, 수령(守令)이 간혹 민간(民間)의 이해(利害)를 살피지 않고 거급(據給)·억매(抑 賣)하는 자가 있거든 중죄(重罪)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上行楮貨之策。啓曰：“分送楮 貨於各道，令民貿易，其所易布貨油 蜜，以充國用，其原屬布貨油蜜之田， 收之以米。守令或不審民間利害，據 給抑賣者，加重罪。”從之。
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2월 5일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에게 곡식 1백 50석을 내려 주었다. 처음에 대호 군(大護軍) 박미(朴楣)가 야인(野人) 땅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야인(野人)들이 몹시 굶주리고 있는데,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가 이르기를,	賜童猛哥帖木兒穀百五十石。初，大 護軍朴楣至自野人曰：“野人甚飢。猛 哥帖木兒云：‘國家若給糧餉，不敢離

<p>(병신) 2번째기사 박미의 보고를 듣고 야인을 진휼하기 위해 동맹가첩목아에게 곡 식 150석을 하사하다</p>	<p>‘국가에서 만일 양식(糧食)을 준다면 감히 이산(離散)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도둑이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야인(野人)들이 몹시 굶주리고 있다니, 쌀을 운반해다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미가 간 것은 오로지 굶주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어찌하여 ‘어찌 합니까?’ 하는가? 마땅히 즉시 쌀을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散, 否則皆爲盜矣。” 政府上言: “野人甚飢, 運米給之何如?” 上曰: “楮之往, 專以救飢也, 何謂何如? 宜直賜之。”</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2월 12일 (계묘) 3번째기사 진리의 처 이씨에게 쌀 10석을 내려주다</p>	<p>진리(陳理)의 처(妻) 이씨(李氏)에게 쌀 10석을 내려 주었다.</p>	<p>賜陳理妻李氏米十石。</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2월 22일 (계축) 2번째기사 일본 국왕이 우리 나 라에 없는 코끼리를 바치니 사복사에서 기 르게 하다</p>	<p>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지(源義持)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 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5두(斗)씩을 소비하였다.</p>	<p>日本國王源義持, 遣使獻象。象, 我國未嘗有也。命司僕養之, 日費豆四五斗。</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2월 23일</p>	<p>명하여 삼군 갑사(三軍甲士)에게 묵은 콩[陳豆] 1석(石)씩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命賜三軍甲士陳豆人一石。</p>

<p>(갑인) 2번째기사 삼군 감사에게 목은 콩을 내려주다</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3월 2일 (임술) 2번째기사 한번에 세 딸을 낳은 울주 사람에게 쌀을 내리다</p>	<p>울주(蔚州) 사람 이가이(李加伊)의 아내가 한번에 세 딸을 낳으니, 명하여 쌀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蔚州人李加伊妻，一產三女，命賜米。</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3월 4일 (갑자) 1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p>	<p>금주령(禁酒令)을 내렸으니, 사헌부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임금이 명하기를, “서울에서는 공사(公私)의 연음(宴飲)만 금하고, 외방(外方)에서는 한결같이 금하라.” 하였다.</p>	<p>甲子/下禁酒令。 從司憲府之請也。 命曰：“京中只禁公私宴飲， 外方一禁。”</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3월 6일 (병인) 1번째기사 인덕전에 나아가 헌수 하고, 장의동 본궁으로 행차하다</p>	<p>임금이 인덕전(仁德殿)에 나아가 헌수(獻壽)하고 마음껏 즐겼다. 마침내 장의동(藏義洞) 본궁(本宮)으로 행차하였다.</p>	<p>丙寅/上詣仁德殿， 獻壽盡歡， 遂御藏義洞本宮。</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3월 27일 (정해) 1번째기사</p>	<p>서북면(西北面)의 기근(飢饉)을 구제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였다. “궁한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왕정(王政)에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관(周官)》에 사도(司徒)의 관속(官屬)이 마을[里]의 위</p>	<p>丁亥/賑西北面飢。 司諫院上疏曰： 賜窮凋乏， 王政之所不可廢也。 周官司徒之屬， 掌以里之委積， 以恤艱厄； 縣鄙之委積， 以待凶荒。 厥後漢常</p>

<p>서북면의 기근을 구제해야 한다는 사간원의 상소문</p>	<p>적(委積)을 관장하여 가난과 재난을 구제하고, 현(縣)·비(鄙)의 위적(委積)은 흉년을 기다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 한(漢)나라의 상평창(常平倉)과 당(唐)나라의 의창(義倉)도 또한 이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조적(糶糶)을 공평히 하고, 창고[倉廩]를 열어 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오니, 곡식을 저축하여 재앙에 대비하는 방법이 지극하다 하겠습니까.</p> <p>근년에 서북면(西北面) 한 도(道)는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겹쳐, 기근(飢饉)이 거듭 이르렀사온데, 의주(義州)·인주(麟州)·창성(昌城)·벽동(碧潼) 등 12개 주(州)가 더욱 심합니다. 전하께서 이를 근심하시어 지난 첫 봄에 신(臣) 김질(金晳)을 보내어, ‘가서 보고 구제하라.’ 하셨으니, 전하께서 이 백성들의 부모(父母)로서 지극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창고를 열어 구제하는 것은 감사(監司)에 관한 일이므로, 경차관(敬差官)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오며, 그들을 구제할 때에도 매 한 사람마다 하루에 쌀 한 되[升]를 주고, 작은 사람은 5홉[合]을 주었으니, 그 뜻은 대체로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날마다 순시(巡視)를 행하여 존절(摶節)하게 써서 고루고루 구제하게 하려고 함이었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수령(守令)이 비록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지경(地境)이 넓은데다 굶주린 백성이 많사오니, 어찌 하룻동안에 집집마다 이르러 호(戶)마다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서북면(西北面)의 토성(土性)이 밀·보리에 적당치 못하여, 백성들의 먹을 것이 어려움이 여름 5월달에 더욱 심해질 것이온데, 경차관(敬差官)도 지금 이미 복명(復命)하였으니, 신 등은 그웁이 생각건대, 흉년을 구제하는 정사(政事)가 늦어져 들판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밀천 삼아 살 것은 재용(財用)이요, 거두어 들일 것은 인심(人心)이라.’ 하였으니, 만약 인심(人心)만 잃지 아니한다면 어찌 재용(財用)이 고갈됨을 근심하겠습니까? 엿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조정의 신하 중에 은혜롭고</p>	<p>平、唐義倉，亦以此也。 國家置義倉以平糶糶，發倉廩以賑窮乏，積穀備災之道，可謂至矣。 近年西北一道，水旱相仍， 飢饉荐臻， 義州、麟州、昌城、碧潼等十二州尤甚。 殿下軫念，春初遣臣金晳，往視賑恤，誠殿下父母斯民之至恩也。 然而發倉賑濟，關於監司， 敬差官不敢擅焉。 其賑濟也，每一人，日給米一升，小者則五合，其意蓋欲守令，日加巡視，摶節均養也。 臣等以爲守令，雖有慈祥惻怛之心，以境壤之廣、飢民之多，焉得一日之內，家至而戶給哉？ 且西北面土性，不宜麩麥，民食之艱，夏月尤甚，而敬差官今已復命，臣等竊恐救荒之政緩，而野有餓殍矣。 《傳》曰：“所資者財用，所收者人心。” 若不失人心，何憂乏用！ 伏望殿下，遣朝臣之有惠愛者，捐數千石之米，與其守令，巡行均養，無有餓殍，便宜事件，一依敬差官區處，令西北之民，獲霑覆育之恩。 上覽而卽下議政府擬議。 議政府請遣知印于其道。</p>
-----------------------------------	--	---

	<p>사랑이 있는 자를 보내시어 수천 석의 쌀을 내어 그곳의 수령(守令)에게 급여 하여, 그 수령들로 하여금 일일이 순행하며 골고루 혜양(惠養)하게 하시와, 굶어 죽은 시체가 들판에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 사건(便宜事件)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경차관(敬差官)의 구처(區處)에 의하게 하시어, 서북면(西北面) 백성들로 하여금 부육지은(覆育之恩)에 짓게 하소서.”</p> <p>임금이 이를 보고 즉시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그 도(道)에 지인(知印)을 보내자고 청하였다.</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4월 15일 (을사) 1번째기사 요동으로 사람을 보내 제사에 쓸 양을 무역해 오게 하다</p>	<p>사람을 요동(遼東)에 보내어 제사(祭祀)에 쓸 양(羊)을 바꾸어 오게 하였다.</p>	<p>乙巳/遣人于遼東, 易換供祭犧羊。</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4월 19일 (기유) 1번째기사 황거정 아내의 빈소에 부의를 내리다</p>	<p>황거정(黃居正) 아내의 빈소(殯所)에 부의(賻儀)를 내려 주었다. 황거정의 아내가 죽으니, 임금이 부의를 보내려고 하였으나, 유사(有司)가 예(例)가 없다고 말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공신(功臣)들이 벌써 반도 남지 아니하였으니, 이때를 기하여 예(例)를 만드는 것이 가하다.”</p> <p>하고, 마침내 쌀 20석과 종이 1백 권을 내려 주었다.</p>	<p>己酉/賜賻黃居正妻之殯。 居正妻死, 上欲賻之, 有司以爲無例, 命曰: “功臣已半不存, 因此起例可也。” 遂賜米二十石、紙百卷。</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5월 2일 (임술) 1번째기사 인덕궁에 가서 헌수하고 주연을 즐기다</p>	<p>임금이 인덕궁(仁德宮)에 나아가 헌수(獻壽)하니, 여러 종친(宗親)과 부마(駙馬)도 참여하였다. 검교 정승(檢校政丞) 이성중(李誠中)을 부르니, 성중(誠中)이 마침 여자 옷[女服]을 가지고 왔으므로, 그에게 육선(肉膳)을 내려 주었다. 정포(正布) 1백 필(匹)과 저화(楮貨) 1천 장을 인덕전(仁德殿) 시녀(侍女)들에게 내려 주고, 매우 즐기다가 밤중에 파하였다.</p>	<p>壬戌/上詣仁德宮獻壽, 諸宗親駙馬與焉。 召檢校政丞李誠中, 誠中方持女服, 賜之肉膳。 以正布一百匹、楮貨一千丈, 賜殿內侍女極歡, 夜分乃罷。</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5월 11일 (신미) 2번째기사 예조에 명하여 천신법에 대하여 규정을 세우도록 하다</p>	<p>예조(禮曹)에 명하여 천신법(薦新法)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宗廟)에 앵도(櫻桃)를 천신(薦新)하는 것이 의궤(儀軌)에 실려 있는데, 반드시 5월 초하루와 보름 제사(祭祀)에 겸행(兼行)하게 되어 있다. 만약 초하루 제사[朔祭]에 미쳐 익지 못한다면 보름 제사[望祭]를 기다려서 겸행(兼行)하게 되어 있으니, 진실로 융통성이 없어 인정(人情)에 합하지 못한다. 앵도가 잘 익는 때는 바로 단오(端午) 때이니, 이제부터는 앵도가 잘 익는 날을 따라 천신(薦新)하게 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구애하지 말라.” 하였다. 예조에서 명령을 받아 상고한 뒤에 상서(上書)하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의거하면 송(宋)나라 초기에 이를 천신(薦新)하였는데, 초하루와 보름 제사에 겸설(兼設)하였고, 신종(神宗) 7년에 상정(詳定)한 《교묘예문(郊廟禮文)》에는 이르기를, ‘옛날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할 때는 날을 점치지 않고, 신주(神主)도 모셔 내지 않았으며, 전(奠)만 드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근래에 이르러 날을 택하여 천신(薦新)함은 잘못이다.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는 물건이 익기만 하면 천신하는 것이지, 맹(孟)·중(仲)·계(季)로써 한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모든 신물(新物)로 제때에 나오는 것이면 즉일(卽日)로 <종묘에> 올려 드린다.’ 하였으니, 이미 정식의 제사[正祭]가 아니라면 예법(禮法)에 날짜를 점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조(前朝)와 송(宋)나라 초기의 제도를 본받아, 모든 신물(新物)은 초하루와 보름 제사를 기다려 겸천(兼薦)하고 있사오니, ‘즉일(卽日)로 올려 드린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모든 신물(新物)로 제때에 나오는 것이라면 초하루·보름을 기다리지 마시고, 또 날짜도 점칠 것 없이 즉일로 천신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약에 초하루·보름을 만나게 된다면, 마땅히 구제(舊制)에 따라 겸천(兼薦)하게 하신다면 거의 예(禮)에 합할 것입니다.”</p>	<p>命禮曹稽考薦新之法以聞。上曰：“宗廟薦櫻桃，《儀軌》所載，必於五月朔望祭兼行。若於朔祭，不及成熟，則待望祭兼行，實爲固滯，不合人情。櫻桃成熟之候，端午適中，自今隨所得之日而薦之，勿拘朔望。”禮曹承命稽考，上書言： 《文獻通考》，宋初，薦新兼設於朔望之祭，至神宗七年，詳定郊廟禮文言：“古者薦新于廟，不卜日，不出神主，奠而不祭。近時擇日而薦，非也。天子諸侯，物熟則薦，不以孟仲季爲限。”又云：“凡新物及時出者，卽日登獻。既非正祭，則於禮不當卜日。”本國承前朝及宋初之制，凡新物必待朔望兼薦，有乖於卽日登獻之義。願自今凡新物之及時出者，不待朔望，亦不卜日而卽薦，若值朔望，當依舊制兼薦，則庶合於禮矣。 又曰： 謹按周制，牧人掌牧六牲，以供祭祀之牲，授充人，殊別繫養三月；小祀之牲，使司門養之十日。擇牲之法，君召牛納而視之，擇其毛而卜之吉，然後養之。祭天地之牛，角繭栗；宗廟之牛，</p>
--	---	---

	<p>하고, 또 말하기를, “삼가 주(周)나라 제도를 살펴보니, 목인(牧人)이 육생(六牲)을 관장하여 길러서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을 이바지하게 하고, 이것을 충인(充人)에게 주어 특별히 기르게 하고, 3월달 소사(小祀)에 쓰는 희생은 사문(司門)으로 하여금 10일간 기르게 하였으며, 희생을 택하는 방법은, 임금이 소[牛]를 불러 들여 오게 하여 이를 보고, 그 털[毛]을 가려서 택하여 길(吉)한 뒤에야 〈희생〉 기르게 하였사운데, 천지(天地)에 제사하는 소는 그 뿔이 누에고치[繭]나 밤톨[栗]처럼 나온 것을 쓰고, 종묘(宗廟)에 제사하는 소는 그 뿔이 한 줌[握] 차야 하고, 빈객(賓客)에게 쓰는 소는 그 뿔이 한 자[尺]쯤 되어야 합니다. 전조(前朝)의 《고금례(古今禮)》에 의하면, ‘대사(大祀)의 희생은 미리 90일 동안 기르고, 중사(中祀)의 희생은 30일 동안 기르며, 소사(小祀)의 희생은 10일 동안 기른다.’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신(神)을 공경하는 뜻이 지극한 것입니다. 우리 조정[本朝]에서는 제사(祭祀) 전에 일찍이 미리 선택하여 특별히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살찌고 깨끗할 수 없는 것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본조(本曹)의 관원(官員) 한 사람과 감찰(監察) 한 사람이 함께 전구서(典廐署)에 나아가 그 털[毛]와 뿔[角]을 보고 선택하게 하시고, 제사 전에 미리 기르는 방법도 한결같이 옛 제도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角握；賓客之牛，角尺。前朝《古今禮》，大祀之牲，預養九旬，中祀三旬，小祀一旬，此皆敬神之至也。本朝於祭前，未嘗預擇而殊養之，其不能肥腩鑷潔，可知矣。願自今，本曹官一員與監察一員，詣典廐署，視其毛角而擇之，其預養之法，一依古制。竝從之。</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5월 13일 (계유) 2번째기사 전 총제 고봉례의 아내의 장례에 부의를</p>	<p>전 총제(摠制) 고봉례(高鳳禮)의 아내의 상사에 쌀 30석과 종이 1백 권을 부의(賻儀)하고, 또 관곽(棺槨)을 내려 주었으며, 사람을 보내어 치전(致奠)하게 하였다.</p>	<p>賻前摠制高鳳禮妻喪米三十石、紙百卷，且賜棺槨，遣人致奠。</p>

<p>내리다</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5월 19일 (기묘) 1번째기사 가뭄을 근심하여 금주 하고 비오기를 빌다</p>	<p>술[酒]을 중지하였으니, 가뭄을 근심한 때문이었다. 또 명하여 공사간(公私間)에 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하였다. 무당 70여 명을 백악산(白岳山) 산당(山堂)에 모으고, 또 중의 무리를 중흥사(重興寺)에 모이게 하여 비를 빌었다.</p>	<p>己卯/止酒，憂旱也。且命禁公私用酒。聚巫七十餘人于白岳山堂，又聚僧徒于重興寺，禱雨。</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5월 22일 (임오) 2번째기사 비가 내리자 금주령을 완화시킬 것을 논의하 다</p>	<p>의정부(議政府)에서 참찬(參贊) 노승(盧崇)으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였더니, 이를 유히(允許)하였다. 명하여 말하기를, “이제 이미 비가 내렸으니, 술을 팔아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술 파는 것을 금하지 말고, 나이 많은 대신(大臣) 또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진언(進言)하여 말하기를, “천도(天道)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민간(民間)에 술을 금한 지 오래 되지 아니하였는데, 한 차례 비가 내렸다고 하여 즉시 술의 사용을 허락하시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명하여 말하기를, “술을 사용하는 가부(可否)에 대해서는 정부(政府)에서 마땅함을 좇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p>	<p>議政府令參贊盧崇進酒，許之。命曰：“今既雨矣。賣酒以生者，勿并禁之；年老大臣亦宜飲之。” 政府進言曰：“天道未可知也。民間禁酒未久，一雨而旋許用酒，未可也。” 命曰：“用酒與否，政府從宜施行。”</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6월 2일 (신묘) 2번째기사 성안에 채마전을 두지 못하게 하고 남산 기 슭에 집 짓는 것을 금</p>	<p>성중(城中)의 채마전(菜麻田)에 남이 집 짓는 것을 허용함을 금하였다.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귀령(李貴齡)을 불러 말하기를, “남산(南山) 기슭의 궁궐(宮闕)이 내려다 보이는 집들을 모두 철거하고, 또 경성(京城)은 땅이 좁으니, 마땅히 채마전을 금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禁城中菜麻田，聽人造家。召判漢城府事李貴齡曰：“南山之麓，臨壓宮闕之家，皆令破之。且京城地窄，宜禁菜麻田。”</p>

<p>하다</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6월 2일 (신묘) 3번째기사 살구를 진상한 박소에 게 미두를 내려주다</p>	<p>박소(朴昭)에게 미두(米豆) 10석(石)을 내려 주었으니, 박소가 살구[杏子]를 진상(進上)하였기 때문이다. 박소는 곧 박순(朴淳)의 아들이다.</p>	<p>賜朴昭米豆十石，昭進杏子。昭乃淳 之子也。</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6월 3일 (임진) 2번째기사 진양에서 돌아온 하운 과 상례를 마친 민무 홀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p>	<p>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운(河崙)과 민무홀(閔無恤) 등에게 해온정(解慍 亭)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임금이 하운은 진양(晉陽)에서 돌아왔고, 민무 홀과 민무회(閔無悔) 두 형제(兄弟)는 아버지의 상사(喪事)를 끝마친 까닭에 잔 치를 베풀어 위로한 것이었다. 종친(宗親)과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 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이조 판 서(吏曹判書) 이직(李稷) 등이 시연(侍宴)하였다. 하운이 연구(聯句)를 지 어 올리기를, “은혜가 하늘 같사운데 잔치까지 내려 주시도다.” 하니, 임금이 대구(對句)를 지어 말하기를, “마음은 굳은 돌, 더욱 사사 없어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다시 서로 창화(唱和)하였다. 술이 반쯤 거나해지자 하운(河崙)이 일어나 춤을 추며 잔을 드렸다. 연회가 파하자 임금이 대언(代 言)에게 명하기를, “오늘 연회를 베풀 것은 대신(大臣)의 천리 길을 위로함이고, 겸하여 여러 민 씨(閔氏)들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민무홀 등이 일찍이 상사(喪事)를 마쳤으 므로, 내가 유후사(留後司)에 있을 적에 비로소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였는데, 환도(還都)한 이후로도 의정부(議政府)다, 공신(功臣)이다, 아들·사위다 하면서 자주 연회를 베풀는 까닭에 오늘날까지 실현 못했으니, 여러 민씨의 마음에</p>	<p>宴領議政府事河崙及閔無恤等于解慍 亭。上以崙回自晉陽，無恤、無悔終 父喪，設宴慰之。宗親及左政丞成石 璘、右政丞趙英茂、完山君李天祐、 吏曹判書李稷等侍宴。崙進聯句云： “恩若昊天加賜宴。”上對句曰：“心如 堅石更無私。”群臣更相唱和。酒半 酣，崙起舞獻爵。宴罷，上命代言曰： “今日設宴，慰大臣千里之行，而兼慰 諸閔也。無恤等曾免喪，予在留後司 時，始欲慰之，還都以後，若議政府若 功臣子壻宴享頻頻，故至今未果，此諸 閔之心當未安。今欲令無悔等，親自 獻爵于中宮，如何？”知申事金汝知等 對曰：“待姻戚，有恩掩義者，有義勝 恩者，在乎恩義之如何耳。”遂召入宮 中，至夜乃罷。</p>

	<p>대하여 미안하게 여기는 바이다. 그러므로, 지금 민무회 등으로 하여금 친히 중궁(中宮)에게 잔을 드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p> <p>하니,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 등이 대답하기를,</p> <p>“인척(姻戚)을 대우함에 있어 은혜로써 의(義)를 가리는 경우도 있고, 의(義)로써 은혜를 이기게 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은의(恩義)의 여하(如何)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p> <p>하매, 마침내 궁중(宮中)으로 불러들여 밤중에 이르러서야 파하였다.</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7일 (병신) 3번째기사</p> <p>민간의 거위와 오리는 전구서에서 기를 책임이 있으니, 민간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명하다</p>	<p>민간(民間)의 거위[鵞]와 오리[鴨]를 빼앗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명하기를,</p> <p>“전구서(典廐署)에서 거위와 오리를 치는 것을 전장(專掌)하고 있는데, 그 새끼를 번식시키지 못하여 그 직책을 폐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백성에게 거두어들이지 못하도록 금하고, 무릇 쓸데가 있을 것 같으면 모두 전구서에서 공급하게 하라.”</p> <p>하였다.</p>	<p>禁奪民間鵞鴨。命議政府曰：“典廐署專養鵞鴨，不致孳息，以廢其職。今後禁取於民，凡有所用，皆取給典廐。”</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9일 (무술) 2번째기사</p> <p>전 경기 도관찰사 김천석의 졸기</p>	<p>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김천석(金天錫)이 죽으니, 미두(米豆) 아울러 40석(石)과 종이 1백 권(卷)을 부의(賻儀)로 내려 주고, 또 사람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관곽(棺槨)을 하사(下賜)하였다.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그 이름은 김포(金布)이다.</p>	<p>前京畿都觀察使金天錫卒。致賻米豆并四十石、紙百卷，又遣人致祭，賜棺槨。一子布。</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9일 (무술)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곡식을 저장하는 법을 아뢰었다. 호조에서 아뢰기를,</p> <p>“무릇 창고(倉庫)의 곡식은 수년(數年)이 지나게 되면 썩게 마련입니다. 비록 판자(板子)로서 땅에 깐다 하더라도 저장한 곡식이 오래 가지 못하는데, 지의 정부사(知議政府事) 박신(朴信)이 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중국(中</p>	<p>戶曹啓儲穀之法。啓曰：“凡倉粟，經數年則腐朽，以板排地貯穀，不能經久。”知議政府事朴信曰：“嘗聞中國，以磚排設，穀經久不朽。臣等欲試而</p>

<p>호조에서 곡식을 저장하는 법을 아뢰다</p>	<p>國)에서는 벽돌[磚]로 땅바닥에 배설(排設)하여, 곡식이 오래 가도 썩지 않는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이것을 시험하고자 하면서도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그 방법을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未就。”上曰：“試之可也。”</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14일 (계묘) 2번째기사 임금이 상왕을 창덕궁 광연루에 모시고 연꽃 구경을 하며 주연을 베풀다</p>	<p>임금이 상왕(上王)을 모시고 술자리를 광연루(廣延樓)에 베풀었으니, 연꽃을 구경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기를, “내가 전일에 상왕께 고하기를, ‘창덕궁(昌德宮)의 연못에 연꽃[荷花]이 활짝 피면 한 번 오셔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었는데, 이것은 내가 술이 취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 부왕(父王)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가 부왕을 섬기던 마음으로 이 분을 섬기려 한다. 상왕께서 근일에 반드시 오셔서 구경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미리 알아 두어라.” 하였다. 또 승정원에 명하기를, “내일 상왕을 청하여 연꽃을 구경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뭄이 심하여 연향(宴享)을 베푸는 것이 불가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김여지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 잔치로 말한다면 상례(常例)로 논할 수 없사오니, 상왕께서 오신다고 하신다면 이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렇다면 오늘도 청하고 내일 또 청함이 예의(禮義)에 합당하겠다. 또 내가 의리상 몸소 나아가서 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약간의 병이 있어서 직접 가지 못하니, 세자(世子)로 하여금 청해 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여지가 아뢰기를,</p>	<p>上奉上王，置酒于廣延樓。賞蓮也。初，上命承政院曰：“予前日告于上王曰：‘昌德宮池，荷花盛開，願一來賞。’是非予醉言也。父王既逝，今予以事父王之心，事之上王。近必來賞，爾等預知之。”又命承政院曰：“明日欲請上王賞蓮，今旱氣爲甚，不可宴享，處之如何？”汝知等啓曰：“今此宴享，不可以常例論也。上王欲來，不可止之。”上曰：“爾等之言是也。然則今日請之，明日又請，乃合於禮。且予義當躬進，然有微疾不能，令世子進請如何？”汝知啓曰：“上體未寧，則何敢動駕！宜令世子進請。”上卽遣世子，至是上王至。時方久旱，靈雨霈然，二聖歡甚。世子宗親，皆侍宴。上因製詩曰：“車駕榮臨獻玉卮，霈然甘霖濕紅衣。半濃半淡新粧艷，西子含嬌欲語時。”上命代言司，賡韻以</p>

	<p>“성상(聖上)께서 편안치 못하시다면 어떻게 감히 거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자로 하여금 청해 오게 함이 좋겠습니다.”</p> <p>하매, 임금이 곧 세자를 보냈다. 이때에 이르러 상왕이 이르니, 때마침 오랜 가뭄 끝에 신령스런 비[靈雨]가 패연(霏然)히 내렸다. 이에 이성(二聖)이 매우 기뻐하였으니, 세자(世子)·종친(宗親)이 모두 시연(侍宴)하였다. 임금이 시(詩)를 짓기를,</p> <p>“거가(車駕)가 영림(榮臨)하시어 옥잔을 드리오니, 패연(霏然)히 단비가 내려 홍의(紅衣)를 적시도다. 진한 듯 옅은 듯 새 단장(丹粧)이 고우니, 서자(西子)의 입가에 애교담은 자태(姿態)여라.”</p> <p>하였다. 임금이 대언사(代言司)에 명하여 이 시를 화답[賡韻]하여 올리게 하고, 한상덕(韓尙德)에게 이르기를,</p> <p>“네가 일찍이 대간(臺諫)이 되어 바른 말[直言]을 숨기지 않고 하였으므로, 내 매우 가상하게 여기어 두고 두고 잊지 못하는 터이다.”</p> <p>하였다. 임금이 일어나 춤을 추니, 상왕도 일어나 춤을 추었다. 임금이 청단자(靑段子) 1필(匹), 녹라(祿羅) 1필(匹), 홍초(紅綃) 2필(匹)을 상왕에게 드리고, 밤이 깊어서 파하였다.</p>	<p>進，乃謂韓尙德曰：“汝曾爲臺諫，直言不諱，予甚嘉之，愈久不忘。”上起舞，上王亦起舞。上獻靑段子一匹、綠羅一匹、紅綃二匹于上王，至夜分乃罷。</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16일 (을사) 2번째기사 서북면의 기민을 진휼하다</p>	<p>사복 정(司僕正) 홍이(洪理)를 보내어 서북면(西北面)의 기근(飢饉)을 진휼(賑恤)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서북면 관찰사(西北面觀察使)의 보고로 인하여, 의정부 지인(議政府知印)을 명하여 가뭄과 기근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고, 또 내자 윤(內資尹) 김질(金陟)을 보내 진휼하게 하였는데, 모두 다 말하기를,</p> <p>“기근(飢饉)이 심하지 않습니다.”</p> <p>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통사(通事) 임군례(任君禮)가 경사(京師)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p>	<p>遣司僕正洪理，賑西北面飢。先是，因西北面觀察使之報，命議政府知印，往審旱乾飢饉之勢，又遣內資尹金陟賑之，皆以飢饉不甚爲言。至是，通事任君禮，回自京師啓曰：“民多飢饉，未能服田；旱甚，草木焦枯。”上聞之驚駭曰：“前日所使之人，皆誑我也。國之備糧餉，所以禦邊賑窮也。幸今</p>

	<p>“백성들이 대부분 굶주려서 농사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뭄이 심하여 초목(草木)까지 말라붙었습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듣고 깜짝 놀라 말하기를,</p> <p>“전일(前日)에 보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속였구나! 국가에서 곡식을 저장해 두는 것은 변방(邊方)의 난리(亂離)를 막고, 백성들의 굶주림을 구제하기 위함인데, 지금 다행히 외구(外寇)도 없으니, 어찌 뒷날의 변란(變亂)만 염려하여 눈앞의 궁민(窮民)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창고(倉庫)를 열어 4천 석(石)을 내어다가 급히 구제하도록 하고, 만일 넉넉지 못하거든 임의(任意)로 더 내어다가 한 사람도 주려 죽는 사람이 없게 하여, 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뜻에 부응(副應)토록 하라.”</p> <p>하였다.</p>	<p>無寇，何慮後日之變，忍視目前之窮民乎？宜發倉四千石，急救之，如或不周，任意加發，使無一人飢死，以副予恤民之意。”</p>
<p>태종 21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21일 (경술) 1번째기사 전구서의 직을 고치게 하다</p>	<p>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전구(典廐)의 직(職)을 고찰(考察)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전구서(典廐署)는 오로지 희생(犧牲)을 맡은 곳인데, 지금 그 관리(官吏)가 맡은 바 일에 능하지 못하니, 허권(許權)으로 하여금 맡게 함이 좋겠다.”</p> <p>하였다. 또 의정부에 명하기를,</p> <p>“전구서에서 짐승을 잘 번식시키지 못하니, 상림원(上林苑)의 예(例)에 따라 창고(倉庫)의 노비(奴婢)로서 기르게 하라.”</p> <p>하니, 정부에서 아뢰기를,</p> <p>“전구서의 별감(別監)을 상림원의 예(例)에 따라 차정(差定)하소서.”</p> <p>하매, 그대로 따랐다.</p>	<p>庚戌/命議政府，考察典廐之職。上曰：“典廐署，掌犧牲，今其官吏，不能任事，宜令許權任之。”又命議政府曰：“典廐署不能孳息，依上林苑例，以倉庫奴婢養之。”政府啓：“典廐署別監，依上林苑例差定。”從之。</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7월 3일 (임술) 2번째기사</p>	<p>영건방(永堅坊) 본궁(本宮)을 수리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지난 봄 본궁에 있을때에, 협착하여 정사를 볼 곳이 없었으므로, 이제 짓기를 명한 것이다. 또 그 부근의 각령(各領)의 대부(隊副)를 역사시켜 못을 파고 저화(楮貨) 1천여 장을 역도(役徒)에게 내리고, 또 술 3백 병을 내려 주었다.</p>	<p>命修永堅坊本宮。上於去春在本宮，狹窄無視事之所，故今命構之。又於其傍，役各領隊副鑿池，以楮貨千餘張賜役徒，又賜酒三百瓶。</p>

영건방 본궁을 수리하게 하다		
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7월 4일 (계해) 2번째기사 상호군 고봉지의 상(喪)에 부의하다	상호군 고봉지(高鳳智)의 상(喪)에 부의를 내려 주었다. 고봉지는 제주(濟州)에 가서 병들어 죽었는데, 명하여 쌀·콩 20석과 종이 1백 권을 부의로 내려 주었다.	賜賻上護軍高鳳智之喪。 鳳智往濟州病死，命致賻米豆二十石、紙百卷。
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7월 6일 (을축) 1번째기사 전 총제 고봉례와 검교 한성·최복하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	전 총제(摠制) 고봉례(高鳳禮)에게 쌀·콩 30석을, 검교 한성(檢校漢城) 최복하(崔卜河)에게 쌀 10석을 내려 주었다.	乙丑/賜前摠制高鳳禮米豆三十石， 檢校漢城崔卜河米十石。
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7월 11일 (경오) 3번째기사 풍해도 백성에게 풍저·광흥창의 곡식을 종자로 삼게 하다	풍해도 도관찰사(豊海道都觀察使) 심온(沈溫)이 그 도(道)의 사의(事宜)를 올리었다. “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 양창(兩倉)에 수납하는 소맥(小麥)을, 바라건대, 절반은 군현(郡縣)에 머물러 두어 백성에게 종자로 꾸어 주소서. 또 본도 백성이 전년 8월부터 10월까지 평양(平壤)의 축성(築城) 때문에 대맥·소맥을 심지 못하였고, 지금 또 한재가 심하여 백성을 역사시킬 수 없으니, 해주(海州) 읍성(邑城)을 다 쌓지 못한 곳은 아직 명년 가을을 기다리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豊海道都觀察使沈溫， 上其道事宜：“豊儲、廣興兩倉納小麥， 乞將一半留于郡縣， 以貸民種。 且本道之民， 自前年八月至十月， 因平壤築城， 未種兩麥， 今又旱甚， 不可役民。 海州邑城未畢處， 姑待明年秋節。” 上從之。
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7월 12일	철주(輟酒)하고, 감선(減膳)하고, 전렵(田獵)을 금하고, 사시(徙市)하였다. 의정부에 명하여 형조로 하여금 경한 죄는 용서하거나 면제하고, 중한 죄는 결단하게 하였으니, 대개 가뭄을 걱정한 것이었다.	辛未/輟酒減膳， 禁田獵徙市。 命議政府， 令刑曹輕罪原免， 重罪速斷。 蓋憂旱也。

<p>(신미) 1번째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철 주·감선·사시(徙市)하 다</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7월 12일 (신미) 3번째기사 연호미를 대신해 저화 를 분급하는 문제를 의논하다</p>	<p>의정부에 명하였다. “풍년이 들면 거두고 흉년이 들면 흠이는 것은 예전의 도(道)이다. 일찍이 연 호미(煙戶米)를 거두었으니, 명년 봄에는 흠어 주어야 하겠다. 만일 저화(楮 貨)로 대신 주면 호(戶)에 대소가 있어 거둔 쌀이 혹은 4,5승(升), 혹은 6,7승 이 되어, 그 수량이 저화의 값에 부족한 것이 매우 많으니, 쪼개어서 줄 것인 가? 왜 예전 사람의 거두고 흠이는 법을 따르지 않는가?” 이 앞서 정부에서 저화로 대신 호미(戶米)1938)의 값을 주자고 아뢰었기 때 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p>	<p>命議政府曰：“豐年則斂之，凶年則散 之，古之道也。曾斂烟戶米，明春宜 散。若以楮貨代給，則戶有大小，斂 米或四五升或六七升，其數不足楮貨之 價者頗多，其可剪而與之乎？蓋從古人 斂散之法乎？”先是，政府啓以楮貨代 給戶米之價，故有是命也。</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7월 18일 (정축) 1번째기사 말을 바친 고충언·고 준에게 미두를 하사하 다</p>	<p>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고충언(高忠彦)에게 쌀 40석, 콩 30석을, 전 승녕 부 판관(承寧府判官) 고준(高俊)에게 쌀 10석과 콩 5석을 내려 주었다. 고충 언 등은 제주 사람인데, 고충언이 일찍이 말 3필을 바치었고, 고준이 말 1필 을 바쳤기 때문에 각각 차등있게 내려 준 것이다.</p>	<p>丁丑/賜檢校漢城尹高忠彦米四十石、 豆三十石，前承寧府判官高俊米十石、 豆五石。忠彦等，濟州人也。忠彦嘗 獻馬三匹，俊獻馬一匹，故賜各有差。</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7월 19일 (무인) 2번째기사 풍해도의 보리 종자를 서북면에 옮기게 하다</p>	<p>풍해도의 보리 종자를 서북면(西北面)에 옮기라고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언 하였다. “서북면의 창고 곡식이 모두 60만 석인데, 빈궁한 백성에게 진대(賑貸)한 것 이 이미 30만 석이고, 지금 또 가무니, 만일 흉년이 들어 또 진대(賑貸)해야 한다면 곡식이 장차 남음이 없을 것입니다. 풍해도에서 상납하는 소맥 6백 70여 석을 서북면에 수송하여 실농한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수령으로 하여 금 각호(各戶)의 비옥한 밭을 택하여, 갈고 경종(耕種)하는 것을 친히 감독하</p>	<p>命移豐海道麥種于西北面。議政府上 言曰： 西北面倉粟共六十萬石，賑貸窮民者已 三十萬。今又旱乾，歲若不稔，則又 必賑貸，穀將無餘矣。以豐海道上納 小麥六百七十餘石，輸于西北面，分給 于失農各郡，使守令擇各戶膏腴田，親</p>

	<p>여 내년을 대비하고, 또 금년의 풍해도 전세(田稅)를 서북면에 수송하여 모두 군량에 충당하여 불우에 대비하소서.”</p> <p>잠정적으로 보리 종자만 옮기라고 명하였다.</p>	<p>監耕種，以備來歲，又以今年豐海道田稅，輸于西北面，悉充軍餉，以備不虞。</p> <p>命姑移麥種。</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7월 21일 (경진) 2번째기사 입직하는 재상에게 술을 내리다</p>	<p>비로소 술을 진어(進御)하니, 임금이 말하였다.</p> <p>“입직(入直)하는 제경(諸卿)들이 습(濕)한 곳에서 자니, 약주(藥酒)를 내려 줘이 옮겼다.”</p>	<p>始進酒。上曰：“入直諸卿宿濕處，宜賜藥酒。”</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8월 6일 (을미) 2번째기사 전 총제 김한의 졸기</p>	<p>전 총제(摠制) 김한(金閑)이 졸(卒)하였다. 김한이 병들자 쌀과 콩 20석을 내려 주었고, 이에 이르러 또 쌀·콩 50석과 종이 1백 50권을 부의로 내려 주고, 또 관곽(棺槨)을 내려 주고, 사람을 보내어 치전(致奠)하였다. 정비전(靜妃殿)도 또한 중관(中官)을 보내어 제사하였다. 아들이 둘 있으니, 김유돈(金有敦)·김유장(金有章)이다.</p>	<p>前摠制金閑卒。閑病，賜米豆二十石，至是，又賜賻米豆五十石、紙百五十卷，又賜棺槨，遣人致奠。靜妃殿亦遣中官以祭。有二子，有敦、有章。</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8월 8일 (정유) 1번째기사 전 개성 유후 우홍부에게 미두 20석을 하사하다</p>	<p>전 개성 유후(開城留後) 우홍부(禹洪富)에게 쌀·콩 20석을 내려 주었다. 이때에 우홍부가 병들었는데, 쌀을 주어 약이(藥餌)에 보태어 쓰게 하였으니, 대개 계해년의 지공거(知貢舉) 우현보(禹玄寶)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p>	<p>丁酉/賜前開城留後禹洪富米豆二十石。時洪富病，賜米以資藥餌。蓋以癸亥年知貢舉玄寶之子也。</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8월 9일</p>	<p>전 대사헌 맹사성(孟思誠)에게 쌀과 콩 20석을 내려 주었다.</p>	<p>賜前大司憲孟思誠米豆二十石。</p>

<p>(무술) 2번째기사 전 대사헌 맹사성에게 미두 20석을 하사하다</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8월 16일 (을사) 1번째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 게 잔치를 베풀고 안 마를 주다</p>	<p>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안마(鞍馬)를 주었다. 이튿날 사신이 두목 한 사람을 시켜 용안(龍眼)·여지(荔枝) 및 호박대(琥珀帶)·향대(香帶)·환선(紈扇)·옥영(玉纓)을 바치니, 임금이 친히 받았는데, 사명(使命)을 공경한 것이다. 두목에게 저포(苧布)·마포(麻布) 4필을 주었다.</p>	<p>乙巳/上如太平館享使臣，贈鞍馬。翼日，使臣令頭目一人，獻龍眼、荔枝及琥珀帶、香帶、紈扇、玉纓，上親受之，敬使命也。贈頭目苧麻布四匹。</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8월 26일 (을묘) 1번째기사 내사 황엄이 여귀진의 묘에 가서 제사지내다</p>	<p>내사(內史) 황엄(黃儼)이 여귀진(呂貴眞)의 묘(墓)에 가서 제사지냈는데, 양(羊) 한 마리, 돼지[豕] 한 마리, 거위[鵝] 두 마리는 모두 싸 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 제문(祭文)은 이러하였다. “유(維) 대명(大明) 영락(永樂) 9년(九年) 세차(歲次) 신묘(辛卯) 8월삭(八月朔) 월모일(越某日)에 황제(皇帝)는 태감(太監) 황엄(黃儼)을 보내어 광록 소경(光祿少卿) 여귀진(呂貴眞)의 영(靈)에 제사한다. 너는 온후하고 순실하여 평소부터 착한 것을 좋아하였다. 내척(內戚) 으로 귀하게 되었으나 더욱 삼가고 조심하였다. 너의 천리(踐履)로 보아서 마땅히 장수(長壽)하리라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병에 죽었으니, 참으로 슬퍼하는 바이다. 영(靈)이 만일 알고 있다면 이 유제(諭祭)에 흠향하라.”</p>	<p>乙卯/內史黃儼往祭呂貴眞之墓，羊一豕一鵝二，皆所齋來也。其祭文曰：維大明永樂九年歲次辛卯八月朔越某日，皇帝遣太監黃儼，諭祭于光祿少卿呂貴眞之靈曰：爾溫厚醇實，樂善有素，貴爲內戚，愈執謙慎。以爾所履，宜膺壽考，遽殞於疾，良用傷悼。靈其有知，服斯諭祭。</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8월 26일 (을묘) 2번째기사 철성군 이원의 어머니 빈소에 쌀과 종이를</p>	<p>철성군(鐵城君) 이원(李原)의 어머니 빈소에 쌀 20석, 종이 1백 권을 부의로 주고, 또 중관(中官)을 보내어 사제(賜祭)하였다.</p>	<p>賜賻(鉄城君) [鐵城君] 李原母殯米二十石、紙百卷，又遣中官賜祭。</p>

부의로 하사하다		
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8월 29일 (무오) 2번째기사 약재 보내준 것 사례 로 병조 판서 황희와 좌군 총제 하구를 명 나라에 보내다	병조 판서 황희(黃喜)·좌군 총제(左軍摠制) 하구(河久)를 보내어 경사(京師)에 갔으니, 약재(藥材) 준 것을 사은하기 위해서였다. 황희 등이 복주(福州)에서 도망하여 온 군사 김백(金白)·김일(金一) 등을 돌려보내는 자문(咨文)을 함께 싸 가지고 갔다.	遣兵曹判書黃喜、左軍摠制河久如京師。謝賜藥材也。喜等兼齎福州逃軍金白、金一等還送咨文以行。
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9월 1일 (기미) 2번째기사 명나라 사신 황엄이 요구한 많은 물건을 공조에서 판비하다	내사(內史)에게 양마(良馬)1필, 저마포(苧麻布) 50필을 주고, 또 초구(貂裘)·모관(毛冠)·화(靴) 각 하나씩, 인삼(人蔘) 30근, 화석(花席) 12장(張)을 주고, 두목(頭目) 공봉(公奉) 등 5인에게 각각 저마포(苧麻布) 4필씩을 주고, 그 이하는 차등 있게 주었으며, 또 유희의(襦袂衣) 한 벌을 주었다. 정비전(靜妃殿)에서 저마포(苧麻布) 15필을 주고, 세자(世子)가 저마포 6필을 주었다. 무릇 황엄이 요구한 바를 공조(工曹)로 하여금 판비한 물건의 수는 이루 기록할 수 없었다.	贈內史良馬一匹、苧麻布五十匹，又贈貂裘毛冠靴各一、人蔘三十觔、花席十二張；贈頭目公奉等五人，各苧麻布四匹；其下有差，又以襦袂衣一襲贈之。靜妃殿所贈苧麻布十五匹，世子所贈苧麻布六匹。凡儼之所求，令工曹備辦，物數不可勝紀。
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9월 7일 (을축)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개천을 뚫는 공사 기간에 대해 건의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내[川]를 개착(開鑿)하는 일을 아뢰었다. “오는 10월부터 명년 2월 중에 내를 개착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10월은 바로 상수리 열매[橡實]를 주울 때이니, 2월을 기다려서 시행하라.”	乙丑/議政府啓開川之事。啓曰：“來十月明年二月中開川。”上曰：“十月，正拾橡實之時，須待二月施行。”
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대마도(對馬島) 종정무(宗貞茂)에게 쌀·콩 3백석을 내려 주고, 또 호군(護軍) 평도전(平道全)에게 쌀·콩 30석, 옷 1벌, 안장[鞍] 1면(面)을 내려 주어 대마	賜對馬島宗貞茂米豆三百石，又賜米豆三十石、衣一襲、鞍一面于護軍平道

<p>(永樂) 9년) 9월 11일 (기사) 3번째기사 화호를 맺는 뜻으로 대마도 종정무 등에게 미두 등을 하사하다</p>	<p>도에 보냈다. 평도전은 종정무의 휘하(麾下)이었다. 이번에 보낸 것은 화호(和好)를 맺고 침입하는 왜적을 금하기를 요구한 것이다.</p>	<p>全, 遣于對馬島。 道全, 貞茂之麾下。 今遣之, 要結和好, 禁侵賊也。</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9월 27일 (을유) 2번째기사 예조의 건의로 제사 이틀 전에 관리가 몸 소 진배하는 것을 항 식으로 삼다</p>	<p>예조(禮曹)에서 또 아뢰었다. “무릇 제사의 전물(奠物)을 각사(各司)에서 제사 하루 전에 저녁 늦게서야 하전(下典)을 시켜 진배(進排)하는데, 비록 정결하지 못하더라도 미처 고쳐 배설(排設)하지 못하니 신명(神明)에게 제사하는 도(道)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금후로는 제사 이틀 전에 관리가 몸소 친히 진배(進排)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又啓: “凡祭奠物, 各司於祭前一日乘晚, 令下典進排, 雖未精潔, 不及改排, 不合祀神之道。 今後祭前二日, 官吏躬親進排, 以爲恒式。” 從之。</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9월 27일 (을유) 3번째기사 임금이 친히 제사 지 내는 경우, 작헌한 뒤 에 재배를 행하도록 의논하다</p>	<p>예조(禮曹)에서 아뢰었다. “마땅히 당(唐)·송(宋)의 예에 따라서 친향(親享)하는 제사에는 작헌(酌獻)한 뒤에 재배(再拜)를 행하소서.” 영의정(領議政) 하운(河崙)이 말하였다. “시왕(時王)의 제도에는 작헌(酌獻)에 절을 하지 않고, 또 제왕(帝王)이 제사를 행함에 예가 번거로울 수 없습니다.” 임금이 예관에게 명하였다. “이번 동향(冬享)을 내가 친히 행하고자 하는데, 마땅히 전년 부제(祔祭) 때의 의주(儀注)로 행하라.”</p>	<p>禮曹啓: “宜從唐、宋禮, 親享祭酌獻後行再拜。” 領議政河崙曰: “時王之制, 獻酌無拜, 且帝王行祭, 不可禮煩。” 上命禮官曰: “今冬享, 予欲親行宗廟祭禮, 宜以前年(祔)〔祔〕祭儀行之。”</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0월 17 일(을사) 1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상서(上書)하였다. 첫째는 이러하였다. “근년에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치어 빠진 해가 없습니다. 금년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달 비가 오지 않아서 한건(旱乾)한 것이 재앙이 되어 경기·풍해도·서</p>	<p>乙巳/司憲府上書: 一曰, 近年水旱相仍, 殆無虛歲, 今年自春徂秋, 連月不雨, 旱乾爲災, 京畿、豐海西北界, 失農尤甚。 願殿下</p>

<p>사헌부에서 음주·도살 등을 금할 것과 수령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자의 입대를 상언하다</p>	<p>북계(西北界)가 실농(失農)한 것이 더욱 심합니다. 원컨대, 전하는 반성(反省)하고 두려워하여 궐내(闕內)의 영선(營繕)과 안팎 토목(土木)의 역사를 일체 모두 정지하여 과하소서.”</p> <p>둘째는 이러하였다.</p> <p>“전에는 금주령(禁酒令)이 외방에서만 엄하고 서울 안에서는 다만 연식(宴席)에서 마시는 것만 금하였으니, 가장 미편합니다. 제향(祭享)·공상(供上)을 제외하고 금년 겨울을 시초로 하여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소서.”</p> <p>세째는 이러하였다.</p> <p>“전하가 깊이 구중(九重)에 계시니, 민간의 폐막(弊瘼)을 다 알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각도(各道)에 출사(出使)하였다가 복명하는 사신과 수령(守令)을 입대(入對)하도록 허락하소서.”</p> <p>네째는 이러하였다.</p> <p>“소[牛]를 도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미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화척(禾尺)이 궁벽한 땅에 둔취(屯聚)하여 살아서 농업을 일삼지 않고 도살하는 것으로 업을 삼아 추악한 풍속이 여러 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로 살아서 부락을 이루어 저희끼리 서로 혼인하기 때문입니다. 영락(永樂) 7년에 평민과 섞여 살게 하여 저희끼리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하여 일찍이 교하(敎下)하였는데, 지금까지 폐하여 행하지 않습니다. 빌건대, 전에 내린 조획(條畫)에 의하여 그 호수(戶數)를 성적(成籍)하여, 나누어 나와서 섞여 살아서 백성과 더불어 혼인하고 저희끼리 서로 혼인한 자는 이이(離異)시키어 논죄하소서.”</p> <p>다섯째는 이러하였다.</p> <p>“담제(禫祭)는 상(喪)이 끝나는 날이니, 자식 된 자가 마땅히 처창(悽愴)하여야 하겠는데, 묘 앞에 술을 차려 놓고 노래하고 춤추니, 예속(禮俗)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담제에 잔치를 베푸는 것을 일체 금지하소서.”</p>	<p>省躬恐懼，闕內營繕、中外土木之役，一皆停罷。 二曰，在前禁酒之令，嚴於外方，京中止禁宴飲，最爲未便。除祭享供上外，今冬爲始，一皆禁斷。 三曰，殿下深居九重，民間弊瘼，固難悉知。願自今各道出使復命使臣及守令，許令入對。 四曰，宰牛之禁，已載《六典》，然而禾尺屯處僻地，不事農務，以業宰殺，醜惡之風，世久不變，良由別處成屯，自相婚嫁之致。然其在永樂七年，令雜處平民禁自相婚嫁，已曾敎下，至今廢閣。乞依前降條畫，籍其戶數，分出雜處，與民婚嫁，其自相婚嫁者，離異論罪。 五曰，禫祭喪畢之日，人子所當愴惻。瑩前置酒歌舞，有乖禮俗。自今禫祭設宴一禁。 六曰：鄉愿推核之法，累年不舉，故侵民作弊者頗多，宜遣監察糾理。 下議政府議得： 中外禁酒，來壬辰年爲始，如疏施行。禾尺之事，亦以明年爲始，都城三舍外移置，申嚴禁殺，違者依《六典》治罪。京中五部官吏、各坊管領及外方各官守令、各里正長，不能考察，竝皆按律科斷。</p>
--	---	---

	<p>여섯째는 이러하였다. “향원(鄉愿)을 추핵(推劾)하는 법을 여러 해 동안 거행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을 침노하여 폐단을 짓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마땅히 감찰(監察)을 보내어 규리(糾理)하소서.” 의정부(議政府)에 내리니, 의논하였다. “안팎에 술을 금하는 것은 오는 임진년부터 시작하여 소(疏)와 같이 시행하고, 화척(禾尺)의 일은 또한 명년부터 시작하여 도성(都城) 90리(里) 밖에 옮겨 두고, 도살을 금하는 것을 거듭 엄하게 하고 여기는 자는 《육전(六典)》에 의하여 치죄하고, 서울 안의 오부(五部) 관리(官吏)·각방(各坊)의 관령(管領)·외방(外方)의 각관(各官) 수령(守令)·각리 정장(各里正長)으로서 능히 고찰(考察)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율에 의하여 과단(科斷)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從之。</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0월 21일(기유) 2번째기사 일본 국왕 등이 《대장경》을 얻고자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을 보내어 토물(土物)을 바쳤으니, 《대장경(大藏經)》을 구하고자 함이었다. 대내전(大內殿) 다다량 덕웅(多多良德雄)이 사자를 보내어 수레[輿]와 병기(兵器)를 바쳤으니, 또한 대장경을 구하고자 함이었다.</p>	<p>日本國王遣使來獻土物，求《大藏經》也。大內殿多多良德雄遣使來獻輿及兵器，亦以求《藏經》也。</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1월 3일(경신) 1번째기사 경복궁에서 원종 공신들이 회맹하니 궁운을</p>	<p>원종 공신(元從功臣)들이 경복궁(景福宮) 북쪽에서 회맹(會盟)하니, 대언(代言) 조말생(趙末生)을 보내어 궁운(宮醞)을 주었다.</p>	<p>庚申/元從功臣等會盟于景福宮北，遣代言趙末生，賜宮醞。</p>

내리다		
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1월 3일 (경신) 2번째기사 초입사한 자는 다방에 소속시킬 것을 명하다	초입사(初入仕)한 자는 모두 다방(茶房)에 붙이라고 명하였다. 이조 판서 이직(李稷)이 진언(進言)하였다. “지금의 다방(茶房)은 전조(前朝) 때의 ‘아개치(阿介赤)인데, 아개치에 벼슬하는 자는 모두 용렬한 사람이므로 지금의 자제(子弟)들은 다방에 출사(出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었다.	命初入仕者皆屬茶房。 吏曹判書李稷進言曰：“今之茶房，前朝阿介赤，而仕於阿介赤者，皆庸人也。 今之子弟不肯仕於茶房。” 故有是命。
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1월 7일 (갑자) 3번째기사 말의 그림을 바친 전 소감 김서에게 쌀 10 석을 하사하다	전 소감(少監) 김서(金敍)에게 쌀 10석을 내려 주었다. 김서가 말[馬]을 그려서 바치니, 임금이 좋게 생각한 까닭이었다.	賜前少監金叙米十石。 叙畫馬以進，上善之。
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1월 19 일(병자) 2번째기사 큰 구리 화로를 바친 전 총제 고봉례에게 쌀 20석을 하사하다	전 총제(摠制) 고봉례(高鳳禮)에게 쌀 20석을 내려 주었으니, 고봉례가 큰 구리 화로[銅鑪]를 바쳤기 때문이다.	賜前摠制高鳳禮米二十石。 鳳禮進大銅鑪。
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1월 25 일(임오) 3번째기사	임금이 서북면(西北面)의 흉년을 걱정하여 말하였다.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이 서북면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금년의 흉년이 지난해보다 심하다 하니, 장차 어찌할 것인가? 풍해도의 저축한 곡식을 수로와 육로로 운수하여 진휼하고, 풍해도의 굶주리는 백성은 개성(開城)의 저	上憂西北面之饑曰：“平壤君趙大臨回自西北面曰：‘今年之饑，甚於往年。’ 其將如何？ 其以豐海道所儲之穀，水陸轉運以賑之，豐海飢民則以開城所畜八

<p>개성과 임진의 저축한 곡식을 수운하여 풍해도의 백성을 구제하도록 하다</p>	<p>총한 8만 석과 임진(臨津) 이북 각 고을의 곡식을 수운하여 주면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p>	<p>萬石及臨津以北各郡之穀，漕運以給，則可救也。”</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1월 25일(임오) 4번째기사 목은 콩 5백석으로 장을 담구어 기민을 진제하겠다고 풍해도 감사가 보고하다</p>	<p>풍해도 감사가 보고하였다. “각 고을에 쌓여 있는 목은 콩 5백 석(石)으로 장(醬)을 담구어서 굶주리는 백성을 진제(賑濟)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豐海道監司報：“以各官所儲陳豆五百石，合醬以賑飢民。”從之。</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1월 26일(계미) 4번째기사 동지에는 헌수하지 말 것을 명하다</p>	<p>동지(冬至)에 헌수(獻壽)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청하니, 임금이 듣지 않고 말하였다. “서쪽 방면에 심한 흉년이 들었으니, 감히 잔치하여 즐길 수 있겠느냐?”</p>	<p>命止冬至上壽。議政府請之，上不聽曰：“西方面饑甚，其敢宴樂乎!”</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1월 26일(계미) 5번째기사 강원도 도관찰사가 흰 꿩을 바치다</p>	<p>강원도 도관찰사가 흰 꿩[白雉]을 바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산군(山郡)에 있는 것이니, 상서로운 것이 아니다.”</p>	<p>江原道都觀察使獻白雉，上曰：“是山郡所有，非瑞也。”</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1월 26일(계미) 5번째기사 강원도 도관찰사가 흰 꿩을 바치다</p>	<p>경성 도병마사(鏡城都兵馬使) 최윤덕(崔閔德)에게 약을 주었는데, 최윤덕이 병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p>	<p>賜鏡城都兵馬使崔閔德藥，聞閔德有疾也。</p>

<p>(永樂) 9년) 11월 26일(계미) 6번째기사 경성 도병마사 최윤덕에게 약을 하사하다</p>		
<p>태종 22권,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1월 29일(병술) 1번째기사 전 총제 고봉례의 졸기</p>	<p>전 총제(摠制) 고봉례(高鳳禮)가 졸(卒)하였다. 고봉례는 제주(濟州) 사람이다. 임금이 몹시 슬퍼하여, 대언(代言)에게 명하였다. “이 사람이 과인(寡人)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멀리 친척을 떠나 와서 벼슬하므로 내가 대단히 불쌍히 여겼는데, 지금 죽었으니 내가 몹시 슬프게 여긴다. 상장(喪葬)의 제구를 모두 부의하라.” 양전(兩殿)이 모두 사제(賜祭)하고, 종이 1백 50권, 초[燭] 10자루, 쌀과 콩 40석과 관곽(棺槨)을 부의하였다.</p>	<p>丙戌/前摠制高鳳禮卒。鳳禮，濟州人也。上悼甚，命代言曰：“此人愛慕寡人，遠離親戚而來仕，甚可憐也。今其亡也，予甚哀之，喪葬之具，其悉賻恤。”兩殿皆賜祭，賻紙百五十卷、燭十丁、米豆四十石及棺槨。</p>
<p>태종 22권,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6일(임진) 1번째기사 취각을 명하자 훈련이 안 된 갑사 몇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다</p>	<p>취각(吹角)하라고 명하였는데, 갑사(甲士) 수인(數人)이 말에서 떨어졌다. 의흥부(義興府)에 명령하였다. “사졸을 훈련하여 양성하는 것은 적을 막자는 것인데, 지금도 아직 이와 같으니, 하물며, 위급한 때이겠느냐?” 아괘(牙牌)를 가지고 영삼군사(領三軍事) 조영무(趙英茂)·판의흥부사(判義興府事) 이천우(李天祐)·윤저(尹抵) 등을 불러 직문기(織紋旗) 세 기를 나누어 주고 말하였다. “이 일이 비록 시끄러워서 사람의 이목(耳目)을 놀라게는 하나, 실상은 군법을 익히자는 것이니, 경 등은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서산(西山)에 가서 사냥하라.” 총제(摠制) 황녹(黃祿)을 보내어 술을 내려 주고 위로하였다.</p>	<p>壬辰/命吹角，有甲士數人墜馬。命義興府曰：“練養士卒，所以禦敵，今尚如此，況於危急哉!”以牙牌召領三軍事趙英茂、判義興府事李天祐·尹抵等，分賜織紋三旗曰：“此雖喧顛，駭人耳目，實要習軍法也。卿等將三軍往獵于西山。”遣摠制黃祿，賜酒慰之。</p>
<p>태종 22권,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2월 9일(을미) 3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 유정현(柳廷顯)·형조 판서 이승상(李升商)·전 대사헌 맹사성(孟思誠) 등에게 잔치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유정현은 친척인데, 오래 밖에서 수고하였고, 이승상은 동방(同榜)친구인데 지금 어미의 상을 면하였고, 맹사성은 일찍이 죄를 받아 밖에 있었다.”</p>	<p>宴司憲府大司憲柳廷顯、刑曹判書李升商、前大司憲孟思誠等。上曰：“廷顯，親戚也，久勞于外；升商，同榜故人也，今免母喪；思誠，曾受罪在</p>

<p>대사헌 유정현·형조 판서 이승상·전 대사헌 맹사성에게 잔치를 베풀다</p>	<p>모두 명하여 불러 술자리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종친이 참여하였다.</p>	<p>外。”皆命召，設酌慰之，宗親與焉。</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2월 14일(경자) 2번째기사 곡산군 연사종의 아버지의 상에 부의를 하사하다</p>	<p>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의 아버지 상(喪)에 부의로 쌀·콩 40석과 종이 1백 50권, 촛(燭) 10자루를 내려 주었다. 연사종이 함주(咸州)에서 분상(奔喪)하니, 또 그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약주(藥酒)를 내려 주게 하였다.</p>	<p>賜賻谷山君延嗣宗父喪米豆四十石、紙百五十卷、燭十丁。嗣宗奔喪于咸州，又令其道監司賜藥酒。</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2월 15일(신축) 4번째기사 몽고어를 아는 전 참찬문하부사 조희고에게 미두 20석을 하사하다</p>	<p>전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조희고(趙希古)에게 쌀·콩 20석을 내려 주었으니, 몽고학(蒙古學)을 맡은 자였다.</p>	<p>賜前參贊門下府事趙希古米豆二十石，知蒙學者也。</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2월 26일(임자) 3번째기사 풍해도의 기민을 국고의 미두로 진휼하다</p>	<p>풍海道(豐海道)의 기민(飢民)을 진휼하였다. 경차관(敬差官) 조치(曹致)가 상언하였다. “풍주(豐州) 등 18군(郡)에 기근(飢饉)이 더욱 심하니, 국고(國庫)의 쌀·콩 5백석으로 진휼하여 꾸어 주도록 청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치가 또 상언하였다. “풍주(豐州)·장연(長淵)·옹진(甕津) 3진(鎭)이 금년에 모두 실농(失農)하였으니, 내년 춘등(春等)·하등(夏等) 월과(月課) 군기(軍器)를, 빌건대, 잠정적으로 정</p>	<p>賑豐海道飢。敬差官曹致上言：“豐州等十八郡，飢饉尤甚，請以國庫米豆五百石賑貸。”從之。致又上言：“豐州、長淵、瓮津三鎭，今年皆失農。來春夏等月課軍器，乞姑停之，並使歸農，以除民弊。”又曰：“在前三月務停，今年則因旱飢饉，願自今奸盜人命</p>

	<p>지하고, 아울러 귀농(歸農)하게 하여 민폐(民弊)를 제거하게 하소서.” 또 말하였다. “전에는 3월에 정무(停務)하였는데 금년에는 한재로 인하여 기근이 심하니, 원컨대, 이제부터 간도(奸盜)나 인명에 관계되는 죄 외에 잡송(雜訟)은 일체 모두 금단하고, 오로지 진휼에 힘쓰고 농상(農桑)을 권과하여 민생을 후하게 하소서.”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所係外雜訟，一皆禁斷，專務賑恤，勸課農桑，以厚民生。”皆從之。</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12월 28일(갑인) 2번째기사 성산군 이직에게 궁은을 하사하다</p>	<p>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에게 궁은(宮醞)을 내려 주었다. 이직의 아버지 이인민(李仁敏)이 계해년의 문과(文科)를 맡았는데, 그 문인(門人) 김한로(金漢老) 등이 명족(名簇)을 바치기 전에 이인민이 졸(卒)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이직에게 부탁하니, 이직이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이 과거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동부대언(同副代言) 조말생(趙末生)을 보내어 궁은을 내려 주었으니, 대개 사우(師友)의 예전 정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임금이 또 여러 신하에게 일렀다.</p>	<p>賜星山君李稷宮醞。稷父仁敏掌癸亥文科，其門人金漢老等未呈名簇，仁敏卒。至是囑稷，稷爲設宴。上於潛邸中此科，故遣同副代言趙末生以賜之，蓋不忘師友之舊也。</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윤12월 2일(무오) 4번째기사 궁중 시녀로 하여금 길쌈을 맡아서 궁안의 소용되는 물건을 대비하도록 명하다</p>	<p>“의식(衣食)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이니, 어느 한가지에 치우치거나 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전에는 후비(后妃)가 부지런하고 알뜰하여 또한 후부인(后夫人)이 친히 누에를 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래로 궁중 시녀까지 모두 배불리 먹고 일이 없어 과인(寡人)의 의복까지 모두 사서 바친다. 금후에는 삼을 거두는 법을 정하여 궁중 시녀로 하여금 길쌈하는 것을 맡아서 내용(內用)에 대비하게 하라.” 여러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주상의 말씀이 옳습니다.”</p>	<p>上又謂群臣曰：“衣食，人生所重，不可偏廢者也。古者后妃勤儉，亦有后夫人親蠶之事，今也下至宮中侍女，皆飽食無事，寡人衣服，皆買而供之。今後定收斂麻枲之法，令宮中侍女任其紡績，以備內用。”群臣咸曰：“上教然矣。”</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윤12월</p>	<p>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고 내전(內殿)에 술자리를 베풀었다. 격구(擊毬)하고 극진히 즐기었는데, 종친이 참여하였다. 상왕의 어가(御駕)가 돌아가니, 임금이 돈화문(敦化門) 안 돌다리[石橋]까지 전송하고 꿇어앉아,</p>	<p>丙寅/上奉上王，置酒于內殿，擊毬盡歡，宗親與焉。上王駕還，上送于敦化門內石橋，跪曰：“雙親俱逝，當今</p>

<p>10일(병인) 1번째기사 상왕을 맞아 술자리를 베풀고 격구하며 즐기 다</p>	<p>“양친이 다 돌아가셨으니, 이제 효도하고 봉양할 데가 상위(上位)를 제쳐놓고 누구 이겠습니까?” 하니, 상왕이 말하였다. “그렇도다.”</p>	<p>孝養，捨上位而誰歟？” 上王曰：“是也。”</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윤12월 17일(계유) 1번째기사 궐내의 은젓가락을 도 둑질한 예문관 서리 김위에게 장 80대를 때리다</p>	<p>예문관 서리(藝文館書吏) 김위(金衛)를 장(杖) 80대를 때렸다. 형조 판서 이승 상(李升商)이 아뢰기를, “김위가 궐내의 은젓가락[銀筯]을 도둑질하였으니, 율문(律文)에 상고하면 참 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한개의 은젓가락을 도둑질한 것을 갑자기 죽이면 미편한 것 같으니, 마땅히 관물(官物)을 도둑질한 율로 논하라.” 이승상이, “궐내의 물건을 관물로 같이 논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유사(有司)가 청하면 따르기는 하겠으나, 젓가락 하나를 도둑질하고 죽는 것 은 내마음에 깊이 평안치 못하니, 등수를 감하여 장(杖) 80대를 때리라.”</p>	<p>癸酉/命杖藝文館書吏金衛八十。 刑 曹判書李升商啓曰： “衛盜闕內銀筯， 考於律文當斬。” 上曰：“盜一箇銀筯 遽斬，似未便。 當以盜官物律論。” 升商曰：“闕內之物， 以官物等論未 便。” 上曰：“有司請則從之。 然盜一 筯而死，於予心深以爲未安，宜減等杖 八十。”</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윤12월 24일(경진) 1번째기사 상왕이 건원릉에 참배 하다</p>	<p>상왕이 건원릉(建元陵)에 참배하니, 임금이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내 관(內官) 이광(李匡)을 시켜 술과 찬을 갖추어 교외에서 영접하였다.</p>	<p>庚辰/上王謁健元陵， 上命淸平君李伯 剛、內官李匡，備酒膳迎于郊。</p>
<p>태종 22권, 11년 (1411 신묘 / 명 영락 (永樂) 9년) 윤12월 24일(경진) 2번째기사</p>	<p>임금이 말하였다. “내년 원일(元日)에는 상왕전(上王殿)에 상수(上壽)하고, 인하여 각사(各司)에 주과(酒果)를 주는 것이 어떠한가?” 우대언(右代言) 유사눌(柳思訥) 등이 대답하였다.</p>	<p>上曰：“來年元日， 上壽於上王殿， 仍 賜各司酒果如何？” 右代言柳思訥等對 曰：“君臣同宴， 不可廢也。 上壽， 雖 在他日亦可。”</p>

설날에 상왕전에 헌수하는 문제를 의논하다	“군신(君臣)이 함께 잔치하는 것은 폐지할 수 없고 상수(上壽)하는 것은 비록 다른 날에 하더라도 가합니다.”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1월 2일 (정해) 1번째기사 환관 노희봉 어미의 상에 부의를 주다	환관(宦官) 노희봉(盧希鳳)의 어미의 상(喪)에 부의(賻儀)를 내려 주었다. 임금이, “이 사람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게으름이 없고 매우 공로가 있다.” 하고, 종이 1백 권과 초[燭] 10정(丁)과 쌀·콩 30석을 내려 주었다.	丁亥/賜賻宦官盧希鳳母喪。 上曰: “此人夙夜無怠, 頗有功勞。” 賜紙百卷、燭十丁、米豆三十石。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1월 10일(을미) 3번째기사 능터를 잡은 공으로 검교 판한성부사 유한우에게 미두를 하사하다	검교 판한성부사(檢校判漢城府使) 유한우(劉旱雨)에게 쌀·콩 20석을 내려 주었으니, 유한우가 상지(相地)하여 선릉(先陵)에 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賜檢校判漢城府事劉旱雨米豆二十石。 以旱雨相地, 有功於先陵也。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1월 15일(경자) 2번째기사 개천을 파는 일로 동원된 5만 2천 8백명의 군사에게 군자감의 곡식을 주다	대신(大臣)을 보내어 운하[渠]를 파는 일 때문에 종묘(宗廟)·사직(社稷)·산천(山川) 신(神)에 고하였다. 경상도·전라도·충청도 3도의 군인이 모두 5만 2천 8백 명이였다. 임금이, “5만여 인이 먼길에 쌀을 지고 온 것이 반드시 넉넉지 못할 것이다.” 하고, 명하여 군자감(軍資監)의 쌀 4만 4백 석을 내어서 군인에게 각각 3두(斗)씩을 주어서 반달 양식을 준비하게 하였다. 군인 중에 부모의 상(喪)을 입은 자의 수가 3백명에 이르렀는데 모두 놓아서 돌려보냈다.	遣大臣, 以開渠, 告宗廟社稷山川之神。 慶尙、全羅、忠清三道軍人共五萬二千八百。 上曰: “五萬餘人, 遠路負米, 必不贍矣。” 命出軍資監米萬四百石, 給軍人各三斗, 備半月糧也。 軍中服父母喪者, 數至三百, 皆放還之。
태종 23권, 12년	숙주(肅州) 사람 신태재(申得財)를 부르라고 명하였다. 신태재가 종이[紙]를	命召肅州人申得財。 得財善造紙, 絕

<p>(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1월 17 일(임인) 2번째기사 종이를 잘 만드는 숙 주 사람 신득재에게 의식을 내려 주고 기 술을 전습하게 하다</p>	<p>잘 만들어서 중국의 종이 모양과 거의 같았던 까닭에 부른 것이다. 넉넉하게 의식을 내려 주고 사람을 시켜 전습(傳習)하게 하였다. 또 서북면(西北面)에 전지(傳旨)하여 그 어미에게 쌀 5석을 내려 주고, 그 매부(妹夫)의 군역(軍役)을 면제하여 그 어미를 봉양하게 하였다.</p>	<p>類中國紙樣，故召之，優賜衣食，令人傳習。 且傳旨西北面，賜其母米五石，復其妹夫軍役，以養其母。</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1월 20 일(을사) 1번째기사 개천 도감에 공운을 하사하다</p>	<p>개천 도감(開川都監)에게 내온(內醞)을 내려 주었다.</p>	<p>乙巳/賜醞于開川都監。</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1월 21 일(병오) 2번째기사 서북면 도순문사 임정에게 약주를 하사하다</p>	<p>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 임정(林整)에게 약주(藥酒)를 마시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임정에게 일렀다. “경이 본래 병이 있는데, 외방에서 지금 비록 술을 금하기는 하나 마땅히 약으로 마시라.”</p>	<p>命西北面都巡問使林整飲藥酒。 上謂整曰：“卿本有疾， 外方時雖禁酒， 宜用飲藥。”</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1월 28 일(계축) 2번째기사 성절을 하례하고 제복과 약재를 구하기 위해 여천군 민여익 등</p>	<p>여천군(驪川君) 민여익(閔汝翼)을 보내어 경사(京師) 2083) 에 갔으니, 성절(聖節)을 하례하기 위함이었다. 판사역원사(判事譯院事) 이자영(李子瑛)이 자문(咨文)을 싸가지고 함께 갔으니, 제복(祭服)과 약재(藥材)를 사기 위함이었다.</p>	<p>遣驪川君閔汝翼如京師。 賀聖節也。 判司譯院事李子瑛， 齎咨俱往， 爲收買祭服及藥材也。</p>

을 명나라에 보내다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2월 3일 (무오) 1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	금주령(禁酒令)을 내렸으니,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뢴 것을 따른 것이다.	戊午/下禁酒令。 從司憲府之啓也。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2월 3일 (무오) 2번째기사 고 상장군 박순의 처 임씨에게 쌀을 하사하 다	고(故) 상장군(上將軍) 박순(朴淳)의 처 임씨(任氏)에게 쌀 10석을 내려 주었다.	賜故上將軍朴淳妻任氏米十石。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2월 7일 (임술) 1번째기사 임금이 편치 못하다. 강무의를 상정하게 하 다	임금이 편찮으니, 세자가 몸소 약을 달이어 바쳤다. 임금이 맛보고 “네가 예전 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였다. 한낮에 이르러 평복(平復)되었다가 이튿날 다시 편찮으니 근신(近臣) 에게 이르기를, “기운과 몸이 아직 평복되지 못하였는데, 다시 삼사 일이 지나면 일을 볼 수 있겠다.” 하고, 또 말하였다. “사냥하는 법은 제왕(帝王)이 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 조(許稠)로 하여금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정부 대신(政府大臣)이나 의흥부(義 興府)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강무의(講武儀)를 상정(詳定)하도록 하라.”	壬戌/上不豫, 世子躬自湯藥以進。 上 嘗之曰: “汝學古書, 故乃爾。” 至日 中平復, 翼日又未寧, 謂近臣曰: “氣 體尙未平復, 更三四日則可視事。” 又 曰: “蒐狩之法, 帝王所重。 令禮曹參 議許稠, 稽諸古典, 與政府大臣、義興 府同議, 詳定講武儀。”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2월 11	개천 도감(開川都監)에게 내온(內醞)을 내려 주었다.	丙寅/賜醞于開川都監。

<p>일(병인) 1번째기사 개천 도감에 궁은을 하사하다</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2월 11 일(병인) 4번째기사 충청도와 경기 곡식 각각 5천석을 풍해도 와 서북면에 수운하게 하다</p>	<p>명하여 충청도의 곡식 5천 석과 경기의 곡식 5천 석을 풍해도(豐海道)의 서북면(西北面) 두 도(道)에 수운(水運)하게 하였으니, 이는 해를 연하여 기근이 들었던 까닭으로 종자(種子)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p>	<p>命漕忠清道穀五千石、京畿穀五千石于豐海、西北兩道。以連年饑饉，備種子也。</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2월 14 일(기사) 2번째기사 김을우·김우·윤향·하경 복·윤임 등에게 관작 을 제수하다</p>	<p>김을우(金乙雨)를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慶尙道水軍都節制使)로, 김우(金宇)를 안주도 병마 도절제사(安州道兵馬都節制使)로, 윤향(尹向)을 계림 부윤(鷄林府尹)으로, 하경복(河敬復)을 경성 등처 병마 절제사(鏡城等處兵馬節制使)로, 윤임(尹臨)을 제주도 도안무사(濟州道都安撫使)로, 이육(李陸)을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로 삼았다. 전번에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윤희종(尹會宗) 등이 심정(沈澄)의 죄를 청하였으므로 모두 사제(私第)로 돌아가라고 명하였었는데, 지금 모두 파면하고 심정을 다시 상호군(上護軍)으로 삼았다.</p>	<p>以金乙雨爲慶尙道水軍都節制使，金宇安州道兵馬都節制使，尹向雞林府尹，河敬復鏡城等處兵馬節制使，尹臨濟州道都安撫使，李陸爲右司諫大夫。前此，左司諫大夫尹會宗等，請沈澄之罪，皆命歸私第，今皆罷之，以澄復爲上護軍。</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2월 19 일(갑술) 1번째기사 상왕과 함께 해온정에</p>	<p>상왕(上王)이 이르니, 임금이 해온정(解慍亭)에서 맞아들이어 술자리를 베풀어 극진히 즐기고, 밤을 타서 문밖에 나가서 마주 춤추[對舞]고 작별하였다.</p>	<p>甲戌/上王至，上迎入解慍亭，設酌極歡，乘夜出于門外，對舞而辭。</p>

서 연회를 즐기다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3월 13 일(정유) 1번째기사 상왕과 함께 동교에서 매사냥을 하다	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고 동교(東郊)에서 매 사냥하는 것[放鷹]을 구경하였다. 인하여 술자리를 베풀어 극진히 즐기고 내구마(內廐馬)를 상왕에게 바치었다. 총제(摠制) 권희달(權希達)이 겸 판사복(判司僕)으로 말을 끌고 들어오니, 상왕이 권희달에게 옷을 내려 주었다.	丁酉/上奉上王，觀放鷹于東郊，仍設酌極歡，以廐馬獻于上王。摠制權希達，以兼判司僕，牽馬而入，上王賜希達衣。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3월 22 일(병오) 1번째기사 상왕이 북교에서 매사 냥을 구경하다	상왕(上王)이 북교(北郊)에 거둥하여 매 사냥하는 것[放鷹]을 구경하니, 임금이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술과 과실을 싸 가지고 맞아서 위로하게 하였다.	丙午/上王幸北郊，觀放鷹。上命中官，齎酒菓迎慰。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3월 22 일(병오) 6번째기사 빛 관계로 싸운호군 성재와 전 지운주사 정자수를 순금사의 옥 에 가두다	호군(護軍) 성재(成載), 전 지운주사(知雲州事) 정자수(鄭子壽)를 순금사(巡禁司)의 옥(獄)에 가두었다. 처음에 성재가 형조에 고하였다. “갑신(甲申) 연간에 종자부(從姊夫) 정자수(鄭子壽)가 군자 주부(軍資注簿)가 되었을 때, 종[奴] 승룡(升龍)의 소장(訴狀)으로 성재의 보단자(保單子)를 위조하여 본감(本監)의 쌀 10석을 대여(貸與)하였습니다.” 기축년에 이르러 환납을 독촉할 때에 정자수는 바야흐로 운주(雲州)에 부임하였다. 성재는 정자수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고소하여 정자수의 아버지 집에서 6석을 받아서 성재가 4석을 바치었다. 정자수가 돌아와서, “나는 일찍이 쌀을 꾸적(積)이 없다. 너의 보단자(保單子)와 내가 무슨 상관(相干)이 있느냐?” 하고, 포화(布貨)를 반사(頒賜)하는 날에 사람을 보내어 길에서 요구하며 포(布) 9필과 저화(楮貨) 28장을 빼앗았다. 형조에서 그 실상을 조사하여 보니, 승룡은 성재의 종매부(從妹夫) 조강(趙岡)의 집 종이었고, 그 보단자(保單子)	下護軍成載、前知雲州事鄭子壽于巡禁司獄。初，載告刑曹云： 甲申年間，從姊夫鄭子壽爲軍資注簿，以奴升龍所志，僞寫載保單子，貸本監米十石。至己丑年督納之際，子壽方赴雲州，載意子壽所爲，告徵于子壽父家六石，載納四石。子壽還曰：“吾未曾糶米，汝之保單子，吾何與焉！”乃於頒賜布貨之日，遣人要於路，奪布九匹、楮貨二十八張。 刑曹按其實，升龍乃載從妹夫趙岡之家奴也；其保單子，亦載手書親署也。歲月已久，載忘其所爲耳，子壽則初不

	<p>도 또한 성재가 손수 쓰고 친히 서압(署押)한 것인데, 세월이 오래 되어서 성재가 자기가 한 일을 잊은 것으로 정자수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음이 분명하였다. 형조에서 청하였다.</p> <p>“성재가 이미 친히 서명(署名)하여 승룡에게 보증을 서고 도리어 정자수를 가리켜 위조하였다고 칭하며, 또 정자수를 감림 자도(監臨自盜)의 죄에 빠뜨리고자 하였으니 참으로 간악합니다. 정자수는 관가에 호소하여 스스로 밝히지 않고 길에서 요구하며 반사한 물건을 강제로 빼앗았으니 또한 횡포하고 사납습니다. 빌건대, 모두 고신을 거두고 그 사유를 국문(鞫問)하소서.”</p>	<p>與也明矣。 刑曹請曰：“載既親署其名， 爲保於升龍， 反指子壽稱爲偽造， 且欲陷子壽於監臨自盜之罪， 誠爲奸惡； 子壽不訴官自明， 乃要於路， 攘奪頒賜之物， 亦爲橫悍。 乞皆收告身， 鞫問其由。”</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3월 24일(무신) 1번째기사 검교 한성 윤 고충언이 제주로 가기 때문에 물품을 하사하다</p>	<p>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고충언(高忠彦)에게 홍포(紅袍)·여지(荔枝)·금대(金帶)를 내려 주었다. 고충언이 제주 도사수(濟州都司守)로서 장차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 또한 향(香)을 내려 주어 한라(漢拏) 산천(山川)의 신(神)에게 제사 지내게 하였다.</p>	<p>戊申/賜檢校漢城尹高忠彦紅袍荔枝金帶。 忠彦以濟州都司守將還， 有是賜， 仍降香， 祀漢拏山川之神。</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3월 24일(무신) 4번째기사 행랑 조성 도감에 공온을 하사하다</p>	<p>행랑 조성 도감(行廊造成都監)에게 내온(內醞)을 내려 주었다. 각도 목공(木工) 가운데 행랑의 역사에 다달은 자가 무릇 2백 명이었는데, 승인(僧人)을 제외하고 모두 돌려보냈다.</p>	<p>賜醞于行廊造成都監。 各道木工來赴行廊之役者凡二百， 除僧人外， 皆放還。</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3월 25일(기유) 1번째기사 동교에서 흰 매가 사</p>	<p>동교(東郊)에서 흰매[白鷹]가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입직(入直)한 대언(代言) 유사눌(柳思訥)에게 일렀다.</p> <p>“흰매[白鷹]가 보통 유(類)에 뛰어나므로 또 한 번 보고자 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서북면(西北面)과 풍해도(豐海道)에서 기근(飢饉)이 심하고 정부(政府)에서 술을 끊었다고 하니 참으로 염려가 되어 다시 보지 않으려 한다.”</p>	<p>己酉/觀放白鷹于東郊。 上嘗謂入直代言柳思訥曰：“白鷹出乎常類， 又欲一觀。 今聞西北面豐海道饑甚， 政府斷酒， 良用爲念， 不欲復觀。” 思訥對曰：“凡鷹子必須放之而後坐連， 上之</p>

<p>냥하는 것을 구경하다</p>	<p>유사놀이 대답하였다. “무릇 매는 반드시 날려 본 뒤에 연(連)에 앉히는 것입니다. 주상이 매를 보는 것이 굶주리는 백성에게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명일에 교외에 나가서 한 번 날려 본 뒤에 연(連)에 앉히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또 명하기를, “정부(政府)에서 전지(傳旨)하여 조주(朝酒)를 사양하지 말게 하라. 정부에서 만일 굳이 사양하면 나도 또한 술을 정지하겠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교외에 나갔다.</p>	<p>觀鷹，無害於飢民。 臣以爲明日出郊一放，而後坐連可也。” 又命曰：“傳旨政府，毋辭朝酒。 政府若固辭，則予亦輟酒。” 至是出郊。</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4월 3일 (정사) 2번째기사 행랑 조성 도감에 공운을 하사하다</p>	<p>행랑 조성 도감(行廊造成都監)에 내온(內醞)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행랑(行廊)을 조성하는 일을 처음에는 모두 어렵다고 생각하였는데, 지어 놓고 보니 국가에 모양(模樣)이 있어 볼 만하다. 만일 남은 힘이 있으면 종루(鍾樓) 동서쪽에도 지었으면 좋겠다.” 하니,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이 대답하기를, “재목은 넉넉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명년 가을과 겨울을 기다려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p>	<p>○賜醞于行廊造成都監。 上曰：“行廊造成之事，初皆以爲難，及其成也，國家有模樣而可觀矣。 若有餘力，則鍾樓東西亦可作也。” 左政丞成石璘對曰：“材木足矣。” 上曰：“待明年秋冬造成可也。”</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4월 6일 (경신) 1번째기사 4월에 품미(品米)와 호미(戶米)를 되돌려 주게 하다</p>	<p>품미(品米)·호미(戶米)를 도로 주라고 명하였다. 기축년에 중국이 북호(北胡)와 병란(兵亂)이 잇달아서 화가 우리에게 미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각 품(品)으로 하여금 차등 있게 쌀을 내게 하여 군량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백성들이 모두 품미(品米)를 도로 받고자 한다고 하니, 그러는가? 그렇다면 지금 국가에 일이 없으니, 도로 주는 것도 가하다. 또 여리(閭里)가 빈궁한 것이 어느 때가 더욱 심한가?” 모두들, “4월 사이 모맥(牟麥)이 익지 않았을 때가 가장 심합니다.”</p>	<p>庚申/命還給品米戶米。 歲己丑，慮上國與北胡連兵，禍延于我，故令各品出米有差，以備軍餉。 至是，上曰：“予聞人皆欲還受品米，然乎？ 然則今國家無事，可還給也。 且閭里貧乏，何時尤甚？” 僉曰：“四月間牟麥未登之時爲最。” 上曰：“若還給品米，則小民之買米聊生者，庶可易得矣。” 石璘對曰：“小民尙未還受烟戶之米，各品還</p>

	<p>하니, 임금의</p> <p>“만일 품미(品米)를 도로 주면 소민(小民) 가운데 쌀을 사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은 사기가 거의 쉬울 것이다.”</p> <p>하였다. 성석린(成石麟)이 대답하기를,</p> <p>“소민(小民)이 아직 연호미(煙戶米)를 도로 받지 못하였는데, 각 품(品)이 도로 받은 것은 미편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수납한 것을 지금 다시 도로 주면 아이들 장난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였다.</p> <p>“참으로 아이들 장난 같기는 하나, 다만 이 말이 의리에 합하지는 않는다.”</p> <p>참찬(參贊) 김승주(金承雱)가 나와서</p> <p>“사람들이 모두 저화(楮貨)로 품미(品米)의 값을 주었으면 합니다.”</p> <p>하니, 임금이</p> <p>“저화가 만일 넉넉하면 저화로 품미(品米)의 값을 주어서 저화가 민간에 퍼진 뒤에 군자미(軍資米)를 5,6천 석(石) 혹은 1만 석을 피내어 소민(小民)으로 하여금 저화를 바치고 쌀을 바꾸게 하면 좋을 것이다.”</p> <p>하니, 모두</p> <p>“웁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개성 유후사 유후(開城留後司留後) 이문화(李文和)에게 이르기를,</p> <p>“구경(舊京)의 백성들이 지금 바야흐로 굶주리니 어떻게 할까?”</p> <p>하니, 이문화(李文和)가 대답하기를,</p> <p>“구경(舊京)에는 전지를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저자의 교역(交易)에 쌀을 쓰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또 한 해의 한재가 경기(京畿)가 더욱 심하였던 까닭으로 백성들 가운데 굶주리는 자가 많습니다. 일찍이 품미(品米)와 호미(戶米)를 바친 자는 저화를 주지 말고 쌀을 도로 주면 백성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p>	<p>受, 似爲未便。 且既收納, 今又還給, 若兒戲也。” 上曰: “誠如兒戲, 但此言未合於義。” 參贊金承雱進曰: “人皆欲以楮貨給品米之價。” 上曰: “楮貨如可贍, 則以楮貨給品米之價, 而楮貨布散民間, 然後發軍資米或五六千石或一萬石, 令小民納楮貨換米可也。” 僉曰: “是矣。” 上謂開城留後司留後李文和曰: “舊京之民, 時方告飢, 奈何?” 文和對曰: “舊京無有受田者, 故其市易不見用米。 且前年旱乾之變, 畿甸尤甚, 故民之飢者衆。 曾納品米及戶米者, 毋給楮貨, 還其米, 則民可聊生矣。” 從之。</p>
--	---	---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4월 8일 (임술) 2번째기사 성균관과 오부 학당에 내운을 하사하다	성균관(成均館)과 오부 학당(五部學堂)에 내운(內醞)을 내려 주니, 대사성(大司成) 권우(權遇) 등이 학생을 거느리고 전(箋)을 올려 사은하였다.	賜醞于成均館及五部學堂。 大司成權遇等，率學生進箋謝恩。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4월 8일 (임술) 4번째기사 약재를 바친 통사 최 호에게 쌀 30석을 하 사하다	통사(通事) 최호(崔浩)에게 쌀 30석을 주었으니, 최호가 약재를 바친 때문이었다.	賜通事崔浩米三十石。 浩進藥材也。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4월 10 일(갑자) 1번째기사 별요 제조에게 내운을 하사하다	별요 제조(別寮提調)에게 궁온(宮醞)을 주었다.	甲子/賜醞于別寮提調。
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4월 11 일(을축) 1번째기사 경복궁에 새로 지은	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여 누각(樓閣)과 못[池]을 보고 술자리를 베풀어 감독(監督) 제조(提調) 박자청(朴子靑) 등을 위로하였는데, 종친과 부마(駙馬)가 참여하였다. 또 역도(役徒) 대장(隊將)·대부(隊副) 등 6백여 인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	乙丑/幸景福宮，觀樓池，置酒慰監督提調朴子靑等，宗親駙馬與焉。又賜酒役徒隊長隊副等六百餘人。

<p>누각과 못을 구경하고 향연을 베풀다</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4월 11 일(을축) 3번째기사 서북면 도순문사가 추 가로 더 드러낸 호구 와 창고에 있는 미곡 의 수량을 보고하다</p>	<p>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가 추가하여 나타난 호구(戶口)와 미곡(米穀)의 수를 올리었다. 보고는 이리하였다. “환상(還上)하는 쌀과 콩을 인구조로 계산하여 주니 인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원호(元戶) 내에서 인보적(隣保籍)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추가하여 나타난 장정 남녀(壯丁男女)가 모두 1만 1백 50명이고 동자(童子)가 5천 92명입니다. 지금 현재 3천 8백 12호 내에서 장정 남녀(壯丁男女)가 모두 1만 1천 5명이 고, 동자(童子)가 4천 3백 90명이며 유리(流離)하여 양식을 구걸하는 장정 남 녀(壯丁男女)가 모두 3백 33명이고, 동자(童子)가 1백 33명입니다.” 또 보고하였다. “창고(倉庫)에 있는 원수(元數)를 회계하면 쌀·콩·잡곡이 54만 5천 14석인데, 실농(失農)한 각 고을 수령의 늬봉(廩俸)과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한 것과 종 자(種子)를 나누어 준 것을 제외하면, 현재의 재고가 41만 4천 3백 80석이 고, 풍해도(豐海道)에서 운수하여 온 쌀·콩·잡곡이 2만 7천 1백 18석입니다.”</p>	<p>西北面都巡問使上加現戶口及米穀數。 報云：“以還上米豆，計人口給之，人口多現。其元戶內隣保籍不付加現壯男女共一萬一百五十名，童子五千九十二名。今現三千八百十二戶內，壯男女共一萬一千五名，童子四千三百九十名。流離乞糧壯男女共三百三十三名，童子一百三十三名。” 又報：“會計留庫元數米豆雜穀，五十四萬五千十四石，除失農各官守令廩俸、飢民賑濟、種子分給外，時留庫四十一萬四千三百八十石。自豐海道輸來米豆雜穀二萬七千一百十八石。”</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4월 15 일(기사) 1번째기사 행랑 조성 도감에 궁 운을 보내다</p>	<p>행랑 조성 도감(行廊造成都監)에게 궁운(宮醞)을 내려 주었다.</p>	<p>己巳/賜醞于行廊造成都監。</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4월 15 일(기사) 3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유산국도(流山國島) 사람을 처치하는 방법을 의논하 였다. 강원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유산국도(流山國島) 사람 백가물(白加勿) 등 12명이 고성(高城) 어라진(於羅 津)에 와서 정박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무릉도(武陵島)에서 성장하였는데,</p>	<p>命議政府議處流山國島人。江原道觀察使報云：“流山國島人白加勿等十二名，求泊高城於羅津，言曰：‘予等生長武陵，其島內人戶十一，男女共六十</p>

<p>강원도 관찰사가 울릉도 유산국의 섬 사람에게 대해 보고하다</p>	<p>그 섬 안의 인호(人戶)가 11호이고, 남녀가 모두 60여 명인데, 지금은 본도(本島)로 옮겨 와 살고 있습니다. 이 섬이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가 모두 2식(息) 거리이고, 둘레가 8식(息) 거리입니다. 우마(牛馬)와 논이 없으나, 오직 콩 한 말만 심으면 20석 혹은 30석이 나고, 보리 1석을 심으면 50여 석이 납니다. 대[竹]가 큰 서까래 같고, 해착(海錯)과 과목(果木)이 모두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하여 갈까 염려하여, 아직 통주(通州)·고성(高城)·간성(杆城)에 나누어 두었습니다.”</p>	<p>餘, 今移居本島。 是島自東至西自南至北, 皆二息, 周回八息。 無牛馬水田, 唯種豆一斗出二十石或三十石, 麥一石出五十餘石; 竹如大椽; 海錯果木皆在焉。’ 竊慮此人等逃還, 姑分置于通州、高城、杆城。”</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4월 19일(계유) 4번째기사 행랑 조성 도감 및 누각과 못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궁운을 하사하다</p>	<p>행랑 조성 도감(行廊造成都監)과 누지(樓池)를 만드는 역도(役徒)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p>	<p>賜酒于行廊都監及作樓池役徒。</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4월 19일(계유) 5번째기사 칠성군 윤저가 금주 땅에서 동석(銅石)이 산출 됨을 보고하다</p>	<p>칠성군(漆城君) 윤저(尹柢)가 동발(銅鉢) 두 개를 바치고 또 말하였다. “신이 들으니, 전라도 금주(錦州) 땅에서 동석(銅石)이 산출한다 하오니, 원컨대 캐어 오게 하소서.” 전 삼척 군사(三陟郡事) 윤종정(尹宗貞)에게 명하여 캐도록 하였다.</p>	<p>漆城君尹柢進銅鉢二, 且曰: “臣聞全羅道錦州地產銅石。 願令采來。” 乃命前三陟郡事尹宗貞採之。</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4월 22일(병자) 2번째기사</p>	<p>전 총제(摠制) 권희달(權希達)을 사복 제조(司僕提調)로 삼았다. 권희달이 마전포(麻田浦)에서 고기를 잡아서 바치니, 내온(內醢) 열 병을 내려 주었다. 권희달이 일찍이 천택(川澤)에서 고기 잡기를 일삼으니 임금이 또한 허락하였던 까닭으로 서울 가까운 천택에 혹독하게 금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풀 베고 나</p>	<p>以前摠制權希達爲司僕提調。 希達捕魚于麻田浦以進, 賜醢十瓶。 希達嘗以捕魚川澤爲事, 上亦許之, 故近京川澤, 靡不酷禁, 芻蕘不得下手。</p>

<p>전 총제 권희달을 사복 제조로 다시 제수하다</p>	<p>무하는 사람도 손을 대지 못하였다.</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4월 22일(병자) 3번째기사 어미의 담제를 안산에 있는 안성군 이숙번에게 궁온을 하사하다</p>	<p>중관(中官)을 보내어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에게 내온(內醞)을 내려 주었다. 이숙번(李叔蕃)이 어미의 담제(禫祭)로 인하여 안산(安山)에 있었던 까닭이었다.</p>	<p>遣中官，賜醞于安城君李叔蕃。叔蕃因母禫祭，在安山。</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4월 25일(기묘) 1번째기사 원윤 이덕근의 졸기. 원윤·정윤을 장사지내는 예를 예조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다</p>	<p>원윤(元尹) 이덕근(李德根)이 죽으니, 조회(朝會)를 3일 동안 정지하고, 부의(賻儀)로 쌀과 콩 30석을 내려 주고 또 사제(賜祭)하였으니, 이덕근(李德根)은 진안군(鎭安君) 이방우(李芳雨)의 열자(孽子)였다. 처음에는 원윤(元尹)·정윤(正尹)이 죽으면 종친 하등(宗親下等)의 예로 장사지냈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부(政府)에 명령하기를, “종실이 친하고 먼 것이 있으니, 어찌 범연히 하등(下等)의 예로 장사지낼 수 있겠는가? 옛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정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원윤(元尹)·정윤(正尹)을 장사하는 예를 예조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니, ‘한(漢)나라 제도에는 다만 황형제(皇兄弟)·황자(皇子)를 왕으로 봉한다고 칭하였고, 당(唐)나라·송(宋)나라 제도도 또한 그와 같고, 전조(前朝)에서도 또한 왕형제(王兄弟)·왕자(王子)를 군(君)으로 봉하였으며, 원윤·정윤을 예장(禮葬)하는 등차(等差)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빌건대, 태조(太祖)의 자손 중에서 즉위한 임금의 적비(嫡妃)의 아들은 대군(大君)으로 봉하고, 빈잉(嬪媵)의 아들은 군(君)으로 봉하고, 친형제(親兄弟)는 대군으로 봉하고, 친형제의 적실</p>	<p>己卯/元尹德根卒，輟朝三日，賜賻米豆三十石，又賜祭。德根，鎭安君芳雨之孽子也。初，元尹正尹卒，則以宗親下等例葬之，至是，命政府曰：“宗室有親疏，何泛以下等之例葬之！稽古制以聞。”政府上言：“元尹正尹葬之之禮，令禮曹考之，曰：‘漢制只稱皇兄弟皇子封王，唐、宋之制亦同。前朝亦以王兄弟王子封君，其元尹正尹禮葬等差，則不錄。’乞於太祖子孫內，卽位之主嫡妃之子封大君，嬪媵之子封君，親兄弟封大君，親兄弟嫡室長子封君，衆子封元尹，其葬之之禮，宜從下等。”政府又言：“卽位之主宮人所出爲正尹，親兄弟及親子良妾之子，</p>

	<p>(嫡室)의 장자(長子)는 군으로 봉하고, 중자(衆子)는 원윤(元尹)으로 봉하고, 그 장사하는 예는 마땅히 하등(下等)을 따라야 합니다.”</p> <p>정부에서 또 말하였다.</p> <p>“즉위한 임금의 궁인(宮人)의 소생은 정윤(正尹)이 되고, 친형제와 친자(親子)의 양첩(良妾)의 아들은 또한 정윤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데, 또 장유(長幼)가 분별이 없을 수 없으니 원윤(元尹)으로 종2품을 삼고, 부원윤(副元尹)으로 정4품을 삼고, 정윤으로 종3품을 삼고, 부정윤으로 정4품을 삼아서 항식(恒式)으로 삼으소서.”</p> <p>예조에서 상서(上書)하였다.</p> <p>“한(漢)나라 성제(成帝) 때에 간대부(諫大夫) 양흥(楊興)·박사(博士) 사승(駟勝) 등이 말하기를, ‘고조(高祖)의 약속에 공신(功臣)이 아니면 후(侯)로 봉하지 않는데, 지금 태후(太后)의 여러 아우가 모두 공(功)이 없으면서 후(侯)가 되었으니, 외척(外戚)에서 일찍이 없던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조(本朝)에서 의논하기를, 한나라 이래로 외척을 후로 봉하여 충성하고 근신하여 스스로 지킨 자는 대개 적었으며, 국가의 근심이 된 자가 심히 많았으니, 고조의 법은 참으로 만세의 좋은 법입니다. 우리 조정의 법도가 반드시 고전(古典)을 따르면서, 외척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대의 잘못을 따르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이제부터 고조의 약속을 법 받아서 공신이 아니고 중궁(中宮)의 부친(父親)을 제외하고, 군(君)으로 봉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그 재품(才品)에 따라서 쓰고 버리소서. 옛날부터 후척(后戚)의 집에서 권세를 잡아 용사(用事)하면 좋게 끝을 마치는 것이 적었으니, 비록 재능이 쓸만하더라도 중요한 관직을 제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또한 군으로 봉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p> <p>모두 그대로 따랐다.</p>	<p>亦許爲正尹。 且其長幼不可無別，以元尹爲從二品，副元尹爲正三品，正尹爲從三品，副正尹爲正四品，以爲恒式。” 禮曹上書曰：</p> <p>漢成帝時， 諫大夫楊興、博士駟勝等言：“高祖之約，非功臣不侯。 今太后諸弟， 皆以無功爲侯， 外戚未曾有也。” 本曹議得：自漢以來，以外戚封侯，而忠謹自守者蓋寡，爲國家患者甚衆，高祖之法，誠萬世之良法也。 我朝法度，必遵古典，其於外戚一事，尙循歷代之失可乎？自今體高祖之約，非功臣除中宮父親外，不許封君，隨其才品而用舍之。 自古后戚之家，得權用事，則鮮有令終，雖才能可用，不許除機要之職，亦不許封君。 皆從之。</p>
태종 23권, 12년	의정부에서 육선(肉膳)을 진어(進御)하도록 청하였다. 지신사 김여지(金汝知)	甲申朔/議政府請進肉膳。 知申事金

<p>(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5월 1일 (갑신)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육선을 진 어하도록 청하다</p>	<p>등이 아뢰었다. “기년(期年)의 상(喪)은 대부(大夫)에게 통달하는 것입니다. 전하가 원윤(元尹)의 죽음으로 인하여 육선(肉膳)을 거두신 것이 며칠이 되었으니, 청컨대 예전(禮典)을 따르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명일에 재계(齋戒)하는 일이 있으니, 명일이 지나면 가하다.” 정부에서 또 양고기를 올리니 허락하지 않았다.</p>	<p>汝知等啓曰：“期之喪，達于大夫。 殿下因元尹之卒，輟肉膳者有日，請從禮典。” 上曰：“明日有齋戒事，過明日可矣。” 政府又進羊肉，不許。</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5월 3일 (병술) 5번째기사 검교 판한성부사 이현에게 미두를 하사하다</p>	<p>검교 판한성부사(檢校判漢城府事) 이현(李玄)에게 쌀·콩 20석을 내려 주었다. 이현이 말에서 떨어져 병을 앓았기 때문에 약(藥)을 사는 자금이 대비하게 한 것이다.</p>	<p>賜檢校判漢城府事李玄米豆二十石。玄墜馬患病，故備藥資也。</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5월 3일 (병술) 6번째기사 공안부윤 정역에게 술을 하사하고 상의원 별좌 한장우가 죽으니 부의를 내리다</p>	<p>공안부윤(恭安府尹) 정역(鄭易)에게 술을 내려 주었으니,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었다. 상의원 별좌(尙衣院別坐) 한장우(韓長祐)가 병들어 죽으니, 부의로 쌀·콩 10석, 종이 70권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한장우가 비록 미천한 사람이지만 그 직책에 오래 있었고, 조금 공로가 있는 까닭으로 내가 불쌍히 여긴다.”</p>	<p>賜酒恭安府尹鄭易，以治病也。尙衣院別坐韓長祐病死，賜賻米豆十石、紙七十卷。 上曰：“長祐雖微者，久於其職，稍有功勞，故予憐之。”</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5월 18일(신축) 1번째기사 방간의 사위 박경무·</p>	<p>박경무(朴景武)·조신언(趙愼言)에게 각각 쌀 10석을 내려 주었으니, 모두 방간(芳幹)의 사위이었다.</p>	<p>辛丑/賜朴景武、趙愼言米各十石，皆芳幹之女壻也。</p>

<p>조신언에게 각각 쌀 10석을 하사하다</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5월 19 일(임인) 3번째기사 연호둔전의 폐지 등 시무 4개 조항에 관해 간원에서 상소하다</p>	<p>간원(諫院)에서 또 네 조목을 상소하였다. “1. 연호 둔전(煙戶屯田)을 설치한 것은 본래 군량미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달아 풍년이 들지 못하였으나, 이미 정해진 부세(賦稅)가 있고 또 잡렴(雜斂)이 있는데, 둔전의 세로 더하니 부렴(賦斂)을 가볍게 하는 뜻에 있어 미편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금년은 개천을 파는 역사와 군량의 비용으로 같고 심는 것이 혹 시기에 미치지 못한 것이 있으니, 둔전의 세를 거두는 것은 더욱 차마 못할 일입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백성이 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족하지 않으랴.’고 하였으니, 원컨대, 둔전(屯田)을 파하여 민생을 후하게 하소서. 1. 조세(租稅)를 거두는 것은 국가의 경비(經費)여서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매양 추수 때를 당하면 반드시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손실(損實)을 살펴 조세의 많고 적은 것을 정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행한 지가 이제 이미 수년에 되었는데, 기이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한갓 주군(州郡)의 지대(支待)와 부서 기회(簿書期會)의 번거로움만이 될 뿐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감사가 재보(宰輔)의 높음과 덕망의 중함으로써 한 지방의 명령을 받아 무릇 군민(軍民) 사무의 경중과 완급을 모두 전제(專制)하는데, 어찌 조세를 거두는 한 가지 일에만 따로 경차관(敬差官)을 보냅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경차관을 보내지 말고 감사에게 위임하소서. 1. 전조(前朝)가 성할 때에 세 아들[三子]이 과거에 오른[登科]자는 그 어머니에게 작(爵)을 봉하고, 또 능록(廩祿)을 주었던 까닭으로 남의 자식이 된 자가 서로서로 권면하여 그 학업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비록 전조(前朝)의 법이나 권학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만일 세</p>	<p>諫院又上疏四條： 一曰， 烟戶屯田之設， 本爲糧餉之備， 然比年以來， 水旱相仍， 年不登穰， 既有常賦， 又有雜斂， 加以屯田之稅， 其於薄賦斂之意， 似爲未便。 況今年則開川之役， 餓糧之費， 耕種或有不及時者， 屯田之斂， 尤所不忍。 孔子曰：“百姓足， 君孰與不足！” 願罷屯田， 以厚民生。 一曰， 收租， 國家經費， 不可不重， 故國家每當西成之日， 必遣敬差官， 審其損實， 以定租之多寡， 誠爲令典。 然行此法， 今已數年， 未見奇効， 徒爲州郡支待、 簿書期會之煩而已。 臣等竊謂監司以宰輔之尊、 德望之重， 受命一方， 凡軍民之務輕重緩急， 皆所專制。 何獨收租一事， 別遣敬差！ 願自今毋遣敬差， 委之監司。 一曰， 前朝盛時， 三子登科者， 封爵其母， 又賜廩祿， 故爲人子者， 交相勸勉， 以成其學。 此雖前朝之法， 其於勸學之方， 大有裨益。 願自今如有三子登科者， 一依舊制。 若曰祿俸， 所以勸士， 不可濫費， 則賜以楮貨， 特示殊</p>

	<p>아들이 등과(登科)한 자가 있으면 한결같이 예전 제도에 의하소서. 만일 녹봉(祿俸)이 선비를 권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허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화(楮貨)를 내려 주어서 특히 별다른 은총(恩寵)을 보이소서.</p> <p>1. 진상(進上)하는 정향포(丁香脯)는 체제가 대단히 커서, 주군(州郡)에서 괴롭게 여깁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민간의 중포(中脯)의 예와 같이 하여 적당하게 수를 정하소서.”</p>	<p>寵。 一曰， 進上丁香脯， 體制甚大， 州郡病之。 願自今一如民間中脯之例， 量宜定數。</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5월 22 일(을사) 1번째기사 칠성군 윤저에게 술과 풍악을 내리다</p>	<p>칠성군(漆城君) 윤저(尹柢)에게 궁은(宮醞)과 풍악을 내려 주었다. 윤저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안마(鞍馬)의 하사를 받았으며, 은총과 영광이 지극합니다. 신이 잔치를 준비하여 의정부의 기로(耆老)와 더불어 한 번 즐기고자 하나, 다만 금주령이 엄하니, 원컨대 궁은을 하사하여 신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p> <p>임금이 “술과 풍악은 내려 줄 수 있다. 또 시귀(詩句) 한 연(聯)을 주고자 하는데 좋겠는가?” 하니, 대답하였다. “신이 지난날에 한 연(聯)을 배워서 태조(太祖) 앞에 올렸는데, 아래 세 글자는 잊었습니다. 신이 연(聯)을 짓기는 심히 어렵습니다.”</p> <p>임금이 크게 웃고 지신사 김여지(金汝知)를 보내어 술과 풍악을 주었다. 대사헌 유정현(柳廷顯)이, “금주(禁酒)하는 때를 당하여 술을 주는데,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의 말이 옳다.”</p>	<p>乙巳/賜宮醞與樂于漆城君尹柢。 柢曰：“臣嘗蒙賜鞍馬， 恩榮極矣。 臣欲辦宴， 與議政府耆老一歡， 第禁酒令嚴， 願賜宮醞， 以成臣志。” 上曰：“酒與樂可賜也。 又欲賜詩句一聯， 可乎？” 對曰：“臣曩者學得一聯， 進太祖前， 忘下三字， 臣之爲聯甚難也。” 上大笑， 遣知申事金汝知， 賜醞與樂。 大司憲柳廷顯曰：“當禁酒時賜醞， 是無名。” 上曰：“卿言是也。”</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5월 24</p>	<p>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공부(孔俯)가 의이주(薏苡酒)를 올리었다.</p>	<p>丁未/檢校漢城尹孔俯進薏苡酒。</p>

<p>일(정미) 1번째기사 검교 한성 윤 공부가 울무로 만든 술을 올 리다</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6월 1일 (갑인) 4번째기사 저자 사람의 생선을 빼앗고 횡포를 부린 대호군 전맹겸에게 태 40대를 때리다</p>	<p>대호군(大護軍) 전맹겸(全孟謙)을 순금사(巡禁司)에 내리어 태(笞) 40대를 때렸다. 처음에 전맹겸이 중 장원심(長願心)과 더불어 저자 사람의 생선을 빼앗았다. 경시(京市)에서 사람을 보내어 쫓아가니, 전맹겸이 크게 노하여 붙잡아서 때리고 인하여 그 옷을 벗겼다. 경시서(京市署)에서 헌사(憲司)에 갖추어 보고하여 그 죄를 핵실하여 청하니, 임금(上)이 숙빈(淑嬪)의 친척인 때문에 용서하였다. 전맹겸이 뉘우치는 마음이 없고 그 옷을 돌려보내지 않으므로, 경시(京市)에서 다시 헌사(憲司)에 보고하여 다시 청한 때문이었다. 전맹겸은 김한로(金漢老)의 처제(妻弟)이었다.</p>	<p>下大護軍全孟謙于巡禁司，笞四十。初，孟謙與僧長願心，奪市人之魚，京市遣人追之。孟謙大怒，執而扶之，仍脫其衣。京市署具報憲司，覈請其罪，上以淑嬪之戚寬之。孟謙罔有悛心，不還其衣，京市更報憲司，復請故也。孟謙，乃金漢老之妻弟也。</p>
<p>태종 23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6월 6일 (기미) 1번째기사 기신재(忌辰齋)의 행향사(行香使)의 의복 제도를 정하다</p>	<p>기신재(忌辰齋)의 행향사(行香使)의 관복(冠服)의 제도를 정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예조에 명하였다. “무릇 기재(忌齋)의 행향사(行香使)가 홍포(紅袍)를 입는 것은 불가하다. 마땅히 상정(詳定)하여 아뢰라.” 이때에 이르러 예조에서 상언하였다. “《문공가례(文公家禮)》를 살펴보면, ‘기일(忌日)에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으며, 음악도 듣지 않고 검은 건[黦巾], 흰 옷[素服], 흰 띠[素帶]로 거(居)하며, 저녁에 밖에서 잔다.’고 하였습니니다. 지금부터 기일의 복장을 한결같이 《가례》에 따르소서. 빌건대, 선왕(先王)·선후(先后)의 기일에 행향사(行香使)의, 복장도 또한 흰 베옷[白布]·사모(紗帽)·각대(角帶)를 쓰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p>	<p>己未/定(忌辰) [忌辰] 齋行香使冠服之制。初，上命禮曹曰：“凡忌齋行香使服紅袍，未可也，宜詳定以聞。”至是，禮曹上言：“按《文公家禮》，忌日不飲酒食肉，不聽樂，黦巾素服素帶以居，夕寢于外。自今忌日之服，一遵《家禮》，乞於先王先后之忌行香使之服，亦用白布衣紗帽角帶。”從之。</p>
<p>태종 23권, 12년</p>	<p>일본(日本) 구사전(仇沙殿)이 사송(使送)한 객인(客人)이 와서 토물(土物)을 바</p>	<p>甲戌/日本仇沙殿，使送客人，來獻土</p>

<p>(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6월 21일(갑술) 1번째기사 일본 구사전이 사송한 객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p>	<p>치었다. 임금이, “이 물건은 반드시 중원(中原)에 들어가 도둑질하여 얻은 것이리라.” 하고, 곧 각사(各司)에 나누어 주었다.</p>	<p>物。 上曰：“此物必入寇中原所得也。” 卽分各司。</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7월 8일 (신묘) 1번째기사 의정부에 올린 육선을 허락하지 아니하다</p>	<p>의정부에서 육선(肉膳)을 올리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대비(大妃)를 산릉(山陵)에 장사지낸 뒤를 기다려서 좃겠다.”</p>	<p>辛卯/議政府進肉膳， 不許。 上曰：“俟大妃(祔) [祔] 山陵後， 從之。”</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7월 13일(병신)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육선을 올리다</p>	<p>의정부에서 육선(肉膳)을 올렸다. 영의정부사 하윤(河崙) 등이 상언하기를, “상복(喪服)을 벗은 지 여러 날이 되었으니, 오래도록 육선(肉膳)이 없음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뒤에 드는 자가 아들이다. 상왕(上王)께도 육선(肉膳)을 올리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먹음이 옳겠는가?” 하니, 여러 재상이 즉시 상왕전(上王殿)으로 나아가 드시기를 청하니, 상왕이 이를 윤허하였다. 하윤 등이 돌아와 고하자, 주상계서도 이를 윤허하였다.</p>	<p>丙申/議政府進肉膳。 領議政府事河崙等上言：“釋服有日， 不可久無肉膳。” 上曰：“爲之後者， 爲之子矣。 上王不進肉膳， 而予先食可乎?” 諸相卽詣上王殿請進， 上王許之， 崙等還告， 上亦許之。</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7월 13일(병신) 2번째기사 진주에 안치한 이거이에게 쌀 20석을 하사</p>	<p>진주(鎭州)에 안치한 이거이(李居易)에게 쌀 20석을 하사하였다.</p>	<p>賜鎭州安置李居易米二十石。</p>

<p>하다</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7월 22 일(을사) 3번째기사 궐내에 일 없이 밥먹 는 자를 감하도록 명 하다</p>	<p>명하여 궐내(闕內)에서 일 없이 밥먹는 자[冗食者]를 감하도록 하였다.</p>	<p>命減闕內冗食者。</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8월 6일 (무오) 1번째기사 김과가 사운시를 바치 니 쌀 10석을 하사하 다</p>	<p>김과(金科)에게 쌀 10석을 내려 주니, 김과(金科)가 4운시(四韻詩)를 바쳐 사 례했기 때문이었다.</p>	<p>戊午/賜金科米十石。 科獻四韻詩以 謝。</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8월 8일 (경신) 4번째기사 시물(時物)을 종묘에 천신하도록 명하다</p>	<p>명하여 시물(時物)을 종묘(宗廟)에 천신하게 했는데, 2월에는 얼음, 3월에는 고사리[蕨], 4월에는 송어(松魚), 5월에는 보리·죽순·앵도(櫻桃)·외[瓜]·살구, 6월에는 능금[林檎]·가지·동과(東瓜), 7월에는 서직(黍稷)·조[粟], 8월에는 연 어(年魚)·벼[稻]·밤[栗], 9월에는 기러기·대추·배, 10월에는 감귤(柑橘), 11월 에는 고니[天鵝], 12월에는 물고기·토끼이었다.</p>	<p>命以時物薦宗廟：二月冰，三月蕨，四 月松魚， 五月麥、筍、櫻桃、瓜、杏， 六月林檎、茄、東瓜， 七月黍、稷、 粟， 八月年魚、稻、栗， 九月雁、棗、 梨， 十月柑橘， 十一月天鵝， 十二月 魚、兔。</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8월 13 일(을축) 2번째기사</p>	<p>호조 참의 오진(吳眞)에게 약주(藥酒) 10병(瓶)을 내려 주었다.</p>	<p>賜戶曹參議吳眞藥酒十瓶。</p>

호조 참의 오진에게 약주를 하사하다		
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8월 14 일(병인) 1번째기사 연향에 양(羊)을 쓰지 않도록 명하다	명하여 연향(宴享)에 양(羊)을 쓰지 말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양을 기름은 본래 희생(犧牲)을 위한 것이다.”	丙寅/命宴享勿用羊。 上曰：“畜羊，本爲犧牲也。”
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8월 17 일(기사) 2번째기사 칠성군 윤저의 졸기. 마성군 서익의 졸기	칠성군(漆城君) 윤저(尹柢)와 마성군(麻城君) 서익(徐益)이 졸(卒)하였다. 임금이 슬퍼하여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윤저에게는 미두(米豆) 50석과 종이 1백 권을, 서익에게는 미두 30석과 종이 1백 권을 부의로 내려 주었다. 윤저의 구명(舊名)은 윤방경(尹方慶)이며, 칠원(漆原)의 세가(世家)로서 외식(外飾)하기를 일삼지 아니하여 속이 차고 정직하였다. 임금을 잠저(潛邸) 때부터 섬기어 특히 후한 대우를 받아 드디어 좌명 공신(佐命功臣)이 되어 지위가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고, 자주 익살을 가지고 풍간(諷諫)하여 비익(裨益)됨이 많았으며, 그가 이조 판서가 되어서는 한사람도 망령되게 천거하지 아니하였다. 서익은 항오(行伍)에서 일어나 창과 방패를 잘 썼으므로 좌명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윤저에게 시호(諡號)를 내려 ‘정경(貞景)’이라 하고, 중관(中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으며, 서익의 시호는 ‘장양(莊襄)’이라 하였다.	漆城君尹柢、麻城君徐益卒。 上震悼，輟朝三日， 賻柢米豆五十石、紙百卷，益米豆三十石、紙百卷。 柢古名方慶，漆原世家，不事外飾，中實正直。 事上于潛邸， 特承眷遇， 遂爲佐命功臣，位至贊成事， 屢以諛諧諷諫， 多所裨益。 其爲吏曹判書， 未嘗妄薦一人。 益起自行伍， 善用戈楯， 得參佐命之列。 賜柢諡曰貞景， 遣中官致祭； 益諡曰莊襄。
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8월 25 일(정축) 1번째기사 이거이의 졸기	이거이(李居易)가 졸(卒)하였다. 이거이가 진주(鎭州)에서 죽으니, 부의(賻儀)로 미두(米豆) 30석과 종이 1백 권을 내려 주고, 또 관곽(棺槨)까지 내려 주었다. 또 충청도 도관찰사로 하여금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丁丑/李居易死。 居易死于鎭州， 賜賻米豆三十石、紙百卷， 且賜棺槨。 又令忠淸道都觀察使致祭。
태종 24권, 12년		戊寅/命祿俸(更) [粳] 米， 代以造

<p>(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8월 26일(무인) 1번째기사 갱미로 주었던 녹봉을 조미로 주게 하다</p>	<p>명하여 녹봉(祿俸)의 갱미(粳米)를 조미(造米)로써 대신하게 하였다. 임금이 정밀하게 깎는 폐단을 염려하여 조미(造米)로 넉넉히 주게 하였다.</p>	<p>米。上慮精鑿之弊，令以造米優給。</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9월 9일(신묘) 1번째기사 늙은 의원인 검교 한성윤 김지연에게 미두 15석을 하사하다</p>	<p>노의(老醫) 검교 한성윤(檢校漢城尹) 김지연(金之衍)에게 미두(米豆) 15석을 내려 주었다.</p>	<p>辛卯/賜老醫檢校漢城尹金之衍米豆十五石。</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9월 17일(기해) 1번째기사 금천 고산에서 유숙하다</p>	<p>금천(衿川) 고산(孤山)에서 유숙하니, 의정부에서 참지(參知) 윤향(尹向)으로 하여금 문안하고 술을 드리게 하였다.</p>	<p>己亥/次于衿川孤山。議政府令參知尹向，問安進酒。</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9월 18일(경자) 1번째기사 환궁하다</p>	<p>환궁(還宮)하였다. 부평(富平)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 노량진 나루터[露渡]에 이르러 누선(樓船)에 같이 타니, 경기 관찰사 권완(權緩)이 술을 올리고 풍악을 울려 즐거움을 극진히 하였다. 임금이 조영무(趙英茂)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위무(威武)로서도 굴복시킬 수 없고, 빈천(貧賤)으로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하였는데, 달래더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위엄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할 자는 오직 경(卿)뿐이오,” 밤을 틈타서 상왕의 이어소(移御所)에 이르러 봉사(奉辭)하고 환궁하였다.</p>	<p>庚子/還宮。獵于富平郊，還至露渡，同御樓船，京畿觀察使權緩獻酌，動樂極權。上顧謂趙英茂曰：“古人云：‘威武不能屈，貧賤不能移。’誘之而不得移，威之而不能屈者，其惟卿乎!”乘夜至上王移御所，奉辭還宮。</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9월 28 일(경술) 1번째기사 천녕 호암평에서 유숙 하다</p>	<p>천녕(川寧) 호암평(虎巖坪)에서 유숙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평을 종묘에 천신(薦新)하고, 명하여 10월 초하루 제사에 겸하여 천신하에 하였다.</p>	<p>庚戌/次于川寧、虎巖坪， 遣人薦雉于宗廟， 命於十月朔祭兼薦。</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11월 14 일(을미) 1번째기사 사헌부의 시무 조목 5 개 항·관곽 규모 제한· 저화 수속 폐지·부인 복식 규제 등</p>	<p>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1. 대소 인민은 부모상(父母喪)에 쓸 관곽(棺槨)은 시신(屍身)이 들어갈 만큼 하게 하고, 높고 크게 하지 말게 하소서. 1. 일죄(一罪) 이하는 저화(楮貨)로 수속(收贖)하는 법을 없애게 하소서. 1. 부인(婦人)이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 얼굴을 가리우고, 입모(笠帽)를 건 어 올리지 말게 하소서. 1. 오직 임금이라야 옥식(玉食)하는 것이니, 반록(頒祿)할 때에는 갱미(粳米) 를 제(除)하소서. 1. 새로 혼인한 집에서 사흘 동안 부부가 동뢰(同牢)한 뒤, 철선(徹饌)하여 남 편의 집에 보내고, 포백(布帛)을 가져오는 풍습을 금하소서. 1. 서인(庶人)으로 하여금 세주(細紬)·세마포(細麻布)를 사용하지 말게 하여 상하의 복장(服章)을 구별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였다. “갱미(粳米)를 쓰지 말 것과 부인의 얼굴을 가리우는 두 가지 일만은 시행할 만하지만, 나머지 것은 모두 대체(大體)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 시행할 필요 가 없다.”</p>	<p>乙未/司憲府上疏： 一， 大小人於父母喪， 棺槨僅可容身， 不必高大。 一， 除一罪以下楮貨收贖之法。 一， 婦人出入， 必擁蔽其面， 毋得褰笠帽。 一， 惟辟玉食。 於頒祿之際， 除粳米。 一， 禁新婚家三日同牢後， 徹饌送于夫家， 以取布帛。 一， 使庶人毋得用細紬細麻布， 以別上下服章。 上覽之曰：“惟毋用粳米、婦人蔽面二事可行， 餘皆不關大體， 不必行也。”</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p>	<p>전 총제 김첨(金瞻)에게 미두(米豆) 20석을 내려 주었으니, 김첨이 가난하였 기 때문이었다.</p>	<p>賜前摠制金瞻米豆二十石。 以瞻貧也。</p>

<p>(永樂) 10년) 11월 24일(을사) 2번째기사 전 총제 김침에게 미두 20석을 하사하다</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12월 1일(임자) 1번째기사 서북면 안주 사람 조존부에게 정표와 복호를 내리다</p>	<p>명하여 서북면(西北面) 안주(安州) 사람 조존부(趙存富)의 집을 정표(旌表)하게 하였다. 조존부는 별장(別將) 조영(趙英)의 아들이니 나이 12살에 그 어머니의 간질(癩疾)을 민망하게 여기어 산 사람의 뼈로써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밤에 칼로 그의 바른 손 무명지(無名指)를 잘라 술을 구해다가 마시게 하니, 병이 곧 나았으므로 이 명령이 있었고, 또 그 집을 복호(復戶)하였다.</p>	<p>壬子朔/命旌表西北面安州人趙存富之家。存富，別將英之子。年十二，憫其母癩疾，聞生人骨可療，夜以刀斷其右手無名指，乞酒以飲，病立愈，故有是命，且復其家。</p>
<p>태종 24권, 12년 (1412 임진 / 명 영락 (永樂) 10년) 12월 10일(신유) 4번째기사 동지제 때 전물을 불결히 다룬 종묘 주부 최사용을 논죄하다</p>	<p>사헌부에서 또 아뢰었다. “종묘 주부(宗廟注簿) 최사용(崔士庸)이 동지제(冬至祭) 때 전물(奠物)을 감설(監設)하였는데 주준(酒尊)이 불결하였으니,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司憲府又啓：“宗廟注簿崔士庸，於冬至祭，監設奠物，酒尊不潔。請依律論罪。”從之。</p>
<p>태종 25권, 13년 (1413 계사 / 명 영락 (永樂) 11년) 1월 1일(신사) 2번째기사 문소전에 나가 원일 별제를 행하다</p>	<p>임금이 문소전(文昭殿)에 나아가 원일 별제(元日別祭)를 행하고, 일식(日食)의 변고로 인해 향궐 하례(向闕賀禮)를 정지하고, 조회를 받지 아니하였다. 각도에서 모두 헌마(獻馬)하니, 각도에서 말을 바치는 법[進馬]이 이때부터 시작하였다. 오정(午正)이 될 무렵, 임금이 소의(素衣)에 각대(角帶)를 띠고 정전(正殿)의 월대(月臺)에 나오니, 일관(日官)이 복을 올렸다. 일식이 오정 3각(刻)부터 시작하여, 신초(申初) 2각(刻)에 이르러서야 복원(復圓)되었다. 처음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예보하여 아뢰기를, “신초(申初) 3각에 복원될 것입니다.”</p>	<p>上詣文昭殿，行元日別祭。以日食之變，停向闕賀禮，不受朝。諸道皆獻馬。諸道進馬自此始。將午，上以素衣角帶，出御正殿月臺。日官伐鼓，日食始自午正三刻，至申初二刻乃復。初，書雲觀嘗啓：“復於申初三刻。”上謂代言等曰：“日食差一刻，書雲觀得無罪歟？”知申事金汝知對曰：“日食</p>

	<p>하였으므로,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말하였다. “일식(日食)의 차(差)가 각 1각(刻)이면 서운관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신사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기를, “일식에는 상도(常道)가 있습니다. 서운관에서 추보(推步)하기를 조금 어긋나게 하였는데, 죄가 있고 없음은 신 등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좌부대언(左副代言) 한상덕(韓尙德)은 말하기를, “일식은 비록 상도(常度)가 있다고 하나, 인사(人事)를 닦으면 일식이 있어야 할 때에도 일식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혹 누각(漏刻)의 착오일지도 아직 모르니, 신은 죄가 없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죄상이 의심스러운 것은 경(輕)하게 처벌하고, 공훈이 의심스러운 것은 중(重)하게 상을 주라는 것이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고, 곧 술자(述者) 황사우(黃思祐)에게 미두(米豆) 20석을 내려 주었다.</p>	<p>有常度，書雲觀推步之稍差，罪之有無，臣等所未知也。”左副代言韓尙德曰：“日食雖有常度，人事修則當食不食，或漏刻之差，亦未可知，臣恐無罪也。”上曰：“罪疑惟輕，功疑惟重，是聖訓也。”乃賜述者黃思祐米豆二十石。</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永樂) 11년) 1월 3일 (계미) 1번째기사 초5일 결명재를 올리 기 때문에 소선을 올리 리다</p>	<p>소선(素膳)을 올렸으니, 임금이 초5일에 행할 결명재(乞命齋)의 치재(致齋) 때 문이었다.</p>	<p>癸未/進素膳。上以初五日行乞命齋，致齋也。</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永樂) 11년) 1월 21 일(신축) 3번째기사</p>	<p>예조에서 종묘·사직제의 희생을 쓰는 제도[用牲之制]를 올리었다. “종묘에서는 소·양·돼지를 쓰고, 사직에서는 소·돼지만을 쓰고, 선농(先農)·선 잠(先蠶)에서는 돼지만을 썼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고제(古制)에 의하여 사 직·선농·선잠에서도 모두 양을 쓰게 하소서.”</p>	<p>禮曹上宗廟社稷祭用牲之制：“宗廟用牛羊豕，社稷只用牛豕，先農先蠶只用豕。請自今依古制，社稷先農先蠶，竝皆用羊。”從之。</p>

<p>예조에서 종묘·사직의 제사에 희생을 쓰는 제도를 상정하다</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2월 10 일(기미) 1번째기사 해주의 작천에 머무르다</p>	<p>해주(海州)의 작천(鵲川)에 머물렀다. 김여지가 아뢰기를, “초야(草野)에서 풍상을 맞으며 여러 날 소선(素膳)만 드심은 옳지 못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3년상을 입고, 아버도 또한 아들을 위하여 복(服)을 입으며, 신하는 임금을 위하여 3년을 입으니, 임금은 신하를 위하여 어찌 홀로 은의가 없겠는가? 내가 철선(輟膳)함도 이 때문이다.” 하였다. 정부에서도 이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 등(卿等)이 청하니, 내가 명일부터 개소(開素)하겠다.”</p>	<p>己未/次于海州鵲川。 金汝知啓曰：“風霜草野， 累日素膳， 恐爲未可。” 上曰：“子爲父服喪三年， 父亦爲子有服。 臣爲君服三年， 君爲臣豈獨無恩乎！ 予之輟膳， 以此也。” 政府亦請之， 上曰：“卿等有請， 予於明日始開素。”</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2월 11 일(경신) 1번째기사 해주에 머무르다. 시종한 대신 등에게 미두 1천여석을 양식으로 하사하다</p>	<p>거가(車駕)가 해주(海州)에 이르렀다. 창고를 열어 시종(侍從)한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서도(胥徒)·노예(奴隸)에 이르기까지 7일의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명하니, 미두(米豆)가 모두 1천여 석(石)이었다.</p>	<p>庚申/駕至海州， 命發倉， 分賜侍從大小臣僚至胥徒奴隸七日糧， 米豆摠千餘石。</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2월 12 일(신유) 1번째기사 봄 사냥에 잡은 짐승</p>	<p>임금이 대부곶이[大釜串]에 이르러 노루[獐] 한 마리를 쏘았다. 우부대언 조말생(趙末生)이 아뢰기를, “오늘 잡은 것은 말을 달려서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12월 이후의 장록(獐鹿)은 맛이 없다.’ 하였고, 또 그</p>	<p>辛酉/上至大釜串， 射獐一。 右副代言趙末生啓曰：“以今日所獲， 馳薦宗廟何如?” 上曰：“古人云：‘十二月以後， 獐鹿無味。’ 且非其時。 自今春蒐所獲， 勿薦之。”</p>

<p>을 종묘에 천신하지 말 것을 명하다</p>	<p>때가 아니니, 이제부터는 춘수(春蒐)에 잡은 것은 종묘에 천신하지 말라.”</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2월 24일(계유) 1번째기사 검교 한성윤 임광의·강문진에게 각기 미두 10석씩을 하사하다</p>	<p>검교 한성윤(檢校漢城尹) 임광의(任光義)·강문진(姜文進)에게 각기 미두(米豆) 10석씩 내려 주었다. 임광의 등은 유후사(留後司)에 있으면서 가전(駕前)에 영알(迎謁)하였으므로, 이를 내려 주어 위로한 것이다.</p>	<p>癸酉/賜檢校漢城尹任光義·姜文進米豆各十石。光義等嘗在留後司，迎謁駕前，故有賜勞之也。</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2월 24일(계유) 3번째기사 회회 사람 서지에게 쌀 5석을 하사하다</p>	<p>회회(回回)인 서지(西地)에게 쌀 5석을 내려 주었다.</p>	<p>賜回回西地米五石。</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3월 1일(경진) 1번째기사 형조 우참의 이명덕의 부상에 미두 20석을 하사하다</p>	<p>형조 우참의 이명덕(李明德)에게 미두(米豆) 20석을 내려 주니, 이 명덕의 아버지가 상사[喪父] 때문이었다. 임금이 듣고 말하기를, “이명덕은 충직하고 근실한 사람이다.” 하고, 이러한 하사(下賜)가 있었다. 또 내수(內豎)를 보내어 종이 1백 50권을 치부(致賻)하였다.</p>	<p>庚辰朔/賜刑曹右參議李明德米豆二十石。明德喪父，上聞之曰：“明德，忠勤者也。”有是賜。又遣內豎，致賻紙百五十卷。</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3월 1일(경진) 3번째기사</p>	<p>진무 초례(眞武醮禮)를 소격전(昭格殿)에서 행하였다. 소격전의 관원이 아뢰었다. “이 앞서서 여러 초례를 모두 저녁에 행하였는데, 이제 《진무경(眞武經)》을 보건대, ‘5경(更)에 이르러 몸소 향축(香燭)을 피운다. 정과(淨果)·대추[棗]·탕</p>	<p>行眞武醮禮于昭格殿。殿官啓：“前此諸醮，皆以夕行之。今觀《眞武經》，至五更，躬然香燭，淨果棗湯，位列有三，志純于一，稽首禱告。請依此經，</p>

<p>진무 초례를 소격전에서 행하다</p>	<p>(湯)을 벌려 놓은 자리가 셋인데, 뜻[志]은 한결같이 순결하게 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기고[禱告]한다.’하였으니, 청컨대, 이 경(經)에 의하여 5경(五更)의 초(初)에 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行於五更之初。”從之。</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3월 3일 (임오) 2번째기사 동북면 경원 백성 75인이 관청에서 꾸어준 곡식을 건감하도록 명하다</p>	<p>명하여 동북면 경원(慶源) 백성 75인이 빌린 속(粟)을 건감(蠲減)토록 하였다. 백성들이 고하기를, “땅을 잃고 경성(鏡城)에 내우(來寓)하였으니, 청컨대, 경인년·신묘년에 빌린 속(粟)을 감하여 주소서.” 하므로, 도순문사가 이를 보고하매, 그대로 따랐다.</p>	<p>命蠲東北面慶源民七十五人所貸之粟。民告曰：“失土來寓鏡城，請減庚寅辛卯兩年所貸之粟。”都巡問使以報，從之。</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3월 5일 (갑신) 1번째기사 권희달을 파직하다</p>	<p>권희달(權希達)을 파직(罷職)하였다. 처음에 권희달이 거가를 해주(海州)로 호송했을 때, 술을 마시고 상호군(上護軍) 왕인(王隣)·황상(黃象), 대호군(大護軍) 이난(李蘭)을 때렸다. 이때에 이르러 헌사에서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권희달은 망령된 행동과 스스로 방자함이 무상(無狀)한 사람입니다. 황상을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 황희석(黃希碩)은 중으로서 환속(還俗)했으니,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놈이다. 그게 개국 공신(開國功臣)이 되었으니 인정(人情)에 맞지 아니하다.’ 하였는데, 위의 황희석은 예전에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 밤낮으로 근로(勤勞)하였음은 못사람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개국 공신이 되었고, 또 이난(李蘭)은 왕실의 척련(戚連)2471) 인테 연고없이 마구 때렸으니, 만약 권희달이 예전에 범한 죄를 논한다면 붓으로 다 쓰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고신(告身)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鞫問)하소서.” 이어서 수직(守直)2472) 하니, 임금이 내수(內豎)에게 명하여 가서 수직하는</p>	<p>甲申/罷權希達職。初，希達扈駕海州，使酒歐上護軍王从·黃象、大護軍李蘭，至是憲司上疏。略曰： 希達，妄行自恣無狀人也。罵象曰：“汝父希碩，以僧還俗，不知其源者也。其爲開國功臣，不愜人情。”右希碩，昔在太祖潛邸之時，夙夜勤勞，衆所共知，故爲開國功臣。且李蘭，戚連王室，無緣擅打。若論希達昔日所犯之罪，難以筆盡，請收告身，鞫問其罪。 仍守直，上命內豎往黜守直人，只令罷職。</p>

	사람들을 내치게 하고, 단지 파직만 시켰다.	
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3월 6일 (을유) 1번째기사 상왕과 함께 마친포에 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검암에서 유숙하다	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고 마전포(麻田浦)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드디어 검암(儉巖)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낮에 살곶이[箭串] 냇가에 이르러 술자리를 베풀고 풍악을 울렸다. 광주 목사(廣州牧使) 안노생(安魯生)이 시(詩) 1절(絶)을 바치니, 임금이 대언에게 명하여 차운(次韻)하게 하였다. 저물어서 환궁하니, 악공과 창기들이 연(輦) 앞에서 주악하였다.	乙酉/上奉王, 觀放鷹于麻田浦, 遂至儉巖宿焉。晝至箭串川邊, 設酌動樂。廣州牧使安魯生進詩一絕, 上命代言次之。暮, 還宮, 樂工倡妓, 在輦前奏樂。
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3월 15 일(갑오) 2번째기사 충청도 석성현 사노비 계화은이 한꺼번에 세 아들을 낳다	충청도 석성현(石城縣)의 사비(私婢) 계화은(計火狘)이 한꺼번에 세 아들을 낳으니, 명하여 쌀 6석을 내려 주었다.	忠淸道石城縣私婢計火狘, 一乳三子, 命賜米六石。
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3월 29 일(무신) 2번째기사 대마주 영생이 예물을 바치고, 배를 만들고자 양식을 요청하여 쌀 1 백석을 주다	대마주(對馬州) 영생(榮生)의 사인(使人)이 예물을 바치고, 조선(造船)하는 데 먹을 양식을 청하니, 쌀 1백 석을 내려 주었다.	對馬州榮生, 使人獻禮物, 請造船糧, 賜米一百石。
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4월 5일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공부(孔俯)에게 쌀 3석을 내려 주었다. 공부는 부상(父喪)을 만나 아직 상제를 끝마치지 못하였는데, 임금이 사알(司調)을 보내어 전지하기를,	賜檢校漢城尹孔俯米三石。俯丁父喪, 未終制, 上遣司謁傳旨曰: “卿老成, 當與議事, 宜除喪以見。” 蓋欲問其修

<p>(계축) 3번째기사 검교 한성 윤 공부에 계 쌀 3석을 하사하고 탈상하여 알현할 것을 명하다</p>	<p>“경(卿)은 노성(老成)하여 마땅히 같이 일을 의논할 만하니, 마땅히 제상(除喪)하여 알현토록 하라.” 하니, 대개 수진(修真)의 일을 묻고자 함이었다.</p>	<p>眞之事也。</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4월 5일 (계축) 4번째기사 행랑 조성 장인 2백명 에게 각각 쌀 1석씩을 하사하다</p>	<p>행랑 조성(行廊造成) 장인(匠人) 2백 명에게 각각 쌀 1석씩 내려 주었다.</p>	<p>賜行廊造成匠人二百米各一石。</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4월 8일 (병진) 1번째기사 이애에게 미두 30석을 하사하다</p>	<p>이애(李夔)에게 미두(米豆) 30석을 내려 주고, 또 중관(中官)을 보내어 내은(內醞)을 내려 주었다.</p>	<p>丙辰/賜李夔米豆三十石, 又遣中官賜醞。</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4월 10 일(무오) 1번째기사 권영균·임침년·최득비· 정윤후 등을 명나라에 보내다</p>	<p>권영균(權永均)·임침년(任添年)·최득비(崔得罪)·정윤후(鄭允厚) 등이 경사(京師)로 떠나니, 기거(起居)를 흠문(欽問)하기 위함이었다. 임금이 광연루(廣延樓)에 거둥하여 이들을 전송하고, 마포(麻布) 1백 50필, 인삼(人蔘) 3백 근(觔)을 권영균에게 주어 비단을 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p>	<p>戊午/權永均、任添年、崔得罪、鄭允厚等如京師。欽問起居也。上御廣延樓以餞之。以麻布百五十四、人蔘三百觔付永均, 買錦段以來。</p>
<p>태종 25권, 13년</p>	<p>의정부에서 축마(畜馬)의 사의(事宜)를 올리고 아뢰었다.</p>	<p>議政府上畜馬事宜。啓: “各道分養孳</p>

<p>(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5월 9일 (정해) 2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축마(畜馬)의 사의를 올린다</p>	<p>“각도에서 나누어 기르는 번식시킨 구마(駒馬)가 모두 1백 94필(匹)이니, 바라건대, 내구(內廐)에 충용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소[牛]도 길러서 국용(國用)에 이바지함이 마땅하다.’고 하니, 내가 이 말[馬]을 가지고 소로 바꾸어 기르고자 하는데, 그래도 좋겠는가?” 정부에서 아뢰었다. “희생(犧牲)과 유우(乳牛)가 떨어지면 혹 민가에서 가져다 쓰는데, 많이 소를 기르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원컨대, 양마(良馬)를 택하여 내구에 충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로 바꾸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息駒馬， 共一百九十四匹， 乞充內廐。” 上曰：“或告予曰：‘亦宜畜牛， 以供國用。’ 予欲以此馬易牛而畜之， 可乎？” 政府啓曰：“犧牲與乳牛有乏， 則或取用於民間， 多畜牛， 最是美法。 願擇良馬， 以充內廐， 餘皆易牛便。” 從之。</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5월 12일(경인) 1번째기사 상왕을 모시고 술자리를 베푼다</p>	<p>임금이 상왕을 본궁(本宮)의 수각(水閣)에 맞이하여 술자리를 베푼고 즐기었다.</p>	<p>庚寅/上迎上王于本宮水閣， 設酌奉歡。</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5월 16일(갑오) 1번째기사 임금의 탄일로 상왕이 와서 잔치를 베푼다</p>	<p>상왕(上王)이 와서 잔치를 베푼고 한껏 즐기니, 임금의 탄일(誕日)인 때문이었다. 정부와 공신들도 헌수(獻壽)하니, 정부와 공신(功臣)·제경(諸卿)에게 잔치를 내려 주고 사악(賜樂)하였다.</p>	<p>甲午/上王來， 設宴極歡。 以上誕日也。 政府功臣亦獻壽， 賜政府功臣諸卿宴， 賜樂。</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6월 2일</p>	<p>도염서 영(都染署令) 정개석(鄭介石)의 직책을 파면하였다. 정개석은 거짓으로 한성 소윤(漢城少尹) 신보안(辛保安)의 이름을 붙이고, 신보안의 보단자(保單子)를 만들어 군자금(軍資監)의 쌀 10석을 받았었는데, 일이 발각됨에 형조에</p>	<p>罷都染署令鄭介石職。 介石僞著漢城少尹辛保安名， 作保單子， 受軍資監米十石， 事覺。 刑曹劾之， 請贖杖八十</p>

<p>(기유) 3번째기사 남의 이름으로 군자감의 곡식 10석을 도용한 도염서 영 정개석을 치죄하다</p>	<p>서 그를 탄핵하여 장(杖) 80대를 속(贖)받게 하고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개석은 진주(晉州) 사람이었던 까닭으로 하운(河崙)이 그를 감싸주니, 의논하는 자가 형조에 출입한 죄를 가지고 허물하였다. 대사헌 윤향(尹向)이 조계(朝啓) 때에 자세하게 그 사실을 아뢰니, 임금(上)이 듣고 깜짝 놀라 말하였다.</p> <p>“정상이 가공하고 법이 의심스러운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가볍게 하겠는가? 또 정개석은 신보안의 이름을 가지고 쌀을 얻었고, 신보안은 실지로는 알지 못하였으나 뒤에 반드시 징계를 당할 것이다. 정개석의 마음은 참으로 도적의 심보이다.”</p> <p>판서 최이(崔迺)가 아뢰기를, “정개석의 죄는 관물(官物)을 도둑한 죄로 논율(論律)하여 장(杖) 90대에 자자(刺字)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上)이 옳게 여기었다.</p>	<p>罷職，從之。介石，晉州人，故河崙陰庇之，議者咎刑曹出入之罪。大司憲尹向於朝啓，細陳其實，上聞之，驚駭曰：“非情可矜法可疑，何故輕之！且介石，以保安之名得米，保安實不知，後必見徵。介石之心，眞竊盜也。”判書崔迺啓曰：“介石之罪，以盜官物論律，當杖九十刺字。”上然之。</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6월 5일 (임자) 1번째기사 박은·이응·한상경·유정현·조연 등에게 새 관직을 제수하다</p>	<p>금천군(錦川君) 박은(朴崑)·영양군(永陽君) 이응(李膺)으로 겸 판의용순금사(兼判義勇巡禁司事)를, 한상경(韓尙敬)·유정현(柳廷顯)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조연(趙涓)으로 공조 판서를, 박자청(朴子靑)으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하구(河久)로 우군 도총제를, 안성(安省)으로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를 삼았다. 강원도도관찰사 우홍강(禹洪康)·충청도 도관찰사 이안우(李安愚)·충주 목사(忠州牧師) 권진(權軫)·원주 목사(原州牧使) 권완(權緩) 등이 충청도 제주(提州)에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일이 발각되자 헌사(憲司)에서 탄핵하여 아뢰었다. 임금(上)이 우홍강이 타도(他道)에 넘어 들어갔다고 하여, 특명으로 파직시켰다.</p>	<p>壬子/以錦川君朴崑、永陽君李膺兼判義勇巡禁司事，韓尙敬、柳廷顯參贊議政府事，趙涓工曹判書，朴子靑知議政府事，河久右軍都摠制，安省江原道都觀察使。江原道都觀察使禹洪康、忠淸道都觀察使李安愚、忠州牧使權軫、原州牧使權緩等，會飲于忠淸道之(提州) [堤州]，事覺。憲司劾之以聞，上以洪康越入他道，特命罷職。</p>
<p>태종 25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p>	<p>모화루(慕華樓)의 남쪽 못에서 양어(養魚)하는 진미(陳米)를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임금(上)이 예빈시(禮賓寺)에서 진미(陳米)를 가지고 연못의 고기를 기른다</p>	<p>丁卯/命輟慕華樓南池養魚陳米。上聞禮賓寺以陳米養池魚，召掌務問之，</p>

<p>(永樂) 11년) 6월 20일(정묘) 1번째기사 모화루 남쪽 못의 고기를 쌀로써 기르는 것을 중지하라고 명하다</p>	<p>는 말을 듣고, 장무(掌務)를 불러서 물으니 대답하였다. “한 달에 열 말을 소비합니다.” 임금이, “쌀이 비록 목어서 썩더라도 채소(菜蔬)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사람이 굶주리는데도 구제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고기에게 먹이는가?”</p>	<p>對曰：“月費十斗。” 上曰：“米雖陳腐，不猶愈於蔬菜乎？人有飢饉而不能救，何以魚爲！”</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7월 3일 (경진) 1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p>	<p>금주령(禁酒令)을 내렸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여 조목별로 진달(陳達)하였다. “그 첫째는 하늘의 경계를 삼가서 천재(天災)를 없애며, 그 둘째는 옛날에 한재(旱災)를 만나면 인주(人主)도 또 감선(減膳)하고 철악(輟樂)하였는데, 비록 금주하는 명령이 있더라도 간혹 술 취한 자가 있으니, 공상(供上)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주를 엄격히 행하며, 그 세째는 외방에서 저화(楮貨)를 세공(歲貢)하는 것을 없애며, 그 네째는 호급 둔전(戶給屯田)을 없애며, 그 다섯째는 중외(中外)에 토목(土木)의 역사를 금하소서.” 임금이 읽어 보고, “저화(楮貨)를 세공(歲貢)하는 것은 저화를 널리 시행하고자 하는 술책이고, 호급 둔전(戶給屯田)도 또한 작은 일인데, 어찌 가뭄을 부를 리가 있겠는가? 중외에 토목의 역사는 행랑(行廊)같은 것이라든가, 외방의 향교(鄕校)와 선공감(繕工監)에서 하는 바 차양(遮陽)같은 것이 기울어지고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는 따위의 일인데 모두 부득이한 것이다. 감선(減膳)하는 일이라면 나의 포주(庖廚)에 진실로 별미(別味)가 없는 것을 선부(膳夫)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성음(聲音)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대언(代言)도 또한 알고 있다.” 하고 드디어 주선(酒膳)을 감하였다. 이어서 명령을 내려 전지(傳旨)하였다. “비록 근칙(謹飭)하는 선비라 하더라도 방탕하는 중에서 미치지 못하니, 각</p>	<p>庚辰/下禁酒令。 司諫院上疏條陳：其一，謹天戒、弭天災。 其二，古者遇旱災，則人主亦減膳輟樂。 雖有禁酒之令，間有沈酗者，除供上外，痛行禁酒。 其三，除外方歲貢楮貨。 其四，除戶給屯田。 其五，禁中外土木之役。 上覽之曰：“歲貢楮貨，是欲廣行楮貨之術也。 戶給屯田，亦細事也，豈有召旱之理乎？ 中外土木之役，則若行廊、外方鄕校及繕工所爲，若遮陽、修補傾頽等事，皆不得已者也。 若減膳之事，則予庖固無異味，問膳夫則可知。 予之不好聲音， 代言司亦知之矣。” 遂減酒膳， 仍下令傳旨曰：“雖謹飭之士，不及於放蕩之僧，聚各宗居山僧一百祈雨。 若以大臣爲行香使，脫有不得雨， 緇流必曰：‘行香使未有誠格。’ 自今宜令各宗行爵俱高者，奉香以行。”</p>

	종파(宗派)에서 산(山)에 거(居)하는 중 1백 명을 모아서 비를 빌라. 만약 대신(大臣)으로 행향사(行香使)를 삼았다가 혹시 비를 얻지 못하면 치류(緇流)들이 반드시 ‘행향사가 정성과 감동이 있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 각 종파에서 행실(行實)과 작위(爵位)가 아울러 높은 자로 하여금 향(香)을 받 들어서 행하게 하라.”	
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7월 8일 (을유) 2번째기사 환과 고독 자에게 진 홀하도록 명하다	의정부에서 약주(藥酒)를 바쳤다. 정부 사인(舍人)에게 명하였다. “환(鰥)·과(寡)·고(孤)·독(獨)은 왕정(王政)에서 우선하여야 할 바인데, 존홀(存恤)하는 법이 비록 《육전(六典)》에 있지만, 혹은 행하지 아니하여 화기(和氣)를 손상하는 데 이를까 두렵다. 마땅히 유사(攸司)로 하여금 다시 존홀을 더하라. 그 혹시 집이 가난하여 아버지가 죽은 지 3년이 되도록 장사를 치루지 못하는 자나, 여자의 나이가 30이 되어도 오히려 성혼(成婚)을 하지 못한 자는 관(官)에서 자장(資裝)을 지급하여 때를 잃지 않도록 하라.”	議政府進藥酒。命政府舍人曰：“鰥寡孤獨，王政所先。存恤之法，雖在《六典》，恐或不行，以致傷和。宜令攸司，更加存恤。其或家貧親歿，三年未葬者、女年三十，猶未成婚者，官給資裝，俾不失時。”
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7월 9일 (병술) 1번째기사 방간에 술과 고기를 하사하다	환관을 보내어 술과 고기를 방간(芳幹)에게 내려 주었다.	丙戌/遣宦官，賜酒肉于芳幹。
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7월 9일 (병술) 3번째기사 의정부에 선운을 하사 하다	의정부에 선운(宣醞)을 내려 주었다.	賜醞于議政府。
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주육(酒肉)을 예문관(藝文館)에 내려 주었으니, 관관(館官)이 잣[松子]을 바쳤기 때문이다. 임금이 주육을 내려 주고 이어서 명하였다.	賜酒肉于藝文館。館官獻松子，上賜酒肉，仍命曰：“汝等唱《翰林別曲》

<p>(永樂) 11년) 7월 18 일(을미) 3번째기사 예문관에 술과 고기를 하사하다</p>	<p>“너희들이 한림별곡(翰林別曲)을 창(唱)하면서 즐기라.”</p>	<p>以歡。”</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8월 15 일(신유) 2번째기사 세자의 일로 서연을 정지시키다</p>	<p>세자 이사(世子貳師) 유창(劉敞)·빈객(賓客) 한상경(韓尙敬)·조용(趙庸)·변계량(卞季良) 등이 서연(書筵)의 관속(官屬)을 거느리고 예궐(詣闕)하여 아뢰었다. “신 등이 재주가 없어서 능히 보도(輔導)하지 못하여 전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세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 동안 불식(不食)하였습니다. 또 이제 전하가 편찮아서 대소 신료(大小臣僚)가 분주히 기거(起居)를 문안드리지 아니함이 있는데 홀로 세자만이 문안을 드리지 않으니, 나라 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할는지 저으기 두렵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세자의 불식(不食)은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이니, 어찌 잘못을 뉘우침이 있다고 하겠느냐? 경 등은 모두 대체(大體)를 아는 자들이니, 한(漢)나라의 신하 사단(史丹)의 말을 나타내어 그 허물을 면하고자 하나, 지금 세자의 허물은 그것과는 다르다. 전일에 나의 사인(使人)에게 이름을 묻고서, 이에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다. 옛날에 세자를 폐한 것은 모두 환관(宦官)이나 빈첩(嬪妾)의 참소로 말미암아서였다. 나는 이와는 다르다. 세자의 마음은 반드시 그 자리를 죽히 믿고 있는 때문일 것이다. 만약 과연 뉘우치지 않는다면 종실(宗室)에 어찌 적당한 사람이 없겠는가? 지난번에 매와 개의 오락 때문에 문책을 당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었다. 이제 또 이와 같으니, 이것이 경 등이 가르친 효과이나? 내가 장(杖)을 때려 그 죄를 바로잡으려 하나, 다만 그 은의(恩誼)를 상할까 두렵다. 경 등은 우선 물러가라.” 드디어 서연(書筵)을 거두었다. 또 경승부(敬承府)의 원리(員吏)에서 명하여</p>	<p>世子貳師劉敞、賓客韓尙敬·趙庸·卞季良等，率書筵官屬，詣闕啓曰：“臣等不才，不能輔導，以動殿下之威，世子涕泣，數日不食。且今殿下未寧，大小臣庶，莫不奔問起居，獨世子未獲問安，竊恐國人以爲何如？”上曰：“世子之不食，不勝其憤也。何悔過之有！卿等皆知大體者也。欲效漢臣史丹之辭，以免其過，今世子之過則異於彼。前日問吾使人姓名，乃曰：‘我已知之。’此非幼兒之言也。古有廢世子者，皆由宦妾之訴，我無是也。世子之心，必以其位爲足恃也。若果不悛，則宗室豈無其人乎？往者，以鷹犬之娛，被責者數矣。今又若是，此卿等教誨之效歟？予欲杖之，以正其罪，但恐其傷恩也。卿等姑退。”遂輟書筵。又令敬承府員吏皆歸家。命金汝知曰：“敢有言世子之事者，當有非常之怒。”</p>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김여지(金汝知)에게 명하였다. “감히 세자의 일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비상한 진노(震怒)가 있을 것이다.”	
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8월 16 일(임술) 2번째기사 종정무에게 쌀 25석을 하사하다	종정무(宗貞茂)에게 쌀 25석을 사송(賜送)하였다.	賜送宗貞茂米二十五石。
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8월 17 일(계해) 1번째기사 서북면 도체찰사 이천 우에게 술과 약을 하 사하다	서북면 도체찰사(西北面道體察使) 이천우(李天祐)에게 궁은(宮醞)과 내약(內藥)을 내려 주었다. 이천우가 아뢰었다. “잠정적으로 무주(撫州) 약산(藥山)의 성역(城役)을 정지하고 요해처인 안주(安州)의 성을 넓게 쌓으소서.” 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약산의 성을 아울러 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癸亥/賜西北面都體察使李天祐宮醞、內藥。天祐啓曰：“姑停撫州藥山城役，廣築要害安州城。”下政府議，宜并築藥山城。
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8월 30 일(병자) 3번째기사 종묘의 천신에 새 술 을 쓸 것을 명하다	종묘의 천신(薦新)에 신주(新酒)를 새로 쓰라고 명하였다.	命宗廟薦新用新酒。
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9월 17 일(기사) 3번째기사	좌정승 하운(河崙) 등이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서 여러 유생(儒生)을 공궤(供饋)하고 시제(詩題)를 명하여 시(詩)를 짓게 하였다. 또 식당(食堂)의 터를 상지(相地)하였다.	左政丞河崙等，詣成均館饋諸生，命題賦詩，且相食堂之基。

<p>하운 등이 성균관에 나아가 유생을 공궤하 고 식당의 터를 알아 보다</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9월 18 일(갑오) 2번째기사 시종하는 신하와 군사 및 이전·노비에게 식 량을 지급하다</p>	<p>시종(侍從)하는 여러 신하와 군사에게 6일 식량을 내려 주었다. 쌀과 콩을 차 등 있게 아래로 이전(吏典)·복예(僕隸)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려 주었다.</p>	<p>賜侍從諸臣及軍士六日糧米豆有差。 下至吏典僕隸，皆賜之。</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10월 1 일(정미) 2번째기사 종묘에 사람을 보내어 짐승을 바치다</p>	<p>사람을 보내어 종묘(宗廟)에 짐승을 바쳤다. 임금이 주술산(珠瑿山)에서 이곳 에 이르도록 사슴을 쏘아 잡은 것이 모두 14마리였다.</p>	<p>遣人獻禽于宗廟。 上自珠瑿山至此， 射鹿凡十四。</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10월 1 일(정미) 3번째기사 중관을 보내어 방간에 게 술과 고기를 하사 하다</p>	<p>중관(中官)을 보내어 방간(芳幹)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완산부(完山府)에 들러 태조(太祖)의 진영(眞影)을 배알(拜謁)하고자 하였는데, 방간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았다.</p>	<p>遣中官賜酒肉于芳幹。 上嘗欲入完山 府謁太祖眞，以芳幹在此，故不果。</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p>	<p>좌정승 하운(河崙) 등이 풍해도(豐海道)·충청도(忠淸道)·강원도(江原道)의 미곡 (米穀)을 수납할 사의(事宜)를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p>	<p>左政丞河崙等，上豐海、忠淸、江原道 米穀收納事宜。 啓曰：“豐海道祿轉</p>

<p>(永樂) 11년) 10월 1일(정미) 4번째기사 좌정승 하윤이 풍해도·충청도·강원도의 미곡을 수납할 사의를 올리다</p>	<p>“풍해도의 녹전미(祿轉米)는 마땅히 그 고을에 거두어 들이도록 하여 군량에 충당하고, 광흥창(廣興倉)의 반록(頒祿)은 마땅히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쌀을 쓰도록 하며, 또 충청도·강원도 양도의 속미(粟米)는 매양 얼음이 얼기 전에 상납(上納)하는데, 이러한 연유로 벼가 미처 익지 않아도 갑자기 베어 내니, 이것이 여러 해 쌓인 폐단입니다. 빌건대,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첫봄[春初]까지 기다려 전납(轉納)하게 하여서 민폐를 없애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米, 宜收入其官, 以充軍籩; 廣興倉頒祿, 當用軍資監陳米。 且忠淸、江原兩道之粟, 每於水凍前上納, 緣此禾未熟而驟加銜艾, 是積年之弊。 乞依他道例, 待春初轉納, 以除民瘼。” 從之。</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10월 9일(을묘) 1번째기사 용구 사람 이첩목아에게 쌀을 하사하다</p>	<p>용구(龍駒) 사람 이첩목아(李帖木兒)에게 쌀을 5석 하사하였다. 이첩목아는 나이가 86세이었는데, 길 옆에서 알현하고 전토를 달라고 호소하니, 호조에 명하여 주도록 하고, 또 쌀을 하사하였다. 그가 늙은 것을 불쌍히 여긴 것이다.</p>	<p>乙卯/賜龍駒人李帖木兒米五石。 帖木兒年八十六歲, 見於道傍以訴田, 命戶曹給之, 又賜米。 憐其老也。</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10월 10일(병진) 1번째기사 어가가 광주 동정에 머무르다</p>	<p>어가(御駕)가 광주(廣州)의 동정(東亭)에 머물렀다. 사슴 두 마리를 쏘아 잡아서, 대언 조말생(趙末生)에게 명하여 말을 달려 종묘에 천신(薦新)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일찍이 이렇게 말하였었다. “전라도에 있으므로 비록 잡은 짐승들을 천신한다고 하더라도 길이 멀어서 고기의 맛이 모두 변할 것이다. 광주(廣州)에서 몰이하여 다시 천신하고자 한다.”</p>	<p>丙辰/駕次廣州東亭, 射鹿二, 命代言趙末生, 馳薦于宗廟。 上嘗曰: “在全羅雖薦所獲禽獸, 路遠肉味皆變, 欲驅廣州山, 更薦之矣。”</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10월 12일(무오) 3번째기사 10월 망제에 굴·유자를 함께 천신할 것을 명하다</p>	<p>이제부터 10월 망제(望祭)에는 굴(橘)과 유자(柚子)를 아울러 천신하라고 명하였다.</p>	<p>命自今十月望祭, 兼薦橘柚。</p>

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11월 3
일(기묘) 1번째기사
공안부 윤으로 치사한
당성의 줄기

공안부 윤(恭安府尹)으로 치사(致仕)한 당성(唐誠)이 졸(卒)하였다.
당성은 강절(江浙)의 명주(明州) 사람이었는데, 원(元)나라 말에 병란을 피하
여 동쪽으로 왔었다. 처음에 정동행성(征東行省)의 연리(掾吏)가 되었으나, 행
성(行省)이 혁파되자 중랑장(中郎將)으로 사평 순위부(司平巡衛府)의 평사(評
事)가 되었다. 율령(律令)에 통하고 밝아서 일을 만날 적마다 용감히 말하였
는데, 당시 국정을 맡은 자가 성석린(成石璘)이 자기에게 붙지 않는 것을 미
워해서 죄를 무고하여 하옥(下獄)하고, 병마 도통사(兵馬都統使) 최영(崔瑩)을
부추겨서 장차 극형에 처하려 하니, 당성이 그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최영이 듣지 않았었다. 당성이 굳이 다투었으나 어쩔 수가 없게
되자, 드디어 율문을 집어 땅에 던지면서 최영에게 이르기를,
“도통(都統)이 율문보다 먼저 났습니까? 아니면 율문이 도통보다 먼저 났습니
까? 도통이 어찌하여 자기 한 사람의 견해로써 율문을 버리십니까?”
하니, 최영은 당성이 정직하다고 하여 노하지 않았고, 우리 태조도 또한 성석
린을 구해 내려 하였으므로, 마침내 사형에서 감형할 수 있었다. 관직을 여러
번 옮겨 관전농시사(判典農寺事)에 이르고, 이원필(李元弼)을 대신하여 사대
이문(事大吏文)을 맡았었다. 태조가 즉위하게 되자, 호조·예조·형조·공조의 4
조 전서(典書)를 거쳤다. 일찍이 노비를 변정 도감(辨定都監)에 소송하였다가
이기지 못하니, 조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제 이 도감(都監)은 변정(辨定)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不定)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연좌되어 면관(免官)되었으나, 얼마 있지 않아서 검
교 판한성부사(檢校判漢城府事)로서 문서 응봉사(文書應奉司)의 제조(提調)가
되었다. 신사년에 임금이 이미 고명(誥命)을 받게 되니, 당성이 면알(面謁)하
여 아뢰기를,
“지난번에는 국함(國銜)을 ‘권서 국사(權署國事)’라고 칭하였으나, 이제는 다
만 ‘국왕(國王)’이라고 칭하니, 이름이 바르고 말이 간단하여 매우 좋습니다.”

己卯/恭安府尹致仕唐誠卒。誠，浙江
明州人。元季，避兵東來，初爲征東
行省(椽) [掾] 史，行省罷，以中郎將
爲司平巡衛府評事。通曉律令，遇事
敢言。時，當國者惡成石璘不附己，
誣以罪下獄，掖兵馬都統使崔瑩，將置
極刑，誠言罪不至死，瑩不聽。誠固
爭不能得，遂取律文投地，謂瑩曰：
“都統先律文而生乎？抑律文先都統而
出乎？都統乃何以一己之見，而捨律文
乎？”瑩以誠(徑) [勁] 直不怒，我太
祖亦營救石璘，乃得減死。累官至判
典農寺事，代李元弼掌事大吏文。及
太祖卽位，歷戶禮刑工四曹典書。
(常) [嘗] 訟奴婢于辨定都監，不勝，
揚言于朝曰：“今此都監，非辨定，乃
不定也。”坐此免官。未幾，以檢校
判漢城府事，提調文書應奉司。歲辛
巳，上既受誥命，誠面啓曰：“向者國
銜稱權署國事，今只稱國王，名正辭
簡，甚好。”因伏地請曰：“小臣頭銜，
亦欲除檢校二字。”上笑，改除開城副
留後，再遷恭安府尹。己丑，以本官
致仕，命給全俸終身。誠性勤謹，年
踰七十，精力不衰，凡遇事大文字，必

	<p>하고, 인하여 땅에 앞드려 청하기를, “소신(小臣)의 두함(頭銜)에서도 또한 검교(檢校) 두 자를 없애버리고자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개성 부유후(開城副留後)로 고쳐 임명하였다. 다시 공안부 윤(恭安府尹)에 옮겼다가 기축년에 본관(本官) 그대로 치사(致仕)하였다. 임금이 녹봉을 온전하게 종신토록 주게 명하였다. 당성은 성질이 부지런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나이 70이 넘어도 정력이 쇠퇴하지 않았다. 무릇 사대 문자(事大文字)가 있을 때는 반드시 친히 살피고 가다듬어 조금도 차오(差誤)가 없었으므로, 임금이 믿고 맡겼으며 본향(本鄉)을 밀양(密陽)으로 내려 주었다. 졸(卒)할 때 나이가 77세였다. 임금이 매우 슬퍼하여 중관(中官)을 보내어 조문(弔問)하고 부의(賻儀)로 쌀·콩을 각각 40석과 종이 1백 50권을 내려 주고, 관곽(棺槨)을 주고 사제(賜祭)하였다. 중궁(中宮)도 또한 사제(賜祭)하였다. 성석린(成石麟)이 시(詩)로써 애곡(哀哭)하였다.</p> <p>“학문이 이문(吏文)을 겸하여 양쪽이 정강(精強)하니, 동방에 유익함을 누가 견줄 수 있으리오? 도통(都統)과 율문(律文)의 선후 이야기, 이 생애 갚기 어렵고 죽어도 잊기 어렵네.”</p>	<p>親審覆，鮮有差誤，上委信之，賜鄉密陽。卒年七十七。上悼甚，遣中官以弔，賜賻米豆各四十石、紙百五十卷，給棺槨，賜祭，中宮亦賜祭。石麟以詩哭之曰：“學兼文吏兩精強，有益東邦孰可方！都統律文先後語，此生難報死難忘。”</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永樂) 11년) 11월 3일(기묘) 2번째기사 여진족 42인이 오니 미두를 하사하다</p>	<p>여진(女眞)의 자제 42인이 오니, 쌀·콩을 사람마다 각각 5석씩 내려 주었다.</p>	<p>女眞子弟四十二人來，賜米豆人各五石。</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永樂) 11년) 11월 5</p>	<p>명통사(明通寺)의 환수[盲人] 등에게 쌀 30석을 내려 주었다.</p>	<p>賜明通寺盲人等米三十石。</p>

<p>일(신사) 3번째기사 명통사의 맹인들에게 쌀을 하사하다</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11월 8 일(갑신) 1번째기사 상왕이 인덕궁에서 술 자리를 베풀다</p>	<p>상왕(上王)이 청하여 임금을 인덕궁(仁德宮)에 맞이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극 진히 즐거워하였다.</p>	<p>甲申/上王請迎上于仁德宮，置酒極 歡。</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 (永樂) 11년) 11월 22 일(무술) 1번째기사 사재감에서 올린 계목 을 의정부에서 검토하 여 올리다</p>	<p>의정부에서 사재감(司宰監)의 계목(啓目)을 의논하여 올렸다. “1. 본감(本監)은 오로지 주楫(舟楫)을 맡아보므로 중외(中外)의 선척(船隻)의 수를 다 알고 무시(無時)로 고찰하여야 마땅합니다. 이제부터 경기와 외방의 공처(公處)의 배는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매 인(寅)·신(申)·사(巳)·해(亥)가 든 해[年]의 마지막 달 안에 사람을 가려서 보내어 심사 점검하게 하고, 규식에 의하여 문적(文籍)을 만들어 본감에 보내어 바치도록 하소서.” “위의 조목에서 공처(公處)의 배는 모두 화인(火印)을 찍어서 자호(字號)와 차 례를 아울러 새기고 문적을 만들어 상납하게 하며, 사처(私處)의 배도 아울러 화인(火印)을 찍어서 자호(字號)와 선주(船主)의 소명(小名)을 갖추 기록하고, 각각 따로 문적을 만들어 상납하게 하며, 선척(船隻)을 환수할 때 이에 준하 여 받아서 참고에 대비하게 하소서.” “1. 병선(兵船)·조운선(漕運船)·수참선(水站船)·공처 착어선(公處捉魚船) 등은 일체 공선(公船)에 해당하므로, 혹은 부수어 없애거나 혹은 고쳐 만들거나 한 다면 반드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정부에 전보(傳報)해서 행이(行移)하기를 기 다리게 하며, 마음대로 스스로 고치거나 부수는 자와 마음대로 파는 자는 법 률에 의하여 논죄하소서.”</p>	<p>戊戌/議政府議上司宰監啓目： 一，本監專掌舟楫，中外船隻，宜盡知 數，無時考察。自今京畿及外方公處 船，令各道監司，每寅申巳亥年季月 內，差使審檢，依式成籍，送納本監。 右條公處船，皆著火印字號，次第并 刻，成籍上納；私處船，并著火印字號 及船主小名具錄，各別成籍上納；船 隻，還準受，以備參考。 一，兵船、漕運船、水站船、公處捉魚 船等一應公船，或欲破取，或欲改造， 則須報監司，傳報政府，以待行移。 擅自改破者及擅賣者，依律論罪。 右條，如啓日施行。不堪破取改造， 必須和賣船隻，亦於監司呈報，毋致朽 毀。</p>

	<p>“위의 조목은 계목(啓目)과 같이 시행하여, 부수어 없애거나 고쳐 만들지 못하게 하며, 반드시 선척(船隻)을 화매(和賣)할 때에도 또한 감사에게 정보(呈報)하게 하며, 배가 썩거나 부수어지지 않게 하소서.”</p> <p>“1. 각처에서 무시(無時)로 새로 조선(造船)하는 것은 연한에 구애하지 말고 말은 바 관원이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규식에 의하여 화인(火印)을 찍어 자호(字號)를 새기고 정부에 전보(傳報)하여 본감(本監)에 이문(移文)해서 문적에 잇달아 쓰게 하소서.”</p> <p>“위의 조목은 계목(啓目)과 같이 시행하소서.”</p> <p>“1. 도성(都城)의 땅이 큰 강(江)가에 있어서 배의 사용이 심히 많습니다. 경상도의 세공(歲貢)은 다만 초마선(哨嗎船) 10척뿐이므로 조금이라도 주즙(周楫)을 쓸 데가 있으면 반드시 사선(私船)을 빼앗아서 이바지합니다. 이제부터 성상의 거동에 정자선(亭子船) 2척, 초마선(哨嗎船) 20척, 소거도선(小居刀船) 10척, 평저선(平底船) 80척을 공액(貢額)으로 정하고, 각 도에 나누어 배정하여 매 무(戊)·계(癸)자가 든 두 해의 농한기를 당하여, 견실하게 배를 만들어 본감(本監)에 상납하게 하고, 점고(點考)하여 화인(火印)을 찍고서 문적에 잇달아 쓰게 하소서.”</p> <p>“위의 조목에서 충청도·강원도·풍해도(風海道)는 평저선(平底船)을 각각 10척씩으로 하고, 경상도는 전액 숫자대로 하고, 전라도는 초마선(哨嗎船)을 10척씩으로 하여, 계목(啓目)과 같이 시행하소서.”</p> <p>“1. 어량(魚梁)·수량(水梁)은 오로지 본감(本監)에 속하여 세금을 거두어 나라에서 쓴다고 《육전(六典)》에 실려 있습니다. 요즈음 고과(考課)를 폐지하거나 해이하게 하기 때문에 중외에서 공가(公家)·거실(巨室)이 각각 점유(占有)하여 고기를 잡는데, 그 세금을 거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핑계를 내세우고 즉시 세금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각처에 어량(魚梁)의 전주(箭主)나 수량(水梁)의 선주(船主)가 비록 공가(公家)와 거실(巨室)이라 하더라도</p>	<p>一，各處無時新造船，不拘年限，所掌官卽報監司，依式火印刻號，傳報政府，移文本監，續書于籍。</p> <p>右條，如啓目施行。</p> <p>一，都城地濱大江，船楫之用甚多。慶尙道歲貢，只哨嗎船十隻，小有舟楫之用，則必奪私船以供之。自今上幸亭子船二隻、哨嗎船二十隻、小居刀船十隻、平底船八十隻，定貢額，分定各道，每當戊癸兩年農隙之時，堅實造作，上納本監，點考火印，續書于籍。</p> <p>右條，忠淸、江原、豐海道平底船各十隻，慶尙道全數，全羅道哨嗎船十隻式，如啓目施行。</p> <p>一，魚梁水梁，專屬本監，收稅國用，載在《六典》。近因考課廢弛，中外公家巨室，各占捉魚，及其收稅之時，多方托故，不卽納稅。自今各處魚梁箭主、水梁船主，雖係公家及巨室，所在官嚴加考察，竝徵其稅，以實國用，違者從重論罪。</p> <p>右條，如啓目施行。</p> <p>一，各道各官魚梁水梁所產魚物及魚水梁上中品，四標箭主、船主、小名接處，令兩界及各道監司，分揀成籍上</p>
--	---	---

	<p>도 소재관(所在官)이 엄하게 고찰을 더하여 아울러 그 세금을 징수하여 국용(國用)에 채우며, 여기는 자는 중한 형벌에 따라 논죄하소서.”</p> <p>“위의 조목은 계목(啓目)과 같이 시행하소서.”</p> <p>“1. 각도 각 고을에서는 어량(魚梁)과 수량(水梁)에서 나는 어물(魚物) 및 어량·수량의 상중품(上中品)의 전주(箭主)·선주(船主)·소명(小名)의 사는 곳에 사방으로 표식하고, 양계(兩界)와 각도 감사로 하여금 분간하여 문적을 만들어 올려 보내게 하며, 그 양계의 선세(船稅)와 전세(箭稅)는 잠정적으로 전례를 따르되, 혹은 상납(上納)하거나 혹은 화매(和賣)하여서 국용(國用)에 편리하게 하며, 그 나머지 각도의 선세(船稅)는 이미 정한 수에 의해서 철에 따라 거두어 들이고 즉시 전과 같이 보고하게 하소서.”</p> <p>“위의 조목은 오는 2월 안에 추고(推考) 정보(呈報)하여 일을 행이(行移)하게 하소서.”</p> <p>“1. 본감(本監)에서 제사나 연향(宴享)에 사용되는 생선의 출처도 또한 마땅히 염려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각도의 세공(歲貢)에 그물[網子]을 적당히 요량하여 체제를 정하여 강물 고기를 크건 작든간에 수시로 잡게 하며, 또 강변에 못[池]를 세 곳에 파서 그 한 곳은 제사에 이바지하고 두 곳은 연향에 이바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위의 조목은 오는 봄에 다시 보고하게 하소서.”</p> <p>“1. 각처의 어량(魚梁)과 수량(水梁)에서 새로 나는 어물(魚物)은 이치상 가장 먼저 공상(供上)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금후로는 안산(安山)·인천(仁川)의 어량(魚梁) 각각 두 곳은 갖추 상품(上品)으로 체제를 정하고, 그 고을로 하여금 철을 따라 통발[箭]을 엮어서 잡은 어물(魚物)을 즉시 급장(給狀)하여 상납(上納)하게 하고, 풍해도(豊海道)·전라도·충청도 각도의 수량(水梁)에서 나는 것은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또한 가장 먼저 잡은 것을 급장(給狀)하여 역마(驛馬)로 보내어 상납(上納)하게 하며, 진상(進上)하기도 전에 사처(私處)</p>	<p>送。 其兩界船稅、箭稅， 姑從前例， 或上納或和賣， 以便國用， 其餘各道船稅、箭稅， 依已定數， 趁節收斂， 卽報如前。</p> <p>右條， 來二月內， 推考呈報事行移。</p> <p>一， 本監祭祀宴享所用生鮮出處， 亦當爲慮。 自今於各道歲貢網子， 酌量定體， 江魚大小， 隨時捕得。 又於江邊， 鑿池三所， 其一所供祭祀， 二所供宴享何如？</p> <p>右條， 來春更報。</p> <p>一， 各處魚梁水梁新出魚物， 理合最先供上。 今後安山、仁川魚梁各二所， 俱以上品定體， 令其官， 趁節結箭所捕魚物， 隨卽給狀上納。 豊海、全羅、忠淸各道水梁所產， 令所在官， 亦以最先捕者， 給狀傳遞上納； 進上前私處先到者， 箭主船主， 所在官從重論罪。</p> <p>一， 諸處祭享魚物， 今後直納典祀寺， 以致精潔何如？</p> <p>右二條， 竝如啓目施行。</p>
--	--	--

	<p>에 먼저 이르는 경우에는 전주(箭主)·선주(船主)·소재관을 중한 형벌로 논죄하소서.”</p> <p>“1. 여러 곳에 제향(祭享)하는 어물(魚物)은 금후로는 바로 전사시(典祀寺)에 바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위의 두 조목은 아울러 계목(啓目)과 같이 시행하소서.”</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永樂) 11년) 11월 24일(경자) 4번째기사 제주 사람 고득종이 말을 바치니 미두를 하사하다</p>	<p>제주(濟州) 사람 생원(生員) 고득종(高得宗)이 말 3필을 바치니, 쌀과 콩을 35석 내려 주었다.</p>	<p>濟州人生員高得宗進馬三匹，賜米豆三十五石。</p>
<p>태종 26권, 13년 (1413 기사 / 명 영락(永樂) 11년) 12월 23일(무진) 1번째기사 경성에 와 있는 골간 울적함족의 3백여명에 쌀 등을 지급하여 구제하다</p>	<p>골간(骨看) 울적함(兀狄哈)의 여진 아울러 3인이 와서 토물(土物)을 바쳤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p> <p>“골간 울적함의 남녀 3백여 명이 와서 경성(鏡城) 땅에 이르렀으니, 만약 굶주리게 된다면 반드시 무리를 지어 도적질을 자행할 것이니, 청컨대, 사람마다 각각 쌀 5두(斗)와 남녀 아울러 포(布) 1필을 제급(題給)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戊辰/骨看兀狄哈、女眞共三人，來獻土物。議政府啓：“骨看兀狄哈男女三百餘人，來至鏡城地。脫若飢饉，恐必成群寇竊。請人各米五斗，男女并布一匹題給何如?”從之。</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월 2일(정축) 1번째기사 대간에서 대신을 논죄</p>	<p>의정부에 명하여 직사(職事)에 나아오도록 하였다. 사간원에서 정부 사인(政府舍人) 이적(李迹)에게 원일(元日)에 임금이 상왕(上王)을 돈화문(敦化門)에서 친히 전송(餞送)할 때 정부(政府)에서 당상(堂上)에 거좌(踞坐)하여 풍악을 울린 사유를 핵문(劾問)하니, 이적이 대답하였다.</p> <p>“그때 당상(堂上)에서는 바야흐로 선온(宣醞)을 마셨으니, 모두 거좌(踞坐)하</p>	<p>丁丑/命議政府就職。司諫院劾問，議政府舍人李迹以元日，上親送上王于敦化門，政府堂上踞坐動樂之由，迹答曰：“其時堂上方飲宣醞，皆不踞坐，且未知上之舉動，焉能及出?”司諫申</p>

<p>하니 하윤·이숙번 등이 간관을 죄주고자 상소를 준비하다</p>	<p>지 않았고, 또 주상의 거동하심을 알지 못하였는데 어찌 능히 나가서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p> <p>사간(司諫) 신개(申概) 등이 상소하였다.</p> <p>“군신(君臣)의 상하(上下)는 예(禮)로써 서로 유지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예를 폐하게 되면 무엇으로 나라를 위하겠습니까? 상왕(上王)이 어가(御駕)를 돌이키니, 임금이 전송하여 외문(外門)에 이르렀는데, 정부에서 당상(堂上)에 거좌(踞坐)하여 풍악을 잡히고 음악을 즐기다가, 주상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음악 소리가 그제서야 그쳤습니다. 크게 인신(人臣)의 예(禮)를 잃었고, 임금을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니, 빌건대, 유사(攸司)에 내려 안율(按律)하여 시행하소서.”</p> <p>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노하여,</p> <p>“어제 사연(賜宴)에서는 대신(大臣)이 모두 취(醉)하여 나의 출입(出入)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풍악을 울리고 태연자약하였던 것이요, 불경(不敬)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대제(大祭) 때를 당하여 대신(大臣)을 탄핵하는 것이 옳겠느냐? 또 대언(代言)과 사인(舍人)의 말을 가지고 보면, 거좌(踞坐)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어찌하여 대신의 죄를 갑자기 논하는가?”</p> <p>장무(掌務) 정언(正言) 송을개(宋乙開)가 대답하였다.</p> <p>“주상이 출입하시는데 정부(政府)에서 풍악을 울리고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신 등은 반드시 그들이 거좌(踞坐)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임금이 순금사 나장(巡禁司螺匠)에게 명하여 송을개를 압송(押送)하여 도보로 그 집에 돌려보냈다. 간원(諫院)에서 모두 청가(請假)하니, 정부에 명하여 피혐(避嫌)하지 말고서 제사(祭祀) 의식(儀式)대로 근신(謹身)토록 하였다. 좌정승 하윤(河崙)과 참찬(參贊) 이숙번(李叔蕃)이 심히 노하여 기필코 간관(諫官)에게 죄를 주고자 하여, 하윤이 초(草)하여 상소하기를,</p> <p>“빌건대, 이제부터 대간(臺諫)에서 대신의 과실(過失)을 함부로 말하지 말도록</p>	<p>概等上疏曰：</p> <p>君臣上下，以禮相維，苟或廢禮，何以爲國？上王旋駕，上送至外門，政府踞坐堂上，作樂耽樂。及上入內，樂聲乃止，大失人臣之禮，殊無敬上之心。乞下攸司，按律施行。</p> <p>上覽之怒曰：“昨日賜宴，大臣皆醉，不知予之出入，故動樂自如，非以不敬而然也。今當大祭之時，劾大臣可乎！且以代言舍人之言觀之，則非踞坐明矣，何遽論大臣之罪乎？”掌務正言宋乙開對曰：“上之出入，政府動樂不輟，故臣等謂必踞坐也。”命巡禁司螺匠押乙開，徒步歸第。諫院皆請假，命政府毋避嫌以謹祭儀。左政丞河崙及參贊李叔蕃怒甚，必欲致諫官之罪。崙草疏曰：“乞自今，臺諫毋得妄言大臣過失，垂法後世。”領議政府事成石璘、右政丞南在不肯署名曰：“以大臣失禮，而反有此請可乎？且以此立法，後人必有議之者。”叔蕃恃寵，親至石璘與在之第，強其署名，石璘不得已署之，然不果上。叔蕃又嗾憲府，劾請諫官之罪。</p>
---------------------------------------	---	---

	<p>하는 법을 후세에 내려 주소서.” 하니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과 우정승 남재(南在)가 기꺼이 서명(署名)하지 않으며, “대신으로 실례(失禮)하고서 도리어 이러한 청을 한다는 것이 가(可)하겠는가? 또 이로써 법을 세우면 후인 가운데 반드시 이를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으나, 이숙번이 임금의 총애(寵愛)를 믿고 친히 성석린과 남재의 집에 가서 강제로 서명하게 하니, 성석린이 부득이하여 서명하였다. 그러나 임금에게 올리지는 못하였다. 이숙번이 또 헌부(憲府)를 사주(使嗾)하여 간관(諫官)의 죄를 탄핵하여 청하였다.</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월 10일(을유) 2번째기사 종묘에 친향할 때 향관과 제집사의 공궤는 예빈사에서 할 것을 법식으로 삼다</p>	<p>명하여 금후로는 종묘(宗廟)에 친향(親享)하는 날에 향관(享官)과 제집사(諸執事)를 공궤(供饋)하는 것은 예빈시(禮賓寺)로 하여금 공궤(供辦)하는 것으로써 길이 법식을 삼도록 하였다.</p>	<p>命今後親享宗廟日， 餉享官、諸執事，令禮賓寺供辦，永以爲式。</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월 18일(계사) 1번째기사 관제를 고치다</p>	<p>관제(官制)를 고쳤다. 전사시(典祀寺)·종부시(宗簿寺)·사복시(司僕寺)·전농시(典農寺)·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 중3품 영(令)과 정(正)을 모두 윤(尹)이라 칭하고, 4품 부령(副令)과 부정(副正)을 모두 소윤(少尹)이라 칭하였다. 선공감(繕工監)·사재감(司宰監)·군자감(軍資監)·제용감(濟用監)·군기감(軍器監)·전의감(典醫監) 중3품 감(監)을 정(正)이라 칭하고, 4품 소감(少監)을 부정(副正)이라 칭하고, 5품 감승(監丞)을 판관(判官)이라 칭하였다. 통례문(通禮門)의 인진사(引進使)를 첨지사(僉知事)라 칭하고, 부사(副使)를 판관</p>	<p>癸巳/改官制。改典祀、宗簿、司僕、典農、內資、內贍、禮賓諸寺從三品令正皆稱尹，四品副令副正皆稱少尹。繕工、司宰、軍資、濟用、軍器、典醫諸監從三品監稱正，四品少監稱副正，五品監丞稱判官。通禮門引進使稱僉知事，副使稱判官，通贊舍人稱通</p>

	<p>(判官)이라 칭하고, 통찬 사인(通贊舍人)을 통찬(通贊)이라 칭하였다. 사역원(司譯院) 부사(副使)를 첨지사(僉知事)라 칭하고, 사인(舍人)을 주부(注簿)라 칭하였다. 서운 정(書雲正)을 관정(觀正)이라 칭하고, 사선서(司膳署)·사운서(司醞署)·사섬서(司贍署)·경시서(京市署) 6품 서승(署丞)을 주부(注簿)라 하고, 전옥서(典獄署)·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도염서(都染署) 영(令)과 공정고(供正庫) 주부(注簿)를 모두 승(丞)이라 칭하였다. 종묘서(宗廟署)·공안부(恭安府)·경승부(敬承府)·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가각고(架閣庫) 주부(注簿)와 전옥서(典獄署)·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도염서(都染署) 승(丞)을 모두 부승(副丞)이라 칭하였다. 전구서(典廩署) 주부(注簿)를 지금 9품으로 내려서 또한 부승(副丞)이라 칭하고, 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사선서(司膳署) 주부(注簿)를 모두 부직장(副直長)이라 칭하고, 공신 도감(功臣都監) 녹사(錄事)를 승(丞)이라 칭하였다. 경시서(京市署) 주부(注簿)와 공신 도감(功臣都監) 부록사(副錄事)와 혜민국(惠民局) 주부(注簿)와 가각고(架閣庫) 직장(直長)과 제생원(濟生院) 주부(注簿)와 양현고(養賢庫) 판관(判官)과 대비원(大悲院) 부사(副使)를 모두 녹사(錄事)라 칭하고, 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대비원(大悲院) 녹사(錄事)를 모두 부록사(副錄事)라 칭하였다. 전사시(典祀寺) 녹사(錄事)를 올려서 8품으로 하고, 경복궁(景福宮)·경덕궁(敬德宮) 사직(司直)을 부제강(副提控)이라 칭하였다. 경기 좌우도(京畿左右道)를 고쳐서 다만 경기(京畿)라고만 칭하였다.</p>	<p>贊。 司譯院副使稱僉知事， 舍人稱注簿， 書雲正稱觀正。 司膳、司醞、司贍、京市諸署六品署丞稱注簿， 典獄署、惠民局、濟生院、都染署令， 供正庫注簿皆稱丞。 宗廟署、恭安、敬承府、豐儲、廣興倉、架閣庫注簿及典獄、惠民、濟生、都染丞皆稱副丞。 典廩注簿今降九品， 亦稱副丞。 義盈、長興庫、司膳署注簿皆稱副直長， 功臣都監錄事稱丞。 京市注簿、功臣都監副錄事、惠民局注簿、架閣庫直長、濟生院注簿、養賢庫判官、大悲院副使皆稱錄事。 惠民局、濟生院、大悲院錄事皆稱副錄事。 陞典祀錄事爲八品， 景福、敬德宮司直稱副提控。 改京畿左右道， 只稱京畿。</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월 18일(계사) 3번째기사 충청도 도관찰사 허지가 이사(里社)의 법을</p>	<p>충청도 도관찰사 허지(許遲)가 이사(里社)의 법(法)을 행하도록 청하였다. 글은 이러하였다. “조정(朝廷)에서 반강(頒降)한 예제(禮制)에 주부군현(州府郡縣)에서 모두 사(社)를 세우고, 또 향촌(鄉村)에 이사(里社)가 있습니다. 이제 각도의 주군(州郡)에 모두 사(社)를 세우고 수령(守令)이 때때로 제사를 지내나, 오로지 이사(里社)의 법은 폐(廢)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사(里社)의 제도를 살펴보면, ‘무</p>	<p>忠淸道都觀察使許遲請行里社之法。 書曰： 朝廷頒降禮制， 州府郡縣皆立社， 又於鄉村有里社， 今各道州郡皆立社， 而守令以時致祭， 獨里社之法廢矣。 謹稽里社之制， 凡各處鄉村人民， 每里一百</p>

올리다

룻 각처 향촌(鄉村)의 인민(人民)은 이(里)마다 1백 호(戶) 안에 단(壇) 1소(所)를 세우고 오토(五土)·오곡(五穀)의 신(神)에게 제사지내고, 우양(雨暘)을 기도한다. 시절이 만약 오곡(五穀)이 풍등(豐登)하면 해마다 한 사람씩 번(蕃) 같아 회수(會首)가 되어 항상 단장(壇場)을 정결하게 하고, 춘추(春秋) 두 사일(社日)을 당하면 기일보다 앞서 제물(祭物)을 헤아려 공판(供辦)하였다가 사일(社日)에 이르러 약속대로 모여서 제사지낸다. 그 제사에는 양(羊) 한마리, 돼지[豕] 한 마리와 주과(酒果)·향촉(香燭)·종이[紙]를 사용한다. 제사가 끝나면 곧 회음(會飲)을 행하는데, 회중(會中)에서 먼저 한 사람을 시켜 서사(誓詞)를 읽게 한다. 그 서사(誓詞)에 이르기를, 「무릇 우리 동리(同里)의 사람은 각각 예법(禮法)을 존중하고, 힘을 믿고 남을 능욕(凌辱)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는 먼저 함께 다스린 뒤에 관(官)에 넘긴다. 혹은 가난하여 도와주는 이가 없으면 그 집을 두루 도와주되, 3년에 자립하지 않으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혼인(婚姻)이나 상장(喪葬)에 궁핍(窮乏)함이 있으면 능력에 따라 서로 도운다. 만약 중의(衆意)에 따르지 않거나 사위(詐僞)를 범간(犯奸)하면, 일체 비위(非僞)하는 사람은 아울러 모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서사(誓詞)를 읽기를 끝마치면 장유(長幼)의 차례대로 자리에 나아가서 극진히 즐거워하다가 물러간다.’고 하였습니다. 힘써 서로 공경(恭敬)하고 신명(神明)이 화목(和睦)하고 향리(鄉里)가 풍속(風俗)을 후(厚)하게 하고 인심(人心)을 권(勸)하는 좋은 법입니다. 청컨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향촌(鄉村)에서 민호(民戶)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지경(地境)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혹은 40호(戶), 혹은 50(戶)에 각각 1사(社)를 세워서 제사지내게 하소서. 이제부터 무릇 향리(鄉里)의 백성이 규정된 법령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음사(淫祀)를 행하여 ‘신당(神堂)’이라 칭하고 따로 이중(里中)에 세운 것은 일체 모두 불태워 없애버리고 엄격히 다스리소서.”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여 아뢰고 시행하게 하였다.

戶內立壇一所，祀五土五穀之神，祈禱雨暘時若，五穀豐登。 每年一人輪番會首，常潔淨壇場，遇春秋二社，預期率辦祭物，至日約聚祭祀。 其祭用，一羊一豕、酒果香燭紙。 祭畢，就行會飲，會中先令一人讀誓。 其詞曰：“凡我同里之人，各遵禮法，毋恃力凌辱。 違者先共制之，然後經官。 或貧無可贍，周給其家，三年不立，不使與會。 其婚姻喪葬有乏，隨力相助，如不從衆及犯奸詐僞，一切非僞之人，並不許入會。” 讀誓畢，長幼以次就坐，盡歡而退，務在恭敬神明，和睦鄉里，厚風俗、勸人心之良法。 請依此法，各於鄉村，計民戶之多寡、量境地之阻近，或四十戶、或五十戶各立一社而祭之。 自今凡鄉里之民不遵著令，尙行淫祀，稱爲神堂，別立里中者，一皆燒毀痛理。 下議政府，議聞施行。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1월 19 일(갑오) 2번째기사 병조 좌랑 배운을 파 직하다</p>	<p>병조 좌랑 배운(裴閏)을 파직(罷職)하였다. 헌부에서 탄핵하기를, “배운이 종묘제(宗廟祭)의 대축(大祝)이 되어 희생(犧牲)을 이끌고 주방(廚房) 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또 희롱하여 웃고 불경(不敬)하였습니다. 청컨대, 고신 (告身)을 거두고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소서.” 하였기 때문이었다.</p>	<p>罷兵曹佐郎裴閏職。 憲府劾：“閏爲宗 廟祭大祝，不牽牲詣廚，且戲笑不敬。 請收告身，鞫問其由。”故也。</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2월 8일 (임자) 2번째기사 결식하는 노인에게 쌀 을 하사하다</p>	<p>결식(乞食)하는 늙은 할미 양덕(梁德)에게 쌀 2석을 내려 주었다. 대언(代言) 탁신(卓愼)이 아뢰었다. “신(臣)이 광통교(廣通橋) 위에서 할미를 보고 물으니, 말하기를, ‘나는 자손 (子孫)이 없어서 시장에서 결식을 행하여 생활을 이바지합니다.’라고 하였습 니다.” 임금이 불쌍히 여겨 이러한 하사(下賜)가 있었다.</p>	<p>賜乞食老嫗梁德米二石。 代言卓愼啓 曰：“臣見嫗于廣通橋。” 上問之曰： “我無子孫， 行乞於市， 以資生耳。” 上憐之， 有是賜。</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2월 15 일(기미) 1번째기사 풍해도 도관찰사 이은 이 편호 영전(營田)을 혁파할 것을 청하다</p>	<p>풍해도 도관찰사(豊海道都觀察使) 이은(李垠)이 편호 영전(編戶營田)을 혁파하 도록 청하였다. 글은 이러하였다. “밭에서 수조(收租)하고 호(戶)에서 공부(貢賦)를 내는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전적(田籍)과 호(戶)와 경계(經界)를 헤아려 인보(隣保)를 바로잡고 조세(租稅)를 정(定)하여 정렴(征斂)이 아울러 이 적의함을 얻으면 창름(倉廩) 이 가득찰 것입니다. 지난해 이래로 편호 영전(編戶營田)의 상호(上戶)는 종자 3두(斗)를, 중호(中戶)는 2두(斗)를, 소호(小戶)는 1두(斗)를 주어 가을에 이르 러 1두(斗)에 5두(斗)씩을 거두어 군수(軍須)에 보충하는데, 이것은 한때에 환 (患)을 방지하는 방책(方策)입니다. 신(臣)이 부서(部署)를 시행할 때를 당하여 널리 백성들의 폐단을 물어 보았더니, 모두 말하기를, ‘조세(租稅)와 공부(貢 簿)외에 또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폐단이 아니 니, 빌건대, 이를 혁파하소서.” 임금이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였다.</p>	<p>己未/豊海道都觀察使李垠請罷編戶營 田。 書曰： 田以收租， 戶以出賦尙矣。 國家度田 籍戶， 經界正、 隣保定， 租稅征斂， 並 得其宜， 倉廩盈溢。 頃年以來， 編戶 營田， 上戶給種三斗， 中戶二斗， 小戶 一斗， 至秋斗收五斗， 以補軍須， 此一 時備患之策也。 臣當行部， 廣詢民瘼， 皆曰：“租賦之外， 又有此法， 是非小 弊？” 乞罷之。 下政府議聞。</p>
<p>태종 27권, 14년</p>	<p>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고 동교(東郊)에서 매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낮에</p>	<p>辛酉/上奉上王， 觀放鷹于東郊。 晝至</p>

<p>(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2월 17일(신유) 1번째기사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p>	<p>광나루[廣津]에 이르러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악(女樂)을 연주하도록 하여 지극히 즐거워하였다. 경기 도관찰사 이은(李殷)·광주 목사(廣州牧使) 황녹(黃祿)·양주 부사(楊州府使) 이지(李漬)가 와서 주과(酒果)를 바쳤다. 이 앞서 이은·황녹에게 전지(傳旨)하여 와서 광나루에 이르렀다. 이때에 이르러 전지하였다. “올봄 강무(講武)에 마땅히 광주(廣州)·양근(楊根)·포천(抱川) 등지에 가겠다.”</p>	<p>廣津設酌，令奏女樂極權。京畿都觀察使李殷、廣州牧使黃祿、楊州府使李漬來獻酒果。先是，傳旨李殷、黃祿，來詣廣津，至是傳曰：“今春講武，當往廣州、楊根、抱川等處。”</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2월 18일(임술) 3번째기사 조원·홍유룡을 석방하다</p>	<p>조원(趙源)·홍유룡(洪有龍)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순금사(巡禁司)에서 아뢰었다. “홍유룡이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全羅道水軍都節制使)가 되었을 때 녹비 1백장과 녹포(鹿脯) 1만 속(束)을 둔 곳과 계모(繼母)의 상(喪)에 분상(奔喪)하지 않은 것을 본 증거인 20여 인을 잡아 와서 빙문(憑問)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명하였다. “이 일은 대체(大體)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또 농사 때가 이미 가까왔으니, 홍유룡과 조원을 석방하고 그 증거인도 잡아 오지 말도록 하라.”</p>	<p>命釋趙源、洪有龍。巡禁司啓：“有龍爲全羅水軍都節制使時，鹿皮一百張、鹿脯一萬束置處及不奔繼母之喪，證見二十餘人，拿來憑問何如？”命曰：“此事非關大體，且農時已逼，釋有龍、趙源等，其證見人，亦毋得拿來。”</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2월 27일(신미) 1번째기사 임금이 강원도에서 강무하고 녹양평과 포천현 매장원에 들르다</p>	<p>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고 강원도에서 강무(講武)하였다. 낮에 녹양평(綠楊坪)에 머물러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악(女樂)을 베풀고, 저녁에 포천현(抱川縣) 매장원(每場院)에 머물렀다.</p>	<p>辛未/上奉上王，講武于江原道。晝停于綠楊坪，置酒陳女樂。夕次抱川縣每場院。</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2월 27일(신미) 1번째기사 임금이 강원도에서 강무하고 녹양평과 포천현 매장원에 들르다</p>	<p>환궁(還宮)하였다. 낮에 냉정원(冷井院)에 머물러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악(女樂)을 베풀었다. 두 임금이 지극히 즐기다가 해가 저물어 신시(申時)에 이르</p>	<p>己卯/還宮。晝停于冷井院，置酒陳女樂，兩上極歡移日。至申時竝駕，駕</p>

<p>(永樂) 12년) 3월 6일 (기묘) 1번째기사 냉정원에서 연회를 베풀다가 늦게 환궁하다</p>	<p>러 아울러 동가(動駕)하였는데, 가전(駕前)에 여악(女樂)을 베풀어 밤이 되어 서야 돌아왔다.</p>	<p>前陳女樂，入夜乃還。</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3월 12 일(을유) 2번째기사 풍해도 빈민에게 가호 당 쌀 3섬씩 지급하다</p>	<p>풍해도(豐海道)의 빈민(貧民) 1백 80인에게 쌀을 각각 3석씩 내려 주었으니, 그 도(道)의 관찰사가 보고하였기 때문이었다.</p>	<p>賜豐海道貧民百八十人米各三石，因其道觀察使之報也。</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3월 15 일(무자) 1번째기사 임금이 양근으로 가는 길에 용진에 머물다. 수행 인원을 줄이다</p>	<p>임금의 양근(楊根)으로 가는 길에 용진(龍津)에 머물렀는데, 수가(隨駕)하는 각 품(品)을 줄이었다. 처음에 임금이 광주(廣州) 양근(楊根) 등지에 거둥하고자 하였으나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정지시켰다. 임금이 대간 장무(臺諫掌務)를 불러서 이관(李灌)에게 명하여 이를 꾸짖었다. “내가 항상 명하기를, ‘무릇 나에게 고(告)할 일이 있으면 조계(朝啓)에서 이를 말하고, 들어주지 않은 뒤에야 소청(疏請)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이제 헌사(憲司)에서 갑자기 상소(上疏)하였다. 이제부터 조계(朝啓)에 참여하지 말라. 또 내가 사냥에 나간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따라와서 알겠느냐?” 대답하기를, “어제 방방(放榜) 때에 전정(殿庭)에 입시(入侍)하여 전정 가운데에서 행진(行陳)의 그림[圖]을 보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행진(行陳)을 펴 놓았던 자를 조사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사인(舍人) 허규(許揆)를 시켜서 아뢰었다. “오랫동안 비가 와서 진흙탕이 되고, 또 봄 농사가 바야흐로 한창이니, 청컨대, 사냥하러 나가지 마소서.”</p>	<p>戊子/上如楊根，次于龍津，減省隨駕各品。初，上欲幸廣州、楊根等處，司憲府上疏止之。上召臺諫掌務，命李灌責之曰：“予常命曰：‘凡有告我之事，於朝啓言之，不聽然後，疏請可也。’今憲司遽然上疏，自今於朝啓，毋得參焉。且予之出畋，爾等何從而知？”對曰：“昨於放榜，入侍殿庭，得見庭中行陣之圖。”上命兵曹推布行陣者。議政府使舍人許揆啓曰：“久雨泥淖，且春事方興，請勿出畋。”上問：“政府何以知之？”揆對以出自贊成李叔蕃。上曰：“叔蕃不知我已放驅軍，故有是言耳。”仍命揆諭政府曰：“此行不過四日，何弊於民？”上見憲司</p>

	<p>임금이 정부에서 어떻게 이를 알았느냐고 물으니, 허규가 찬성(贊成) 이숙번(李叔蕃)에게서 나왔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이숙번이 내가 이미 구군(驅軍)을 놓아 보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였다.” 하고 이어서 허규에게 명하여 정부에 유시하였다. “이번 행차는 불과 나흘인데 어찌 백성들에게 폐가 되겠느냐.” 임금이 헌사(憲司)의 상소에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않아 백성들에게 해가 있다’는 말이 있음을 보고 말하였다. “지금 나의 행행(行幸)은 이와 같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헌사(憲司)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내가 마땅히 공정고(供正庫)로 하여금 반미(飯米)를 가져오게 하고, 매양 주정소(晝停所)나 숙소(宿所)에는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은 나아오지 말게 하겠다. 만약 혹시 이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으면 지신사(知申事)가 마땅히 그 견책을 받을 것이다.” 대간(臺諫)에서 예궐(詣闕)하여 청(請)하였다. “강무(講務)는 마땅히 일정한 장소를 정(定)해야 하며 삼가서 먼 곳으로 행행(行幸)하지 마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옛날 인군(人君)이 세 곳을 정하였으니, 만약 일정한 장소를 정한다면 충청도·풍해도·강원도로써 장소를 정하겠다.” 이날 승여(乘輿)가 이미 출발하였으나 양도(兩道)의 길이 진흙탕이 되어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니, 이응(李膺)·이관(李灌) 등에게 명하였다. “명일 환궁(還宮)하여 날이 맑기를 기다려서 사냥할지의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어라.” 이응 등이 대답하였다. “이번은 머물러서 날이 맑기를 기다렸다가 양근(楊根)에서 사냥하는 것이 때</p>	<p>疏有勞費不貲，有害於民之語曰：“今我之行，不如此，而憲司之言如此。予當令供正庫齋飯米，每於晝停、宿所，監司、守令毋得進詣。如或有之，知申事當受其責。” 臺諫詣闕請曰：“講武宜定常所，慎勿行幸遠處。” 上曰：“古之人君定三所。若定常所，則以忠淸、豐海、江原道爲所矣。” 是日乘輿既出而雨，道途泥濘顛躓。命李膺、李灌等曰：“明日還宮與待晴以獵便否，議聞。” 膺等對曰：“留此待晴，獵于楊根甚便。” 從之。</p>
--	--	---

	우 편하겠습시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3월 24 일(정유) 3번째기사 상호군 이숙묘의 모상 에 부의하다	상호군(上護軍) 이숙묘(李叔畝)에게 쌀·콩 20석과 종이 1백 50권을 내려 주었 으니, 그 어미 상[母喪]에 부의(賻儀)한 것이다. 또 관곽(棺槨)을 내려 주었으 니, 이숙묘가 진안군(鎭安君) 이방우(李芳雨)의 사위였기 때문이었다.	賜上護軍李叔畝米豆二十石、紙百五 十卷，賻母喪也。且賜棺槨。叔畝， 鎭安君芳雨之壻也。
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3월 24 일(정유) 4번째기사 왜인 사몽고로와 통사 최고음룡 등을 순금사 에 가두다었다가 풀어 주다	사몽고로(沙蒙古老)와 통사(通事) 최고음룡(崔古音龍)·서평관 녹사(西平館錄 事) 하지(河沚)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훈련관(訓練觀)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동평관(東平館)에 들어가서 무경(武經)을 강시(講試)하였는 데, 그때 종정무(宗貞茂)의 사왜(使倭) 등이 서평관에 우거(寓居)하였다. 사몽 고로가 술에 취하여 강청(講廳)에 들어가고자 하므로, 문을 지키는 자가 제지 하니, 찔던 칼을 뽑아서 찌르고 또 금란관(禁亂官) 순금사 사직(巡禁司司直) 현중인(玄中仁)의 등[背]을 찔러 유혈(流血)이 낭자하였으나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였던 까닭에 이를 가두었으나, 이윽고 모두 석방하였다.	命囚沙蒙古老與通事崔古音龍、西平 館錄事河沚于巡禁司。訓練觀因雨入 東平館，講試武經。時，宗貞茂使倭 等寓西平館，沙蒙古老被酒，欲入講 廳，門者止之，拔所佩刀刺之，又刺禁 亂官巡禁司司直玄仲仁之背，流血僅免 死，故囚之。既而，皆釋之。
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3월 28 일(신축) 3번째기사 임금이 동교에서 매산 냥을 구경하고 저자도 에서 고기 낚는 것을 구경하다	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고 동교(東郊)에 거둥하여 매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 고 이어서 저자도(楸子島)에서 관어(觀魚)하다가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악(女 樂)을 베풀어 극진히 즐거워하였다.	上奉上王幸東郊，觀放鷹，仍觀魚于楸 子島，設宴陳女樂盡歡。
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참의 황자후(黃子厚)에게 명하여 창포주(菖蒲酒)를 만들게 하였다.	命參議黃子厚，造菖蒲酒。

(永樂) 12년) 4월 8일 (신해) 2번째기사 참의 황자후에게 창포 주를 만들도록 명하다		
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4월 11 일(갑인) 1번째기사 상왕을 받들고 동교에 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고 동교(東郊)에 거둥하여 매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 고, 겸하여 제주(濟州)에서 바친 마필(馬匹)을 보았다. 연(輦)을 저자도(楮子 島) 강변에 머물고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악(女樂)을 베풀어 지극히 즐거워하 였다.	甲寅/上奉上王幸東郊, 觀放鷹, 兼視 濟州所貢馬匹, 駐輦于楮子島江邊, 設 宴陳女樂極歡。
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4월 19 일(임술)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방간이 보 낸 생강을 받고도 임 금에게 아뢰지 않는 심종을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의 죄를 청하였으니, 심종이 지난해 가을에 어가(御駕)를 따라 남행(南幸)하였을 때에 몰래 방간(芳幹)의 보낸 생강(生薑)을 받고도 임금에게 아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司憲府疏請靑原君(沈淙) [沈淙] 罪。 淙 [淙] 於去年秋, 扈駕南幸時, 潛受 芳幹所遺之薑, 不以上聞故也。
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4월 21 일(갑자) 1번째기사 관한성부사로 치사한 정요의 졸기	관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치사(致仕)한 정요(鄭曜)가 졸(卒)하였다. 정요는 초 계(草溪) 사람으로서 내시(內侍) 출신(出身)이었다. 무진년에 회군 2등 공신 (回軍二等功臣)이 되어 승정 대부(崇政大夫)에 이르렀고, 관한성(判漢城)으로 서 2대 치사(致仕)하도록 하였는데, 졸(卒)할 때 나이가 84세였다.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부의(賻儀)로 쌀·콩 30석과 종이 1백 권을 하사하고, 중관(中 官)을 보내어 조제(弔祭)하였다. 시호는 호희공(胡僖公)이라 하였고, 아들은 정갱(鄭賡)이었다.	甲子/判漢城府事致仕鄭曜卒。曜, 草 溪人, 出身內侍。歲戊辰, 爲回軍二 等功臣, 至崇政, 判漢城, 仍令致仕, 卒年八十四。輟朝三日, 賜賻米豆三 十石、紙百卷, 遣中官弔祭。諡胡僖 公。子賡。
태종 27권, 14년	일본(日本) 사객(使客)을 위로하여 연회(宴會)하는 법을 정하였다. 일본 국왕	定宴勞日本使客法。日本國王使臣則

<p>(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4월 22일(을축) 2번째기사 일본 사객을 접대하는 연회의 법을 정하다</p>	<p>(日本國王)의 사신(使臣)은 육조 판서(六曹判書)가, 제도(諸島)의 사객(使客)은 예조 당상관(禮曹堂上官)이 대접하는 것으로써 길이 항식(恒式)을 삼았다.</p>	<p>六曹判書， 諸島使客則禮曹堂上待之， 永爲恒式。</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4월 24일(정묘) 3번째기사 우홍부에게 고신을 주라고 명하다</p>	<p>우홍부(禹洪富)에게 고신(告身)을 주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쌀·콩 20석을 내려 주었다. 처음에 우홍부가 왕거을오미(王巨乙吾未)를 고(告)하지 않은 죄에 연좌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대제학(大提學) 김한로(金漢老)·계성군(鷄城君) 이내(李來)·한성부 윤(漢城府尹) 정역(鄭易) 등이 아뢰기를, “우홍부는 병이 위독하니, 원컨대, 고신(告身)을 되돌려 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우홍부는 시중(侍中) 우현보(禹玄寶)의 아들이었다. 우현보가 계해년 과거의 지공거(知貢舉)였는데 김한로 등이 모두 그 문생(門生)이었고, 임금도 잠저(潛邸)에 있을 때 또한 그 시험에 합격하였다.</p>	<p>命給禹洪富告身， 仍賜米豆二十石。 初， 洪富坐不告王巨乙吾未之罪， 至是， 大提學金漢老、 雞城君李來、 漢城府尹鄭易等啓曰：“洪富疾篤， 願賜還告身。” 上從之。 洪富， 侍中玄寶之子。 玄寶知癸亥貢舉， 漢老等皆其門生也。 上在潛邸， 亦中其試。</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4월 28일(신미) 2번째기사 첨총제 이화미의 즐기</p>	<p>첨총제(僉摠制) 이화미(李和美)의 상(喪)에 쌀·콩 30석과 종이 1백 권과 관곽(棺槨)을 부의(賻儀)로 내려 주었으니, 이화미는 청해백(靑海伯) 이지란(李之蘭)의 아들이었다. 그의 무재(武才)는 약간 아버지의 풍모가 있었다.</p>	<p>賜賻僉摠制李和美之喪， 米豆三十石、 紙百卷及棺槨。 和美， 靑海伯之蘭之子， 其武才略， 有父風。</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5월 3일(을해) 5번째기사 각도에 안치되어 있는 왜인의 신상명세서를 병조로 하여금 보고케 하다</p>	<p>병조에 명하여 각도에 안치(安置)한 왜인(倭人)을 존휼(存恤)하고, 겸하여 나온 사유(辭由)와 생산(生産)·물고(物故)의 수와 그 생리(生理)의 상태를 갖추어 아뢰도록 하였다.</p>	<p>命兵曹存恤各道安置倭人兼具出來辭由、 生産物故之數及其生理之狀以聞。</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5월 7일 (기묘) 1번째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철 주·감선하고 중외에 금주령을 내리다</p>	<p>철주(輟酒)2945) 하고 감선(減膳)2946) 하고 또 중외(中外)에서 술을 쓰는 것을 금지하였다. 예조에 명하여 무릇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실린 한재(旱災)를 구제(救濟)할 여러 가지 사목(事目)을 거행(舉行)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여, “방금(方今)의 일은 어떤 자가 원망하여 화기(和氣)를 상(傷)하게 하는 때문인가?” 하니, 예조 판서 성석인(成石因)이 대답하였다. “덕음(德音)을 선포하여 직언(直言)을 구(求)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예조 판서가 구언(求言)하기를 청하는데, 나는 이를 말하는 자가 ‘변정 도감(辨正都監)을 파(罷)하고 선군(船軍)을 완호(完護)하라.’는 따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나의 후설(喉舌)이 되니, 만약 말할 만한 일이 있거든 모조리 빠짐없이 진술(陳述)하라.” 하니, 좌대언(左代言) 유사눌(柳思訥)이 대답하였다. “지난번에 조신(朝臣)을 나누어 보내어 민막(民瘼)2947) 을 찾아 묻게 하였는데, 그 글을 모두 의정부(議政府)에 내렸습니다. 정부의 공사(公事)를 육조(六曹)에 나누어 맡길 때 이 글을 한쪽에 치워두고 거행(舉行)하지 않으니, 빌건대, 육조(六曹)에 내려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옳게 여겨 즉시 정부 사인(政府舍人)으로 하여금 골라 내어서 이조(吏曹)에 붙이게 하였다.</p>	<p>(己未) [己卯] /輟酒減膳, 且禁中外用酒。 命禮曹, 凡《文獻通考》所載救旱諸事, 靡不舉行。 上憂旱曰: “方今之事, 何者爲可怨而致傷和氣乎?” 禮曹判書成石因對曰: “宜布德音, 求直言。” 上謂代言等曰: “禮曹判書請求言, 予則以謂, 言之者, 不過曰罷辨正都監與船軍完護等事耳。 爾等爲我喉舌, 若有可言之事, 悉陳無隱。” 左代言柳思訥對曰: “日者, 分遣朝臣, 訪問民瘼, 其書皆下議政府, 政府公事分付六曹之時, 此書束之高閣, 未得舉行。 乞下六曹擬議施行。” 上然之, 卽令政府舍人擇出, 付于吏曹。</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5월 7일 (기묘) 4번째기사 각 도의 환과 고독으</p>	<p>노인(老人)을 진휼(賑恤)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아뢰었다. “각도의 경차관(敬差官)이 추천한 환과고독(鰥寡孤獨)으로서 능히 스스로 살아 가기가 어려운 자는 1천1백 56인 가운데 1백 1세의 2인에게는 쌀·콩 각각 7석씩을, 90세 이상의 7인에게는 쌀·콩 각각 5석씩을, 80세 이상에게는 쌀·콩 각각 3석씩을 진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강원도 경차관(江原道敬</p>	<p>賑老人。 戶曹啓: “各道敬差官所推, 鰥寡孤獨不能自存者一千一百五十六人內, 一百一歲二人, 米豆各七石; 九十歲以上七人, 米豆各五石; 八十歲以上, 米豆各三石式, 賑恤何如? 江原道</p>

<p>로 생계가 어려운 1,156명을 진휼하다</p>	<p>差官이 추천한 나이 30세가 지나도록 시집가지 못한 여자 12명을 각 고을에 있는 수속(收贖)한 물색(物色)으로써 자장(資裝)을 보태 주어서, 금년 안에 성혼(成婚)을 끝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敬差官所推， 年過三十歲未嫁女子十二， 以各官所在收贖物色， 補給資裝， 今年內畢成婚何如？” 從之。</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5월 12일(갑신) 1번째기사 시혜소에 전지 10결과 쌀 10석을 내려주다</p>	<p>전지(田地) 10결(結)과 쌀 10석을 시혜소(施惠所)에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p>	<p>甲申/命賜田五十結、米四十石于施惠所。</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6월 1일(임인) 1번째기사 82세의 걸식하는 사람에게 쌀 2석과 포 2필을 주다</p>	<p>걸식(乞食)하는 사람 이도마(李都麻)에게 쌀 2석과 포(布) 2필(匹)을 주었는데, 이도마의 그때 나이가 82세였다.</p>	<p>壬寅朔/賜乞食人李都麻米二石、布二匹。 都麻時年八十二歲。</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6월 6일(정미) 3번째기사 남교에서 토룡에게 제사지내다</p>	<p>남교(南郊)에서 토룡(土龍)에게 제사지냈다. 육조 판서(六曹判書)가 청하였다. “음양(陰陽)이 고르지 못하였으므로 오랫동안 약주(藥酒)를 끊었습니다. 신 등은 전하(殿下)가 근심과 피로로 병환이 나실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나는 오직 가뭄만을 걱정하지 않았으며, 성품이 술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다.” 여러 맹인(盲人)들에게 비오는 것을 점치게 하였다.</p>	<p>祭土龍於南郊。 六曹判書請曰：“陰陽不調， 久斷藥酒， 臣等恐殿下憂勞成疾。” 上曰：“予不唯憂旱， 性不嗜酒耳。” 令群盲卜雨。</p>
<p>태종 27권, 14년</p>	<p>변정 도감(辨正都監)에서 송사(訟事)를 듣는 것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경상</p>	<p>命停辨正都監聽訟。 慶尙道觀察使韓</p>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6월 6일 (정미) 5번째기사
 변정 도감의 노비 송사 처결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라고 명하다

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한옹(韓雍)이 보고하였다.
 “국가(國家)에서 변정 도감을 설치하고 달[朔]을 한정하여 판결(判決)하므로 송사하는 자가 농사(農事)를 돌아보지 않고 길에 내왕하는 자가 끊임이 없으며, 또 큰 가뭄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송사를 듣지 말고, 잠시 가을철이 되기를 기다리도록 하소서.”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 유관(柳觀)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날이 가물거나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天]의 운행(運行)입니다. 9년의 큰 물이나, 7년의 가뭄은 요(堯)임금과 탕(湯)임금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기(旱氣)가 몹시 심하여 산천(山川)이 바짝 말라버린 것은 주 선왕의 공구 수성(恐懼修省)할 바를 보인 것이요, 가뭄이 재앙이 되지 않고 백성이 병들어 죽는 자가 없는 것은 인정(仁政)을 시행함이 본래 민심(民心)에 흡족하여 원망함이 없는 까닭입니다. 삼대(三代) 이후로 역대(歷代)의 임금이 모두 재이(災異)를 만났는데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혹은 궁인(宮人)을 골라서 내보내고, 혹은 감膳(減膳)하고 철악(徹樂)하고, 혹은 죄수들을 잘 다스리고, 혹은 궁궐한 백성들을 진휼(賑恤)하여, 무릇 천심(天心)에 이르는 일을 행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진실로 먹는 것을 백성은 으뜸으로 여기고 백성은 오로지 나라의 근본(根本)이니, 좌시(坐視)만 하고 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옥이 생각하건대, 전하가 대소 원인(大小員人)을 불쌍히 생각하여 노비(奴婢)를 쟁송(爭訟)하고 동기(同氣)를 상해하므로, 그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여 도감(都監)을 세우고 기한을 정하여 결절(決絶)하도록 하였는데, 소송(訴訟)하는 자는 이욕(利慾)에 이끌리어 중외(中外)로 왕래하며, 소와 말에 짐을 싣고 길에 내왕하는 자가 끊임이 없으니, 그 사이에 어찌 원망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이 일은 비록 가뭄의 이유가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쌓여서 오래 되면 화기(和氣)를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뭄의 때를 당해서 오로지

雍報曰：“國家設辨正都監，限朔決絶，故訟者不顧農事，絡繹於道。且當大旱，不宜聽訟，姑待秋成。”
 司憲府大司憲柳觀等上疏，略曰：
 旱乾水溢，天之行也。九年之水、七年之旱，堯、湯之所不免。旱氣太甚，滌滌山川，宣王之所恐懼，而旱不爲災，民無捐瘠者，仁政之行素洽，民心無怨讟也。三代以降，歷世之君，凡遇災異，莫不恐懼修省，或簡出宮人，或減膳徹樂，或理囚徒，或賑窮乏，凡可以格天心者，靡不行之。誠以食者民天，民惟邦本，不可坐視而不救也。竊念，殿下憫大小員人爭訟奴婢，戕害同氣，欲革其弊，命立都監，定限決絶。訟者牽於利慾，中外往來，牛載馬馱，絡繹于塗，其間豈無怨咨者？此事雖非致旱之由，積之之久，足以感傷和氣。今當亢陽之候，專事爭訟，誠爲可慮。伏望六七月間，姑寢京外決訟，俟八月望後復之，亦未晚也。
 前藝文館大提學鄭以吾亦上言，請罷辨正都監。前判安邊都護府事李興上書曰：
 夫物聚則有爭，勢必然也。自古爭訟，

쟁송(爭訟)만을 일삼는 것은 참으로 염려됩니다. 옳드려 바라건대, 6,7월 사이에는 잠시 경외(京外)의 결송(決訟)을 중지하고 8월 보름 이후를 기다려서 다시 하여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전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정이오(鄭以吾)도 또한 상언(上言)하여 변정도감(辨正都監)을 과하도록 청하였고, 전 관안변도호부사(判安邊都護府事) 이흥(李興)이 상서(上書)하였다.

“무릇 물(物)이 모이면 다투는 것은 형세가 반드시 그러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쟁송(爭訟)은 끝이 나기 어려우니, 형조 도관(刑曹都官)을 설치하여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웠는데, 정축·무인년에 태조(太祖)가 전조(前朝) 말 겸병(兼并)의 해(害)를 염려하여 따로 도감(都監)을 세워서 여러 해 동안의 쟁송을 하나같이 모두 변정(辨定)하였으나, 아직 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전하가 즉위(卽位)한 이래로 교조(教條)를 닦고 밝혀서 유사(攸司)에게 책임지고 이루게 하였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한 자는 기내(畿內)에는 도관(都官)에서 지방에는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또한 변정(辨正)을 할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다시 도감(都監)을 세워서 인심(人心)을 분란(紛亂)하게 하여서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게 하겠습니까? 3월에 무정(務停)한 지가 오래 되는데, 하물며 6월에 먼곳 사람들이 한정된 달수의 명령을 듣고, 비록 농삿일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국령(國令)의 정한 시기를 놓칠까 심히 두려워하여 빌렸다고 일컫고 곡식을 메고 바삐 돌아다니며 폐농(廢農)하는 자가 많으니, 그 해(害)됨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또 인심(人心)이 화합한 뒤에 천지(天地)의 마음이 화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 가문 달에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각각 그 주장을 옳다고 하고 입을 삐죽이고 서로 힐난하면, 곧 인심이 어찌 화합하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전하가 만약 도감(都監)을 급히 개혁할 수 없다면, 잠정적으로 농한기를 기다려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難以紀極，爲設刑曹都官，責任賢能。歲丁丑戊寅，太祖慮前朝之季兼并之害，別立都監，積年爭訟，一皆辨定，然猶有未盡者。殿下卽位以來，修明教條，責成攸司，其冤抑未伸者有幾，內而都官，外而監司、守令亦可以辨正矣。何必更立都監，使人心紛擾，而不憚煩也？三月務停尙矣，況當六月，遠人聞限朔之令，雖知農務之當急，深恐國令之失期，稱貸贏糧，奔走廢農者多矣，其爲害不可勝言。且人心和，而後天地之心和。方此旱月，衆人聚首，各是其是，反唇相詰，則人心豈可謂之和乎？殿下若以都監爲不可遽革，姑待農隙，亦未晚矣。上皆優納之，命曰：“豪強之人，以詭計詐謀，壓良爲賤等事，使之辨正，期致無冤。今年冬月，各人奴婢，公文成給，已立法矣，何可遽革？然中外辨正姑停之，期以七月晦時，復許聽理。”

	<p>임금이 모두 좋다고 하여 받아들이고 명하였다.</p> <p>“호강(豪強)한 사람이 간사한 꾀로 양인(良人)을 억눌러 천인(賤人)으로 만드는 따위의 일을 변정(辨正)하여 원통함이 기필코 없게 하고, 금년 겨울에는 각각 노비 공문서(奴婢公文書)를 만들어 줄 것을 이미 입법(立法)하였으니, 어찌 갑자기 개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중외(中外)에서는 변정(辨正)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기필코 7월 그믐 때에 다시 청리(聽理)하도록 허락하라.”</p>	
<p>태종 27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6월 17일(무오) 1번째기사 재상의 장례에 주던 부의를 감하다</p>	<p>증부(贈賦)의 수(數)를 감(減)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박신(朴信)이 아뢰었다.</p> <p>“국가(國家)에서 재상(宰相)이 졸(卒)하였을 때, 1품 이상은 예장(禮葬)하고, 정2품은 부의(賻儀)로 쌀과 콩을 아울러 40석(石)으로 하고 종2품은 30석으로 하는 것이 예(例)입니다. 만약 흉년의 재앙이 있거나 군려(軍旅)의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각각 10석을 감하도록 하소서.”</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戊午/減贈賻之數。 戶曹判書朴信啓曰：“國家於宰相之卒，一品以上禮葬；正二品則賻米豆并四十石；從二品三十石例也。 如有凶荒之災、軍旅之事，則不可不慮，請各減十石。” 從之。</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7월 12일(계미) 1번째기사 예조의 건의로 공물의 수량을 임시로 늘리게 하다</p>	<p>호조 판서 박신(朴信)이 공액(貢額)을 더하도록 청하였다.</p> <p>임금이 말하였다.</p> <p>“지난번에 경(卿)이 더하도록 청하였으나, 나는 생각하건대,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별례(別例)로 독촉하여 바치게 한다면 쓰기에도 편하고 백성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p> <p>박신이 말하였다.</p> <p>“이제 진자(榛子)·밤[栗]·밀랍(蜜蠟) 따위의 물건은 아주 축적(蓄積)한 것이 없으니, 미리 수납(收納)하기를 기약하여 군박(窘迫)한 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p> <p>잠정적으로 액수(額數)를 더하도록 명하고, 기다려서 축적이 있게 되거든 감면하게 하였다.</p>	<p>癸未/戶曹判書朴信請增貢額， 上曰：“向卿請益， 予以謂俟其乏絕， 以別例督納， 則便於用而民不怨矣。” 信曰：“今計榛栗蜜蠟等物， 殊無蓄積， 不若預期收納， 不至窘迫也。” 命姑加額， 俟有蓄積蠲之。</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7월 12일(계미) 1번째기사</p>	<p>큰 비가 와서 천추절 하례(千秋節賀禮)를 정지하였다. 임금이,</p> <p>“신하가 되어서 마음대로 하례(賀禮)를 정지하는 것이 가한가?”</p>	<p>甲午/大雨， 停千秋賀禮。 上曰：“爲臣而擅停賀禮可乎?” 代言等對曰：“霑</p>

<p>(永樂) 12년) 7월 23일(갑오) 1번째기사 큰비가 와서 천추절 하례를 정지하다</p>	<p>하니, 대언(代言) 등이 대답하였다. “옷이 젖어 용의(容儀)를 잃게 되면 비록 천자(天子)라 하더라도 수조(受朝)에 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임금이 가뭄을 염려하여 오선(午膳)을 감하였다가 이날 복선(復膳)하였다.</p>	<p>服失容，則雖天子，不應受朝矣。” 初，上憂旱減午膳，是日復之。</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7월 28일(기해) 2번째기사 강원도 운반선 7척이 풍랑에 파선하여 미두 270석이 침몰되다</p>	<p>강원도 조선(漕船) 7척이 풍랑을 만나서 패몰(敗沒)하여 쌀·콩 2백 70석을 침수(沈水)하였다.</p>	<p>江原道漕船七艘遭風敗沒，沈水米豆二百七十石。</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7월 28일(기해) 3번째기사 한산 부원군 조영무의 졸기</p>	<p>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그 집에 거동하여 문병[視疾]하려고 하여 의장(儀仗)과 시위(侍衛)가 이미 준비되었는데, 숨이 끊어 졌다는 소문을 듣고 중지하였다. 심히 애도(哀悼)하여 소선(素膳)하고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쌀·콩 1백 석과 종이 2백 권을 부의(賻儀)하고 시호(諡號)를 충무(忠武)라고 하였다. 조영무가 죽자, 임금이 하운(河崙)에게 물었다. “대신(大臣)의 죽음에 3일 동안 정조(停朝)하는 것은 가벼운 것 같다. 내가 생각건대, 한(漢)나라 곽광(霍光)·당(唐)나라 위징(魏徵)의 죽음에 모두 5일 동안 철조(輟朝)하였는데, 경(卿)은 이를 아는가?” 대답하기를, “신은 잊어버렸습니다. 전하가 대신을 중히 여기는 뜻은 비록 지극하시나, 만약 5일 동안이나 하면 군국(軍國) 중사(重事)가 장차 엄체(淹滯)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p>	<p>漢山府院君趙英茂卒。上欲幸其第視疾，仗衛已備，聞氣絕而止。悼甚素膳，輟朝三日，賻米豆一百石、紙二百卷，賜諡忠武。英茂之卒也，上問河崙曰：“大臣之卒，停朝三日似輕。予思之，漢霍光、唐魏徵之卒，皆輟朝五日，卿知之乎？”對曰：“臣忘之矣。殿下重大臣之意雖至，若至五日，則軍國重事，將有淹滯之弊。”上然之，命右代言韓尙德致祭。英武質實好直言，任政無私，爲上所重。</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우대언(右代言) 한상덕(韓尙德)에게 명하여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조영무는 질실(質實)하고 바른 소리를 좋아하고 정사에 임하여 사정(私情)이 없었으므로 임금에게 중히 여기는 바가 되었다.</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8월 4일 (갑진) 2번째기사 전라도 운반선 66척이 태풍으로 파선, 2백여 명이 익사하고 미두 5800여석이 침몰되다</p>	<p>밤에 큰 바람이 불어 전라도 조선(漕船) 66척이 패몰(敗沒)하여 익사한 자가 2백여인었고, 침수(沈水)한 쌀·콩이 아울러 5천 8백여 석이었다. 7월에 행선(行船)은 옛사람이 꺼리던 바였는데, 이 앞서 호조(戶曹)에서 이문(移文)하기를, “7월 그믐 때 실어서 8월 초에 떠나 보내라.” 고 하여, 수군 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 정간(鄭幹)이 이문(移文)한 것을 따르다가 이러한 재앙(災殃)이 이르른 것이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호조에서 비록 절기(節氣)의 빠르고 늦은 것을 살피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이문(移文)하였더라도, 금년은 7월의 절후(節候)가 8월 14일에 다하는데, 봉행(奉行)하는 자가 능히 살피지 못하고 처리한 것이 미생(尾生)의 포주(抱柱)와 같았다. 정간으로 하여금 사마(私馬)를 타고 상경(上京)하게 하라.” 임금이 말하였다. “7월에 행선(行船)하는 것은 일찍이 교지(教旨)로 금지하였는데, 정간(鄭幹)은 절후를 살피지 않아서 배가 뒤집혀 패몰(敗沒)하는데 이르렀다. 그 부모 처자의 슬퍼하고 원망하는 정이 어찌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데 이르지 않겠느냐? 정간(鄭幹)을 대신할 자로서 모름지기 능한 자를 가려서 천거(薦舉)하라.” 이어서 헌부(憲府)에 명하였다. “이제부터 각도의 관기(官妓)는 월경(越境)하게 하지 말라. 여기는 자는 본관(本官)의 수령(守令)과 감사(監司)를 모두 교지(教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논죄(論罪)하라.” 배가 패몰(敗沒)할 때 진무(鎭撫)가 데리고 있던 관기(官妓)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이었다. 또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이지(李漬)를 전라도에</p>	<p>夜大風。全羅漕船六十六艘敗沒，溺死者二百餘人，沈水米豆并五千八百餘石。七月行船，古人所忌。先是，戶曹移文云：“七月晦時載船，八月初發送。”水軍都節制使鄭幹從移文，以致此災。上怒曰：“戶曹雖不審節氣早晚，刻期移文，今年則七月節候，盡於八月十四日，奉行者不能審處，若尾生之抱柱。其令幹騎私馬上京。”上曰：“七月行船，曾有教禁，鄭幹不審節候，以致覆沒。其父母妻子悲怨之情，豈不致傷和氣？其代鄭幹者，須擇能者薦之。”仍命憲府曰：“自今各道官妓毋令越境。違者本官守令及監司，皆以教旨不從論罪。”以敗船時，鎭撫所携官妓二人沒死故也。又遣判繕工監事李漬於全羅道，檢覆敗船時遺失軍器，究問沒水軍丁，賑卹其家。傳問專堤開鑿便否于承政院，李灌等對曰：“忠清漕運，皆輸沔川，不由安行梁，獨全羅漕運，必由是梁，然致敗恒在於群山等梁。若從河崙議，則一月朔望，潮</p>

	<p>보내어 배가 뒤집혀 패몰(敗沒)할 때에 유실한 군기(軍器)를 검사하고, 물에 빠진 군정(軍丁)을 구문(究問)하고 그 집에 술금(郵金)을 주었다. 순제(尊堤)를 개착(開鑿)하는 편부(便否)를 승정원(承政院)에 전(傳)하여 물으니, 이관(李灌) 등이 대답하였다.</p> <p>“충청도 조운(漕運)은 모두 면천(沔川)으로 운수하는데 안행량(安行梁)을 거치지 않으나, 오로지 전라도 조운(漕運)은 반드시 이 안행량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배가 패몰하기에 이르는 것은 항상 군산량(群山梁) 등지에 있습니다. 만약 하운(河崙)의 의논을 따른다면, 한 달에 초하루와 보름에 조수(潮水)가 그치므로 두 차례를 운수하고 오래도록 해문(海門)에 정박하니, 바람의 변(變)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하운(河崙)은 일찍이 먼 고을에서 가까운 경기 땅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전재(轉載)하는 방식을 힘써 주장하였으나, 그러나 경기의 백성들이 가을부터 봄까지 전조(田租)와 부역(賦役)이 거의 빈 날이 없는데 거기에다 전재(轉載)하는 역사를 더한다면, 어느 겨울에 생업(生業)을 다스리겠습니까?”</p> <p>임금이 말하였다.</p> <p>“내가 이미 알고 있다.”</p>	<p>水止輸二次，久泊海門，恐有風變。且崙曾力主自遠州至近圻以次轉載之策，然京畿之民，自秋徂春，田租賦役，殆無虛日，加之以轉載之役，則奚暇治生哉？”上曰：“予已知之矣。”</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8월 28일(무진)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전구서 제거가 되어 이영을 사사로이 남에게 준 허권을 논죄하다</p>	<p>사헌부에서 상호군(上護軍) 허권(許權)의 죄를 청하였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p> <p>“허권이 전구서 제거(典廐署提舉)가 되어 개초(蓋草) 3천여 속(束)을 사사로이 남에게 주었고, 또 사가(私家) 양(羊) 2마리를 길렀으니, 법으로 치죄(治罪)하는 것이 마땅하나,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으므로, 원컨대, 그 직(職)과 제거(提舉)의 직임을 파하고, 또 그 물건을 징수하여서 사풍(士風)을 권려하소서.”</p> <p>임금이 말하였다.</p> <p>“그가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고 남에게 주었으니, 다만 제거의 직만을 파하</p>	<p>司憲府請上護軍許權罪。啓曰：“權爲典廐署提舉，以蓋草三千餘束私與人，又養私羊二口，法當治罪，事在宥前。願罷其職與提舉之任，且徵其物，以勵士風。”上曰：“非其私用，乃惠於人也。”只罷提舉。</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9월 8일 (무인) 3번째기사 호조 판서 박신이 건 의한 과염법을 승인하다</p>	<p>라. 호조 판서 박신(朴信)이 과염법(課鹽法)을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소금은 백성들의 자뢰(資賴)하여 살아가는 것이니, 그 중함이 오곡(五穀)에 다음가는 까닭에 옛날에 과법(課法)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연해(沿海) 주군(州郡)에 공염간(貢鹽干)을 두고 사염세(私鹽稅)를 거두니, 그 수가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역(貿易)하는 것이 거개가 다 불긴(不緊)한 물건이므로 흥리(興利)하는 사람에게 많이 돌아갑니다. 또 각도 감사가 혹은 마음대로 옳지 않은 곳에 쓰기 때문에 나라에 보탬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각도의 염세(鹽稅)를 공조에 바치는 것과 그 도의 일년 경비를 제외하고, 평민으로 하여금 잡곡을 논하지 말고 가격을 감하여 역환(易換)하도록 허락하여서 군자(軍資)에 보충한다면, 민호(民戶)는 의염(義鹽)을 즐겨 얻을 것이며, 일년에 거두는 곡식은 1만여 석을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각도의 공염간(貢鹽干)이 많고 적은 것이 고르지 않고 거두는 세(稅)의 액수도 또한 다르니, 다시 참작하여 액수를 정하여서 그 역(役)을 고루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박신의 부국(富國)을 경영(經營)하는 방술(方術)이 대개 모두 이와 같았다.</p>	<p>戶曹判書朴信啓課鹽法。 啓曰：“鹽乃民之所資以生者，其重次於五穀，故古有課法。 今國家沿海州郡，置貢鹽干，又收私鹽稅，其數不爲不多。 然其貿易，率皆不緊之物，多歸興利之人，又各道監司或擅用於非處，故無補於國。 願自今將各道鹽稅，除工曹所納與其道一年經費外，許令平民勿論雜穀，減價易換，以補軍資，則民戶樂得義鹽，而一年所收之穀，不下萬餘石矣。 其各道貢鹽干多少不均，所收稅數亦異，更令參酌定額，以均其役。” 從之。 信之經營富國之術，類皆如此。</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9월 12일(임오)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동궁에게 몰래 매와 개를 바친 황상의 죄에 대해 상소하다</p>	<p>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여 상호군(上護軍) 황상(黃象)의 죄를 청하였으니, 황상이 매[鷹]와 개[犬]를 동궁(東宮)에 몰래 바쳤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보내도록 하였으니, 어리석게 논청(論請)하지 말라.”</p>	<p>司憲府上疏，請上護軍黃象罪，以象潛進鷹犬于東宮也。 上曰：“予嘗使遣之，毋庸論請。”</p>
<p>태종 28권, 14년</p>	<p>형조에서 사복시(司僕寺)의 마초(馬草)를 훔친 자를 자자(刺字)하도록 청하니,</p>	<p>刑曹請竊司僕馬草者刺字， 上曰：“今</p>

<p>(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9월 16일(병술) 5번째기사 형조에서 사복시의 마초를 훔친 자를 자자하도록 청하다</p>	<p>임금이 말하였다. “지금 반감(飯監)등이 혹시 주선(廚膳)을 훔치면 다만 외방에 내쫓도록 하는데, 마초(馬草) 40속(束)을 훔친 자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자자(刺字)를 가하니, 내 마음은 편안치 못하다. 그러나, 율(律)은 어길 수 없으나 굽혀서 용서하겠다.”</p>	<p>者飯監等或竊廚膳，止令黜外，至竊草四十束者，反加刺字，予心未安。然不可違律而枉宥也。”</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9월 21일(신묘) 4번째기사 왜인이 바치는 물건을 철저히 검사하도록 명하다</p>	<p>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왜객인(倭客人)의 바친 토물(土物)을 고찰하여 핵실하게 하였다. 박신(朴信)이 아뢰었다. “왜객(倭客)이 바친 약재(藥材)가 많이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값을 쳐주면 비용을 헛되이 하는 것이요, 주지 않으면 원망을 사게 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처음에 변별(辨別)하여 그 진위(眞僞)를 알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어찌 외인(外人)의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 왜인(倭人) 하나가 흑소환(黑小丸) 한 개를 바쳤는데, 이름은 우중주(牛中珠)라고 하였으나 너무 가볍고 광(光)이 없었으므로, 사람을 시켜 쪼개어 보니, 작은 박[小瓢]이어서 즉시 명하여 돌려 보냈다. 근래에 자주 대언(代言)에게 명하여 바치는 물건을 감독하게 하였으나, 아직도 속고 있는 것은 대언(代言)의 잘못이다. 이제부터 마땅히 조정(朝廷) 예부(禮部)에서 공헌(貢獻)하는 물건을 고찰하는 것같이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미 벌써 받은 것이면 잠정적으로 그 값을 주도록 하라.”</p>	<p>命承政院，考覈倭客人所獻土物。朴信啓曰：“倭客所獻藥材，多不堪用。酬直則虛費，否則取怨。”上曰：“初當辨知眞僞，豈可受外人之侮乎？向有一倭進一黑小丸，名爲牛中珠，而甚輕無光。令人碎之，則小瓢也，卽命回付。近者屢命代言，監所進之物，而尙爲所誑，是代言之過也。自今宜如朝廷禮部考貢獻之物，此則業已受之，姑與其直。”</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9월 22일(임진) 1번째기사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교외에서 신에게 제사</p>	<p>전사시(典祀寺)에 명하여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교외(郊外)에서 제사 지내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삼가 《예기(禮記)》 월령(月令)을 보니, ‘천자(天子)가 군복(軍服)을 입고 궁시(弓矢)를 잡고 사냥하여, 주사(主祀)에게 명하여 짐승을 사방(四方)의 신(神)에게 제사지낸다.’고 하였고,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이르기를, ‘제후(諸侯)의 나라는 비록 일방(一方)에 있으나, 그러나 국내(國內)에서도 또한 동서 남</p>	<p>壬辰/命典祀寺以獵禽祭於郊。禮曹啓：“謹按《禮記》《月令》，天子厲節執弓矢以獵，命主祀祭禽于四方之神。《文獻通考》曰：‘諸侯之國雖居一方，然國內亦有東西南北，亦隨四方而望祭於其方也。望祭四方，則五方</p>

<p>지내도록 전사시에 명하다</p>	<p>북이 있으므로 또한 사방(四方)에 따라서 그 방위에 망제(望祭)한다. 사방(四方)에 망제(望祭)하면 오방(五方)의 신(神)·오행(五行)의 신(神) 및 산림 천택(山林川澤)의 신(神)이 모두 그 가운데 있으니, 진실로 또 나누어서 넷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빌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춘추 강무(春秋講武)에는 전사관(典祀官)에 명하여 사냥하는 땅에서 잡은 짐승을 가지고 교외(郊外)에서 제사하여 사방(四方)의 신(神)에게 보답하소서.”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p>	<p>之神、五行之神及山林川澤之神，皆在其中矣，固不可又分而爲四也。乞依此制，春秋講武，命典祀官，以獵地所獵之禽，祭於郊以報四方之神。”故有是命。</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윤9월 3일(계묘) 2번째기사 예조의 건의로 사냥해서 잡은 짐승을 종묘에 천신하다</p>	<p>예조에서 아뢰었다. “사냥[蒐狩]에서 잡은 짐승은 날을 가리지 말고 즉시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고, 만약 삭망일(朔望日)을 만나면 겸하여 천신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蒐狩所獲之禽，不卜日即薦于宗廟，若值朔望日，則兼薦。”從之。</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윤9월 4일(갑진) 3번째기사 잡은 짐승을 역마를 뛰워 종묘에 천신하고 전사관으로 하여금 사방의 귀신에게 날짐승을 제사하게 하다</p>	<p>말을 달려서 종묘(宗廟)에 금수(禽獸)를 천신(薦新)하고, 인하여 전사관(典祀官)에 명하여 사방지신(四方之神)에게 날짐승을 제사지내게 하였다.</p>	<p>馳薦禽獸于宗廟，仍命典祀官祭禽于四方之神。</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윤9월 7</p>	<p>횡천(橫川) 사기소(砂器所)에 머물렀다. 수종(隨從)한 신하와 군사(軍士)들에게 5일간의 식량을 주라고 명하였다. 강원도 도관찰사 이안우(李安愚)가 말 1필과 매 3련을 바치고,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이승간(李承幹)이 사냥개[田犬]</p>	<p>丁未/次橫川砂器所，命給從臣、軍士五日糧。江原道都觀察使李安愚獻馬一匹、鷹三連，判原州牧事李承幹獻田</p>

<p>일(정미) 1번째기사 횡천 사기소에 머무르 다</p>	<p>를 바쳤다.</p>	<p>犬。</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윤9월 14일(갑인) 1번째기사 원주 각림사에 거둥하 다</p>	<p>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거둥하였으니, 잠저(潛邸) 때 옛날 공부하던 곳 이었다. 절의 중에게 채단(綵段)·홍초(紅綃)를 각각 3필씩 내려 주고, 쌀과 콩 아울러 1백 석을 내려 주고, 전지(田地) 1백 결(結)과 노비(奴婢) 50구(口)를 더주고, 절의 노비 등에게 쌀과 콩 아울러 30석을 내려 주었다.</p>	<p>甲寅/幸原州覺林寺， 潛邸舊學之地 也。 賜寺僧綵段紅綃各三匹、米豆并 一百石， 加給田一百結、奴婢五十口， 賜寺奴婢等米豆并三十石。</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윤9월 28일(무진) 1번째기사 상왕을 맞아 광연루에 서 술자리를 베풀다</p>	<p>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고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효 령 대군(孝寧大君)과 유사눌(柳思訥)을 보내어 상왕(上王)을 봉영(奉迎)하였다. 여러 종친(宗親)을 불러서 격구(擊毬)하였다.</p>	<p>戊辰/上奉上王， 置酒于廣延樓下。 遣 孝寧大君及柳思訥， 奉迎上王， 召諸宗 親擊毬。</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10월 6 일(병자) 3번째기사 상당군 이애의 졸기</p>	<p>상당군(上黨君) 이애(李夔)가 졸(卒)하였다. 이애는 옛이름이 이백경(李伯卿)이 있었는데, 경(卿)자가 상왕(上王)의 휘(諱)와 소리가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이저(李佇)로 고쳤으나, 저(佇)자가 또 세자(世子)의 휘(諱)와 소리가 서로 비 슷하였기 때문에 이애로 고쳤다. 청주(淸州) 사람으로서 이거이(李居易)의 아 들인데, 태조(太祖)의 맏딸 경신 궁주(慶愼宮主)에게 장가들었다. 기개가 호매 (豪邁)하여 정사 좌명 공신(定社佐命功臣)이 되어 권세가赫赫(赫赫)하였다. 갑신년에 아버의 죄 때문에 함주(咸州)에 귀양갔다가, 을유년에 이천(利川)으 로 양이(量移)되었고, 또 임강(臨江)으로 옮겼다. 경인년에 소환(召還)되었으 나, 아버의 상(喪)을 당하여 진천(鎭川)에 있다가 병(病)으로 졸(卒)하였는데 나이가 52세였다. 임금이 부음(訃音)을 듣고 몹시 슬퍼하여, “지난적에 이거이의 연고로 간언(間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마음에 다</p>	<p>上黨君李夔卒。 夔古名伯卿， 卿字與 上王諱聲相近， 故改佇， 佇字又與世子 諱聲相近， 故改夔。 淸州人， 居易之 子， 尚太祖長女慶愼宮主。 氣概豪邁， 爲定社佐命功臣， 權勢赫赫。 歲甲申， 以父罪竄于咸州， 乙酉量移利川， 又移 臨江， 庚寅召還。 丁父憂， 居鎭川， 以病卒， 年五十二。 上聞訃， 悼甚曰： “向以居易之故， 不無間言， 然極知其 心無他， 擬俟服闋召還， 何遽至此？” 輟朝三日， 致賻米豆各五十石、紙一百</p>

	<p>른 뜻이 없는 것을 다 알았으므로 복제(服制)를 끝마치기를 기다려 소환(召還)하려고 생각하였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p> <p>하고, 철조(輟朝)하기를 3일 동안 하고, 부의(賻儀)로 쌀·콩 각각 50석과 종이 1백 50권(卷)을 주고, 시호(諡號)를 경숙(景肅)이라 주고 대언(代言)을 보내어 사제(賜祭) 하였다.</p>	<p>五十卷，贈諡景肅，遣代言賜祭。</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1월 2일(신축) 1번째기사</p> <p>동지에 잔치를 베푸니 권희달과 박자청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p>	<p>동지(冬至)였으므로 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고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술 자리를 베풀고, 이어서 여러 신하에게 돈화문(敦化門) 안에서 잔치를 내려 주었다. 잔치가 과하니, 여러 신하들이 사은(謝恩)하고자 하여 함께 전정(殿庭)으로 들어가는데, 총제(摠制) 권희달(權希達)이 술에 취하여 여러 조(曹)를 돌아보니, 참의(參議) 반서(班序)의 대신(大臣)이 녹사(錄事)를 불러서 예조(禮曹)에 고(告)하였다. 박자청(朴子靑)이 듣고서 이를 금지시키니, 권희달이 노하여 욕을 하였다. 박자청도 술기운으로 언성(言聲)을 높여서 권희달을 꾸짖고 이를 때리고자 하니, 권희달이 말을 순하게 하여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으므로 박자청이 그제서야 그만두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하였다.</p> <p>“박자청의 광포(狂暴)함이 도리어 권희달보다 지나치다.”</p> <p>다음날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였다.</p> <p>“재상(宰相)은 인주(人主)의 고굉(股肱)이요, 조정(朝廷)의 의표(儀表)이니, 행동(行)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자청·권희달이 전정(殿庭)에 반열(班列)하여 서서 사사로이 서로 분(憤)을 내어, 처음에는 고성(高聲)으로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는 부여잡고서 꾸짖고 욕하였으니, 그 조정의 기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법을 업신여기고 예를 허물어뜨림이 심하였습니다.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서 죄를 다스려서 조정을 바로잡으소서.”</p> <p>임금이 두 사람의 성질이 본래 광포(狂暴)하여 죽히 죄를 가(加)할 것이 못된다고 하여, 다만 명하여 가노(家奴)를 각각 10명씩 의금부(義禁府)에 가두도록 하였다. 헌사(憲司)에서도 또한 소청(疏請)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p>	<p>辛丑/冬至。 上奉上王置酒廣延樓下，仍賜群臣宴于敦化門內。 宴罷，群臣欲謝恩，俱入殿庭，摠制權希達被酒，顧見諸曹參議班序太近，呼錄事告禮曹。 朴子靑聞而禁之，希達怒辱之，子靑亦使酒，厲聲罵希達欲毆之，希達遜辭跪謝，子靑乃止。 觀者笑曰：“子靑之狂，反過希達。” 翼日，司諫院上疏曰：</p> <p>宰相人主之股肱，朝廷之儀表，不可不慎重也。 子靑、希達班立殿庭，私相發憤，始則高聲相詰，終則扶執罵辱，其不畏朝綱，慢法毀禮甚矣。 請下攸司治罪，以正朝廷。</p> <p>上以二人性本狂暴，不足加罪，只命囚家奴各十名于義禁府。 憲司亦疏請，不聽。</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1월 11일(경술) 3번째기사 납향 제사에 쓸 금수를 사냥하기 위해 군사를 파견하기를 청하다</p>	<p>다. 병조 판서 김승주(金承霏)가 금수(禽獸)를 사냥하여 잡아서 납제(臘祭)에 공상(供上)하기를 청하였다. 아뢰기를, “납향(臘享)이 가까우니, 청컨대, 군사를 보내어 나가 사냥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예문(禮文)을 들어 말하였다. “납(臘)이란 것은 엽(獵)이다. 금수(禽獸)를 사냥하여 잡아서 제사(祭祀)에 이바지 하기 때문에 이름을 납(臘)이라 한다. 그러나, 춘추 강무(春秋講武) 때에 짐승을 종묘(宗廟)에 바치고 또 희생(犧牲)이 있으니, 어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변(籩)·두(豆)를 채우겠느냐?” 명하여 금후로는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는 물건은 모름지기 그 달의 절기(節氣)에 미쳐서 바치도록 하였다.</p>	<p>兵曹判書金承霏請獵取禽獸，以供臘祭。啓曰：“臘享近矣，請遣軍士出獵。”上舉禮文曰：“臘者，獵也。獵取禽獸，以供祭祀，故名爲臘，然春秋講武，獻禽于廟，且有犧牲，何必取禽以充籩豆？”命今後宗廟薦新之物，須及其月之節薦進。</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1월 11일(경술) 4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전 판상주목사 이유의 사소한 뇌물 공여를 문경으로 탄핵하다</p>	<p>헌부(憲府)에서 전 판상주목사(判尙州牧事) 이유(李愔)가 여름철에 제방(堤防)을 터뜨려서 고기를 잡아 젓[醢]을 만들어 싸고 꾸러서 권귀(權貴)를 섬긴 죄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유가 이와 같았다면 진실로 논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털끝만한 조그만 죄를 풍문(風聞)으로 들추어 내기를 싫어한 지가 오래인데, 헌부(憲府)에서 어디에서 알았느냐?”</p>	<p>憲府請前判尙州牧事李愔於夏月，決堤捕魚爲醢，包苴以事權貴之罪，上曰：“愔若如此，固宜論之，予厭毛舉風聞久矣。憲府何從而知乎？”</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1월 12일(신해) 1번째기사 노비 결승으로 가전이나 신문고를 쳐서 신정하는 것을 금하다</p>	<p>임금이 인덕궁(仁德宮)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격구(擊毬)하여 지극히 즐기었는데, 모두 일어나 춤을 추었고, 세자(世子)와 종친(宗親)이 참여하였다. 환궁(還宮)할 때 가전(駕前)에서 신정(申呈)한 것이 60여 건이었는데 모두 변정(辨正)하여 이미 판결한 사건이었다. 육조(六曹)에 내려 분간(分揀)하라고 명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 육조(六曹)에 분송(分送)한 신정 고장(申呈告狀) 안에 변정 도감(辨正都監)에서 문서(文書)를 태워버려서 빙고(憑考)할 길이 없는 사건은 논죄를 없</p>	<p>辛亥/上詣仁德宮置酒，擊毬極歡，皆起舞，世子宗親與焉。還宮時，駕前申呈者六十餘道，皆辨正已決事也。命下六曹分揀。上曰：“今分送六曹申呈告狀內，辨正都監燒毀文書，憑考無門事，除論罪，竝皆退狀。且如此事，駕前及擊鼓，皆令禁之。”</p>

	<p>애고 아울러 모두 퇴장(退狀)하라. 또 이와 같은 사건을 가전(駕前)이나 격고(擊鼓)하여 신정(申呈)하는 것은 모두 이를 금지하도록 하라.”</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2월 1일(경오) 2번째기사 사치하고 호려하게 하는 것을 금하다</p>	<p>사치[侈靡]하는 것을 금(禁)하였다. 궁중의 자리[席子]에는 일찍이 자주빛 능단(綾緞)을 사용하여 가장자리의 네 모서리에 선을 둘렀는데, 또한 비단으로 꾸민 것이라 하여 임금이 그 사치스럽고 무익(無益)한 것을 싫어하여, 남빛 생초(生絹)로써 자주빛 능단을 대신하게 하여 비단으로 꾸미는 것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강무(講武) 때 장전(帳殿)의 행보석(行步席)에도 또한 백문석(白紋席)을 사용하고, 진상 침석(進上寢席)에는 다만 네 가장자리에만 무늬를 넣게 하였다. 또 궁내에서 신료(臣僚)에게 연회(宴會)하는 과상(果床)에는 지화(紙花)를 사용하고 어람 홀기(御覽笏記)에는 홍룡의(紅綾衣)를 없애고 능화지(綾花紙)로써 대신하라고 명하였다. 대소 조회(大小朝會)에서 재내 대군(在內大君)과 부마 계군(駙馬諸君)은 세자(世子)의 막차(幕次)에 나아가서 동성 부원군(同姓府院君)과 이성 부원군(異姓府院君)이 하나의 항렬(行列)에서 행례(行禮)하라고 명하였다.</p>	<p>禁侈靡。 宮中席子嘗用紫綾， 緣邊四隅亦以錦飾。 上惡其侈而無益， 命以藍絹代紫綾， 除錦飾。 講武帳殿行步席， 亦用白紋席， 進上寢席， 只令四邊有紋。 且命內宴臣僚果床用紙花， 御覽笏記， 除紅綾衣， 代以綾花紙。 命大小朝會， 在內大君、 駙馬、 諸君就世子幕次， 同異姓府院君一行行禮。</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2월 23일(임진) 1번째기사 침장고와 빙고를 혁파하고, 그 일을 다방과 내시헌에 맡기다</p>	<p>침장고(沈藏庫)를 혁파하고, 양전(兩殿)의 내주(內廚) 소채(蔬菜)는 다방(茶房)으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였다. 건원릉(健元陵)·문소전(文昭殿)·종묘(宗廟)·사직제(社稷祭)의 소채(蔬菜)는 전사시(典祀寺)에서 공급하게 하고, 모든 연향(宴享)의 용도는 예빈시(禮賓寺)에서 공급하게 하였다. 또 빙고(氷庫)를 혁파하고 내시원(內侍院)으로 하여금 이를 맡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이제 침장고(沈藏庫)를 다방(茶房)에 이속(移屬)하였으니, 청컨대, 침장고의 미포(米布)를 출납(出納)하는 예에 의하여 다방(茶房)으로 하여금 청대(請臺)하여 출납(出納)하게 하고, 인신(印信)은 다방(茶房)의 인(印)을 쓰고, 그 영사(令史)는 사膳서(司膳署)에 속한 자 외에 권지 직장(權知直長) 5인과 영사(令史) 5인을 다방(茶房)에 붙이어 일을 맡기고 부리되, 거관(去官)하기에 이를 때에는 본서(本署)의 차년 개월(差年箇月)을 쓰소서.”</p>	<p>壬辰/革沈藏庫， 兩殿內廚蔬菜， 令茶房供之； 健元陵、 文昭殿、 宗廟、 社稷祭蔬菜， 典祀寺供之； 凡宴享之用， 禮賓寺供之。 又革氷庫， 令內侍院掌之。 禮曹啓曰：“今者沈藏庫移屬茶房， 請依沈藏庫米布出納之例， 令茶房請臺出納， 印信則用茶房之印， 其令史屬司膳署外， 權知直長五人及令史五人， 屬於茶房任使， 至去官時， 用本署差年箇月。” 從之。</p>

<p>태종 28권, 14년 (1414 갑오 / 명 영락 (永樂) 12년) 12월 24 일(계사) 4번째기사 예조의 건의 대로 내 시 다방에 대해서 근 무일수를 인정해 주는 법을 정하다</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예조에서 내시(內侍)·다방(茶房)의 도(到)를 주는 법을 아뢰었다. “춘추 강무(春秋講武)에 수가(隨駕)하기를 1일 하면 3도(到)를 주고, 기타 시 위(侍衛)와 월령(月令)·별좌(別坐)·각 차비(差備)에는 매 1일에 1도(到)를 주소 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內侍茶房給到之法：“春秋講武 隨駕，一日給三到，其他侍衛及月令別 坐、各差備，每一日給一到。”從之。</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월 16 일(을묘) 1번째기사 약산의 성 쌓는 일과 의원들의 의술에 관해 논평하다</p>	<p>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를 인견하고 약산(藥山)에 성 쌓을 일을 의논하였 다.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고, 이조 참의 허조(許稠)에게 성자(城子)의 형상을 살펴본 것을 물으니, 허조가 대답하였다. “성을 쌓을 만한 곳을 몇 군데 더 얻었습니다.” 그 대답이 임금의 뜻에 맞지 않으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의 간 것은 단지 성을 쌓을 만한 곳을 찾는 것만 아니라, 지세의 평탄하고 험한 것과 인구가 많고 적은 것과 군량이 많고 적은 것을 살펴서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임금이 또 좌·우(左右)에 일렀다. “오늘날 의학자[醫家]들은 약방서(藥方書)에 밝지 못하다. 양홍달(楊弘達)과 조청(曹聽) 같은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궁중에서 여남은 살 되는 아이가 일 찍이 병이 났는데, 조청에게 약을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더니, 곧 성인(成人) 들이 복용하는 약과 같은 것을 지어 왔기에, 나는 약이 같지 않은 것을 이상 히 여겨 사람을 시켜 이것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방서(方書)에서 소아(小兒) 라 함은 바로 5, 6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상고한 것이 없을까 염려하여 두루 방서(方書)를 열람하였더니, 《천금방(千</p>	<p>乙卯/引見議政府及六曹， 議城藥山， 仍置酒。 上問吏曹參議許稠以相視城 子之狀，稠對以加得可築城者數處，對 未稱旨。 上曰：“卿之行，不但覓可城 之處，宜相地勢夷險、人口衆寡、糧餉 多少，以爲可守於經久矣。” 上謂左右 曰：“今醫家不曉方書，如楊弘達、曹 聽亦然。 宮中有十餘歲兒嘗病，命聽 進藥，乃與成人所服之劑同。 吾訝其 不同，使人問之，對以：‘方稱小兒，乃 指五六歲也。’ 然猶慮其無稽，徧閱方 書，《千金方》云：‘二三歲稱嬰兒，十 歲以下稱小兒，十五以下稱少兒。’ 故 以示於聽，聽乃愧服。 若此所爲，豈 不誤人？ 且藥(材) [材] 之眞僞，亦難 知之。 如昔者以塗壁紙爲破古紙，甚</p>

	<p>金方》에 이르기를, ‘2, 3세는 영아(嬰兒)라 하고, 10세 이하를 소아(小兒)라 하고, 15세 이하를 소아(少兒)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조청에게 보여 주었더니, 조청이 곧 부끄러워 굴복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어찌 사람을 그르치지 않겠는가? 또 약재의 진위(眞僞)도 또한 알기 어렵다. 옛날에 도벽지(塗壁紙)를 파고지(破古紙)라 함과 같은 것도 매우 가소롭다. 대체로 의업(醫業)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본초(本草)를 배워서 약성(藥性)의 한열(寒熱)을 알아야만 거의 차오가 없을 것이다. 일찍이 본초로써 시험을 하도록 명하였는데, 의학한 권의 책도 매우 긴요하고 절실한 것이다.”</p> <p>인하여 일찍이 약을 마심으로 인하여 여러 번 환후가 상쾌해진 연고를 말하니, 좌의정 남재(南在)가 대답하였다.</p> <p>“금석(金石)의 약 뿐만 아니라 비록 초목(草木)의 약이라 하더라도, 또한 가벼히 복용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p> <p>임금이 옳게 여기었다.</p>	<p>爲可笑。大抵業醫，須先學《本草》，備諳藥性寒熱，庶致不差。嘗命以本草爲試，醫學一書，甚是緊切。”因語以曾因飲藥，屢致爽候之故，左議政南在對曰：“不但金石之藥，雖草木之藥，亦不可輕服。”上然之。</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월 16일(을묘) 2번째기사 허조가 찬한 종묘 작헌 의주에 대해 하운 등과 논하다</p>	<p>우부대언(右副代言) 서선(徐選)이 예조에서 올린 종묘 작헌 의주(宗廟酌獻儀註)를 아뢰었다. 임금이 영의정부사 하운을 보고 이것을 물으니, 하운이 대답하였다.</p> <p>“이것은 신이 잘 모르는 일이지만, 곧 허조(許稠)가 찬(撰)한 것입니다. 《당송의(唐宋儀)》에는 ‘작헌(酌獻)할 때 그 실(室)에서 약간 물러 서서 서쪽에서 재배(再拜)하고, 약간 동쪽에서 재배한다.’는 글이 있는데 전조에서 그대로 따랐으며, 5실(五室) 이외에도 또 공덕이 있어 옮기지 않는 신주가 아울러 11실이 되므로, 절하는 수가 매우 많아 역대의 임금이 예를 행하기를 꺼려하여, 혹은 한해에 한 차례 들어가거나, 혹은 세대가 끝나도록 들어가지 않아서, 종묘에 들어가는 일을 광세(曠世)의 성전(盛典)으로 삼게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삼가 황조(皇朝)에서 반강(頒降)한 예제(禮制)를 살펴 보건대, 모든 주현(州縣)의 성황신(城隍神)의 제사에는 참신(參神)과 사신(辭神)의 두 차례에 걸</p>	<p>右副代言徐選啓禮曹所上宗廟酌獻儀註，上目領議政府事河崙而問之，崙對曰：“此，臣所不知，乃許稠之所撰也。唐、宋儀有酌獻其室，退立少西再拜，少東再拜之文，前朝仍之。五室之外，又有功德不遷之主，并十一室，拜數極多。歷代之君，憚於行禮，或一歲一入，或終世不入，至令以入廟爲曠世盛典。謹按，皇朝頒降禮制，凡州縣城隍之祀，有參神、辭神二次再拜之文。臣於太祖附廟之際，詳定以聞，曾蒙施行。今稠以皇朝公(候)</p>

	<p>쳐 재배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신이 태조(太祖)를 부묘(附廟)할 때에 상정(詳定)하여 아뢰어 일찍이 윤희를 받아서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허조는 황조(皇朝)의 공후(公侯) 제례(祭禮)에 ‘한 차례의 헌작이 겨우 끝나면 섬들로 나아가 북향하고 재배한다.’는 예문(禮文)을 가지고 예(例)를 들어서 청하지만, 그러나, 술을 권함은 곧 독축(讀祝)이 끝나자마자 신위(神位)마다 재배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곧 여러 신위에 모두 작헌하고 나서 이에 곧 절하고 권하게 되었으니,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참신(參神)과 사신(辭神)엔 모두 서쪽을 향하여 절하게 되어 있는데, 홀로 작헌(酌獻)의 절만을 북쪽을 향하는 것도 또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당(唐)·송(宋)의 제도도 아니요, 또 황조(皇朝)의 예전(禮典)도 아닙니다. 또 어찌 황조(皇朝)의 공후(公侯)가 민사(民社)를 업신여기는 자가 아닌 것을 알겠습니까?”</p> <p>허조가 아뢰었다.</p> <p>“무릇 예제(禮制)의 빼고 더함은 적의(適宜)한 데 따라서 중정(中正)에 맞추는 것이니, 어찌 망령되게 자기 뜻대로 행하고 옛법을 모두 폐지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옛사람의 성제(盛制)를 얻어 볼 수 없게 하겠습니까?”</p> <p>하윤이 잠자코 가만히 있으니, 남재(南在)가 말하였다.</p> <p>“공자(孔子)가 ‘종묘의 예는 번거로우면 게을러지고, 간략하면 소홀해진다.’고 하였으니, 번거롭지도 않고 간략하지도 않아야 오래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임금이 말하였다.</p> <p>“영의정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요사이 항상 비눅(鼻衄)을 앓기 때문에 혹시 종묘에 들어가 작헌할 때에 갑자기 피가 나올까 두려워 감히 울주(鬯酒)를 붓지 못하고, 세자로 하여금 울주(鬯酒)를 붓는 것을 섭행(攝行)하도록 하였는데, 행사 다음날 비눅(鼻衄)이 바로 나왔다. 만약 제사지낼 때 피가 나왔다면 어찌 혐의스럽지 않았겠는가?”</p> <p>그러나, 허조(許稠)는 고문(古文)을 끌어다가 증거로 하여 고집부리며 태도를</p>	<p>[侯] 祭禮有一獻纔畢，就階北向再拜之文，援例以請，然以爲勸酒則宜讀祝纔畢，而逐位再拜，今乃盡獻諸位，方乃拜勸，似爲不倫。且參神、辭神皆向西而拜，獨獻酌之拜向北，亦似無稽。既非唐、宋之制，又非皇朝之典，又安知皇朝公(侯) [侯]，非爲無民社者乎?” 稠啓曰：“凡禮制損益，從宜適中，豈可妄行己意，盡廢古法，使後人，無從得見古人盛制哉?” 嵩默然。南在曰：“孔子稱宗廟之禮，煩則怠，簡則慢，不煩不簡，乃可久行。” 上曰：“領議政之言誠然。近日常患鼻衄，故恐或入廟酌獻之際猝出，不敢灌鬯，令世子攝行灌鬯，行事翼日鼻衄乃出。若當祭而衄，豈不慊哉?” 然稠議援據古文，猶執不改。其儀注曰：歷代宗廟，酌獻後拜禮。唐因周制，每酌獻後，神前北向拜，宋一依唐制，《文公家禮》亦同。朝廷公(侯) [侯]，祀先儀注，酌獻後復位北向拜，前朝依唐制，每酌獻後，神前北向拜。本朝國初，亦依唐、宋制，每酌獻後，神位前北向拜。癸巳年詳定儀注，酌獻後降復位西向拜。竊謂，酌</p>
--	--	---

	<p>고치지 않았다. 그 의주(儀注)는 이러하였다.</p> <p>“역대로 종묘(宗廟)에서는 작헌(酌獻)한 후에 배례하였습니다. 당(唐)나라는 주(周)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작헌한 후마다 신주(神主) 앞에서 북향하여 배례하였고, 송나라는 하나같이 당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였고, 《문공가례(文公家禮)》도 또한 같습니다. 조정(朝廷)의 《공후사선의주(公侯祀先儀注)》에, ‘작헌(酌獻)한 뒤에 자리에 돌아가 북향하여 배례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조(前朝)에서는 당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매양 작헌한 후에는 신전(神前)에 북향하여 배례하였고, 본조(本朝)에서도 국초(國初)에는 역시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매번 작헌한 후에 신위전(神位前)에 북향하여 배례하였습니다. 계사년에 상정(詳定)한 의주에는 작헌한 후 내려와 자리에 돌아와 서향(西向)하여 배례(拜禮)하게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작헌한 후에 배례하는 것은 유주(侑酒)하는 까닭이라고 하겠는데, 북향하여 작헌하고, 서향하여 유주(侑酒) 한다는 것은 조금도 근거가 없습니다. 빌건대,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거하여 5실(五室)에 작헌한 후 영외(楹外)의 한복판에서 북향하여 재배하는 것이 예법의 뜻에 거의 합치합니다.”</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종묘의 묘실(廟室)이 너무 좁아 궤전(饋奠)에 곤란한 것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또 하운을 보고,</p> <p>“당초에 영선(營繕)하던 유사(有司)가 집을 짓는 데 잘못된 것이니, 이제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p> <p>하니, 하운이 말하였다.</p> <p>“만약 음양(陰陽)의 이치에 구애되는 것이라면, 신은 감히 알지 못합니다. 진실로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 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종묘(宗廟)의 제도로써 당(堂)을 같이하고 실(室)을 다르게 하는 것은 한(漢)나라 명제(明帝)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경솔한 마음으로 옛 것을 고치거나 역대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결국 3대(三代)의 제도를 회복할 수</p>	<p>獻後拜，所以侑酒，北向酌獻，西向侑酒，殊無所據。 乞依《文公家禮》，五室酌獻後，於楹外當中，向北再拜，庶合禮意。</p> <p>從之。 又議廟室太狹，難於饋奠，上又目崙曰：“當初營繕，有司失於經營，今欲改之如何？”崙曰：“若拘陰陽，則臣不敢知，苟知其不可，改之何害？宗廟之制，同堂異室，始於漢、明。率意改古，歷代因循，遂不敢復三代之制。 及至宋神宗，有意復古，竟不能遂，而宋儒美之，今能復古，萬世幸甚。” 朴信曰：“非謂無材瓦而愛人力也，特宗廟爲至重，而輕改爲不易耳。”</p>
--	---	--

	<p>없습니다. 송(宋)나라 신종(神宗)에 이르러 복고(復古)에 뜻을 두었으나 마침내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송나라 유자(儒者)들이 이것을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이제 복고(復古)할 수 있다면 만세에 더욱 다행한 일이겠습니까.”</p> <p>박신(朴信)이 말하였다.</p> <p>“재목과 기와가 없다거나 인력을 아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종묘는 지중(至重)한 것이니, 경솔하게 고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월 18일(정사) 2번째기사 우사간 대부 이맹균 등이 강무에 대해 상소하다</p>	<p>사간원(司諫院)의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이맹균(李孟詢) 등이 상소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p> <p>“옛부터 정치를 하는 도리는 문(文)과 무(武)뿐입니다. 이제 전하가 문교(文教)를 크게 일으켜 옹희(雍熙)에 이르기를 기약하는데, 봄·가을에 강무(講武)도 그것이 편안할 때에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잘 다스려질 때에 어지러워짐을 잊어버리지 않는 도리에 방도를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상께서는 계사년 봄에 해주(海州)로 거둥하였고, 가을에 임실(任實)에 이르렀습니다. 또 작년 가을에는 횡천(橫川)으로 거둥하여 경기(京畿) 이외의 지방에서 수렵하는 일이 해마다 잦아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 공역(供億)과 비만(飛輓)하는 즈음에 백성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도 간혹 있었습니까. 이제 강무한다는 하교가 이미 하달되었는데 전하가 또 장차 어디로 가려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군사를 사열하고 병졸을 훈련시킴은 비록 국가의 떳떳한 법이라 하더라도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함이 진실로 임금의 큰 덕이라.’고 여깁니다. 지난해의 한재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아, 금년에 흉년들 것을 알 수 있으니, 지금은 진실로 전하가 몸을 돌이켜 반성하고 백성을 긍휼(衿恤)히 여겨야 할 때인데, 어찌 군중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고 놓고 즐기겠습니까? 옛날에 부열(傅說)이 고종(高宗)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선(善)을 생각하여 움직이되, 움직이더라도 오직 적당한 때에 하여야 합니</p>	<p>司諫院右司諫大夫李孟詢等上疏。 疏略曰：</p> <p>自古爲治之道，文與武而已。 今殿下大興文教，期致雍熙，而春秋講武，其於安不忘危、治不忘亂之道，可謂得矣。 然殿下歲在癸巳，春幸海州，秋至任實，且於前秋，行幸橫川，而畿外蒐狩，頻年不已，其供億飛輓之際，民之蹙額者，間或有之。 今講武之教已下，未審殿下又將何所之乎？ 臣等以謂，閱兵訓卒，雖國家之常典，畏天勤民，實人主之大德。 前歲之旱太甚，今年之歉可知，是誠殿下省躬、恤民之秋也。 豈宜動衆而從事遊豫乎？ 昔(傳說) [傳說] 戒高宗曰：“慮善以動，動惟厥時。” 講武雖不可廢，而動非其時，伏望殿下，特降權停之命，以成從諫之美。</p>

	<p>다.’ 하였습니다. 강무(講武)는 비록 폐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동하심은 적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특별히 권도(權道)로 정지한다는 명을 내려서 간(諫)하는 것을 따른다는 아름다움을 이루소서.”</p> <p>임금이 읽어 보고 말하였다.</p> <p>“사간원에서 풍해도(豐海道)의 올해 곡식이 풍년이 들지 못하였다 하여 강무를 정지 하도록 청하였다. 내가 듣건대, 강원도는 약간 풍년이라 하니, 그곳으로 가고자 한다.”</p> <p>대언(代言) 등이 아뢰었다.</p> <p>“공억(供億)을 이미 풍해도에 준비하였는데, 이제 만약 갑자기 강원도로 거동한다면 민생(民生)이 소요(搔擾)해질 것입니다.”</p> <p>마침내 거동을 실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임금이 사간원의 상소 가운데, ‘백성들이 이맛살을 찌푸린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승전 환자(承傳宦者) 최한(崔閑)에게 말하였다.</p> <p>“너는 이맛살을 찌푸린다는 뜻을 알지 못하는가? 후세의 사람으로 이 사실을 보게 한다면, 어찌 봄·가을의 강무(講武)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고만 하겠는가? 여섯 대언(代言)을 모두 봄과 가을에 데리고 갔는데, 어찌 나의 아첨하는 신하들이겠는가? 이제부터 대성(臺省)에서 말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먼저 대언사(代言司)에 나아가서 말하게 되면, 가부(可否)를 서로 도와주는 이로움이 있게 되므로 이와 같은 데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p> <p>이에 유사(攸司)에 명하였다.</p> <p>“간쟁(諫諍)과 탄핵(彈劾)은 그 정당한 것을 얻으려고 힘써야 하는데, 근래에 대간(臺諫)에서 봉장(封章)하여 일을 논하는 것이 아직도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알지 못하여, 말이 혹은 중정(中正)을 잃고 있다. 이 뒤로는 임금의 과실 가운데 은휘(隱諱)하여야 할 일과 대소 인원(大小人員) 가운데 종사(宗社)에 불충(不忠)·불효(不孝)하여 풍속을 더럽히는 따위에 관계되는 일들은 실봉(實封)</p>	<p>上覽之曰：“諫院以豐海道年穀不登，請停講武。予聞江原道稍豐，欲幸焉。”代言等啓曰：“供億已備於豐海，今若猝幸江原，則民生搔擾矣。”卒不果行。上以諫院疏中有民有蹙額之語，謂承傳宦者崔閑曰：“汝不識蹙額之意。使後人見此，則豈謂止行春秋講武哉？六代言皆帶春秋，豈吾佞臣耶？自今臺省有可言之事，先詣代言司而言，則有可否相濟之益，不至於若是矣。”乃命攸司曰：“諫諍彈劾，務得其當，近來臺諫封章論事，未能悉知其由，言或失中。今後人君過失所當隱諱事、大小員人關係宗社不忠不孝，汚染風俗等事，實封啓聞，其他大小可言之事，皆進承政院直達，以廣言路。”</p>
--	---	---

	하여 아뢰고, 그밖의 크고 작은 말할 만한 일들은 모두 승정원(承政院)으로 나아와 직접 전달하게 함으로써 언로(言路)를 넓히도록 하라.”	
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월 25일(갑자) 2번째기사 임금의 전용우물에서 물을 길어오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환자 이촌을 의금부에 가두다	환자(宦者) 이촌(李村)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렸다. 주방(酒房)의 수부(水夫)가 어수(御水)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어정(御井)의 물을 길어야 하는데, 이제 다른 물을 드리었으나 이촌이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하교(下敎)하였다. “이름은 어정(御井)이라 하지만, 마을 거리 가운데 있어서 실로 깨끗하지 못하다. 또 어찌서 반드시 물을 가려야 하겠는가? 마땅히 한 개의 우물을 대궐 안에다 파서 쓰면 각전(各殿)의 수부(水夫)가 모두 없어질 것이다.”	下宦者李村于義禁府。 酒房水夫進御水，必汲御井，今以他水進，村知而不告故也。 仍敎曰：“名爲御井，而在里巷間，實爲不淨。 且何必擇水？ 宜鑿一井於闕內用之， 各殿水夫， 皆除之。”
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월 25일(갑자) 3번째기사 공사의 연음을 금하다	공사(公私)의 연음(宴飲)을 금지하였다. 환영과 전송에 백성들이 탁주(濁酒)를 마시는 것과 술을 팔아서 생활하는 자는 금례(禁例)에 두지 말게 하였다.	禁公私宴飲迎餞。 小民飲濁酒及賣酒資生者，不在禁例。
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월 27일(병인) 1번째기사 서연관과 시위하는 사람에게 본사에 출사하게 하다	서연관(書筵官)과 시위(侍衛)하는 사람에게 명하여 각각 본사(本司)로 출사(出仕)하게 하였다. 세자가 이것을 근심하여 저녁 수라[膳]를 들지 않았다.	丙寅/命書筵官及侍衛之人各仕本司，世子憂之，不進夕膳。
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2월 4일	경상·전라도 도안무사(都安撫使) 이은(李殷)에게 쌀·콩과 종이를 하사하였다. 하윤이 아뢰었다. “이은이 처의 상복(喪服)을 만났으니, 슬픔을 위로하여 우대함이 마땅합니다.	賜慶尙、全羅道都安撫使李殷米豆及紙。 河崙啓曰：“李殷值妻服，宜助哀以優之。 若以服而不治事，則恐勸農

<p>(임신) 4번째기사 처 상을 당한 경상·진 라도 도안무사 이은에 게 물품을 하사하다</p>	<p>만약 복(服)으로 인하여 일을 보지 않는다면 권농(勸農)이 늦어질까 두렵습니 다.” 이러한 까닭으로 미두(米豆) 20석(石)과 종이 1백 권을 하사하고 그대로 일을 보게 하였다.</p>	<p>之晚也。” 故賜米豆并二十石、紙百 卷，仍令治事。</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2월 22 일(경인) 2번째기사 해주 창고의 미두를 대가를 수행한 대소 인원의 양식으로 주다</p>	<p>해주(海州) 창고의 미두(米豆)를 꺼내어 대가(大駕)를 수행한 대소 인원(大小 人員)에게 4일 동안의 사람과 말의 식량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p>	<p>發海州倉米豆，分賜隨駕大小人四日人 馬料。</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2월 25 일(계사) 2번째기사 표리를 풍해도 도관찰 사 이발에게 내리다</p>	<p>표리(表裏)를 풍해도 도관찰사 이발(李潑)에게 내려 주었다. 이발이 성찬(盛 饌)을 올렸으나, 받지 않고 또 옷을 경력(經歷) 김습(金習)에게 내려 주었다.</p>	<p>賜表裏于豐海道都觀察使李潑，潑進盛 饌不受，又賜衣于經歷金習。</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2월 27 일(을미) 1번째기사 개성 유후사로 돌아와 머무르다</p>	<p>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로 돌아와 머물렀다. 세자(世子)를 거느리고 제릉(齊 陵)에 배례하였다. 미두(米豆)를 각각 10석(石)씩 연경사(衍慶寺)에 내려 주었 다.</p>	<p>乙未/還次開城留後司，率世子拜齊陵， 賜米豆各十石于衍慶寺。</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p>	<p>유후사(留後司)에 사는 검교 한성부 윤(檢校漢城府尹) 임광의(任光義)와 강문 진(姜文進)에게 각각 쌀 10석씩을 내려 주었다.</p>	<p>賜留後司住檢校漢城尹任光義、姜文 進各米十石。</p>

<p>(永樂) 13년) 2월 27일(을미) 2번째기사 검교 한성부 윤 임광 의등에게 쌀을 하사하다</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2월 27일(을미) 3번째기사 궁핍한 중국인 노파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p>	<p>한녀(漢女) 삼저(三姐)와 원합희(元哈希)는 나이가 모두 80여 세이고, 춘향(春香)은 70세인데, 대가(大駕) 앞에 나와 알현하고, 굶주림과 궁핍함을 고하니, 쌀 3석, 면포(綿布) 1필, 정포(正布) 1필씩을 각각 내려 주었다.</p>	<p>漢女三姐、元哈希年皆八十，春香年七十。見於駕前，告以飢乏，各賜米三石、綿布一匹、正布一匹。</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2월 28일(병신) 1번째기사 검교 참찬문하부사 홍언수의 졸기</p>	<p>검교 참찬문하부사(檢校參贊門下府事) 홍언수(洪彦修)가 졸(卒)하니, 부의(賻儀)로 미두(米豆)를 아울러 30석을 보내고, 이어서 경기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치제(致祭)하게 하였다.</p>	<p>丙申/檢校參贊門下府事洪彦修卒。致賻米豆并三十石，仍命京畿都觀察使致祭。</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2월 28일(병신) 2번째기사 상왕과 정비전에서 사람을 보내어 잔치를 베풀다</p>	<p>상왕(上王)이 내관(內官) 김길부(金吉富)를 길에 보내어 잔치를 베풀고, 정비전(靜妃殿)에서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진찬(進饌)하였다.</p>	<p>上王遣內官金吉富于路設享，靜妃殿亦遣人進饌。</p>
<p>태종 29권, 15년</p>	<p>임금이 환궁하였다. 병조에서 아뢰었다.</p>	<p>丁酉/還宮。兵曹啓曰：“衝突儀仗，</p>

<p>(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2월 29일(정유) 1번째기사 환궁하다. 임금의 행차 시 주정소 등의 경비 규정을 정하다</p>	<p>“의장(儀仗)에 충돌(衝突)하는 죄는 율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행재 속소(行在宿所)와 주정소(晝停所) 및 노차(路次)의 의장 안에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금위(司禁衛)·내금위(內禁衛)·내시위(內侍衛)·별시위(別侍違)의 진무(鎭撫)·보패(步牌)·창패(槍牌)·갑사(甲士) 등은 교지(教旨)를 따르지 않은 죄로 논하고, 충호위(忠扈衛)·사옹방(司饗房)·사복시(司僕寺)·유우소(乳牛所)의 관원(官員)·제원(諸員)과 세수간 별감(洗手間別監)은 잡인(雜人)을 용납해 두고 고하지 않는 경우도 또한 위의 것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載在律文。自今行在宿所、晝停所及路次儀仗內，有突入人，則其司禁、內禁衛、內侍衛、別侍衛鎭撫、步牌、槍牌、甲士等，以教旨不從論；忠扈衛、司饗房、司僕寺、乳牛所官員、諸員及洗手間別監，容置雜人而不告，亦依上論罪。”從之。</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3월 8일 (병오) 1번째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인심을 화합하는 각종사의 10개 조목을 아뢰다</p>	<p>1. 농(農)·공(工)·상고(商賈)도 모두 국민이지만 농가(農家)의 괴로움은 더욱 심한데도 오히려 10분(分)에 1로 세(稅)를 내는데, 공인(工人)과 상고(商賈)는 일찍이 세가 없었습니다. 비록 10분의 1을 세(稅)로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0분의 1을 세(稅)로 받도록 허용하여, 군국(軍國)의 용도에 보태고, 그 월세(月稅)를 면하여 30분의 1을 취하되, 저화(楮貨) 30장(張)마다 1장(張)을 취하고, 30장에 차지 못하여 그 세(稅)가 한 장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종이와 쌀로서 원래의 물가(物價)를 계산하여 받고, 두 장에 상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세하고, 농기(農器)를 무역(貿易)하는 자도 또한 면세하소서.</p> <p>1. 옛날에는 백성들을 모집하여 속(粟)을 요새(要塞) 안으로 들이여 군수(軍需)에 보충하였으니,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고, 동북면(東北面)·서북면(西北面) 각 고을에서 남도(南道)의 각 고을과 바꾸어 받되, 걸곡식[皮穀]이나 찼은 쌀[造米]을 막론하고 그 스스로 준비하는 데 따라 납입하게 하고, 잡물로 무역하는 것을 금하지 마소서.</p> <p>1. 군정(軍政)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소 장수(將帥)로부터 사졸(士卒)에 이르기까지 서로 접하는 예절과 계급(階級)의 고하(高下)를 유사(攸司)로 하여금 명백하게 상정(詳定)하게 하여, 군율(軍律)과 아울러 반포하여 시행하게 하고, 사람마다 외우도록 하면, 몸에 익숙해져서 교만한 기운은 저절로</p>	<p>一，農工商賈，均爲國民，農家之苦尤甚，猶且十分稅一，工及商賈不曾有稅。雖不十分稅一，許令三十分稅一，以補軍國之用，免其月稅，三十分取一。每楮貨三十(丈)〔張〕取其一張，未滿三十張，其稅不滿一張者，以紙及米，計取原物價，未直二張者免稅，農器貿易者亦免稅。</p> <p>一，古者募入民粟塞下，以補軍需。許令諸人納穀，東西北面各官，換受南道各官，勿論皮穀造米，隨其自備而納，勿禁雜物貿易。</p> <p>一，軍政不可不嚴，自大小將至於士卒，相接之禮、階級高下，令攸司明白詳定，并軍律頒布施行，使人人講誦，習於耳目，潛消驕氣，自然和順，臨機任使。</p>

	<p>사라져 자연히 화순(和順)하게 될 것이므로, 그때에 임하여 임사(任使)하소서.</p> <p>1. 전일(前日)의 5승포(五升布)를 쓰던 때를 따라서 외방(外方)의 모든 무역에는 이를 전용하지 말고, 빌건대, 각호(各戶)에서 내는 저화(楮貨)와 속전(贖錢)을 거두는 이외에는 잡물(雜物)로 무역하는 것을 금하지 마소서.</p> <p>1. 제색 장인(諸色匠人)은 공작(工作)을 제외하고는 사령(使令)과 구종(丘從)을 금단하소서.</p> <p>1. 각도의 군정(軍丁)으로 하여금 모두 사사 군기(軍器)를 갖추게 하고, 각도의 절제사영(節制使營)과 각진(各鎭)에는 전례대로 월과(月課)하고, 계수관(界首官)의 월과 수목(數目)을 추고(推考)하여 줄이도록 하소서.”</p> <p>임금이 모두 따랐으나, 공인(工人)과 상고(商賈)에게 과세하는 한 귀절만은 윤택하지 않았다.</p>	<p>一，從前日五升布時，外方凡貿易，不專用之，乞令戶楮貨及收贖外，以雜物貿易勿禁。</p> <p>一，諸色匠人除工作外，使令及丘從禁斷。</p> <p>一，令各道軍丁，皆備私軍器。各道節制使營及各鎭前例月課，界首官月課數目，推考減省。</p> <p>上皆從之，唯稅工商一節不允。</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3월 15일(계축) 2번째기사</p> <p>의학 제조에게 약방서를 고찰하게 하니 《본초》에 대해 상언하다</p>	<p>의학 제조(醫學提調)에게 명하여 의사(醫士)가 읽고 있는 방서(方書)를 고찰하게 하였다. 이에 제조가 아뢰었다.</p> <p>“《본초(本草)》라는 한 책은 상고(上古) 때에 신농씨(神農氏)가 저술한 것으로, 역대의 명의(明醫)가 편찬(編撰)한 것입니다. 대체로 초목(草木)·금석(金石)·조수(鳥獸)·충어(蟲魚) 등 모든 종류로 의약(醫藥)이 될 만한 것은 거의 실려 있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의가(醫家)의 근본(根本)이며, 학자(學者)가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의학을 배우는 자로 하여금 먼저 《본초》를 익히게 하고, 또 의학을 취재(取才)할 때에도 제일 먼저 이 책을 강(講)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먼저 약리(藥理)를 밝힌 뒤에 방서를 읽게 하소서.”</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命醫學提調，考察醫士所讀方書。於是，提調啓曰：“《本草》一書，上古神農之所著，歷代明醫之編撰。凡草木、金石、鳥獸、蟲魚等庶類，可以爲醫藥者，無不該載，醫家之根本，學者之先務也。使學醫者先習《本草》，又於醫學取才時，首講此書，使之先明藥理，後及方書。”從之。</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3월 18일(병진) 6번째기사</p>	<p>상호군 최주(崔宙)를 보내어 내온(內醞)을 평안도 도순문사(平安道都巡問使)와 평안도 도안무사(平安道都安撫使)에게 내려 주고, 상호군 이춘생(李春生)을 보내어 영길도(永吉道) 도순문사와 도안무사에게 내온을 내려 주었으니, 성(城) 쌓는 감독을 위로함이었다. 전흥(田興)이 약산성(藥山城)으로부터 돌아왔다.</p>	<p>遣上護軍崔宙，賜醞于平安道都巡問使、都安撫使；上護軍李春生，賜醞于永吉道都巡問使、都安撫使，慰監築城子也。田興還自藥山城，傳旨承政院</p>

<p>축성에 수고한 평안도 도순무사와 도안무사에게 내운을 내려주다</p>	<p>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정주 목사(定州牧使) 우박(禹博)과 도안무사(都安撫使) 신유정(辛有定)은 성 쌓는 감독에 부지런하였는데, 우박이 주동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표리(表裏)를 우박에게 내려 주고, 술[醢]을 신유정에게 내려 주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군민(軍民)을 영솔하여 성루(城壘)를 쌓는 것은 신하의 직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표리(表裏)로써 상 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曰：“定州牧使禹博與都安撫使辛有定勤於監築，而禹博爲主。予欲賜表裏於博，賜醢於有定何如？”對曰：“率軍民築城壘，臣職所當爲，何必賞以表裏？”上然之。</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4월 2일 (기사) 1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p>	<p>금주령(禁酒令)을 내렸다.</p>	<p>己巳/下禁酒令。</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4월 6일 (계유) 1번째기사 경상도 밀양에서 최원의 아내가 한꺼번에 두 아들을 낳다</p>	<p>경상도의 밀양(密陽) 사람 최원(崔元)의 아내가 한꺼번에 두 아들을 낳으니, 명하여 쌀과 장(醬)을 내려 주게 하였다. 그 부인은 일찍이 신묘년에도 한꺼번에 두 아들을 낳았었다.</p>	<p>癸酉/慶尙道密陽人崔元妻一產二男，命賜米及醬。其婦曾於辛卯年亦一產二男。</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4월 13일(경진) 3번째기사 감로가 함주의 덕산동</p>	<p>감로(甘露)가 함주(咸州)의 덕산동(德山洞)에 내렸는데, 길이가 50보(步), 너비[廣]가 10보 가량 되었다. 동리 안의 나무 잎과 냇가의 돌 위도 그 맛이 꿀과 같았다.</p>	<p>甘露降于咸州德山洞，長五十步、廣十步許，洞中木葉及川邊石上，其味如(密)[蜜]。</p>

에 내리다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4월 13 일(경진) 6번째기사 민무회·윤사영·권집지 를 석방하다</p>	<p>민무회(閔無悔)·윤사영(尹思永)·권집지(權執智)를 석방하였다.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이천우(李天祐)와 박은(朴崧)·윤향(尹向) 등이 아뢰기를, “민무회는 염치용의 불충한 말을 듣고 즉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합니다. 지금 공초를 받는 때에 특별히 방면의 은혜를 입었으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아직 죄명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를 용서한다면 무엇으로써 장래를 경계하시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늙은 어미가 자식의 연고 때문에 음식을 폐하고 근심하고 있으니 차마 옥중에 가두어 둘 수 없다. 또, 그 죄상도 민무구(閔無咎)와 민무질(閔無疾)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윤향(尹向)이, “민무회는 중궁(中宮)의 지친(至親)으로서 염치용(廉致庸)의 난언(亂言)을 듣고도 여러 날 동안 계류(稽留)하였다가, 노비의 연고로 인하여 비로소 그 말을 폭로하였으니, 그 마음씀이 민무구·민무질 두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 죄를 밝게 바로잡으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p>	<p>釋閔無悔、尹思永、權執智囚。 義禁府提調李天祐、朴崧、尹向等啓曰：“無悔聞致庸不忠之言，不卽啓達，其罪匪輕，今當取招之際，特蒙免放之恩。 臣等以爲，未成罪名而有之，則何以垂戒將來？” 上曰：“老母以子之故，徹食憂勞，不忍逮獄。 且其罪非無咎、無疾之比。” 尹向曰：“無悔以中宮至親，聞致庸亂言，稽留數日，乃因奴婢之故，始露其言，其設心，何異於二人乎？ 宜明正其罪。” 不聽。</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4월 19 일(병술) 2번째기사 각전에 공상하는 잣은 모두 껍질을 까지 않 은 잣으로 할 것을 명 하다</p>	<p>각전(各殿)에 공상(供上)하는 잣[松子]은 모두 피송자(皮松子)를 쓰라고 명하였다. 이 앞서 여러 전(殿)에 공상하는 잣은 모두 실송자(實松子)를 썼었는데, 문소전(文昭殿)과 성비전(誠妃殿) 이외에는 모두 피송자를 쓰라고 명하였다.</p>	<p>命各殿供上，皆用皮松子。 先是，諸殿供上，皆用實松子，命文昭殿、誠妃殿外，皆用皮松子。</p>
<p>태종 29권, 15년</p>	<p>강원도 도관찰사 이안우(李安愚)가 상서하니,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 의논하게</p>	<p>丁亥/江原道都觀察使李安愚上書， 下</p>

<p>(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4월 20일(정해) 1번째기사 강원도 도관찰사 이안우가 금의 채광, 율과 장인, 천첩 소생의 한 품 수직등에 대해 상서하다</p>	<p>하였다.</p> <p>“1. 금을 캐[採金]는 일은 진실로 국가에서 사대(事大)하는 데 쓰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도내의 회양(淮陽)과 정선(旌善)에서 금을 2백여 냥(兩)이나 캐으니, 이것은 땅이 보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기에 응하여 나오게 한 것이며,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채방(採訪)할 때에 미편(未便)한 점이 있었으므로,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견(差遣)한 채방사(採訪使)가 정월 그믐께 이 지방에 내려와서 주현(州縣)을 독령(督令)하여 백성들을 모아, 먼 변읍(邊邑)에 있는 백성들을 10일 만에 이른 자도 있고, 익숙하지 못한 백성들로 하여금 기계(器械)를 수리하게 하여 밤낮으로 독려하니, 일은 시작도 하지 않고 백성들은 도리어 피로하게 되어, 20일이 걸려서야 역사가 과하게 되었습니다.</p> <p>신이 가만히 듣건대, 이 지방에서 금을 생산하는 곳이 두 곳이 있다 하는데, 영길도(永吉道)에도 두세 곳이 있다 하니, 마땅히 금이 나는 현(縣)에, 민호(民戶)의 다소를 헤아려서 일개 고을[州]을 1소(所)에 전부 붙이거나, 혹은 한두 군현(郡縣)을 합하여 1소(所)에 붙여서, 그 경작하는 바의 조세(租稅)만 받고, 기타의 요역(徭役)과 공부(貢賦)는 모두 면제하여 주며, 향중(鄉中)에 강기 염간(綱紀廉幹)한 자를 골라서 감고(監考)로 삼아 때때로 여금(勵禁)하게 하여, 금의 생산의 다소에 따라 상공(常貢)의 수량을 정하소서. 가령 1개소에서 한 절기에 20냥(兩)을 공납(貢納)하면, 5개소면 1백 냥(兩)이 되고, 봄과 가을이면 2백 냥이 됩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을 당할 때마다 장인(匠人)을 나누어 보내고,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소상하게 고찰하여 캔 금을 분간하여 바치게 하되, 만약 수량에 미달한 자와 고찰하는 데 정밀하게 하지 못하여 유실한 자가 있으면, 율문에 따라 죄를 논하소서. 그리하면 온 도내(道內)가 소동하는 폐단이 없고, 일은 잘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위 조목에 대하여 의논하였다.</p>	<p>議政府六曹擬議。一，採金一事，誠國家事大之用，而今道內淮陽、旌善採金二百餘兩。此則地不愛寶，應時而出，非偶然而致，然採訪之際，有未便者，不敢不告。差遣採訪，正月既晦下界，督令州縣聚民，其邈在邊邑之民，或旬日乃有至者。以不習之民，令修器械，日夜督之，事未就而民反瘁，纔至二旬而罷役。臣愚竊聞，此界產金之地有二，而永吉道亦有二三處焉。宜於所產之縣，計民戶多少，或全一州屬一所，或并一二郡縣屬一所，只取所耕租稅，其他徭役貢賦一皆蠲免。擇鄉中有綱紀廉幹者，定爲監考，以時勵禁，隨產金多寡，以定常貢之數。假令一所於一節貢二十兩，則五所爲一百兩，而春秋爲二百兩矣。每當春秋，分遣匠人，監司、守令詳加考察，採揀貢獻，如有不滿數者、考察有不精遺失者，依律論罪，則無舉道擾動之弊，而事可就矣。</p> <p>右條議得：“以國用多少，量宜定數，春秋仲月，聚會還放，不必爲年例。”</p> <p>一，貢賦之制，我太祖開國之初，於壬申年間，參酌所用，詳定其數，意欲傳</p>
---	---	--

	<p>“국가의 소용의 다소를 헤아려서 적당한 수량을 정하면, 봄·가을의 중월(仲月)에 백성을 모았다가 돌려보내게 되니, 연례(年例)로 한 번씩 공부(貢賦)하는 제도가 필요없을 것입니다. 우리 태조(太祖)가 개국한 초기인 임신 연간에 국가의 소용을 참작하여 그 수량을 상정(詳定)하였으니, 그 뜻이 만세토록 정하여 폐해가 없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기에 따라 덜고 더[損益]함이 20여 년이 되었으나 국가의 소용에 궁핍함이 없었는데, 근자에 각사(各司)에서 모두 양(量)을 더하자는 의논의 기미가 있고, 인삼(人蔘)·당추자(唐楸子)·대추[大棗]와 지지(紙地)·석자(席子)·유청(油淸)·촉밀(燭蜜) 등에 이르기까지도 수량이 너무 과다하여, 간혹 오는 해[來歲]의 공물을 당겨서 바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수량을 적당히 다시 정하도록 하고, 위 조목을 의논하여 다시 상고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p> <p>“1. 월과(月課) 군기(軍器)는 국가의 어모(禦侮)의 비축(備蓄)으로 진실로 하루도 그 수조(修造)를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조령(條令)에 의하여 군현(郡縣)으로부터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축함이 있는데, 절제영(節制營)과 계수관(界首官)·각진(各鎭)에서 날마다 두들겨 만들어, 야장(冶匠)이 된 자는 밤낮으로 관청에 있게 되니, 그 생리(生理)를 잃게 되어, 처자들이 굶주려 우는 탄식을 면치 못하니, 또한 딱한 일입니다. 원컨대, 이제 부터는 3월부터 7월까지 방환(放還)하여 귀농(歸農)케 하였다가,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몰아쳐 역사에 나가[赴役]케 하면, 거의 국가는 비축을 폐하지 않을 것이며, 장인(匠人) 또한 생리(生理)를 이룰 것입니다.”</p> <p>위의 조항에 대하여 의논하였다.</p> <p>“4월부터 7월까지 귀농하게 하소서.”</p> <p>“1. 내리신 조령(條令) 안에 ‘1, 2품 이상의 천첩(賤妾) 소생은 5품, 3품의 천첩의 소생은 6품, 4품의 천첩의 소생은 7품을 한(限)하여 차례로 음직(陰職)을 제수하라.’ 하였으나, 진실로 전하의 어진 마음이 깊고 은혜가 두텁습니다.</p>	<p>之萬世而無弊也。因時損益，至今二十餘年，國無匱乏。近者，各司皆有加定之議，微而若人蔘、唐楸子、大棗，至於紙地、席子、油淸、燭蜜，厥數猥多，或引納來歲之貢。願令攸司量宜更定。</p> <p>議得：“右條宜更相考。”</p> <p>一，月課軍器，國家禦侮之備，誠不可一日廢其修造也。然近因條令，自郡縣至于庶民，皆有其備，而節制營與界首各鎭日常打造，其爲冶匠者，日夜在官，失其生理，未免妻子啼飢之嘆，亦可憫也。願自今三月至七月則放還歸農，自八月至明年二月，驅而赴役，則庶乎國不廢備，而匠亦遂其生矣。</p> <p>議得：“右條自四月至七月歸農。”</p> <p>一，曾降條令內，一二品已上賤妾所生限五品，三品賤妾所生限六品，四品賤妾所生限七品，以次除授蔭職，誠殿下深仁厚澤也。然辨之不早，噬臍何及？願將此輩，宜各以其類而相婚，慎勿犯婚於兩班家裏，又別除雜職而鉅用，不可混於文武官爵。彼無定分，則狎恩昵愛，無所不至。自古陰譎生變者，多從此輩而出，是徒務才勇，而無正大</p>
--	--	--

	<p>그러나, 변정(辨正)하기를 조기(早期)에 못하였으니, 서제(噬臍) 해 보았자 어찌 미치지 않습니까? 원컨대, 앞으로 이 무리들을 각각 그 동류들과 서로 혼인하게 하여, 양반(兩班) 집안과는 혼인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별도로 잡직(雜職)을 제수하여 서용(敍用)해서 문무(文武)의 관작(官爵)에 섞이지 못하도록 하소서. 저들에게 일정한 직분이 없으면 은혜를 소홀히 하고 사랑에 친압하여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음흉(陰譎)하여 변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흔히 이 같은 무리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한갓 재용(才勇)에만 힘쓰고 정대고명(正大高明)한 아량이 없었음에서이니, 이것을 옛일에 추구하여 본다면 아득하기만 합니다. 전조(前朝)의 석기(釋器)와 근자의 목인해(睦仁海)는 모두 목전(目前)의 뚜렷한 경험[明驗]입니다. 또 세가(世家)의 자제(子弟)로서 재주를 품고 도(道)를 가슴에 안고서도 이 밝은 시대에 쓰이지 못한 자가 아직도 많은데, 부정(不正)한 무리들을 어찌 써서 관작을 제수하여 명분(明分)을 혼동케 하겠습니까? 이것을 변정하지 아니하면 재세(再世) 뒤에 그 주인의 친척을 간음하여 인륜(人倫)을 어지럽힐 자도 있을 것이며, 혹은 조열(朝列)에 섞이어 그 주인을 음해(陰害)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방(東方)을 예로부터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호칭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존비(尊卑)의 등급과 귀천(貴賤)의 분수가 하늘이 세우고 땅이 설치함과 같아서, 질서 정연하여 범(犯)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성조(聖朝)에서는 개국(開國) 초로부터 예의(禮義)를 닦고 밝혀 후세에 밝게 보이셨으니, 만약 일찍이 변정하지 아니하면 밝은 시대의 성전(盛典)에 결함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p> <p>위의 항(項)에 대하여 의논하였다.</p> <p>“마땅히 거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임금이 하교(下敎)하였다.</p> <p>“월과 장인(月課匠人)은 3월부터 7월까지 귀농(歸農)케 하고, 천첩 소생은 한품(限品)하여 벼슬을 주되, 조반(朝班)에 섞이지 못하게 별도로 잡직(雜職)을</p>	<p>高明之量耳。 徵諸古昔則邈矣， 前朝之釋器， 比年之仁海， 是皆目前之明驗。</p> <p>且世家子弟懷才抱道， 未得見用於明時者尚多矣。 何用不正之徒， 除授官爵， 以混名分乎？ 此而不辨， 再世之後， 或蒸於其主之親戚而亂倫者有之； 或混於朝列而陰害其主者亦有之。 吾東方， 自古號稱禮義之國者， 無他， 尊卑之等、 貴賤之分， 如天建地設， 秩然而不可犯也。 況我聖朝開國之初， 修明禮義， 昭示後世。 若不早辨， 則恐有虧於明時之盛典。</p> <p>議得：“右條宜舉行。” 敎曰：“月課匠人， 自三月至七月歸農； 賤妾所生限品授職， 不混朝班， 別除雜職事， 依擬議所申。”</p>
--	--	---

	채수하자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는 대로 시행하라.”	
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4월 21 일(무자) 1번째기사 감로가 내린 데 대한 백관의 하례를 사양하 다	의정부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감로(甘露)가 내린 상서(祥瑞)를 하례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감로는 비록 가장 좋은 상서(祥瑞)라고 하겠으나, 근자에 바닷물이 넘치고 큰 돌이 스스로 이동하였으니, 변괴(變怪) 또한 크다. 어찌 하례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역마(驛馬)를 보내어 함주 천호(咸州千戶) 위신충(魏臣忠)을 불러 대궐로 나오게 하여 물기를, “감로가 내렸다니 사실인가? 아닌가? 내 덕(德)을 가지고 이 일을 헤아려 볼 때 정녕 헛소문일 것이다.” 하였다. 위신충이 본대로 낱낱이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진짜 감로이다. 돌아보건대, 내가 덕이 없는데, 어찌 이것을 당하였는가?”	戊子/議政府率百官，賀甘露之瑞，不受。上曰：“甘露雖云上瑞，然比者，海水漲溢，大石自移，變亦大矣，何賀之有?” 驛召咸州千戶魏臣忠詣闕問曰：“甘露之降眞歟? 否歟? 以予德揆之，定是虛矣。” 臣忠具以所見聞，上曰：“然則眞甘露也。 顧予無德，何以當之?”
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5월 2일 (무술) 1번째기사 경안 공주의 죽음으로 육선을 물리다	의정부와 육조가 예궐(詣闕)하여 육선(肉膳)을 들기를 권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경안 공주(慶安宮主)가 죽었기 때문에, 임금이 육선을 들지 않았다.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상왕(上王)도 아직 육선을 들지 않으니, 나에게 들기를 권함이 옳지 못하다.” 하고, 인하여 지신사 유사눌(柳思訥)에게 명하였다. “내일 아침에 인덕궁(仁德宮)에 나아가 육선을 드리게 하라.”	戊戌/議政府、六曹詣闕勸進肉膳，不允。以慶安之卒，上不御肉膳也。上不許曰：“上王猶未進肉膳，不宜勸進。” 因命知申事柳思訥曰：“明朝詣仁德宮，進肉膳。”
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5월 9일 (을사) 2번째기사 예조에서 육선을 올리 다	예조에서 육선(肉膳)을 올렸다.	禮曹進肉膳。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5월 25 일(신유) 4번째기사 공민왕의 정비 의화 공주에게 매일 술 한 병씩을 하사하다</p>	<p>날마다 술 한 병씩을 의화 공주(義和宮主) 안씨(安氏)에게 내려 주었으니, 곧 전조(前朝)의 공민왕의 정비(定妃)였다.</p>	<p>日賜酒一瓶于義和宮主安氏，卽前朝恭愍王定妃也。</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6월 5일 (경오) 1번째기사 육선을 거두고 금주하 다</p>	<p>육선(肉膳)을 거두고 술을 끊었다. 승정원에 명하였다. “내가 부덕(否德)하여 크나큰 왕업[丕基]을 이어받아 해마다 한재(旱災)가 이 르니,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든다. 오늘 정사(政事)를 보고자 하여도 진실로 하 늘이 무서워 감히 못 보겠으니, 너희들은 육조(六曹)와 더불어 나의 부족한 점을 힘껏 개진하여 숨기지 말라. 내 장차 행실을 고치면 한재를 거의 면할 것이다.” 유사눌(柳思訥)과 한상덕(韓尙德)·서선(徐選)이 함께 육조의 청사로 나아가 고 지를 전하였다. 육조의 판서(判書) 등이 대답하였다. “신 등은 얕은 소견으로 높다 높은 성덕(盛德)을 감히 의논하겠습니까? 신 등 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이것이 바로 변정(辨正)의 여독(餘毒)인가 여겨집니다. 그러나, 뉘우쳐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말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얼마 있다가 또 전지하시기를, “나도 역시 변정(辨正)의 원망이라 생각되어 스스로 책(責)하며 뉘우칠 뿐이 다.” 하였다. 이에 육조와 승정원이 함께 한재가 이르게 된 까닭을 의논하여 아뢰 었다. “첫째, 오결(誤決)한 관원과 망령되게 오결이라 고(告)한 인원의 사첩(謝牒) 및 중사(重事)에 관계된 의외의 잡범(雜犯) 인원의 사첩은 환급(還給)하도록</p>	<p>庚午/徹膳斷酒。 命承政院曰：“予以 否德，纘丞丕基，頻年致旱，深懷慄慄， 今日欲視事，誠畏天不敢。 爾等與六 曹，予之否德，力陳無隱，予將改行， 庶免旱災。” 柳思訥、韓尙德、徐選 偕進六曹廳宣旨， 六曹判書等對曰： “以臣淺見，巍巍盛德，何敢議乎？ 臣 等竊意，此乃辨正之餘毒，然悔不可 追，言之何益？” 有頃，又傳旨曰：“予 亦以爲，辨正之怨，責躬自悔而已。” 於是， 六曹、承政院同議致旱之故以 聞：“其一， 誤決官員及妄告誤決人員 謝牒及關係重事外，雜犯人員謝牒，許 令還給。 其二， 上項人員田地，依曾 降教旨還給。 其三， 宰牛曾有禁令， 比來宰殺尤甚。 有能捕告者，將犯人 家產充賞。 大小人員毋得食牛肉，違 者論罪。 自死之肉，京中漢城府著稅，</p>

	<p>허락할 것.</p> <p>둘째, 상항(上項)의 인원의 전지(田地)를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환급할 것.</p> <p>세째, 소[牛]의 도살(屠殺)은 금령(禁令)이 있는데, 근래에 도살이 더욱 심하니, 이를 붙잡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범인의 가산(家産)을 상(賞)으로 충당하고, 대소 인원은 쇠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논죄(論罪)하소서. 그리고, 저절로 죽은 쇠고기는 경중(京中)은 한성부에서 세(稅)를 매기고, 외방(外方)은 관사(官司)의 명문(明文)을 받은 뒤에 그 매매(賣買)를 허락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또한 율(律)에 의하여 논죄하소서.”</p> <p>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가 물러나 쉬어서 한재를 피하려고 한다.”</p> <p>하니, 유사놀이 아뢰기를, “만약 성상이 하교와 같이 한다면, 온 나라 신민들로 어느 누가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몸을 반성하고 행실을 닦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p> <p>하였다. 조금 있다가 또 전지하기를, “크게 가무는 재앙을, 그 단서를 알 수가 없어 매우 두렵다. 이것은 특히 원망과 탄식의 소치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음흉하고 사특한 기운이 아래에 막히고 뭉쳐서일 것이다.”</p> <p>하니, 유사놀이 아뢰기를, “양양(怏怏)하여 분심(憤心)을 품은 자를 없애면 비를 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소용 없는 말이다.”</p> <p>하고,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군사를 일으키고 민중을 동원하여 원망과 한숨을 짓게 한 일이 있는가? 남</p>	<p>外方則受官司明文後，方許買賣，違者，亦依律論罪。”從之。傳旨承政院曰：“予欲退休，以避旱災。”柳思訥曰：“若如上教，一國臣民，孰不痛心？莫若側身修行耳。”有間，又傳旨曰：“大旱之災，莫知其端，深懷危懼。此非特怨咨之所致，必陰慝之氣，壅鬱於下也。”思訥啓曰：“怏怏懷憤者除之，則庶可致雨。”上曰：“無益之論也。”傳旨承政院曰：“有興師動衆而致怨咨歟？有男女之未婚嫁者歟？予欲出宮女，然無有出之者。旱氣太甚，其故何歟？”思訥對曰：“興師今所固無，動衆則臣心以爲，近者築城藥山，採金江原。若宮女則昔者出宮女，數至三千，載在簡冊，今宮女多不過二十，何可出也？今殿下以愧于上天，久不視事。昨日六曹上言：‘體天道之自強不息，而視事不已。’小臣之願，亦如是也。”上曰：“予非以怠惰而不視也。事不合天，旱氣至此，予實愧焉耳。”</p>
--	---	--

	<p>녀로서 아직 장가나 시집을 가지 못한 자가 있는가? 내가 궁녀(宮女)를 내보내려고 하나, 내보낼 만한 자가 없고, 가뭄은 더욱 심하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p> <p>하니, 유사놀이 대답하였다.</p> <p>“군사를 일으킨 일은 오늘날 전혀 없는 일이고, 민중을 동원한 것이라면 신의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근자에 약산(藥山)에 성을 쌓고, 강원도에서 금을 캔 일입니다. 그리고, 궁녀(宮女)로 말할 것 같으면 그전에 내보낸 궁녀의 수가 3천에 이르렀으니, 역사[簡冊]에 실려 있는 바입니다. 오늘날의 궁녀의 수는 많아야 20명에 불과하니 어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하가 상천(上天)에 부끄럽다고 하여 오랫동안 정사를 보지 않으나, 어제 육조에서 상언하기를, ‘천도(天道)의 자강불식(自強不息)을 몸받아서 정사 보기를 그치지 말라.’고 하였는데, 소신의 원(願)함도 이와 같습니다.”</p> <p>임금이 말하였다.</p> <p>“내가 태만해서 정사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이 천도(天道)에 합하지 못하여 가뭄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 실로 부끄러울 뿐이다.”</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6월 5일 (경오) 2번째기사 각도의 별패군을 귀농하게 하다</p>	<p>병조에 명하여 여러 도(道)의 별패(別牌)를 놓아 보내 귀농(歸農)케 하고, 밤[粟]을 줌게 하여 식량의 수용을 넉넉히 하게 하고, 방패군(防牌軍)으로 대직(代直)하게 하였다.</p>	<p>命兵曹放還諸道別牌，歸農拾粟，以贍糧用，以防牌軍代直。</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6월 11일(병자) 4번째기사</p>	<p>각도에서 생육(生肉)을 진상(進上)하는 것을 금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p> <p>“각도의 도관찰사(都觀察使)·절제사(節制使)·도순문사(都巡問使)가 생육의 진상으로 인하여 무시(無時)로 사냥[田獵]해서,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들을 해치니, 모두 다 금지하라.”</p>	<p>禁各道進生肉。 上曰：“各道都觀察使、節制使、都巡問使因生肉進上，無時田獵，妨農害民，竝皆禁止。”</p>

<p>각도에서 생육을 진상하는 것을 금하다</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6월 14 일(기묘) 2번째기사 구언하다</p>	<p>구언(求言)하였다. 임금의 말하였다. “지금 바야흐로 한창 농사 때인데 오래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인사(人事)에 잘못이 있지 않은가 한다. 각사(各司)와 2품 이상으로 하여금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민생의 질고(疾苦)에 대하여 숨김 없이 모조리 개진(開陳)하게 하라.” 임금이 한재가 심하여 하루에 한 때만 육선(肉膳)을 들었다. 예조에서 기우(祈雨)에 대한 조목(條目)을 올리니, 임금이 보고 말하였다. “요사이 오랫동안 가물어 기도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지 않은 것이 없는데,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어찌 기도에만 전적으로 일삼겠는가? 마땅히 마음을 다해 공구수성(恐懼修省)할 뿐이다. 만약에 기도를 행할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예조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행하라.”</p>	<p>求言。上曰：“方茲盛農之時，久旱不雨，恐有人事之失，令各司及二品已上，時政闕失、民生疾苦，悉陳無隱。”上以旱甚，乃日進一膳。禮曹上祈雨條目，覽之曰：“今茲久旱，祈禱之典，非不悉舉，尙且不雨，奚專事於祈禱？宜當盡心恐懼修省耳。若有可行祈禱之事，則禮曹自爲之。”</p>
<p>태종 29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6월 26 일(신묘) 4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별선을 바치기를 청하다</p>	<p>의정부에서 별선(別膳)을 권해 바쳤으나, 윤택하지 않았다.</p>	<p>議政府勸進別膳，不允。</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7월 7일(임인) 1번째기사 비가 내린다. 육조 판서(六曹判書) 등이 하례하며, 진선을 회복하고 약주 올리기를 청하다</p>	<p>비가 내렸다. 육조 판서(六曹判書) 등이 대궐에 나와 하례하니, 임금이, “지금 비록 비를 얻었으나, 농사에는 시기가 늦었다.” 하니, 판서 등이 다시 말하기를, “화가(禾稼)가 다시 소생하고 콩·팥·메밀이 또한 결실할 것이니, 그 이익이 어찌 적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각도에서 진선(進膳)3424 하는 것을 회복하고 또 약주(藥酒)를 올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壬寅/雨。六曹判書等詣闕陳賀，上曰：“今雖得雨，無及於農矣。”判書等復曰：“禾稼復蘇，二豆蕎麥亦以結實，其利豈小哉？”因請復各道進膳，且進藥酒，上曰：“酒但不當加釀。若舊釀雖不用何益？當用之矣。各道進膳則予惡其疲困各驛，毋復言。但以</p>

	<p>“술은 다만 더 빚을 것은 없고, 예전에 빚은 것은 비록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땅히 쓰도록 하겠다. 각도의 진선은 내가 각역(各驛)을 피곤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 다만 인덕궁(仁德宮)에 올릴 것이 없어서 걱정이야.”</p> <p>하고, 인하여 약주를 주라고 명하였다.</p>	<p>無所進於仁德宮爲慮耳。” 仍命賜藥酒。</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7월 8일 (계묘) 1번째기사 보평전에 술자리를 마련, 신료에게 술을 내리고, 한재의 까닭과 신선의 도를 말하다</p>	<p>보평전(報平殿)에 술자리를 마련하여 일을 계사(啓事)하는 신료에게 작(爵)을 내려 주고, 또 입직(入直)하는 대소 신료에게 술을 내려 주어 두루 군사에게까지 미치었다. 임금이 한재(旱災)의 까닭을 논하여 말하였다.</p> <p>“《춘추(春秋)》에 정월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가을 7월까지 이르렀다고 썼고, 또 역대에 5년 가뭄·2년 가뭄이 있었으니, 내가 부덕(否德)한 사람으로서 어찌 감히 이를 피하겠는가? 또 가뭄[旱乾]의 재앙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때에는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백성을 수고롭게 한 뒤에야 있었다. 태조(太祖)가 이 도성을 영건하였는데, 내가 살피지 못하고 송도(松都)로 돌아갔다가 오래지 않아서 돌아왔는데, 도읍(都邑)을 짓고 고치는 까닭으로 해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백성을 수고롭게 하니, 오늘의 가뭄은 내가 실로 당할 만하다. 지난번 예조 판서 이원(李原)이 증을 모아 비를 빌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즉시 허락하지 않았는데, 양(梁)나라 무제(武帝)는 호걸스런 임금으로서 이를 더욱 심히 좋아하였으니, 내가 어찌 감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하지 않겠는가? 우리 나라에 지공 대사(指公大師)·나옹 대사(懶翁大師) 이후에 내가 보고 아는 바로서는 한 사람의 중도 그 도에 정통한 자가 없었다. 지금 비를 빌어 얻으면 반드시 남의 비웃음을 받을 것이요, 만일 비를 빌어 얻지 못하면 반드시 부처를 헐뜯은 까닭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볍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p> <p>임금이 인하여 신선(神仙)의 도(道)를 논하여 말하였다.</p> <p>“진 시황(秦始皇)·한무제(漢武帝)가 좋아하지 않은 바가 없으나, 진서산(眞西</p>	<p>癸卯/置酒報平殿，賜爵啓事臣僚，且賜酒于入直大小臣僚，徧及軍士。上論旱災之故曰：“《春秋》書正月不雨，至于秋七月，且歷代有五年、二年之旱。予以否德，何敢避之？且旱乾之災，非作於勞民用衆之日，必在於勞民用衆之後。太祖營建此都，而予不審，歸于松都，未久還來，以都邑營修之故，頻年用衆勞民，今日之旱，予實當之。曩，禮曹判書李原請聚僧禱雨，予不卽諾。梁武帝豪傑之主，而好之尤甚，予豈敢以爲非是而不爲哉？我國自指空、懶翁之後，予所見知者，無一僧精於其道者。今禱雨而得之，必被人之欺笑，若祈雨而不得，必以爲毀佛之故。是以，不輕許也。”因論神仙之道曰：“秦皇、漢武莫不好之。以眞西山《大學衍義》觀之，斥之極矣，而《文獻通考》、《山堂考索》則竝載其說。近予閱雨之甚，使黃子厚行太</p>

	<p>山)의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보면 이를 배척하기를 극진히 하였고, 《문헌통고(文獻通考)》·《산당고색(山堂考索)》에는 그 말을 아울러 실었다. 근자에 내가 비를 근심하기를 심히 하여, 황자후(黃子厚)로 하여금 태을 초제(太乙醮祭)를 행하게 하였더니, 과연 비를 얻었다. 어제 내가 태을편(太乙篇)을 강구(講求)하다가 병으로 끝내지 못하였다. 예조에서 천존(天尊)에 호(號)를 올리는 예(例)를 상고하여 아뢰어라.”</p>	<p>乙醮而果得雨。 昨予講求《太乙》之篇而以疾未就，禮曹宜考其天尊上號之例以聞。”</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7월 10일(을사) 1번째기사 수령이 흉년을 만나 백성을 굶주려 죽게 하는 자는 파출할 것을 이조에서 상소하다</p>	<p>이조에서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목민(牧民)의 직임은 구황(救荒)하는 것이 급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대소 수령이 매양 흉년을 만나면 여러 방법으로 백성들을 진휼하여 굶주려 죽는 일이 없게 한 자는 감사(監司)가 포장(褒獎)하여 상등으로 삼아 그 실적을 갖추어 계문하여 서용하고, 임기가 차지 않은 자는 한 자급(資級)을 더하며, 구황(救荒)을 하지 못하여 경내(境內) 인민이 하나라도 굶주려 죽는 일이 있게 하면 비록 다른 일에 쓸 만한 것이 있더라도 곧 파출(罷黜)을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길이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乙巳/吏曹上疏，略曰： 牧民之任，救荒爲急。 自今大小守令，每遇歲凶，多方賑恤，民無飢殍者，監司褒爲上等，具其實績，啓聞敍用，其未考滿者，加一資。 不能救荒，境內人民一有餓死，雖於他事，有所可取，卽行罷黜，永爲恒式。 從之。</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7월 18일(계축) 1번째기사 편전에서 일을 보다. 이숙번·박은·박신·이원 등이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p>	<p>편전(便殿)에서 일을 보았다. 이숙번(李叔蕃)과 박은(朴崱)·박신(朴信)·이원(李原) 등이 민무휼(閔無恤)·민무회(閔無悔)의 죄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이 일은 이미 끝났다. 어찌 다시 청하는가? 누가 인정이 없을까마는 특별히 장모[外姑]가 있기 때문에 법과 같이 논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니, 이숙번이 말하였다. “누가 전하의 지극한 정리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민무휼·민무회의 범한 것이 애매하여 사람들이 함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 등이 바라기를, 유사에 내리어 밝게 문안(文案)을 세워 그 죄를 밝게 보인 뒤에 특별히 넓은 은혜를 내리어 성명(性命)을 보전하기를 이거이(李居易)의 고사(故事)와 같이 하면, 사은(私恩)과 공의(公義)의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삼성</p>	<p>癸丑/視事于便殿。 李叔蕃及朴崱、朴信、李原等請無恤、無悔罪， 教曰：“此事已畢，何容更請？誰無人情，特以外姑在焉，未得論如法耳。” 叔蕃曰：“誰不知殿下至情哉？但無恤、無悔所犯(曖昧) [曖昧]，人不共知，故臣等望下攸司，明立文案，昭示其罪，然後特降洪恩，保全性命如李居易故事，則私恩公義可謂兩得。 且三省，國家綱紀，不可暫無。 若皆不當，宜</p>

	<p>(三省)은 국가의 기강(紀綱)이어서 잡시도 없을 수 없으니, 만일 모두 적당치 않거든 마땅히 고쳐 임명하고, 만일 그 죄가 없거든 마땅히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소서.”</p> <p>임금이,</p> <p>“삼성(三省)이 나오는 것을 내가 어찌 하고자 하지 않을까마는, 특별히 출사(出仕)하도록 명하면 또 다시 전과 같을 것이요, 비록 다른 사람으로 바꾸더라도 반드시 또 뒤를 이어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즉시 도로 취직(就職)하는 것을 명하지 않은 것이다.”</p> <p>하니, 이숙변이 말하기를,</p> <p>“조선(朝鮮)의 신자(臣子)로서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무릇 자고 먹는 자라면, 누가 토죄(討罪)하여 충성을 다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전하가 비록 보전하고자 하더라도 나라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이(李居易)도 또한 능히 보전하였으니, 이 예에 의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p> <p>하매, 하교(下敎)하였다.</p> <p>“이미 일찍이 육조(六曹)·대간(臺諫)에게 붙여서 조정에서 힐문하게 하였으니, 어찌 명백해지지 않겠는가? 만일 유사(攸司)에 내리면 고문(拷問)을 할 터인데, 반드시 대부인(大夫人)의 마음을 상할 것이다. 민무홀·민무회가 내가 일찍이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을 배었으므로 항상 화가 미칠까 봐 염려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어서 형적을 가리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비록 용서하더라도 어찌 덕(德)에 감사하겠는가? 다만 송씨(宋氏)가 돌아간 뒤에 마땅히 이를 버리겠다. 지난번에 중련(中連)에 나가 있도록 명하였을 때에 내가 이질에 걸려서 민무홀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만일 평안히 있으면 너희들도 마땅히 환(患)이 없을 것이고, 내가 만일 편안치 못하면 너희들의 화는 더욱 빠를 것이다.’한 것도 또한 이 뜻이었다.”</p> <p>이숙변이 말하기를,</p>	<p>改置之，如其無罪，宜命出仕。” 上曰：“三省之出，吾豈不欲？特命之出仕，則又復如前，雖易以他人，必且繼踵而請，故不即命還就職耳。” 叔蕃曰：“朝鮮臣子戴天履地，凡有寢食，孰不欲討以効忠乎？且殿下雖欲全之，國人不從矣。然居易亦能保全，依此例爲便。” 教曰：“已嘗屬其六曹、臺諫，廷詰之矣，豈不明白？若下攸司，須用拷問，必傷大夫人之心矣。無恤、無悔以予曾誅無咎、無疾，常慮及禍，心懷疑貳，迹不能掩，遂至此極。予雖恕之，豈感德乎？但宋氏身後，當去之耳。 向命出居中(連) [途] 時，予得痢疾，謂無恤等云：‘予若安在，汝當無患，予若未寧，汝禍尤速。’亦以此意也。” 叔蕃曰：“得無以無咎、無疾見敗之故，懷復讎之心乎？” 上曰：“不然。嘗觀無悔，性本狠愎不仁耳，安有顧念兄弟之讎乎？向嘗因啓事，知不憫二兄之事，特慮禍及，有異謀耳。” 叔蕃固請究問而原之，上仰視久之，尙未忍下於攸司。啓畢，諸判書趨出，叔蕃、朴崐在焉。上語及災異歎曰：“比見災變荐至，甚欲修明政事，</p>
--	---	--

	<p>“민무구·민무질이 해를 본 까닭으로 복수할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까?” 하니, 임금이,</p> <p>“그렇지 않다. 일찍이 보건대, 민무회가 성질이 본래 사납고 고약하여 어질지 못한데, 어찌 형제의 원수를 돌아보고 생각하겠느냐? 지난번에 일찍이 계사(啓事)함으로 인하여 두 형의 일을 가련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알았다. 특별히 다른 음모가 있어 화가 미칠까 염려된다.”</p> <p>하였다. 이숙번이 끝까지 캐어 묻기를 굳이 청하였으나 용서하고, 임금이 천정을 쳐다보고 오랫동안 있었으나 아직도 차마 유사(攸司)에 내리지 못하였다. 계사(啓事)가 끝나자, 여러 관서는 추창(趨蹌)하여 나가고, 이숙번과 박은이 남아 있었다. 임금이 재이(災異)에 말이 미치자, 탄식하였다.</p> <p>“근자에 재변이 거듭 이르는 것을 보고 심히 정사를 닦아 밝히고자 하나, 어떤 일은 마땅히 행하여야 되고 어떤 일은 마땅히 그만두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 매양 지극한 의논을 널리 구하여 뜻을 가다듬어 행하고자 하나, 또한 위대한 의논과 좋은 말을 듣지 못한다. 감선(減膳)하고 철악(輟樂)하는 것은 또한 말단의 일이다. 그러나 마음에 대단히 근심되므로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p> <p>임금이 다시 탄식하였다.</p> <p>“일년내 가물어서 벼가 마르고 어제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히고 곡식이 손실되었으니, 무슨 선하지 못한 일이 쌓여서 이러한 여러 재앙을 가져 오는가? 내가 일찍이 방문을 닫고 가만히 생각하니 살고 싶지가 않았다. 즉위한 이래로 공덕(功德)이 생민(生民)을 복되게 한 것이 없다. 근일에 교하(交河)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시기가 멸망할 때를 당하여 이런 재이(災異)가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정사를 도모하는 대신은 서로 체대(遞代)되고 나는 오래 재위(在位)하였으니, 세자에게 전위(傳位)하여 조금 근심과 걱정을 풀고자 하나, 세자가 어려서 일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그렇게</p>	<p>然未知某事當行，某事當止，每欲廣求至論，銳意行之，亦未聞有偉議昌言，減膳輟樂，亦末事耳。然情迫于中，亦不得不爲。”復歎曰：“終年暵旱，禾稼既槁，昨日大風，樹拔穀損。積何不善，致此衆災？予嘗閉室靜思，如不欲生。卽位以來，未有功德以福生民。近日交河民云：‘時當滅亡，有此災異。’豈無愧乎？圖政大臣，更相遞代，予久在位，欲傳位於世子，稍弛憂慮，然幼未更事，亦不果也。誰知予日夜有此憂憫之懷？”因涕泣縱橫，悲不自勝。叔蕃、嘗等惶愕莫能仰視曰：“殿下至誠惻怛，敬天憂民，誠貫天地，故四方乂安，民皆樂生。如此早災，成湯所不免也。”是時上憂旱，日御一膳，露坐日中，以致違豫，得水痢甚苦，久乃平復。</p>
--	---	--

	<p>도 하지 못한다. 누가 나의 밤낮으로 이처럼 근심하고 고민하는 마음을 알겠느냐?”</p> <p>인하여 눈물을 줄줄 흘리고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니, 이숙번과 박은 등이 황공하고 놀라서 우러러보지 못하고 말하기를,</p> <p>“전하가 지성으로 가엾게 여기고 슬퍼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근심하여 정성이 천지에 닿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다스려져 편안하고 백성들이 모두 생업을 즐깁니다. 이 같은 한재(旱災)는 성탕(成湯)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p> <p>하였다. 이 때에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날마다 한 끼씩 들고 혹은 햇볕 가운데 나가 앉아서, 이 때문에 편치 못하여 이질에 걸려 심히 괴로와하다가 오래 뒤에 회복되었다.</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8월 7일 (신미) 1번째기사 광연루에 술자리를 베풀고 종친과 격구하다. 승정원에 백성 구제를 전지하다</p>	<p>광연루(廣延樓) 아래에 술자리를 베풀고 종친과 더불어 격구(擊毬)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p> <p>“5,6월을 당하여 내가 비록 먹으나 어찌 살로 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종친이 모두 있어서 풍악을 잡혔으나, 내가 듣고도 즐기지를 않는다. 내가 쌀 5천여 석을 서울 안으로 운송하라고 명하였으니, 먼저 궁한 백성을 구제한 뒤에야 먹을 수가 있겠다.”</p> <p>하니, 지신사(知申事) 유사눌(柳思訥)이 아뢰기를,</p> <p>“5,6월 가뭄을 당하여 주상이 추성(秋成)의 가망이 없다고 이르시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니, 올 가을은 벌써 어느 정도 풍년이 들었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대군(大君)·종친으로 하여금 여러 대언(代言)에게 작(爵)을 주게 하였다.</p>	<p>辛未/置酒廣延樓下，與宗親擊毬。傳旨承政院：“當五六月，予雖食，豈充肌膚？今日宗親咸在而舉樂，予聞之亦未樂也。予命輸米五千餘石于京中，先濟窮民，而後乃可食。”知申事柳思訥啓曰：“當五六月旱時，上謂無西成之望，動念至此，今秋已稍熟矣。”上使大君、宗親，賜諸代言爵。</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8월 23</p>	<p>경기 인천(仁川) 등 9읍(邑)의 요역(徭役)을 면제하였는데, 관찰사 허지(許遲)가 인천(仁川)·부평(富平)·금양(衿陽)·통진(通津)·강화(江華)·교동(喬桐)·임단(臨湍)·원평(原平)·고양(高陽)이 모두 실농(失農)하였다고 보고한 때문이었다. 또</p>	<p>丁亥/免京畿仁川等九邑徭役，以觀察使許遲報仁川、富平、衿陽、通津、江華、喬桐、臨湍、原平、高陽皆失</p>

<p>일(정해) 1번째기사 관찰사 허지의 실농 보고로 경기 인천 등 9읍의 요역과 번상을 면제하다</p>	<p>경기의 별패(別牌)·시위패(侍衛牌)의 번상(番上)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호조 판서 윤향(尹向)이 경기의 절식(絶食)한 호수(戶數)를 아뢰니, 임금, “백성이 굶주리면 의창(義倉)의 군자(軍資)를 모두 퍼내어 진휼하고 꾸어 주 어야 한다. 들으니, 교동(喬桐)이 가뭄이 더욱 심하다고 하니, 절식한 사람이 어찌 16호(戶)만 되겠는가?” 하였다. 윤향이, “지금 당장 절식(絶食)한 자는 이것뿐입니다.” 하고, 얼마 아니 되어 허지(許遲)가 또 상언(上言)하기를, “통진현(通津縣) 백성이 장(狀)을 바치어 고칭(告稱)하기를, ‘한재로 인하여 실농(失農)하여 피곡(皮穀) 5두(斗)를 찌어야 겨우 쌀 1두, 혹은 7,8승(升)을 얻는데 모두 싸라기[碎米]이고, 콩도 또한 영글지 않아서 공세(貢稅)를 준비 하기 어렵다.’하였습니다. 위의 현(縣)이 실농이 더욱 심하여 봄 종자가 염려 되니, 빌건대, 금년의 세미(稅米)를 경창(京倉)으로 바치지 말고, 다만 피곡으 로 거두었다가 봄을 당하여 흩어 주어 종자를 하게 하고, 콩의 세(稅)도 또한 그와 같이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였다. “똑같이 실농하였으니, 인천 등 8읍도 또한 이 예에 준하라.”</p>	<p>農故也。 又命停京畿別牌、侍衛牌番 上。 戶曹判書尹向啓京畿絶食戶數, 上曰: “百姓飢則義倉軍資, 皆當發以 賑貸。 聞喬桐旱氣尤甚, 絶食者豈獨 十六戶?” 向曰: “時方絶食者止此 耳。” 未幾, 許遲又上言: “通津縣民 投狀告稱: ‘因旱失農, 春皮穀五斗, 僅 得米一斗或七八升, 竝是碎米, 豆亦不 熟, 難備貢稅。’ 右縣失農尤甚, 春種 可慮。 乞將今年稅米, 勿解納京倉, 只收皮穀, 當春俵散爲種, 其豆稅亦如 之。” 命曰: “一樣失農, 仁川等八邑, 亦準此例。”</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8월 23 일(정해) 3번째기사 유우소의 거우의 반을 감하다</p>	<p>유우소(乳牛所)의 거우(車牛)의 반을 감하였다.</p>	<p>減乳牛所車牛之半。</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p>	<p>병조에서 강무(講武)를 청하였다. 임금이, “어찌 너무 이르게 하는가?”</p>	<p>己丑/兵曹請講武, 上曰: “何太早也?” 判書朴信曰: “去年講武, 在九月初。”</p>

<p>(永樂) 13년) 8월 25일(기축) 1번째기사 병조에서 강무를 청하나, 윤택하지 않다</p>	<p>하니, 판서 박신(朴信)이, “지난해에는 강무가 9월 초에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내가 강무하고 싶지 않다. 노루·사슴과 꿩은 가을이 되어야 맛이 있다. 제향(祭享)에 생뢰(牲牢)를 쓰기는 하지마는, 내가 야미(野味)를 겸하여 올리고자 한다. 마땅히 양근(楊根) 등지로 가야 하겠는데, 오직 산에 오르고 물에 뜨는 짐승을 얻기가 어렵다.” 하니, 박신이 말하였다. “섭대장(攝隊長)·섭대부(攝隊副) 1천 명이 있습니다.”</p>	<p>上曰：“予不欲講武，顧獐鹿與雉，至秋有味。祭享雖用牲牢，予欲兼薦野味，當往楊根等處，唯登山浮水之獸爲難得也。”信曰：“攝隊長、隊副一千在焉。”</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8월 25일(기축) 2번째기사 강원도 도관찰사 이귀산이 양주 부사의 정장에 의거하여 새로 창고를 짓도록 청하다</p>	<p>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 이귀산(李貴山)이 양주 부사(襄州府使)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새로 창고를 짓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사인(使人)에게 이르기를, “돌아가서 너의 관찰사에게 말하라. 화곡(禾穀)이 결실하지 못하였는데 풍년이라 하면 이것은 간사한 신하이요, 결실하였는데 흉년이라 하면 이것도 또한 곧지 못한 것이다. 양주 부사가 정장(呈狀)한 가운데에는 흉년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감사는 보통 흉년[中儉年]이라고 말하였으니, 이렇게 한 것은 생각건대, 강무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다.” 하고, 또 승정원(承政院)에 명하기를, “진언(陳言)하는 자가 강무를 정지하도록 청하고, 또 내가 대간의 말을 듣기 싫어서 행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고, 또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본래 횡성(橫城) 등지에서 강무하고자 하지 않는데, 감사가 그래도 풀을 베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종묘(宗廟)에 짐승을 바치고자 하는 것이니, 양근 등지에 나가서 4,5일이면 족하다.” 하였다. 유사눌(柳思訥)이,</p>	<p>江原道都觀察使李貴山據襄州府使呈，請新作倉庫，上謂使人曰：“歸語爾觀察使。禾穀不稔，而謂之豐，則是佞臣也；稔而謂之儉，則是亦不直也。襄州呈內，不言儉年，而監司謂之中儉年。如此者，意其預防講武也。”又命承政院曰：“陳言者請停講武，且予厭聞臺諫之言，亦不欲行。”又謂代言等曰：“予本不欲講武於橫城等處，而監司尙令刈草，何哉？欲爲宗廟薦禽，出於楊根等處四五日足矣。”柳思訥曰：“若止四日而無禽，則難矣，請加數日。”命曰：“不可役京畿失農之人。”又傳旨京畿及江原道都觀察使曰：“自今私獵禁處，毋竝禁拾橡實之人。”</p>

	<p>“만일 4일로 제한하였다가 짐승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며칠을 더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경기의 실농(失農)한 사람을 역사시킬 수는 없다.” 하고, 또 경기 및 강원도 도관찰사에게 진지(傳旨)하였다. “지금부터 사렵(私獵)을 금하는 곳에 상수리 열매 줍는 사람까지 금하지 말라.”</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8월 29 일(계사) 4번째기사 충청도 도관찰사 우희 열이 청량속으로 구황 하는 법을 보고하니 여러 대언이 비웃다</p>	<p>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 우희열(禹希烈)이 청량속(靑梁粟)으로 구황(救荒)하는 법을 보고하였다. 호조에 보고하기를, “도내 백성이 굶주리니, 청량속의 법을 시행하도록 청합니다.” 하였다. 판서 윤향(尹尙)이 가지고 승정원에 나오니, 여러 대언(代言)이 웃으며 말하였다. “전일에 화곡을 바치고 풍년이라 하였는데, 지금 도리어 청량속의 법을 청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p>	<p>忠淸道都觀察使禹希烈報靑梁粟救荒之法。報戶曹曰：“道內民飢，請效靑梁粟法。”判書尹尙持進，承政院諸代言笑曰：“前日進禾穀，以爲年豐，今反請靑梁粟法何哉?”</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9월 3일 (정유) 5번째기사 제향 의식에 관한 예 조의 계문. 모두 그대 로 따르다</p>	<p>예조에서 제향 의식을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문소전(文昭殿) 조석 상식상(朝夕上食床)에는 9접(楪)을 쓰고 찬(饌)은 5기(器)를 쓰며, 계성전(啓聖殿)·문소전(文昭殿)의 사시 대향(四時大享)·유명일 별제(有名日別祭)·섭행(攝行)에는 유밀과(油蜜果) 사주상(四注床), 찬(饌) 9기(器)를 쓰소서.” 또 계문(啓聞)하기를, “목조(穆祖) 이하 여러 산릉(山陵)은 원일(元日)·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秋夕)·동지(冬至)·납일(臘日)에 사신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고, 건원릉(健元陵)·제릉(齊陵)의 삭망(朔望) 및 원일·한식·단오·추석·동지·납일의 제사는 한결같이 전례에 의하고, 봄·가을 중월(仲月)에 예관을 보내어 여러 능을 순시하고, 인하여 심릉안(審陵案)을 만들어서 본조(本曹)에 감추어 두소서.”</p>	<p>禮曹啓祭享儀式。啓曰：“文昭殿朝夕上食，床用九楪，饌用五器；啓聖殿、文昭殿四時大享、有名日別祭攝行，用油蜜果四注、床饌九器。”又啓：“穆祖以下諸山陵，元日、寒食、端午、秋夕、冬至、臘日遣使行祭；健元陵、齊陵朔望及元日、寒食、端午、秋夕、冬至、臘日之祭，一依前例。春秋仲月，遣禮官巡諸陵，仍成審陵案，藏諸本曹。”又啓：“啓聖殿、文昭殿朝夕上食及有名日別祭外，除四時大享；濬</p>

	<p>또 계문(啓聞)하였다.</p> <p>“계성전·문소전은 조석 상식과 유명일 별제 외에 사시 대향을 없애고, 준원전(濬源殿)은 여러 산릉 유명일 제사의 예에 의하여 사신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고 삭망(朔望)은 없애고, 경주(慶州)·전주(全州)·평양(平壤)의 태조 진전(太祖眞殿)의 유명일 별제는 전례에 의하여 본도(本道)의 사신과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를 행하게 하고 사시 대향은 없애소서.”</p> <p>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源殿依諸山陵有名日祭例，遣使行祭，而除朔望；慶州、全州、平壤太祖眞殿有名日別祭，依前例，令本道使臣守令行祭，而除四時大享。”皆從之。</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9월 4일 (무술) 2번째기사</p> <p>한성부에 명하여 집터의 세를 거두다. 경원창의 목은 보리로 백성을 진휼하다</p>	<p>한성부(漢城府)에 명하기를, 집터[家基]의 세(3511) 를 거두되 을미년부터 시작하고, 지나간 해의 세를 추정하여 받지 말라고 하고, 유사(攸司)에 명하여 경원창(慶源倉)의 목은 보리를 수운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진휼하게 하였다.</p> <p>호조 판서 윤향(尹向)이 아뢰기를,</p> <p>“서울 안에 연로(年老)한 사람과 절식(絶食)한 사람이 5백여 인이나 되니, 진휼하는 것을, 청컨대, 말[斗]로 고루 주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두 사람 아울러서 1석을 주라고 명하였다. 완산 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李天祐)·병조 판서 박신(朴信) 등이 아뢰기를,</p> <p>“세 사람 아울러서 1석을 주어도 가합니다.”</p> <p>하니, 임금이,</p> <p>“또한 2백 50여 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재상에게 상사(喪事)에 부조할 때 후한 예로 가하면 하사하는 것이 이 수량에 이르는데, 굶주린 백성을 진휼함에 있어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는가? 1석으로 두 사람에게 진휼하라.”</p> <p>하였다. 윤향이 또 아뢰기를,</p> <p>“절식한 자가 많아서 이루 다 진휼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p> <p>“없을 때까지 한도를 삼으라.”</p> <p>하였다. 예조 판서 이원(李原)이 아뢰기를,</p>	<p>命漢城府收家基之稅，始自乙未年，毋令追納往年之稅。命攸司輸慶源倉陳麥，以賑飢民。戶曹判書尹向啓：“京中年老與絶食者五百餘人。其賑濟，請以斗均給。”上命并二人給一石。完山府院君李天祐、兵曹判書朴信等啓曰：“并三亦可。”上曰：“亦不過二百五十餘石耳。若宰相助哀，加以厚禮，則賜至此數，於賑濟飢民，豈不可乎？其以一石賑濟二人。”向又啓：“絶食者衆，不勝賑濟。”上曰：“以無爲限。”禮曹判書李原啓曰：“歲前給還上，歲後給賑濟如何？”上然之。</p>

	<p>“세전(歲前)에는 환상(還上)을 주고 세후(歲後)에는 진제(賑濟)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옳게 여기었다.</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9월 5일 (기해) 2번째기사 얼음·마초에 관한 편민 사의를 아뢰는 경기 도관찰사 허지의 계문</p>	<p>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허지(許遲)가 편민 사의(便民事宜)를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p> <p>“장빙(藏氷)할 때를 당하여 경기의 백성들을 써서 얼음을 저장하는 여러 일에 대비하고, 얼음을 떠내고 얼음을 들이고 하는 것은 성저인(城底人)을 쓰고, 선공감(繕工監)에 속한 초완(草蕪)은 사람을 불러 모아 베게 하여 그 값을 주고, 국용 외에 남는 것은 모두 팔아서 용도에 충당하고, 또 금년에 가뭄으로 인하여 벼짚이 매우 귀하니, 사복시(司僕寺)의 마초(馬草)를 그 있는 것을 헤아려서 거두는 것을 감하소서.”</p>	<p>京畿都觀察使許遲啓便民事宜。 啓曰：“當藏氷之時，用京畿民，備藏氷諸事，而鑿氷納氷，用城底人。 其繕工監屬草蕪，令募人刈取，給其賞役，國用外餘皆賣之，以充用度。 且今年因旱，稻稗甚貴，司僕馬草，量其有而減收。”</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9월 21일(을묘) 4번째기사 한성부에서 화재를 방지하는 계목을 올리다</p>	<p>한성부에서 화재를 방지하는 계목을 올리었다.</p> <p>“사복시(司僕寺)·내자시(內資寺)·군자감(軍資監)·계용감(濟用監)·풍저창(豐儲倉) 등 각사가 인가가 조밀하고 가까워서 화재가 염려되고, 또 행랑의 북쪽에 인가가 매우 가까이 붙었으므로, 아울러 모두 분간하여 헐어 버리고, 위의 집이 헐린 사람은 자원을 들어서 각 사람이 집을 다 지은 남은 땅과 성 안 각사(各司)·사원(寺院)의 채전(菜田)과 반송방(盤松坊)·반석방(盤石坊)·마을 창고·남전(藍田)·청태전(靑苔田)의 채지(菜地)와 성 안의 사청(射廳)·침장고(沈藏庫)의 채지(菜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유정현(柳廷顯)·박은(朴崑)이 아뢰기를,</p> <p>“마땅히 헐어야 할 집이 1천여 호로 계산되니, 백성이 반드시 살 곳을 잃을 것입니다. 빌건대, 헐지 말고 꼭 헐어야 할 집과 행랑에 사는 자로 하여금 각각 힘을 써서 외영(外楹)에 담을 쌓아 불이 번지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비축하여 불을 방지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였다.</p>	<p>漢城府上備火災啓曰： 司僕寺、內資寺、軍資監、濟用監、豐儲倉等各司，密近人居，火災可慮。 且行廊之北，人家逼近，竝皆分揀破去。 其上項破家之人，聽其自願，將各人畢造家餘地及城內各司、寺院菜田，盤松坊、盤石坊里倉庫、藍田、靑苔田菜地，城內射廳、沈藏庫菜地折給何如？</p> <p>從之。 柳廷顯、朴崑啓曰：“家之當毀者，以千餘計，民必失所。 乞勿毀，而使當毀之家及居行廊者各勉其力，築牆外楹，使火不得延及，又畜水以備火。” 上曰：“火之爲用，冬月爲甚，</p>

	“불을 쓰는 것은 겨울이 심하니, 금화(焚火)의 영(令)을 엄하게 더하고, 명년 봄을 기다려 답을 쌓게 하라.”	嚴加禁火之令，待明春築墻。”
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9월 29 일(계해) 1번째기사 강릉 대화역 서쪽 들 에 머무르고, 대소 인 원에게 5일 동안의 인 마의 요속을 주다	강릉(江陵) 대화역(大和驛) 서쪽 들에 머무르고, 대가를 따르는 대소 인원에게 5일 동안의 인마(人馬)의 요속(料粟)을 주었다.	癸亥/次于江陵太和驛西坪，賜隨駕大小人員五日人馬料。
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0월 1 일(을축) 1번째기사 미면산에서 몰이하다. 날짐승 50여 마리를 잡아 대가를 따르는 인원에게 주다	미면산(米面山)에서 몰이하였다. 이날 날짐승 50여 마리를 잡아 대가(大駕)를 따르는 인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乙丑朔/驅米面山。是日獲禽五十餘口，分賜隨駕人員。
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0월 3 일(정묘) 1번째기사 대가가 진보역 남쪽에 이르러, 사람을 보내어 종묘에 새를 바치다	대가가 진보역(珍寶驛) 남쪽에 이르러, 사람을 보내어 종묘에 새를 바치었다.	丁卯/駕至珍寶驛南，遣人獻禽於宗廟。
태종 30권, 15년	대가를 따르는 대소 인원에게 5일 동안의 인마(人馬)의 요속(料粟)을 주었다.	賜隨駕大小人，五日人馬料。

<p>(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0월 3일(정묘) 2번째기사 대가를 따르는 대소 인원에게 5일 동안의 인마의 요속을 주다</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0월 7일(신미) 1번째기사 돌아오다가 방림역 동쪽 들에서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도진무·대언이 시연하다</p>	<p>돌아오다가 방림역(芳林驛) 동쪽 들에 머물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종친과 도진무(都鎭撫)·대언(代言)이 시연(侍宴)하였다. 인하여 대가(大駕)를 따르는 대소 인원에게 술을 주었다.</p>	<p>辛未/還次芳林驛東坪置酒, 宗親及都鎭撫、代言侍宴。 仍賜酒于隨駕大小人員。</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0월 9일(계유) 1번째기사 횡성 실미원 들에서 물이꾼을 놓아 보내다. 경상도 도관찰사 안등이 술을 바치다</p>	<p>횡성(橫城) 실미원(實美院)들에 머물러서 물이꾼을 놓아 보냈다. 경상도 도관찰사 안등(安騰)이 사람을 보내어 술 1백 병을 바치었다.</p>	<p>癸酉/次于橫城實美院坪, 放還驅軍。慶尙道都觀察使安騰遣人獻酒一百瓶。</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0월 22일(병술) 1번째기사</p>	<p>가평(加平) 수화이산(愁火伊山)에 머물렀다. 임금이 친히 큰 돼지를 쏘아 잡으니, 보는 자가 위태하게 여기었다.</p>	<p>丙戌/次加平愁火伊山。 上親射大豨獲之, 見者危之。</p>

<p>가평 수화이산에 머물다. 큰 돼지를 쏘아 잡으니, 보는 자가 위태하게 여기다</p>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1월 15일(무신) 3번째기사 경기 도관찰사 허지가 구황 사목을 올려, 육조에 내려 의논케 하다</p>	<p>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허지(許遲)가 구황 사목(救荒事目)을 올렸는데, 육조에 내리어 의논하였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p> <p>“굶주린 백성의 연례 요역(徭役)을 상고하면 다른 도에 비하여 배나 많은데, 하물며 금년에는 참으로 지관(支辦)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복시(司僕寺)·유우소(乳牛所)·예빈시(禮賓寺)·전구서(典廐署)·채원(菜園)·빙고(氷庫)·목(牧)·감(監) 각처에 바치는 짚[藁]이 3만 9천 5백여 동인데, 교지(教旨)에 의하여 실농이 더욱 심한 교동(喬桐)·통진(通津) 등 9현(縣)을 면제한 외에 그 나머지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한 짚의 수량이 전의 배가 더합니다. 또 각 고을에서 받는 우마를 기르는 짚을 모두 백성에게 거두니,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위의 항목의 각처에 바치는 짚을, 빌건대, 충청도(忠淸道)·강원도(江原道) 물가의 실농하지 않은 각 고을에 금년만 한하여 옮겨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1. 사복시(司僕寺)의 마초(馬草)는 이미 교초(郊草)를 아울러 바치게 하였으니, 모든 과전(科田)에서 바치는 풀도 또한 교초(郊草)로 수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위의 조문의 곡초(穀草)·교초(郊草)는 경작자의 자원대로 수납하게 하소서.”</p> <p>“1. 환상(還上)은 자원을 들어서 모두 피곡(皮穀)을 거두어 종자에 대비하고, 공사 전조(公私田租)를 또한 전객(佃客)의 자원을 들어 잡곡을 아울러 거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위의 조문은 계문(啓聞)에 의하소서.”</p> <p>“1. 수령이 전제(賑濟)할 때를 당하면 민간 각호 인구의 다소와 양식의 유무를 두루 알지 않음이 없은 뒤에야 균일하게 진휼하여 굶주림이 없게 할 수</p>	<p>京畿都觀察使許遲上救荒事目，下六曹擬議。 啓曰：“考飢民年例徭役，比他道倍多，況以今年固難支辦。 司僕、乳牛所、禮賓、典廐、菜園、氷庫、牧監各處納藁草， 三萬九千五百餘同，依教旨，失農尤甚喬桐、通津等九縣除免外，其餘各官分定，草數倍加於前，又各官所受牛馬養飼藁草，皆斂於民。 自來二月至四月， 上項各處所納藁草，乞於忠淸、江原水邊不失農各官，限今年移定何如?”</p> <p>一， 司僕馬草， 既令郊草并納， 凡科田所納草， 亦以郊草輸納何如?</p> <p>右條， 穀草、 郊草以作者自願輸納。</p> <p>一， 還上聽自願， 皆收皮穀， 以備種子； 公私田租， 亦聽佃客自願， 雜穀并收何如?</p> <p>右條， 依啓聞。</p> <p>一， 守令當賑濟時， 民間各戶人口多小、 糧餉有無， 靡不周知， 然後平均惠養， 俾無飢饉。 雖小邑， 以一守令勢</p>

	<p>있는데, 비록 작은 고을이라도 수령 한 사람으로서는 사세가 날마다 두루 돌아다니기가 어려우니, 자혜(慈惠)하고 간사(幹事)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한 곳마다 감고(監考) 한 사람을 정하여 오로지 진제(賑濟)를 맡기고, 그 관장(管掌)하는 구역 안의 인구의 다소와 가산의 등급을 핵실(覈實)하여 갖추 기록하여 진제하는 물건을 받아서 완급(緩急)과 선후(先後)를 일체 그 뜻을 들어 주고, 그 중에 능히 진제하는 자가 있으면 계문하여 탁용(擢用)하고, 만일 마음을 쓰려 하지 않아서 인명을 상하게 한 자가 있으면 율에 의하여 중하게 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위의 조문은 계문한 것에 의하소서.”</p> <p>“1. 도내 각 고을의 창고의 곡식은 모두 환상(還上)을 주고 남은 저축이 많지 않으니, 지금 비록 독축을 하더라도 형세가 꼭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유후사(留後司) 및 충주(忠州) 경원창(慶源倉)의 쌀을 실농이 더욱 심한 교동(喬桐) 등 9현(縣)에 수운하여 우선 진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내 각 고을의 궁사창(宮司倉)과 각사(各司)에 속한 전조(田租) 내에서 반드시 하여야 할 상납(上納) 외에 그 나머지는 모두 그 고을에 납부하여 오는 해의 농사지을 동안 먹을 양식과 종자에 대비하고, 또 수운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위의 조문은 소격전(昭格殿) 외에는 상납하지 말게 하소서.”</p> <p>“1. 한재가 있고 없는 것은 참으로 기필하기 어렵습니다. 금년에 실농이 더욱 심한 곳은 대개 수리(水利)를 일으키지 않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만일 실농한 땅에 공사를 일으키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여 제언(堤堰)을 쌓지 않는다면, 만일 한재가 있으면 다시 금년같이 될 것입니다. 실농이 심한 각 고을에 우선 제언을 쌓을 만한 곳은 대소를 물론하고 날을 정하여 양식을 주어 제언을 축조하여 수리를 일으켜서 한재를 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위의 조문은 제언을 쌓을 만한 곳에 때에 미쳐 축조하게 하소서.”</p>	<p>難逐日遍行，擇其慈惠幹事人，每一所定一監考，專掌賑濟。其掌內人口多小、家產等第，覈實具錄，以受賑濟之物，緩急先後，一聽其意。其中有能賑濟者，啓聞擢用，如有不肯用心，致傷人命者，依律重論何如？</p> <p>右條，依啓聞。</p> <p>一，道內各官倉庫之穀，皆給還上，餘儲不多，今雖督促，勢不能準納。留後司及忠州慶源倉米漕轉，失農尤甚喬桐等九縣，爲先賑濟何如？道內各官宮司倉、各司屬田租內，必須上納外，其餘皆納其官，以備來歲農糧種子，且除轉輸之弊何如？</p> <p>右條，昭格殿外，勿令上納。</p> <p>一，旱災有無，固難必也。今年失農尤甚之處，率皆水利不興而然。若謂失農之地，不宜興工，不築堤堰，則如有旱災，復如今年矣。其失農尤甚各官，爲先堤堰可當處，勿論大小，定日給糧，造築堤堰，以興水利，以免旱災何如？</p> <p>右條，堤堰可當處，及時造築。</p>
--	---	--

<p>태종 30권, 15년 (1415 을미 / 명 영락 (永樂) 13년) 11월 15 일(무신) 5번째기사 개성 유후사의 보고에 의해 소속한 네 고을 의 궁한 백성을 진휼 하다</p>	<p>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에 속한 네 고을의 궁한 백성을 진휼하였다. 개성 유후사에서 보고하기를, “본사(本司)에 속한 네 고을 인호(人戶)가 가뭄으로 인하여 실농하여 세전(歲前)에 양식이 끊어졌는데, 개성에 1백 51호, 해풍(海豐)에 2백 74호, 덕수(德水)에 1백 85호, 송림(松林)에 26호입니다. 빌건대, 풍저창(豐儲倉)·군자창(軍資倉)의 쌀·콩·보리를 발하여 적당히 주소서.” 하니, 명하였다. “그 중에 조금 나은 자는 환상으로 주고, 식량이 끊어진 자는 진휼하여 주라.”</p>	<p>賑開城留後司屬四縣窮民。開城留後司報：“司屬四縣人戶，因旱失農，歲前絕食，開城一百五十一戶，海豐二百七十四戶，德水一百八十五戶，松林二十六戶。乞發豐儲、軍資米豆眞麥，量宜給之。”命其中稍可者以還上給之，絕食者賑給。</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1월 1일 (갑오) 1번째기사 하정례 후에 상왕을 모시고 창덕궁의 광연 루에서 술자리를 베풀 다</p>	<p>임금이 하정례(賀正禮)를 행하고, 이어서 상왕(上王)을 모시고 창덕궁(昌德宮)에 이르러 술자리를 광연루(廣延樓)아래에 베풀니, 세자(世子)와 종친(宗親)·부마(駙馬)가 시연(侍宴)하였다. 여러 신하들에게도 잔치를 내려 주고, 풍악(風樂)을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주었다.</p>	<p>甲午朔/上行賀正禮，仍奉上王至昌德宮，置酒廣延樓下，世子及宗親、駙馬侍宴。賜群臣宴，賜樂于議政府。</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1월 4일 (정유) 1번째기사 충청도 순성에서 강무 하기로 정하고 대호군 조치를 보내다</p>	<p>대호군(大護軍) 조치(趙菑)를 순성(蓴城)에 보냈다. 임금이 병조 판서(兵曹判書) 박신(朴信)·도진무(都鎭撫) 한규(韓珪)·지신사(知申事) 유사눌(柳思訥)과 의논하여 충청도의 순성(蓴城)을 강무(講武)하는 장소로 정하고, 조치를 보내어 이를 불사르게 하였다. 이리하여 행궁 지응사(行宮支應使)가 아뢰었다. “숙소(宿所)를 이미 정한 뒤에는 그때에 임하여 이배(移排)하도록 하지 마소서. 사복시(司僕寺)의 크고 작은 말[馬]이 아울러 4백 50필인데, 먹여 기르는 세절초(細折草)는 1필마다 1석씩으로 하는 이외에 산초(散草)는 허용하지 말고, 마주(馬柱)와 갈승(葛繩)도 또한 작량(酌量)하여 진공(進供)하게 하였다가</p>	<p>丁酉/遣大護軍趙菑于蓴城。上與兵曹判書朴信、都鎭撫韓珪、知申事柳思訥議定以忠清道蓴城爲講武所，遣菑焚之。於是，行宮支應使啓曰：“宿所已定，後勿令臨時移排。司僕大小馬并四百五十四，養飼細折草，每一匹一石外，勿許散草。馬柱及葛繩亦令酌量進供，翼日明白還受。馬杙則司僕</p>

	<p>이튿날에 명백하게 환수(還受)하도록 하소서. 마익(馬枵)은 사복시(司僕寺)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아울러 진공하게 하지 말며, 삼군 갑사(三軍甲士)의 산료(散料) 이외의 공급과 금군(衿軍)·견마배 별감(牽馬陪別監)의 혜말(鞋韉)도 제급(題給)하고, 각 숙소(宿所)에서 진상(進上)하는 물건을 일체 금지하며, 사선(司膳)과 사옹(司甕)까지도 예식(例式)에 의하여 진배(進排)하는 물건 이외에 그밖의 물건은 승정원(承政院)에서 명문(明文)하여 서로 고찰하여서 진배하며, 각 숙소에서 공상(供上)하는 주미(酒味)도 내자시(內資寺)와 내섭시(內贍寺)에서 진배하고 만약 따로 주미를 진배하면 승정원에서 체자(帖字)를 서로 고찰하여서 진배하며, 각도 감사(監司)·수령관(首領官)과 지나가는 경내(境內)의 수령 이외의 각 고을의 수령(守令)은 월경(越境)하지 못하게 하며, 각역(各驛)의 마필은 각각 정수(定數)를 차비(差備)하되, 멀고 가까운 것을 서로 고찰하여 분간(分揀)하고 작량하여 초출(抄出)하고, 3일마다 번(番)을 갈아서 사복(司僕)·사옹(司甕)·사막(司幕)의 여러 관원이 지응(支應)하며, 각 고을의 색장(色掌)은 함부로 구타(毆打)하지 못하게 하며, 지완(遲緩)하는 일이 있으면 승정원(承政院)에서 진고(進告)하여 논죄하도록 하소서. 윗 항목 일의 조건 이외에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으로 만약 민간에서 수렴(收斂)하여 인정을 은밀(隱密)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지응사(支應使)와 찰방(察訪)으로 하여금 암행(暗行)하여 붙잡아서 즉시 계문(啓聞)하고 논죄하게 하소서.”</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寺自備，勿令并進。三軍甲士散料外供給及(衿軍)〔禁軍〕、牽馬陪別監鞋韉題給一禁。各宿所進上之物及司膳、司甕依式進排之物外其他物，承政院明文相考進排。各宿所供上酒味，內資、內贍寺進排，若其別進酒味，承政院帖字相考進排。各道監司、首領官及所過境內守令外，各官守令毋得越境。各驛馬匹、各差備，定數相考，遐近分揀，酌量抄出，每三日遞番。司僕、司甕、司幕諸員等支應各官色掌，毋得擅自毆打，有遲緩事，則承政院進告論罪。上項事件外，監司、守令若有收斂民間、隱密人情者，令支應使及察訪暗行捕捉，隨即啓聞論罪。”</p> <p>從之。</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1월 10 일(계묘) 1번째기사 종묘에 강신하다. 종묘에서의 예절에 관해</p>	<p>임금이 친히 종묘(宗廟)에 강신[裸]하였다. 처음에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였다.</p> <p>“종묘에 친히 거동할 때 봉례(奉禮)가 창(唱)하기를, ‘왕허상마(王許上馬)’라고 하는데 왕자(王字)가 존귀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중국 조정의 사신이 와서 왕이라 칭(稱)한다면 가하거니와 봉례가 왕이라고 칭하는 것은 미편하다”</p> <p>유사눌(柳思訥)이 아뢰기를,</p>	<p>癸卯/上親裸宗廟。初，傳旨承政院曰：“親幸宗廟時，奉禮唱王許上馬。王字雖尊，若中朝使臣來，稱王則可矣，以奉禮而稱王未便。”柳思訥啓曰：“癸巳年改詳定云：‘教文武侍臣上馬。’”上然之。禮曹啓：“古制，宗</p>

<p>예조에서 아뢰다</p>	<p>“계사년(癸巳年)에 고쳐서 상정(詳定)하기를, ‘교문무 시신 상마(敎文武侍臣上馬)’라고 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예조(禮曹)에서 아뢰었다.</p> <p>“고제(古制)에는 종묘(宗廟)에 진찬(進饌)할 때 정문으로 들어가 태계(泰階)로 올라갔으나, 오늘날은 그전대로 인순(因循)하여 들어가는 절차를 잃고서 동문(東門)으로 들어가니, 고제(古制)에 어긋납니다. 빌건대, 찬(饌)을 만드는 자로 하여금 정문(正門)으로 들어가게 하소서.”</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廟進饌，入自正門，升自泰階。今因循舊失，入自東門，有違古制。乞令奉饌者，入自南正門。”從之。</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1월 10 일(계묘) 2번째기사 제례를</p>	<p>이날 예(禮)를 필(畢)하고 환궁하여 광연루(廣延樓) 아래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풀고 풍악(風樂)을 잡히니, 세자(世子)와 여러 종친(宗親)이 시연(侍宴)하였다. 향관(享官)과 여러 집사(執事)에게 사연(賜宴)하였다. 저물녘에 이르러 세자가 술에 취하여 나아가서 아뢰기를,</p> <p>“종사(宗社)는 오로지 전하의 종사만이 아니니, 죄인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무휼(閔無恤)과 민무회(閔無悔)를 법대로 처치함이 옳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최한(崔閑)에게 이르기를,</p> <p>“자세하게 이 말을 들어 두라.”</p> <p>하였다.</p>	<p>是日，禮畢還宮，御廣延樓下，置酒舉樂，世子、諸宗親侍宴。賜宴于享官諸執事。至暮，世子酒酣進啓曰：“宗社非獨殿下之宗社，罪人不可不正，無恤、無悔宜置於法。”上謂崔閑曰：“詳聽此言。”</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1월 12 일(을사) 3번째기사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제향과 공상 이외에 술의 사용을 금하다</p>	<p>금주(禁酒)하였다. 여러 곳의 제향(祭享)과 각전(各殿)의 공상(供上) 이외에 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니, 사헌부의 계문(啓聞)을 따른 것이었다.</p>	<p>禁酒。諸處祭享、各殿供上外，禁用酒，從司憲府之啓也。</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p>	<p>술자리를 광연루(廣延樓) 아래에 베풀었다. 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과</p>	<p>戊午/置酒廣延樓下。谷山君延嗣宗、礪良君宋居信皆持服，爲之開素，</p>

<p>(永樂) 14년) 1월 25일(무오) 1번째기사 광연루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연사종과 송거신에게 개소하게 하다</p>	<p>여량군(礪良君) 송거신(宋居信)이 모두 복(服)을 입었는데, 이들에게 개소(開素)하게 하였고, 종친(宗親)도 시연(侍宴)하였다.</p>	<p>宗親侍宴。</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1월 27일(경신) 3번째기사 대사헌 이원이 유후사 대청관의 천황대제를 소격전에서 행하자고 청하다</p>	<p>대사헌 이원(李原)이 유후사(留後司) 대청관(大清觀)의 천황 대제(天皇大帝)를 소격전(昭格殿)에 옮겨서 제사지내기를 청하였다. 계문(啓聞)하기를, “대청관(大清觀)의 제찬(祭饌)을 비복(婢僕)으로 하여금 공진(供進)하게 하니 불경(不敬)에 가깝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버릴 수 없는 것은 소격전(昭格殿)으로 옮겨서 제사지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대청관(大清觀)은 무엇 때문에 설치했는가? 고서(古書)에 있기를, ‘천문(天文)의 칭호(稱號)는 무망(誣妄)함이 크다.’고 하였는데, 지금 ‘아무 군(君)·‘아무 제(帝)’라 칭하고서 제사지내는 것이 심히 많으니, 그욕이 생각건대, 잘못 된 것이다. 내가 눈으로 접(接)하고 경배(敬拜)하는 것은 북두(北斗)뿐이다.” 임금이 예조 판서 조용(趙庸)에게 명하여 대청관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p>	<p>大司憲李原請移祀留後司太清觀天皇大帝於昭格殿。 啓曰：“太清觀祭饌，使婢僕供進， 近於不敬。 可去則去，不可去則移祀昭格殿何如？” 上曰：“太清觀何因而設？ 古書有曰：‘天文稱號，大是誣妄。’ 今稱某君某帝而祀者甚衆， 竊以爲謬。 予所目接敬拜者， 北斗而已。” 命禮曹判書趙庸， 考太清觀故事以聞。</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2월 17일(경진) 2번째기사 중관을 홍주로 보내어 방간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주다</p>	<p>중관(中官)을 홍주(洪州)로 보내어 방간(芳幹)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주었다.</p>	<p>遣中官于洪州， 賜芳幹酒肉。</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p>	<p>호조 참의(戶曹參議) 이명덕(李明德)을 보내어 경기에서 기근(飢饉)을 진제(賑濟)하는 상황을 고찰(考察)하게 하였다. 임금이 경기의 굶는 사람들을 진제(賑</p>	<p>遣戶曹參議李明德， 考察京畿賑濟飢饉之狀。 上憂京畿飢人賑濟未周， 分遣</p>

<p>(永樂) 14년) 2월 26일(기축) 2번째기사 호조 참의 이명덕 등으로 경기의 기근을 조사하게 하고 경창의 쌀로 진제하다</p>	<p>濟)하는 데 주밀(周密)하게 하지 못할까 걱정하여, 감찰(監察) 최윤복(崔閔福)과 박소(朴蘇) 등을 따로 보내어 수령(守令)의 근만(勤慢)을 살피게 하고, 호조에 명하여 경창(京倉)의 쌀을 경기로 수송하여서 진제하게 하고, 또 이명덕(李明德)에게 명하여 순찰(巡察)하게 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노약(老弱)과 질병(疾病)으로 능히 스스로 관가에 와서 진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수령(守令)들이 죽미(粥米)와 염장(鹽醬)을 가지고 여리(閭里)로 친히 다니면서 인구를 계산하여 직접 주게 하고, 행대 감찰(行臺監察)로 하여금 척간(擲奸)하게 하고, 만약 진휼(賑恤)하는데 즐겨 마음을 쓰지 않아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일이 있게 한다면 수령과 감사를 계문(啓聞)하여 죄를 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監察崔閔福、朴蘇等， 察守令勤慢。命戶曹， 輸京倉之米于京畿以賑之， 又命明德巡察。 戶曹啓：“老弱疾病， 不能自受賑濟於官者， 守令持粥米鹽醬， 親行閭里， 計口面給。 令行臺監察擲奸， 若不肯用心賑恤， 或有一口以致飢死， 守令與監司啓聞論罪。” 從之。</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3월 3일 (을미) 1번째기사 왕방산에서 몰이하다. 짐승을 많이 잡았다고 한규를 칭찬하여 잔을 내리다</p>	<p>왕방산(王方山)에서 몰이하였다. 상왕(上王)이 쏜 노루와 사슴을 각각 한 마리씩 임금에게 보내니, 임금이 쏜 사슴 두 마리를 상왕에게 바쳤다. 우애(友愛)하는 정이 대단히 두터우매 시종(侍從)했던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임금이 한규에게 이르기를, “잡은 짐승이 많은 것과 상왕이 많이 맞힌 것도 모두 너의 공이다.” 하고, 이어서 잔[爵]을 내려 주었다.</p>	<p>乙未/驅王方山。 上王送所射獐鹿各一于上， 上以所射鹿二獻于上王， 友愛之情甚篤， 侍從皆嘆之。 上謂韓珪曰：“獲禽之多與上王之多中， 咸爾功也。” 仍賜爵。</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3월 5일 (정유) 1번째기사 보장산에서 몰이하고, 소요산에 머물다. 망초</p>	<p>보장산(寶藏山)에서 몰이하고, 저녁에 사천현(沙川縣)의 소요산(逍遙山) 아래에 머물렀다. 대가를 따르는 사람들로써 숙소에 이르러 독초(毒草)를 잘못 먹고 갑자기 죽은 사람이 6인이었는데, 약을 복용하여 살아난 사람이 2인이었다. 임금이 죽은 상황을 물으니, 대답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물을 먹은 지 순식간(瞬息間)에 황홀(恍惚)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귀·눈·입·코에서 피가 흐르듯이 나왔습니다.”</p>	<p>丁酉/驅寶藏山， 夕次沙川縣逍遙山下。 隨駕人至宿所， 誤食毒草， 暴死者六人， 服藥而生者二人。 上問死狀， 對之者曰：“食菜瞬息間， 恍惚不省， 自耳目口鼻出血如流。” 上甚痛之， 謂左右曰：“人必曰此講武之所致也。”</p>

<p>를 잘못 먹고 사람이 죽다</p>	<p>하였다. 임금이 매우 가슴아파하여 좌우(左右)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이것은 강무(講武)의 소치(所致)라.’ 할 것이다.” 하고, 찰방(察訪)과 상호군(上護軍) 전흥(田興)으로 하여금 깊은 골짜기에다 단단히 묻게 하고, 6인의 집에는 쌀과 콩 각각 2석씩을 주게 하였다. 독초(毒草)의 이름은 망초(莽草)이고, 향명(鄉名)은 대조채(大鳥菜)인데, 뿌리는 거여목[苜蓿]과 같고 줄기는 쑥갓[苘菜]과 같았다. 임금이 사옹(司饗)에게 명하였다. “이제부터 어선(御膳)에는 쑥갓과 거여목을 올리지 말라.”</p>	<p>令察訪上護軍田興堅埋于幽谷，給六人家米豆各二石。毒草名莽草，鄉名大鳥菜，根如苜蓿，莖如苘菜。命司饗自今御膳勿進苘菜、苜蓿。</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3월 8일 (경자) 1번째기사 소합유에 관한 죄로 한상덕·황자후·이양수를 의금부에 내리다</p>	<p>우대언(右代言) 한상덕(韓尙德)·공안부 윤(恭安府尹) 황자후(黃子厚)·전 지고성군사(知高城郡事) 이양수(李養修)를 의금부에 내렸다. 전 관원주목사(判原州牧使) 권완(權緩)이 지신사(知申事) 유사눌(柳思訥)과 동네[里閭]가 같아서 그 교분이 매우 친밀하였다. 권완의 집에 소합유(蘇合油) 3근이 있었는데, 권완과 유사눌이 공모하여 왜인(倭人) 상호군(上護軍) 평도전(平道全)을 꺾어서 그 단자(單子)를 받아 승정원에 바치고, 유사눌이 아뢰어 전의감(典醫監)에 내렸는데, 제조(提調) 황자후가, “벌레가 생겨서 쓰지 못하겠다.” 하고, 받지 않았다. 평도전이 다시 승정원에 바치니, 유사눌이 다시 계문(啓聞)하지 않고 내약방(內藥房)에 수납(收納)하니, 약방 대언(藥房代言) 탁신(卓愼)이 이를 받았다. 유사눌이 거짓으로 호방 대언(戶房代言) 한상덕(韓尙德)에게 이르기를, “전지(傳旨)가 있기를, ‘평도전의 약값을 모두 면주(綿紬)로써 제급(題給)하여 주라.’ 하였으니, 당신이 왕패(王牌)를 내려 줌이 마땅하다.” 하니, 한상덕이 의심하여 말하기를, “왕패(王牌)를 내려 주는 것은 바로 명을 들은 자의 책임이니 내가 알 바 아닙니다.”</p>	<p>庚子/下右代言韓尙德、恭安府尹黃子厚、前知高城郡事李養修于義禁府。初，前判原州牧事權緩與知申事柳思訥同里閭，其交甚密。緩家有蘇合油三斤，緩與思訥共謀，誘倭人上護軍平道全，受其單子，納于承政院，思訥啓下典醫監，而提調黃子厚以生蟲不用不受。道全更納承政院，思訥不復啓聞，收納內藥房，藥房代言卓愼受之。思訥詐謂戶房代言韓尙德曰：“有旨：‘道全藥價，皆以綿紬題給。’君宜下王牌。”尙德疑之曰：“下王牌，是聞命者之任，非吾所知。”思訥言之再三，尙德終不肯。思訥乃自押，王牌下戶曹，令濟用監給綿紬六十六匹、木綿五匹。先是，黃子厚欲得廉致庸農舍，將申呈單子，囑思訥以啓。代言等適</p>

<p>하였다. 유사눌이 그에게 재삼 말했으나 한상덕이 끝내 수궁하지 않았다. 유사눌이 이에 스스로 왕패(王牌)를 누르고 호조(戶曹)에 내려, 제용감(濟用監)으로 하여금 면주(綿紬) 66필과 목면(木綿) 5필을 주게 하였다. 이 앞서 황자후(黃子厚)가 엄치용(廉致庸)의 농사(農舍)를 얻고자 하여 신정 단자(申呈單子)를 유사눌에게 부탁하여 아뢰려고 하였는데, 대언(代言)들이 마침 명을 받들고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유사눌이 결눈으로 황자후를 숙시(熟視)하면서, “당신은 왜놈도 오랑캐도 아닌데 어찌하여 어명을 받들고 일을 의논하는 때에 감히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황자후가, “당신이 만약 아뢰지 않는다면 내가 장차 격고(擊鼓)하여 신정(申呈)하겠습니다.” 하였다. 유사눌이, “당신이 비록 재상(宰相)이라 하더라도 어찌 승정원(承政院)을 멸시(蔑視)할 수 있는가?” 하니, 황자후가 몹시 분하게 여겼다. 인하여 양언(揚言)하기를, “유사눌이 불량(不良)한 약을 사서 내약방(內藥房)에 넣었다.” 하였으므로, 헌사(憲司)에서 유사눌과 탁신(卓愼)을 탄핵하였는데,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p> <p>“전의감(典醫監)에서 이미 물리친 소합유(蘇合油)를 유사눌이 다시 아뢰지 않고 호조로 하여금 값을 주게 하였고, 탁신(卓愼)은 양(量)을 달아보지 않고 이를 향국인(向國人)에게서 받고 지나치게 주무(綢繆)하였으니, 그 사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직접을 거두고 그 사유를 국문(鞫問)하소서.”</p> <p>임금이 이를 보고, 장령(掌令) 조종생(趙從生)에게 묻기를, “이른바 ‘향국인(向國人)에게 지나치게 주무(綢繆)하여 그 사이를 알기가 어렵다.’ 한 것은 무엇을 이름인가? 바로 유사눌 등이 몰래 평도전(平道全)에게 후하게</p>	<p>承命議事，思訥側目熟視子厚曰：“君非倭人兀良哈，何於承命議事之際，敢入此哉？”子厚曰：“子若不啓，吾將擊鼓申呈。”思訥曰：“君雖宰相，何得蔑見承政院乎？”子厚深銜之，因揚言思訥買不良藥，入內藥房。憲司劾思訥及愼啓曰：“典醫監已退蘇合油，思訥不更啓，而令戶曹給價；卓愼不秤量而受之於向國人，過爲綢繆，其間難知。請收職牒，鞫問其由。”上覽之，問掌令趙從生曰：“所謂與向國人過乎綢繆，其間難知者謂何？直謂思訥等陰厚道全，與日本同情歟？毋隱以對。”從生對曰：“臣等何敢有若是之意乎？所謂綢繆者，典醫監已退之藥，強爲之質也。其稱向國者，止云倭耳，非謂與日本同情也。”右代言韓尙德、左副代言趙末生、同副代言李伯持等相顧無言，上怒曰：“彼臺員所對，與啓本之意不同。是請思訥等誣上之罪，而又自誣上也，奚異於思訥、卓愼之輩？且代言三人怡然聽諾，不肯別白以聞，汝等坐承政院，所爲何事？皆是思訥之類也。”尙德等驚惶失色，乃啓曰：“向國人三字，必有微意存焉，臣</p>
--	---

<p>하여 일본에 동정을 한다는 말인가? 숨기지 말고 대답하라.” 하니, 조종생이 대답하였다.</p> <p>“신 등이 어찌 감히 이와 같은 뜻을 가졌겠습니까? 이른바 주무(綱繆)란 것은 전의감(典醫監)에서 이미 물리친 약(藥)을 강제로 무역하게 하였다는 것이요, 그 향국(向國)이라고 말한 것은 단지 왜(倭)를 말한 것이니, 일본에 동정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p> <p>우대언(右代言) 한상덕(韓尙德)과 좌부대언(左副代言) 조말생(趙末生)과 동부대언(同副代言) 이백지(李伯持) 등이 서로 돌아보며 말이 없었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p> <p>“저들 대언(臺員)들이 대답하는 것은 계본(啓本)의 뜻과 같지 아니하니, 이것은 유사놀 등이 임금을 속인 죄를 청하면서도 또 스스로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어찌 유사놀·탁신의 무리와 다르겠는가? 또 대언(代言) 3인은 이연(怡然)히 청락(聽諾)하고, 따로 아뢰어서 계문(啓聞)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들은 승정원(承政院)에 앉아서 하는 것들이 무슨 일인가? 모두 유사놀의 유들이다.”</p> <p>한상덕(韓尙德) 등이 놀라고 황송하여 얼굴이 붉어져서 바로 아뢰기를, “향국인(向國人)이란 세 글자에는 반드시 미의(微意)가 있겠으나, 신 등은 그 글 뜻을 살피지 못하였습니다.”</p> <p>하니, 한참 만에 조종생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유사놀과 탁신이 비록 약(藥)을 무역하는 데서 온당함을 잃었으나, 한몸의 사리(私利)를 취한 자취가 현저하게 나타난 뒤에야 다시 그 죄를 청하도록 하라.”</p> <p>하고, 드디어 유사놀과 탁신에게 명하여 출사(出仕)하게 하였다. 임금이 또 승정원에 ‘헌부(憲府)의 상소가 옳은가’의 여부를 물으니, 한상덕이 대답하기를,</p>	<p>等不察其文意耳。” 既而，傳旨於從生曰：“思訥、卓愼雖貿藥失當，私於一己之迹現著，然後更請其罪。” 遂命思訥及愼出仕。 上又問承政院以憲府之疏可否，尙德對曰：“憲府疏意是也。 國家於日本人所獻土物回奉，未有如此之厚者，獨此過厚，必有以也。 願依憲司之請，令攸司劾治。” 上曰：“然則思訥之心，將以分價歟？” 尙德對曰：“意將分之。” 上曰：“憲司之疏，以文意考之，則謂與向國人謀背本國也，而汝等皆曰：‘非謂謀背也，但謂思訥將典醫所退之藥，不啓而納于內藥房，其力納之情，綱繆之謂也。’ 汝等何誤釋憲司疏意，而如此強之也？ 予雖未學，豈不知數字之意乎？ 憲司疏意指東，而汝等答之以西，奚異指鹿爲馬乎？ 指鹿爲馬，誑君之言也。” 仍令尙德歸第。 命代言等詣六曹啓事廳，傳旨曰：“予不視事，以代言不齊故耳。 卿等可否相濟，乃其職也。 前日問憲府疏意，皆含默不言何也？ 尙德以近臣誑予矣。 錢貨，國之重寶也，而思訥、卓愼納典醫已退之藥，而酬以重價，烏得無罪？ 予之言此者，非是代言而責憲司</p>
---	--

	<p>“헌부(憲府)의 상소한 뜻은 옳습니다. 국가에서 일본인(日本人)이 바친 토물(土物)에 대하여 회봉(回奉)하는 데 아직 이같이 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에 관해서만 지나치게 후하였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헌사(憲司)의 청(請)대로 유사(攸司)로 하여금 핵문(劾問)하여 다스리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였다.</p> <p>“그렇다면 유사놀의 마음은 장차 값을 나누려는 것인가?”</p> <p>한상덕이 대답하기를,</p> <p>“장차 나누려고 한 것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였다.</p> <p>“헌사(憲司)의 상소는 글 뜻을 가지고 상고한다면 향국인(向國人)과 본국(本國)에 모반(謀反)한 것이라 하는데, 너희들은 모두 말하기를, ‘모반한 것이라 하지 않고 다만 유사놀의 전의(典醫)가 물리친 약(藥)을 가지고 아뢰지도 않고 내약방(內藥房)에 바치게 하였는데, 그 강제로 바치게 한 정상과 이를 주무(綱繆)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고 하니, 너희들은 어찌 하여 헌사의 상소한 뜻을 잘못 해석하고, 이와 같이 억지를 쓰는가? 내가 비록 배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찌 글자 몇 자의 뜻이야 알지 못하겠는가? 헌사(憲司)의 상소한 뜻은 동쪽을 가리키는데 너희들은 서쪽이라 대답하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슴[鹿]을 가리켜 말[馬]이라 하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 말이다.”</p> <p>이어서 한상덕으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도록 하고, 대언 등에게 명하여 육조계사청(六曹啓事廳)으로 나아가게 하고, 전지(傳旨)하였다.</p> <p>“내가 일을 보지 아니하는 것은 대언(代言)이 공정하지 않은 까닭이다. 경 등은 가부(可否)를 서로 정(定)하는 것이 바로 그 직책인데, 전날의 헌부에서 상소한 뜻을 물었으나, 모두 함묵(含默)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p>	<p>也，代言實有罪焉。掌令則對不以直，故致問耳。然予謂，此事實是風聞，何如？”贊成柳廷顯曰：“雖以風聞而發，及考文簿，若王牌若施行冊實跡見著，不可以風聞例論也。且臣子聞爲上之事，拘於風聞，置而不聞，非臣所願也。縱得違教之罪，可以勇爲。況此藥材切於上體，安敢較其罪之有無，而爲之哉？”兵曹判書朴信曰：“教旨有曰：‘事有明證，有實跡及謀叛大逆等事，理宜受治。’臣謂此有實跡，非風聞也，餘皆曰風聞也。”大司憲李原曰：“臣雖受風聞之罪，切於上體，故聞之痛悼而發，臣實有罪。”上曰：“雖至宗親，不以私害公，斷以大義，思訥之罪，予何容私？當以法斷之。卿則與予同盟，無一毫之間，予不疑卿，卿毋疑我。卿之發此，予甚嘉之。”因問原曰：“事發無跡，何從得聞？”原對曰：“臣爲禮曹判書時，李養修到家曰：‘思訥將典醫已退之藥，更不啓達，而納于內藥房。’臣聞之大驚，不敢忘于懷。及拜是職，見子厚于闕庭，問藥之退否，子厚曰：‘曾已退之矣。’有問再問之，子厚答曰：‘前言</p>
--	--	---

	<p>가? 한상덕(韓尙德)은 근신(近臣)으로서 나를 속였다. 전화(錢貨)는 나라의 소중한 보배인데도 유사놀과 탁신은 전의(典醫)가 이미 물리친 약을 바치게 하고 증가(重價)로써 갠았으니, 어찌 죄가 없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대언(代言)을 옳다 하고 헌사(憲司)를 책하는 것은 아니다. 대언(代言)도 실로 죄가 있다. 장령(掌令)은 정직하게 대답하지 아니한 까닭에 문책하게 한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이 실로 풍문(風聞)이라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찬성(贊成) 유정현(柳廷顯)이 말하였다.</p> <p>“비록 풍문(風聞)을 가지고 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문부(文簿)를 고찰하여 왕패(王牌)와 시행책(施行冊)같은 것에 실적(實跡)이 나타난다면 풍문(風聞)의 예로써 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자(臣子)가 주상을 위한 일을 듣고 풍문(風聞)에 구애하여 내버려 두고 아뢰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비록 교지(教旨)를 어기는 죄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용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약재(藥材)는 성상의 옥체(玉體)에 절실한 것이니, 어찌 감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려서 하겠습니까?”</p> <p>병조 판서 박신(朴信)이,</p> <p>“교지(教旨)에 있기를, ‘일에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실적(實跡)이 있거나 모반 대역(謀叛大逆) 등의 사건은 사리에 치죄(治罪)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신은 이것이 실적이 있으므로 풍문(風聞)이 아니라고 이릅니다.”</p> <p>하였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p> <p>“풍문(風聞)입니다.”</p> <p>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이원(李原)이</p> <p>“신은 비록 풍문(風聞)의 죄를 받더라도 성상의 옥체에 절실한 까닭에, 이를 듣고 몹시 슬퍼하여 발언한 것이니, 신이 실로 죄가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였다.</p> <p>“비록 종친(宗親)에 이르기까지라도 사(私)로써 공(公)을 해치지 못하고 대의</p>	<p>是也。’ 故臣以是知之。” 命承政院與六曹， 召子厚、 養修質之。 問子厚曰：“退藥之由， 卿與誰說乎？” 對曰：“與戶曹判書尹向說之， 而因問向曰：‘藥價給乎否？’ 向於翼日遇我曰：‘前所云藥價， 已給之矣。’ 聽此以謂， 若修其源， 必無後患， 而又與尙德， 劑內藥時同宿說之， 又與養修詳言之矣。” 問養修， 對曰：“子厚到家言：‘予邇來逢厄乃免， 實上德也。 思訥妄以我求觀察之任， 啓達差下， 予實惶恐， 而啓達得免， 又蒙上恩， 除拜京職， 天幸也。 思訥向我， 每事陰中傷之， 恐將及害。’ 仍言：‘平道全蘇合油三斤， 啓下典醫， 吾與同僚以蟲損退之。 道全又納于承政院， 思訥不啓退之之由， 納于內藥房， 是大不忠。 以如此之行， 不顧己非， 向我每陰害之， 吾之憤心， 控于何所？ 請子爲我告諸交親。 且子與今禮曹判書李原交， 況當此時， 六曹、 啓事， 願達怏怏之意。’” 六曹代言以養修之言， 質諸子厚， 子厚曰：“他言皆是， 但說與李判書之言， 非吾所說。” 養修曰：“若子不言子之胸次， 吾何以知之？” 子厚語塞。 六曹同議</p>
--	---	--

	<p>(大義)로서 결단하여야 하는 것이니, 유사놀의 죄를 내가 어찌 사사로이 용납하겠느냐? 마땅히 법으로 결단할 것이다. 경은 나와 같이 맹세하여 털끝만한 간격도 없으니, 내가 경을 의심하지 않는데 경도 나를 의심하지 말라, 경이 이를 발설한 것을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p> <p>인하여, 이원에게 묻기를, “실적(實跡)이 없는 일을 발설하였는데, 어디에서 얻어 들었느냐?”</p> <p>하니, 이원이 대답하였다.</p> <p>“신이 예조 판서 때에 이양수(李養修)가 집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사놀이 전의(典醫)가 이미 물리친 약을 가지고 다시 계달(啓達)하지도 않고 내약방(內藥房)에다 납입시켰습니다.’ 하였으므로, 신이 이 말을 듣고 대경(大驚)하였습니다. 감히 마음속에 잊지 못하고 있다가 이 직책을 배명받자, 황자후(黃子厚)를 대궐 뜰에서 만나 약(藥)을 물리친 여부를 물었더니, 황자후가 말하기를, ‘이미 물리쳤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물으니, 황자후가 대답하기를, ‘앞서 말이 옳다.’고 한 까닭에 신이 이 때문에 알았습니다.”</p> <p>승정원(承政院)과 육조(六曹)에 명하여, 황자후와 이양수를 불러서 이것을 물었다.</p> <p>황자후에게 묻기를, “약을 물리친 까닭을 경은 누구와 말했는가?”</p> <p>하니, 대답하였다.</p> <p>“호조 판서 윤향(尹尙)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하여 윤향에게 묻기를, ‘약값을 주었는가, 아니 주었는가?’ 하니, 윤향이 다음날에 나를 만나 말하기를, ‘앞서 말한 약값은 이미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만약에 그 근원을 밝힌다면 반드시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또 한상덕(韓尙德)과는 내약(內藥)을 지을 때 같이 자면서 말했고, 또 이양수와도 이것을 자세히 말하였습니다.”</p>	<p>啓曰：“尙德對上問不以實；子厚身爲典醫提調，不自啓達，而宣言於外；養修私相朋比，往來行言，皆可罪也。”</p> <p>戶曹判書黃喜曰：“罪之可也，然無文案可據，下攸司取辭可也。”上然其言，乃下尙德、子厚、養修于義禁府，仍教子厚曰：“予以故舊之情，置卿于元從之列。卿無弓矢之能，又無文翰之才，然任數縣而至於除授顯職，是則予無先見之智故也，雖悔可追？忠臣之義，大小僚佐，必當一體。卿挾己私，曾上書以訴思訥，予不欲人知，至於寺人崔閑，尙不及見，卽投于火。方予之信任思訥，乘時排擯，用心陰險矣。”</p> <p>又傳旨於義禁府曰：“尙德以近侍之臣，進思盡忠，退思補過宜矣。曾不慮此，憲司疏忽，強而誤解，謀間同僚，甚奸儒也。速取三人之辭以聞。”</p> <p>義禁府啓云：“尙德招曰：“臣以爲，上之責臣，不過停職，今乃鞫問，臣若不言，罔被罪責，何益之有？請以直辭告之。去歲之冬，臘藥劑時，子厚謂我曰：‘吾妾子中光曰：『張始生與我言曰：『吾與弟末生偕進權緩家，緩與弟末生以青砂</p>
--	---	---

	<p>이양수에게 물으니, 대답하였다.</p> <p>“황자후가 집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요즈음 액(厄)을 만났으나 바로 면한 것은 실로 성상의 덕이다. 유사놀이 망령되게 내가 관찰사(觀察使)의 자리를 구한다고 계달(啓達)하여 차하(差下)되었으나, 내가 실로 황공하여서 계달하여 면직할 수 있었다. 또 성상의 은혜를 입어 경직(京職)에 임명되었으니, 천행(天幸)이다. 유사놀이 나를 대하여 매사에 슬그머니 중상(中傷)하니 장차 해가 미칠까 두렵다.’ 하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평도전(平道全)의 소합유(蘇合油) 3근을 전의(典醫)에게 계하(啓下)하므로 나와 동료(同僚)가 벌레 때문에 상했다 하여 이를 물리치니, 평도전이 또 승정원(承政院)에 바쳤는데, 유사놀은 물리친 이유를 아뢰지도 않고 내약방(內藥房)에 납입시켰으니, 이것은 큰 불충이다. 이 같은 행동으로 자기의 잘못은 돌보지 않고 나에게 대하여 매양 음해(陰害)하니, 나의 분한 마음을 어디에다 하소연하겠는가? 청컨대, 그대는 나를 위하여 사귀는 친구들에게 고해 달라. 또 그대는 지금 예조 판서 이원(李原)과 교제하는데, 더군다나 이러한 때를 당하여 육조(六曹)에서 계사(啓事)할 때 앙앙(怏怏)한 뜻을 상달하도록 원한다.’고 하였습니다.”</p> <p>육조(六曹)와 대언(代言)이 이양수의 말을 가지고 황자후에게 물으니, 황자후가,</p> <p>“그 말이 모두 옳습니다. 다만 이판서(李判書)에게 말하라는 말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p> <p>하자, 이양수가.</p> <p>“만약 그대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대의 마음 속을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p> <p>하니, 황자후가 말이 막혔다. 육조(六曹)에서 같이 의논하여 아뢰었다.</p> <p>“한상덕(韓尙德)은 성상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사실대로 하지 않았고, 황자후는 자신이 전의 제조(典醫提調)가 되어 스스로 계달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선언(宣言)하여 이양수와 사사로이 서로 봉비(朋比)하여 왕래하면서 말을 하였</p>	<p>小器所盛之藥曰納于典醫監。末生齋進欲納見退，今已納于承政院矣。』』’聞中光言，私自以謂，典醫已退之藥，承政院強納之，是必思訥受價分用也。臣聞此痛心，卽欲啓達，然子厚與思訥之有隙，臣實知之，故謂子厚必吹毛求疵，不卽啓聞。後至子厚家謂之曰：‘子之所言藥事，予欲啓達，其悉言之。’子厚答曰：‘崔古音龍入去彼土，而始生、末生等，皆緩之伴人也，緩亦得衆者也，何官明推之？且末生等以不言不知答之，則將何如？’用是未卽啓聞。當憲府疏意下問之時，臣心藏蓄之事，故以分用啓之，是欲上明正其罪也。不卽啓聞之罪，臣實當之。”</p>
--	---	--

	<p>으니, 모두 죄를 주어야 합니다.”</p> <p>호조 판서 황희(黃喜)가 말하기를, “죄를 주는 것은 가합니다만, 그러나 문안(文案)에 증거할 만한 것이 없으니, 유사(攸司)에 내려서 공사(供辭)를 받는 것이 가(可)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겨, 바로 한상덕·황자후·이양수를 의금부에 내렸다. 이어서 황자후에게 하교(下敎)하였다.</p> <p>“내가 옛 친구의 정의로써 경을 원종 공신(元從功臣)의 반열에 두었으나, 경은 궁시(弓矢)의 재능도 없고, 또 문翰(文翰)의 재주도 없다. 그러나 여러 현(縣)에 벼슬하여 현직(顯職)을 제수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내가 선견(先見)의 지혜가 없었던 까닭이다. 비록 뉘우친들 무엇하겠느냐? 충신(忠臣)의 의리에는 대소 요좌(僚佐)가 반드시 일체(一體)가 되어야 하는데, 경은 자기의 사감(私感)을 끼고 일찍이 상서(上書)하여 유사놀을 고소하였으나, 내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시인(寺人) 최한(崔閑)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보지 못하게 즉시 불에다 던졌다. 바야흐로 유사놀을 신임하니, 때를 틈타 배척(排斥)하여 마음씀이 음험하다.”</p> <p>의금부에 전지(傳旨)하였다</p> <p>“한상덕은 근시(近侍)하는 신하로서 나아와서는 진충(盡忠)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가서는 보과(補過)할 것을 생각함이 마땅한데, 일찍이 이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헌사(憲司)에서 상소한 뜻을 억지로 오해(誤解)하여 동료(同僚)를 이간하기를 꾀했으니 심히 간악한 선비다. 빨리 세 사람의 공사(供辭)를 받아서 아뢰라.”</p> <p>의금부에서 말하였다.</p> <p>“한상덕이 공초(供招)하기를, ‘신은 성상이 신을 책(責)하는 것이 정직(停職)에 불과하리라고 여겼는데, 이제 바로 국문(鞫問)하니, 신이 만약 말을 아니한다면 잘못 죄책을 당할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바로 말</p>	
--	---	--

	<p>로 고하겠습니다. 지난해의 동랍(冬臘)에 약(藥)을 지을 때 황자후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 첩의 아들 중광(中光)이 말하기를, 장시생(張始生)이 나와 말하기를, 나와 아우 장말생(張末生)이 함께 권완(權緩)의 집으로 나아가니, 권완과 아우 장말생이 청자(靑磁) 사기의 작은 그릇에 담은 약을 가지고 말하기를, 전의감(典醫監)에 납입한다고 하고, 장말생이 가지고 나가 납부하려 하다가 물리침을 당했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승정원에 납부하였으니, 신이 중광의 말을 듣고 사사로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전의(典醫)가 이미 물리친 약을 승정원에다 억지로 납부시켰으니, 이것은 반드시 유사놀이 값을 받아 나누어 쓰려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즉시 계달하고자 하였으나, 황자후와 유사놀이 틈이 있는 것을 신이 실로 아는 까닭에, 황자후에게 말하면 반드시 취모구자(吹毛求疵)하리라 생각하여 즉시 계문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황자후의 집에 이르러 이르기를, 「그대가 말한 약에 대한 일을 내가 계달하고자 하니, 그것을 모조리 말하라.」 하니, 황자후가 대답하기를, 「최고음룡(崔古音龍)이 저 땅으로 들어갔는데, 장시생과 장말생 등은 다 권완의 반인(伴人)이고, 권완도 또한 여러 반인을 얻은 사람이니, 어느 관리가 밝게 추국(推鞠)하겠는가? 또 장말생 등이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즉시 계문(啓聞)하지 못했습니다. 헌부(憲府)에서 올린 상소의 뜻을 하문(下問)할 때에도 신의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나누어 쓴다.」고 아뢰었는데, 이것은 주상이 그 죄를 밝게 바로잡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즉시 계문하지 아니한 죄는 신이 실로 감당 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5월 28</p>	<p>명하여 각전(各殿)에 공상(供上)하는 두부[豆泡]를 없애게 하니, 가뭄으로 인하여 반찬을 줄인 것이다. 유정현(柳廷顯)과 박은(朴崑)이 다시 기우 정근(祈雨精勤)을 행하도록 청하니, 임금의 말하였다.</p>	<p>命除各殿供上豆泡，因旱省膳也。柳廷顯、朴崑請復行祈雨精勤，上曰：“祈佛而得雨與否，未可知也。前日聚</p>

<p>일(기미) 2번째기사 가뭄으로 반찬을 줄이기 위하여 각전에 공상하는 두부를 없애다</p>	<p>“부처에게 빌어서 비를 얻을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겠다. 전일에 중들을 흥복사(興福寺)에 모아서 비를 빌었는데, 하늘이 노하여 갑자기 비가 오고 천둥치고 벼락이 쳐서 여섯 곳에 상서롭지 못한 변이 막심하였다. 조용함을 지켜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으나, 그러나 사람들의 청을 막을 수 없으니, 우선 그대로 따르겠다.”</p>	<p>僧于興福寺祈雨，而天怒驟雨，雷震六處，不祥之變莫甚焉，守靜以俟天休可也。然不可止人之請，姑從之。”</p>
<p>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6월 1일 (신유) 4번째기사 국가 용도를 줄이기 위해 각급 관원의 식사 제공을 일부 없애다</p>	<p>호조(戶曹)에서 용도(用途)를 절약할 조건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p> <p>“각사(各司) 상직(上直)의 선반(宣飯)과 사역원(司譯院) 훈도관(訓導官)의 요(料)와 각도의 도관찰사(都觀察使)·도절제사(都節制使)의 반미(飯米)로 1일 3되[升]씩 주는 것과, 수배(隨陪)와 반당(伴儻)에게 한끼에 중미(中米) 1되씩 주는 것과, 각 고을의 교수관(教授官)·학장(學長)의 늪급(廩給)과, 각주(各州)의 판목사(判牧事)와 반당(伴儻)에게 주는 요(料)를 모두 없애소서.”</p> <p>또 아뢰기를, “금년은 한기(旱氣)가 더욱 심하니, 용도를 절약하여서 흉년을 구제하는 데 대비함이 마땅합니다. 입직(入直)하는 내금위(內禁衛)와 내시위(內侍衛)와 별시위(別侍衛)와 3군 진무(三軍鎭撫)와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도 또한 갑사(甲士)의 예에 의하여 식대(食代)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의윤(依允)하였다. 육조(六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옛날에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와 뇌전(雷電)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관대한 정사를 행하였으니, 관대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할 때가 오로지 이 때이다.”</p> <p>하니, 육조와 대간(臺諫)에서 말을 같이하여 아뢰기를, “비록 죽을 죄를 범하였더라도 전하께서 또한 모두 용서하였으니, 관대한 정사를 더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로 아랫자리에 있는 자가 부른 것인데, 다만 신 등의 이목(耳目)이 아직 미치지 못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물러가서</p>	<p>戶曹上節用條件。啓曰：“各司上直宣飯及司譯院訓導官料、各道都觀察使、都節制使飯米，每一日三升；隨陪伴儻一時中米一升。各官教授官、學長廩給、各州判牧事、伴儻料皆除之。”</p> <p>又啓：“今年旱氣尤甚，宜節用以備救荒。入直內禁衛、內侍衛、別侍衛、三軍鎭撫及上大護軍、護軍亦以甲士例，食代何如？”依允。傳旨六曹曰：“古者遇水旱雷電，則必行寬大之政，務行寬大，惟其時矣。”六曹、臺諫同辭啓曰：“雖犯死罪，殿下亦皆宥之，寬大之政，無以加矣。是實在下之所召，但臣等耳目有所未逮耳，當退思以聞。”</p>

	생각하고 아뢰겠습니다.”	
태종 31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6월 15 일(을해) 1번째기사 큰 비가 3일 동안 내 리니 약주를 올리라고 명하다	큰 비가 무릇 3일 동안 내렸다. 약주(藥酒)를 올리라고 명하였다.	乙亥/大雨凡三日, 命進藥酒。
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7월 3일 (임진) 1번째기사 성균관에서 새 잣을 바치니, 술과 건어육을 하사하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새 잣[松子]을 바치니, 술과 건어육(乾魚肉)을 하사하였 다.	壬辰/成均館進新松子, 賜酒及乾魚 肉。
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7월 3일 (임진) 5번째기사 예조에서 아뢰는 대로 종묘의 축문 규식을 고치다	종묘(宗廟)의 축문 규식(祝文規式)을 고치었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축문이 전조(前朝)의 제도를 승습하여 ‘모시대왕(某諡大王)’ ‘모시왕후(某諡王 后)의 영(靈)’이라 칭하고, 왕후에게는 씨(氏)를 칭하지 않는데, 삼가 고전(古 典)에 상고하면 《의례(儀禮)》 소뢰(小牢饋食)의 축문에 이르기를, ‘세 사(歲事)를 황조백모(皇祖伯某)에게 드리고 모비 모씨(某妃某氏)로 배향한다.’ 하였고, 《개원례(開元禮)》에 태묘(太廟)에 제사하는 축문(祝文)에 이르기를, ‘황고 대성진황제(皇考大聖眞皇帝)·황비 소성황후(皇妃昭成皇后) 두씨(竇氏)에 게 감히 밝게 고한다.’ 하였고,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 축문에 이르기를, ‘감히 황고조고(皇高祖考) 모관부군(某官府君) 황고조비(皇高祖妣) 모봉모씨 (某封某氏)에게 밝게 고한다.’ 하였으니, 빌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여 선왕(先 王)·선후(先后)에게 ‘지령(之靈)’ 두 글자를 쓰지 말고, 선후(先后)에게는 모씨	改宗廟祝文規式。 禮曹啓曰：“祝文承 前朝之制, 稱某諡大王、某諡王后之 靈, 於王后不稱氏。 謹稽古典, 《儀 禮》《小牢饋食》祝文云: ‘用薦歲事 于皇祖伯某, 以某妃某氏配。’ 《開元 禮》享太廟祝文云: ‘敢昭告于皇考大 聖眞皇帝、皇妃昭成皇后竇氏。’ 《朱 文公家禮》祝文云: ‘敢昭告于皇高祖 考某官府君、皇高祖妣某封某氏。’ 乞 依古制, 先王先后, 不用之靈二字, 於 先后稱某氏。 又按《小牢饋食》祝文

	<p>(某氏)라고 칭하소서.</p> <p>또 상고하건대, 소뢰 제식(小牢饋食)의 축문에 이르기를, ‘감히 유모(柔毛)·강렴(剛鬣)·가천(嘉薦)·보뇨(普淖)를 쓴다.’ 하였고, 《개원례(開元禮)》 향태묘(享太廟)의 축문에 이르기를, ‘일원대무(一元大武)·유모·강렴·명자(明粢)·향합(鄉合)·향기(鄉箕)·가소(嘉蔬)·가천(嘉薦)·예제(醴齊)를 쓴다.’ 하였고, 《주문공가례》 축문에 이르기를, ‘감히 결생(潔牲)·유모(柔毛)·자성(粢盛)·예제(醴齊)를 쓴다.’ 하였는데, 주(註)에, ‘청작 서수(淸酌庶羞)라 하였고, 《홍무예제(洪武禮制)》 사직제(社稷祭)의 축문에 이르기를, ‘삼가 생(牲)·백(帛)·예제(醴齊)·자성(粢盛)·서품(庶品)으로써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생(牲)·폐(幣)를 쓰는 제사에 ‘청작 서수(淸酌庶羞)’라고 통칭하니, 그 실상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빌건대, 고례(古禮)와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하여 모든 생(牲)·폐(幣)를 쓰는 제사에는 ‘생·폐·예제·자성·서품(庶品)’이라고 이르고, 폐를 쓰지 않으면 ‘생·예(醴)·서품’이라고 이르고, 생·폐를 쓰지 않으면, ‘청작 서수’라고 이르소서. 축문(祝文) 안에 말이 중복되고 미비한 것도, 또한 고쳐서 찬술(撰述)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종묘(宗廟)의 제사는 나라의 대사(大事)이어서 그 예문(禮文)을 자손 만세에 준수(遵守)하는 것이니, 반드시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힘써 중도(中道)에 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지금 오실(五室)에 작헌(酌獻)한 뒤에 태계(泰階)에서 재배(再拜)하는데, 당(唐)·송(宋)의 예(禮)에 어긋남이 있고, 또 시왕(時王)의 제도에 어긋납니다.</p> <p>《홍무예문(洪武禮文)》에 비록 종묘의 예는 없으나, 사직(社稷)·산천(山川)·문선왕(文宣王)에 모두 작헌(酌獻)한 후 절[拜]이 없으니, 어찌 종묘 작헌에만 절이 있겠습니까? 빌건대, 태계(泰階)에서 재배(再拜)하는 예를 없애고 한결같이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하소서.”</p> <p>임금이 봉교 의윤(奉敎依允)하기를,</p> <p>“종묘 오실(五室)에 작헌한 후 태계에서 재배하는 것은 이미 정한 의식(儀式)</p>	<p>云: ‘敢用柔毛剛鬣, 嘉薦普淖.’ 《開元禮》享太廟祝文云: ‘以一元大武柔毛剛鬣明粢鄉合鄉箕嘉蔬嘉薦醴齊.’ 《朱文公家禮》祝文云: ‘敢以潔牲柔毛、粢盛醴齊.’ 註曰: ‘淸酌庶羞.’ 《洪武禮制》社稷祭祝文云: ‘謹以牲帛醴齊、粢盛庶品.’ 今於用牲幣之祭, 汎稱淸酌庶羞, 似違其實。 乞依古禮及時王之制, 凡祭用牲幣, 則云: ‘牲幣醴齊粢盛庶品.’ 不用幣則云: ‘牲醴庶品.’ 不用牲幣, 則云: ‘淸酌庶羞.’ 祝文內辭意重疊及未備者, 亦許更改撰述。 宗廟之祭, 國之大事, 其禮文, 子孫萬世所當遵守, 必參酌古今, 務合乎中。 今五室酌獻後, 泰階再拜, 有乖於唐、宋之禮, 又乖於時王之制。 《洪武禮》文, 雖無宗廟之禮, 然於社稷、山川、文宣王, 皆無酌獻後拜, 則豈於宗廟酌獻, 獨有拜乎? 乞除泰階再拜之禮, 一依時王之制。” 奉敎依允, 其宗廟五室酌獻後, 泰階再拜, 依已定儀式。</p>
--	---	---

	에 의하라.” 하였다.	
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7월 3일 (임진) 7번째기사 평도전을 쌀을 구하므 로 종정무에게 쌀·콩 각각 1백 석을 주다	종정무(宗貞茂)에게 쌀·콩 각각 1백 석을 주었다. 종정무가 평도전(平道全)에 게 글을 보내어, “힘써 적선(賊船)을 금지하여 조선 국경(國境)을 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고, 이어서 쌀을 주기를 구하였다. 조정 의논(議論)이 논공(論功)하여 쌀을 요구하는 것을 대단히 불가하게 여기니, 조말생(趙末生)이 아뢰기를, “평도전(平道全)이 또한 말하기를, ‘종정무(宗貞茂)의 편지가 말이 심히 불공 (不恭)하므로 감히 아뢰지 못하고, 다만 쌀을 청구하는 말만 아뢰입니다.’ 하였 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이어서 육조로 하여금 많고 적은 것을 의논하게 하니, 김여지(金汝知) 는, “1백 석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원(李原)은, “2백 석은 주어야 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모두 1백 50석을 말하였다. 임금이 이원의 의논을 따랐다.	賜宗貞茂米豆各百石。貞茂遺平道全， 書曰：“力禁賊船，毋犯朝鮮之境。” 仍求給米，朝議以論功求米，甚爲不 可。趙末生啓曰：“道全亦云：‘貞茂 之書，辭甚不恭，不敢以聞，只啓其求 米之語。’”上曰：“許之如何？”仍令 六曹議其多少，金汝知曰：“宜與百 石。”李原曰：“宜與二百石。”餘皆 曰：“百五十石。”上從原議。
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7월 16 일(을사) 3번째기사 충청도·강원도·풍해도 에서 바치는 참밀의 조운을 8월에 하도록	명하여 충청도·강원도·풍해도에서 바치는 진맥(眞麥)3918 을 8월에 조운(漕 運)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게 하였다.	命忠淸、江原、豐海道所貢眞麥，八月 漕運，以爲恒式。

휴정하다	<p>경복궁(景福宮)에 거동하여 상왕(上王)을 봉영(奉迎)하여 경회루(慶會樓)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세자·종친이 시연(侍宴)하였다. 갑사(甲士)와 방패(防牌)로 하여금 막대기[挺]를 가지고 서로 싸워 방패가 이기지 못하였고, 또 혹은 수박(手搏)하고 혹은 경주[爭走]하고, 혹은 말타고 쏘도록 명하여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보아서 정포(正布)·면포(綿布)·저화(楮貨)로 차등(差等) 있게 상주었다. 이어서 재보(宰輔) 여러 신하에게 잔치하니, 다투어 연구(聯句)를 바치어 심히 즐기었다. 노성(老成)한 사람을 버릴 수 없다는 데에 말이 미치자, 충녕 대군(忠寧大君)이,</p> <p>“《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기수준(耆壽俊)이 궐복(厥服)에 있다.’고 하였습니 다.”</p> <p>하니, 임금이 그 학문이 방향을 통한 것을 감탄하고 세자를 돌아보며,</p> <p>“너는 학문이 어찌서 이만 못하냐?”</p> <p>하였다. 대가(大駕)를 따르는 신료(臣僚)에게 술을 내려 주고 어두워지자 곧 파하였다.</p>	<p>丁未/幸景福宮，奉迎上王，置酒于慶會樓，世子、宗親侍宴。令甲士及防牌，相鬪以挺，防牌不勝，又命或手搏、或爭走、或騎射，以觀能否。賞賜正布、綿布、楮貨有差，仍宴宰輔，群臣爭獻聯句權甚。語及老成之人不可棄也，忠寧大君曰：“《書》云：‘耆壽俊在厥服。’”上歎其學問通方，顧謂世子曰：“汝學問，何不如是？”賜酒隨駕臣僚，至昏乃罷。</p>
<p>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7월 21 일(경술) 2번째기사 국사를 햇벌에 말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춘추관에 술을 하사하다</p>	<p>동부대언(同副代言) 이명덕(李明德)에게 명하여 춘추관(春秋館)에 술[醢]을 하사하니, 구례(舊例)에 따라 국사(國史)를 포쇄(曝曬)하는 때문이었다.</p>	<p>命同副代言李明德，賜醢于春秋館，循舊例曝曬國史也。</p>
<p>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7월 27 일(병진) 1번째기사</p>	<p>종묘(宗廟)의 제기고(祭器庫)와 재생방(宰牲房)을 지었다.</p>	<p>丙辰/作宗廟祭器庫及宰牲房。</p>

종묘의 제기고와 재생 방을 짓다		
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8월 23 일(임오) 2번째기사 각림사의 중창에 재목 1천 주와 미두 100석 을 제공하게 하다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都觀察使)에게 명하여 각림사(覺林寺)를 중창(重創)하는 재목(材木) 1천 주(株)를 주고, 도내에 나누어 배정하여 폐단없이 운반하여 들이도록 하고, 또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본궁(本宮)의 쌀·콩 합하여 1백 석을 군자감(軍資監)에 바치고, 충청도(忠淸道) 제천(堤川) 창고의 쌀·콩을 바꾸어 각림사(覺林寺)에 주라.”	命江原道都觀察使， 給覺林寺重創材木， 以一千株道內分定， 無弊輸入。 又傳旨承政院曰：“本宮米豆并一百石， 納于軍資監， 換忠淸道堤川倉米豆， 給覺林寺。”
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9월 2일 (경인) 2번째기사 다시 침장고를 두다	다시 침장고(沈藏庫)를 두었다.	復置沈藏庫。
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9월 19 일(정미) 3번째기사 선대 왕과 왕비의 기 신제에 모두 술과 감주를 쓰라고 명하다	선왕(先王)·선후(先后)의 기신제(忌辰齋祭)에 술과 감주(甘酒)를 쓰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주서(周書)》에 ‘제사에만 이 술을 쓰라.’고 하였으니, 예전부터 제사에 술을 쓰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본조(本朝)의 선왕·선후의 기신제에 모두 요전(澆奠)이 있는데, 홀로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신의 왕후(神懿王后) 요전에만 술을 쓰고, 그 나머지 요전에는 모두 다탕(茶湯)을 쓰니, 대단히 예(禮)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빌건대, 태조 요전의 예(例)에 의하여 기신마다 모두 술과 감주(甘酒)를 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命先王、先后(忌辰) [忌辰] 齋祭用酒醴。 禮曹啓：“《周書》曰：‘祀茲酒。’ 自古祭祀無不用酒。 本朝先王、先后(忌辰) [忌辰] 齋， 皆有澆奠， 獨於太祖康獻大王、神懿王后澆奠用酒， 其餘澆奠皆用茶湯， 殊未合禮。 乞依太祖澆奠例， 每(忌辰) [忌辰] 皆用酒醴。” 從之。
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10월 7	하천추사(賀千秋使) 인녕부 윤(仁寧府尹) 공부(孔俯)가 경사(京師)에서 졸(卒)하였다. 서장관(書狀官) 전 예조 정랑(禮曹正郎) 박조(朴藻)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賀千秋使仁寧府尹孔俯卒于京師。 書狀官前禮曹正郎朴藻還啓曰：“七月二十九日俯病卒于南京會同館， 皇太子致

일(을축) 2번째기사
하천추사 공부의 즐기

“7월 29일에 공부(孔俯)가 남경(南京) 회동관(會同館)에서 병들어 죽었는데, 황태자(皇太子)가 치제(致祭)하기를, ‘조회를 받는 날에 예의(禮儀)가 엄숙하고 공손하였다. 여차(旅次)에서 죽었으니, 불쌍하도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아뢰어 영지(令旨)를 받들어서 뼈를 불살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불쌍히 여기어 쌀·콩 50석과 종이 1백 권을 부의(賻儀)하고 중사(中使)를 보내어 사제(賜祭)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이제부터 북경(北京)에 가서 죽은 자는, 정2품은 60석을 부의하고 중2품은 50석을 부의하여 예(例)를 삼으라.”

하였다. 공부(孔俯)는 감음현(感陰縣) 사람인데, 자(字)는 백공(伯共)이요, 자호(自號)는 어촌(漁村)이다. 시(詩)를 잘하고 더욱 초서(草書)과 예서(隸書)에 공교하여 그 필적(筆蹟)을 얻는 자는 보화(寶貨)로 여기었다. 홍무(洪武) 병진년(丙辰年) 과거에 합격하여 차자방 필도치(筍子房必闍赤)가 된 지 9년이고, 문서 응봉사(文書應奉司) 별감 제조(別監提調)가 된 지 30여 년이었다.

일찍이 전의부령(典儀副令)이 되어 옛 재상 이인임(李仁任)의 시호(諡號)를 황목(荒繆)이라고 정하니, 그 종당(宗黨)이 이[齒]를 갈았으나, 공부가 움직이지 않았다. 무인년(戊寅年)에 고황제(高皇帝)가 우리 나라의 사명(辭命)에 잘못이 있는 것에 노하여 글을 지은 사람인 정도전(鄭道傳)을 불렀으나, 정도전이 병을 칭탁하고 가지 않으니, 황제는 공부가 글씨를 썼다고 하여 불렀다. 공부가 아무렇지 않은 듯 길에 올라서 휘파람을 불고 시를 읊기를 태연자약하게 하여 사생(死生)을 개의하지 않았다. 마침 사(赦)함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 공부가 성품이 너그럽고 솔직하고 우스갯소리[談諧]를 좋아하였으나, 청렴하고 조용하고 욕심이 적어 물건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어 세상의 추중(推重)을 받았다. 오직 도가(道家)를 몹시 좋아하여서 병이 심하자, 도사(道士)를 청하여 초제(醮祭)를 베풀었는데, 명등(命燈)이 꺼지매, 도사가 탄식하기를, ‘병이 낫지 못하겠다.’ 하였다. 뼈를 태우자 갑자기 풍우(風雨)가 급히 이르니,

祭云: ‘受朝之日, 禮儀肅恭, 死於旅次, 哀哉!’ 臣等啓奉令旨, 燒骨而還。” 上惻然, 賻米豆五十石、紙一百卷, 遣中使賜祭。 仍命自今赴京身沒者, 正二品賻六十石, 從二品五十石以爲例。

〔○〕俯(減陰縣) [感陰縣] 人, 字伯共, 自號漁村。 善爲詩, 尤工草隸, 得其筆蹟者以爲寶。 中洪武丙辰科, 爲筍子房必闍赤者九年, 文書應奉司別監、提調者三十餘年。 嘗任典儀副令, 諡故相李仁任爲荒繆, 其宗黨切齒, 俯不爲動。 歲戊寅, 高皇帝怒我國辭命有失, 徵撰文人鄭道傳, 道傳托疾不行。 帝謂俯寫字徵之, 俯怡然就道, 嘯詠自若, 不以死生介懷, 會遇赦得還。 俯性坦率, 好恢諧, 然廉靜寡欲, 與物無競, 爲世所重, 惟酷好道家。 及病, 請道士設醮而命燈滅, 道士嘆曰: “不起矣。” 既燒骨, 忽風雨驟至, 人皆異之。 子達。

<p>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10월 12일(경오) 4번째기사 경사에 바친 은바리가 불량 품으로 알려지자 공조 정랑 김고 등을 파직하다</p>	<p>사람들이 모두 이상히 여기었다. 아들은 공달(孔達)이었다. 공조 정랑(工曹正郎) 김고(金顧)·민서각(閔犀角), 좌랑(佐郎) 김유공(金有恭)·강석덕(姜碩德)을 파직하였다. 박조(朴藻)가 경사(京師)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천추절(千秋節)에 진헌(進獻)한 은우(銀盃) 10개 중에 4개가 녹이 나고, 또 조금 붉은 빛이 있었는데 예부(禮部)의 장주사(張主事)가 말하기를, ‘이것은 은이 아니다.’ 하기에, 신 등이 대답하기를, ‘장마를 치른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유공이 감독하여 만들었다 하여 김고의 무리를 아울러 의금부에 가두고 모두 파직하였다. 장인(匠人) 김생(金生)·김영(金英) 등이 사사로이 가지고 있던 하품은(下品銀)으로 몰래 공조(工曹)의 10품은(十品銀)과 바꾸어, 관가를 속이고 거짓을 행하였으므로 율에 따라서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가산을 적몰(籍沒)하였다. 육조(六曹)에서 인하여 청하기를, “매양 경사(京師)에 가는 행차(行次)에 지인(知印)과 상의원(尙衣院)의 은(銀)의 품질을 아는 원리(員吏)를 의주(義州)에 보내어 금·은 기명(器皿)을 다시 살핀 뒤에 발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罷工曹正郎金顧·閔犀角、佐郎金有恭·姜碩德職。 朴藻回自京師啓曰：“千秋進獻銀盃十事內，三事生綠，且微有赤色。 禮部張主事曰：‘此非銀也。’ 臣等對曰：‘過霾雨故也。’” 上以有恭監造，并顧等下義禁府，皆罷其職。 匠人金生、金英等以私藏下品之銀，潛易工曹十品之銀，瞞官行詐，照律杖一百，籍沒家產。 六曹因請：“每於赴京行次，送知印及尙衣院知銀品員吏于義州， 金銀器皿， 更審而後發遣。” 從之。</p>
<p>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10월 23일(신사) 1번째기사 진산 부원군 하윤이 자신의 병세를 알리는 내신을 보내다</p>	<p>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상서하였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하윤이 후하게 성은(聖恩)을 입어 길에서 병이 없었으나, 이달 12일에 예원군(預原郡)에 이르러 비로소 턱 위 오른쪽에 종기가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13일 정평부(定平府)에 이르러 이틀을 머물러서 질침(蛭針) 1백여 매를 쓰고, 16일 함흥부(咸興府)에 이르러 정릉(定陵)·화릉(和陵)을 알현하고 이틀을 머물러서, 또 질침 1백여 매를 쓰고, 19일에 도로 정평(定平)에 이르러 삼가 상은(上恩)을 입어 특별히 내신(內臣)을 보내어 내온(內醞)을 주시니, 신이 병중에 지수(祇受)하고 감격하였습니다. 22일에 또 내의(內醫)를 보내어 병을 묻고 구료(救療)하셨습니다. 신이 쇠하고 늙은 가운데에 다행히 사명(使命)을 받았</p>	<p>辛巳/晉山府院君河崙上書。 書曰：崙厚蒙聖恩，路次無恙，月十二日，到預原郡，始知頤上右傍有瘰癧。 十三日至定平府留二日，用蛭針百餘枚，十六日至咸興府，謁定陵、和陵留二日，又用蛭針百餘枚。 十九日還至定平，敬蒙上恩，特遣內臣，賜內醞，臣於病中祇受感激。 二十二日，又遣內醫問疾救療。 臣於衰暮之中，幸蒙使命，</p>

	<p>으니, 병 없이 빨리 돌아가서 성려(聖慮)를 번거롭게 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지금 종기의 형세가 점점 넓어지고 아파서 베개에 엎드려 신음하는데 내 의(內醫)가 봉교(奉敎)하고 와서 치료하여 주니, 신이 감격하여 목이 메어 말을 다하지 못하겠습니다.”</p> <p>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 하구(河久)가 가서 아버지의 병을 시병(侍病)하기를 청하니, 역마(驛馬)를 주어 보냈다.</p>	<p>庶欲無疾速還，不煩聖慮，顧今疴勢漸廣且痛，伏枕呻吟，迺蒙內醫奉敎來治，臣感激嗚咽，言不能盡。</p> <p>左軍都摠制河久請往侍父病，賜驛馬遣之。</p>
<p>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11월 6일(계사) 2번째기사 진산 부원군 하운의 졸기</p>	<p>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운(河崙)이 정평(定平)에서 졸(卒)하였다. 부음(訃音)이 이르니, 임금히 심히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7일 동안 소선(素膳)하고 쌀·콩 각각 50석과 종이 2백 권을 치부(致賻)하고 예조 좌랑(禮曹佐郎) 정인지(鄭麟趾)를 보내어 사제(賜祭)하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p> <p>“원로(元老) 대신은 인군의 고평(股肱)이요, 나라의 주석(柱石)이다. 살아서는 휴척(休戚)을 함께 하고, 죽으면 은수(恩數)를 지극히 하는 것은 고금의 바뀌지 않는 전례(典禮)이다. 생각하면 경은 천지가 정기를 뭉치고 산악(山嶽)이 영(靈)을 내리받아, 고명 정대(高明正大)한 학문으로 발하여 화국(華國)의 웅문(雄文)이 되었고, 충신 중후(忠信重厚)한 자질로 미루어 경세(經世)의 큰 모유(謀猷)가 되었다. 일찍 이부(二府)에 오르고 네 번 상상(上相)이 되었다. 잘 도모하고 능히 결단하여 계획에는 유책(遺策)이 없었고, 사직을 정하고 천명을 도운 것은 공훈(功勳)이 맹부(盟府)에 있다. 한결같은 덕으로 하늘을 감동시켜 우리 국가를 보호하고 다스렸는데, 근자에 고사(故事)를 가지고 나이 늙었다 하여 정사를 돌려 보냈다. 그 아량을 아름답게 여기어 억지로 그 청에 따랐다.</p> <p>거듭 생각건대, 삭북(朔北)은 기업(基業)을 시초한 땅이고 조종(祖宗)의 능침(陵寢)이 있으므로 사신을 보내어 돌아보아 살피려고 하는데, 실로 적합한 사람이 어려웠다. 경의 몸은 비록 쇠하였으나, 왕실(王室)에 마음을 다하여 먼</p>	<p>晉山府院君河崙卒于定平。訃至，上悼甚流涕，輟朝三日，素膳七日，致賻米豆各五十石，紙二百卷。遣禮曹佐郎鄭麟趾賜祭，其文曰：</p> <p>元老大臣，君之股肱，國之柱石。生則同其休戚；死則極其恩數，斯古今不易之典禮也。惟卿天地儲精，山嶽降靈。以高明正大之學，發而爲華國之雄文；以忠信重厚之質，推而爲經世之大猷。早登二府，四爲上相，善謀能斷，算無遺策。定社佐命，勳在盟府；一德格天，保乂我家。近以故事，引年致政，嘉其雅量，勉從其請。重惟朔北肇基之地，祖宗陵寢在焉，遣使巡審，實難其人。卿身雖衰，乃心王室，靡憚道途之勤，而欲自行，予亦以陵寢之重，不得不煩卿一往，豈意出郊之餞，遂爲平生之永訣也哉？嗚呼！死生之變，人道之常。卿燭其理，又何憾</p>

길의 근로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스스로 행하고자 하였다. 나도 또한 능침(陵寢)이 중하기 때문에 경(卿)의 한 번 가는 것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외에 나가서 전송한 것이 평생의 영결(永訣)이 될 줄을 어찌 뜻하였겠는가? 슬프다! 사생(死生)의 변(變)은 인도(人道)에 몇몇한 것이다. 경이 그 이치를 잘 아니 또 무엇을 한하겠는가! 다만 철인(哲人)의 죽음은 나라의 불행이다. 이제부터 이후로 대사(大事)에 임하고 대의(大疑)를 결단하여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고, 국가를 반석의 편안한 데에 둘 사람을 내가 누구를 바라겠는가? 이것은 내가 몹시 애석하여 마지 않는 것이다. 특별히 예관(禮官)을 보내어 영구(靈柩) 앞에 치제(致祭)하니, 영혼이 있으면 이 홀전(恤典)을 흠향하라.”

하운(河崙)은 진주(晉州) 사람인데, 순흥 부사(順興府使) 하운린(河允麟)의 아들이었다. 지정(至正) 을사년 과거에 합격하였는데, 좌주(座主) 이인복(李仁復)이 한 번 보고 기이하게 여기어 그 아우 이인미(李仁美)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신해년에 지영주(知榮州)가 되었는데, 안렴사(按廉使) 김주(金湊)가 그 치행(治行)을 제일로 올리니, 소환되어 고공 좌랑(考功佐郎)에 제수되어 여러 벼슬을 거치어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에 이르렀다. 무진년에 최영(崔瑩)이 군사를 일으켜 요양(遼陽)을 침범하니, 하운이 힘써 불가함을 말하였는데, 최영이 노하여 양주(襄州)에 추방하였다. 태조(太祖)가 즉위하자 계유년에 기용하여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가 되었다. 태조가 계룡산(雞龍山)에 도읍을 옮기고자 하여 이미 역사를 일으키니, 감히 간하는 자가 없는데, 하운이 힘써 청하여 파하였다. 갑술년에 다시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가 되었다. 병자년에 중국 고황제(高皇帝)가 우리의 표사(表辭)가 공근(恭謹)하지 못하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 문장을 쓴 사람 정도전(鄭道傳)을 불러 입조(入朝)하게 하였다. 태조가 비밀히 보낼지 안보낼지를 정신(廷臣)들에게 물으니, 모두 서로 돌아보고 쳐다보면서 반드시 보낼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하운이

焉? 但以哲人之萎, 邦之不幸。 自今以往, 臨大事決大疑, 不動聲色, 而措國家於盤安者, 予誰望歟? 此予之痛惜, 而不能自己者也。 特遣禮官, 致祭柩前, 不亡者存, 欽此恤典。 崙, 晉州人, 順興府使允麟之子也。 中至正乙巳科, 座主李仁復一見奇之, 以其弟仁美之子妻之。 辛亥, 知榮州, 按廉使金湊上其治行第一, 召拜考功佐郎。 累官至簽書密直司事。 戊辰春, 崔瑩興師犯遼陽, 崙力陳不可, 瑩怒, 放之襄州。 及太祖卽位, 癸酉, 起爲京畿都觀察使。 太祖欲遷都于雞龍山, 旣興役, 無敢諫者, 崙力請罷之。 甲戌, 復簽書中樞院事。 丙子, 高皇帝以表辭不謹, 徵我主文者鄭道傳入朝。 太祖密訪廷臣遣否, 皆願望以爲不必遣, 崙獨言遣之便, 道傳銜之。 太祖遣崙如京師, 敷奏詳明, 事果得解。 時, 道傳與南閩比謀, 挾幼孽以害諸嫡, 禍且不測。 崙嘗詣上潛邸, 上屏人問計, 崙曰: “此無他策, 但當先事擊除此輩耳。” 上默然。 崙復曰: “此特子弄父兵以救死耳。 雖上位動念, 畢竟若之何哉?” 及戊寅八月變作, 崙

	<p>홀로 보내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니, 정도전이 원망하였다. 태조가 하운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서 상주(上奏)하여 자세히 밝히니, 일이 과연 풀렸다. 그때에 정도전이 남은(南閭)과 피를 함하여 유얼(幼孽)을 끼고 여러 적자(嫡子)를 해하려 하여 화(禍)가 불측(不測)하게 되었으므로, 하운이 일찍이 임금의 잠저(潛邸)에 나아가니, 임금이 사람을 물리치고 계책을 물었다. 하운이 말하기를,</p> <p>“이것은 다른 계책이 없고 다만 마땅히 선수를 써서 이 무리를 쳐 없애는 것 뿐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이 없었다. 하운이 다시,</p> <p>“이것은 다만 아들이 아버지의 군사를 회롱하여 죽음을 구하는 것이니, 비록 상위(上位)께서 놀라더라도 필경 어찌하겠습니까?”</p> <p>하였다. 무인년 8월에 변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하운은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있었다. 빨리 말을 달려 서울에 이르러 사람으로 하여금 선언(宣言)하고 군사를 끌고와 도와서 따르도록 하였다. 상왕(上王)이 위(位)를 잇자 하운에게 정당 문학(政堂文學)을 제수하고 정사공(定社功)을 녹훈(錄勳)하여 1등으로 삼고, 작(爵)을 진산군(晉山君)이라 주었다. 경진년 5월에 판의흥 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가 되고, 9월에 우정승(右政丞)이 되매 작을 승진하여 백(伯)으로 삼았다. 11월에 임금이 즉위하자 좌명공(佐命功)을 녹훈하여 1등으로 삼았다. 신사년 윤3월(閏三月)에 사면하였다가 임오년 10월에 다시 좌정승(左政丞)으로 제수되어 영락 황제(永樂皇帝)의 등극(登極)한 것을 들어가 하례하는데, 하운이 명(明)나라에 이르러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p> <p>“새 천자가 이미 천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였으니, 청컨대, 우리 왕의 작명(爵命)을 고쳐 주소서.”</p> <p>하니, 황제가 아름답게 여기어 계미년 4월에 명나라 사신 고득(高得) 등과 함</p>	<p>時爲忠淸道都觀察使，疾驅至京，使人宣言提兵助順。及上王嗣位，拜崙政堂文學，錄定社功爲一等，賜爵晉山君。庚辰五月，判義興三軍府事。九月，拜右政丞，進爵爲伯。十一月，上卽祚，錄佐命功爲一等。辛巳閏三月辭。壬午十月，復拜左政丞，入賀永樂皇帝登極。崙至朝廷，上書禮部以謂：“新天子既與天下更始，請改賜吾王爵命。”帝嘉之。癸未四月，偕朝使高得等，奉誥命印章以來，上益重之，特賜田口。甲申六月，以旱乞免，乙酉正月，復舊職。丁亥七月，又以旱請避。己丑冬，李茂得罪，舉朝咸請誅之，崙獨爲之營救，上不答，入內曰：“崙以爲不可殺，是實其心之所發也。”乙未夏，李稷安置其鄉。一日崙詣闕，上引見于內殿，崙無語而笑，上問其故，崙對曰：“李稷之罪，其可放之於外耶？”上不答。壬辰八月，復左政丞，甲午四月，領議政府事，及今春年七十，乞致仕。上久未之許，崙請益切，以府院君就第。崙天資重厚，雍容簡默，平生無疾言遽色。至其端委廟堂，決疑定策，略不</p>
--	---	---

	<p>께 고명(誥命)·인장(印章)을 받들고 왔다. 임금이 더욱 중하게 여기어 특별히 전구(田口)를 주었다. 갑신년 6월에 가뭄으로 사면하기를 빌고, 을유년 정월에 다시 복직하였다가 정해년 7월에 또 가뭄으로 사피하기를 청하였다. 기축년 겨울에 이무(李茂)가 득죄하자 온 조정이 모두 베기를 청하였는데, 하윤이 홀로 영구(營救)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하기를, “하윤이 ‘죽일 수 없다.’고 하니, 이것은 실로 그 마음에서 발한 것이다.” 하였다. 을미년 여름에 이직(李稷)이 그 향리에 안치(安置)되었는데, 하루는 하윤이 예궐(詣闕)하니, 임금이 내전에서 인견하였다. 하윤이 말이 없이 웃으니, 임금이 그 까닭을 물었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이직의 죄가 외방(外方)에 내칠 죄입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다. 임진년 8월에 다시 좌정승이 되고 갑오년 4월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가 되었다. 금년 봄에 이르러 나이 70으로 치사(致仕)하기를 비니, 임금이 오래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윤이 청하기를 더욱 간절히 하여 부원군(府院君)으로 집에 나갔다.</p> <p>하윤이 천성적인 자질이 중후하고 온화하고 말수가 적어 평생에 빠른 말과 급한 빛이 없었으나, 관복[端委]차림으로 묘당(廟堂)에 이르러 의심을 결단하고 계책을 정함에는 조금도 험뜯거나 칭송한다고 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정승이 되어서는 되도록 대체(大體)를 살리고 아름다운 모책과 비밀의 의논을 계속(啓沃)한 것이 대단히 많았으나, 물러나와서는 일찍이 남에게 누설하지 않았다. 몸을 가지고 물건을 접하는 것을 한결같이 성심으로 하여 허위가 없었으며, 종족(宗族)에게 어질게 하고, 붕우(朋友)에게 신실(信實)하게 하였으며, 아래로 동복(僮僕)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은혜를 잊지 못하였다. 인재(人材)를 천거하기를 항상 불급(不及)한 듯이 하였으나, 조금만 착한 것이라도 반드시 취하고 그 작은 허물은 덮어 주었다. 집에 거(居)하여서는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잔치하여 노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성</p>	<p>以毀譽動其心。爲相務存大體，嘉謀密議，啓沃弘多，而退未嘗泄於人。處已接物，一誠無僞，仁於宗族，信於朋友，下至僮僕，皆懷其惠。薦進人材，常若不及，片善必取而掩其小過。居家不喜奢麗，不樂宴遊，性好讀書，手不釋卷，悠然嘯詠，至忘寢食。至於陰陽、醫術、星經、地理，皆極其精。勸勉後生，商確義理，亶亶忘倦。當國以來，專典文翰，事大辭命、文士著述，必經潤色印可而後乃定。排斥佛老，預爲遺文，藏之巾笥，訓誨子孫，纖悉周備。且戒以喪葬一依《朱子家禮》，毋作佛事。崙既沒而書出其家，如其言。自號浩亭，字大臨，諡文忠。子久。庶出三人，曰長，曰延，曰永。崙沒，妻夫人李氏痛悼，不飲食幾死，上聞之，賜藥酒，傳旨曰：“喪制不可不終。縱不顧死，其於不終喪制何？須飲酒節哀以終制。”李氏使人詣承政院上言曰：“家翁承王命死於外，願將屍體，入京家殯之。”命下禮曹，稽古制啓聞。仍傳旨曰：“《禮記》《曾子問》篇有此議。”禮曹啓：“奉使而死，大夫士當</p>
--	--	---

	<p>질이 글을 읽기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유유(悠悠)하게 휘파람을 불고 시를 읊어서 자고 먹는 것도 잊었다. 음양(陰陽)·의술(醫術)·성경(星經)·지리(地理)까지도 모두 지극히 정통하였다. 후생을 권면(勸勉)하여 의리를 상확(商確)함에는 미미(麤麤)하게 권태를 잊었다. 국정(國政)을 맡은 이래로 오로지 문翰(文翰)을 맡아 사대(事大)하는 사명(辭命)과 문사의 저술이 반드시 윤색(潤色)·인가(印可)를 거친 뒤에야 정하여졌다. 불씨(佛氏)와 노자(老子)를 배척하여 미리 유문(遺文)을 만들어 건사(巾笥)에 두고 자손을 가르치는 것이 섬실(纖悉)하고 주비(周備)하였다. 또 상사(喪事)와 장사(葬事)에는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고 불사(佛事)를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p> <p>하운이 죽은 뒤에 그 글이 나오니, 그 집에서 그 말과 같이 하였다. 자호(自號)는 호정(浩亭)이요, 자(字)는 대림(大臨)이요, 시호는 문충(文忠)이었다. 아들은 하구(河久)와 서자(庶子)가 세 사람인데, 하장(河長)·하연(河延)·하영(河永)이었다. 하운이 죽자 부인 이씨(李氏)가 애통하여 음식을 먹지 않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 임금이 듣고 약주(藥酒)를 하사하고 전지하기를,</p> <p>“상제(喪制)는 마치지 않을 수 없으니, 비록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제를 마치지 못하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부디 술을 마시고 슬픔을 절도 있게 하여 상제를 마치라.”</p> <p>하였다. 이씨가 사람을 시켜 승정원(承政院)에 나와 상언하기를,</p> <p>“가옹(家翁)이 왕명을 받들어 외방에서 죽었으니, 원컨대, 시체를 서울 집에 들여와 빈소(殯所)하게 하소서.”</p> <p>하니, 명하여 예조(禮曹)에 내리어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계문(啓聞)하게 하고, 이어서 전지하기를,</p> <p>“《예기(禮記)》 증자문편(曾子問篇)에 이러한 의논이 있었다.”</p> <p>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p> <p>“사명을 받들고 죽으면 대부(大夫)·사(士)는 마땅히 집에 돌아와 염(殮)하고</p>	<p>還家斂殯。” 從之。</p>
--	--	-------------------

	<p>초빈(草殯)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태종 32권, 16년 (1416 병신 / 명 영락 (永樂) 14년) 11월 13 일(경자) 1번째기사 면성 부원군 한규의 졸기</p>	<p>면성 부원군(沔城府院君) 한규(韓珪)가 졸(卒)하였다. 3일 동안 철조(輟朝)하 고 시호를 공무(恭武)라 하고 쌀·콩 아울러 60석과 종이 1백 권을 치부(致賻) 하고 중관(中官)4005) 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조말생(趙末生)에게 이르 기를, “내가 진산(晉山)의 부음(訃音)을 듣고 마음이 꺾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아서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지금 면성(沔城)이 또 죽었으니, 이 역시 내게 충성을 다한 신하이다. 나의 오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하고, 목을 놓아 울었다. 또 박은(朴崧)·한상경(韓尙敬)·김승주(金承雱)·연사종 (延嗣宗) 등을 불러 눈물을 거두고 전지하기를, “초8일에 진산 부원군의 통부(通訃)가 이르러 경제(經濟)의 신하를 잃었으므 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데, 지금 또 충직(忠直)한 신하를 잃었으니, 어찌하 겠느냐? 갑신년을 당하여 삼공신(三功臣)이 모여 맹세할 때에 모두 60여 인 이었는데, 겨우 10여 년 동안에 살아 있는 사람이 30에 불과하니, 슬프다. 부 생(浮生)이 이와 같다. 나도 또한 나이가 지금 50이다. 무릇 신하 된 자가 누 가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마는 공신이라고 하면 은수(恩數)가 다르다. 중월(仲月)에 공신의 모임을 이미 정한 법이 있는데, 지금 공신이 살 아 있는 자가 매우 적으니, 이미 죽은 공신의 적장자(嫡長子)를 등급을 뛰어 제수하여,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모임에 참여하고 공신이 연고가 있어 연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도 또한 적장자로써 대신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세자로 하여금 서로 보아서 익히 알게 하려고 함이다. 세경(世卿)과 비할 바가 못 되 니, 경 등은 그리 알라.” 하니, 박은 등이 대답하였다. “신 등이 이미 조그마한 도움도 없이 은총과 영광이 이미 지극한데, 어찌 사</p>	<p>庚子/沔城府院君韓珪卒，輟朝三日， 諡恭武，致賻米豆并六十石、紙一百 卷，遣中官致祭。謂趙末生曰：“予聞 晉山之訃，心如摧裂，淚尚未霽，今沔 城又卒，是亦於予盡忠之臣也。惟予 今日之心，其誰知之？”失聲而哭。又 召朴崧、韓尙敬、金承雱、延嗣宗等， 收淚而傳旨曰：“初八日，晉山府院君 之訃至，以失經濟之臣，不勝傷悼，今 又失忠直之臣，奈如之何？當甲申年三 功臣會盟之時，凡六十餘人，纔十餘年 而存者不過三十。嗟夫！浮生如此。 予亦年今五十，凡爲臣者，孰無效忠之 志？然既稱功臣，則恩數固異，而仲月 功臣之會，已有成法。今功臣之存者 甚少，欲以已歿功臣之嫡長，超等敘 用，使代其父而與會；其功臣之有故未 赴宴者，亦以嫡長代之，是使世子相見 而慣識耳，非世卿之比也。卿等其知 之。”崧等對曰：“臣等既無涓埃之補， 寵榮已極，何圖嗣子之又蒙聖澤？然殿 下以大義教之，敢不拜手聞命？”</p>

	자(嗣子)가 또 성택(聖澤)을 입는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 대의로 하교하니, 감히 절하여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까?”	
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1월 6일 (계사) 1번째기사 이방간의 사위인 이대 생에게 집과 쌀·콩·장 등의 물건을 내려주다	이대생(李大生)에게 집과 쌀·콩·소금·장(醬)·술·젓[醃]·돛자리[度子]·목반(木盤)·사기(沙器) 등의 물건을 모두 갖추어 내려 주니, 이대생은 이방간(李芳幹)의 사위였다.	癸巳/賜李大生家舍, 米豆、鹽醬、酒醃、席子、木盤、沙器等物皆具。大生, 芳幹之壻也。
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1월 7일 (갑오) 1번째기사 제주사람 전 호군 문 충덕·이운 등에게 쌀 콩을 내려주다	전 호군(護軍) 문충덕(文忠德)·이운(李芸)에게 쌀·콩을 각기 10석씩 내려 주니, 제주(濟州) 사람들이었다.	甲午/賜前護軍文忠德、李芸米豆各十石, 濟州人也。
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2월 16 일(계유) 1번째기사 생원시 합격자 발표로 3일 동안 금주령을 풀 다	생원시 방방(生員試放榜) 이후의 3일 동안은 술을 금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삼관(三館)에서 새 생원을 축하하는 것은 고풍(古風)이니, 3일 동안 하고서 그침이 마땅하다.” 하니, 이때에 금주(禁酒)의 영(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癸酉/命生員試放榜後, 三日勿禁酒。上曰: “三館賀新生員, 古風也。宜三日而止。” 時有禁酒之令, 故有是命。
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2월 22	제천현(堤川縣) 창고의 쌀·콩 1백 석을 각림사(覺林寺)에 주니, 본궁(本宮)의 쌀·콩 1백 석과 바꾼 것이었다.	給堤川縣倉米豆百石于覺林寺。蓋以本宮米豆百石換之也。

<p>일(기묘) 5번째기사 제천현 창고의 쌀·콩 100석을 각림사에 주 다</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3월 28 일(갑인) 2번째기사 저화를 받고 묵은 쌀 과 콩을 팔다</p>	<p>묵은 쌀·콩 1만 석(石)을 저화(楮貨)로 무역(貿易)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반드시 환과고독(鰥寡孤獨)에게 우선하고, 그들의 자원(自願)을 따르도록 하 라.”</p>	<p>以陳米豆一萬石，貿易楮貨。上曰： “必先鰥寡孤獨，而從其自願。”</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4월 8일 (갑자) 1번째기사 경복궁 경회루 아래에 서 문·무과 복시를 시 행하다</p>	<p>경복궁(景福宮)에 행행(行幸)하였다. 경회루(慶會樓) 아래로 나아가 문·무과(文 武科) 복시(覆試)를 보였다. 문과에는 예조 판서 맹사성(孟思誠), 예문관 제학 (藝文館提學) 변계량(卞季良) 및 지신사(知申事) 조말생(趙末生)을 독권관(讀 券官)으로 삼고, 무과에는 병조 판서 이원(李原), 참판(參判) 이춘생(李春生), 평양군(平陽君) 김승주(金承霍), 총제(摠制) 성달생(成達生)·최윤덕(崔閔德)·이 순몽(李順蒙) 등을 참여하게 하였다. 문과(文科)에서는 한혜(韓惠) 등 33인을 취하고, 무과(武科)에서는 전선생(田善生) 등 28인을 취했다. 한혜를 전사 소 윤(典祀少尹)으로 삼고, 전선생을 부사직(副司直)으로 삼았다. 문과·무과는 전 례(前例)에 따라 3일에 한하여 경하(慶賀)하게 하니, 이 앞서 금주령(禁酒令) 이 있었기 때문이었다.</p>	<p>甲子/幸景福宮，御慶會樓下，覆試文 武科。文科以禮曹判書孟思誠、藝文 館提學卞季良及知申事趙末生爲讀券 官；武科以兵曹判書李原、參判李春 生、平陽君金承霍、摠制成達生·崔 閔德·李順蒙等參之。文科取韓惠等 三十三人；武科取田善生等二十八人。 以惠爲典祀少尹，善生爲副司直。文 武科依前例，限三日慶賀，前此有禁酒 之令故也。</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4월 9일 (을축) 2번째기사 상왕을 모시고 동교에 서 매사냥을 구경하다</p>	<p>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고, 동교(東郊)에서 매사냥을 구경하였다. 살곶이[箭 串] 벌에 주정소(晝停所)를 정하고 술자리를 베풀어 한껏 즐기니, 종친(宗親) 이 시연(侍宴)하였다. 수가(隨駕)한 대소 신료(大小臣僚)에게 술을 내려 주었 다.</p>	<p>上奉上王，觀放鷹于東郊，晝停于箭串 坪，置酒極歡，宗親侍焉。賜酒于隨 駕大小臣僚。</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4월 24일(경진) 2번째기사 사람을 시켜 이방간에 술과 음식을 내려 주다</p>	<p>사람을 보내어 이방간(李芳幹)에게 주선(酒膳)4290 을 내려 주고, 건장록(乾獐鹿)을 합쳐 15구(口), 약주(藥酒) 30병(瓶), 소주(燒酒) 10병, 녹포(鹿脯)·조곽(早藿)등의 물건을 내려 주면서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에게 전지(傳旨)하였다. “지금 도내(道內) 홍주(洪州)에 안치(安置)된 이방간(李芳幹) 처소(處所)에 월봉미(月捧米)는 이미 주었으나, 감장(甘醬)·건청어(乾靑魚) 등의 물건을 연속하여 주게 하라.”</p>	<p>遣人賜芳幹酒膳。 賜乾獐鹿并十五口、藥酒三十瓶、燒酒十瓶、鹿脯早藿等物， 仍傳旨于忠淸道都觀察使曰：“今道內洪州安置芳幹處， 月捧米則已給矣， 若甘醬乾靑魚等物， 連續給之。”</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4월 27일(계미) 1번째기사 하절기에 각도의 진선을 중지시키다</p>	<p>각도의 진선(進膳)을 금지시켰다. 예조에 명하였다. “이제 더운 때를 당하여 먼 지방에서 달마다 진상(進上)한다면 역로(驛路)에 폐단이 있을 것이니, 신미(新米) 이외의 그 나머지는 모조리 금지하게 하라.”</p>	<p>癸未/禁各道進膳。 命禮曹曰：“今當熱時， 遠方每朔進上， 驛路有弊。 新米外， 其餘一皆禁止。”</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4월 28일(갑신) 1번째기사 예조에서 새로 건원릉 제사 의주를 올리니, 번거로운 개정을 힐난하다</p>	<p>예조에서 신찬(新撰)한 건원릉 제의주(健元陵祭儀註)를 올리니, 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산릉(山陵)에 배례(拜禮)하고 전(奠)을 드리는 예(禮)는 내 이미 세속을 좃고 있다. 또 의주(儀註) 안에 음복례(飲福禮)가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만약 상정관(詳定官)에게 일이 없다면 물러가 쉬는 것이 좋겠다.” 하니, 대개 예관(禮官)이 의례(儀禮)를 고치기 좋아하여 만들었다 없었다 함이 무상(無常)하여 상청(上聽)을 번거롭게 하는 까닭으로 이런 교지가 있었다.</p>	<p>甲申/禮曹上《新撰健元陵祭儀註》， 上覽之曰：“山陵拜奠禮， 予已從俗。 且儀註內， 無飲福禮何哉？ 若詳定官無事， 則退而休焉可也。” 蓋禮官好改儀禮， 成毀無常， 以煩上聽， 故有此教也。</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5월 1일(병술) 1번째기사 건원릉에 단오 별제를</p>	<p>임금이 건원릉에 나아가 단오 별제(端午別祭)를 행하였다. 처음에 박신(朴信)·권진(權軫)·허조(許稠) 등이 아뢰기를, “내월 초1일 건원릉(健元陵) 친행제(親幸祭) 때에는 거가(車駕)가 환궁하는 노상(路上)에서 육조(六曹)가 잠시 동안 향례(享禮)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니, 조말생이 말하였다.</p>	<p>丙戌朔/上詣健元陵， 行端午別祭。 初， 朴信、權軫、許稠等啓曰：“來月初一日， 健元陵親幸祭還駕路上， 六曹欲暫設享禮。” 趙末生曰：“上昨日召臣曰：‘予欲禁闕內藥酒， 予若不進， 則</p>

<p>행하다</p>	<p>“주상께서 어제 신(臣)을 불러 말씀하기를, ‘내가 궐내(闕內)에서는 약주(藥酒)를 금하고자 하나, 내가 만약 마시지 않는다면 상왕께서도 필시 술을 마시지 않으실까 염려된다.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한 달이 차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니, 내 심히 이를 근심한다.’하시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금주(禁酒)는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매년 빈민(貧民)들이 요행으로 탁주(濁酒)를 마시다가 붙잡히면 죄를 받아도, 대가(大家)는 문을 닫고 종일 즐겁게 마시더라도 결국은 죄에 걸리지 않습니다.’하였더니, 주상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내 뜻이나 우선은 정침(停寢)하겠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려(上慮)가 대단하시니 나아가 아뢰기가 곤란합니다.”</p> <p>박신이 말하기를,</p> <p>“우리 주상께서 지나치게 천계(天戒)를 삼가합니다. 아직은 농사철도 다하지 아니했고, 또 내가 백성에게 물었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늘이 만약 큰비를 내린다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으니, 모름지기 계달(啓達)하여야 합니다.”</p> <p>하였다. 조말생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박신 등이 나가자, 조말생이 들어가 아뢰니, 임금의 그 대답한 말[答辭]을 좋게 여겼다.</p>	<p>恐上王必不進酒。今當農月，彌月不雨，予甚憂之。’臣對曰：‘禁酒固是良法，然每年貧民幸飲濁酒，而見執被罪，若大家則杜門終日歡飲，竟不坐罪。’上曰：‘是予志也，姑停之。’然上慮之甚，難以進啓。”信曰：“我主上過謹天戒。當時農月未盡，且我問於百姓，百姓曰：‘天若大雨則可，不然，不若不雨之爲愈也。’須當啓達。”末生不答。信等出，末生入啓，上善其答辭。</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5월 13일(무술) 1번째기사 호조에서 부경 사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포물의 수량을 정하다</p>	<p>호조에서 부경 사신(赴京使臣)의 포물(布物)을 상정(詳定)하였다.</p> <p>“정사(正使)·부사(副使)는 각각 15필, 종사관(從事官)은 10필, 타각부(打角夫)는 5필씩으로 하고, 차(茶)·삼(蔘) 이외의 기타 잡물(雜物)은 모조리 금단(禁斷)하소서.”</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戊戌/戶曹詳定赴京使臣布物：“使副使各十五匹，從事官十匹，打角夫五匹。茶蔘外其餘雜物，一皆禁斷。”從之。</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p>	<p>사헌부에서 병조 판서 이원(李原), 참판 이춘생(李春生) 등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명하여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원 등은 왕명을 받들고 취각(吹角)을 동</p>	<p>己亥/司憲府請兵曹判書李原、參判李春生等罪，命勿論。原等承命試吹角</p>

<p>(永樂) 15년) 5월 14 일(기해) 1번째기사 비상 동원 훈련 중 술 자리를 마련한 병조 판서 이원·참판 이춘 생 등을 사헌부에서 탄핵하다</p>	<p>소문(東小門)밖에서 시험하다가, 이어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평양군(平陽君) 김승주(金承霏), 이조 판서 박신(朴信), 공조 판서 성발도(成發道), 좌평군(坡平君) 윤곤(尹坤), 총제(摠制) 하경복(河敬復) 등과 더불어 회사(會射)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자 사헌부에서 그들을 탄핵하였다. 임금이 장령(掌令) 정흠지(鄭欽之)를 불러 추핵하지 말라고 하니, 정흠지가 말하기를, “감히 부종명(不從命)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기(旱氣)가 매우 심하여 전하께서 소간(宵旰)하면서 근심하는데 대신(大臣) 된 자로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함부로 연음(宴飲)하였으니 옳지 못했고, 또 함부로 자문(紫門)의 포마(鋪馬) 5필을 끌어내어 창기(倡妓)를 태우고 갔으니 더욱 대신의 뜻이 아닙니다. 원컨대, 다 계문(啓聞)하여 취지(取旨)하게 하소서.”</p> <p>하므로, 조말생이 이를 아뢰니, 임금이, “헌사(憲司)의 탄핵이 옳다. 그러나, 대신들이 기쁜 정을 이기지 못하여 잠깐 동안 밖에서 술 마신 것을 어찌 감히 죄주겠느냐?” 하였다. 헌사에서 상소(上疏)하기를, “이원·김승주·박신·성발도·윤곤·하경복과 인녕부 윤(仁寧府尹) 김점(金漸), 병조 참판 이춘생, 대호군 유연지(柳衍之), 병조 정랑(兵曹正郎) 서진(徐晉)·정환(鄭還)·윤수(尹粹), 좌랑(佐郎) 김상직(金尙直)·정인지(鄭麟趾) 등은 공사 연음(公私宴飲)을 일체 금지하는 때를 당하여 각각 주과(酒果)를 가지고 성밖에서 연음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핵문(劾問)할 즈음에, 조말생이 전지하기를, ‘논하지 말라.’고 하니, 중하(仲夏)의 달에 한 달이 끝나도록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전하께서 구중(九重) 안에서 소간(宵旰)하며 안타까이 걱정하고 계신데, 이원·김승주·박신·성발도·윤곤·하경복·김점·이춘생 등은, 혹은 훈구(勳舊)로서 혹은 위임(委任)대신으로서 논사(論思)의 위치에 처해 있고, 균축(鈞軸)의 지위에 당해 있으니, 마땅히 근신 절검(謹慎節儉)하고 정신(正身)하여 아랫사람을 이끌면서 재앙이 그치게 할 것을 생각하여 침식(寢食)할 겨를이 없어야 하는</p>	<p>於東小門之外，仍設酌，與平陽君金承霏、吏曹判書朴信、工曹判書成發道、坡平君尹坤、摠制河敬復等會射。事覺，司憲府劾之。上召掌令鄭欽之勿推，欽之曰：“敢不從命？然旱氣太甚，殿下霄旰憂勤，爲大臣者慮不及此，恣爲宴飲，已爲不可。又擅發紫門鋪馬五匹，載倡妓以行，尤非大臣之意也。願悉啓聞而取旨。”趙末生以聞，上曰：“憲司之劾是矣。然大臣不勝歡情，暫飲于外，何敢罪之？”憲司上疏曰：</p> <p>李原、金承霏、朴信、成發道、尹坤、河敬復及仁寧府尹金漸、兵曹參判李春生、大護軍柳衍之、兵曹正郎徐晉·鄭還·尹粹、佐郎金尙直·鄭麟趾等當公私宴飲一禁之時，各持酒果，城外宴飲。今其劾問之際，趙末生傳旨曰：“勿論。”然仲夏之月，彌月不雨，殿下宵旰九重，焦心軫慮，李原、承霏、朴信、發道、尹坤、敬復、金漸、春生等或以勳舊、或以委任，處論思之位、當鈞軸之地，誠宜謹慎節儉，正身率下，思欲弭災，寢食不暇也。今乃不體殿下憂勤之意，城外</p>
--	---	--

	<p>태도 오늘날 전하께서 근심하는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성밖에서 모여 염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기생을 데리고 풍악을 울리며 종일 술을 마셨으니, 실로 대신으로서 나라를 근심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유연지·서진·정환·윤수·김상직·정인지 등도 사리를 아는 조사(朝士)로서 소행이 이와 같으니 모두가 부당합니다. 이제 만약 모조리 논하지 않는다면 뒷사람을 경계할 수 없으니, 윗항의 인원들을 논죄(論罪)함으로써 정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p>	<p>聚會，烹羔設宴，携妓作樂，竟日以飲，實無大臣憂國之意。柳衍之、徐晉、鄭還、尹粹、金尙直、鄭麟趾等以識理朝士，所行如此，皆爲不當。今若竝皆勿論，則後無戒焉。上項人員論罪，以懲不恪。不允。</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5월 17일(임인) 4번째기사 황하신에게 쌀과 염장·어혜 등을 내려주다</p>	<p>황하신(黃河信)의 집에 쌀 10석, 염장(鹽醬)·어혜(魚醢) 등의 물건을 내려 주었다.</p>	<p>賜河信家米十石、鹽醬魚醢等物。</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5월 17일(임인) 5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고 감선 하자 비가 내리다</p>	<p>금주령(禁酒令)을 내리고 감선(減膳)하니, 이날 밤에 비가 내렸다.</p>	<p>下禁酒令，減膳，是夜雨。</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5월 20일(을사) 1번째기사 대마도 수호 종정무의</p>	<p>대마도 수호(對馬島守護) 종정무(宗貞茂)에게 쌀 1백 석을 내려 주니, 종정무가 보낸 사인(使人)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고 인하여 조미(糶米)하라고 고(告)한 때문이었다.</p>	<p>乙巳/賜對馬島守護宗貞茂米百石。貞茂遣人來獻土物，仍告糶也。</p>

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쌀을 내려주다		
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5월 26 일(신해) 1번째기사 경복궁에서 상왕을 맞이하에 연회를 베풀다	임금이 경복궁으로 행행(行幸)하여 상왕을 봉영(奉迎)하였다. 잔치를 베풀고 과녁을 쏘니 종친(宗親)이 시연(侍宴)하였다. 수가(隨駕)한 대소 신료에게 술을 내려 주고, 내탕(內帑)의 궁시(弓矢)를 수가한 재추(宰樞)·대언(代言), 상호군·대호군에게 하사(下賜)하였다.	辛亥/上幸景福宮，奉迎上王，設宴射侯，宗親侍宴。賜酒隨駕大小臣僚，賜內帑弓矢于隨駕宰樞、代言、上大護軍。
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5월 27 일(임자) 4번째기사 왜인 등차랑이 거느리고 온 삼시미라의 모상에 부의를 내려주다	등차랑(藤次郎)이 거느리고 온 왜인 삼시미라(三味時羅)의 모상(母喪)에 쌀·콩을 합하여 10석, 종이 1백 권을 내려 주었다.	藤次郎率來倭三味時羅喪母，賜粳米豆并十石、紙百卷。
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윤5월 9 일(갑자) 2번째기사 의정부·육조에서 각도의 진언내용을 검토하여 보고하다	의정부·육조(六曹)에서 각도(各道)의 진언(陳言)내용에 있는 조건을 의논하여 올렸다. “1. 풍해도의 진언 내용에 있는 한 조항에, ‘군기감(軍器監)에 납부하는 아교피(阿膠皮)는 후박(厚薄)·대소(大小)를 가리지 말고 그 근량(斤兩)을 숫자로 정하여 봉납(捧納)하게 하소서.’하고, 1. 경상도의 진언 내용에 있는 한 조항에 ‘인리(人吏)의 구분전답(口分田畝)은 5결(結)에 그 세(稅)가 경미(更米) 2석인데, 수한(水旱)으로 인한 진손(陳損)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작자에게 세를 물리니, 한전(旱田)에서 쌀을 낸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각품 과전례(各品科田例)에 의하여 수전세(水田稅)의 부족은 한전(旱田)에서 거두지 말게 하며, 1. 녹용(鹿茸)의 사냥은 열에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때는 5월에 당하여서 농	議政府、六曹上擬議各道陳言內條件： “一，豐海道陳言內一款軍器監納阿膠皮，不擇厚薄大小，以其斤兩，定數捧納，一，慶尙道陳言內一款，人吏口分田畝五結，其稅更米二石，因水旱除陳損，并稅於田作者，有旱田出米之怨。依各品科田例，水田之稅不足，則毋收於旱田。一，鹿茸之獵獲，十不能得一，時當五月，有妨農務，且非切要之藥。除供上外，量用減定。一，地關民稠，禽獸罕少，雖勞兵馬，不能充

	<p>사일에 방해가 되고 또 절요(切要)한 약(藥)도 아니니 공상(供上)을 제외하고는 요량하여 숫자를 감정(減定)하게 하며,</p> <p>1. 땅이 개척되고 백성들은 조밀하여 금수(禽獸)가 드물므로 비록 병마(兵馬)를 수고롭게 한다 하더라도 충공(充貢)할 수 없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공상(供上)을 제외한 각 처의 건장록(乾獐鹿)은 각 고을에서 기르는 돼지와 염소로써 대치하게 하소서.’하고,</p> <p>1. 경기(京畿)의 진언 내용에 있는 한 조항에, ‘생충(生葱)은 침장고(沈藏庫)로 하여금 이를 갖추게 하소서.’하였습니다. 윗항의 다섯 조목은 진언 내용대로 따르소서.</p> <p>1. 제역(除役)하는 것은 각 호(各戶)의 공부(貢賦)를 위의 조항과 같이 분정(分定)하여 제역(除役)하고, 각 호에서 경작하는 공부수(貢賦數)는 서로 상고하여 감제(減除)하도록 호조로 하여금 마련(磨鍊)하여 아뢰게 하소서.</p> <p>1. 종친(宗親)·공신(功臣)의 국장(國葬)에 백성을 사역시키는 정액(定額)과 정한(定限)은, 위의 조항의 조묘군(造墓軍)을 그전에 정한 숫자로서 1달을 한정하여 역사시키게 하소서.</p> <p>1. 사복시(司僕寺)의 곡초(穀草)를 헤아려서 감(減)하는 것은, 위의 조항의 양감한 숫자를 마련(磨鍊)하여 아뢰게 하소서.</p> <p>1.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의 절수전(折受田)의 방석(方席)과 비[籌] 등을 감제하는 것은, 위의 조항 상항(上項)의 내자시·내섬시·군기감(軍器監)·경승부(敬承府) 등 각 사에 절속(折屬)한 전지는 법식에 의하고, 세(稅) 이외의 잡물(雜物)은 그 각 사로 하여금 자비(自備)하게 하소서.”</p>	<p>貢。願自今供上外，各處乾獐鹿，以各官所畜豬羔代之。一，京畿陳言內一款，生葱，令沈藏庫備之。上項五條，從陳言。</p> <p>一，除役各戶貢賦分定。右條除役各戶所耕貢賦數，相考減除，令戶曹磨鍊啓聞。</p> <p>一，宗親、功臣國葬，役民定額定限。右條造墓軍以其前定數，限一朔役使。</p> <p>一，司僕寺穀草量減。右條量減之數，磨鍊啓聞。</p> <p>一。內資寺、內贍寺折受田方席及籌等減除。右條上項內資寺、內贍寺、軍器監、敬承府等各司折屬田地依式，稅外雜物，令其各司自備。</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윤5월 11일(병인) 3번째기사</p>	<p>하성절사(賀聖節使) 정구(鄭矩)가 북경(北京)으로부터 돌아왔다. 정구가 아뢰기를, “호송군(護送軍)이 가지고 가는 포물(布物)은 정수(定數)대로 하고 다른 물건을 모두 금지하니 사람마다 결망(缺望)하여 말하기를, ‘사신(使臣)이 유고(有</p>	<p>賀聖節使鄭矩回自北京。矩啓曰：“護送軍所齎布物定數，而他物皆禁，人人缺望曰：‘使臣有故而久留，則農月或留至一朔，加以禁其興利，此尤爲失心</p>

<p>하성절사 정구가 북경에서 돌아와 사신의 지참 물품을 늘려주도록 허락할 것을 아뢰다</p>	<p>故)하여 오래 머물게 되면 농사철에 혹 1개월을 머물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흥리(興利)마저 금하니 이것은 더욱 실심(失心)하게 하는 것입니다.’고 하니, 청컨대, 그 숫자를 더하여 백성의 여망(興望)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의 숫자대로 포(布) 10필, 인삼(人蔘) 5근(斤)으로 하되 입모(笠帽) 등은 금하지 말고, 금은(金銀)·마필(馬匹)은 굳게 금지하라.” 하였다. 호조 판서 정역(鄭易)이, “10필은 너무 지나칩니다. 비록 5필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숫자를 채우지 못합니다. 가지고 가는 인삼 또한 3근이면 가합니다.” 하고, 지신사 조말생(趙末生), 동부 대언(同副代言) 하연(河演) 등이, “포물(布物) 숫자가 너무 지나치니, 전의 숫자에 의하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호조로 하여금 양정(量定)하여 아뢰도록 하라.”</p>	<p>也。’ 請加其數， 以慰民望。” 上曰：“因前數， 布十四、人蔘五斤， 笠〔帽〕等毋禁， 金銀馬匹堅禁。” 戶曹判書鄭易曰：“十四太過， 雖五匹人人不得準數。 齋去人蔘， 三斤亦可。” 知申事趙末生、同副代言河演等曰：“布數太過， 乞依前數。” 上曰：“令戶曹量定以聞。”</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윤5월 16일(신미) 1번째기사 개성현 여자 최장이 딸 세쌍둥이를 낳으니 쌀을 내려주다</p>	<p>개성현(開城縣) 여자 최장(崔藏)이 한꺼번에 세 딸을 낳으니, 명하여 쌀 3석을 내려 주었다.</p>	<p>辛未/開城縣女崔藏一乳三女， 命賜米三石。</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윤5월 22일(정축) 3번째기사 행대 감찰로서 수원</p>	<p>감찰(監察) 정여(鄭旅)·원옥(元郁)을 파직(罷職)하였다. 처음에 정여와 원옥이 행대(行臺)로서 수원(水原)에서 회합했는데, 부사(府使) 박강생(朴剛生)이 정여와 원옥을 연정(蓮亭)으로 맞이하여, 염소를 잡고 술자리를 마련하고 활시위를 벌여 놓고 과녁을 세우고는 기생(妓生)을 불러 가무(歌舞)하면서 명중(命中)하는 것으로써 재능을 겨루었더니, 이때에 이르러 이 일이 발각되어 헌사</p>	<p>罷監察鄭旅、元郁職。 初， 旅與郁以行臺， 會于水原， 府使朴剛生邀旅、郁于蓮亭， 烹羔置酒， 張弓設的， 召妓歌舞， 命中爭能。 至是事覺， 憲司請罪， 略曰：“旅、郁以糾察守令非法之任，</p>

<p>부사 박강생에게 접대 받은 일로 정여·원옥을 파직하다</p>	<p>(憲司)에서 죄주기를 청하였다. 그 글은 대략 이러하였다. “정여와 원옥은 수령(守令)의 비법(非法)을 규찰하는 직임을 띠고서 농사철을 당해 금주(禁酒)하는 때에, 먼저 자신이 금령을 범해 가면서 도리어 수령과 더불어 음주(飲酒)하고 가무(歌舞)하여 감히 비법을 행하였으니 특히 행대(行臺)의 뜻을 잃었습니다. 박강생은 지난번에도 이웃 고을 수령(守令)과 경내(境內)를 벗어나 안양사(安養寺)에서 취회(聚會)하여 소주(燒酒)를 강권하다가 김문(金汶)을 죽게 하였는데 아직도 개선하지 못하고, 이제는 또 교지(教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감(臺監)과 더불어 술 마시며 활 쏘기를 하였으니, 그 행위는 부당하기 막심합니다.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명하여, “정여·원옥은 파직시키고, 박강생은 이미 죄를 받았으니 논하지 않음이 옳다.” 고 하였다.</p>	<p>當農月禁酒之時，先自犯令，反與守令飲酒歌舞，敢行非法，殊失行臺之義。剛生其在曩時，與隣官守令越境聚會安養寺，強勸燒酒，致死金汶，尚且不悛，而今又不遵教旨，乃與臺監飲射，其爲不當莫甚，請依律論罪。”命罷旅、郁職，剛生已曾受罪，宜勿論。</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윤5월 22일(정축) 4번째기사 예조 판서 변계량과 제조에서 공상을 그전대로 하기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p>	<p>예조 판서 변계량(卞季良)과 제조(諸曹)에서 공상(供上)을 그전대로 하기를 청하니, 임금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아뢰기를, “성상께서 각도의 진상(進上)을 제하도록 명하니 그 겸근(謙謹)의 뜻은 옳으나, 임금의 일신(一身)은 천지·종사(宗社)를 맡은 것이며 대소 신민(大小臣民)이 우러러 보는 것이니, 역로(驛路)의 작은 폐단 때문에 스스로 진膳(進膳)을 폐함으로써 상체(上體)를 수척하게 함은 불가한 것입니다. 청컨대, 먼 곳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가까운 도(道)에서는 진상할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전지(傳旨)하였다. “이 말이 옳다. 그러나 농사철을 당하여 역로에 폐단이 있을 것이니, 내 차마 못하겠다. 이제부터 영구히 법을 세우려 하니 오직 경 등은 이를 듣고 따르도록 하라.”</p>	<p>禮曹判書卞季良與諸曹請上供依舊，不允。啓曰：“上命除各道進上，其謙謹之意是矣。然人主一身，天地宗社之所寄；大小臣民之所仰，不可以驛路之小弊，私自廢膳，使上體虧瘦也。請遠方則已，令近道得以進上。”傳旨曰：“此言是矣。然當農月，驛路有弊，予不忍爲之。伊欲自今永爲立法，惟卿等聽從之。”</p>
<p>태종 33권, 17년</p>	<p>경기 도관찰사 이관(李灌)이 노루를 바치니 받지 아니하고, 임금이 말하였다.</p>	<p>庚辰/京畿都觀察使李灌獻獐，不受。</p>

<p>(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윤5월 25일(경진) 1번째기사 경기 도관찰사 이관이 노루를 바치니 받지 않는다</p>	<p>“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진수(轉輸)에 폐단이 있다. 일찍이 각도의 진膳(進膳)은 금하였는데, 어째서 듣지 아니하고 이 지경인가? 내가 옛 제도를 준수함으로써 후왕(後王)에게 남겨 주고자 하는 것이 어찌 명예를 닦음이겠는가?”</p>	<p>上曰：“今當農月，轉輸有弊，曾禁各道進膳，何不聽至此耶？我欲遵古制，以貽後王，豈以鈞名乎？”</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윤5월 26일(신사) 4번째기사 전라도 조운선 세 척이 교하의 오도성에 이르러 침몰, 모두 익사하다</p>	<p>전라도(全羅道) 조선(漕船) 3척이 교하(交河)의 오도성(吾道城) 밑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침몰하니, 사람들은 모두 익사(溺死)하고, 쌀·콩 2천 6백 80여 석(石)도 물에 잠겼다.</p>	<p>全羅道漕船三艘到交河吾道城下，遭風敗沒，人皆溺死，沒米豆二千六百八十餘石。</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6월 3일 (정해) 4번째기사 경복궁에 나아가 상왕을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다</p>	<p>임금이 경복궁(景福宮)으로 행행하여 상왕을 봉영(奉迎)하였다. 술자리를 베푸니, 세자(世子)·종친(宗親)이 시연(侍宴)하였다. 명하여 박신(朴信)·이원(李原), 관좌군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事) 이화영(李和英) 등을 연회에 나오게 하였다. 수가(隨駕)한 대소 신료(大小臣僚)에게 술을 내려 주고, 내관(內官)을 보내어 주과(酒菓)를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에게 내려 주니 경로(敬老)한 때문이다.</p>	<p>上幸景福宮，奉迎上王置酒，世子、宗親侍宴。命朴信·李原、判左軍都摠制府事李和英等赴宴，賜酒隨駕大小臣僚。遣內官賜酒菓于昌寧府院君成石璘，敬老也。</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6월 3일 (정해) 5번째기사 악공 이생·이석에게</p>	<p>악공(樂工) 이생(李生)에게 쌀 5석을, 이석(李石)에게 쌀 3석을 내려 주었다.</p>	<p>賜樂工李生米五石，李石米三石。</p>

<p>쌀을 내려주다</p>	<p>명하여 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이굉(李宏)의 직첩(職牒)을 거두고, 황보원(皇甫元)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이굉은 이천우(李天祐)의 아들이었다. 처음에 이천우가 이굉의 어미를 내보내고, 황보씨(皇甫氏)를 취(娶)하여 봉작(封爵)을 받고 살다가 병이 들게 되자, 전토(田土)와 장획(臧獲)·가재(家財)를 황보씨에게 주고자 하여 이굉을 불러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굉은 노비를 그의 어미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천우가 일찍이 원종 공신(原從功臣)으로 비(婢) 동백(冬白)을 하사받아 첩(妾)으로 삼았더니, 이굉이 동백과 미리 모계(謀計)하기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마땅히 하사받은 것을 돌려 받게 된다.” 하여,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또 병이 위독할 때를 당하여, 이굉은 곁에 모시며 봉약(奉藥)하지 아니하고 바둑을 놓으면서 놀이를 하였다. 또 검(劍)을 차고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속산(屬散)한 갑사(甲士) 김을생(金乙生)의 아내[妻]를 겁탈하여 첩(妾)으로 삼았고, 아버지가 죽어 목욕(沐浴)시켜 반함(飯舍) 할 때에 코를 막고 나갔으며, 대렴(大斂)하고 입관(入棺)할 때에는 그 냄새가 나쁘다 하여 만면(滿面)에 약을 바르고 코를 손으로 가리며 물러가 서 있었다. 계모(繼母)와 첩(妾)이 들어가 이를 보고자 하니,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또 아버지가 일찍이 노비(奴婢)를 황보씨에게 주었는데 그 중에서 6구(口)를 침탈(侵奪)하였다.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그 아버지가 친신(親信) 하던 종[奴] 사안토(沙顏吐)를 타박(打撲)하여 상처를 입힘으로써 도망치게 하고, 또 빈소(殯所)를 모시지 아니하고 바로 몸에 병이 있다고 핑계한 뒤, 기첩(妓妾) 월연연(月涓涓)을 데리고 김을생(金乙生)의 집에서 묵었다. 부의(賻儀)로 내려 준 쌀·콩을 계모에게 고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나누어 썼고, 아직 장사지내기도 전에 계모를 침범(侵逼)하여, 드디어 그 누이동생과 함께 그 아버지의 가재(家財)·문서(文書)를 나누어 가졌다. 그 재산을 분배할 즈</p>	<p>命收前同知敦寧府事李宏職牒，囚皇甫元于義禁府。宏，天祐之子也。初，天祐出宏母，娶皇甫氏，封爵以居。及病，欲以土田、藏獲、家財給皇甫氏，召宏爲證，宏以奴婢不分與其母，不署名。又天祐嘗以原從功臣受賜婢冬白爲妾，宏與冬白預謀曰：“父卒，吾當回換受賜。”再傷病父之志。又當病革之時，宏不侍側奉藥，而着某戲謔，又佩劍率衆，祛取屬散甲士金乙生之妻爲妾。及父卒，於沐浴、飯舍之時，塞鼻而出，大斂入棺之時，稱其臭惡，滿面塗藥，揜鼻退立，繼母及妾欲入見之，閉門不納。又父曾以奴婢與皇甫氏，侵奪其六口，父卒未幾，打傷其父之所親信奴沙顏吐，以致逃去，又不侍殯，乃托身疾，率妓妾月涓涓，嘗宿于金乙生之家，致賻米豆，不告繼母，擅自分用。未葬之前，侵逼繼母，遂與其妹，分其父之家財文書。及其分財之際，皇甫氏執珊瑚帽珠曰：“此本是汝父妾成隱加伊之物也。”遂給之，宏拳歐成隱加伊，使仆於地，因扼其吭而奪之，乃使婢子牽頭曳足而逐出</p>
----------------	---	---

	<p>음에, 황보씨가 산호 모주(珊瑚帽珠)를 잡고 말하기를, “이것은 본시 너희 아버지의 첩(妾) 성은가이(成隱加伊)의 물건이다.” 하고, 드디어 주니, 이굉이 주먹으로 성은가이를 때려 땅에 쓰러뜨린 다음, 이어 목을 누르면서 그것을 빼앗고는 여종[婢子]을 시켜 머리를 끌고 발을 잡아당겨서 내어 쫓게 하였다. 성은가이가 이를 헌부(憲府)에 호소하니, 헌부 에서 이굉이 불순 불효(不順不孝)하여 인륜(人倫)을 어지럽히고 풍속을 오염 (汚染)시키며 그 행실이 짐승과 같다는 죄(罪)를 논칭(論請)하였고, 또 황보원 (皇甫元)이 처형(妻兄) 이굉과 정(情)을 같이하여 그의 동성 삼촌(同姓三寸) 황보겸(皇甫兼)을 꺾박하여 계모 황보씨를 처(妻)로 삼게 하고 그 재물을 나 눈 죄를 논칭하였으므로, 명하여 이굉의 직첩을 거두고, 황보원을 의금부에 하옥하게 하였다. 이 황보씨에게는 이천우가 생전에 얻었던 집과 재물(財物) 을 모조리 결급(決給)하고, 이굉의 어미는 내치고 이천우의 집에서 살지 못하 게 하였다. 사헌 장령(司憲掌令) 전직(全直)이 이굉에게 죄주기를 청하기를, “직첩(職牒)만 거둬는 벌(罰)이 죄에 맞지 아니하니, 바라건대, 친히 국문하여 죄를 과함으로써 국법을 바루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너는 내 말을 분명하게 들으라. 이굉은 나에게 종질(從姪)이 된다. 그 아버 를 보아서 우대하여 왔더니, 오늘날 부상(父喪)을 당하였어도 조심하지 못함 이 이같으니, 내 어찌 이굉을 사랑하여 법에 두지 않겠는가? 다만, 그 아버가 빈소에 있는 지 만(滿) 1백 일도 못되었다. 이굉은 비록 사람이 못되었다 하 더라도 최질(衰絰) 중에 있으니, 차마 옥(獄)에 가둘 수 없어 우선 직첩만 거 두었으나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의 계모 황보씨가 남편에게서 얻은 물건을 모조리 찾아서 돌려 주고, 또 이굉의 어미는 비록 지아비에게 버림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아비가 죽으면 빈소에 있는 것이 예절이다.” 이양우(李良祐)·이천우(李天祐) 등은 첨설직(添設職) 3·4품으로 임신년에 태조</p>	<p>之, 成隱加伊以訴憲府。 憲府論請宏 不順不孝, 汨喪人倫, 汚染風俗, 行同 禽獸之罪, 又論皇甫元與妻兄宏同情, 逼其同姓三寸兼妻之繼母皇甫氏, 以分 其財之罪, 故命收宏職牒, 下元于義禁 府。 其皇甫氏於天祐生前所得家舍財 物, 竝皆決給, 黜宏母使不得居天祐之 第。 司憲掌令全直請宏之罪曰: “只收 職牒, 罰不稱罪。 乞親問科罪, 以正 邦憲。” 上曰: “爾明聽予言。 宏於予 爲從姪, 見其父而優待之。 今當父喪, 不謹若此, 予何愛宏, 不置於法? 但其 父在殯未滿百日, 宏雖不人, 衰絰之中 不忍繫獄, 先收職牒, 其罪固在。 其 繼母皇甫氏所得於夫之物, 悉推還給。 又宏母雖見棄於夫, 夫死在殯, 侍側禮 也。 良祐、天祐等以添設三四品, 於 壬申年間, 侍衛太祖, 然不獲於父元 桂, 甚爲窮乏。 厥後天祐成身, 棄其 有子糟糠之妻, 是天祐之過也。 天祐 未葬之前, 母黜宏母。” 宏未幾以疾 死, 元亦保放。 上曰: “完山府院君天 祐之葬, 在八月二十三日。 用灰隔埋 葬, 其壙外所用大石, 以待秋收輸 入。” 恐其踏損路邊禾穀也。</p>
--	--	--

	<p>(太祖)를 시위(侍衛)하였다. 그러나 아버 이원계(李元桂)에게 재산을 얻지 못하여 심히 궁핍하였다. 그 뒤에 이천우가 입신(立身)하자 아들이 있는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버리니, 이것은 이천우의 과실이였다. 이천우를 아직 장사지내기 전에 계모는 이평의 어미를 내치었고, 이평도 얼마 안되어 병으로 죽었다. 황보원도 또한 보방(保放)하였다. 임금이,</p> <p>“완산 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의 장례가 8월 23일에 있으니, 회격(灰隔)을 써서 매장하고, 그 광(壙) 밖에 소용되는 큰 돌은 추수(秋收)를 기다려서 실어들이라.”</p> <p>하니, 길가의 곡식을 밟아 손상시킬까 염려하여서였다.</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6월 12일(병신) 4번째기사 성균관에 술 100평과 노루·사슴 등을 내려 주다</p>	<p>성균관(成均館)에 술 1백 병(瓶)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임침년을 전송하는 잔치에서 화종(畫鍾)을 보고, 조말생에게 물었다.</p> <p>“그전에 성균관에 화종(畫鍾)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가? 그 종(鍾)은 술을 얼마나 받는가?”</p> <p>조말생이 대답하기를,</p> <p>“지금도 있는데, 술을 한 사발(沙鉢)쯤 받을 수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p> <p>“성균 유생(成均儒生)들이 그 종을 잘 쓰고 있는가?”</p> <p>하였다. 조말생이 대답하기를,</p> <p>“헌부(憲府)에서 청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으로 과거에 나오는 유생에게 벼를 받자[捧布]한 이래로, 술값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p> <p>하니, 이에 명하여, 술 1백 병, 장(獐)·녹(鹿)을 합하여 10구(口), 잡어(雜魚) 3백 마리[尾]를 내려 주었다.</p>	<p>賜成均館酒百瓶。上於餞添年之宴見畫鍾，問趙末生曰：“成均館古有畫鍾，今猶在乎？其鍾之受酒幾何？”末生對曰：“至今存焉，容酒一沙鉢許。”上曰：“成均儒生能用其鍾乎？”末生對曰：“自憲府請罷初赴學儒生捧布以來，無酒債，不能用矣。”乃令賜酒百瓶、獐鹿并十口、雜魚三百尾。</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6월 12</p>	<p>길창군(吉昌君) 권규(權珪)에게 약주(藥酒)·건록(乾鹿)·전포(全鮑)를 내려 주었다.</p>	<p>賜吉昌君權珪藥酒、乾鹿、全鮑。</p>

<p>일(병신) 5번째기사 길창균 권규에게 약주와 건록·전복 등을 내려주다</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6월 12일(병신) 9번째기사 전 도총제 신유정에게 쌀을 내려주다</p>	<p>전 도총제(都摠制) 신유정(辛有定)에게 쌀 10석을 내려 주었다.</p>	<p>賜前都摠制辛有定米十石。</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6월 22일(병오) 1번째기사 상왕을 광연루에서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고, 투호 놀이를 하다</p>	<p>임금이 상왕을 광연루(廣延樓)에서 봉영(奉迎)하여 술자리를 마련하고 투호(投壺)4596) 를 하니, 세자(世子)·종친(宗親)이 시연(侍宴)하였다. 임금이, “나는 상왕(上王)을 위하여 삽화(插花)하였지만, 제군(諸君)은 꽃을 꽂지 말라.” 하니, 이굉(李宏)의 죽음이 오래되지 않은 때문이었다.</p>	<p>丙午/上奉迎上王于廣延樓，置酒投壺，世子、宗親侍宴。上曰：“吾爲上王插花，諸君毋得插花。”以李宏之死未久也。</p>
<p>태종 33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6월 24일(무신) 2번째기사 상중에 병이 깊어진 하구에게 고기를 내려주다</p>	<p>하구(河久)에게 고기를 내려 주었다. 하운(河崙)의 아내 이씨(李氏)가 의원(醫員) 양홍달(楊弘達)에게 일렀다. “아들 구가 오랫동안 아버지의 상사[父喪]로 인하여 기운이 허약한데다가 병은 심하여 입이 써서 먹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오. 내가 육식(肉食)하기를 권했어도, 하구가 따르기를 달게 여기지 아니하니, 그대는 이 사정을 상전(上前)에 아뢰어 하구로 하여금 고기를 먹도록 하여 주오.” 양홍달이 와서 아뢰기를, “하구 어미의 말이 이러하여 신(臣)이 진찰하여 보았더니, 상중(喪中)에 채소만 먹은 나머지 천식[喘]이 깊이 병들어 치료하기 어려웠습니다.”</p>	<p>賜肉于河久。河崙妻李氏謂醫員楊弘達曰：“子久因父之喪，氣弱病劇，口苦不思食，予勸以食肉，久不肯從。汝其啓於上前，令久食肉。”弘達來啓曰：“久母之言如此，臣(朕) [診] 視之，齋蔬餘喘，病深難療也。”上卽命內官金龍奇，賜肉于久曰：“汝豈無過庭之訓乎？必達經權之道矣。喪不食肉，雖曰孝子，與其毀瘠而夭，豈若身</p>

	<p>하니, 임금이 즉시 내관(內官) 김용기(金龍奇)에게 명하여, 하구에게 고기를 내려 주며 말하였다.</p> <p>“네 어찌 과정(過庭)의 가르침[訓]이 없었으랴? 반드시 상경(常經)과 권도(權道)의 도리를 통달하였을 것이다. 상중에 육식(肉食)하지 않음이 비록 효자라 하더라도 훼손(毀瘠)하여 요절(夭折)하는 것과 비한다면 어찌 몸이 강강(康強)하여 제사를 받드는 것과 같겠느냐? 이것은 곧 효도의 큰 것이다.”</p>	<p>其康強，以承祭祀乎？此乃孝之大者也。”</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7월 5일 (무오) 2번째기사</p> <p>각도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선수를 바치게 하다</p>	<p>각도(各道)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선수(膳羞)를 바치게 하였다. 예조(禮曹)에 명하기를,</p> <p>“사신이 장차 이를 것이니 각도로 하여금 수록의 소산물을 연속하여 바치게 하고, 또 경기(京畿)로 하여금 사신을 공궤할 신선한 은구어(銀口魚)를 연속하여 바치게 하라.”</p> <p>하였다. 임금이 중국의 사신을 중하게 여기어 무릇 먹이는 음식물을 극진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p>	<p>令各道依前例進膳。命禮曹曰：“使臣將至，令各道連進水陸所產。”又令京畿，使臣饋餉新鮮銀口魚連續以進。上重天使，凡所羞之物，無不極慮。</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7월 5일 (무오) 3번째기사</p> <p>원주 각림사 중이 사곡을 바꾸도록 청하니 허락하다</p>	<p>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의 중이 사곡(私穀) 2백 석을 근처 제천(堤川) 창고의 쌀 1백 석과 바꾸도록 청하니, 허락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p> <p>“각림사는 내가 젊었을 때에 놀던 땅이다. 지금도 꿈 속에서 가끔 간다. 그러므로 중수하고자 하는 것이지 부처를 좋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중들은 본래 성질이 지리(支離)하고 탐하는 마음이 있으니, 간사승(幹事僧)으로 하여금 나를 빙자하여 범람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p> <p>하고, 그 뒤에 또 전지하기를,</p> <p>“연안부(延安府)의 본궁(本宮) 곡식 2백 석을 그 부(府)의 창고에 들이고, 충청도(忠淸道) 제천(堤川) 고을의 창고 쌀 1백 석과 경원창(慶源倉)의 보리 20 석을 각림사에 주라.”</p> <p>하니, 대개 낙성(落成)한 법회(法會)를 도운 것이다.</p>	<p>原州覺林寺僧請以私穀二百石，換近地堤川倉庫米百石，許之。傳旨承政院曰：“覺林寺予小時所遊之地，至今夢中頻往，故欲重修耳，非好佛而爲之也。僧人性本支離而有貪心，毋使幹事僧，憑我爲汎濫之事。”厥後又傳旨曰：“延安府之本宮穀二百石，入其府倉庫，以忠淸道堤川官倉庫米百石，與慶源倉，眞麥二十石賜覺林寺。”蓋以資落成之會也。</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p>	<p>다시 햇 벼쌀을 종묘에 천신하였다. 이 앞서 이미 찢 햅쌀을 천신하였는데, 임금이 알고 별에 말린 쌀을 다시 천신하라고 명하고, 말하였다.</p>	<p>庚申/更薦新稻米于宗廟。前此，已薦蒸新米，上知之，命更薦陽乾米曰：</p>

<p>(永樂) 15년) 7월 7일 (경신) 1번째기사 햇 볍쌀을 종묘에 천신하다</p>	<p>“이 뒤부터는 썬 햅쌀을 천신하지 말라,”</p>	<p>“自此以後，毋得薦蒸新米。”</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7월 8일 (신유) 3번째기사 일기주 부만호 사미도 영에게 쌀·콩을 주다</p>	<p>일기주 부만호(一岐州副萬戶) 사미도영(沙彌道英)에게 쌀·콩 50석을 주었다. 사미도영이 도적 가운데의 만호라고 자칭하여 우리 변경을 도둑질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지금 사람을 시켜 쌀을 주도록 고하자, 조정 신하들은 모두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저들이 비록 불공하기는 하나 만일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나더러 인색하다고 할 것이다.”</p>	<p>賜一岐州副萬戶沙彌道英米豆五十石。道英自稱賊中萬戶，盜我邊境數矣。今使人告糶，廷臣皆不欲從，上曰：“彼雖不恭，若不從其欲，則彼必謂我爲吝。”</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7월 17일(경오) 5번째기사 황엄이 사탕·금금 등을 바치다</p>	<p>황엄(黃儼)이 반인(伴人)을 보내어 사탕(沙糖) 한 그릇과 금금(衿錦) 1단(段)과 상저(象筋) 20쌍(雙)과 검철토환 흑광조대(鉗鐵吐環黑廣條帶) 1요(腰)를 바치었다. 임금이 경연청(經筵廳)에 나아가서 반인을 인견(引見)하고, 인하여 통사(通事) 선존의(宣存義)·내관(內官) 노희봉(盧希鳳)에게 명하여, 육조 조계청(六曹朝啓廳)에 나가 다례(茶禮)를 행하게 하였다. 황엄이 또 세자(世子)에게 서각대(犀角帶) 하나, 상저(象筋) 열 쌍, 수낭(繡囊) 하나를 증여하였으니, 이것은 회사(回賜)로써 주기를 구한 것이다.</p>	<p>黃儼遣伴人獻沙糖一器、衿錦一段、象筋二十雙、鉗鐵吐環黑廣條帶一腰。上御經筵廳，引見伴人，仍命通事宣存義、內官盧希鳳，出就六曹朝啓廳，行茶禮。儼又贈犀角帶一、象筋十、繡囊一于世子，是求其回奉也。</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7월 21일(갑술) 2번째기사 해수가 암화분색 다종·다병 등을 중궁에 바치다</p>	<p>해수(海壽)가 첨총제(僉摠制) 원민생(元閔生)·통사(通事) 김시우(金時遇)를 보내어 암화분색 다종(暗花粉色茶鍾) 하나, 다병(茶瓶) 하나, 유문 압청사(有紋鴨靑紗) 한 필, 유청라(柳靑羅) 한 필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 또 분색 다종(粉色茶鍾) 하나, 남라(藍羅) 한 필, 유문 녹사(有紋綠紗) 한 필을 중궁(中宮)에게 바치었다. 황엄(黃儼)이 분홍 저사(粉紅紵紗) 2필, 사탕(沙糖) 1반(盤)을 또한 중궁에게 바치고, 또 금선낭(金線囊) 하나, 수낭(繡囊) 하나, 옥정(玉頂) 하나, 접선(摺扇) 두 개를 성녕 대군(誠寧大君) 이종(李種)에게 주었다. 황엄·해수 등이 갑자기 황씨(黃氏) 집에 이르니, 황씨가 병을 앓고, 또 눈물 흔적이 있으며 분과 연지를 바르지 않았다. 황엄 등이 크게 노하여 원민생을 불러,</p>	<p>海壽遣僉摠制元閔生、通事金時遇，以暗花粉色茶鍾一、茶瓶一、有紋鴨靑紗一匹、柳靑羅一匹來獻，又以粉色茶鍾一、藍羅一匹、有紋綠紗一匹獻于中宮。黃儼以粉紅紵絲二匹、沙糖一盤亦獻于中宮，又以金線囊一、繡囊一、玉頂一、摺扇二贈于誠寧大君種。黃儼、海壽等驟至黃氏家，黃氏抱疾，且有淚痕，不施脂粉。儼等大</p>

	<p>“여러 소인들이 전하의 지성을 알지 못하고, 여사(餘事)로 생각하여 늙은 어미와 어린아이로 하여금 그 곁에 가까이 하여 병이 나게 하였고, 또 시종(侍從)하는 내관(內官)이 모두 일에 경험이 없는 자이다.”</p> <p>하고, 노하여 꾸짖었다. 임금이 듣고 내의(內醫) 양홍달(楊弘達)에게 명하여 치료하고, 또 경험이 있는 내관(內官) 노희봉(盧希鳳)을 보내어 사신의 노여움을 풀었다.</p>	<p>怒，呼閔生曰：“群小不知殿下至誠，視若餘事，使老母與小兒得近其側，以生勞疾。且侍從內官，皆不更事者也。”怒叱之。上聞之，命內醫楊弘達醫治之，且遣更事內官盧希鳳，以解使臣之怒。</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8월 3일 (병술) 4번째기사 예조 좌랑 김효정이 황엄의 후운의 일을 아뢰다</p>	<p>예조 좌랑(禮曹佐郎) 김효정(金孝貞)이 아뢰기를, “신이 후운(後運)의 각색 종이를 가지고 사신관(使臣館)에 이르러 먼저 황엄(黃儼)에게 고하니, 황엄이 말하기를, ‘종이 수가 너무 많으니, 그대가 전후를 통해 계산하여 총수(總數)를 1만장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그대가 도로 싸가고 해수(海壽)에게는 알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해수(海壽)가 종이 수를 묻고 단자(單子)를 재촉하는데, 황엄이 마침 목욕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살그머니 황엄에게 고하니, 황엄이 말하기를, ‘단자(單子)에는 1만 장이라고만 쓰는 것이 가하다.’ 하므로, 황엄의 말과 같이 1만 장이라고만 썼습니다. 황엄이 몰래 사람을 시켜 신에게 말하기를, ‘2백 장은 영접 도감(迎接都監)에 숨겨 두라.’ 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의 지성(至誠)이 이러하나, 그러나, 이 종이를 다 바치면 뒤에 오는 자가 반드시 이 숫자를 모방할까 두렵기 때문에 남은 종이는 지금 돌려보낸다.’ 하였습니다. 납입하는 종이 수를 단자(單子)에 기록한 수보다 조금 더하였는데, 황엄이 해수에게 이르기를, ‘숫자를 더한 까닭은 반드시 우리들이 정하게 선택하리라 하여 그런 것이다.’ 하고, 남은 종이는 다 돌려보냈습니다.”</p> <p>하였다. 두터운 종이 각 40장을 두 사신에게 주니, 사신들이 심히 기뻐하였다. 황엄(黃儼) 등이 사사로 저자[市]를 두어 시리(市利)를 그물질하고, 또 오늘에 아무 물건을 요구하고, 명일에 또 아무 물건을 요구하며, 반인(伴人)까</p>	<p>禮曹佐郎金孝貞啓曰：“臣將後運各色紙，到使臣館，先告黃儼，儼曰：‘紙數過多。爾通計前後總數一萬張，其餘爾還齋去，勿使海壽知。’海壽問紙數而促其單子，儼適入浴，故潛告儼，儼曰：‘單子只書一萬張可也。’故如儼言，只錄一萬張。儼潛使人語臣曰：‘殿下至誠如此，然盡納此紙，則恐後來者必倣此數，故餘紙今還。’云。所入紙數，稍加單子之數，儼謂海壽曰：‘所以加數者，必以某等精擇也。’餘紙悉還。贈厚紙各四十張于兩使臣，使臣等喜甚。”</p> <p>儼等私自置市而罔市利，且今日求某物，明日又求某物，至於伴人亦如此。若貂皮、麻布、席子、紙地、人蔘，至於醢醢，無所不求，有司不堪，上曲從</p>

	<p>지도 또한 그러하여 초피(貂皮)·마포(麻布)·석자(席子)·지지(紙地)·인삼(人蔘), 심지어는 초(醪)·젓[醢]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유사(有司)가 견딜 수 없었으나 임금이 관곡(款曲)하게 이를 따랐다. 운반하는 인부가 1천여 명에 이르렀다. 영접 도감 판관(迎接都監判官) 고약해(高若海)가 사람들이 사사로이 통하여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니, 사신이 크게 노하여 고약해에게 장(杖)을 때렸다.</p>	<p>之，轉輸之丁，至於千餘名。 迎接都監判官高若海禁人私通和賣， 使臣大怒，杖若海。</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8월 6일 (기축) 4번째기사 도총제 유습에게 선 사신의 행차에 가게 하다</p>	<p>도총제(都摠制) 유습(柳濕)에게 명하여 선운(宣醞)을 가지고 선 사신(善使臣)의 행차에 가게 하였다. 선 천사(善天使)가 초현역(招賢驛)에 이르러 황(黃)·한(韓) 양씨(兩氏)를 보고 돌아가니, 그 가는 것이 심히 빨랐다. 저포(苧布)·마포(麻布)를 각각 10필씩 주고, 반인(伴人) 두 사람에게 각각 2필씩 주었다.</p>	<p>命都摠制柳濕，齎宣醞往善使臣行次。善天使至招賢驛， 見黃、韓兩氏而還，其行也甚速。 贈苧麻布各十匹，伴人二各二匹。</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8월 16일(기해) 1번째기사 일을 아뢰는 여러 경에게 음식을 주다</p>	<p>일을 아뢰는 여러 경(卿)에게 음식을 먹이었다. 여러 경들이 모두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하례하기를, “주상께서 지성으로 대국(大國)을 섬기어 국가에 일이 없으니 신민(臣民)의 복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부덕(否德)한 몸으로서 정성을 다하여 중국을 섬기었는데, 지나간 일은 이러하였지마는 오는 일이 알기가 어렵도다. 정성이 조금만 부족하면 혼단(黷端)이 반드시 생길 것이니 두렵지 않겠는가?”</p>	<p>己亥/饋啓事諸卿。 諸卿皆起進前賀曰：“上至誠事大， 國家無事， 臣民之福也。” 上曰：“予以否德， 極殫惻愍以事上國。 往事如此， 來者難知， 誠若小虧， 釁必生矣， 可不畏哉?”</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9월 9일 (신유) 1번째기사 원숙을 보내어 성균관</p>	<p>우부대언(右副代言) 원숙(元肅)을 보내어 성균관(成均館)에 궁온(宮醞)을 주었다. 두 의정(議政) 이하 여러 관각 제학(館閣提學)이 성균관에 합좌(合坐)하여 생도(生徒)에게 율시(律詩)로 시험하기 때문이었다. 술이 1백 병인데, 어육(魚肉)을 갖추었다.</p>	<p>辛酉/遣右副代言元肅， 賜醞于成均館。 兩議政以下諸館閣提學， 合坐成均館， 試生徒以律詩也。 酒百瓶、魚肉具焉。</p>

에 공운을 주다	<p>함길도 도순문사(咸吉道都巡問使) 유사눌(柳思訥)이 상서하였다.</p> <p>“경원(慶源) 한 고을은 능침(陵寢)이 있는 곳이니, 수어(守禦)를 하는 자는 마땅히 죽기를 다하고 도망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난 경인년에 무마하고 어거하는 것이 도를 잃었으므로 야인(野人)의 노여움을 사서 비린내나는 풍속이 한번 지경 안에 들어오니, 드디어 능침이 편안치 못하고 변방이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여기에 미치매 참으로 개연(慨然)합니다. 다행히 이제 하늘이 전하의 마음을 달래어 다시 이 고을을 건설하게 되었으니, 그 편의 조건과 시설의 방법을 뒤에 조목으로 열거합니다.</p> <p>1. 경원(慶源)의 인물이 각 고을에 흩어져 있으니, 군적(軍籍)에 있고 없는 것을 물론하고 일체 모두 추쇄(推刷)하여 강제로 옮겨 두고,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3년에 한하여 부역(赴役)을 면제할 것.</p> <p>1. 경원은 토지가 비옥하니, 빌건대, 육전(六典)의 처음 기경(起耕)한 것을 수조(收租)하는 법에 의하여, 첫해에는 전부 면제하고, 다음 해에는 반을 감하고, 3년 되는 해에는 3분의 1을 감하고, 4년 되는 해에는 4분의 1을 감하고, 5년 되는 해에 이르러서는 전액을 거둘 것.</p> <p>1. 공수전(公須田)·아록전(衙祿田)과 저 사람들을 접대하는 수요(需要)가 또한 없을 수 없으니, 경성(鏡城)의 전지 5천여 결(結) 내에서 1천 결의 소출은 경원으로 거두어 들이되, 반은 쌀로 거두어 공억(供億)의 밑천으로 삼고, 반은 피곡(皮穀)으로 수납하여 명년 종자(種子)의 준비를 마련할 것.</p> <p>1. 제도(諸道)·제주(諸州)의 공처 노비(公處奴婢)의 북청(北靑)·단천(端川)·길주(吉州)·경성(鏡城) 등의 지방에 도피하여 사는 자와 정업원(淨業院) 노비로서 이 도에 사는 자 1백 95호를 추쇄하여 경원에 붙이고, 또 길주(吉州) 노비 48구(口)를 경원에 붙일 것.</p> <p>1.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소금과 장(醬)이 가장 중하니, 원컨대, 말장(末</p>	<p>咸吉道都巡問使柳思訥上書。書曰：慶源一邑，陵寢所在，爲守禦者，固當效死勿去。歲在庚寅，撫馭失道，適犯其怒，腥膻之俗，一入其境，遂使陵寢未安，邊鄙空虛，興言及此，誠可慨念。幸今天誘宸衷，復建茲邑，其便宜條件設施之方，條列于後。一，慶源人物，散處各官，勿論軍籍現否，一皆推刷，勒令移置，其有自願者，限三年復役。一，慶源土地沃饒，乞依六典初墾收租之法，初年全除，次年減半，三年三分之一，四年四分之一，至五年全收。一，公須衙祿及彼人支對之需，亦不可無。以鏡城之田五千餘結內，一千結所出，收納慶源，一半以米收齊，以爲供億之資；一半皮穀收納，以爲明年種子之備。一，諸道諸州公處奴婢，避居北靑、端川、吉州、鏡城等地面者與淨業院奴婢居此道者，一百九十五戶推刷，屬于慶源，又以吉州奴婢四十八口，屬于慶源。一，彼人所須，鹽醬最重。願將末醬豆一百石及附近諸州鹽稅，皆入慶源，每年合醬以給，以啗其利。</p>
----------	--	---

	<p>醬) 콩 1백 석과 부근 여러 고을의 염세(鹽稅)를 모두 경원에 들어매 매년 장을 담가 주어 그 이익을 누리게 할 것.”</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從之。</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9월 29 일(신사) 1번째기사 미원에서 물이를 하고 종묘에 짐승을 바치다</p>	<p>미원(迷原)의 동쪽과 서쪽 산에서 물이하였는데, 세자가 달리면서 노루를 쏘다가 말에서 떨어졌다. 임금이 불러서 묻고, 인하여 미원평(迷原坪)에서 잤다. 사람을 보내어 종묘(宗廟)에 짐승을 바치었다.</p>	<p>辛巳/驅迷原東西山。世子馳射獐墮馬，上召問之，仍宿於迷原坪。遣人薦禽於宗廟。</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10월 6 일(무자) 1번째기사 의정부·육조가 편전에 서 헌수하다</p>	<p>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가 편전(便殿)에서 헌수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한상경(韓尙敬) 등이 아뢰기를, “강무(講武)한 뒤에 여러 신하가 모두 헌수하고자 하였으나 윤험을 얻지 못하였으니, 신 등이 실망합니다.” 하니, 임금이, “내가 종묘에 짐승을 바치기 위하여 강무를 행하고 수일 만에 돌아왔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는가?” 하였다. 한상경 등이 다시 청하기를, “지금 풍년이 들고 사방에 근심이 없으니, 이때를 당하여 신자가 한 번 헌수하는 것이 무엇이 도리에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또 말하였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그 예에 의하지 말라.” 예조 참판(禮曹參判) 허조(許稠)가 술이 취하여 두 번 술을 올리어 주상의 덕을 칭송 찬미하고자 하고, 또 은덕을 후하게 입었다는 말을 하였는데, 어좌(御座)에 너무 가까이 가니, 도리어 무례한 형상이 있었다. 여러 재상이 모두 꾸짖어 금하여도 허조가 오히려 물러가지 않았다. 임금이 우대하여 말을 하고</p>	<p>戊子/議政府、六曹獻壽于便殿。右議政韓尙敬等啓曰：“講武之後，群臣皆欲獻壽，未蒙允許，臣等缺望。”上曰：“予爲宗廟獻禽，乃行講武數日而還，何以宴爲？”尙敬等更請曰：“方今年穀豐稔，四方無虞。當此時，臣子一獻壽，何害於理？”上許之，且曰：“自今以後，毋依此例。”禮曹參判許稠酒酣，欲再進酒，稱美上德，又有厚蒙恩德之辭，逼近御座，反有無禮之狀。諸宰相皆呵禁，稠猶不退，上優待賜言，謂大司憲朴習曰：“毋敢彈劾。”仍命習起舞，於是諸臣皆醉舞，極歡而罷。初，左政丞朴嘗與沈溫言：“忠寧大君之賢，中外歸心，宜白之，使自知所以處之。”溫聞而不白。是</p>

	<p>대사헌(大司憲) 박습(朴習)에게 이르기를, “감히 탄핵하지 말라.” 하고, 인하여 박습에게 일어나 춤추라고 명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가 모두 취하여 춤추고 극진히 즐기다가 과하였다. 처음에 좌정승(左政丞) 박은(朴堧)이 심온(沈溫)과 더불어 말하기를, “충녕 대군(忠寧大君)이 어질어서 중외(中外)에서 마음이 쏠리니, 마땅히 여쭙어서 처신할 바를 스스로 알게 하시오.” 하였으나, 심온이 듣고 여쭙지 않았다. 이날 임금이 편히 기거하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나와서 영(楹) 밖에 흠어져 앉았다. 박은이 대군과 더불어 말하고자 하니, 심온이 대군에게 눈짓하여 일어나 피하게 하였다.</p>	<p>日上起便，諸臣皆出，散坐楹外。堧欲與大君言，溫目大君，使起避之。</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10월 16일(무술) 3번째기사 고양현에 사는 노인과 며느리에게 옷과 양식을 주다</p>	<p>명하여 고양현(高陽縣) 가까이 사는 노인 김연(金連)과 그 며느리인 사비(私婢) 내은장(內隱庄)에게 옷과 양식을 주었으니, 예조(禮曹)의 아뢴 것에 따른 것이었다. 김연의 나이 1백 4세인데, 내은장이 마음을 다하여 시아비를 봉양하였기 때문에 아울러 준 것이다.</p>	<p>命給高陽縣接老人金連與其婦私婢內隱庄衣糧，從禮曹之啓也。連年百有四歲，內隱庄盡心養舅，故并給之。</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10월 16일(무술) 7번째기사 병조에서 경원 절제사의 합행 사의를 올리다</p>	<p>병조(兵曹)에서 경원 절제사(慶源節制使) 조비형(曹備衡)의 합행 사의(合行事宜)를 올리었다. “북청(北靑) 이북의 별패(別牌) 51명은 경원의 인물이 부상(阜盛)하여질 동안에는 번상(番上)을 하지 말고 경원 방어(防禦)에 다담게 허락하고, 화통(火筒)·화약(火藥)을 알맞게 제급(題給) 하고, 군기감(軍器監)의 유능한 방사인(放射人) 1명을 보내어 도내(道內)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여 익히게 하며, 또 차비인(差備人) 20명의 양료(糧料)를 주고, 또 올적합(兀狄哈)·오도리(吾都里)·올량합(兀良哈)에게 지급(支給)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쌀·베·소금·간장을 적당히</p>	<p>兵曹上慶源節制使曹備衡合行事宜。啓曰：“北靑以北別牌五十一，慶源人物阜盛之間，勿令番上，許赴慶源防禦。火筒火藥，量宜題給，遣軍器監有能放射人一名，令道內人傳習，且給差備人二十名糧料。又兀狄哈、吾都里、兀良哈支給實難，米布、鹽醬量宜連續題給。”從之。</p>

	잇달아서 제공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10월 18 일(경자) 1번째기사 상왕이 임금을 맞아 술자리를 베푼다	상왕이 임금을 맞아 인덕궁(仁德宮)에서 술자리를 베푼었는데, 세자와 종친이 시연(侍宴)하였다. 수가(隨駕)한 대소 신료(大小臣僚)에게 술을 주고, 날이 저물도록 극진히 즐기다가 파하였다.	庚子/上王邀上，置酒仁德宮，世子宗親侍宴。賜酒隨駕大小臣僚，日暮極歡而罷。
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10월 19 일(신축) 1번째기사 전 좌군 도총제 하구 의 졸기	전 좌군 도총제(左軍都總制) 하구(河久)가 졸(卒)하였다. 하구는 하운(河崙)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자질(資秩)로 인하여 일찍 귀해져 나이 23세에 대언(代言)이 되었다. 위인이 광혹(狂惑)하여 아버지의 상중에 있으면서 술마시는 것이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상을 마치지 못하고 병들어 졸(卒)하니, 나이 38세였다.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시호를 안평(安平)이라 하였다. 아들이 하나인데, 하복생(河福生)이었다.	辛丑/前左軍都總制河久卒。久，崙之子也。席父資早貴，年二十三拜代言。爲人狂惑，居父喪飲酒，無異平昔，喪未畢病卒，年三十八。輟朝三日，諡安平。一子福生。
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10월 26 일(무신) 1번째기사 침장고를 혁파하다	침장고(沈藏庫)를 혁파하였다. 호조(戶曹)에 명하였다. “여러 곳의 제향(祭享)과 각전(各殿)에 공상(供上)하는 채소를 침장고에서 진공(進供)하기가 쉽지 않으니, 오는 무술년(戊戌年)부터 시작하여 계성전(啓聖殿)·문소전(文昭殿)·혼전(魂殿)의 공상(供上)은 전사시(典祀寺)에서, 인덕궁(仁德宮)은 공안부(恭安府)에서, 대전(大殿)은 내자시(內資寺)에서, 정비전(靜妃殿)은 내섬시(內贍寺)에서, 성비전(誠妃殿)·세자전(世子殿)은 경승부(敬承府)에서 식례에 의하여 진공(進供)하고, 침장고에 속한 노비(奴婢)와 거우(車牛)와 채전(菜田)은 그 용도의 번잡하고 간단한 것을 헤아려서 나누어 붙이라.” 이보다 먼저 침장고에서 제향과 각전(各殿)에 공상하는 채소가 매년 넉넉지 못하여 쌀과 콩으로 바꾸고 혹은 외방에 행문 이첩(行文移牒)하여 거두어서 심히 설립한 뜻에 어긋났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파하였다.	戊申/罷沈藏庫。命戶曹曰：“諸處祭享及各殿供上菜蔬，沈藏庫未易進供。來戊戌年始，啓聖殿、文昭殿、魂殿供上則典祀寺，仁德宮則恭安府，大殿則內資寺，靜妃殿則內贍寺，誠妃殿、世子殿則敬承府，依式進供。其屬沈藏庫奴、婢車牛及菜田，量其用度煩簡分屬。”先是，沈藏庫於祭享及各殿供上菜蔬，每年不贍，以米豆易換，或行移外方收斂，甚違設立之意，至是罷之。
태종 34권, 17년	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어 광연루(廣延樓)에서 술자리를 베푼었는데, 여러	庚戌/上奉上王于廣延樓置酒，諸宗親

<p>(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10월 28일(경술) 1번째기사 임금이 상왕을 받들어 술자리를 베풀다</p>	<p>중친이 시연(侍宴)하였다. 대소 신료에게 술을 주고 밤이 되어 극진히 즐기다가 파하였다.</p>	<p>侍宴。 賜酒大小臣僚， 入夜極歡而罷。</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11월 20일(신미) 2번째기사 일본 능주 태수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다</p>	<p>일본(日本) 능주 태수(能州太守) 원창청(源昌淸)의 사인(使人)이 예물을 바치고 호표피(虎豹皮)와 인삼(人蔘)을 청구하였다.</p>	<p>日本能州太守源昌淸使人獻禮物， 求虎豹皮、人蔘。</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 (永樂) 15년) 12월 6일(정해) 1번째기사 세자와 왕자·부마가 광연루에서 헌수하다</p>	<p>세자와 왕자·부마(駙馬)가 광연루 아래에서 헌수(獻壽)하였다. 세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충녕 대군(忠寧大君)·성녕 대군(誠寧大君)·경녕군(敬寧君) 이비(李裊)·공녕군(恭寧君) 인(裊)·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가 헌수하고, 여러 종친과 권영균(權永均)이 시연(侍宴)하였다. 병조 판서 김한로(金漢老)·이조 판서 심온(沈溫)·호조 판서 정역(鄭易)·동지총제(同知摠制) 성억(成抑)·대호군(大護君) 최사강(崔士康)·강주(姜壽)는 밖에 사연(賜宴)하였다. 임금이, “지금 이 김한로 등 6인은 왕실과 연혼(連婚)한 사람들이니, 이후부터는 종친의 내연(內宴)에 모두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하고, 이에 김한로 등을 명하여 차례에 따라 잔을 바치게 하였다. 정비(靜妃)가 편전(便殿)에 나아가니, 세자 이하가 헌수하고, 숙빈(淑嬪)·여러 대부인(大夫人)·궁주(宮主)·옹주(翁主)가 시연하였다.</p>	<p>丁亥/世子及王子、駙馬獻壽于廣延樓下。 世子及孝寧大君、忠寧大君、誠寧大君、敬寧君裊、恭寧君裊、淸平君李伯剛、平壤君趙大臨、宜山君南暉獻壽， 諸宗親與權永均侍宴。 賜宴兵曹判書金漢老、吏曹判書沈溫、戶曹判書鄭易、同知摠制成抑、大護軍崔士康·姜壽于外。 上曰：“今此漢老等六人， 干連王室者也。 自後宗親內宴， 皆來赴宴。” 乃命漢老等隨次獻爵。 靜妃御便殿， 世子以下獻壽， 淑嬪、諸大夫人、宮主、翁主侍宴。</p>
<p>태종 34권, 17년 (1417 정유 / 명 영락</p>	<p>예조(禮曹)에서 친향(親享)하는 예절의 절차를 올리었다. 처음에 변계량(卞季良)이 아뢰어 청하기를,</p>	<p>禮曹上親享禮度節次。 初， 卞季良啓：“請宗廟親祭之日， 每室獻爵， 行再拜</p>

(永樂) 15년) 12월 14
일(을미) 2번째기사
예조에서 친향하는 예
절의 절차를 올리다

“종묘(宗廟)에 친히 제사하는 날에 실(室)마다 잔을 올리고 재배(再拜)를 행한 뒤에 소차(小次)에 들어가서 앉아 쉬다가 음복(飲福)할 때에 이르러 위차(位次)에 나와 음복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실(室)마다 재배를 행하는 것은 가하지마는, 소차에 들어가서 앉아 쉬는 것은 미편하다. 내 몸으로서 본다면 세자가 내게 잔을 올리고 소차에 들어가고, 그 아우가 차례로 잔을 올릴 때에 세자는 아랑곳없이 물러간다면 나와 세자의 뜻이 어떠하겠는가? 고문(古文)에 상고하여 아뢰어라.”

변계량이,

“송(宋)나라 고종(高宗) 때에 이 예가 있었습니다. 고종이 친히 종묘에 제사할 때에 조계(阼階) 동쪽에 소차(小次)를 설치하고, 헌작이 끝나면 소차에 들어서 아헌(亞獻)·종헌(終獻)을 기다리고, 또 실마다 관창(灌鬯)과 작헌(酌獻)을 한 뒤에 지계문[戶]밖에 나와 재배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제의(祭儀)는 이미 정한 제도가 있는데, 대신이 집례(執禮)하면 각각 소견대로 다시 법제를 세우니, 어느 때에 정하여지겠는가? 고종이 참으로 현명한 임금이지마는 위(位)에 있는 것이 30여 년인데, 이 법은 고종이 늙었을 때에 만든 것이 아닌가? 하물며 소차에 들어가는 것이 조종(祖宗)의 명령이 아니니, 어찌 이 제도에 국한할 수 있겠는가?”

변계량이 대답하기를,

“임금이 오래 당하(堂下)에 서 있으면,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이 마음에 반드시 미안하여 헌작하는 예를 빨리 행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성과 공경이 온전하지 못할까 두렵고, 또 조종의 신령도 반드시 전하가 오래 서 있는 데에 편안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이 법을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택하지 않고 말하였다.

後，入小次坐歇，至飲福時，就位飲福。” 上曰：“每室行再拜，則可矣，入小次坐歇，則未便。以予身觀之，世子獻爵於予，入小次，其(第) [弟] 以次獻盞之時，世子愀然退去，則予及世子之意如何？稽考古文以聞。” 季良曰：“宋高宗時有此禮。高宗於親祀宗廟時，設小次於阼階東，獻爵訖，入小次，以待亞終之獻。且每室灌鬯及酌獻後，出戶外再拜。” 上曰：“祭儀已有定制，大臣執權，則各以所見，更立法制，當何時定乎？高宗誠賢君也，然在位三十餘年，此法無乃在老耄之時乎？而況入小次，非祖宗之命，何以局於此制？” 季良對曰：“上久立堂下，亞終獻官心必未安，思欲速行獻禮，故恐未全誠敬。且祖宗之靈，亦必不寧於殿下之久立矣，請行此法。” 上不允曰：“不可輕改，姑舍之。”

	“경솔히 고칠 수 없으니, 아직 그대로 두라.”	
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월 5일 (병진) 1번째기사 사신에게 저포·마포 등의 물건을 주다	사신에게 저포(苧布)·마포(麻布) 등의 물건을 주었는데, 저포·마포가 각각 20필이었고, 인삼(人蔘)이 30근이었고, 만화석(滿花席)이 6장이었고, 만화침석(滿花寢席)이 6장이었고, 후지(厚紙)가 2백 장이었고, 전통(箭筒)이 2개이었고, 녹비화(鹿皮靴)·정투구(精套具)·초피 호슬(貂皮護膝)이 각각 1개이었고, 석등잔(石燈盞)이 1벌이었다. 천호(千戶) 유용(劉庸)·황귀(黃貴) 등 6인과 역사(力士) 조종(趙鍾) 등 8인과 가인(家人) 삼복(三福) 등 4인에게 저포가 각각 1필이었고, 마포가 각각 2필이었고, 분투(分套)가 각각 1개이었다. 또 12승(升) 마포 4필과 속옷[裏衣]을 초피(貂皮)로 만든 사각(斜脚)을 황귀에게 부쳐서 황엄(黃儼)에게 선물로 보냈으니, 황귀는 황엄의 조카였다. 12승(升) 저포와 마포 2필을 유용(劉庸)과 황귀(黃貴)에게 더 내려 주었다. 중궁(中宮)이 내관(內官) 김문후(金文厚)를 시켜 사신(使臣)에게 12승(升) 저포·마포 각각 2필과 11승(升) 저포·마포 각각 3필을 주었다.	丙辰/贈使臣苧麻布等物，苧麻布各二十四、人蔘三十斤、滿花席六張、滿花寢席六張、厚紙二百張、箭筒二、鹿皮靴、精套具、貂皮護膝一、石燈盞一事。千戶劉庸·黃貴等六人、力士趙鍾等八人、家人三福等四人，苧布各一匹、麻布各二匹、分套各一。又將十二升麻布四匹及裏衣所造貂皮斜脚，付于黃貴，贈遺于黃儼。貴，儼之姪也。加賜十二升苧麻布二匹于劉庸、黃貴。中宮使內官金文厚贈使臣十二升苧麻布各二匹、十一升苧麻布各三匹。
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월 11 일(임술) 2번째기사 임금이 세자를 거느리 고 술자리를 마련하다	임금이 세자(世子)를 거느리고 인덕궁(仁德宮)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지극히 즐거워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과하였다.	上率世子詣仁德宮，置酒極歡，抵暮乃罷。
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월 13 일(갑자) 3번째기사 황해도 참로 찰방 이	황해도 참로 찰방(黃海道站路察訪) 이명보(李明保)가 기민(飢民)을 진제(賑濟)하도록 청하였는데, 보고는 이러하였다. “도에서 관장하는 각참(各站)의 인민(人民)이 본국(本國)의 사신과 중국의 사신의 왕래로 말미암아 매년 실농(失農)하였는데, 또 전년의 수재(水災)로 인하여 화곡(禾穀)이 여물지 않아 이로 말미암아 공사(公私)에 목은 빚이 많고 무	黃海道站路察訪李明保請賑飢。報曰：“道掌各站人民，因本國使臣及上國使臣往來，每年失農，且因前年水災，禾穀不實。因此，公私宿積[債]多重，其生理可惜。其中敬天站夫，因

<p>명보가 기민을 진제하도록 청하다</p>	<p>거우니, 그 생활이 가엾습니다. 그 중에 경천참(敬天站)은 충손(蟲損)의 재앙으로 인하여 실농(失農)이 더욱 심하니, 청컨대, 진제(賑濟)의 예에 의하여 동선참(洞仙站) 이상 8참(八站)에 갈무리한 황두(黃豆) 각각 3석씩과 경천참에 갈무리한 충손(蟲損)한 황두(黃豆) 4석씩을 내어서 장(醬)을 담가서 기민(飢民)을 진제하게 하소서.” 임금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하라고 명하였다.</p>	<p>蟲損之災，失農尤甚。請依賑濟例，出洞仙以上八站所藏，黃豆各三石及敬天站所藏，蟲損黃豆四石，造醬以賑飢民。”命如其所報。</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월 13일(갑자) 5번째기사 금주령을 내리다</p>	<p>금주령(禁酒令)을 내렸다. 임금이, “무지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즐거움을 탐하여 장래의 계책을 염려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노병(老病)에 약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公私)의 연음(宴飲)을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라.” 하니, 동부대언(同副代言) 성엄(成揜)이 대답하기를, “지난해 겨울에 신이 집의(執義)가 되었을 때 이미 금주(禁酒)한다고 이문(移文)하였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 이미 해가 바뀌어졌으니, 또한 금하는 것도 마땅하다.”</p>	<p>下禁酒令。上曰：“無知之人，飲酒耽樂，不慮將來之計。自今以後，除老病用藥外，公私宴飲，一皆禁斷。”同副代言成揜對曰：“去年冬，臣爲執義時，已移禁酒之文。”上曰：“今已改歲，亦當禁也。”</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2월 6일(정해) 2번째기사 개성 유후사로 이어할 것을 의논하다</p>	<p>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로 이어(移御)할 것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점치는 자가 말하기를, ‘무년(戊年)에 액(厄)이 있다.’고 하더니, 과연 금년도 또한 무년(戊年)이다. 지금의 흉변(凶變)은 이 궁전의 연고가 아니나, 그러나 내가 이 궁전에 거주하니 마음이 실로 평안하지 못하다. 나는 유후사(留後司)로 피방(避方)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대언(代言) 등과 정부·육조에서 모두 가(可)하다고 하여, 드디어 도총제(都摠制) 박자청(朴子靑)을 보내어 경덕궁(敬德宮)을 수증(修葺)하게 하였다. 임금이 슬픔이 심하여 종(種)의 놀던 곳을 차마 보지 못하여 드디어 이어(移御)하고자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옮겨 거둥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애통하고 울울히 맺힌 정(情)을 씻으</p>	<p>議移御開城留後司。上曰：“昔卜者曰：‘戊年有厄。’果是，今年亦戊年也。今之凶變，非此宮之故也，然予住此宮，心實不平，予欲避方于留後司何如?” 代言等及政府、六曹皆以爲可，遂遣都摠制朴子靑，修葺敬德宮。上哀甚，不忍見種所遊之處，遂欲移御，傳旨承政院曰：“予欲移幸，以寫我哀慟鬱結之情，宜令書雲觀擇日以聞。”於是，李陽達等擇吉以進，乃本月初十</p>

	<p>러는 것이다. 마땅히 서운관(書雲觀)으로 하여금 날짜를 골라서 아뢰도록 하라.”</p> <p>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양달(李陽達) 등이 길일(吉日)을 골라서 바치니, 바로 이달 초10일 신묘(辛卯)였다. 유후사(留後司)에 명하여 배종(陪從) 시위(侍衛)는 대간(臺諫)·형조(刑曹)에서 각각 1원(員)씩으로 하고,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내금위(內禁衛)·내시위(內侍衛)·삼군(三軍) 갑사(甲士)로 하고, 각사(各司)에서는 분사(分司) 하게 하였다. 세자(世子)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p> <p>“주상이 애통하여 철선(輟膳) 한 지 여러 날이니, 형세가 병이 나실 것 같은데, 장차 어찌 할 것인가?”</p> <p>하고, 말을 마치자 눈물을 흘리니, 여러 신하들도 슬퍼하여 탄식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다.</p>	<p>日辛卯也。命留後司，陪奉侍衛，臺諫、刑曹各一員、上大護軍、護軍、內禁衛、內侍衛、三軍甲士，各司則分司。世子出語人曰：“上哀痛，輟膳累日，勢若成疾，將若之何？”言訖涕下，群臣莫不悲歎。</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2월 7일 (무자) 2번째기사 창녕 부원군 성석린 등이 수라를 들도록 청하다</p>	<p>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麟) 등이 수라[膳]를 들도록 청하니, 임금(上)이 성녕 대군(誠寧大君)의 병이 위독하여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철선(輟膳)하였던 까닭이다. 성석린과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정탁(鄭擢)·평양 부원군(平陽府院君) 김승주(金承霏)·봉녕 부원군(奉寧府院君) 이복근(李福根)·영의정 유정현(柳廷顯)·좌의정 박은(朴崧)·우의정 한상경(韓尙敬), 육조(六曹)의 판서(判書)·참판(參判), 삼군(三軍) 총제(摠制) 등이 예궐(詣闕)하여 아뢰기를,</p> <p>“전하께서 대군(大君)이 병에 감염된 후부터 여러 날 수고하고 심려하였으며, 이제 또 슬퍼하여 수척하고 여러 날 동안 철선(輟膳)하는데, 더구나, 중궁(中宮)의 상심하고 탄식하는 마음이야 어찌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장수(長壽)하고 요사(夭死)함은 하늘의 정한 데 달렸으니, 청컨대, 대의(大義)로써 슬픔을 절제하여 조금이라도 수라를 드소서.”</p> <p>하니, 하교(下教)하기를,</p> <p>“나는 대군(大君)이 병을 얻은 뒤로부터 여러 날 옷을 벗고 자지 않았었다.</p>	<p>昌寧府院君(成石麟) [成石麟] 等請進膳。上自誠寧疾革，以至於今輟膳。石麟及淸城府院君鄭擢、平陽府院君金承霏、奉寧府院君福根、領議政柳廷顯、左議政朴崧、右議政韓尙敬、六曹判書·參判、三軍摠制等詣闕啓曰：“殿下自大君感疾之後，累日勞慮，今又哀毀，曠日輟膳，況在中宮傷歎之心，豈可勝言？然人之壽夭，在於天定，請以大義節哀，小可進膳。”敎曰：“予自大君得疾之後，累日不脫衣而寢，況今幽明永隔，雖欲進膳，面目在眼，森然不忘。卿等懇勸來勸，今</p>

	<p>더구나 지금 유명(幽明)이 길이 막혔으니, 비록 수라를 들고자 하더라도 얼굴 모습이 눈에 선하여 잊지 못하나, 경 등이 은근하게 와서 권하니, 지금 수라를 들려고 한다.”</p> <p>하였다. 또 성석린에게 따로 유시(諭示)하기를, “내가 경(卿)을 만난 지가 지금까지 18년이니, 내가 비록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이 어찌 모르겠는가?”</p> <p>하니, 성석린이 부복(俯伏)하여 임금의 수라를 드는지의 여부를 물었다.</p>	<p>欲進膳耳。” 又別諭石璘曰：“予之遇卿，十八年于茲矣。予雖不言，卿豈不知哉？” 石璘俯伏問上進膳與否。</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2월 9일 (경인) 2번째기사 성석린 등이 육선을 들도록 청하다</p>	<p>성석린(成石璘) 등이 다시 육선(肉膳) 을 들고 들도록 청하였다. 성석린과 유정현(柳廷顯)·박은(朴崧)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성녕 대군(誠寧大君)이 병든 이후로부터 여러 날 철선(輟膳)하여 원기가 정상을 잃었기 때문에 편찮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비록 맑은 죽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어찌 원기를 돕겠습니까? 비록 친상(親喪)이라 하더라도 병이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은 옛 제도입니다. 평상시에도 날을 끼리어 육선(肉膳)을 먹지 아니하면, 원기에 굶주림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 날 철선(輟膳)한 경우이겠습니까? 원컨대, 육선(肉膳)을 드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 등이 말하는 바는 심히 이치에 합한다. 지금까지 아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 나의 단점이다. 어찌 육선(肉膳)을 먹을 날이 없겠느냐?”</p>	<p>成石璘等復請進肉膳。 石璘與柳廷顯、朴崧啓曰：“上自誠寧得疾之後，累日輟膳，元氣失常，故至於未寧。今雖進淡粥，何補元氣？雖親喪，病則飲酒食肉，古之制也。平常忌日不食肉，氣有所餒，況累日輟膳乎？願進肉膳。” 上曰：“卿等所言，甚合於理，迨今未得寬心者，予之所短也。豈無食肉之日乎？”</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2월 19일 (경자) 1번째기사 의정부·육조에서 육선을 들도록 청하다</p>	<p>의정부·육조(六曹)에서 육선(肉膳)을 들도록 청하였다. 아뢰기를,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제(禮制)는 미치지 아니할 수도 없고 또한 지나칠 수도 없으며, 또 왕(王)이 너무 의지하거나 꺼릴 수도 없습니다. 철선(輟膳)하신 지 이미 오래니, 청컨대, 육선(肉膳)을 들도록 하소서.”</p> <p>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p>	<p>庚子/議政府、六曹請進肉膳。 啓曰：“先(生) [王] 制禮，不可不及，亦不可過也。且王無傍忌，輟膳已久，請進肉膳。” 不許。</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p>	<p>의정부·육조(六曹)에서 예궐(詣闕)하여 육선(肉膳)을 들도록 청하였으나 허락</p>	<p>辛丑/議政府、六曹詣闕請進肉膳，不許。 上曰：“予於死子，已無可爲，但</p>

<p>(永樂) 16년) 2월 20일(신축) 1번째기사 의정부·육조에서 육선을 들도록 청하다</p>	<p>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죽은 아들에게 이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다만 세속(世俗)에 따라서 30일 동안 소선(素膳)하는 것이니, 여러 경(卿)들은 다시 나와서 청하지 말라.”</p>	<p>從世俗，素膳三十日，諸卿無復進請。”</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2월 29일(경술) 1번째기사 대마도 종정무가 사송한 사미시라에게 쌀을 내리다</p>	<p>대마도(對馬島)의 종정무(宗貞茂)가 사송(使送)한 사미시라(沙彌時羅)에게 쌀 40석(石)을 내려 주었다. 처음에 사미시라가 중국의 절강(浙江) 등의 지방에 침구(侵寇)하여 진불로(陳佛奴)를 노략질하여 아내로 삼고 남자 부옥(符旭)을 종으로 삼았었다. 정유년 9월에 진불로 등을 거느리고 경상도 부산포(富山浦)에 와서 정박하여 물건을 무역하고 팔았는데, 만호(萬戶) 김종선(金從善)이 잡곡(雜穀) 20여 석을 주고 부옥을 사고 진불로를 몰래 유인하여 도망치도록 하여 사연을 갖추어 아뢰니, 즉시 사역원 주부(司譯院注簿) 김중저(金仲渚)를 보내어 진불로·부옥을 거느리고 와서 요동(遼東)으로 해송(解送)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사미시라가 와서 그 아내를 요구하니, 예조 좌랑 권극화(權克和)를 초현역(招賢驛)에 보내어 맞이하여 사미시라에게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사대(事大)하는 나라이므로 중국 사람을 우리의 지경에 머물러 둘 수가 없다. 네가 약탈하여 온 남녀는 모두 이미 요동으로 송환하였다.” 하고, 이어서 쌀을 주니, 사미시라가 기뻐하였다.</p>	<p>庚戌/賜對馬島宗貞茂使送沙彌時羅，時羅寇上國浙江等地面，掠陳佛奴爲妻，男符旭爲奴。於丁酉九月，率佛奴等，來泊慶尙道富山浦貿販。萬戶金從善給雜穀二十餘石，買符旭，陰誘陳佛奴使逃，具辭以聞。卽遣司譯院注簿金仲渚，率佛奴、符旭以來，解送遼東。至是，時羅來求其妻，遣禮曹佐郎權克和于招賢驛，迎謂時羅曰：“我國事大之國，不可以中國之人留我境也。爾之掠來男女，俱已送赴遼東。”仍賜米，時羅喜焉。</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3월 5일(을묘) 2번째기사 형조 참판 이지강·정랑 노귀상 등을 파직하고 고약해를 외방</p>	<p>형조 참판 이지강(李之剛), 정랑(正郎) 노귀상(盧龜祥)·홍복흥(洪復興), 좌랑(佐郎) 곽정(郭貞) 등을 파직(罷職)하고 정랑 고약해(高若海)를 외방 부처(外方付處)하였다. 처음에 성녕 대군(誠寧大君)이 창진(瘡疹)에 걸려서 병이 위독하여, 무녀(巫女) 보문(寶文)이 궁중(宮中)에서 주식(酒食)을 차려 놓고 귀신에게 향사(享祀)하고 기도하였는데, 이종(李種)이 졸(卒)하게 되자, 혹자(或者)가 말하기를, “창진(瘡疹)의 병에 주식(酒食)으로 귀신에게 제사지낼 수가 없습니다. 보문이</p>	<p>罷刑曹參判李之剛、正郎盧龜祥·洪復興、佐郎郭貞等職，正郎高若海外方付處。初，誠寧大君患瘡疹疾篤，巫女寶文於宮中，設酒食享鬼神禱之。及種卒，或曰：“瘡疹之疾，不可以酒食祀神也。寶文設酒食祀神，故有是變。”乃下寶文于刑曹治之。寶文罪</p>

<p>부처하다</p>	<p>주식(酒食)을 차려 놓고 귀신에게 제사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변(變)이 있었습니다.”</p> <p>하니, 이에 보문을 형조에 내려 다스리게 하였다. 보문의 죄는 교형(絞刑)에 해당하였으나, 명하여 한 등을 감하여 시행하게 하여 그 죄가 장형(杖刑)에 해당하였는데, 이지강 등이 장(杖)을 때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속(贖)받고자 하다가 성녕 대군의 반당(伴儻) 등이 이를 아뢰 뒤야 장(杖)을 때렸고, 그 유형(流刑)의 죄도 검률(檢律)의 조율(照律)에 의하였으나, 속(贖)을 거두었다. 반당(伴儻) 등이 다시 사뢰자, 형조에서 깨닫고 곧 아뢰어 보문을 유배하도록 청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p> <p>“무녀(巫女) 보문이 재화(財貨)를 얻기를 탐하여 사술(邪術)을 궁중(宮中)에서 마음대로 행하여 큰 변고(變故)를 가져왔으니, 죄가 불충(不忠)에 간여되어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함께 분개하고 원망하는 바입니다. 비록 성상의 자비(慈悲)를 입어 그 죄를 말감(末減) 하였으나, 법(法)을 잡은 관리가 된 자는 마땅히 그 죄를 청하여 법에 밝게 두어야 하는데, 참판 이지강과 장무 정랑(掌務正郎) 고약해(高若海) 등은 다만 검률(檢律)의 조율(照律)한 것에 의하여 유형(流刑)의 죄를 속(贖) 받았으니, 인신(人臣)의 충성하고 공경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빌건대, 명하여 유사(攸司)에 내려서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사유를 국문(鞫問)하여서 그 죄를 바로잡으소서. 전 참의(參議) 이중배(李中培)와 노귀상·홍복흥·곽정 등이 비록 방장(房掌)은 아니나 개연(愀然)히 좌시(坐視)하고 기꺼이 마음써서 죄를 청하지 않았으니, 이들도 모두 부당합니다. 청컨대, 성상이 재결(裁決)하여 시행하소서. 그 보문의 불충(不忠)한 죄는 율(律)에 의하여 과단(科斷)하고, 국무당(國巫堂) 가이(加伊)도 또한 먼 지방에 유배하여서 그 죄를 징계하소서.”</p> <p>봉교(奉敎)하여, 이지강 등은 파직하고, 고약해는 외방 부처(外方付處)하고,</p>	<p>應絞，命減一等施行，其罪當杖。之剛等不杖而欲贖其罪，誠寧伴儻等白之，然後杖之。其流罪，依檢律照律而收贖。伴儻等更白，而刑曹覺悟，乃啓請流寶文。於是，司諫院上疏，略曰：</p> <p>巫女寶文貪得財貨，恣行邪術於宮中，以致大變，罪干不忠，舉國臣民所共憤怨也。雖蒙上慈，末減其罪，爲執法之官者，宜請其罪，明置於法，而參判李之剛、掌務正郎高若海等只從檢律照律而贖流罪，無人臣忠敬之意。乞命下攸司，收其職牒，鞫問其由，以正其罪。前參議李中培及龜祥、復興、貞等，雖非房堂，愀然坐視，不肯用心請罪，是皆不當。請上裁施行。其寶文不忠之罪，依律科斷，國巫加伊亦竄遐方，以懲其罪。</p> <p>奉敎：“罷之剛等職，若海外方付處，中培、寶文、加伊更勿舉論。”柳廷顯、朴晝等啓曰：“寶文付處遐方，恣行邪術，外人服從。然則安有窮困之戒乎？請定遐方官婢，以懲其惡。”乃配寶文慶尙道蔚山官婢，未行，誠寧根隨之徒，歐寶文潛殺之。</p>
-------------	--	---

	<p>이중배·보문·가이는 다시 거론하지 말게 하였다. 유정현(柳廷顯)·박은(朴崧) 등이 아뢰기를, “보문을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면 사술(邪術)을 마음대로 행하여 외방 사람들이 복종할 것이니, 그렇다면 어찌 곤궁(困窮)한 경계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먼 지방의 관비(官婢)로 정하여서 그 악(惡)을 징계하소서.” 하니, 이에 보문을 경상도 울산(蔚山)의 관비(官婢)로 유배하였는데, 미처 가지도 아니해서 성녕 대군을 근수(根隨)하던 무리들이 보문을 구타하여 몰래 살해하였다.</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3월 6일 (병진) 1번째기사 양전에 육선을 드리다</p>	<p>의정부·육조(六曹)에서 양전(兩殿)에 육선(肉膳)을 드리니, 성녕 대군이 졸(卒)한 지 이미 35일째였다.</p>	<p>丙辰/議政府、六曹獻肉膳于兩殿，誠寧之卒，已三十五日矣。</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3월 15일(을축) 3번째기사 일본 대마도 좌위문대랑이 귤을 바치다</p>	<p>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황감(黃柑)을 바쳤다. 대랑(大郎)이 평도전(平道全)에 인하여 감자(柑子) 3백 20개를 바쳤다.</p>	<p>日本對馬島左衛門大郎獻黃柑。大郎因平道全，獻柑子三百二十箇。</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3월 21일(신미) 1번째기사 술잔을 정사를 아뢰던 여러 경에게 내려주다</p>	<p>술잔을 정사를 아뢰던 여러 경(卿)에게 내려주니, 좌부대언(左副代言) 원숙(元肅)이 앞으로 나와서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에 지양근군사(知楊根郡事)로서 뽑혀서 대언(代言)에 임명되니, 신의 노모(老母)가 감격하여 종일 울었습니다. 성은(聖恩)이 깊고 무거우니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자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니, 임금이, “너의 말이 진실로 옳다. 내가 옛날에 승선(承宣)에 임명되니, 태조(太祖)가</p>	<p>辛未/賜酌啓事諸卿。左副代言元肅就前啓曰：“臣於去年，以知楊根郡事，擢拜代言，臣之老母，感泣終日。聖恩深重，無由報答。”言訖涕泣，上曰：“汝言誠是。予昔拜承宣，太祖方以首相當國，猶且感悅而下涕。”仍含淚焉。</p>

	<p>바야흐로 수상(首相)으로서 나라를 맡았었지만 오히려 또 감격하고 기뻐하여 눈물을 흘리었다.”</p> <p>하고, 이어서 눈물을 머금었다.</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3월 24 일(갑술) 5번째기사 산이 있는 고을에 양 봉통을 설치하게 하다</p>	<p>명하여 산군(山郡)으로 하여금 양봉통(養蜂筒)을 설치하게 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p> <p>“각도의 공안(貢案)에 붙인 일년의 청밀(淸蜜)·황랍(黃蠟)의 원수(元數)를 납공(納貢)에 두루 족(足)한 수에 준하여 계산하여, 산(山)이 있는 각 고을에 의거하여 나누어 정하고 양봉(養蜂)하게 하되, 그 가부를 시험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命令山郡置養蜂筒。戶曹啓：“將各道貢案，付一年淸蜜黃蠟元數，準計納貢周足之數，依山各官，分定養蜂，試其可否。”從之。</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4월 4일 (갑신) 1번째기사 의원 양홍달·박거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p>	<p>의원(醫僊) 양홍달(楊弘達)·박거(朴居)·조청(曹聽)·원학(元鶴)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처음에 임금이 최한(崔閑)을 시켜 승정원(承政院)에 전(傳)하였다.</p> <p>“성녕(誠寧)의 졸(卒)함에는 비록 ‘죽고 사는 것이 명(命)이 있다.’고 하나, 발병(發病)하던 초기를 당하여 허리와 등이 몹시 아팠는데, 의원 박거 등이 병세를 진찰하고 말하기를, ‘풍증(風證)입니다.’고 하고 인삼(人蔘) 순기산(順氣散)을 마시게 하여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렸다. 또 감응원(感應元)·대금음자(對金飲子)를 바쳤으나 그 창진(瘡疹)이 이미 발생하여 병세가 위태롭기에 이르니, 또 말하기를, ‘이것은 창진의 보통 있는 일입니다.’ 하고 약(藥)을 꺼리고 한 첩(貼)도 바치지 않았으니, 아 아! 슬프다. 생각지도 않다가 하루 저녁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의서(醫書)를 보니, 허리와 등이 몹시 아픈 것은 두창(豆瘡)이 발생하기 전의 초기 증상이었고 또 창진(瘡疹)의 증세가 순조롭지 못한 뒤에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약(藥)으로써 방서(方書)에 보이는 것이 하나가 아니었다. 의원이 된 자가 진실로 능히 마음을 써서 정밀하게 살피고, 알맞은 데 따라 변통(變通)하여 그 서로 부합되는 약(藥)을 정한다면 어찌 변통할 수 있는 이치가 없겠는가? 대저 약이(藥餌)의 일을 극진히 하여 유</p>	<p>甲申/囚醫員楊弘達、朴居、曹聽、元鶴于義禁府。初，上使崔閑，傳于承政院曰：“誠寧之卒，雖曰死生有命，然當發病之初，腰背疼痛，醫員朴居等(診候) [診候] 曰：‘風證飲之以人蔘順氣散。’出汗過多，又進感應元對金飲子，及其瘡疹已發，病勢殆矣則又曰：‘此乃疹疾之常事。’諱藥而不進一貼。嗚呼痛哉！不意一夕至於此也。今見醫書，腰背疼痛者，(豆疹) [痘疹] 未發之初證也。且瘡疹逆證之後，能救之藥，見於方者非一。爲醫者苟能用心精察，變通從宜，請其相合之藥，則豈無可變之理也？大抵藥餌之事，極盡無憾，而卒不免於大故，是則稟於天者然也。瘡疹人之</p>

감이 없게 하였으나 갑자기 대고(大故)를 면치 못하였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명(命)을 받은 것이 그러한 것이다. 창진(瘡疹)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바 이요, 미묘하여 살피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의원 등이 처음에는 풍증(風證)이라 하여 그 상극(相克)되는 약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증세에 순응한다 하여 능히 구할 수 있는 처방을 쓰지 않았다. 거의 열흘을 고생하다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인사(人事)의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내가 몹시 슬퍼하여 능히 스스로 마음을 너그러이 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전날 이원(李原)이 말하기를, ‘목숨이 길고 짧은 이치는 오직 하늘에 있을 뿐이요, 의원이 능히 구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원이 평일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죽고 사는 이치는 각각 명(命)을 받은 바가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닌데, 어찌 성녕(誠寧)이 졸(卒)하였다고 하여 죄를 의원에게 돌리는가.’ 하고 하여, 이원이 마음속에 품은 바를 숨기지 않고 진달(陳達)하였으니, 가히 정직하다고 이를 만하다. 이것은 진실로, 나의 마음에 애통하고 한스러워 하는 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다. 너희들은 항상 내 곁에 있어서 그 성녕(誠寧)이 졸(卒)할 때에 들은 것이 익숙하고 아는 것이 상세할 것이니, 마땅히 널리 타일러서 대소 신민(大小臣民)으로 하여금 의원이 기꺼이 마음을 쓰지 않았던 사실을 다 알게 하라. 지금 이에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여 대신(大臣)에게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들어서 알지 못하게 하니, 너희들이 간교(奸巧)하기가 지극하다. 너희들은 다만 간교(奸巧)를 가지고 한 몸의 벼슬을 잇는 자들이다. 성녕(誠寧)이 졸(卒)한 지가 이제 이미 60여일인데, 하루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일찍이 없었다. 즉시 옥관(獄官)에게 명하여 의원을 가두어 묶고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여서 후래(後來)를 징계하되, 지나치게 하지 말라.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내가 어찌 속히 하고자 하겠는가?”

所共經驗，非微妙難察者也。 醫員等始則以爲風證，進其相克之藥；終則以爲順證，而不用能救之方，呼苦一句至於亡，是豈非人事之所失歟？ 此予所以痛悼而不能自寬也。 前日李原言曰：‘修短之理，只在於天，非醫員之所能救也。’ 是則原平日自以謂：‘死生之理，各有所稟，非人力之所能，何以誠寧之卒，歸罪於醫員乎？’ 原以中心所抱，不諱陳之，可謂直矣。 是真不知予心之痛恨有由然也。 汝等常在予側，其於誠寧之卒，聞之熟矣，知之悉矣。 宜當布諭，使大小臣民，咸知醫員之不肯用心，今乃含默不言，至使大臣尙不聞知，汝等之奸極矣。 汝等徒以奸巧襲身者也。 誠寧之卒，今已六旬，未嘗一日不下淚也。 卽命獄官囚繫醫員，鞫問其故，以徵後來，未爲過也。 雖然必有言之者，予何欲速乎？”

趙末生對曰：“誠寧卒日，忠寧大君出外語臣曰：‘朴居等云：「瘡疹之證，此爲最順，意必愈也。 變證之藥，不進一度，以至於此。」’ 臣聞是語，卽傳諭於政府、六曹，既且陳慰，大小臣僚誰不知殿下之意乎？ 前日李原啓事之

	<p>조말생(趙末生)이 대답하였다.</p> <p>“성녕(誠寧)이 졸(卒)하는 날, 충녕 대군(忠寧大君)이 밖으로 나와서 신(臣)에게 말하기를, ‘박거 등이 이르기를, 「창진(瘡疹)의 증세로서는, 이것이 가장 순조로운 것이다.’고 하였다.’ 하였으므로 반드시 나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증세를 변하게 할 약(藥)을 한 번도 바치지 아니하여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정부·육조(六曹)에 전하여 유시(諭示)하여 이미 또 진위(陳慰)하였는데, 대소 신료(大小臣僚)로서 누가 전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전날에 이원이 계사(啓事)할 때에 신과 하연(河演)이 이를 변별(辨別)하고자 하였으나, 자리를 피하여, 부복(俯伏)하였으므로 계달(啓達)하지 못하고 나갔으니, 신 등이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p> <p>임금이 충녕 대군(忠寧大君)으로 하여금 전교(傳教)하게 하였다.</p> <p>“내가 너희들이 잘못 되었다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신(大臣)들로 하여금 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여, 마침내 ‘죽을 사람은 의원이 구원할 바가 못된다.’는 말을 발(發)하게 한 때문이다. 내가 의사(醫者)에게 어찌 그 직임에 봉사하기를 다하였으나,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여 죄를 주겠는가? 양홍달은 경안궁주(慶安宮主)가 병(病)이 났을 때에 열(熱)이 나는 증세였는데도 정기산(正氣散)을 바쳐서 병을 위독하게 만들어 그가 졸(卒)하였는데, 말하기를, ‘신이 의료를 업(業)으로 한 이래 이와 같은 병은 보지 못하였습니다.’고 하여 폐인(廢人)이 된 자식이 졸(卒)하기에 이른 것에 비유하였다. 내가 친히 방서(方書)를 보니, 열이 나는 증세인데도 보약(補藥)을 먹이면 괴로와하는 데 이른다고 분명하게 갖추 실려 있었으나, 나는 도리어 천명(天命)이니 어찌 하겠는가고 생각하였다. 또 소경(昭頃)이 처음에 병이 났을 때에 허리와 등이 몹시 아팠는데, 양홍달 등은 ‘풍진(風疹)’이라고 하여 정기산(正氣散)을 먹여서 땀을 흘리게 하였다. 두통(頭痛)인데도 땀을 흘리게 하면 사는 경우는 하나이고 죽는 경우는 열이라는 말이 여러 창진(瘡疹)의 방서(方書)에 실려 있다. 그 처</p>	<p>時，臣與河演欲辨之，避席俯伏，未啓而出，臣等誠有罪焉。” 上使忠寧大君傳教曰：</p> <p>予以汝等爲曲者，無他，使大臣不知予志，遂發死者非醫所救之言。予於醫者，豈以盡稱其職，而致死爲罪乎？弘達當慶安之病，熱證而進正氣散，以至病極。其卒以爲：“臣業醫以來，未見如此之疾。” 比於非人之子，及其卒也，予親見方書，熱症而飲補藥，則至於煩憫，明明具載。然予反以爲：“命也如之何？” 又當昭頃之始病也，腰背疼痛，弘達等謂風疹也，飲以正氣散而出汗。以頭痛而出汗，則一生十死之言，載諸瘡疹之方，及其始發之後，慮有不諱，多進變證之藥。朴居以謂：“黃蠟色是順證也，而治藥甚不可也。” 卒不飲變證之藥。其初也，以瘡疹而爲風證；其發也，以灰蠟而爲黃蠟，以致不虞之變，于今六十餘日，淚不輟眼。予欲其枷械下獄，以報昭頃之讎如何？</p> <p>末生啓曰：“李原之所啓，意在罪醫，故言及淮仲之妻之死。枷械下獄，依律處罪，以答大小臣僚之望，臣等所願</p>
--	--	--

	<p>음으로 증세가 나타나기에 이른 뒤에 불휘(不諱) 함이 있을까 염려 하여 증세를 변(變)하게 할 약(藥)을 많이 바쳤는데, 박거는 생각하기를, ‘황랍색(黃蠟色)은 순조로운 증세이니 약(藥)으로 치료하는 것은 심히 불가(不可)하다.’고 하고, 마침내 증세를 변하게 할 약(藥)을 먹이지 아니하였다. 그 처음에는 창진(瘡疹)을 가지고 풍증(風證)이라 하였고, 그 증세가 나타나자 회랍색(灰蠟色)을 가지고 황랍색(黃蠟色)이라 하여 불우(不虞)의 변(變)에 이르게 하였다. 지금까지 60여 일 동안 눈물이 눈에 그칠 적이 없었다. 나는 그들을 가쇄(枷鎖) 하여 하옥(下獄)해서 소경(昭頃)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데 어떠한가?”</p> <p>조말생이 아뢰기를,</p> <p>“이원의 아뢰는 뜻이 의원(醫員)을 죄 주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말이 강회중(姜淮仲)의 치의 죽음에 미쳤습니다. 가쇄(枷鎖)하여 하옥(下獄)하고, 율(律)에 의하여 죄를 처단하여서 대소 신료(大小臣僚)의 소망에 답(答)하는 것이 신 등의 소원(所願)입니다. 비록 외사(外事) 라도 그 직책에 삼가지 못하였다면 죄를 과(科)하는 것이 나라의 상헌(常憲)인데, 하물며 내사(內事)에 삼가지 아니하여 변(變)에 이르게 하였으니, 비록 우부 동치(愚婦童稚) 라도 오히려 모두 알것입니다.”</p> <p>하였다. 하교(下教)하기를,</p> <p>“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우선 기다리겠다.”</p> <p>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부·육조(六曹)·대간(臺諫)에서 그 죄를 바로잡도록 청하고, 또 이원이 양홍달 등 4인이 약이(藥餌)를 잘못 바쳐서 대군(大君)을 졸(卒)하게 만든 죄를 갖추 청하니, 임금이, 의원(醫員)들이 약(藥)을 쓰는 데 마음을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일일이 들었다.</p> <p>“을미년에 경안 궁주(慶安宮主)의 병의 증세가 열(熱)이 나고 괴로움이 심하여 눈을 바로 뜨고 손이 뒤틀리니, 양홍달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병의 증세는 의가(醫家)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고 하고, 양위탕(養胃湯)·평위</p>	<p>也。雖外事，不謹其職，則科之以罪者，邦之常憲也。況內事不謹，以至於變，雖愚婦童稚，尚皆知之。”敎曰：“必有言者，姑待之。”至是，政府、六曹、臺諫請正其罪，又李原具請弘達等四人誤進藥餌，以致大君之卒之罪。上枚舉醫員不用心治藥曰：“歲在乙未，慶安宮主病證，發熱苦極，直視手反，弘達曰：‘如此病證，醫家所未知也。’進養胃湯、平胃散，予心以謂非常，而愧聞于人。卒後，予見方書，直視手反，正在發熱之證。誠寧君發疹之初腰脊痛，曹聽、元鶴等啓以風證，進人蔘順氣散發汗。後見醫方豆疹門，亦載腰脊之痛，又於病極之日，已爲變證，色至灰白；朴居曰：‘此乃順證。色爲黃蠟，上品之證。’此人等雖無故害之情，實是不用心之致然。”命憲府究問其罪以聞。</p>
--	---	---

	<p>산(平胃散)을 바쳤다. 내 마음에 보통 증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남에게 알려 질까 부끄러워 하였으나, 졸(卒)한 뒤에 내가 방서(方書)를 보니, 눈을 바로 뜨고 손이 뒤틀리는 것은 바로 발열(發熱)하는 증세에 있었다. 성녕군(誠寧君)의 창진(瘡疹)이 발(發)하던 처음에 허리와 등이 아팠는데, 조칭·원학 등이 풍증(風證)이라고 아뢰어서 인삼(人蔘) 순기산(順氣散)을 바쳐 땀을 흘리게 하였다. 뒤에 의서(醫書)의 두진문(豆疹門)을 보니, 또한 허리와 등의 아픈 것이 실려 있었다. 또 병이 위독하던 날에 이미 증세가 변하게 되어 안색이 회백색(灰白色)이 되었는데, 박거가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순조로운 증세입니다. 안색이 황랍색(黃蠟色)이 되면 최상의 증세입니다.’고 하였다. 이 사람들이 비록 고의로 해치려는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로 이것은 마음을 쓰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다.”</p> <p>헌부(憲府)에 명하여 그 죄를 일일이 국문(鞫問)하여서 아뢰게 하였다.</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4월 4일 (갑신) 4번째기사 소경공의 분묘 곁에 암자를 짓게 하다</p>	<p>명하여 소경공(昭頃公) 5019) 의 분묘(墳墓) 곁에 암자(庵子)를 짓게 하였다. 분묘는 고양현(高陽縣) 북쪽 산리동(酸梨洞)에 있었는데, 암자를 대자암(大慈菴)이라 이름하고, 노비 20구(口)와 전지 50결(結)을 붙이였다. 명하여 전 도총제(都摠制) 조용(趙庸)에게 묘지(墓誌)를 짓게 하고 대제학(大提學) 변계량(卞季良)에게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짓게 하고, 직예문관(直藝文館) 성개(成概)로 하여금 이를 모두 쓰게 하였다. 성개에게 흑마포(黑麻布)·백저포(白苧布) 각각 2필씩을, 각수(刻手)5020) 김유지(金有知)·중[僧] 명호(明昊) 등 3인에게 쌀과 콩 아울러 10석을 내려 주었다.</p>	<p>命創昭頃公墳菴。墳在高陽縣北酸梨洞，菴號大慈，屬奴婢二十口、田五十結。命前都摠制趙庸製墓誌，大提學卞季良製神道碑銘，皆使直藝文館成概書之。賜概黑麻布、白苧布各二匹，刻手金有知、僧明昊等三人米豆并十石。</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4월 6일 (병술) 1번째기사 신루에서 정사를 보다</p>	<p>신루(新樓) 아래에서 정사를 보고,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태의(太醫) 양홍달(楊弘達)·박거(朴居)·원학(元鶴) 등이 일찍이 경안 궁주(慶安宮主)가 졸(卒)할 적에 아뢰기를, ‘이 병은 신들이 아직 보지 못한 바이요, 의서(醫書)에서도 또한 아직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고 하였다. 나의 뜻에는</p>	<p>丙戌/視事于新樓下，仍置酒。上泣曰：“太醫楊弘達、朴居、元鶴等，昔於慶安之卒啓曰：‘此疾臣所未嘗見，醫書亦未議論。’予意以爲：‘乃何爲人之兒，得疾如此?’甚愧恨焉。其後</p>

	<p>‘어찌 남의 자식이 되어서 이와 같은 병에 걸리었는가?’라고 생각하여 심히 부끄러워 하고 한스러워 하였다. 그 후에 의서(醫書)를 보니 이르기를, ‘열기(熱氣)를 잘못 다스리면 손과 발이 위비(痿痺) 한다.’고 하였다. 이제 이번의 성녕 대군(誠寧大君)의 병은 허리와 등이 아프니, 모두 말하기를, ‘풍증(風證)입니다.’고 하고 이로 하여금 인삼(人蔘) 순기산(順氣散)을 복용시켜 증세가 변하게 만들었다. 또 말하기를, ‘순조로운 증세입니다.’고 하였지만 흉변(凶變)에 이르렀다. 내가 의서(醫書)를 보니, 창진(瘡疹)의 병을 만약 풍증(風證)으로 다스린다면 죽는 경우가 열이고 사는 경우가 하나라고 하였다. 이로써 말한다면 죄는 용서할 수가 없으나, 율(律)에 따라서 다스린다면 비록 ‘업(業)을 정(精)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이르겠지만, 이 직임(職任)을 대신할 자도 또한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p> <p>사헌 집의(司憲執義) 허규(許揆) 등이 양홍달·박거 등의 죄를 핵문(覈問)하여 참형(斬刑)으로 조율(照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죄가 비록 이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어찌 가볍게 죽일 수 있겠느냐?</p> <p>하고, 이에 양홍달은 폐(廢)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고, 박거·조청·원학은 전의감(典醫監) 영사(令史)에 붙이었다. 정부와 육조(六曹)·대간(臺諫)에서 장차 양홍달 등을 율(律)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고자 하여 재삼 청(請)하기에 이르렀으나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p>	<p>見醫書云：‘誤治熱氣，則手足痿痺。’ 今此誠寧之疾，腰背疼痛，咸曰：‘風證。’使之服人蔘順氣散，以致變證，又曰：‘順證。’以至凶變。予見醫書，瘡疹之疾，若以風證治之，則十死一生。以此言之，罪不容赦，然從律治之，則雖云業不精矣，代此任者，亦且難得也。” 司憲執義許揆等覈弘達、朴居等罪，以斬照律，上曰：“罪雖至此，豈可輕殺哉？”乃廢弘達爲庶人，朴居、曹聽、元鶴屬典醫監令史。政府、六曹、臺諫欲將弘達等依律斷罪，請至再三，不允。</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4월 12일(임진) 1번째기사 서교에 거둥하여 경천 등지에서 사냥하다</p>	<p>서교(西郊)에 거둥하여 경천(敬天)·옥련(玉蓮) 등지에서 사냥하고, 저녁 때에 이르러 환궁(還宮)하였다.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강문진(姜文進)에게 쌀·콩 10석과 주과(酒果)를 내려 주었으니, 강문진의 집이 경천사(敬天寺) 동쪽에 있었는데, 임금이 제릉(齊陵)에 여묘(廬墓)살이할 적에 강문진이 진퇴(進退)하면서 정성을 다하였으므로, 이날 임금이 강문진의 집을 바라보고 이러한 하사(下賜)가 있었다.</p>	<p>壬辰/幸西郊，畋于敬天、玉蓮等處，至暮還宮。賜檢校漢城尹姜文進米豆十石與酒果。文進家在敬天寺東。上之廬于齊陵也，文進進退效誠。是日，上望見文進家，有是賜。</p>
<p>태종 35권, 18년</p>	<p>사은사(謝恩使) 연사종(延嗣宗)·부사(副使) 이유(李愉)가 북경(北京)에서 돌아</p>	<p>謝恩使延嗣宗、副使李愉回自北京，以</p>

<p>(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4월 15일(을미) 5번째기사 사은사 연사종 등이 북경에서 돌아와 무역한 단자·의서 등을 바치다</p>	<p>와서 무역(貿易)한 단자(段子)와 의서(醫書)·약재(藥材) 등의 물건을 바치니,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 판서(六曹判書)에게 이르기를, “대저 관복(冠服)은 모름지기 복색(服色)이 있어야 하는데, 각사(各司)의 관복은 모두 초단(綃段)이나 색깔이 없다. 그러므로 사은사(謝恩使)의 행차(行次)에 포자(布子)를 부쳐 보내어서 역환(易換)하게 하였다. 이제 경 등에게 홍단(紅段)을 각각 1필씩 내려 주겠으니, 마땅히 관복을 만들어서 자손(子孫)에게 전(傳)하도록 하라.” 하였다</p>	<p>易換段子與醫書藥材等物獻。上謂議政府及六曹判書曰：“大抵冠服須要有色，各司冠服，皆綃而無色，故於謝恩使行次，付遺布子，使之易換。今賜卿等紅段各一匹，宜造冠服，以傳子孫。”</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4월 15일(을미) 6번째기사 내관 노희봉을 보내어 인덕궁에 문병하다</p>	<p>내관(內官) 노희봉(盧希鳳)을 보내어 인덕궁(仁德宮)에 문병(問病)하였다. 처음에 의원 양홍달(楊弘達)이 한경(漢京)에 있으면서 글로써 상왕(上王)의 병이 위독하다고 보고하니, 임금이 환도(還都)하여 문병하고자 하여 내관(內官)을 시켜 입직(入直)한 대언(代言) 이명덕(李明德)에게 전지(傳旨)하기를, “나의 행지(行止)를 어떻게 처신(處身)할까?” 하니, 이명덕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친히 가더라도 어찌 능히 수라와 약(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시켜 자주 기거(起居)를 묻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한참만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여 보니, 너의 말이 옳지 않다. 상왕(上王)이 나에게서 다른 형제와 비할 수가 없다. 후사(後嗣)가 되는 것은 아들이 되는 것이니,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예(禮)로써 당연한데, 어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즉시 의정부·육조(六曹)·대언(代言) 등을 불러서 그 가부(可否)를 물으니, 영의정 유정현(柳廷顯)·찬성(贊成) 이원(李原)·이조 판서 심온(沈溫)·예조 판서 김여지(金汝知)·공조 판서 정진(鄭鎭)·호조 판서 정역(鄭易) 등이 말하기</p>	<p>遣內官盧希鳳，問疾於仁德宮。初，醫員楊弘達在漢京，以書報上王病劇，上欲還都問病，使內官傳旨入直代言李明德曰：“予之行止，何以處之？”明德啓曰：“殿下雖親行，豈能親奉膳藥乎？不若佯人頻問起居。”俄而，上曰：“予更思之，汝言不可。上王之於予，非他兄弟之比也。爲之後者爲之子，以父事之，禮當然也。豈可愀然退在乎？”卽召議政府、六曹、代言等，問其可否，領議政柳廷顯、贊成李原、吏曹判書沈溫、禮曹判書金汝知、工曹判書鄭鎭、(戶判書) [戶曹判書] 鄭易等曰：“松都非永居之地，終必還歸。且上王之於殿下，實是君父，使人問疾，於禮不可。若至大故，則時將酷熱，動駕往還，亦大惟艱。且雖陰陽</p>

	<p>를, “송도(松都)는 영구히 있을 땅이 아니고 마침내 반드시 돌아갈 것이요, 또 상왕(上王)이 전하에게는 실로 군부(君父)이니, 사람을 시켜 문병(問病)하는 것은 예(禮)에 있어서 불가(不可)합니다. 만약 대고(大故)에 이른다면 때가 장차 무더운 여름인데, 동가(動駕)하여 갔다가 돌아오기도 또한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비록 음양(陰陽)의 설(說)이라 하더라도 복자(卜者)가 모두 말하기를, ‘전하의 재액(災厄)은 다만 4월뿐이라.’ 하니, 이제 4월은 이미 다 갔고 5월의 절기(節期)가 24일에 들어가니, 의당 환도(還都)하심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의정 박은(朴崧)·병조 판서 김한로(金漢老)·대언(代言) 이명덕(李明德) 등은 말하기를, “처음에 송도(松都)에 온 것은 온전히 액(厄)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난 일을 가지고 상고한다면, 무년(戊年)에는 액(厄)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친히 가서 문병하고자 하는 것은 실로 미편합니다. 또 전하께서 성녕 대군(誠寧大君)이 졸(卒)한 뒤에 상심(傷心)하심이 지극한데, 이제 만약 환도(還都)하여 성녕 대군이 옛날에 놀던 땅을 보고 상왕(上王)의 질병의 고통을 듣는다면 근심하고 피로하심이 더욱 깊어질 것이니, 신 등은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돌아가지 말고 사람을 보내어 문안(問安)하시는 것만 같지 못하며, 만약 부득이하여 가서 문병한다면 수백 기(騎)를 거느리고 가서 문병하고 즉시 돌아오소서.” 하였다. 유정현이 힘써 간쟁(諫爭)하기를, “돌아가고자 한다면 영구히 환도(還都)하는 것이 가(可)합니다. 가서 문병하고 즉시 돌아오는 것은 더욱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임금이 두 대군(大君)을 시켜 전지(傳旨)하기를, “영의정 등이 말한 것은 만세에 바꾸지 못할 정론(正論)이고, 좌의정 등이 말한 것은 일시에 임금을 근심하는 지극한 뜻이다. 내가 음양(陰陽)의 금기[拘</p>	<p>之說, 卜者皆曰: ‘殿下之災厄, 只四月耳。’ 今四月已盡, 五月節入于二十四日, 宜當還都。” 左議政朴崧、兵曹判書金漢老、代言李明德等曰: “初來松都, 全以避厄。 以往考之, 戊年則有厄, 今欲親幸問疾, 實爲未便。 且殿下於誠寧之卒, 傷心極矣。 今若還都, 見誠寧舊遊之地, 聞上王疾病之苦, 則憂勞益深矣, 臣等爲殿下惜焉。 不如毋歸而遣人問安, 如不得已而往問, 則率數百騎, 往問卽還。” 廷顯力爭曰: “欲還則永還都可也。 往問卽還, 尤爲未便。” 上使兩大君傳旨曰: “領議政等所, 言則萬世不易之正論也; 左議政等所言, 則一時憂君之至意也。 予於陰陽拘忌, 雖不盡信, 然古者袁天綱、李淳風、邵康節等以陰陽, 前知吉凶, 其所定也不僭。 以此觀之, 不可任置也。 合宮還都, 予心未安, 姑以單騎問安還來, 待秋還都, 予之志也。” 崧、末生、明德等曰: “固當。” 廷顯曰: “至尊舉動, 不可輕易, 豈有單騎獨行之理乎? 且至大故, 則禮當更往。 若是則正當農月, 無乃不可? 如欲親幸問安, 則兩宮一時還都幸甚。 殿下獨</p>
--	--	---

	<p> 忌]에 대하여 비록 다 믿지는 않으나, 그러나 옛날에 원천강(袁天綱) · 이순풍(李淳風) · 소강절(邵康節) 등이 음양(陰陽)으로써 길흉(吉凶)을 앞서 알았으며, 그들의 정(定)한 바는 거짓이 아니었다. 이로써 본다면 마음대로 조치할 수도 없다. 궁가(宮家)를 합(合)하여 환도(還都)하는 것을 나의 마음에는 평안치 않게 여기니, 우선 단기(單騎)로써 문안(問安)하고 돌아왔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환도(還都)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p> <p> 하였다. 박은·조말생(趙末生)·이명덕(李明德) 등이, “진실로 지당합니다.” </p> <p> 하니, 유정현이, “지존(至尊)의 거동(舉動)은 경이(輕易)하게 할 수 없는데, 어찌 단기(單騎)로 홀로 행행(行幸)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또 대고(大故)에 이른다면 예(禮)에 마땅히 다시 가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바로 농삿달을 당할 것이니 불가(不可)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친히 행행(行幸)하여 문안하고자 한다면 양궁(兩宮)이 일시에 환도함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전하가 홀로 가서 문안하고 즉시 돌아오고자 하니, 소신(小臣)의 마음은 깊이 유감(有憾)입니다. 전하가 신 등으로 하여금 각각 품은 생각을 진달(陳達)하게 하니, 노신(老臣)이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p> <p> 하므로, 임금이, “내가 마땅히 상량(商量)하겠다.” </p> <p> 하였다. 두 대군(大君)이 같이 왕지(王旨)를 받들어 전지(傳旨)하기를, “중궁(中宮)과 더불어 영구히 한도(漢都)로 돌아가고자 한다.” </p> <p> 하고, 또 대언(代言) 등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이제 상왕(上王)의 병환에 친히 문위(問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또 사복시(司僕寺)의 사람들이 모두 수전(受田)하고자 하는데, 이로써 본다면 상인(象人)의 폐단이 모두 나의 한 몸으로 말미암는데, 하물며 한경(漢京)은 태조(太 </p>	<p> 行問安，即欲還來，小臣之心，深有憾焉。 殿下令臣等各陳所懷，老臣安敢不悉心以對?” 上曰：“予當商量。” 兩大君同奉旨，傳曰：“欲與中宮永還漢都。” 且教代言等曰：“今上王之病，不可不親進問慰， 又司僕之人皆欲受由。 以此觀之，衆人之弊，皆因子之一身，況漢京，太祖創業之地，宗廟社稷在焉，不可久虛。 不歸則已，歸則當歸於盛農前也。” 末生、明德等對曰：“上王之病，實風氣也。 風證雖至於殆，而其終即愈，不須慮也。 臣等以爲，中宮仍在，殿下獨行問疾而還，則兩全矣。” 河演、金孝孫、元肅等曰：“若還都，則當此農月，尤不可也。” 上曰：“唯中宮不欲還得患之地，然予以爲，中宮則處於藏義洞明嬪舊處之宮，予則處於景福宮。” 因命朴子青曰：“先往漢京，修葺景福宮。” 子青將行，朴晝等求見大君曰：“殿下初來此都者，欲避不祥之處也。 既避不祥之處，而又幸不祥之處，以殿下今年之有厄，臣等以爲不可還也。 請停此行，但當伴人問病奉藥而已。 雖有不諱之事，當在此都而發喪也。” 大君以啓， </p>
--	---	--

<p>祖)의 창업(創業)한 땅이요, 종묘·사직이 그곳에 있느니,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다.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돌아간다면 농사가 성해지기 전에 마땅히 돌아가야 한다.”</p> <p>하니, 조말생·이명덕 등이 대답하기를,</p> <p>“상왕(上王)의 병은 풍기(風氣)입니다. 풍증(風證)은 비록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가도 나중에는 즉시 나아지니, 반드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이 생각건대 중궁(中宮)은 그대로 있고, 전하만이 홀로 가서 문병하고 돌아온다면 양쪽으로 온전할 것입니다.”</p> <p>하고, 하연(河演)·김효손(金孝孫)·원숙(元肅) 등이 말하기를,</p> <p>“만약 환도(還都)한다면 이러한 농삿달을 당하여 더욱 불가(不可)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p> <p>“그렇다. 중궁(中宮)이 근심을 얻은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으나,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중궁(中宮)은 명빈(明嬪)이 있던 구처(舊處)인 장의동(藏義洞)의 궁(宮)에 거처하고, 나는 경복궁(景福宮)에 거처하려 한다.</p> <p>하고, 인하여 박자청(朴子靑)에게 명하기를,</p> <p>“먼저 한경(漢京)으로 가서 경복궁을 수축(修葺)하라.”</p> <p>하였다. 박자청이 장차 떠나려는데, 박은 등이 대군(大君)을 찾아보고,</p> <p>“전하가 처음에 이 도읍(都邑)에 온 것은 상(祥)스럽지 못한 곳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미 상(祥)스럽지 못한 곳을 피하여 왔는데, 또 상(祥)스럽지 못한 곳에 거동하시니, 전하가 금년(今年)에 액(厄)이 있으므로 신 등은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컨대, 이번 행차를 정지하고, 다만 마땅히 사람을 시켜 문병하고 약(藥)을 받들게 할 뿐이요, 비록 불휘(不諱)의 일이 있더라도 마땅히 이 도읍(都邑)에 있으면서 발상(發喪)하여야 합니다.”</p> <p>하니, 대군(大君)이 아뢰었다. 임금이 두 대군(大君)을 시켜 박은 등에게 묻기를,</p>	<p>上使兩大君問於嘗等曰：“予在漢京之時，儻有不諱之事，何以處之？”嘗等對曰：“雖在漢京，當避之而發喪也。當此之時，爲人臣者，誰敢強之？”上曰：“與領議政及六曹擬議以聞，予亦欲發一言。”柳廷顯啓曰：“臣前日強請還都者，以上王病也。爲之後者爲之子，則當親進而問病也。若殿下以今年之有厄，不可問病，則臣何敢請？人言戊年殿下之厄年，則今大君之卒，是亦戊年之大厄也。然安知止此而已乎？限春夏避厄，佯人問病可也。”李原、漢老、沈溫、鄭易等亦啓曰：“殿下有厄則不可親往問病，佯人可也。”上曰：“上王之病，不可不親問也。昭頃之墓，在於高陽，若行直路，則墓在望處，不能忍視。欲二十日發行，涉長湍津，踰華山北，至二十三日宿於慕華樓，二十四日凌晨問病還來，則問病避厄，一舉而兼盡矣。”僉曰：“殿下之教是矣。”兵曹與鎮撫所獻宿所圖，二十日都里陵，二十一日長湍津，二十二日綠楊坪，二十三日慕華樓也。</p>
---	--

	<p>“내가 한경(漢京)에 있을 때에 만약 불휘(不諱)의 일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p> <p>하니, 박은 등이 대답하기를, “비록 한경(漢京)에 있더라도 마땅히 이를 피(避)하여 발상(發喪)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인신(人臣)이 된 자가 누가 감히 강청(強請)하겠습니까?”</p> <p>하였다. 임금이, “영의정과 육조(六曹)와 의논하여서 아뢰어라. 나는 또한 한 마디 하고자 한다.”</p> <p>하니, 유정현이 아뢰기를, “신이 전날 환도(還都)하자고 강청(強請)한 것은 상왕(上王)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후사(後嗣)가 된 자가 아들이 되었으면 마땅히 친히 약을 드리고 병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전하가 금년에 액(厄)이 있다고 하여 문병하는 것이 불가(不可)하다면 신이 어찌 감히 청하겠습니까? 사람이 무년(戊年)이 전하의 액년(厄年)이라고 말하니, 지금 대군(大君)의 졸(卒)한 것이 이것이 또한 무년(戊年)의 큰 액(厄)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것에 그치고 말지를 알겠습니까? 봄 여름까지를 한하여 액(厄)을 피하고, 사람을 시켜 문병하는 것도 가(可)합니다.”</p> <p>하고, 이원·김한로·심온·정역 등도 또한 아뢰기를, “전하께서 액(厄)이 있다면 친히 행행(行幸)하여 문병할 수가 없으니, 사람을 시키는 것이 가(可)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상왕(上王)의 병을 친히 묻지 아니할 수가 없다. 소경(昭頃)의 무덤이 고양(高陽)에 있으니, 만약 직로(直路)로 간다면 무덤이 바라보이는 곳에 있으니 차마 볼 수가 없다. 20일에 출발하고 싶다. 장단진(長湍津)을 건너 화산(華山)</p>	
--	---	--

	<p>북쪽을 넘어서 23일에 이르러 모화루(慕華樓)에 유숙(留宿)하고 24일 이른 아침에 문병(問病)하고 돌아온다면, 문병하고 액(厄)을 피하는 일을 일거에 겸하여 다하게 된다.”</p> <p>하니, 모두, “전하의 하교(下敎)가 옳습니다.”</p> <p>하였다. 병조와 진무소(鎭撫所)에서 숙소도(宿所圖)를 바쳤는데, 20일에는 도리릉(都里陵)이고, 21일에는 장단진(長湍津)이고, 22일에는 녹양평(綠楊坪)이고, 23일에는 모화루(慕華樓)였다.</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4월 18 일(무술) 3번째기사 일본국 능주 태수 원 창청이 토물을 바치다</p>	<p>일본국(日本國) 능주 태수(能州太守) 원창청(源昌淸)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고, 이어서 인삼(人蔘)·백저포(白苧布) 등의 물건을 구하였다.</p>	<p>日本國能州太守源昌淸遣人來獻土物，仍求人蔘白苧布等物。</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4월 24 일(갑진) 2번째기사 일본 대마도 수호 종 정무가 죽으니 이에를 보내어 치제하다</p>	<p>일본(日本) 대마도 수호(對馬島守護) 종정무(宗貞茂)가 죽으니, 행 사직(行司直) 이에(李藝)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이어서 쌀·콩, 종이를 부의(賻儀)하였다. 종정무가 대마도에 있을 동안에 위엄이 여러 도(島)에 행하여지고 우리 국가(國家)를 향하여 충성하고 여러 도적을 금제(禁制)하여 자주 변경(邊境)을 침입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특별히 후사(厚賜)한 것이다.</p>	<p>日本對馬島守護宗貞茂死。遣行司直李藝致祭，仍賻米豆紙。貞茂之在對馬島也，威行諸島，向慕國家，禁制群盜，使不得數侵邊境，故其死也，特厚賜焉。</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4월 24 일(갑진) 4번째기사 금주령을 거듭 밝히다</p>	<p>금주령(禁酒令)을 거듭 밝혔다.</p>	<p>申禁酒令。</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5월 1일 (경술) 1번째기사 임금이 제릉에 나아가 단오 별제를 행하다</p>	<p>임금이 제릉(齊陵)에 나아가서 단오 별제(端午別祭)를 행하고, 드디어 열마(闕馬) 등지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잡은 노루를 내관(內官) 최용(崔龍)에게 주어서 인덕궁(仁德宮)과 성비전(誠妃殿)에 바치게 하고, 또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麟)에게 내려 주었다.</p>	<p>庚戌朔/上詣齊陵，行端午別祭，遂觀獵于闕馬等處，以所獲獐，授內官崔龍，獻于仁德宮及誠妃殿，又賜昌寧府院君成石麟。</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5월 3일 (임자) 1번째기사 신루에 나아가 정사를 보다</p>	<p>신루(新樓)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는데, 세자(世子)가 계사(啓事)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술 자리를 마련하여 우의정 한상경(韓尙敬)을 맞아 위로하고, 겸하여 정사를 아뢰던 신료(臣僚)를 공궤(供饋)하였다.</p>	<p>壬子/御新樓視事，世子參啓事。仍置酒，慰迎右議政韓尙敬，兼餉啓事臣僚。</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5월 4일 (계축) 2번째기사 전 우군 총제 김침의 줄기</p>	<p>전 우군 총제(右軍摠制) 김침(金瞻)이 졸(卒)하였다. 김침의 자(字)는 자구(子具)이요, 옛 이름은 구이(九二)인데, 광주(光州) 사람으로서 자혜부 윤(慈惠府尹) 김회조(金懷祖)의 아들이었다. 10세에 속문(屬文)에 능하였고, 장성하게 되자 경사(經史)·제자(諸子)에 두루 통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육통증(肉通證)’이라 하였다. 병진년의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하여 친어군 호군(親禦軍護軍)·예문 응교(藝文應教)에 이르렀다. 임신년 여름에 정몽주(鄭夢周)를 아첨하여 섬겼다고 하여 유배되었다가, 기묘년에 발탁되어 봉상 소경(奉常少卿)이 되어 몇해 동안에 갑자기 화요(華要)의 직임에 옮겨져, 드디어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겸 예조 전서(禮曹典書)에 제수되었다. 갑신년 여름에 여직(女直)의 유민(遺民) 동경(修景)·왕가인(王可仁) 등이 우리 나라 함주(咸州) 이북이 옛날 요(遼)나라·금(金)나라의 땅이라고 황제(皇帝)에게 아뢰어, 황제가 칙서(勅書)를 내려 10처 인민(十處人民)을 수색하게 하였다. 임금이 김침을 보내어 계품(啓稟)하여 그대로 본국(本國)에 속하게 허락하여 달라고 빌었다.</p>	<p>前右軍摠制金瞻卒。瞻字子具，古名九二，光州人，慈惠府尹懷祖之子。十歲能屬文，及長，博通經史諸子，時人謂之肉通證。登丙辰第，歷官至親禦軍、護軍、藝文應教。壬申夏以諂事鄭夢周見竄，己卯起爲奉常少卿。數歲之中，驟遷華要，遂拜藝文館提學兼禮曹典書。甲申夏，(女直)〔女眞〕遺民修景、王可仁等以我國咸州迤北，古爲遼、金之地，奏于帝，帝降勅，索十處人民，上遣瞻計稟，乞許仍屬本國。瞻至京，修景等猶(執)〔執〕迷，訴于禮部，瞻告禮部曰：</p>

	<p>김침이 경사(京師)에 이르니, 동경 등이 오히려 아둔하고 어리석어 예부(禮部)에 호소하므로, 김침이 예부에 고(告)하기를,</p> <p>“만약 요(遼)나라·금(金)나라 지리지(地理志)를 상고하면, 허실(虛實)은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p> <p>하였다. 예부관(禮部官)이 옳게 여겨, 이에 두 나라의 지리지를 상고하니 과연 10처 지명(十處地名)이 없었으므로, 갖추 사실대로 아뢰었다. 황제가 김침에게 이르기를,</p> <p>“조선(朝鮮)의 땅도 또한 짐(朕)의 법도 안에 있는데, 짐이 무엇 때문에 다투겠는가? 이제 청(請)한 것을 허락하겠다.”</p> <p>하니, 김침이 고두(叩頭)하여 사례(謝禮)하였다. 이날 봉천문(奉天門)에서 시연(侍宴)할 때 김침이 구호(口號)로 말하였다.</p> <p>“황제의 의장(儀仗)을 몸소 보니 일표(日表)가 밝은데, 배신(陪臣)을 은혜로 대우하니 영광(榮光)이 감절일세, 영서(靈犀)는 못가에 있어 신기한 서기(瑞氣)를 보이고, 순상(馴象)이 문전에 당하여 어지러운 행렬을 금하네. 만세의 옥잔으로 수주(壽酒)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九成(九成)의 소악(韶樂)은 즐거운 성음(聲音)을 연주하네, 하정(下情)이 상달(上達)되어 백성은 유감이 없고, 일시동인(一視同仁)하시니 태평(太平) 세월 누리네.”</p> <p>태감(太監) 황엄(黃儼)이 이를 아뢰고 나와서 김침에게,</p> <p>“그대의 시(詩)에 황제가 깊이 찬탄하였다.”</p> <p>하였다. 사신이 돌아오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여 전지(田地) 50결(結)을 내려 주고, 첨서승추부사(僉書承樞府事)로 전직하였다가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고쳤다. 김침이 본래 민씨(閔氏)에 당부(黨附)하였는데, 민씨가 죄를 얻게 되자, 김침도 또한 벼슬에서 쫓겨나서 몸을 마쳤다. 김침은 전고(典故)를</p>	<p>“若考遼、金《地理志》，則虛實自明矣。”禮部官然之，乃考二國之志，果無十處地名，具以實奏，帝謂瞻曰：“朝鮮之地，亦朕度內，朕何爭焉？今茲準請。”瞻叩頭謝。是日，侍宴奉天門，瞻口號曰：“天仗親瞻日表明，陪臣恩遇倍光榮。靈犀在沼呈奇瑞，馴象當門禁擾行。萬世玉卮斟壽酒，九成韶樂奏歡聲。下情上達民無憾，一視同仁享太平。”太監黃儼以奏，出謂瞻曰：“子之詩，帝深獎嘆。”使還，上大悅，賜田五十結。轉僉書承樞府事，改參知議政府事。瞻素黨閔氏，及閔氏得罪，瞻亦沈廢終身。瞻諳練典故，頗曉音律，儀禮詳定，瞻必與焉。又奉旨校正雅樂，然其學駁雜，好佛氏奉道教，嘗上書請去文廟釋奠犧牛，爲有司所劾，士林譏之。卒年六十五。一子資敬。</p>
--	---	---

	<p>잘 알고 음률(音律)에 자못 밝아서 의례(儀禮)를 상정(詳定)하는 데 김침이 반드시 참여하였고, 또 왕지(王旨)를 받들어 아악(雅樂)을 교정(校正)하였다. 그러나, 그 학문이 순수하지 못하고 잡되어 불씨(佛氏)를 좋아하고 도교(道敎)를 받들어, 일찍이 상서(上書)하여 문묘 석전(文廟釋奠)에 소[牛]를 희생(犧牲)하는 것을 없애자고 청하였다가 유사(有司)에게 탄핵을 당하니, 사림(士林)에서 이를 비웃었다. 졸(卒)할 때 나이가 65세였고, 아들이 하나이니, 김자경(金資敬)이었다.</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5월 9일 (무오) 3번째기사 경승부 윤 성억에게 불사를 대자암에 마련하게 하다</p>	<p>경승부 윤(敬承府尹) 성억(成抑)에게 명하여 불사(佛事)를 대자암(大慈菴)에 마련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녕(誠寧)의 묘(墓)에 사제(賜祭)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였다.</p> <p>“ 소경공(昭頃公)이 평소에 쇠고기[牛肉]를 좋아하였으니, 삭망제(朔望祭)에 내가 이를 천신(薦新)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심히 크니 가볍게 쓸 수가 없다. 내 생각에는 혹은 연빈(燕賓)이 있거나 혹은 종묘(宗廟)에 제사할 때 이를 천신하는 것이 어떠할까 한다.”</p> <p>여러 대언(代言)이 대답하기를, “웁습니다.”</p> <p>하니, 또 명하였다.</p> <p>“희생(犧牲)으로 계(雞)를 쓰는 것이 예(禮)에 있느냐?”</p> <p>여러 대언이, “계(雞)는 ‘닭’을 말하는데, 희생에 계(雞)를 쓰는 것이 고례(古禮)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소경공(昭頃公)이 또 닭고기[雞肉]를 좋아하였다.”</p> <p>하고, 즉시 본궁(本宮)의 사람에게 명하여 닭을 길러서 5일에 한 마리를 삶아서 천신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게 하였다.</p>	<p>命敬承府尹成抑，設佛事于大慈菴，仍賜祭誠寧之墓。傳旨承政院曰：“昭頃公平日嗜牛肉，朔望之祭，予欲薦之，然其物甚大，不可輕用。予意以謂，或有燕賓，或祭宗廟之時，薦之如何？”</p> <p>諸代言對曰：“然。”又命曰：“牲用雞，於禮有乎？”</p> <p>諸代言曰：“雞曰翰音。牲用雞，古禮也。”</p> <p>上曰：“昭頃公又嗜雞肉。”</p> <p>卽命本宮人養雞，五日一首烹薦之，以爲恒式。</p>
<p>태종 35권, 18년</p>	<p>각도의 진膳(進膳)을 정지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p>	<p>停各道進膳。上曰：“今此熱時，驛路</p>

<p>(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5월 12일(신유) 2번째기사 각도의 진선을 정지하다</p>	<p>“이제 이처럼 더운 때는 역로(驛路)에 폐단이 있을 것이다. 경기·황해도·강원도 외에 그 나머지 각도에서는 각전(各殿)에 매달 예(例)에 의하여 진선(進膳)하는 것과 별선(別膳)하는 것을 우선 정지하게 하라.”</p>	<p>有弊。京畿、黃海、江原道外，其餘各道，各殿每朔依例進膳及別膳，姑停之。”</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5월 17일(병인) 2번째기사 형조 판서 윤향의 줄기</p>	<p>형조 판서 윤향(尹向)이 평양(平壤)에서 졸(卒)하였다. 처음에 윤향이 <중국에서> 돌아오다 가산(嘉山)에 이르러 복통(腹痛)을 앓으니, 임금(醫員)이 의원(醫員) 원학(元鶴)과 윤향의 사위 박종지(朴從智)에게 명하여 역마(驛馬)를 타고 가게 하였다. 부음(訃音)이 들리자 3일 동안 정조(停朝) 하고 중관(中官) 홍득경(洪得敬)을 보내어 내폐(內幣)를 가지고 가서 호상(護喪)하였으니, 그 아들 윤계동(尹季童) 때문에 특별히 대우한 것이다. 윤향은 파평(坡平) 사람으로, 문하평리(門下評理) 윤승순(尹承順)의 아들이었다. 용의(容儀)가 공손하고 아름다와 젊어서부터 훌륭한 명예가 있었고, 고론(高論)을 좋아하고 일찍부터 화요(華要)의 직(職)을 두루 거쳤으며, 장상(將相)이 되자, 시세(時勢)와 더불어 부침(浮沈)하였다. 졸(卒)할 때 나이가 45세였다. 소도(昭度)라고 시호(諡號)하고, 쌀·콩 50석(石)과 종이 1백 50권을 부의(賻儀)하고, 중관(中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p>	<p>刑曹判書尹向卒于平壤。初，向還至嘉山患腹病，上命醫元鶴、向婿朴從智乘駟而去。訃聞，停朝三日，遣中官洪得敬，齎內幣護喪，以其子季童故，特異之。向坡平人，門下評理承順之子。容儀恭美，少有令名，好高論，早歷華要，及爲將相，與時浮沈。卒年四十五，諡昭度。致賻米豆五十石、紙一百五十卷，遣中官致祭。</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5월 21일(경오) 1번째기사 종묘와 문소전에 조미를 천신하다</p>	<p>종묘(宗廟)와 문소전(文昭殿)에 새로운 조미(粟米)를 천신(薦新)하였다.</p>	<p>庚午/薦新粟米于宗廟及文昭殿。</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5월 21</p>	<p>좌의정 박은(朴崑)·우의정 한상경(韓尙敬)·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정탁(鄭擢)·옥천 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에게 약주(藥酒)를 내려 주었다.</p>	<p>賜藥酒于左議政朴崑、右議政韓尙敬、淸城府院君鄭擢、玉川府院君劉敞。</p>

<p>일(경오) 2번째기사 박은·한상경·정탁·유창 등에게 약주를 내려주 다</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5월 28 일(정축) 7번째기사 쌀과 포를 가지고 제 주에서 금은과 바꾸다</p>	<p>쌀과 포(布)를 가지고 제주(濟州)에서 금은(金銀)과 바꾸었다. 공조에서 제주의 인가(人家)에 금은기(金銀器)를 많이 비축(備蓄)하고 있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p>	<p>以米布貿易金銀於濟州。工曹啓：“濟州人家，多蓄金銀器。”故有是命。</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5월 28 일(정축) 8번째기사 준원전과 산릉의 제사 에 사기를 쓰라 명하 다</p>	<p>준원전(濬源殿)과 여러 산릉(山陵)의 제사에 사기(砂器)를 쓰라고 명하였으니,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p>	<p>命濬源殿及諸山陵，祭用砂器，從咸吉道都觀察使之請也。</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6월 4일 (계미) 3번째기사 소주와 약주를 제에게 보내다</p>	<p>소주(燒酒)와 약주(藥酒)를 제(禋)에게 내려 보냈다. 또 의원(醫員) 정종하(鄭從夏)·한용진(韓用珍) 등에게 명하여 서로 교대하여 광주(廣州)에 가서 약(藥)을 시탕(侍湯)하여 병을 치료하게 하고, 이어서 소합원(蘇合圓)·청심원(淸心圓)·양비원(養脾圓)·목향원(木香圓)을 내려 보냈다.</p>	<p>賜送燒酒及藥酒于禋。又命醫員鄭從夏、韓用珍等，相代往於廣州，湯藥治病，仍賜送蘇合圓淸心圓養脾圓木香圓。</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6월 7일</p>	<p>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에게 반상(飯床)에 소용되는 은기(銀器) 1벌과 주기(酒器) 1벌을 내려 보냈다.</p>	<p>賜送讓寧大君禔飯床所用銀器一件、酒器一件。</p>

<p>(병술) 5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은기와 주기 1 벌을 보내다</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6월 9일 (무자) 2번째기사 관해주목사 김유량의 줄기</p>	<p>관해주목사(判海州牧使) 김유량(金有良)이 졸(卒)하니, 쌀·콩 각각 10석씩과 종이 1백 권(卷)과 관곽(棺槨)을 부의(賻儀)로 주고, 이어서 황해도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지나는 곳으로 하여금 조석전(朝夕奠)을 마련하고 〈관(棺)을〉 전수(轉輸)할 정부(丁夫)를 갖추 주게 하였다.</p>	<p>判海州牧事金有良卒， 致賻米豆各十石、紙百卷及棺槨。 仍命黃海道都觀察使， 令所過處設朝夕奠， 具給輸轉丁夫。</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6월 10 일(기축) 3번째기사 신루에서 술자리를 베풀다</p>	<p>신루(新樓)에 술자리를 베풀었다. 의령 부원군(宜寧府院君) 남재(南在)가 한경(漢京)에서 와서 시좌(侍坐)하니, 임금이 농담으로 무인년(戊寅年) 가을에 아무도 죄를 논의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남재가 겁을 내어서 도망하였던 상황을 말하기를, “남은(南閩)의 난(亂)에 경이 유후사(留後司)에서 와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 하여 찢찢매고 있었으므로, 내가 사람을 시켜 우리 집에 잡아다가 두게 하였는데, 우리 집에 이르자 지금 세자(世子)를 안고 홀로 대청(大廳)에 앉아서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말하기를, ‘내가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원컨대, 숨을 곳에 들여 주소서.’하니, 정비(靜妃)가 말하기를,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시켜 통지(通知)하겠습니다.’하였다. 남재는 마침내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고 도망하여 갔는데, 나라에서 그 모양을 그리어 여러 군(郡)·현(縣)에 퍼서 물색(物色)하여 이를 구(求)하여, 장차 의령(宜寧)에 부처(付處)하려고 하였다. 남재가 미복(微服) 차림으로 걸어서 가다가 저녁에 한 촌사(村舍)에 투숙(投宿)하였는데, 주인 노파가 자세히 보고 말하기를, ‘객(客)의 생긴 모양을 보니, 방금 나라에서 찾는 남정당(南政堂)과 같습니다.’하니, 남재가 천천히 대답하기를, ‘내가 이처럼 빈천</p>	<p>置酒于新樓。 宜寧府院君南在來自漢京侍坐， 上戲言：“在戊寅秋， 無人議罪， 發怯在逃之狀曰：“南閩之亂， 卿來自留後司， 不知所之， 恐懼踟蹰。 予使人押置吾家， 到吾家， 抱今世子， 獨坐大廳恐怯曰：‘吾將何之？ 願入隱處。’ 靜妃曰：‘千萬毋懼。 若有事則必使人通之。’ 在竟不自安逃去。 國家圖其形， 布諸郡縣， 物色求之， 將以付處宜寧也。 在微服徒行， 暮投一村舍， 主人嫗熟視曰：‘觀客狀貌， 似是方今所索南政堂。’ 在徐答曰：‘我貧賤如此， 若爲南政堂則幸矣。’ 嫗曰：‘明朝當詣州官告之。’ 比曉起視， 則行已久矣。 馬天牧遇諸南原途中， 在杖策驅馬， 天牧下馬控立曰：‘令公何之？’</p>

	<p>(貧賤)한데, 만약 남 정당(南政堂)이라도 된다면 다행하겠다.’ 하므로, 노파가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마땅히 주관(州官)에 나아가서 이를 고(告)하겠습니다.’하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 보니, 남재가 간 지가 이미 오래였다. 마천목(馬天牧)이 남원(南原)으로 가는 도중(途中)에 만났는데, 남재가 채찍을 때려서 말을 몰므로 마천목이 말에서 내려 두 손을 모으고 서서 말하기를, ‘영공(令公)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였으나, 남재가 돌아보지도 않고 가면서 말하기를, ‘쳇!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하니, 마천목이 말하기를, ‘영공(令公)은 정지하소서. 내가 어찌 남 정당(南政堂)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남재가 뒤로 물러서서 바로 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남재인가?’ 하였으나, 마천목이 웃으면서 정지시키니, 남재가 망연(茫然)히 탄식하기를, ‘네가 정말 나의 3세(世) 원수로다.’ 하였다.”</p> <p>하니, 여러 경들이 다투어 이를 말하였다. 남재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허허허’ 할 뿐이었고, 임금도 또한 크게 웃으니, 여러 경들도 모두 입을 벌리고 크게 웃었다.</p>	<p>在不顧而行曰：‘咄，以我爲何人也?’ 天牧曰：‘令公且止。我豈不識南政堂乎?’ 在却立直視曰：‘我爲南在歟?’ 天牧笑而止之，在茫然歎曰：‘若眞我之三世讎也。’” 諸卿競言之，在不能答，但呵呵而已，上亦大笑，諸卿皆解頤。</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6월 14일(계사) 3번째기사 쌀·콩·정포 50 필을 연복사에 내려주다</p>	<p>쌀 20석·콩 15석·정포(正布) 50필을 연복사(演福寺)에 내려 주었으니, 그때 승도(僧徒)들이 한창 수습(修葺)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사(下賜)가 있었다.</p>	<p>賜米二十石、豆十五石、正布五十四匹于演福寺。時，僧徒方修葺，故有是賜。</p>
<p>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6월 17일(병신) 3번째기사 종친·공신·의정부·육조</p>	<p>술자리를 베풀어 종친(宗親)·공신(功臣)·의정부·육조(六曹)를 공궤(供饋)하였다.</p>	<p>置酒，餉宗親、功臣、議政府、六曹。</p>

를 공궤하다		
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6월 18 일(정유) 3번째기사 내관을 보내어 주과를 방간에게 주다	내관(內官) 신이희(申以熙)를 보내어 주과(酒果)를 방간(芳幹)에게 내려 주었다.	遣內官申以熙，賜酒果于芳幹。
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6월 18 일(정유) 4번째기사 노병에 복약하는 것은 술을 쓰도록 하다	대소 사신(大小使臣)에게 명하여 노병(老病)에 복약(服藥)하는 것은 모두 술을 쓰도록 하였다.	命大小使臣老病服藥，皆令用酒。
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6월 22 일(신축) 1번째기사 금주령을 거둬 밝히다	명하여 금주령(禁酒令)을 거둬 밝혔다. 인덕궁(仁德宮)에 공상(供上)하는 술을 제외하고 각전(各殿)에는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였으니, 가뭄을 염려하여서였다.	辛丑/命申禁酒令。 仁德宮供上酒外，各殿一皆禁斷，以憂旱也。
태종 35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6월 22 일(신축) 3번째기사 전의 부정 이현을 홍 주에 보내다	명하여 전의 부정(典醫副正) 이현(李軒)을 홍주(洪州)에 보냈다. 신이희(申以熙)가 홍주에서 돌아왔는데, 임금이 이맹중(李孟衆)에게 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이현에게 명하여 내약(內藥)을 주어서 보냈다.	命遣典醫副正李軒于洪州。 申以熙回自洪州，上聞孟衆之疾，卽命軒賜內藥以遣。
태종 36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다. 육조(六曹)에서 예궐(詣闕)하여 비가 온 것을 하례하고, 이어서 술을 들기를 청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박은(朴崧)	癸丑/雨、雷電。 六曹詣闕賀雨，仍請進酒，不允。 朴崧啓曰：“殿下斷酒，

<p>(永樂) 16년) 7월 5일 (계축) 1번째기사 비가 오고 번개가 치다</p>	<p>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술을 끊으시면 상왕(上王)께서 또한 술을 끊을 것이요, 전하께서 감선(減膳) 하면 상왕께서도 역시 감선할 것이니, 모든 식선(食膳)은 하나로 따르고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이제 때맞추어 비가 흠뻑 내리니, 청컨대, 다시 금단(禁斷)하지 말아서 상왕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의 이에 허락하였다.</p>	<p>則上王亦斷酒；殿下減膳，則上王亦減膳，凡食膳一遵無違。今時雨霏然，請勿復斷禁，以慰上王。”上乃許之。</p>
<p>태종 36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7월 17 일(을축) 2번째기사 쌀·콩 1백 석을 연경 사에 주다</p>	<p>명하여 쌀·콩 1백 석을 연경사(衍慶寺)에 주었다.</p>	<p>命給米豆一百石于衍慶寺。</p>
<p>태종 36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7월 20 일(무진) 2번째기사 쌀 1백 50 석을 각역 에 내려주다</p>	<p>쌀 1백 50석을 각역(各驛)에 내려 주었다. 양경(兩京) 사이에 역로(驛路)의 인마(人馬)가 함께 곤폐한 것을 불쌍히 여겨, 호조(戶曹)에 명하여, 영서(迎曙)에서 초현(招賢)에 이르는 5역(驛)에 쌀 50석을, 청파(靑坡)·노원(盧原) 두 역에 50석을, 청교(靑郊)·산예(狻猊) 두 역에 50석을 내려 주었다.</p>	<p>賜米一百五十石于各驛。上恤兩京間驛路人馬俱困，命戶曹自迎曙至招賢五驛，賜米五十石；靑坡、盧原二驛五十石；靑郊、狻猊二驛五十石。</p>
<p>태종 36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7월 20 일(무진) 3번째기사 사용·사선에 호피·표피 를 사용하여 잡물을 덮지 말도록 하다</p>	<p>사용(司饗)·사선(司膳)에 명하여 잡물(雜物)을 실어 나르는데 호피(虎皮)·표피(豹皮)를 써서 덮지 말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용·사선의 잡물을 실어 나르는 말[馬]은 대개 호피·표피를 써서 덮었는데, 임금이 말하였다. “호피와 표피는 민간(民間)에서 납공(納貢)하고 값이 비싼 물건이니, 이제부터 일체 모두 금지하라.”</p>	<p>命司饗司膳，馱載雜物，勿用虎豹皮覆之。先是，司饗司膳雜物載持之馬，率用虎豹皮覆之，上曰：“虎豹皮，民間納貢價重之物，自今一皆除之。”</p>
<p>태종 36권, 18년</p>	<p>임금이 인덕궁(仁德宮)에 나아가서 기거(起居)하다가 드디어 창덕궁(昌德宮)에</p>	<p>上詣仁德宮起居，遂幸昌德宮，觀仁政</p>

<p>(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8월 1일 (무인) 2번째기사 임금이 인덕궁에 나아가 기거하다. 경복궁에 환행하다</p>	<p>거동하여 인정전(仁政殿)을 짓는 상황을 돌아보고, 이어서 광연루(廣延樓)에 나아가서 감독하는 관리와 시위(侍衛)하는 신료(臣僚)를 공궤(供饋)하고, 고기와 술을 역사(役事)하는 무리에게 내려 주고, 날이 저물어 경복궁에 환행(還幸)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이명덕(李明德)에게 묻기를, “내가 인덕궁(仁德宮)에 가려는데, 성녕(誠寧)의 집이 길가에 있으니, 이를 보면 반드시 애훼(哀毀)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이 나를 조소할 줄 알지만, 그러나 차마 볼 수가 없다. 송례문(崇禮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서전문(西箭門)으로 돌아 들어가 알현(謁見)한 연후에 서전문으로 돌아 나와서 인정전(仁政殿)을 개조(改造)하는 역사(役事)를 보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이명덕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일찍이 조금도 늦추지 않으셨는데, 이를 보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 말을 따라서 가고 오는데, 모두 송례문(崇禮門)으로 통하였다.</p>	<p>殿經營之狀，仍御廣延樓，饋監督官吏及侍衛臣僚，賜魚酒于役徒，至暮還幸景福宮。先是，上問於李明德曰：“予欲詣仁德宮，誠寧之家在路邊，見之則必生哀毀之心。予固知汝等之笑予，然不能忍視也。欲出崇禮門，回入西箭門謁見，然後還出西箭門，而來觀仁政殿改造之役何如？”明德對曰：“殿下悲念之心，未嘗小弛，見之則愈切矣。”上從其言，往還皆由崇禮門。</p>
<p>태종 36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8월 3일 (경진) 1번째기사 술과 고기를 성균관에 하사하다</p>	<p>술 50병과 말린 노루와 사슴 고기 각각 5구(口)씩을 성균관(成均館)에 하사하였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잣[松子]과 생리(生梨)를 바쳤으므로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 임금이, “내가 젊었을 때에 이 관(館)에 있었는데, 술을 마시면 반드시 노래하고 춤추어 흥을 일으켰다. 이제 이것을 마시는 자도 또한 마땅히 그같이 하여야 한다.” 하니, 이에 본관(本館)과 예문관(藝文館)·교서관(校書館)·승문원(承文院)의 관리·생원(生員)·유학(幼學) 1백여 인이 모여서 마시고 해가 저서야 파하였다.</p>	<p>庚辰/賜酒五十瓶、乾獐·鹿各五口于成均館。成均館獻松子與生梨，乃有是賜。上曰：“予少時游於是館，飲酒則必歌舞而發興，今飲此者，亦當如之。”於是，本館與藝文·校書館、承文院官吏、生員、幼學百餘人會飲，竟日乃罷。</p>
<p>태종 36권, 18년 (1418 무술 / 명 영락</p>	<p>이명덕(李明德)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의화 궁주(義和宮主)가 늙고 병이 있어서 약주(藥酒)를 떠나지 않는다. 이제</p>	<p>敎李明德曰：“義和宮主老且有疾，不離藥酒。自今勿用陳酒，以新酒進</p>

<p>(永樂) 16년) 8월 6일 (계미) 7번째기사 이명덕에게 의화 궁주 에게 새 술을 바치도 록 하교하다</p>	<p>부터 묵은 술을 쓰지 말고 새 술을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궁주(宮主)는 전조(前朝) 현릉(玄陵) 5275) 의 정비(定妃) 안씨(安氏) 였다.</p>	<p>焉。” 宮主, 前朝玄陵定妃安氏也。</p>
--	---	---------------------------